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 9.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025. 9.

제 출 문

기획재정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연구용역에 관한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연구책임자: 고지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자: 홍병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문지웅 중앙대학교 조교수

2025년 9월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 장 이 영

요 약

I. 서론

- 본 일괄 심층평가의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87조②)’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로 제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일몰연장 여부를 검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정책대상 및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본 조세특례는 1996년 「舊 소득세법」에 신설된 이후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으로 이동, 2018년 일몰 규정 도입 이후 연장되어 옴
 -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414억원, 2023년 396억원 수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저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해당하는 거주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가입 대상자는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기존 생계형 저축에서 2015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정책대상자 및 저축한도, 소득요건 등을 개정
-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2,554억원, 2023년 5,461억원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

□ 본 심층평가에서는 조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현황,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도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 분석 및 개선방안 모색을 목적으로 시행하며 주요쟁점은 다음과 같음

- (현황 분석) 행정 데이터(국세청,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국세통계연보,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활용하여 해당 조세·과세특례 수혜자 분석, 해외 주요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유사제도 파악
- (타당성 분석) 정부역할로서의 타당성, 수혜대상의 적절성, 운용방식의 적절성 등의 항목 점검
- (효과성 분석) 설문조사 및 국세청 미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동 제도의 목표 달성 정도 점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소득공제에 대한 탄력성 및 자산형성에 미치는 효과 추정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여 연령,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요건 등 제도 변화가 저축증대·재산형성과 형평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 추정

□ 본 심층평가에서 제도의 일몰 및 연장 여부는 타당성 및 실증분석의 결과와 함께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향후 효율적 제도 운영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자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약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어 왔으나 세대 및 인구구조 변화와 같은 현재 및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
- 반면 수혜대상이 서민층 혹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개선방안 제시

II.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 제도 운영 현황

- (제도 개요) 본 제도는 1996년 「舊 소득세법」에 신설된 이후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으로 이동, 2018년 일몰 규정 도입 이후 연장되어 옴
 - (수혜대상 및 내용)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연혁) 주택요건, 공제한도를 중심으로 개정되다가, 2015년에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로 최근인 2025년에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까지로 적용대상 변경

- (가입 현황) 2024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14조 8,151억원 수준이며, 잔고좌수(연말)은 2,550만개, 잔고금액(연말)은 97조 4,884억원 수준
 - 2013년과 비교하여 납입액은 유사한 수준이나 잔고좌수는 1.76배, 잔고금액은 2.92배 증가
 - 전반적으로 지난 10년간 증가세를 보였으나 최근인 2022년부터 납입액과 잔고좌수(연말)가 감소

<표 1>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총규모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납입액	잔고좌수(연말)	잔고금액(연말)
2013년	147,235	14,462,851	333,384
2014년	162,453	15,928,940	414,446
2015년	218,536	18,404,347	530,927
2016년	190,685	20,006,798	598,751

<표 1>의 계속

(단위: 개, 억원)

연도	납입액	잔고좌수(연말)	잔고금액(연말)
2017년	183,270	21,538,138	652,532
2018년	170,708	23,106,315	682,490
2019년	162,075	24,238,353	722,849
2020년	211,701	25,997,932	833,868
2021년	231,384	27,179,341	962,690
2022년	183,139	26,762,179	955,459
2023년	149,607	25,969,639	952,967
2024년	148,151	25,500,671	974,884

주: 1.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2. 청년우대형 상품은 2018. 7. 31. 출시, 청년주택드림 상품은 기존 청년우대형을 대체하여 2024. 2. 21. 출시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수급 현황) 2023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인원은 97만 8,471명, 공제금액은 3,846억원, 1인당 공제금액은 393,102원 수준
 - 그에 따른 경감세액은 372억원, 1인당 경감세액은 37,997원 수준으로 높지 않음

<표 2> 2023년도 수급 현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연도	공제인원	공제금액 ¹⁾	1인당 소득공제금액	경감세액 ²⁾	1인당 경감세액
2023	978,471	3,846	393,102	372	37,997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수혜자 특성) 2023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수혜자의 평균연령은 35세로 남성(52%)의 비중이 높았으며, 부양가족 및 부양자녀가 없는 수혜자의 비중이 높고 총급여는 4,292만원 수준
 - 2013~2023년 수혜자 중 남성의 비율, 부양가족 및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

4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남성의 비중은 2013년 72%에서 2023년 52%로 감소
- 부양가족이 있는 수혜자 비중은 2013년 52%에서 2023년 26%로, 부양자녀가 있는 수혜자 비중은 2013년 28%에서 2023년 6%로 급격히 감소
- 수혜자의 평균 총급여는 대체로 유사하나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의 유예 기간이 종료된 2018년에 4,152만원으로 감소

<표 3>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혜자 특성

(단위: 세, %, 원)

구분	평균연령	성별 (남성비율)	부양가족 유무 ¹⁾	부양자녀 유무	평균 총급여
2013년	34	72%	52%	28%	45,516,777
2014년	34	71%	52%	33%	46,769,220
2015년	35	69%	49%	30%	46,778,087
2016년	35	67%	47%	28%	46,779,505
2017년	35	65%	44%	26%	46,844,379
2018년	34	61%	37%	20%	41,524,015
2019년	34	59%	34%	10%	41,621,522
2020년	34	57%	31%	9%	41,352,282
2021년	34	55%	30%	9%	41,445,141
2022년	34	54%	27%	8%	42,280,861
2023년	35	52%	26%	6%	42,915,696

주: 1) 부양가족 유무는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며, 자녀 유무는 직계비속공제 등을 받은 경우로 정의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총급여구간별 수급 현황) 2023년 기준 총급여 구간별 공제인원 및 1인당 경감세액은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많았음
 -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구간의 공제인원은 56만명으로 전체 수혜자의 56.72%를 차지하며,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공제인원의 42.76%로 그 다음으로 높게 나타남
 - 1인당 경감세액은 1천만원 이하 12,032원,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는 24,809원, 4천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는 44,821원 수준

<표 4> 총급여구간별 경감세액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총급여구간	공제인원	공제인원 비중	공제 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2023	1천만원 이하	5,145	0.53%	10.32	200,538	0.62	12,032
	4천만원 이하	418,384	42.76%	1,483.72	354,632	103.80	24,809
	7천만원 이하	554,942	56.72%	2,352.35	423,891	248.73	44,821
	전체	97,8471	-	3,846	393,102	372	37,997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3.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금액 비중은 각 연도 전체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소득공제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부양자녀 유무별 수급 현황) 2023년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더 높게 나타남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공제인원은 914,928명으로 비중은 93.5%이며, 경감세액은 348억원, 1인당 경감세액은 38,021원 수준
- (부양가족 유무별 수급 현황) 2023년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은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1인당 경감세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남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제인원은 727,462명으로 비중은 74.3%이며, 경감세액은 273억원, 1인당 경감세액은 37,533원 수준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경감세액은 39,246원
- (연령별 수급 현황) 2023년 공제인원 비중과 경감세액은 30~40세 미만(45.82%, 169.55억원)에서 가장 높았으며, 1인당 경감세액은 60~70세 미만에서 43,082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남
- (해외 사례 조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조사국들은 대체로 무주택자 혹은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저축장려, 퇴직연금 활용, 대출지원 등의 방식으로 주택구매를 지원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는 주택구매 목적의 전용저축계좌(FHSA)를 운영하여 납입금과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공제 및 비과세 인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 연금 계좌(IRA, RRSP)에서도 주택구매 시 세금 부담 없이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프랑스와 일본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및 주택담보대출공제 등을 운영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2. 타당성 평가

- 타당성 평가는 크게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 검토를 중심으로 수행
- (정부역할의 적절성)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은 ① 2006~2023년 「주거실태조사」를 사용하여 자가보유 현황 및 보유에 대한 인식을 통해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 측면에서 살펴보고 ②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택구매를 위한 수단으로 충분히 사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봄으로써 살펴봄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 2023년 「주거실태조사」의 자가보유 현황 및 보유에 대한 인식변화 등을 통해 살펴본 결과 서민 및 중산층의 주거안정 지원의 필요성 및 정부 개입의 타당성이 있음을 발견함
 - 우리나라 PIR은 84.8로 OECD 평균인 115.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나 이는 실질적 체감도와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체감도를 간접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주택의식 대비 실제 자가보유율 수준을 살펴본 결과 ‘주택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87.3%)에 비해 자가보유율(60.7%)이 낮게 나타났으며, 40세 미만(32%), 소득분위 하위(59%), 수도권(64%)에서 격차가 크게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택구매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설문조사를 통해 살펴봄

- 설문조사 결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구매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며 실제 사용률도 높음을 발견할 수 있었으나, 실제 주택구매에 대한 기여도는 보통 혹은 그보다 약간 높아 제한적임
 - 응답자의 대부분은 부동산 자산형성을 위하여 자산을 축적(54.4%)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선호(69.5%)와 사용률(66.4%)이 높게 나타났음
 - 부동산 소유를 목적을 위한 자산축적의 수단으로 주택청약저축을 사용하는 경우가 69.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비율은 66.4%로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자인 정책대상자의 가입 비율이 74.7%로 비대상자(58%)보다 높게 나타남
 - 연평균 납입액은 289.1만원 수준
 -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의 효과성은 보통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인식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평균점수는 3.2점, 본 조세특례의 소득공제의 기여 정도는 평균 3.1점 정도로 도움 정도가 보통(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 도움이 되지 않음, 3: 보통, 4: 도움이 됨, 5: 매우 도움이 됨)

- (지원대상의 적절성) 2023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소득기준에 따른 자가소유 비율 및 PIR을 살펴본 결과 7,000만원 초과자를 제외하는 것은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자들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임
 - 7,000만원 이하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62.94%로 7,000만원 초과 가구(77.78%)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PIR 또한 6.67배로 7,000만원 초과 가구(5배)보다 높게 나타남

- (지원방식의 적절성)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금의 일부를 소득 공제 형태로 감면하는 본 조세특례의 방식은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조세지원)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보조방식, 지원시기, 행정집행의 측면에서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보다는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반면 소득공제의 형태로 지원되고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소득요건설정) 2015년부터 적용된 소득요건(7,000만원 이하)은 고소득층의 수급을 배제하는 역할과 더불어 수혜자 간 경감세액의 차이를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기존의 역진성을 해소하는 데 기여함
- (통합한도운영)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동되어 있으나 수혜대상이 상이하게 설정되어 납세자의 세법 이해도를 낮출 수 있음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소득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¹⁾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설정되어 있음²⁾
- (중복성 검토) 본 조세특례와 정책목표가 유사하고 중복수급이 가능한 재정사업들이 존재하나 수혜대상 및 보조방식 측면에서 차이점 및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복 재정지원사업으로는 주택구입에 대한 용자사업 등이 있으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점 및 보완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등

3.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성을 설문조사 및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하였음

1)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검색일자: 2025. 4. 15.

2)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검색일자: 2025. 4. 15.

- 본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설문조사 결과 청약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고(약 66%),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70% 이상), 인지도가 낮아서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 (16.5%), 제도의 작은 개혁은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추정 결과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는 4,637만원이었고, 그중에서 대부분인 4,250만원은 자본이익에서 도출되었으며, 소득공제의 가치는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중 3%만을 차지함
 - 이는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저축의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음을 의미

- (반사실적 분석 1) 소득공제 제도가 사라질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가입자의 비율은 3.84%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대 자본이익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었음
 - 이는 해지를 선택하는 가입자들은 이미 기대 자본이익이 0이라고 생각하는 가입자들이기 때문임
 - 이 수치는 설문조사에서 소득공제가 사라질 경우 해지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의 8% 정도에 해당

- (반사실적 분석 2) 소득공제의 대상자 혹은 혜택이 확대되었을 때 추가적인 가입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소득공제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 비가입자의 20% 정도가 추가적으로 대상자 확대의 혜택을 받을 경우, 현재 비가입자의 1.27% 정도가 새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 비가입자의 1.5% 정도가 새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

Ⅲ.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 제도 운영 현황

- (제도 개요)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등 거주자의 세
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과의 합계액이 5,000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
서 이자 또는 배당 소득세를 비과세
 - (제도 연혁) 2015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정책대상자 및 저축한도, 소득요건 등을 개정
- (가입 현황) 2024년 12월 말 은행연합회 기준 비과세종합저축계좌 가입자는 약
542만명이며 해당 계좌의 한도 설정금액의 총합은 182조 2,710억원
 - 계좌수 및 가입자수, 한도금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
 - 2020~2024년 평균 계좌 소유기간은 12.2~12.7개월, 평균연령은 약 73세, 남성
비율은 약 40% 수준임

<표 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단위: 명, 백억원, 개월, 세, %)

기준 연월	계좌수 ¹⁾	신규 계좌수 ²⁾	해지 계좌수 ³⁾	가입자수 ⁴⁾	한도 금액 ⁵⁾	평균 계좌 소유기간 ⁶⁾	평균 연령 ⁷⁾	남성 비율 ⁸⁾
2020.12	7,799,461	6,889,402	7,082,289	4,230,086	12,956	12.58	72.94	40.09%
2021.12	7,912,717	7,038,086	7,016,097	4,346,098	13,512	12.67	73.18	39.83%
2022.12	8,903,875	9,759,520	8,836,983	4,897,897	15,965	12.36	73.02	40.25%
2023.12	9,605,841	8,940,672	8,378,731	5,187,421	17,211	12.26	73.11	40.20%
2024.12	10,085,000	9,476,829	9,101,001	5,416,950	18,271	12.24	73.20	39.87%

- 주: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신규 계좌수는 해당 연도에 신규 개설된 계좌수를 의미함
 3) 해지 계좌수는 해당 연도에 해지된 계좌수를 의미함
 4)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5)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6) 평균 계좌 소유기간은 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개월 수 평균을 의미함
 7) 평균연령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을 의미함
 8) 남성비율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가입자 중 남성의 비율(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가입자 유형별 현황) 전체 가입자 중 65세 이상이 93.6%인 약 507만명으로 대부분을 차지

○ 다음으로 장애인이 5.6%인 약 30.3만명, 그리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0.4%인 약 2만명 순

<표 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백억원)

구분	계좌수 ¹⁾	가입자수 ²⁾	한도금액 ³⁾
장애인	569,572	303,253	957
국가유공상이자	39,019	19,746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1,799	20,162	27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406	3,664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425	629	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56	311	1
65세 이상	9,435,223	5,069,185	17,198

주: 1. 가입자 유형의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5세 이상 순(동일인이 여러 유형으로 등록된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유형으로 집계)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3)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가입 규모별) 2024년 12월 기준, 전체 비과세종합저축 중 한도를 500만~1,000만원으로 설정한 계좌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가입자 수는 1,000만~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한도금액은 4,000만~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가장 많음

<표 7>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규모별 가입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백억원)

가입규모	계좌수 ¹⁾	가입자수 ²⁾	한도금액 ³⁾
~100만원 이하	219,036	178,232	15
100만원~300만원 이하	902,658	697,734	199
300만원~500만원 이하	1,116,658	915,403	504
500만원~1,000만원 이하	2,490,504	1,817,102	2,191
1,000만원~2,000만원 이하	2,303,905	1,838,668	3,740

<표 7>의 계속

(단위: 명, 백억원)

가입규모	계좌수 ¹⁾	가입자수 ²⁾	한도금액 ³⁾
2,000만원~3,000만원 이하	1,187,874	1,101,050	3,208
3,000만원~4,000만원 이하	593,358	592,440	2,181
4,000만원~5,000만원 이하	1,271,007	1,267,671	6,233
소계	10,085,000	8,408,300	18,271

주: 1. 계좌 기준으로 한도 금액별 집계함.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만원, 500만원 한도인 계좌 2개를 보유한 경우, '100만원 이하', '300만~500만원 이하'에 계좌수와 가입자수가 각각 집계됨. 반면 한 사람이 100만원 한도인 계좌 2건을 보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에 계좌수는 2건으로 집계되지만, 가입자수는 한 명으로 계산됨. 따라서 '가입자수'는 하나의 주민등록번호가 중복으로 집계되므로(동일인이 여러 명으로 계산됨) 가입자수 합계와 실제 총 가입자수는 불일치함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3)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3)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수혜 현황) 본 과세특례 수혜 현황을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귀속연도 기준 2023년 총수혜자는 441만명, 총수혜금액(비과세 금융소득)은 4조 7,043억 원 규모였으며, 1인당 수혜금액은 107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2023년 총수혜자 수는 10% 증가하였으나 총 수혜금액이 120% 증가하면서 1인당 수혜금액이 100% 증가

-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금융소득의 증가 요인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표 8>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 현황: 2013~2023년

(단위: 명, 원, %)

귀속 연도	총 수혜자 수	전년 대비 (%) ²⁾	총 수혜금액 ¹⁾		1인당 수혜금액	
			전년 대비 (%) ²⁾	전년 대비 (%) ²⁾	전년 대비 (%) ²⁾	
2013	4,007,193	-	3,085,695,350,194	-	770,039	-
2014	4,031,876	1%	2,480,839,063,850	-20%	615,306	-20%
2015	4,361,625	8%	2,252,877,736,229	-9%	516,523	-16%
2016	4,238,900	-3%	2,185,626,390,801	-3%	515,612	0%
2017	4,058,685	-4%	2,006,065,394,413	-8%	494,265	-4%
2018	3,834,820	-6%	1,967,864,336,702	-2%	513,157	4%
2019	3,760,551	-2%	2,368,372,358,991	20%	629,794	23%

<표 8>의 계속

(단위: 명, 원, %)

귀속 연도	총 수혜자 수		총 수혜금액 ¹⁾		1인당 수혜금액	
	전년 대비 (%) ²⁾	전년 대비 (%) ²⁾	전년 대비 (%) ²⁾	전년 대비 (%) ²⁾		
2020	3,746,625	0%	2,485,888,503,494	5%	663,501	5%
2021	3,769,420	1%	1,869,484,750,955	-25%	495,961	-25%
2022	4,004,620	6%	2,141,596,172,664	15%	534,781	8%
2023	4,405,955	10%	4,704,261,361,532	120%	1,067,705	100%

주: 1) 총수혜금액은 지급명세서 기준 본 조세특례 대상 비과세 금융소득금액을 의미

2) 전년 대비(%)는 [(당해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의 비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해외 사례 조사)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주요국을 대상으로 저축에 대한 세 제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조사 국가들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저축 및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유사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 중
 - 미국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저축상품에 세액 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경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는 등록장애인의 조정된 가구 순소득 및 납입금에 따라 300%, 200%, 100%의 매칭 보조금을 지급하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프랑스는 가족 계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
 - 일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저축원금 550만엔 한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2. 타당성 평가

- (정부역할 및 지원대상의 적절성)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취약계층의 경우 저축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높다고 평가되며, 이에 정부역할의 타당성 및 지원대상의 적절성이 있어 보임
 - (만 65세 이상 노인) 노후소득 보장 및 소득다변화 필요성 측면에서 저축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 우리나라 장년소득 대비 노후소득 비율은 65세 50%, 70세 40%, 75세 30%로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의 추정치(50~70%)나 1990년대 미국(60~70%)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철희, 2014)
 - 우리나라 고령자의 경우 노동시장 참여를 통한 충분한 소득창출이 어렵고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아 금융소득과 같은 다양한 소득원 마련을 장려 및 지원할 필요성이 존재함
 -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 근로의욕 저하 등 기존 소득보장지원제도의 한계(신동면, 2009)를 보완하고 실질적 자립을 돕는다는 측면에서 저축지원을 통한 자산형성의 타당성이 있음
 - 자산형성 지원제도를 통해 근로의욕 고취, 미래의 발전을 도모, 사회참여 등(Sherraden, 1991)이나 탈수급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서광국, 2018)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지원방식의 적절성) 동 과세특례의 비과세 지원방식은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65세 이상 수혜자의 경우 소득 및 재산여건이 상이한 수혜자들을 포함하고 있어 수직적 형평성 측면에서의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비과세 방식은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며 납세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며(김학수·박노옥, 2013), 과세표준의 크기나 세액공제 순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보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
 - 다만 금융소득에 대한 제한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제약이 없어 수직적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존재
- (중복성) 2023년 65세 이상 수혜자의 경우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의 중복성(25.53%)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우 비교적 크지 않음
- 국세청 제공 2023년 수급자 전수조사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비과세·면제 금융소득 중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의 비중이 69.94%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비과세·면제 금융소득의 25.53%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이며 4.27%가 그 외의 비과세·면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비과세·면제는 ISA에 대한 비과세 포함
- 본 과세특례와 ISA의 중복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배제 제한을 통해 중복성의 정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복 수급자의 수는 조합 출자금·예탁금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금액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262만원)과 세금우대종합저축(106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3. 효과성 분석

가. 제도 활용 현황 및 요인 분석

□ 제도 활용 요인 분석

- (비과세 금액 변동) 연도별 비과세 혜택 금액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인다 2023년에 5천억원을 넘어서며 급증하였으며, 이는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세와는 다른 양상임
- (기준금리와의 연관성)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2023년 비과세 혜택 금액이 폭증하였으며, 이는 평균 계좌 보유 기간이 약 1년이라는 점과도 일치함
 - 실제로 특정 연도의 조세지출액 증감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준금리 증감 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

나. 수혜대상 분석

□ 수혜자 미시자료 분석

- (소득과 혜택의 역상관 관계) 만 65세에서 74세 사이 인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종합소득은 낮아지지만, 1인당 평균 비과세 혜택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소득수준별 분포) 수혜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1인당 평균 혜택금액은 오히려 일부 고소득 구간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됨

- 소득 및·자산수준 등 별도의 요건을 두지 않을 경우, 고소득층도 수혜대상에 포함될 수 있음

다. 경제적 효과 분석

- 제도 도입의 저축 증대 효과: 연령 기준이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활용한 분석 결과,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수혜자의 저축 관련 금액을 유의미하게 증가 시킨 것을 확인함
 - (절대 금액 증가) 제도 도입 후 1년 뒤 비과세 혜택 금액은 약 32만원, 2년 뒤에는 약 38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2년 후 약 150만원 수준으로 급증함
 - (저축 행태 변화 미미) 종합소득 대비 ‘비율’로 동일한 분석을 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이는 제도가 수혜자의 절대적인 저축액은 늘렸지만, 소득에서 더 높은 비율을 저축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행동 변화까지는 유도하지 못했음을 시사
- 금융소득 요건 추가의 효과: 2020년 금융소득 요건 추가가 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 2020년 도입된 금융소득 요건(연 2천만원 초과 시 가입 제한)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0.16~0.48% 수준으로 매우 적었음
 - 이는 종합소득이 낮은 사람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제도효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해당 요건으로 인해 수혜 자격이 박탈된 인원이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정책이 비과세 혜택 금액이나 이자배당소득 규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본 조세특례가 목적으로 하는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 지원에 대한 정부역할, 지원대상의 적절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서민층의 주택마련에 얼마나 효과적인 방식인지에 관하여서는 고민이 필요함
 - 효과성 분석 결과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유인하는 작은 효과가 있었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치에서 소득공제의 가치는 크지 않았음
 - 이는 주로 주택구매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와는 대비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을 유도하여 자산 및 부동산 자산 형성의 시작점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추후에는 변화하는 정책환경을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장기적으로 그에 맞는 유연한 정책방향 설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은 주택구매를 위한 자산축적의 중요한 수단으로 인식 및 사용되고 있으며 서민층의 자산 및 부동산 자산형성 계획을 유인하는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부양가족 및 부양자녀가 없는 수혜자의 비중이 증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최근에 감소, 세대 간 주거소비 특성의 차이 발생 등 정책환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 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인센티브 구조에 대한 납세자들의 이해도가 높지 않은 상황이므로 제도의 작은 개정은 그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를 단순화해 가는 것이 바람직
 - 설문조사의 결과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대한 인지는 높지만,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61.7%)가 많았음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통합한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중복수급(4%)은 많이 발생하지 않음

- 그럼에도 한도가 연동되어 있어 납세자들의 세법 이해도를 낮추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설정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를 분리하여 통합 한도가 아닌 독립적인 한도로 낮추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취약계층의 저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본 과세특례제도는 정책적 목표의 타당성이 있으며 실제로 금융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효과성 또한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수혜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중장기적으로 조세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소득 및 자산 요건 없이 고령층 전체를 포괄하는 현 운용 방식에 대해서 재검토가 필요
 - 본 과세특례의 혜택은 만기 혹은 해지 시에 일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노후 소득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기능이 충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도 본래의 취지대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제도 운영이 적합해 보임
 - 반면 고령층의 자산 및 소득 수준은 세대를 거듭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고령층 중에서도 고소득-고자산가가 존재함
 - 따라서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작업을 통해서 수혜대상의 적절성을 제고하고 수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서 금융소득 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이 2020년 도입되었으나 이는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며,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 가능
 - 유사하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고령층 수혜자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기초생활보장제도, 기초연금 등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은 소득요건(단독가구 기준 2,200만원 미만)과 자산요건(2억 4천만원 미만)

- 을 독립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은 소득과 자산을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종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으나 각기 장단점이 있음
- 근로장려금에서 활용 중인 소득 및 재산요건 확인을 위한 과세 인프라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행정비용 절감 효과가 기대되나 대상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기 어렵고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본 과세특례 제도의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하위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소득 및 재산요건을 선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과세특례 목적과 상이할 수 있음
 - 실제로 김도현·이승희(2025)에서 지적하는 바와 같이 고령층의 경제상황 개선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점차 기준중위소득에 수렴하고 있어 취약계층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음
-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을 활용하되 기초생활보장제도 처럼 전체 소득분포를 고려한 중위소득을 기준점으로 삼거나 근로장려금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 기준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기초연금 등과는 독립적으로 본 과세특례의 정책목적에 좀 더 적합한 수혜대상을 설정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목 차

I. 서론	29
II.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35
1. 제도 운영 현황	37
가. 제도 개요	37
나. 수급 현황	41
다. 해외 사례 조사	64
2. 타당성 평가	72
가. 정부역할의 적절성	72
나. 지원대상의 적절성	85
다. 지원방식의 적절성	88
라. 중복성 검토	93
3. 효과성 분석	99
가. 개요	99
나. 설문조사	101
다. 구조모형을 통한 소득공제의 효과성 분석	116
라. 결론	124
III.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27
1. 제도 운영 현황	129
가. 제도 개요 및 수급 현황	129
나. 해외 사례 조사	144
2. 타당성 평가	153
가. 정부역할의 적절성	153
나. 지원대상의 적절성	157

다. 지원방식의 적절성	172
라. 중복성 검토	175
3. 효과성 분석	185
가. 제도 활용 현황과 요인 분석	186
나. 수혜대상 분석	193
다. 경제적 효과 분석	201
라. 소결	215
IV. 결론 및 정책제언	217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219
가. 분석 결과의 요약	219
나. 정책제언	222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224
가. 분석 결과의 요약	224
나. 정책제언	226
참고문헌	230
부록 A: 모형도출 과정	239
부록 B: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설문조사	243

표 목 차

<표 II-1> 주요 연혁	39
<표 II-2>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41
<표 II-3>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총규모 현황	42
<표 II-4>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총규모 현황: 상세	44
<표 II-5> 주택청약종합저축 연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45
<표 II-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연도별 경감세액	46
<표 II-7>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혜자 특성	47
<표 II-8> 부양자녀 유무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48
<표 II-9> 부양자녀 유무별 경감세액	50
<표 II-10> 부양가족 유무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51
<표 II-11> 부양가족 유무별 경감세액	52
<표 II-12> 총급여구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54
<표 II-13> 총급여구간별 경감세액	56
<표 II-14> 연령구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58
<표 II-15> 연령구간별 경감세액	61
<표 II-16> 일본 주택담보대출공제 대출한도	71
<표 II-17> 지역별·소득별 자가보유율	74
<표 II-18> 가구주 연령별·가구원수별 자가보유율	74
<표 II-19> 주택보유의식	76
<표 II-20>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80
<표 II-21>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82
<표 II-22>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	83
<표 II-23> 주택청약 관련 인식	84
<표 II-24> 2023년 자가보유 및 자가점유 비율	87
<표 II-25> 2023년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	88
<표 II-26> 재정 및 조세지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 판단 기준	90

<표 II-27> 총급여구간별 공제 및 경감세액 현황	92
<표 II-2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성에 따른 공제한도	94
<표 II-29> 중복수급 인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주택자금 관련 특별소득공제	96
<표 II-30> 중복수급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주택자금 관련 특별소득공제	97
<표 II-31>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주택구입 및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98
<표 II-32> 주요 설문조사 세부항목	102
<표 II-33> 응답자 특성	103
<표 II-34> 주택 입주 형태	106
<표 II-35> 평균 주택가격(시세) 및 임차료	106
<표 II-36> 주거 관련 인식	108
<표 II-37>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	108
<표 II-3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113
<표 II-39> 모수 설정	118
<표 II-40> 모형추정 결과	120
<표 II-41> 모형추정 결과	120
<표 II-42> 강건성 분석 1	123
<표 II-43> 강건성 분석 2	124
<표 III-1> 기존 저축지원 상품과의 비교	129
<표 III-2> 주요 연혁	132
<표 III-3>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133
<표 III-4>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자 및 수혜금액(2013~2023년)	133
<표 III-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135
<표 III-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직전 연도 대비 증감율	136
<표 III-7>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규모별 가입 현황(2024년 12월 기준)	137
<표 III-8>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24년 12월 기준)	138
<표 III-9> 65세 이상 거주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139
<표 III-10> 65세 이상 거주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직전 연도 대비 증감율 ·	139
<표 III-11> 비과세종합저축 연령별 가입 현황(2024년 12월 기준)	140
<표 III-12> 비과세종합저축 연령별 가입 현황(2024년 12월 기준): 전체 대비 비중 ·	140

<표 III-13>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 현황: 2013~2023년	142
<표 III-14> 연령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 현황: 2023년	143
<표 III-15> 성별 및 연령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 현황: 2023년 .	143
<표 III-16> Saver's Credit 공제율 기준(2024년)	144
<표 III-17> TFSA 연도별 납입한도	147
<표 III-18> RDSP 소득별 보조금	148
<표 III-19> 가족계수별 LEP 가입 가능한 소득한도	149
<표 III-20> 등록 장애인 현황	161
<표 III-21> 장애인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균등화시장소득 기준)	162
<표 III-22> 재정투입 계획(안)	163
<표 III-2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165
<표 III-24>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165
<표 III-25> 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	166
<표 III-26> 재산의 소득환산율	166
<표 III-27>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167
<표 III-28>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가구 특성	167
<표 III-2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소득 현황(2023년)	168
<표 III-3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 현황(2023년)	169
<표 III-31> 2023년 비과세종합저축 수혜자 표본 특성: 소득구조 및 수급 현황	174
<표 III-32>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176
<표 III-33> 가입대상자별 비과세 감면혜택	177
<표 III-34>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 소득 및 자산요건	178
<표 III-35> 2023년 수혜자 비과세·면제 금융소득금액 구성: 65세 이상 수혜자	181
<표 III-36> 2023년 수혜자 타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 중복가입 현황: 65세 이상 ...	181
<표 III-37>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188
<표 III-38>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2	188
<표 III-39> 기준금리와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 금액 추이 비교	192
<표 III-40>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	194
<표 III-4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성별·연령별 현황	195
<표 III-42> 출생연도별 수혜자 통계(2023년 기준)	197

<표 III-43> 성별 수혜자 통계(2023년 기준)	197
<표 III-44> 출생연도별·성별 수혜자 통계(2023년 기준)	198
<표 III-45> 종합소득 수준에 따른 수혜자 통계(2023년 기준)	200
<표 III-46> 비과세종합저축 주요 정책 변화 연혁	202

그림 목 차

[그림 II-1]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80
[그림 II-2]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81
[그림 II-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83
[그림 II-4] 주택청약 관련 인식	84
[그림 II-5] 지역별 및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	86
[그림 II-6] 월평균 세전 개인 및 가구소득	104
[그림 II-7]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105
[그림 II-8] 부채 보유 및 현황	105
[그림 II-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이유	110
[그림 II-10]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자본이익의 크기(적정 시세 대비 할인율)	111
[그림 II-11] 미래에 한 번이라도 청약을 사용하게 될 확률	111
[그림 II-12]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114
[그림 II-13]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115
[그림 II-14] 가입연도의 분포	118
[그림 II-15]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V의 분포	122
[그림 III-1] 한국은행 기준금리	134
[그림 III-2] 고령인구 추계: 1960~2072년	157
[그림 III-3] 총인구 추계: 1960~2072년	158
[그림 III-4] 연령별 인구구성비: 2022~2072년(중위)	158
[그림 III-5] OECD 주요국의 총빈곤율 및 만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2022년)	159
[그림 III-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분포	169
[그림 III-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규모별 분포	169
[그림 III-8] 연도별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	189
[그림 III-9]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191
[그림 III-10]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에 대한 정책효과	206

[그림 III-11] 총 비과세 면제 금액에 대한 정책효과	207
[그림 III-12] 이자배당금액에 대한 정책효과	207
[그림 III-13]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에 대한 정책효과(통제변인 추가)	208
[그림 III-14] 총 비과세 면제 금액에 대한 정책효과(통제변인 추가)	209
[그림 III-15] 이자배당금액에 대한 정책효과(통제변인 추가)	209
[그림 III-16]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비율)에 대한 정책효과	210
[그림 III-17] 총 비과세 면제 금액(비율)에 대한 정책효과	210
[그림 III-18] 이자배당금액(비율)에 대한 정책효과	211
[그림 III-19] 금융소득 요건 도입 효과(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 만원)	213
[그림 III-20] 금융소득 요건 도입 효과(총 비과세 면제 금액, 만원)	214
[그림 III-21] 금융소득 요건 도입 효과(이자배당금액, 만원)	214

I. 서론



I. 서론

- 본 심층평가의 대상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 §87조②)’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88조의2)’ 일괄로 2025년 의무심층평가 대상에 포함
 - 두 제도 모두 일몰조항 신설 이래로 연장을 거쳐 2025년 12월 31일 일몰 예정으로 제도의 종료 혹은 연장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심층평가를 실시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연 300만원 한도)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
 - 수혜대상 및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본 조세특례는 1996년 『舊 소득세법』에 신설된 이후 2008년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으로 이동, 2018년 일몰규정 도입 이후 연장되어 옴
 - 도입 이래로 주택요건, 공제한도를 중심으로 개정되다가, 2015년에는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 적용되고 최근인 2025년에는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까지로 적용대상을 확대함
 -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414억원, 2023년 396억원 수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저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일정 한도 이내의 저축원금에 대해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가입 대상자는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

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1인당 저축원금과 「조특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
- 기존 생계형 저축에서 2015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정책대상자 및 저축한도, 소득요건 등을 개정
 - 2015년부터 연령요건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였으며, 2020년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의 과세특례 적용 배제
- 조세지출 규모는 2022년 2,554억원, 2023년 5,461억원 수준으로 빠르게 증가

□ 본 심층평가에서는 조세 및 과세특례제도의 현황, 타당성 및 효과성을 분석하고 제도의 성과를 저해하는 요인을 진단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쟁점을 검토함

- (현황 분석) 행정 데이터(국세청, 은행연합회, 국토교통부), 국세통계연보, 조세지출예산서 등을 활용하여 해당 조세·과세특례 수혜자 분석, 해외 주요국(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유사제도 파악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현황 및 가입자 특성의 변화를 분석하여 정책환경의 변화를 살펴봄
 -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계좌수, 납입금액 등과 과세특례 수혜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최근의 급격한 조세지출 증가 요인 파악
- (타당성 분석) 정부역할로서의 타당성, 수혜대상의 적절성, 운용방식의 적절성 등의 항목들을 점검하며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거안정 지원의 필요성, 7천만원 이하 근로자의 수혜대상으로서의 적절성, 소득공제 방식을 통한 지원의 적절성, 제도 중복성 등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취약계층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 65세 이상 노인 등 수혜대상의 적절성, 비과세 지원의 적절성, 비과세·감면 조세특례와의 중복성 등
- (효과성 분석) 설문조사 및 국세청 미시자료 등을 활용하여 동 제도의 목표 달성정도 점검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설문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의 소득공제에 대한 탄력성 및 자산형성에 미치는 효과 추정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연령,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요건 등 제도 변화가 저축증대·재산형성과 형평성 제고에 미치는 효과 추정
- 본 심층평가에서 제도의 일몰 및 연장 여부는 타당성 및 효과성 분석의 결과와 함께 정책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며 향후 제도운영에 필요한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는 약 20년 이상 장기간 운영되어 왔으며 세대 및 인구구조 변화에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 이에 현재 및 미래의 정책환경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근본적인 제도 점검이 필요한 시점으로 생각됨
 - 수혜대상이 서민층 혹은 취약계층이라는 점에서 제도의 급격한 변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나 현 시점에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과 향후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점검이 필요한 요소를 함께 고려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Ⅱ.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Ⅱ.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 제도 운영 현황

가. 제도 개요

- (도입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도입됨
- (정책대상자 및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혹은 세대주의 배우자³⁾
- (수혜 내용) 정책대상자가 되는 세대주 혹은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이며,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800만원⁴⁾ 한도에서 소득공제
 - 단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3)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을 지원을 위해 2024년 12월 31일 적용대상 확대

4) 상환기간 15년 이상인 경우

- (제도 연혁) 신설, 적용 요건 및 공제율 변경과 같은 주요 변경 사항은 <표 1>과 같음
- 「舊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은 1996년 1월 1일(시행일 기준)에 신설됨
 - 주택마련 저축 불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2007년 12월 말 세법개정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조특법」 제87조(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 추가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⁵⁾
- 수혜 요건 변동
 - 2000년 10월 31일 이전: 무주택 세대주
 - 2000년 1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이전: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소유한 세대주
 - 2006년 1월 1일~2007년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한 세대주
 - 2008년 1월 1일~2009년 12월 31일: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가입 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한 세대주
 - * 단 저축 상품 가입 후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취득 시 기준시가 기준
 - 2010년 1월 1일~2014년 12월 31일: 무주택 세대주
 - 2015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 단 2014년 12월 31일 이전에 가입한 자는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해도 2017년까지 공제 가능
 - 2025년 1월 1일 이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
- 수혜한도 변동
 - 소득공제 관련 내용이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으로 이동한 2008년 소득공제 한도는 연 300만원
 - 그 이후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 납입액은 2010년 월 10만원, 2012년 연 120만원으로 조정되었다가 2015년 연 240만원, 2024년부터 연 300만원으로 확대

5) 2014년 12월 23일 세법개정에서 「조특법」 제87조가 【장기주택마련저축 등에 대한 비과세 등】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에 대한 소득공제 등】으로 바뀜.

<표 II -1> 주요 연혁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199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제에 주택마련 저축의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소득§52①5) 신설 - 주택마련 저축은 아래의 저축을 말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한 청약부금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저축의 불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한도: 소득공제금액 연 72만원(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전용면적 60㎡ 이하 1주택 소유 또는 임차한 무주택자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액과의 합계가 72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공제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 - 의무가입기간 5년
1999. 8. 3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한도 확대 - 공제한도: 소득공제금액 연 180만원
2000. 1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인 주택마련 저축 중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청약부금”은 공제대상에서 삭제함 - 주택마련 저축은 아래의 저축을 포함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청약저축(월 불입액 1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 · 장기주택마련저축 ○ 『소득세법』 제52조 내용 개정(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에 대한 공제 내용을 동법 동조 제2항에 작성) ○ 공제대상 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 소유자 ○ 소득공제 한도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소득공제금액 연 600만원(舊소득§52⑤) · 1주택 소유 또는 임차한 무주택자는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장기주택마련저축 불입금에 대한 소득공제액과의 합계가 6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200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가능 납입금액 산출 방식 조정 - 불입액을 월별 최대 100만원 이내로 정기적으로 납입하는 방식에서 분기별 최대 300만원으로 변경함 ○ 소득공제 한도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舊소득§52⑤』 소득공제금액 연 300만원(주택차입금원리금 상환 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의한 소득공제금액까지 포함한 합계액 한도)
2002. 12.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한도액 조정 - 공제한도: 『舊소득§52⑤』 소득공제금액 연 300만원(주택차입금원리금 상환 공제를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합계액 한도, 포함 시 600만원)

<표 II -1>의 계속

시행일	주요 변경사항
2004.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한도액 조정 - 공제한도: 「舊소득§52⑤」 소득공제금액 연 300만원(주택차입금원리금 상환 공제를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합계액 한도, 포함 시 1,000만원)
2006.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대상 축소 -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가입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한 세대주
200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관련 내용이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에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 제2항으로 이동 - (조특§87②) 저축의 불입금액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 전용면적 85㎡ 이하 1주택(가입 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소유한 세대주
2009.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한도액 조정 - 공제한도: 「舊소득§52⑤」 소득공제금액 연 300만원(주택차입금원리금 상환 공제를 포함,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의한 소득공제금액을 제외한 합계액 한도, 포함 시 1,500만원)
201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기간 연장 - 기존 2009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 → 2012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한 경우로 개정 ○ 소득공제 대상 저축 종류 변경 - 「주택법」에 따른 청약저축 및 주택청약종합저축 ○ 공제대상 축소 -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 소득공제 조건 변경 - 소득공제가 가능한 월 납입액을 최대 10만원까지로 함
2012.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조건 변경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 납입액을 120만원까지로 함
2015.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조건 변경 - 소득공제가 가능한 연 납입한도를 240만원으로 상향 조정 ○ 공제대상 축소(수혜조건 강화) - 공제대상: 무주택 세대주(만 18세 이상,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자)
2018.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도입 - 적용기한: 2019년 12월 31일까지 ○ 중도해지 시, 공제하지 않는 조항 신설
2020.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몰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2년 12월 31일까지
2023. 1.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득공제 조건 변경 - 소득 ○ 일몰기한 연장 -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료: 관련 법령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조세지출 규모) 조세지출예산서 상 동 항목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기준 396억 원 수준으로 추후에도 비슷하거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191억원에서 꾸준히 증가하여 2019년에 322억원을 기록함
- 2020년대 들어 조세지출 규모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였으며, 2025년 전망치는 433억원임
 - 2020년에는 295억원으로 전년 수준보다 감소하였으나 이듬해 다시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2년 414억원까지 규모가 확대됨

<표 II -2>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소득세	191 ¹⁾	198	269	281	302	322	295	357	414	396	401	433

주: 1) 조세지출예산서는 귀속분이 아닌 신고분을 기준으로 작성되므로 2013.1.1. 이후 소득공제 혜택이 종료된 장기주택마련저축 조세지출 규모 축소분은 2014년도 조세지출 규모에서부터 나타남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나. 수급 현황

1) 주택마련저축 가입 현황

- 본 조세특례의 수급현황을 살펴보기에 앞서 국토부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주택마련저축 가입 현황을 살펴봄
 - 주택마련저축은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포함
- 2013년과 비교하여 2024년 주택마련저축 납입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잔고좌수는 1.76배 잔고금액은 2.92배가량 증가함
 - 납입액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5년에 21.85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는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4.82조원을 기록함

- 잔고좌수(연말)는 2013년 1,446만개에서 2021년까지 2,718만개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소폭 감소하여 2024년에는 2,550만개를 기록하고 있음
- 잔고금액(연말)은 꾸준히 증가하여 2013년 33.33조원에서 2024년 97.49조원으로 증가함

<표 II -3>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총규모 현황

(단위: 개, 억원)

연도	납입액	잔고좌수(연말)	잔고금액(연말)
2013년	147,235	14,462,851	333,384
2014년	162,453	15,928,940	414,446
2015년	218,536	18,404,347	530,927
2016년	190,685	20,006,798	598,751
2017년	183,270	21,538,138	652,532
2018년	170,708	23,106,315	682,490
2019년	162,075	24,238,353	722,849
2020년	211,701	25,997,932	833,868
2021년	231,384	27,179,341	962,690
2022년	183,139	26,762,179	955,459
2023년	149,607	25,969,639	952,967
2024년	148,151	25,500,671	974,884

- 주: 1.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구.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2. 청년우대형 상품은 2018. 7. 31. 출시, 청년주택드림 상품은 기존 청년우대형을 대체하여 2024. 2. 21. 출시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 주택마련저축 중 ‘청년 우대형 이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며 총규모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나 2022년부터 감소세를 보임
 - 청년 우대형 이외의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납입액, 잔고좌수, 잔고금액의 비중은 90~94% 수준
 - 잔고좌수(연말)는 2013년 1,347만개에서 2021년까지 2,626만개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2022년부터 소폭 감소하여 2024년에는 2,387만개를 기록하고 있음
 - 잔고금액(연말)은 2013년 27.57조원에서 2021년까지 90.43조원으로 꾸준히 증가하다가 소폭감소하여 2024년에는 87.5조원을 기록
 - 2013년과 비교하여 2024년 납입액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잔고좌수는 1.77배 잔고금액은 3.17배가량 증가함

- 납입액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나 최근인 2022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남
 - 납입액은 비교적 큰 변화가 없었으나 2015년에 21.41조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로는 2020년, 2021년을 제외하고 꾸준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13.49조원을 기록함

- 2018년에 도입된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이 출시된 2024년에 크게 증가
 - 납입액은 2023년 5,258억원에서 2024년 1조 1,622억원으로 약 2.21배 증가
 - 잔고좌수(연말)는 2023년 61만개에서 2024년 130만개로 2.13배 증가
 - 잔고금액(연말)은 2023년 3조 1,923억원에서 2023년 6조 6,638억원으로 2.09배 증가

〈표 II -4〉 소득공제 대상 청약저축 총규모 현황: 상세

(단위: 개, 억원)

구분	청약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외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	잔고좌수 (연말)	잔고금액 (연말)	납입액	잔고좌수 (연말)	잔고금액 (연말)	납입액	잔고좌수 (연말)	잔고금액 (연말)
2013년	6,236	988,057	57,670	-	-	-	141,000	13,474,794	275,714
2014년	5,266	847,574	53,747	-	-	-	157,187	15,081,366	360,699
2015년	4,419	732,425	49,950	-	-	-	214,116	17,671,922	480,977
2016년	3,622	649,416	47,122	-	-	-	187,064	19,357,382	551,630
2017년	3,176	585,699	44,871	-	-	-	180,094	20,952,439	607,661
2018년	2,862	526,727	42,288	644	115,060	2,955	167,202	22,464,528	637,247
2019년	2,475	481,437	40,330	2,489	258,188	7,871	157,110	23,498,728	674,647
2020년	2,712	437,657	38,594	3,884	397,479	13,776	205,105	25,162,796	781,498
2021년	2,472	406,850	37,812	5,271	513,922	20,626	223,641	26,258,569	904,251
2022년	1,931	381,102	36,742	5,584	571,441	26,708	175,624	25,809,636	892,008
2023년	1,647	356,580	35,514	5,258	610,390	31,923	142,701	25,002,669	885,530
2024년	1,588	328,529	33,283	11,622	1,298,617	66,638	134,941	23,873,525	874,963

주: 1. 소득공제 대상인 '청약저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기준

2. 청년우대형 상품은 2018. 7. 31. 출시, 청년주택드림 상품은 기존 청년우대형을 대체하여 2024. 2. 21. 출시

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수급 현황

-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을 살펴보면 2013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0년대 초반 감소세로 전환하였으며,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음
- 2013년 공제인원은 약 30만명에서 2022년 약 99만명까지 증가하였으나, 이듬해 약 98만명으로 소폭 감소함
 - 2013년 공제금액은 1,079억원에서 2021년 4,240억원까지 증가하다 다음 해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3년 3,846억원을 기록함
 - 2013년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약 36만원에서 2016년 약 48만원까지 증가하다 2023년 약 39만원으로 감소함

〈표 II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연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단위: 명, 억원, 원, %)

구분	공제인원 (A)	전년 대비 ²⁾ (%)	공제금액 (B) ¹⁾	전년 대비 ²⁾ (%)	1인당 소득 공제 금액	
					(B/A)	전년 대비 ²⁾ (%)
2013년	302,490	-	1,079	-	356,849	-
2014년	362,488	20%	1,320	22%	364,103	2%
2015년	440,871	22%	2,090	58%	473,999	30%
2016년	488,300	11%	2,321	11%	475,234	0%
2017년	550,119	13%	2,512	8%	456,703	-4%
2018년	595,611	8%	2,636	5%	442,498	-3%
2019년	690,048	16%	2,949	12%	427,354	-3%
2020년	837,011	21%	3,693	25%	441,180	3%
2021년	954,251	14%	4,240	15%	444,285	1%
2022년	991,357	4%	4,131	-3%	416,731	-6%
2023년	978,471	-1%	3,846	-7%	393,102	-6%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전년 대비(%)는 [(당해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의 비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경감세액은 2013~2021년 동안 전반적으로 증가하다 2022년부터 감소세로 전환하였고, 1인당 경감세액은 2013년 이후 최근까지 유사한 수준
 - 2013~2021년 경감세액은 2018년을 제외하고 증가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다시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3년 372억원을 기록함
 - 1인당 경감세액은 2013년 38,938원에서 2015년 55,480원까지 증가한 이후, 감소와 증가를 반복하다 2023년 37,997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함

<표 II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연도별 경감세액

(단위: 명, 억원, %, 원)

구분	공제인원 (A)	전년 대비 (%)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B)	전년 대비 (%)	(B/A)	전년 대비 (%)
2013년	302,490	-	118	-	38,938	-
2014년	362,488	20%	156	33%	43,077	11%
2015년	440,871	22%	245	57%	55,480	29%
2016년	488,300	11%	270	10%	55,315	0%
2017년	550,119	13%	293	8%	53,218	-4%
2018년	595,611	8%	270	-8%	45,387	-15%
2019년	690,048	16%	301	11%	43,674	-4%
2020년	837,011	21%	373	24%	44,508	2%
2021년	954,251	14%	431	16%	45,195	2%
2022년	991,357	4%	422	-2%	42,570	-6%
2023년	978,471	-1%	372	-12%	37,997	-11%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3. 전년 대비: [(당해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의 비율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수혜자 특성을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2013~2023년 수혜자의 평균연령은 34~35세로 수혜자 중 남성의 비율은 2023년 52%까지 하락함
 - 부양가족 및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2013년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부양가족 유무는 배우자공제나 부양가족 공제 중 하나라도 받은 경우로 자

- 녀유무는 직계비속공제 수급 여부나 자녀세액공제를 수급한 경우로 정의
- 부양가족이 있는 수혜자는 2013년 52%에서 2023년 26%로 감소, 부양자녀가 있는 수혜자는 2013년 28%에서 2023년 6%로 감소
 - 수혜자의 평균 총급여는 2013년 약 4,552만원에서 2017년 약 4,684만원까지 증가하다 다음 해에 약 4,152만원으로 하락하여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후, 2023년 약 4,292만원을 기록함
 - 2015년부터 적용된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요건의 유예기간이 2018년부터 종료되면서 수혜자의 평균 총급여액 감소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임
 - 유사하게 평균 과세표준은 2013년 약 1,881만원에서 2014년 약 2,512만원까지 증가한 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 2018년 약 2,098만원으로 하락하였으며, 2023년까지 해당 수준이 지속됨
 - 2013년 약 205만원인 평균 산출세액은 2014년 약 297만원까지 증가하다 이후 감소하는 추세를 보여 2023년 약 209만원을 기록함
 - 평균 소득세결정세액은 2013년 약 167만원에서 2014년 약 183만원까지 증가한 후 감소세로 전환하여 2023년 약 103만원으로 최저치를 기록함

<표 II -7>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혜자 특성

(단위: 세, %, 원)

구분	평균 연령	성별 (남성비율)	부양가족 유무	부양자녀 유무	평균 총급여	평균 과세표준	평균 산출세액	평균 소득세결정세액
2013년	34	72%	52%	28%	45,516,777	18,814,937	2,053,015	1,669,118
2014년	34	71%	52%	33%	46,769,220	25,120,198	2,971,984	1,831,041
2015년	35	69%	49%	30%	46,778,087	25,132,591	2,941,692	1,798,534
2016년	35	67%	47%	28%	46,779,505	25,096,477	2,921,089	1,780,713
2017년	35	65%	44%	26%	46,844,379	25,179,728	2,934,122	1,792,319
2018년	34	61%	37%	20%	41,524,015	20,983,006	2,152,219	1,081,656
2019년	34	59%	34%	10%	41,621,522	21,016,929	2,147,832	1,099,978
2020년	34	57%	31%	9%	41,352,282	20,055,568	2,023,279	1,038,165
2021년	34	55%	30%	9%	41,445,141	20,575,319	2,093,010	1,078,947
2022년	34	54%	27%	8%	42,280,861	20,860,954	2,130,966	1,084,614
2023년	35	52%	26%	6%	42,915,696	21,607,051	2,088,532	1,028,358

주: 1. 부양가족 유무는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며, 자녀 유무는 직계비속공제 등을 받은 경우로 정의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2013~2023년 부양자녀 유무에 따른 공제금액, 공제인원 비중, 공제금액 비중, 1인당 소득공제금액 비중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크게 나타남

○ 2023년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공제금액은 3,609억원, 공제인원 비중은 93.5%, 공제금액 비중은 93.8%, 1인당 소득공제금액 비중은 100.3%로 나타남

- 공제인원 비중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3년 71.6%에서 2014년 67.4%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다음 해부터 증가세로 전환하여 2023년 93.5%를 기록함
- 공제금액 비중도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2013년 72.0%에서 2014년 67.5%까지 감소하다 이후 꾸준한 증가세를 보여 2023년 93.8%를 차지함
- 1인당 소득공제금액 비중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전체 1인당 소득공제금액 수준을 상회하지만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하회함

<표 II -8> 부양자녀 유무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부양자녀 유무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공제인원 비중	공제금액 비중	1인당 소득공제 금액 비중
2013	있음	85,993	303	351,988	28.4%	28.0%	98.6%
	없음	216,497	777	358,780	71.6%	72.0%	100.5%
2014	있음	117,992	429	363,596	32.6%	32.5%	99.9%
	없음	244,496	891	364,347	67.4%	67.5%	100.1%
2015	있음	133,841	608	454,447	30.4%	29.1%	95.9%
	없음	307,030	1,481	482,523	69.6%	70.9%	101.8%
2016	있음	138,424	623	450,030	28.3%	26.8%	94.7%
	없음	349,876	1,698	485,205	71.7%	73.2%	102.1%
2017	있음	143,714	622	432,683	26.1%	24.8%	94.7%
	없음	406,405	1,891	465,196	73.9%	75.2%	101.9%
2018	있음	118,246	514	434,355	19.9%	19.5%	98.2%
	없음	477,365	2,122	444,516	80.1%	80.5%	100.5%
2019	있음	70,694	299	423,092	10.2%	10.1%	99.0%
	없음	619,354	2,650	427,840	89.8%	89.9%	100.1%
2020	있음	76,248	336	440,952	9.1%	9.1%	99.9%
	없음	760,763	3,357	441,203	90.9%	90.9%	100.0%
2021	있음	82,657	364	439,942	8.7%	8.6%	99.0%
	없음	871,594	3,876	444,696	91.3%	91.4%	100.1%

<표 II -8>의 계속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부양자녀 유무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공제인원 비중	공제금액 비중	1인당 소득공제 금액 비중
2022	있음	78,059	311	398,040	7.9%	7.5%	95.5%
	없음	913,298	3,821	418,329	92.1%	92.5%	100.4%
2023	있음	63,543	237	373,371	6.5%	6.2%	95.0%
	없음	914,928	3,609	394,473	93.5%	93.8%	100.3%

-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3. 비중은 각 연도 전체 인원 및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4. 부양가족 유무는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며, 자녀 유무는 직계비속공제 등을 받은 경우로 정의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2013~2023년 부양자녀 유무에 따른 경감세액 및 경감세액 비중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보다 없는 경우 크며 1인당 경감세액은 2021년을 기점으로 다르게 나타남
 -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 경감세액은 38,021원 수준이며, 경감세액 비중은 93.6%, 1인당 경감세액의 비중은 100.1%로 나타남
 -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따른 경감세액 비중은 2013~2017년 3:7 수준에서 2018~2019년 2:8, 2020~2023년 1:9 수준까지 변화함
 - 1인당 경감세액은 2013~2021년 동안에는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2022~2023년은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가 큼
 - 2013~2023년 1인당 경감세액 추이를 살펴보면,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2015년(57,716원)에,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2016년(53,906원)에 최고점을 기록하였고, 해당 연도 이후에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2023년 1인당 경감세액은 각각 37,430원, 38,021원임

<표 II -9> 부양자녀 유무별 경감세액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부양자녀 유무	공제인원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 비중	1인당 경감세액 비중
2013	있음	85,993	35	40,626	28.4%	29.7%	104.3%
	없음	216,497	83	38,195	71.6%	70.2%	98.1%
2014	있음	117,992	55	46,584	32.6%	35.2%	108.1%
	없음	244,496	100	40,864	67.4%	64.0%	94.9%
2015	있음	133,841	77	57,716	30.4%	31.6%	104.0%
	없음	307,030	165	53,729	69.6%	67.4%	96.8%
2016	있음	138,424	79	56,978	28.3%	29.2%	103.0%
	없음	349,876	189	53,906	71.7%	69.8%	97.5%
2017	있음	143,714	79	55,156	26.1%	27.1%	103.6%
	없음	406,405	211	51,838	73.9%	72.0%	97.4%
2018	있음	118,246	55	46,183	19.9%	20.2%	101.8%
	없음	477,365	215	45,111	80.1%	79.7%	99.4%
2019	있음	70,694	32	45,054	10.2%	10.6%	103.2%
	없음	619,354	269	43,484	89.8%	89.4%	99.6%
2020	있음	76,248	35	46,514	9.1%	9.5%	104.5%
	없음	760,763	337	44,274	90.9%	90.4%	99.5%
2021	있음	82,657	39	46,602	8.7%	8.9%	103.1%
	없음	871,594	393	45,034	91.3%	91.0%	99.6%
2022	있음	78,059	33	42,225	7.9%	7.8%	99.2%
	없음	913,298	389	42,574	92.1%	92.1%	100.0%
2023	있음	63,543	24	37,430	6.5%	6.4%	98.5%
	없음	914,928	348	38,021	93.5%	93.6%	100.1%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3. 비중은 각 연도 전체 인원 및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4. 부양가족 유무는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며, 자녀 유무는 직계비속공제 등을 받은 경우로 경우로 정의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대체로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에 높았으나 2014년을 기점으로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의 비중이 변화가 나타남

○ 2023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의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394,789원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392,520원)보다 다소 높음

- 반면 2015년, 2016년, 2017년에는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가 더 높음

-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의 비중은 2014년까지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가 높았으나 2015년부터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 더 높음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공제인원 비중은 2013년 52.1%이나 2015년에 49.3%로 감소한 이후 2023년 25.7%까지 감소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공제금액 비중은 2013년 52.4%이나 2015년에 48.7%로 감소한 이후 2023년 25.8%로 하락함

〈표 II -10〉 부양가족 유무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부양자녀 유무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공제인원 비중	공제금액 비중	1인당 소득 공제금액 비중
2013	있음	157,677	565	358,454	52.1%	52.4%	100.4%
	없음	144,813	514	355,101	47.9%	47.6%	99.5%
2014	있음	187,517	690	367,821	51.7%	52.3%	101.0%
	없음	174,971	630	360,117	48.3%	47.7%	98.9%
2015	있음	217,369	1,017	467,887	49.3%	48.7%	98.7%
	없음	223,502	1,073	479,944	50.7%	51.3%	101.3%
2016	있음	229,150	1,073	468,154	46.9%	46.2%	98.5%
	없음	259,150	1,248	481,493	53.1%	53.8%	101.3%
2017	있음	244,606	1,107	452,708	44.5%	44.1%	99.1%
	없음	305,513	1,405	459,901	55.5%	55.9%	100.7%
2018	있음	218,538	992	454,034	36.7%	37.6%	102.6%
	없음	377,073	1,643	435,813	63.3%	62.4%	98.5%
2019	있음	234,579	1,025	437,158	34.0%	34.8%	102.3%
	없음	455,469	1,923	422,304	66.0%	65.2%	98.8%
2020	있음	262,800	1,194	454,528	31.4%	32.3%	103.0%
	없음	574,211	2,498	435,072	68.6%	67.7%	98.6%
2021	있음	282,432	1,276	451,917	29.6%	30.1%	101.7%
	없음	671,819	2,963	441,076	70.4%	69.9%	99.3%
2022	있음	272,525	1,137	417,237	27.5%	27.5%	100.1%
	없음	718,832	2,994	416,540	72.5%	72.5%	100.0%
2023	있음	251,009	991	394,789	25.7%	25.8%	100.4%
	없음	727,462	2,855	392,520	74.3%	74.2%	99.9%

-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3. 비중은 각 연도 전체 인원 및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4. 부양가족 유무는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며, 자녀 유무는 직계비속공제 등을 받은 경우로 경우로 정의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1인당 경감세액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더 높았으나 2015년을 기점으로 경감세액 및 경감세액 비중에 변화가 나타남
- 2023년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1인당 경감세액은 39,246원으로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37,533원)보다 크게 나타남
 - 경감세액 및 경감세액 비중은 2015년까지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가 높았으나 2016년부터는 부양자녀가 없는 경우에 더 높음
 -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경감세액과 비중은 2013년 65억원, 55.3%수준이나 2016년에는 133억원, 49.2% 수준
 - 부양가족이 없는 경우 경감세액과 비중은 2013년 52억원, 44.2%에서 2016년 134억원 49.8% 수준

<표 II -11> 부양가족 유무별 경감세액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부양가족 유무	공제인원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 비중	1인당 경감세액 비중
2013	있음	157,677	65	41,330	52.1%	55.3%	106.1%
	없음	144,813	52	35,947	47.9%	44.2%	92.3%
2014	있음	187,517	87	46,172	51.7%	55.4%	107.2%
	없음	174,971	68	38,961	48.3%	43.7%	90.4%
2015	있음	217,369	126	58,112	49.3%	51.6%	104.7%
	없음	223,502	116	51,791	50.7%	47.3%	93.3%
2016	있음	229,150	133	58,006	46.9%	49.2%	104.9%
	없음	259,150	134	51,858	53.1%	49.8%	93.8%
2017	있음	244,606	138	56,324	44.5%	47.1%	105.8%
	없음	305,513	152	49,801	55.5%	52.0%	93.6%
2018	있음	218,538	105	47,896	36.7%	38.7%	105.5%
	없음	377,073	165	43,847	63.3%	61.2%	96.6%
2019	있음	234,579	108	46,000	34.0%	35.8%	105.3%
	없음	455,469	193	42,406	66.0%	64.1%	97.1%
2020	있음	262,800	125	47,381	31.4%	33.4%	106.5%
	없음	574,211	248	43,118	68.6%	66.5%	96.9%
2021	있음	282,432	134	47,435	29.6%	31.1%	105.0%
	없음	671,819	297	44,182	70.4%	68.8%	97.8%
2022	있음	272,525	120	43,872	27.5%	28.3%	103.1%
	없음	718,832	302	42,020	72.5%	71.6%	98.7%

<표 II -11>의 계속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부양가족 유무	공제인원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 비중	1인당 경감세액 비중
2023	있음	251,009	99	39,246	25.7%	26.5%	103.3%
	없음	727,462	273	37,533	74.3%	73.4%	98.8%

-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 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3. 비중은 각 연도 전체 인원 및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4. 부양가족 유무는 인적공제 중 배우자공제 또는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경우로 정의하며, 자녀 유무는 직계비속공제 등을 받은 경우로 경우로 정의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을 총급여구간별로 살펴보면, 2013~2023년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인원과 공제금액이 1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으며,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전체 1인당 소득공제금액 수준을 상회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혜요건 중 총급여요건이 7,000만원 이하로 개정되기 전 (2013~2017년)에는 1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에 전체 공제인원의 약 90%가 분포되어 있으며, 2018년 이후에는 전체 공제인원의 99% 이상이 동일 구간에 분포함
 - 공제금액 비중 역시 1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2013~2017년은 90% 내외 수준, 2018년 이후에는 99% 이상을 차지함
 -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1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전체 1인당 소득공제금액과의 차이가 가장 크고, 총급여구간이 높아질수록 1인당 소득공제금액도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표 II -12> 총급여구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총급여구간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공제인원 비중	공제금액 비중	1인당 소득공제금 액 비중
2013	1천만원 이하	193	0.33	168,861	0.06%	0.03%	47.32%
	4천만원 이하	138,964	464.35	334,151	45.94%	43.02%	93.64%
	7천만원 이하	132,419	492.23	371,721	43.78%	45.60%	104.17%
	1억원 이하	24,631	97.02	393,899	8.14%	8.99%	110.38%
	3억원 이하	6,228	25.26	405,530	2.06%	2.34%	113.64%
	5억원 이하	42	0.19	457,143	0.01%	0.02%	128.11%
	10억원 이하	11	0.05	443,636	0.00%	0.00%	124.32%
	10억원 초과	2	0.01	480,000	0.00%	0.00%	134.51%
2014	1천만원 이하	1,091	2.68	245,965	0.30%	0.20%	67.55%
	4천만원 이하	153,444	519.03	338,251	42.33%	39.33%	92.90%
	7천만원 이하	166,858	631.64	378,547	46.03%	47.86%	103.97%
	1억원 이하	32,774	131.87	402,358	9.04%	9.99%	110.51%
	3억원 이하	8,228	34.20	415,640	2.27%	2.59%	114.15%
	5억원 이하	63	0.28	440,771	0.02%	0.02%	121.06%
	10억원 이하	19	0.09	454,105	0.01%	0.01%	124.72%
	10억원 초과	11	0.05	453,818	0.00%	0.00%	124.64%
2015	1천만원 이하	1,549	4.40	283,811	0.35%	0.21%	59.88%
	4천만원 이하	180,862	795.01	439,569	41.02%	38.04%	92.74%
	7천만원 이하	212,522	1,101.28	518,194	48.21%	52.70%	109.32%
	1억원 이하	36,950	151.12	408,990	8.38%	7.23%	86.28%
	3억원 이하	8,904	37.55	421,673	2.02%	1.80%	88.96%
	5억원 이하	64	0.28	440,959	0.01%	0.01%	93.03%
	10억원 이하	18	0.08	446,667	0.00%	0.00%	94.23%
	10억원 초과	2	0.01	480,000	0.00%	0.00%	101.27%
2016	1천만원 이하	1,492	4.17	279,311	0.31%	0.18%	58.77%
	4천만원 이하	197,346	857.80	434,669	40.41%	36.97%	91.46%
	7천만원 이하	241,395	1,263.50	523,417	49.44%	54.45%	110.14%
	1억원 이하	38,902	156.86	403,213	7.97%	6.76%	84.85%
	3억원 이하	9,062	37.78	416,952	1.86%	1.63%	87.74%
	5억원 이하	88	0.39	439,273	0.02%	0.02%	92.43%
	10억원 이하	15	0.07	433,867	0.00%	0.00%	91.30%

<표 II -12>의 계속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총급여구간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공제인원 비중	공제금액 비중	1인당 소득공제금액 비중
2017	1천만원 이하	1,734	4.29	247,634	0.32%	0.17%	54.22%
	4천만원 이하	221,417	910.55	411,239	40.25%	36.24%	90.05%
	7천만원 이하	275,444	1,392.88	505,684	50.07%	55.44%	110.73%
	1억원 이하	41,071	162.20	394,917	7.47%	6.46%	86.47%
	3억원 이하	10,344	42.04	406,416	1.88%	1.67%	88.99%
	5억원 이하	83	0.34	406,063	0.02%	0.01%	88.91%
	10억원 이하	19	0.08	437,554	0.00%	0.00%	95.81%
	10억원 초과	7	0.03	408,000	0.00%	0.00%	89.34%
2018	1천만원 이하	3,081	6.84	222,155	0.52%	0.26%	50.20%
	4천만원 이하	277,596	1,078.44	388,492	46.61%	40.92%	87.80%
	7천만원 이하	314,934	1,550.29	492,257	52.88%	58.82%	111.24%
2019	1천만원 이하	2,930	6.37	217,279	0.42%	0.22%	50.84%
	4천만원 이하	323,627	1,225.60	378,707	46.90%	41.56%	88.62%
	7천만원 이하	363,491	1,716.98	472,359	52.68%	58.22%	110.53%
2020	1천만원 이하	4,810	10.99	228,467	0.57%	0.30%	51.79%
	4천만원 이하	398,184	1,572.84	395,003	47.57%	42.59%	89.53%
	7천만원 이하	434,017	2,108.90	485,903	51.85%	57.11%	110.14%
2021	1천만원 이하	5,620	12.89	229,409	0.59%	0.30%	51.64%
	4천만원 이하	451,073	1,833.46	406,466	47.27%	43.25%	91.49%
	7천만원 이하	497,558	2,393.24	480,996	52.14%	56.45%	108.26%
2022	1천만원 이하	5,373	11.77	219,124	0.54%	0.28%	52.58%
	4천만원 이하	443,809	1,695.53	382,041	44.77%	41.04%	91.68%
	7천만원 이하	542,175	2,423.99	447,086	54.69%	58.67%	107.28%
2023	1천만원 이하	5,145	10.32	200,538	0.53%	0.27%	51.01%
	4천만원 이하	418,384	1,483.72	354,632	42.76%	38.57%	90.21%
	7천만원 이하	554,942	2,352.35	423,891	56.72%	61.16%	107.83%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비중은 각 연도 전체 인원 및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2013~2023년 총급여구간별로 경감세액을 살펴보면, 1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에 집중되어 있고, 1인당 경감세액은 총급여구간이 높을수록 전체 1인당 경감세액 수준을 상회하는 경향이 있음
- 경감세액 비중은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1억원 이하 순으로 큼
 - 1인당 경감세액의 경우, 2013~2014년에는 7천만원 초과 구간부터 2015~2023년에는 4천만원 초과 구간부터 전체 1인당 경감세액을 상회하여 2023년 4천만원 초과~7천만원 이하 구간의 1인당 경감세액은 44,821원임

<표 II -13> 총급여구간별 경감세액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총급여구간	공제인원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 비중	1인당 경감세액 비중
2013	1천만원 이하	193	0.02	10,129	0.06%	0.02%	26.01%
	4천만원 이하	138,964	32.20	23,168	45.94%	27.33%	59.50%
	7천만원 이하	132,419	50.62	38,225	43.78%	42.97%	98.17%
	1억원 이하	24,631	12.76	51,819	8.14%	10.84%	133.08%
	3억원 이하	6,228	4.63	74,357	2.06%	3.93%	190.96%
	5억원 이하	42	0.06	138,621	0.01%	0.05%	356.00%
	10억원 이하	11	0.02	148,919	0.00%	0.01%	382.45%
	10억원 초과	2	0.00	172,581	0.00%	0.00%	443.22%
2014	1천만원 이하	1,091	0.16	14,757	0.30%	0.10%	34.26%
	4천만원 이하	153,444	40.02	26,083	42.33%	25.63%	60.55%
	7천만원 이하	166,858	70.50	42,253	46.03%	45.15%	98.09%
	1억원 이하	32,774	18.69	57,035	9.04%	11.97%	132.40%
	3억원 이하	8,228	6.71	81,585	2.27%	4.30%	189.39%
	5억원 이하	63	0.09	141,606	0.02%	0.06%	328.73%
	10억원 이하	19	0.03	156,929	0.01%	0.02%	364.30%
	10억원 초과	11	0.02	166,823	0.00%	0.01%	387.26%
2015	1천만원 이하	1,549	0.26	17,029	0.35%	0.11%	30.69%
	4천만원 이하	180,862	61.38	33,936	41.02%	25.09%	61.17%
	7천만원 이하	212,522	123.51	58,115	48.21%	50.49%	104.75%
	1억원 이하	36,950	21.36	57,815	8.38%	8.73%	104.21%
	3억원 이하	8,904	7.37	82,747	2.02%	3.01%	149.15%
	5억원 이하	64	0.09	140,781	0.01%	0.04%	253.75%
	10억원 이하	18	0.03	154,922	0.00%	0.01%	279.24%
	10억원 초과	2	0.00	179,074	0.00%	0.00%	322.77%

<표 II -3>의 계속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총급여구간	공제인원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 비중	1인당 경감세액 비중
2016	1천만원 이하	1,492	0.25	16,758	0.31%	0.09%	30.30%
	4천만원 이하	197,346	66.58	33,738	40.41%	24.65%	60.99%
	7천만원 이하	241,395	141.66	58,684	49.44%	52.45%	106.09%
	1억원 이하	38,902	22.14	56,921	7.97%	8.20%	102.90%
	3억원 이하	9,062	7.46	82,350	1.86%	2.76%	148.88%
	5억원 이하	88	0.12	140,581	0.02%	0.05%	254.15%
	10억원 이하	15	0.02	151,839	0.00%	0.01%	274.50%
2017	1천만원 이하	1,734	0.26	14,858	0.32%	0.09%	27.92%
	4천만원 이하	221,417	70.90	32,020	40.25%	24.22%	60.17%
	7천만원 이하	275,444	156.43	56,790	50.07%	53.43%	106.71%
	1억원 이하	41,071	22.98	55,953	7.47%	7.85%	105.14%
	3억원 이하	10,344	8.33	80,507	1.88%	2.84%	151.28%
	5억원 이하	83	0.11	130,804	0.02%	0.04%	245.79%
	10억원 이하	19	0.03	151,844	0.00%	0.01%	285.32%
10억원 초과	7	0.01	152,420	0.00%	0.00%	275.55%	
2018	1천만원 이하	3,081	0.41	13,329	0.52%	0.15%	29.37%
	4천만원 이하	277,596	83.19	29,970	46.61%	30.78%	66.03%
	7천만원 이하	314,934	174.19	55,311	52.88%	64.44%	121.87%
2019	1천만원 이하	2,930	0.38	13,036	0.42%	0.13%	29.85%
	4천만원 이하	323,627	94.78	29,286	46.90%	31.45%	67.06%
	7천만원 이하	363,491	192.55	52,973	52.68%	63.89%	121.29%
2020	1천만원 이하	4,810	0.66	13,707	0.57%	0.18%	30.80%
	4천만원 이하	398,184	117.64	29,544	47.57%	31.58%	66.38%
	7천만원 이하	434,017	234.39	54,004	51.85%	62.92%	121.34%
2021	1천만원 이하	5,620	0.77	13,764	0.59%	0.18%	30.46%
	4천만원 이하	451,073	140.09	31,057	47.27%	32.48%	68.72%
	7천만원 이하	497,558	267.55	53,773	52.14%	62.04%	118.98%
2022	1천만원 이하	5,373	0.71	13,147	0.54%	0.17%	30.88%
	4천만원 이하	443,809	129.05	29,078	44.77%	30.58%	68.31%
	7천만원 이하	542,175	270.35	49,864	54.69%	64.06%	117.13%
2023	1천만원 이하	5,145	0.62	12,032	0.53%	0.17%	31.67%
	4천만원 이하	418,384	103.80	24,809	42.76%	27.92%	65.29%
	7천만원 이하	554,942	248.73	44,821	56.72%	66.90%	117.96%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3. 비중은 각 연도 전체 인원 및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2019~2023년 연령구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을 살펴보면,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은 30~40세 미만, 20~30세 미만, 40~50세 미만 순으로 분포
 -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비중의 경우, 30~40세 미만이 45% 내외, 20~30세 미만이 30%대, 40~50세 미만이 약 15%를 차지함

- 반면, 1인당 소득공제금액의 비중은 20~30세 미만이 가장 낮고 40세 이상 구간에서 가장 높음
 - 2019~2023년 20~30세 미만의 1인당 소득공제는 전체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소폭 증가하여 2023년 97.23% 수준
 - 2019~2023년 40세 이상의 모든 연령구간에서 1인당 소득공제금액은 전체 1인당 소득공제금액 이상이며, 80세 이상의 1인당 소득공제금액 비중이 비교적 큼

〈표 II -14〉 연령구간별 공제인원 및 공제금액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연령구간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공제인원 비중	공제금액 비중	1인당 소득공제 금액 비중
2013	20~30세 미만	79,764	276	345,895	26.37%	25.56%	96.93%
	30~40세 미만	150,712	539	357,537	49.82%	49.92%	100.19%
	40~50세 미만	51,877	190	365,479	17.15%	17.56%	102.42%
	50~60세 미만	17,813	66	371,946	5.89%	6.14%	104.23%
	60~70세 미만	1,993	8	383,402	0.66%	0.71%	107.44%
	70~80세 미만	133	1	395,332	0.04%	0.05%	110.78%
	80세 이상	3	0	220,000	0.00%	0.00%	61.65%
2014	20~30세 미만	90,250	315	348,767	24.90%	23.85%	95.79%
	30~40세 미만	180,136	658	365,131	49.69%	49.83%	100.28%
	40~50세 미만	65,814	247	375,838	18.16%	18.74%	103.22%
	50~60세 미만	23,104	88	379,524	6.37%	6.64%	104.24%
	60~70세 미만	2,777	11	390,724	0.77%	0.82%	107.31%
	70~80세 미만	152	1	381,467	0.04%	0.04%	104.77%
	80세 이상	6	0	480,000	0.00%	0.00%	131.83%
2015	20~30세 미만	113,585	532	468,310	25.76%	25.45%	98.80%
	30~40세 미만	215,432	1,011	469,485	48.87%	48.40%	99.05%
	40~50세 미만	79,398	387	488,037	18.01%	18.54%	102.96%
	50~60세 미만	28,087	136	484,951	6.37%	6.52%	102.31%
	60~70세 미만	3,875	20	519,382	0.88%	0.96%	109.57%
	70~80세 미만	233	1	540,162	0.05%	0.06%	113.96%
	80세 이상	4	0	600,000	0.00%	0.00%	126.58%

<표 II -14>의 계속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연령구간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공제인원 비중	공제금액 비중	1인당 소득공제 금액 비중
2016	20~30세 미만	129,160	608	470,875	26.45%	26.21%	99.08%
	30~40세 미만	236,317	1,110	469,665	48.40%	47.83%	98.83%
	40~50세 미만	86,480	423	489,608	17.71%	18.25%	103.02%
	50~60세 미만	31,184	152	487,667	6.39%	6.55%	102.62%
	60~70세 미만	4,629	24	525,654	0.95%	1.05%	110.61%
	70~80세 미만	275	1	518,873	0.06%	0.06%	109.18%
	80세 이상	5	0	517,600	0.00%	0.00%	108.91%
2017	20~30세 미만	148,245	657	443,434	26.95%	26.16%	97.09%
	30~40세 미만	263,066	1,191	452,640	47.82%	47.39%	99.11%
	40~50세 미만	96,539	459	475,962	17.55%	18.29%	104.22%
	50~60세 미만	35,525	170	479,114	6.46%	6.77%	104.91%
	60~70세 미만	6,020	31	517,061	1.09%	1.24%	113.22%
	70~80세 미만	416	2	543,934	0.08%	0.09%	119.10%
	80세 이상	3	0	346,667	0.00%	0.00%	75.91%
2018	20~30세 미만	196,451	800	407,026	32.98%	30.34%	91.98%
	30~40세 미만	268,876	1,199	446,005	45.14%	45.50%	100.79%
	40~50세 미만	88,139	426	483,246	14.80%	16.16%	109.21%
	50~60세 미만	33,270	165	496,990	5.59%	6.27%	112.31%
	60~70세 미만	7,712	40	521,211	1.29%	1.53%	117.79%
	70~80세 미만	576	3	541,912	0.10%	0.12%	122.47%
	80세 이상	3	0	780,000	0.00%	0.00%	176.27%
2019	20~30세 미만	233,651	931	398,472	33.86%	31.57%	93.24%
	30~40세 미만	306,704	1,308	426,544	44.45%	44.36%	99.81%
	40~50세 미만	99,377	463	465,464	14.40%	15.69%	108.92%
	50~60세 미만	39,239	191	488,025	5.69%	6.49%	114.20%
	60~70세 미만	9,826	50	512,219	1.42%	1.71%	119.86%
	70~80세 미만	729	4	499,089	0.11%	0.12%	116.79%
	80세 이상	12	0	632,333	0.00%	0.00%	147.96%
2020	20~30세 미만	286,503	1,181	412,304	34.23%	31.99%	93.45%
	30~40세 미만	368,952	1,639	444,160	44.08%	44.38%	100.68%
	40~50세 미만	119,570	563	471,271	14.29%	15.26%	106.82%
	50~60세 미만	47,670	236	496,001	5.70%	6.40%	112.43%
	60~70세 미만	12,743	66	514,361	1.52%	1.77%	116.59%
	70~80세 미만	900	5	533,065	0.11%	0.13%	120.83%
	80세 이상	17	0	622,118	0.00%	0.00%	141.01%

<표 II -14>의 계속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연령구간	공제인원	공제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공제인원 비중	공제금액 비중	1인당 소득공제 금액 비중
2021	20~30세 미만	309,857	1,312	423,480	32.47%	30.95%	95.32%
	30~40세 미만	424,809	1,877	441,755	44.52%	44.26%	99.43%
	40~50세 미만	142,675	663	464,873	14.95%	15.64%	104.63%
	50~60세 미만	58,707	293	498,981	6.15%	6.91%	112.31%
	60~70세 미만	16,517	87	524,432	1.73%	2.04%	118.04%
	70~80세 미만	1,039	5	519,756	0.11%	0.13%	116.99%
	80세 이상	23	0	523,652	0.00%	0.00%	117.86%
2022	20~30세 미만	307,537	1,246	405,277	31.02%	30.17%	97.25%
	30~40세 미만	447,527	1,826	408,069	45.14%	44.20%	97.92%
	40~50세 미만	149,886	646	430,956	15.12%	15.64%	103.41%
	50~60세 미만	64,657	305	471,211	6.52%	7.37%	113.07%
	60~70세 미만	19,688	98	500,192	1.99%	2.38%	120.03%
	70~80세 미만	1,408	7	491,945	0.14%	0.17%	118.05%
	80세 이상	22	0	566,727	0.00%	0.00%	135.99%
2023	20~30세 미만	292,740	1,119	382,209	29.92%	29.09%	97.23%
	30~40세 미만	448,367	1,726	384,841	45.82%	44.86%	97.90%
	40~50세 미만	147,057	595	404,925	15.03%	15.48%	103.01%
	50~60세 미만	66,758	296	443,605	6.82%	7.70%	112.85%
	60~70세 미만	21,363	101	471,358	2.18%	2.62%	119.91%
	70~80세 미만	1,716	8	475,432	0.18%	0.21%	120.94%
	80세 이상	28	0	425,357	0.00%	0.00%	108.21%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
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비중은 각 연도 전체 인원 및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2013~2023년 연령구간별 경감세액을 살펴보면, <표 II-14>의 공제금액과 마찬가지로 30~40세 미만, 20~30세 미만, 40~50세 미만 순으로 전체 경감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나타남
 - 경감세액 비중이 가장 큰 30~40세 미만의 경우, 2013년 48.4%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하락하여 2023년 45.6%를 기록함

- 반면 2019~2023년 1인당 경감세액은 30세 미만 구간에서는 전체 1인당 경감세액 수준을 하회하며 40~70세 미만 구간에서 1인당 경감세액이 전체 1인당 경감세액 수준을 상회함
 - 2019~2023년 20~30세 미만의 1인당 경감세액은 전체 평균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으나 소폭 증가하여 2023년에는 93.6% 수준
 - 2019~2023년 40~70세 미만의 모든 연령구간에서 1인당 경감세액은 전체 1인당 경감세액을 상회하며, 60~70세 미만 구간의 1인당 경감세액이 113.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 -15> 연령구간별 경감세액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연령구간	공제인원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 비중	1인당 경감세액 비중
2013	20~30세 미만	79,764	27.13	34,008	26.37%	23.03%	87.34%
	30~40세 미만	150,712	57.03	37,841	49.82%	48.42%	97.18%
	40~50세 미만	51,877	23.05	44,432	17.15%	19.57%	114.11%
	50~60세 미만	17,813	8.48	47,604	5.89%	7.20%	122.25%
	60~70세 미만	1,993	0.86	42,947	0.66%	0.73%	110.29%
	70~80세 미만	133	0.07	55,762	0.04%	0.06%	143.21%
	80세 이상	3	0.00	13,200	0.00%	0.00%	33.90%
2014	20~30세 미만	90,250	33.08	36,658	24.90%	21.19%	85.10%
	30~40세 미만	180,136	75.88	42,122	49.69%	48.59%	97.78%
	40~50세 미만	65,814	32.26	49,013	18.16%	20.66%	113.78%
	50~60세 미만	23,104	12.02	52,023	6.37%	7.70%	120.77%
	60~70세 미만	2,777	1.25	44,835	0.77%	0.80%	104.08%
	70~80세 미만	152	0.07	47,590	0.04%	0.05%	110.48%
	80세 이상	6	0.00	54,378	0.00%	0.00%	126.23%
2015	20~30세 미만	113,585	55.76	49,090	25.76%	22.80%	88.48%
	30~40세 미만	215,432	115.53	53,625	48.87%	47.23%	96.66%
	40~50세 미만	79,398	49.98	62,944	18.01%	20.43%	113.45%
	50~60세 미만	28,087	18.47	65,772	6.37%	7.55%	118.55%
	60~70세 미만	3,875	2.23	57,458	0.88%	0.91%	103.57%
	70~80세 미만	233	0.14	59,109	0.05%	0.06%	106.54%
	80세 이상	4	0.00	78,560	0.00%	0.00%	141.60%

<표 II -15>의 계속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연령구간	공제인원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 비중	1인당 경감세액 비중
2016	20~30세 미만	129,160	63.37	49,062	26.45%	23.46%	88.70%
	30~40세 미만	236,317	126.81	53,661	48.40%	46.95%	97.01%
	40~50세 미만	86,480	54.09	62,546	17.71%	20.03%	113.07%
	50~60세 미만	31,184	20.45	65,581	6.39%	7.57%	118.56%
	60~70세 미만	4,629	2.63	56,898	0.95%	0.98%	102.86%
	70~80세 미만	275	0.16	58,426	0.06%	0.06%	105.62%
	80세 이상	5	0.00	67,726	0.00%	0.00%	122.44%
2017	20~30세 미만	148,245	68.32	46,086	26.95%	23.34%	86.60%
	30~40세 미만	263,066	137.42	52,238	47.82%	46.94%	98.16%
	40~50세 미만	96,539	58.44	60,539	17.55%	19.96%	113.76%
	50~60세 미만	35,525	22.58	63,557	6.46%	7.71%	119.43%
	60~70세 미만	6,020	3.41	56,569	1.09%	1.16%	106.30%
	70~80세 미만	416	0.19	44,698	0.08%	0.06%	83.99%
	80세 이상	3	0.00	55,736	0.00%	0.00%	104.73%
2018	20~30세 미만	196,451	78.40	39,907	32.98%	29.00%	87.93%
	30~40세 미만	268,876	125.37	46,628	45.14%	46.38%	102.73%
	40~50세 미만	88,139	45.15	51,227	14.80%	16.70%	112.87%
	50~60세 미만	33,270	16.75	50,350	5.59%	6.20%	110.94%
	60~70세 미만	7,712	3.68	47,688	1.29%	1.36%	105.07%
	70~80세 미만	576	0.26	44,338	0.10%	0.09%	97.69%
	80세 이상	3	0.00	76,974	0.00%	0.00%	169.60%
2019	20~30세 미만	233,651	91.24	39,051	33.86%	30.28%	89.42%
	30~40세 미만	306,704	136.29	44,437	44.45%	45.22%	101.75%
	40~50세 미만	99,377	48.88	49,187	14.40%	16.22%	112.62%
	50~60세 미만	39,239	19.31	49,217	5.69%	6.41%	112.69%
	60~70세 미만	9,826	4.68	47,615	1.42%	1.55%	109.02%
	70~80세 미만	729	0.29	39,610	0.11%	0.10%	90.70%
	80세 이상	12	0.01	57,315	0.00%	0.00%	131.24%
2020	20~30세 미만	286,503	114.16	39,846	34.23%	30.64%	89.53%
	30~40세 미만	368,952	168.59	45,695	44.08%	45.26%	102.67%
	40~50세 미만	119,570	58.92	49,278	14.29%	15.82%	110.72%
	50~60세 미만	47,670	23.48	49,257	5.70%	6.30%	110.67%
	60~70세 미만	12,743	6.05	47,451	1.52%	1.62%	106.61%
	70~80세 미만	900	0.39	43,415	0.11%	0.10%	97.54%
	80세 이상	17	0.01	61,055	0.00%	0.00%	137.18%

<표 II -15>의 계속

(단위: 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연령구간	공제인원	경감세액	1인당 경감세액	공제인원 비중	경감세액 비중	1인당 경감세액 비중
2021	20~30세 미만	309,857	127.75	41,230	32.47%	29.62%	91.23%
	30~40세 미만	424,809	194.61	45,810	44.52%	45.12%	101.36%
	40~50세 미만	142,675	69.70	48,853	14.95%	16.16%	108.09%
	50~60세 미만	58,707	29.38	50,043	6.15%	6.81%	110.73%
	60~70세 미만	16,517	8.18	49,512	1.73%	1.90%	109.55%
	70~80세 미만	1,039	0.45	43,167	0.11%	0.10%	95.51%
	80세 이상	23	0.01	49,209	0.00%	0.00%	108.88%
2022	20~30세 미만	307,537	122.08	39,698	31.02%	28.93%	93.25%
	30~40세 미만	447,527	189.89	42,431	45.14%	45.00%	99.68%
	40~50세 미만	149,886	67.97	45,350	15.12%	16.11%	106.53%
	50~60세 미만	64,657	30.76	47,577	6.52%	7.29%	111.76%
	60~70세 미만	19,688	9.47	48,124	1.99%	2.25%	113.05%
	70~80세 미만	1,408	0.59	42,012	0.14%	0.14%	98.69%
	80세 이상	22	0.01	50,034	0.00%	0.00%	117.54%
2023	20~30세 미만	292,740	104.12	35,567	29.92%	28.00%	93.60%
	30~40세 미만	448,367	169.55	37,815	45.82%	45.60%	99.52%
	40~50세 미만	147,057	59.23	40,276	15.03%	15.93%	106.00%
	50~60세 미만	66,758	28.20	42,249	6.82%	7.59%	111.19%
	60~70세 미만	21,363	9.20	43,082	2.18%	2.48%	113.38%
	70~80세 미만	1,716	0.66	38,378	0.18%	0.18%	101.00%
	80세 이상	28	0.01	40,703	0.00%	0.00%	107.12%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3. 비중은 각 연도 전체 인원 및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다. 해외 사례 조사

1) 미국

가) First-Time Homebuyer Savings Account(FHSA)

- 미국의 First-Time Homebuyer Savings Account(FHSA) 제도는 처음 주택을 구매하려는 자들을 위한 특별저축계좌 프로그램으로 주(州)별로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오리건주와 메릴랜드주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함
 - 현재까지 14개의 주⁶⁾에서 특별저축계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주된 혜택은 본 계좌에 납입한 금액과 이자 수익에 대해 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점임
 - 일반적으로 일정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납입금에 제한이 있음

- 오리건주에서는 2019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본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⁷⁾
 - (자격요건) 주택구매자는 구매 예정일 3년 전까지 주택을 소유하거나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함
 - (사용조건) 계좌 개설 후 10년 이내에 단독주택구매와 관련된 비용으로 사용해야 하며, 구매하는 주택은 반드시 오리건주 내에 있어야 함
 - 계약금, 권리 보험 및 기타 마감 비용,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가정 및 검사 수수료, 대출 개시 수수료 등을 위해 자금을 사용해야 함
 - (공제한도) 2025년 기준으로 개인의 경우 최대 \$6,125, 공동신고의 경우 최대 \$12,245까지 가능하며, 총 공제한도는 개인의 경우 최대 \$50,000, 공동신고의 경우 최대 \$100,000까지 누적공제가 가능함
 - 연 소득이 일정 금액(개인 \$104,000, 공동신고 \$149,000)을 초과하면 공제금액이 감액됨

6) Alabama, Colorado, Idaho, Iowa, Kansas, Maryland, Michigan, Minnesota, Mississippi, Missouri, Montana, Oklahoma, Oregon, and Virginia

7) State of Oregon, "First-time Home Buyer Savings Accounts", <https://www.oregon.gov/dor/programs/individuals/pages/first-time-home-buyer.aspx#>, 검색일자: 2025. 2. 24.

- (별금) 계좌개설 10년 이내에 주택구매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5% 별금이 부과됨
- 메릴랜드주에서도 FHSA 제도를 운영 중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음⁸⁾
 - (자격요건) 주택구매자는 구매 예정일 7년 전까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택을 소유하거나 구매한 적이 없어야 함
 - (사용조건) 계좌 개설 후 15년 이내에 메릴랜드주 내 주택구매 시 계약금 및 허용된 부대비용으로 자금을 사용해야 하며, 15년 이후 마지막 해의 12월 31일까지 사용되지 않은 공제대상 자금은 일반소득으로 과세됨
 - (공제한도) 계좌 소유자는 10년 이내 범위에서 연간 최대 \$5,000를 납입할 수 있고, 납입금과 이자수익에 대해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음
 - (별금) 주택구매 외의 목적으로 자금을 인출할 경우에는 10% 별금이 부과됨

나) First Home Purchase Withdrawal⁹⁾

- 미국의 개인 은퇴 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에서는 59.5세 이전에 자금을 인출하는 경우 10%의 패널티가 적용되나, 첫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축하는 경우에는 \$10,000 한도 내에서 예외적으로 패널티 없이 자금인출을 허용함
 - IRA는 은퇴 후의 재정적 안정을 위해 납입금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이 제공되는 저축계좌로 전통적 IRA와 Roth IRA가 대표적임
 - 2025년 기준으로 납입한도는 50세 미만인 경우에는 \$7,000,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8,000임

8) COMPTROLLER of MARYLAND, “Tax Credits, Deductions and Subtractions”, https://services.marylandcomptroller.gov/taxes/en/tax-credits-deductions-and-subtractions?sys_kb_id=733587b61b97d290168d6424604bcb8a&id=kb_article_view&sysparm_rank=1&sysparm_tsqueryId=92d7b7dc87dee650a1c8ca66cebb3572, 검색일자: 2025. 6. 19.

9) IRS, “Publication 590-A(2024),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 (IRAs),”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0a>, 검색일자: 2025. 2. 24.

2) 캐나다

가) First Home Savings Account(FHSA)¹⁰⁾

- 2023년에 도입된 캐나다의 First Home Savings Account는 첫 주택구매자를 위한 전용저축계좌로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와 TFSA(Tax-Free Savings Account)의 특징을 결합
 - 납입금은 소득세 공제 대상이며, 주택구매 목적으로 인출할 경우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이 제공됨

- (정책대상자) 18~71세 캐나다 거주자로 직전 4년 동안 본인 및 배우자(동거인) 모두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한도) 납입한도는 연간 최대 \$8,000이며, 최대 \$40,000까지 납입할 수 있음
 - 납입금은 소득세 공제 가능하나, RRSP(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에서 FHSA로의 이체는 공제되지 않음

- (유형) FHSA는 예금형, 신탁형, 보험형 세 가지 유형이 있으며, 자기주도형 FHSA를 설정하여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도 있음
 - 예금형 FHSA는 금융기관에서 현금, 정기예금, 원금보장형 투자증서(GIC) 등을 보유하는 계좌를 의미함
 - 신탁형 FHSA는 신탁회사가 수탁자 역할을 하는 신탁으로 현금, 정기예금, 원금보장형 투자 증서, 정부 및 기업 채권, 뮤추얼 펀드 등의 적격투자를 보유하고 있음
 - 보험형 FHSA는 허가된 연금 제공자와의 연금 계약을 의미함

- (종료) FHSA 개설 후 15년이 되는 해, 71세가 되는 해, 첫 적격 인출 후 다음 해에 FHSA가 종료됨
 - FHSA 잔액은 RRSP 또는 RRIF(Registered Retirement Income Funds)로 직접 이체하거나 과세 대상 소득으로 인출할 수 있음

10) Government of Canada, "First Home Savings Account (FHS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html>, 검색일자: 2025. 2. 25.

나) Home Buyers' Plan(HBP)¹¹⁾

- Home Buyers' Plan(HBP)은 기존 RRSP에서 세금 부담 없이 자금을 인출하여 본인 또는 특정 장애인을 위한 적격 주택을 구매하거나 건설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임
- (자격요건)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HBP 자격을 얻을 수 있음
 - 첫 주택구매자여야 함
 - 특정 장애인의 경우는 예외
 - 적격 주택구매 또는 건설에 대한 서면 계약이 있어야 함
 - RRSP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부터 주택구매 또는 건설이 완료될 때까지 캐나다 거주자여야 함
 - 주택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해당 주택을 주 거주지로 사용할 목적이 있어야 함
- (한도) 2024년 4월 16일부터 RRSP에서 최대 \$60,000까지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 시 세금이 원천징수되지 않음
 - 단 중복혜택을 방지하기 위해 FHSA에서 RRSP로 이체된 금액은 HBP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HBP에서 인출한 금액을 FHSA에 상환할 수도 없음
- (상환) RRSP에서 인출한 금액은 15년 이내에 상환해야 함
 - 2022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사이에 첫 인출을 한 경우, 15년 상환 기간이 인출 연도로부터 5년 후에 시작됨
 -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첫 인출을 한 경우, 상환 기간은 인출 연도로부터 2년 후에 시작됨

3) 프랑스

가) Plan Épargne Logement(PEL)¹²⁾

- 프랑스의 주택 저축 계획(Plan Épargne Logement, PEL)은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11) Government of Canada, "The Home Buyers' Pla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rsps-related-plans/what-home-buyers-plan.html>, 검색일자: 2025. 2. 25.

12) 프랑스 공공행정 포털 홈페이지, "Livrets, plans et comptes d'épargn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20376>, 검색일자: 2025. 3. 12. 참고하여 작성함.

- 목적으로 하는 저축 상품으로 최소 4년 동안 저축을 한 후, 그 저축액을 주거용 주택 자금으로 사용하는 경우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 최대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으며, 10년 이후에는 더 이상 납입이 불가능하지만 이자는 5년 동안 발생함
- (정책대상자) 프랑스에 거주하는 모든 개인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연령, 거주지, 국적 제한이 없음
- 단 1인당 1계좌만 허용함
- (한도) 계좌 개설 시에는 최소 225유로를 납입해야 하며, 최대 납입한도는 61,200유로임
- 계약에 따라 최소 540유로만큼 정기적인 입금이 필요함
 - 정기적 입금액의 경우 월별 계약은 45유로, 분기별 계약은 135유로, 반기별 계약은 270유로임
 - 납입조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계약이 해지됨
- (금리) 고정금리로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설한 계좌에 대해서는 1.75%의 금리를 적용함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개설: 2.25%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개설: 2%
 - 2016년 8월 1일~2022년 12월 31일 개설: 1%
- (대출) 주거용 부동산 구매, 건설, 확장, 수리, 개선 작업 등을 위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92,000유로까지 대출 가능함
- 가족 구성원의 PEL 대출 권리를 합산하여 더 큰 대출이 가능함
 - 75,000유로 이하 대출인 경우에는 소비자 신용으로, 75,000유로 초과 대출인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로 제공됨
 - 대출금리는 고정금리로 계좌 개설 시점에 따라 상이한데,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설한 경우에는 2.95% 대출금리를 적용함
 - 2024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개설: 3.45%

-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개설: 3.20%
- 2018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개설: 2.20%

(과세방식) 2018년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12.8%)와 사회보장분담금(17.2%)이 과세됨

나) Compte Épargne Logement(CEL)¹³⁾

프랑스의 주택저축계좌(Compte Épargne Logement, CEL)는 이상의 PEL과 마찬가지로 주거용 부동산 구매를 목적으로 하는 저축 상품으로, 최소 18개월 동안 저축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할 수 있음

(정책대상자)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인과 미성년자 모두 개설할 수 있음

- 단 1인당 1계좌만 허용하며, PEL과 동시에 보유하려면 동일한 은행에서 개설해야 함

(한도) 계좌 개설 시에는 최소 300유로를 납입해야 하며, 최대 납입한도는 15,300유로임

- 계좌 개설 이후에는 최소 75유로를 입금하면 됨

(인출) 계좌 잔액이 최소 300유로 이상 유지되는 한 자유롭게 출금할 수 있음

- 최소 잔액 요건을 만족하지 않을 시 계좌가 해지될 수 있음

(금리) 현재 CEL 금리는 2%

(대출) 주거용 부동산 구매, 건설, 확장, 수리, 개선 작업 등을 위해 대출을 활용할 수 있으며, 최대 23,000유로까지 대출 가능함

- PEL도 보유한 경우 PEL과 CEL 대출 합계액이 92,000유로를 초과하면 안 됨
- 가족 구성원의 PEL 대출 권리를 합산하여 더 큰 대출이 가능함

13) 프랑스 공공행정 포털 홈페이지, “Livrets, plans et comptes d'épargn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20376>, 2025.3.12. 참고하여 작성함.

- 2023년 1월 1일 이후 개설된 CEL의 경우 대출금리는 3.5%가 적용됨
 - 2018년 이후 개설된 CEL의 대출금리는 예금금리에 1.5%의 수수료가 합산됨
- (과세방식) 2018년부터 발생한 이자에 대해 소득세(12.8%)와 사회보장분담금(17.2%) 이 과세됨

4) 일본

가) 주택담보대출공제(住宅ローン控除)¹⁴⁾

- 자신이 거주할 주택을 구입하거나 리모델링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한 사람이 최대 13년간 연말 주택담보대출 잔액의 0.7%를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임
 - 소득세에서 공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민세(최대 97,500엔까지×전년도 과세 소득의 5%)에서 공제할 수 있음
 - 새 주택의 경우 최대 13년, 중고 주택의 경우 10년에 걸쳐 소득세에서 직접 공제할 수 있음
- 주택담보대출공제를 받기 위한 주택의 조건은 다음과 같음
 - 주택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거주하고, 공제를 받는 해의 12월 31일까지 계속 거주할 것
 - 공제를 받는 해의 총소득 금액이 2,000만엔 이하일 것
 - 주택담보대출의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 주택 면적이 50㎡ 이상(총소득 금액이 1,000만엔 이하인 경우 40㎡ 이상)이며, 그중 절반 이상이 거주용일 것
 - 주택이 일정한 에너지 절약 기준을 충족할 것
- 2025년 기준 주택 유형에 따른 대출한도가 상이하며, 육아 가정 및 젊은 부부 가정에 우대혜택이 적용됨

14) AEON Bank, “【2025년最新版】住宅ローン控除(減税)でいくら戻ってくるの?確定申告書の書き方を解説!”
<https://www.aeonbank.co.jp/column/mortgageloan/koujo/seido/>, 검색일자: 2025. 3. 18. 참고하여 작성함.

〈표 II -16〉 일본 주택담보대출공제 대출한도

주택의 종류		육아 가정 및 젊은 부부 가정 대출한도	일반 가정 대출한도
신규 주택구매 및 재판매	장기적인 고품질 주택과 저탄소 주택	5,000만엔	4,500만엔
	ZEH 수준의 에너지 절약형 주택	4,500만엔	3,500만엔
	에너지 절약 표준 준수 주택	4,000만엔	3,000만엔
	다른 주택	0엔	0엔
기존 주택	장기 우수 주택 및 저탄소 주택, JEH 급 에너지 절약 주택, 에너지 절약 표준 준수 주택	3,000만엔	3,000만엔
	다른 주택	2,000만엔	2,000만엔

자료: AEON Bank, “【2025年最新版】住宅ローン控除(減税)でいくら戻ってくるの? 確定申告書の書き方を解説!,” <https://www.aeonbank.co.jp/column/mortgageloan/koujo/seido/>, 검색일자: 2025. 3. 18.

- 주택담보대출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첫 해에 확정신고가 필요하며, 2년차 이후에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을 수 있음

5) 소결

- 주요국에서는 저축 장려, 퇴직연금 활용, 대출 지원 등의 방식으로 주택구매를 지원하고 있으며, 주로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세제혜택 등을 제공함
 - 미국과 캐나다는 주택구매 목적의 전용저축계좌(FHSA)를 운영하여 납입금과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공제 및 비과세 인출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퇴직연금 계좌(IRA, RRSP)에서도 주택구매 시 세금 부담 없이 일정 금액을 인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음
 - 미국과 캐나다 모두 납입금을 일정 기간 안에 주택구입 혹은 관련 부대비용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제약조건을 두고 있으며, 그 외의 목적으로 중도 인출 시 페널티(penalty)를 부과하는 등 사용처에 대한 제약조건이 분명하게 제시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제도와 차이점이 있음
 - 캐나다의 경우 한도를 다음해로 이연할 수 있으며, 계좌를 닫아야 하는 15년 안에 주택구매를 하지 못하는 경우 퇴직연금계좌로 자금을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점 또한 특징적임
 - 프랑스와 일본은 저금리 주택담보대출 지원 및 주택담보대출공제 등을 운영하여 대출 상환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2. 타당성 평가

- 타당성 평가는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

가. 정부역할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는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보유를 지원하고 세부담 감소를 통하여 주택구입비용 보조를 위하여 시행되고 있음
- 정부역할로서의 적절성은 ① 큰 틀에서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을 자가보유 현황 및 보유에 대한 인식을 통해 살펴보고 ②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택구매를 위한 적절한 수단으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검토해 봄으로써 살펴보고자 함
 - 자가보유 현황 및 보유에 대한 인식은 2006~2023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활용하여 살펴봄
 - 주택구매 수단으로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유용성에 대하여서는 본 심층평가를 위하여 실시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활용함
 - 설문조사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정책대상자(550명)와 비대상자(550명)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정량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지 및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으로 구성됨¹⁵⁾

1) 주거안정의 필요성 및 타당성: 자가보유 현황 및 보유에 대한 인식 변화

-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성은 본 조세특례에 대한 근본적인 수요 및 잠재수요로서 주택보유 현황과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을 2006~2023년도 「주거실태조사」를 통해 살펴봄
 - 소득, 연령, 지역별 주택보유 현황과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비율%) 조사

15) 설문조사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제II장 제3절의 효과성 분석을 참고 바람.

- 「주거실태조사」에서의 자가보유율은 자가주택점유가구와 임차 및 무상 중타지주택소유가구를 포함하는 개념으로 조사하고 있으며, 주택보유에 대한 인식은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 라고 응답한 비율을 사용함

□ 「주거실태조사」는 국민의 주거생활에 대한 전반적 사항을 파악하여 국민 특성에 부응하는 주택정책 수립을 지원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설문형태로 2006년도부터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음¹⁶⁾

- 표본은 17개 시·도를 포함한 전국에 대한 모집단 정보를 고려하여 추출한 총 61,000가구로 구성되어 있음
- 설문내용은 주택 및 주거환경, 주거의식 및 주거계획, 정책평가 및 정책수요, 가구에 관한 사항 등으로 구성됨
 - 본 정부 개입의 적정성에서는 주택마련, 주거의식조사(주택보유의식)에 대한 설문내용을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자 함
- 다만 본 조사는 패널조사가 아니므로 연도별 변동은 표본 특성의 변화를 의미할 수 있어 해석에 유의가 필요함
 - 따라서 검토 시에는 연도별 변화를 함께 살펴보지만 2023년 현황을 중점적으로 파악하는 것에 집중하고자 함

□ 자기집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 인식을 조사한 자가보유율(%) 현황을 살펴보면 연도별로 변동은 있으나 대체로 보유율은 58~61.3%를 보이고 있으며, 소득이 높을수록, 도지역에 거주할수록, 60세 이상에서 자가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 2023년 자가보유율은 60.7%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전 해인 2022년의 자가보유율에 비하여 0.6%p 소폭 감소한 수준
 - 조사가 시작된 2006년부터 2023년까지의 자가보유율은 58~61.3%로 변동이 있으나 꾸준한 상승 혹은 하락과 같은 뚜렷한 추세를 보이지는 않음
- 지역별로는 도 지역의 자가보유율이 68.6%로 가장 높았고, 광역시 등이 62.3%, 수도권이 55.1%로 가장 낮았음

16)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연구보고서』, 2024.

- 전년 대비 보유율은 모든 지역에서 0.5~0.7%p 소폭 하락하였으며, 도 지역의 하락폭(-0.7%)이 가장 컸음
- 소득별로는 상위(9~10분위)에서의 보유율이 78.3%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중위(5~8분위)가 64%, 하위(1~4분위)가 47.3%를 기록함
- 소득별 전년 대비 보유율은 모두 감소하였으며, 상위에서의 감소폭이 -2.2%p로 가장 컸으며, 그 다음은 중위(-1.5%p), 하위(-0.5%p) 순이었음
-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에서 보유율이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50~59세(71.4%), 40~49세(62.6%), 40세 미만(26%)으로 나타났음
- 전년 대비 보유율은 50~59세 이상(0.8%p)과 60세 이상(0.7%p)에서는 소폭 증가하는 경향이 발견되었으나, 40~49세(-2.2%p)에서 감소하고 40세 미만(-0.4%p)에서 소폭 감소하는 현상을 보임

<표 II -17> 지역별·소득별 자가보유율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 전체											
전체	61.0	60.3	58.0	59.9	61.1	61.1	61.2	60.6	60.6	61.3	60.7
B. 지역											
수도권	56.8	54.6	51.4	52.7	54.2	54.2	54.1	53.0	54.7	55.8	55.1
광역시 등	59.3	61.2	59.9	63.1	63.1	63.0	62.8	62.2	62.0	62.8	62.3
도지역	68.1	68.3	66.8	68.9	70.3	70.3	71.2	71.4	69.0	69.1	68.6
C. 소득											
하위	52.6	49.4	50.0	48.5	49.3	48.8	48.2	46.9	46.8	47.8	47.3
중위	61.0	60.8	56.4	62.2	63.8	63.6	62.9	64.5	65.8	65.5	64.0
상위	76.8	80.8	77.7	79.3	79.9	81.5	81.9	80.2	79.3	80.5	78.3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연구보고서-」, 2024, p. 59, <표 III-12> 재인용

<표 III -18> 가구주 연령별·가구원수별 자가보유율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A.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38.5	34.2	32.8	36.6	34.2	33.7	33.1	30.1	26.7	26.4	26.0
40~49세	61.1	58.4	56.9	59.4	61.7	62.6	64.8	63.9	63.9	64.8	62.6
50~59세	71.8	68.0	65.6	65.6	68.8	67.5	68.3	69.5	71.5	70.6	71.4
60세 이상	75.5	76.3	73.9	75.5	76.2	76.1	77.5	76.3	77.7	76.9	77.6

<표 III-18>의 계속

(단위: %)

구분	2006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B. 가구원수											
1인 가구	35.0	35.3	35.6	34.8	35.8	33.8	33.6	33.1	32.8	33.7	33.2
2인 가구	64.3	63.8	64.0	67.0	69.0	69.7	69.6	69.7	71.8	73.3	72.9
3인 가구	62.3	62.2	63.3	66.3	68.8	70.3	71.8	70.5	71.9	74.3	74.4
4인 가구	65.5	68.5	71.0	74.5	74.6	76.4	77.4	78.3	77.8	79.4	79.9
5인 가구	71.0	70.7	69.7	73.1	74.4	75.3	75.9	77.3	77.3	77.2	78.8
6인 이상 가구	77.9	75.3	70.0	75.7	75.1	72.9	74.1	73.1	75.9	74.0	77.9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연구보고서-」, 2024, p. 60, <표 III-13> 재인용

- ‘내 집을 보유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대하여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을 사용하여 주택보유의식을 살펴본 결과 ‘그렇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2010~2023년에 79.1~89.6%대를 유지하고 있어 앞서 살펴본 자가보유율보다는 높게 나타났으며 변동폭 역시 크게 나타남
 - 2023년에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87.3%로 전년 대비 2.3%p 감소
 - 지역별로는 도 지역에서 89%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수도권(86.9%), 광역시 등(85.7%) 순이었으며, 작년 대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음
 - 감소폭은 광역시 등(-3.3%p)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수도권(-2.4%p), 도 지역(-1.6%p) 순이었음
 - 소득별로는 상위에서 94.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중위(90.4%), 하위(80%) 순이었음
 - 작년 대비 하위에서의 감소폭이 -3.8%p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중위(-2.3%p), 상위(1.1%p) 순이었음

- 연령별 보유의식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주택을 보유해야 한다는 응답은 60세 이상에서 90.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40~49세(89.7%), 50~59세(89.1%), 40세 미만(79.4%)으로 나타났으며, 작년 대비 전 연령대에서 감소
 - 감소폭은 40세 미만에서 -3.4%p로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50~59세 미만(-2.1%p), 60세 이상(-1.8%p), 40~49세 미만(-1.6%p) 순으로 나타남

<표 II -19> 주택보유의식

(단위:%)

구분	2010	2014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전체	83.7	79.1	82.0	82.8	82.5	84.1	87.7	88.9	89.6	87.3
A. 지역										
수도권	81.8	73.5	76.4	79.7	81.5	82.9	87.4	87.5	89.3	86.9
광역시 등	83.3	79.8	86.6	82.3	82.4	85.1	87.6	89.7	89.0	85.7
도지역	86.6	87.3	87.5	87.8	84.2	85.4	88.2	90.5	90.6	89.0
B. 소득										
하위	83.9	77.9	78.1	78.5	77.2	78.2	82.3	83.1	83.8	80.0
중위	83.4	79.1	83.6	84.7	84.3	85.9	90.1	91.8	92.7	90.4
상위	83.8	81.7	86.9	87.7	89.5	91.4	93.7	94.5	95.2	94.1
C. 점유형태										
자가	89.6	90.4	93.6	93.7	93.8	94.7	96.2	97.1	97.9	97.6
전체	77.2	64.0	70.1	72.0	73.4	75.8	82.0	84.1	84.4	80.7
보증금 있는 월세	74.9	65.2	63.7	63.8	62.6	65.3	72.4	73.4	74.8	69.0
보증금 없는 월세	78.6	74.5	61.0	66.8	61.3	60.5	67.4	68.2	67.1	59.3
무상	81.5	80.4	74.2	74.3	69.6	74.7	78.4	83.3	81.7	77.2
D. 가구주 연령										
40세 미만	79.9	73.3	74.6	75.4	75.0	76.9	82.0	84.1	82.8	79.4
40세~49세	80.3	75.2	80.1	81.2	80.8	84.7	88.9	90.0	91.3	89.7
50세~59세	85.1	80.8	82.7	84.7	83.8	85.2	88.5	89.6	91.2	89.1
60세 이상	88.3	85.9	89.3	88.5	88.6	89.2	90.9	91.5	92.3	90.5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연구보고서-」, 2024, p. 121, <표 III-75> 재인용

- 사회적으로 적절한 수준의 자가 보유율에 관하여서는 다양한 관점에서 논의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한 가지 방식은 주택구매력을 나타내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rice to Income Ratio, PIR)를 살펴보는 것임
 - OECD가 발표한 PIR(Price to Income Ratio)를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PIR은 84.8로 OECD 평균인 115.9에 비하면 높지 않은 수준으로,17) 정부의 개입 필요성이

17) OECD, "Housing prices,"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housing-prices.html?oeecdcontrol-a81da07b0e-var6=HPI_YDH&oeecdcontrol-82d381eddd-var3=2024-Q1&oeecdcontrol-82d381eddd-var5=Q&oeecdcontrol-3ad e9064e2-var1=OECD%7CEA17%7CEA%7CAUS%7CAUT%7CBEL%7CCAN%7CCHL%7CCOL%7CCRI%7CCZE%7CDNK%7CEST%7CFIN%7CFRA%7CDEU%7CGRC%7CHUN%7CISL%7CIRL%7CISR%7CITA%7CJPN%7CKOR%7CLVA%7CLTU%7CLUX%7CMEX%7CNLD%7CNZL%7CNOR%7CPOL%7CPRT%7CSVK%7CSVN%7CESP%7CSWE%7CCHE%7CTUR%7CGBR%7CUSA&oeecdcontrol-3ade9064e2-var2=KOR

상대적으로 높지 않게 나타남

- 다만 국가별로 주거형태가 다양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 및 수도권과 비 수도권지역 간의 차이가 크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체감하는 PIR 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¹⁸⁾
- 이러한 체감도를 고려한 정책수요는 간접적으로 주택의식 대비 실제 자가보유율 수준이 얼마나 되는지를 통해서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이에 대한 추가적인 분석을 시행하여 봄

□ 추가적으로 주택의식 대비 자가보유율을 비교해 본 결과 실질적인 자가보유율과 주택소유에 관한 의식 간에는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수급자 특성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남을 발견할 수 있음

- 전반적으로 주택의식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7.3% 정도로 높게 나타났으나 자가보유율은 60.7%로 그에 비해서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또한 수급자 특성에 따라서 정책수요가 상이하게 발생할 가능성도 발견하였는데, 자가보유와 주택의식의 격차는 주로 자가소유가 많지 않았던 경우 가장 크게 나타남
 - 즉 40세 미만(32%), 소득분위 하위(59%), 수도권(64%)에서 그 격차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음

□ 이러한 정책수요를 고려하여 실제 주거안정 정책들은 소득, 연령, 지역 등에 차등을 두고 있으며, 본 조세특례 또한 무주택자와 근로소득 7,000만원 미만인 자들에게 한정한다는 점에서 이를 부분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청년의 경우 청년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상품과 이에 대한 비과세 혜택을 별도로 운영하고 있음
- 반면 소득공제 형태 지원의 특성상 소득이 적은 경우 소득공제 혜택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하여 오히려 고소득층에 대한 혜택이 크게 나타날 수 있음

검색일자: 2025. 6. 30.

18) 『시사저널』, 『한국서 집구하기 OECD 국가보다 쉽다고?...평균의 함정』, 2016. 8. 30.,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230>, 검색일자: 2025. 6. 30.

- 다만 소득수준, 연령, 지역 이외에도 세대 간 주거소비 특성의 차이점이나 주거소비를 통한 저출산 대응의 필요성 등을 제기하는 선행연구들도 있어 향후 변화하는 정책환경에 대한 다방면적인 접근 및 대응을 고려할 수 있음
 - 천현숙 외(2015)는 급격한 산업화 및 금융위기, 주택상승기 및 안정기 등의 경험으로 코호트별로 주거소비에 대한 특성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함
 - 주택상승기에는 자가보유율이 낮아지고 보증부월세의 비율이 높아지며 주택가격 안정기에는 임차의 자가전환 비율이 크게 낮아지고 자가의 임차전환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관찰됨
 - 극심한 주택부족 문제를 겪는 과정에서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신주택보급률로 주택부족 문제가 완화되는 등의 변화를 경험한 연령대별로 주거소비에 대한 특성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이러한 격차와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접근의 필요성을 제기함
 - 이창무·김미경(2013)은 가구주의 탄생 코호트별 특성에 따라 발생하는 주거소비의 편차를 추정한 결과, 베이비붐 세대는 다른 세대에 비해 낮은 수준의 주거소비 수준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함
 - 이에 더하여 저출생 문제와 주거안정성과의 연관성이 제기되면서 가구구성을 고려한 정책설계의 필요성도 제기될 수 있음
 - 이삼식·최효진(2012)은 주택점유와 관련하여 결혼 당시와 현재의 주택점유 형태를 비교하였을 때, 결혼 이후 지속적·안정적으로 유지하는 경우 출산이 촉진되고, 불안정하게 유지 혹은 이동하는 경우 출산이 억제되고 있는 것을 발견함
 - 기혼여성의 절반 이상은 주택마련 과정에서 최종자녀 수 결정에 주거형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응답
 - 남진·김진하(2024)는 주택청약 당첨가구를 살펴본 결과 주택청약제도의 부양가족수에 대한 점수보다는 무주택 기간과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점수가 높은 가구들이 주로 당첨되는 경향을 발견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및 무주택 기간과 부양가족 가중치를 고려하여 자녀수에 대한 주택청약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유용성에 대한 인식 및 사용

- 주거안정을 위한 정부개입의 타당성을 살펴본 것에 더하여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주택구매를 위한 유용한 수단으로 인식되고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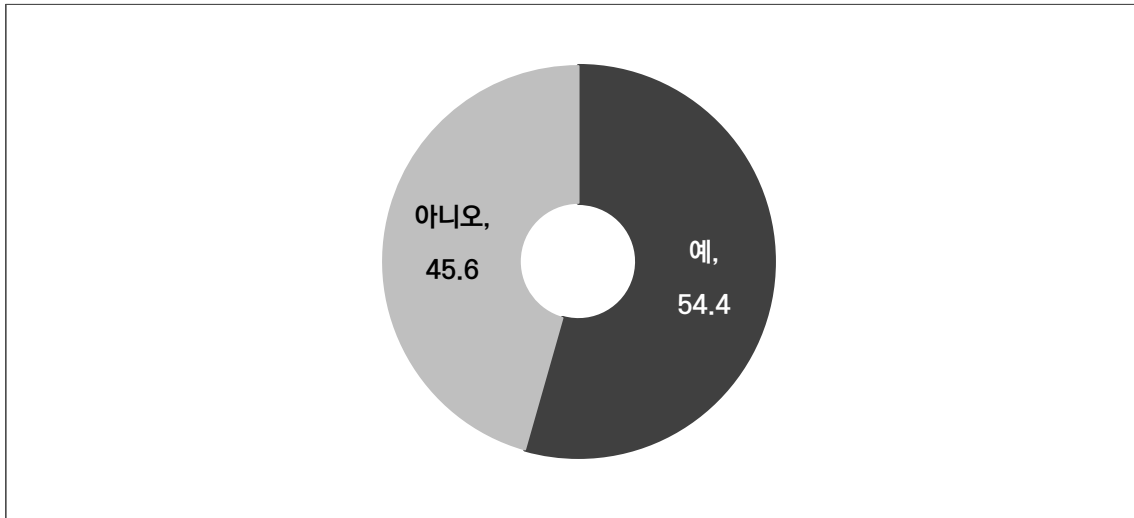
- 설문조사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정책대상자(550명)와 비대상자(550명) 총 1,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으며, 응답자의 사회경제적 특성과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인지 및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으로 구성됨¹⁹⁾
 - 2024년 12월 31일 기준 세대주이며, 2024년 1년간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이 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책 대상자로, 그 이외의 경우 정책 비대상자로 분류
 - 정책대상자 중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경우 수급자로 분류
 - 정책대상자 중 근로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비수급자로 분류
 - 분석을 위하여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및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에 대한 설문내용을 활용함

- (부동산 소유를 위한 자산축적) 설문 결과 응답자 중 대다수가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이는 정책 대상자에게서 높게 나타남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54.4%가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고 응답함
 -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65.7%)가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보유율이 ‘비대상자’(43.2%)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소득공제 수혜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소득공제수급자의 경우 75.5%로 수혜 대상 중 비수급자(39.1%)나 비대상자(43.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19) 설문조사에 대한 좀더 자세한 사항은 제II장 제3절의 효과성 분석을 참고 바람.

[그림 II -1]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688,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20>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688, 단위: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688)	54.4	45.6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341)	65.7	34.3
	비대상자	(347)	43.2	56.8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249)	75.5	24.5
	비수급자(대상자)	(92)	39.1	60.9
	비수급자(비대상자)	(347)	43.2	56.8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193)	25.9	74.1
	가입	(495)	65.5	3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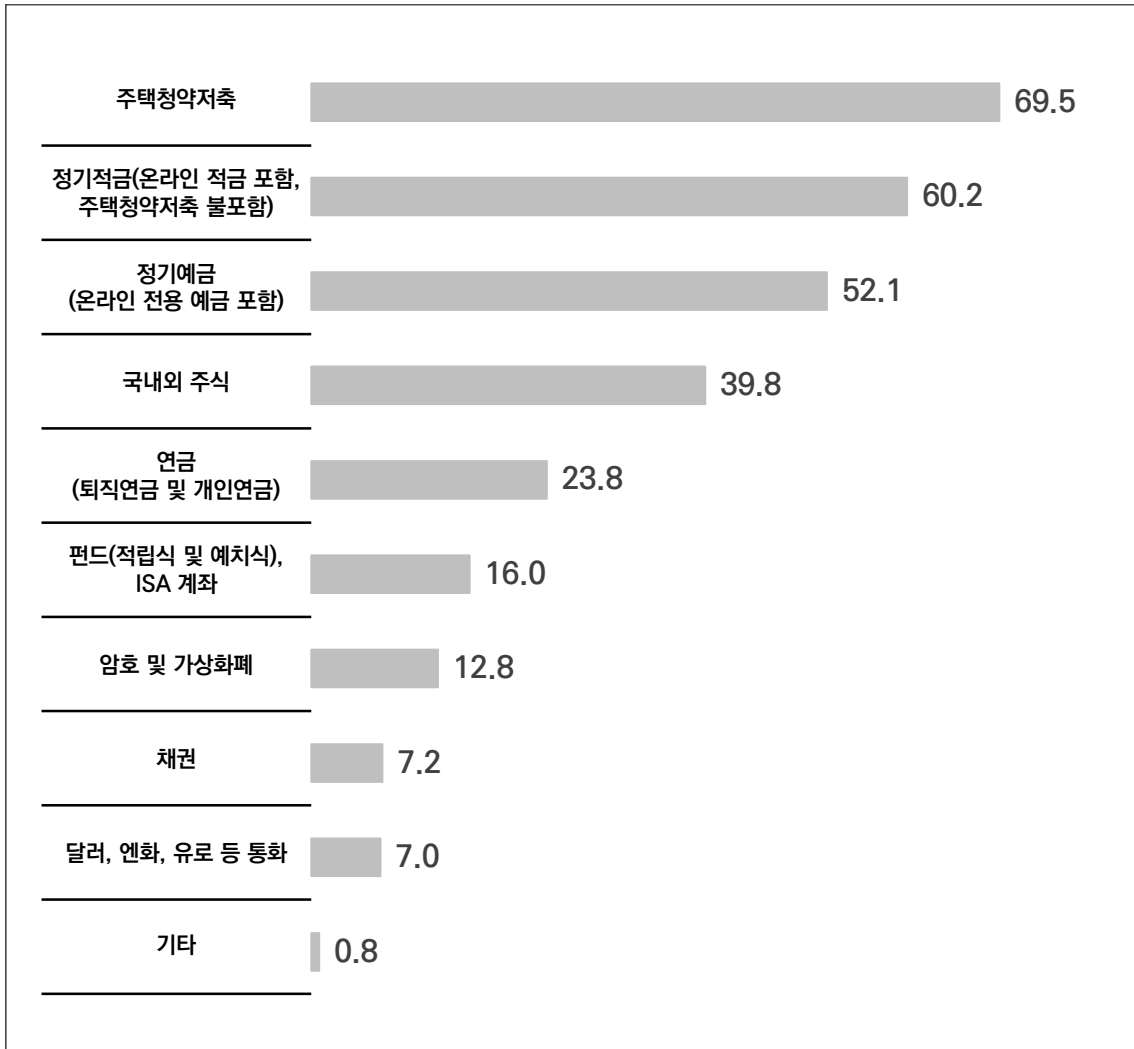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부동산 소유를 위한 축적자산 종류) 설문 결과 응답자 중 대다수는 부동산 소유를 위한 자산축적의 수단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으며 이러한 경향은 정책 대상자들에게서 뚜렷하게 나타남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종류로는 주택청약저축(69.5%)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정기적금(60.2%), 정기에금(52.1%) 순으로 나타남

- 정책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부동산 소유를 위해 축적하고 있는 자산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꼽은 경우가 ‘정책 대상자’(75%)가 ‘정책 비대상자’(61.3%)보다 높게 나타남
- 소득공제 수혜 여부에 따라서 살펴보면, 소득공제 수급자의 경우 청약종합저축을 꼽은 경우가 80.9%로, 수혜대상 중 비수급자(44.4%)나 비대상자(61.3%)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그림 II -2]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374,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21>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374, 단위: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374)	69.5	60.2	52.1	39.8	23.8	16.0	12.8	7.2	7.0	0.8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224)	75.0	64.3	53.6	36.6	21.9	16.1	13.8	6.3	4.5	0.4
	비대상자	(150)	61.3	54.0	50.0	44.7	26.7	16.0	11.3	8.7	10.7	1.3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188)	80.9	65.4	54.8	38.8	23.4	17.0	13.8	6.4	4.8	0.0
	비수급자(대상자)	(36)	44.4	58.3	47.2	25.0	13.9	11.1	13.9	5.6	2.8	2.8
	비수급자(비대상자)	(150)	61.3	54.0	50.0	44.7	26.7	16.0	11.3	8.7	10.7	1.3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50)	16.0	58.0	54.0	32.0	22.0	12.0	14.0	2.0	2.0	2.0
	가입	(324)	77.8	60.5	51.9	41.0	24.1	16.7	12.7	8.0	7.7	0.6

- 주: ① 주택청약저축
 ② 정기적금(온라인 전용 적금 포함, 주택청약저축 불포함)
 ③ 정기예금(온라인 전용 예금 포함)
 ④ 국내외 주식
 ⑤ 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⑥ 펀드(적립식 및 예치식), ISA 계좌
 ⑦ 암호 및 가상화폐
 ⑧ 채권
 ⑨ 달러, 엔화, 유로 등 통화
 ⑩ 기타: 금, CMA, 사업소득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에 대한 설문 결과, 설문 응답자의 대다수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정책대상자의 가입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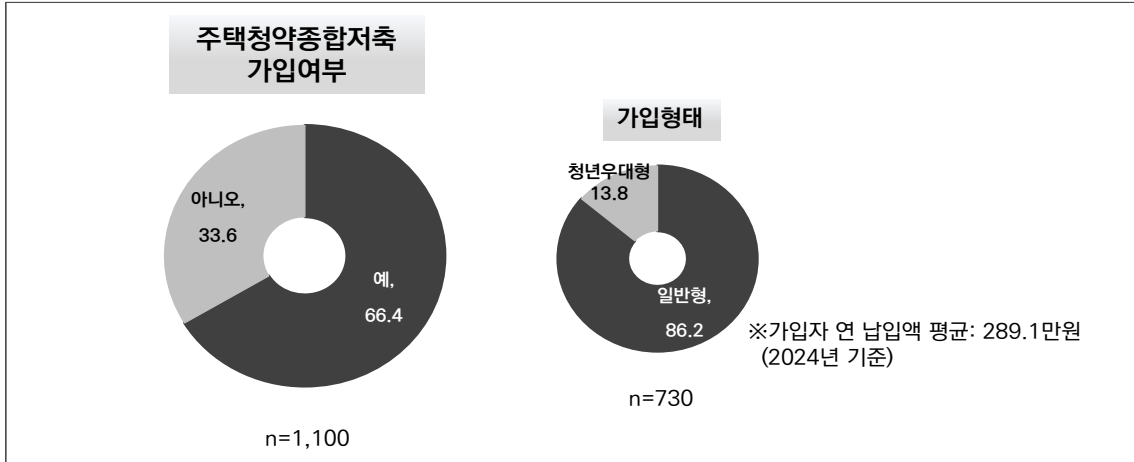
○ 전체 설문대상자 중 66.4%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74.7%)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률이 ‘비대상자’(58.0%)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입 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형’(86.2%)이 ‘청년우대형’(13.8%)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연 납입액 평균은 289.1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II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22>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

구 분	가입여부			사례수 ¹⁾	가입형태		총 납입액 (평균) ²⁾	
	사례수	예	아니오		일반형	청년우대형		
전 체	(1,100)	66.4	33.6	(730)	86.2	13.8	289.1만원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74.7	25.3	(411)	80.5	19.5	304.7만원
	비대상자	(550)	58.0	42.0	(319)	93.4	6.6	268.9만원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69)	100.0	0.0	(369)	81.3	18.7	309.2만원
	비수급자 (대상자)	(181)	23.2	76.8	(42)	73.8	26.2	265.0만원
	비수급자 (비대상자)	(550)	58.0	42.0	(319)	93.4	6.6	268.9만원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0.0	100.0	(0)	-	-	-
	가입	(730)	100.0	0.0	(730)	86.2	13.8	289.1만원

주: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2)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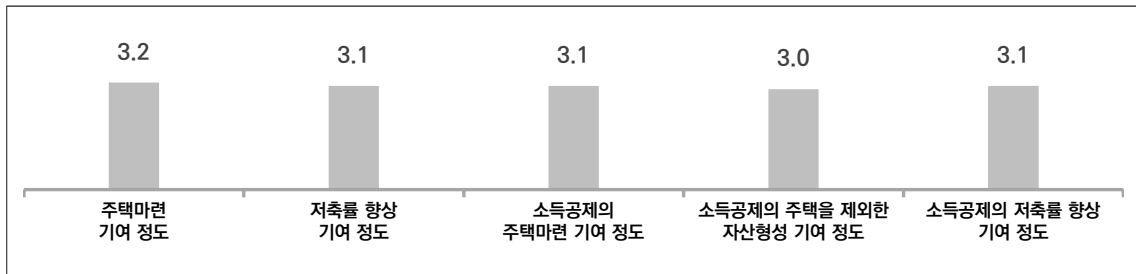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소득공제에 대한 인식)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본 소득공제의 도움 정도가 보통 혹은 그보다 약간 높게 인식되었음
- 주택청약 관련 인식에 대해 척도형(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 도움이 되지 않음, 3: 보통, 4: 도움이 됨, 5: 매우 도움이 됨)으로 질문한 뒤, 이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의 평균 점수는 3.2점,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의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나타나 도움 정도가 보통보다는 약간 높게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의 평균 점수는 3.1점,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의 평균 점수는 3.0점,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의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나타나 도움의 정도를 보통 혹은 그보다 약간 높게 인식함

[그림 II -4] 주택청약 관련 인식

(base 전체, n=1,100, 단위: 점)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23> 주택청약 관련 인식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점)

구 분		사례수	주택마련 기여 정도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소득공제의 주택 마련 기여 정도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전 체		(1,100)	3.2	3.1	3.1	3.0	3.1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3.2	3.1	3.1	3.0	3.1
	비대상자	(550)	3.2	3.2	3.2	3.0	3.1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69)	3.2	3.2	3.2	3.0	3.2
	비수급자 (대상자)	(181)	3.1	3.1	3.1	2.9	3.0
	비수급자 (비대상자)	(550)	3.2	3.2	3.2	3.0	3.1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3.2	3.1	3.1	3.0	3.0
	가입	(730)	3.2	3.2	3.2	2.9	3.1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종합) 설문조사 결과를 종합하면 대부분의 응답자는 부동산 축적을 위한 자산을 축적하고 있었으며, 이를 위한 수단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선호도와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으나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소득공제제도의 주택마련 효과성에 대한 인식은 보통 혹은 그보다 다소 높은 수준에 그침
 - 즉 주택청약종합저축과 소득공제제도가 주택마련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인식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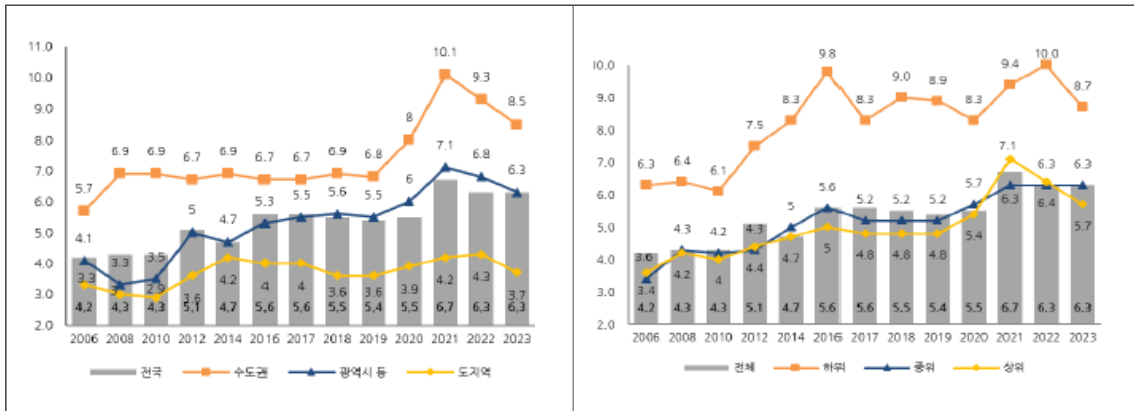
나. 지원대상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의 지원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는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²⁰⁾로 설정되어 있음
 - 1996년 「舊 소득세법」 제52조 제1항 제5호로 제도신설 시에는 총급여액 요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60㎡ 이하 1주택 소유자도 수급요건이 주어졌으나 주택마련이 어려운 무주택 중산층 및 서민층에게 조세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개정됨
- 본 항에서는 주택보유 현황 및 주택구매력(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을 정책대상자(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와 비대상자간 비교를 통해서 지원대상이 적절하게 설정되었는지 여부를 검토해보고자 함
- 분석에 앞서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의 전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여 본 결과, PIR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2023년에는 중위수 기준 6.3배로 전년도와 큰 차이가 없었으며, 지역별로는 수도권(8.5배)에서, 소득별로는 하위가구(8.7배)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2006년 PIR은 4.2배였으나 꾸준히 증가하여 2022년과 2023년에는 6.3배를 기록함
 - 지역별로는 수도권의 PIR이 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광역시 등 (6.3배), 도 지역(3.7배)으로 지역 간 격차가 다소 크게 나타남
 - 소득별로는 하위가구에서 8.7배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은 중위가구 (6.3배), 상위가구(5.7배)로 나타남

20) 2024년 12월 31일 개정

[그림 II -5] 지역별 및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

(단위: 배)



자료: 국토교통부,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 -(일반가구)연구보고서-』, 2024, p. 96, [그림 III-15] 재인용

- 7,000만원 이하 및 초과 가구의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과 주택소유 여부 측면에서의 차이를 『주거실태조사』 2023년 자료를 사용하여 간접적으로 살펴봄
 - 『주거실태조사』는 근로 및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만을 제시하고 있어 근로소득자만을 식별할 수 없으며 정확한 총급여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다는 한계점이 있음
 - 따라서 해석 시에는 7,000만원 이하 및 초과자들에 대한 전반적인 차이점을 살펴본다는 측면에서만 분석 결과를 한정적으로 사용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소득 기준(7,000만원)에 따른 자가소유 비율을 살펴본 결과 앞서 정부개입의 적절성에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바와 유사하게 7,000만원 초과 가구에서 자가 보유율이 높게 나타남
 - 자가보유율은 65.02%로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보고된 수치(60.7%)보다 다소 높게 나타남
 - 소득별로 살펴보면 7,000만원 이하의 경우 평균보다 자가보유율(62.94%)이 낮게 나타났으며, 7,000만원 초과인 경우 자가보유율(77.78%)이 평균보다 높게 나타남

<표 II -24> 2023년 자가보유 및 자가점유 비율

(단위: %, 가구)

구분 (근로/사업소득)	자가보유율	자가점유율	주거지 외 주택소유자 비율	관측치
전체	65.02	61.52	10.01	61,260
7,000만원 이하	62.94	59.78	8.85	52,668
7,000만원 초과	77.78	72.22	17.14	8,592

주: 자가점유율은 자가주택점유가구의 비중을 의미하며, 자가보유율은 자가주택점유 및 타지주택소유가구의 비중을 의미함

자료: 『주거실태조사』 2023년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계산

□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은 다음과 같이 『주거실태조사』에서 시행한 방식과 동일한 방식으로 산정함²¹⁾

- PIR 산정방식은 통계적 측면에서 이상치의 영향을 덜 받아 안정적이며, OECD, UN HABITAT, PUP(Performance Urban Planning), NUMBEO 등 국제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음

$$PIR_t = \frac{\text{median}(P_{j,t})}{\text{median}(I_{j,t})} \text{ or } \frac{\text{mean}(P_{j,t})}{\text{mean}(I_{j,t})} \quad \text{식 (1)}$$

$P_{j,t}$ 는 t 시점, j 가구의 현재주택가격, $I_{j,t}$ 는 j 가구의 연소득

□ <표 II-25>와 같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을 『주거실태조사』 보고서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전체와 소득기준(7,000만원 이하 혹은 초과)으로 나누어 계산하여 본 결과, 전체 연소득 주택가격배율은 6.67배로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와 유사하나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소득별로는 7,000만원 초과 가구에서 높게 나타남

- 전체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은 6.67배로 나타나 보고서에 제시된 수치(6.3배)보다는 다소 높게 계산됨
- 소득별로 살펴본 결과 근로 및 사업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가구의 경우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이 6.67배로 전체 평균과 비슷하게 나타났으나, 7,000만원 초과 가구의 경우 5배로 좀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음

□ 따라서 『주거실태조사』에 나타난 수치를 사용하여 보면, 7,000만원 초과 수급자를 제외하는 것은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 측면에서 전체 평균을 상회하는

21)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 연구보고서』, 2024, p. 97.

가구를 제외하는 효과로 생각해 볼 수 있으며, 이는 지원의 필요도가 낮은 자들을 배제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을 지닐 것으로 생각됨

- 반면 「주거실태조사」의 경우 표본조사이며 특히 7,000만원 이상 가구를 다수 포함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어 대표성 측면에서 우려점이 있으며, 본 조세 특례가 대상으로 하는 근로소득자뿐 아니라 사업소득자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근로 및 사업소득을 합산한 금액만을 제시하기 때문에 정확히 총급여액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는 한계점이 있음

<표 II -25> 2023년 소득별 연소득 대비 주택가격배율(PIR)

(단위: 배, 만원, 가구)

구분 (근로/사업소득)	연소득대비 주택가격 비율 (PIR)	주택가격 (중위값)	월평균 근로/사업소득 (중위값)	관측치
전체	6.67	24000	300	36669
7,000만원 이하	6.67	20000	250	30630
7,000만원 초과	5	42000	700	6039

자료: 「주거실태조사」, 2023. 자료를 사용하여 저자가 계산

다. 지원방식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의 지원방식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임
 - 청약저축 소득공제대상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이며,²²⁾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한 과세기간 이후에 납입한 금액만 해당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금액과 합하여 연 8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과세기간 중에 주택 당첨 외의 사유로 중도해지한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은 공제하지 아니함

22) 2023. 12. 31. 세법 개정을 통해 종전 연 납입한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공제한도 상향 조정

1)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의 적절성

- 중산층 및 서민층의 주택자금 마련을 지원하고 청약제도 가입을 유인하여 주거 안정 제고를 지원하기 위해서 재정을 통해 직접지원하는 방식과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이 존재함
 - 조세지출을 통해 지원하는 방식에도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공제 및 감면의 방식이 존재함

- 본 조세특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 일부(100분의 40)를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을 선택하고 있는데, 재정지출과 여타 조세특례 방식과의 비교를 통해 지원방식의 적정성을 검토하고자 함

- 먼저 재정지출을 통한 지원과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을 김학수·박노욱(2013)에 제시된 기준을 통해서 점검해 본 결과 근로자 주거안정을 위한 지원은 조세특례를 통한 지원이 재정지원보다 우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 먼저 수혜자 측면에서 주택시장이 존재하고 상기 살펴본 바와 같이 주택 및 주거형태에 대한 수요가 다양하거나 시대에 따라 변화할 수 있어 수혜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조세특례가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보조방식 측면에서 납입금액에 대한 일률적 비율을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소비자들의 효율적인 자원분배 선택에 기반하고 있음
 - 지원시기 측면에서는 주택마련의 경우 장기간의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중장기적·항구적 지원이 적합하다는 점에서 조세특례가 조금 더 적합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조세특례를 통한 지원은 재정지출시 발생할 수 있는 집행, 결과, 대상자 선정 등에 소요되는 행정비용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며 납입금액의 한도와 소득공제의 특성상 과다소비 및 부정사용의 가능성은 낮음

〈표 II -26〉 재정 및 조세지출의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절성 판단 기준

구분	재정지출이 타당성 높은 경우	조세지출이 타당성 높은 경우
수혜자	- 세금부담과 무관한 경우 - 취약계층, 특정 수혜자에 대한 혜택인 경우 - 수혜자의 선택권이 없는 경우	- 세금부담이 있는 수혜자 - 일반 계층 다수에 대한 지원인 경우 - 시장논리로 지원이 어려운 경우
보조방식	- 보조대상이 다양하고, 보조 수준도 달라야 하는 경우 - 가격탄력성이 낮은 경우(생필품, 기본서비스 등) - 보조 수준이 높은 경우 - 취약계층에 더 높은 보조율을 적용하고 싶은 경우	- 보조대상이 단순하여 일률적 비율 적용이 가능한 경우 - 가격탄력성이 높은 경우(퇴직연금, 건강보험 등) - 보조 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 - 효율적인 대상에 더 높은 보조를 하고 싶은 경우
지원시기	- 일시적·한시적 지원(시범사업, 성격이거나, 지속 여부가 불투명한 사업 등) - 초기, 사전적 지원에 적합	- 중장기적·항구적 지원(예측 가능성, 안정성이 필요한 경우) - 초기 이후 지원에 적합
행정집행	- 대상자 파악이 곤란하고, 대상자 선정 등에 행정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지원 현황 통계분석 필요성이 있는 경우	- 재정지출과 달리 인원, 선정 절차, 대상자 선정 등이 매우 어려운 경우 - 과다소비, 부정사용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소규모 지원으로 정부 재정에 영향이 적은 경우

자료: 김학수·박노옥(2013), p. 49.

2) 소득요건 설정의 적정성

- 본 조세특례는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의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주 및 세대주의 배우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으로 지원함
 - 소득공제 대상 납입한도는 연 300만원

- 본 목에서는 소득요건을 설정하는 것의 적절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국세청 내부 자료를 활용하여 다음의 두 가지를 살펴봄
 - 소득요건 설정 이전인 2014년 소득구간별 경감세액의 차이를 살펴봄으로써 역진적인 성격이 존재하였는지 여부와 그 정도를 점검
 - 소득공제 방식으로 조세혜택이 주어짐에 따라서 납입금액이 크고 한계세율이 높은 고소득층이 혜택을 더 크게 받는 역진성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 2015년 소득요건(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 적용된 이후인 2023년 소득공제방식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역진성 해소 여부 및 정도를 살펴봄으로써 소득요건 적용의 적절성을 판단함

- 소득요건을 적용하기 이전인 2014년에는 본 조세특례로 인한 1인당 경감세액의 규모가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상당수의 고소득 구간 수혜자들이 높은 세제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역진적 성격이 드러남
 - 7,000만원이하 소득요건이 설정되기 이전인 2014년 소득공제 인원은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46.03%),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42.33%) 순으로 가장 많이 분포되었으나, 7,000만원 초과 1,000만원 이하 구간이 11.31%로 상당 부분 존재함
 - 2014년 경감세액 비중은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구간이 45.15%,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 구간이 25.63%였으나, 7,000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및 1억원 초과 3억원 이하의 비중도 각각 11.97%, 4.30%로 다소 높은 수준을 보였음
 - 7,000만원 초과 수혜자의 1인당 경감세액은 57,035~166,823원으로 7,000만원 이하 수혜자의 14,757~42,253원에 비하여 적게는 1.34배에서 크게는 11.3배까지 차이가 났음

- 소득요건이 적용된 이후인 2023년에도 1인당 경감세액의 규모가 소득수준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은 여전히 있으나 소득구간별 경감세액의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에서 그 정도는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음
 - 소득요건 적용 이후인 2023년 소득공제 인원은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42.76%),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56.72%)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7,000만원 초과 수혜자는 배제됨
 - 2023년에는 경감세액 비중은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에서 66.90%, 1,000만원 초과 4,000만원 이하에서 27.92%로 나타남
 - 1인당 경감세액은 소득구간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1,000만원 이하 12,032원에서 4,000만원 초과 7,000만원 이하 44,821원으로 나타나, 경감세액의 격차가 최대 3.73배로 감소하였음

- 따라서 2015년부터 적용된 소득요건(7,000만원 이하)은 고소득층의 수급을 제한하는 동시에 수혜자 간 세액경감의 격차를 줄여 기존 제도의 역진성을 완화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게 설정된 것으로 판단됨

<표 II -27> 총급여구간별 공제 및 경감세액 현황

(단위:명, 억원, 원, %)

귀속 연도	총급여구간	공제 인원	공제 인원 비중	공제 금액	1인당 소득공제 금액	공제 금액 비중	경감 세액	1인당 경감 세액	1인당 경감세액 비중
2014	1천만원 이하	1,091	0.30%	2.68	245,965	0.20%	0.16	14,757	34.26%
	4천만원 이하	153,444	42.33%	519.03	338,251	39.33%	40.02	26,083	60.55%
	7천만원 이하	166,858	46.03%	631.64	378,547	47.86%	70.50	42,253	98.09%
	1억원 이하	32,774	9.04%	131.87	402,358	9.99%	18.69	57,035	132.40%
	3억원 이하	8,228	2.27%	34.20	415,640	2.59%	6.71	81,585	189.39%
	5억원 이하	63	0.02%	0.28	440,771	0.02%	0.09	141,606	328.73%
	10억원 이하	19	0.01%	0.09	454,105	0.01%	0.03	156,929	364.30%
	10억원 초과	11	0.00%	0.05	453,818	0.00%	0.02	166,823	387.26%
2023	1천만원 이하	5,145	0.53%	10.32	200,538	0.27%	0.62	12,032	31.67%
	4천만원 이하	418,384	42.76%	1,483.72	354,632	38.57%	103.80	24,809	65.29%
	7천만원 이하	554,942	56.72%	2,352.35	423,891	61.16%	248.73	44,821	117.96%

주: 1. 공제금액은 소득세액공제신고서/근로소득자 소득세액 공제신고서(별지 제37호 서식(1))상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액을 의미함
 2. 경감세액은 공제금액에 연도별 유효세율(=평균 산출세액/평균 과세표준)을 곱하여 산출함
 3. 비중은 각 연도 전체 인원 및 금액 대비 비중을 의미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3) 주거안정 관련 조세지출 항목들의 통합한도 운영

- 본 조세특례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가 연동되어 있음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400만원 한도에서 소득공제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받았을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과 합하여 연 800만원 한도(상환기간 15년 이상 기타 기준)에서 소득공제

- 이러한 주거안정 관련 조세지출 항목들의 통합한도를 운영하는 방식은 과도한 중복수급을 방지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나 납세자들의 세법 이해도를 낮출 가능성 또한 제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의 필요성 점검을 고려할 수 있음
- 최보람·임영제(2021)는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의 수혜대상이 상이함에도 지속적으로 통합한도를 두고 있어 납세자의 세법 이해도를 낮출 가능성이 있음을 제시함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원리금 상환액의 40% (400만원 한도)를 소득공제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이며 무주택세대의 세대주로 소득요건을 두고 있지 않음²³⁾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제공하고 있으며 수혜대상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로 설정되어 있음²⁴⁾

라. 중복성 검토

- 중복성 검토에서는 다양하게 운용되고 있는 저축지원을 위한 비과세·감면 조세특례 간 가입 대상자의 소득요건이나 세제혜택 한도 등이 상이하여 자원배분의 왜곡 효과가 발생,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는지 판단하고 재정지원과의 중복성을 검토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본 조세특례와의 중복 정도를 국세청 데이터를 사용하여 살펴봄
- 이 외에도 본 조세특례와 정책목표가 유사하고 중복수급이 가능한 재정사업들을 살펴봄
- 본 조세특례와 「소득세법」에 의한 특별공제인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및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주택자금 마련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 한도를 결합한 방식으로 시행됨

23)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검색일자: 2025.4.15.

24)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검색일자: 2025.4.15.

- 즉 무주택 및 1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주택자금을 지급한 경우에 <표 II-28>과 같이 개별 금액을 바탕으로 소득공제액을 계산하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특성에 따라 공제한도액(600만~2,000만원)을 적용(<표 II-28> 참고)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주거전용 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을 임차하기 위하여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의 40%(연 400만원한도)를 소득공제²⁵⁾²⁶⁾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요건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세대의 세대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인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 또는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차입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를 지급하였을 때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²⁷⁾²⁸⁾

<표 II -28>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성에 따른 공제한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 특성	한도액
상환기간이 15년 이상	800만원
상환기간이 10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6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1,800만원
상환기간이 15년 이상(고정금리 and비거치식 분할상환)	2,000만원

자료: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검색일자: 2025. 7. 30.

25) 국세청,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검색일자: 2025. 5. 15.

26)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검색일자: 2025. 5.1 6.

27)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검색일자: 2025. 5. 16.

28) 국가법령정보센터, 「소득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93%9D%EC%84%B8%EB%B2%95>, 검색일자: 2025. 5. 16.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에는 세부 내용을 검토해 본 결과 본 조세특례와의 중복성 및 정도는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근로소득이 있는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라는 점에서는 본 조세특례와 수혜요건이 비슷하나 소득요건이 없어 수혜대상이 상이함
 - 주택을 구매하기 전 무주택자의 임차비용을 감면해 줌으로써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고, 추후 주택구매에 필요한 여유자금 형성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시행되었다는 점에서 주거안정 측면에서 본 조세특례와 유사한 점이 있음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또한 소득요건 없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수혜대상이 상이함
 - 주택구매에 소요되는 이자비용을 소득공제함으로써 경제적 부담을 덜고 주택 구입을 지원하는 세제지원이라는 점에서 본 조세특례와 중복되는 점이 있음
 - 다만 중복수급이 가능한 경우는 일정 요건을 만족하는 분양권을 소지하고 있는 등 무주택자로 간주되는 경우에 한하고 있어 중복수급 인원이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국세청 미시자료를 사용하여 실제 중복수급 현황 및 정도를 판단함으로써 중복성을 평가해 본 결과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중복수급 인원이 상대적으로 많으며, 그 정도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을 알 수 있음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2023년 233,270명으로 전체 수급자 중 24%를 차지하였으며 공제인원과 비율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3~202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수는 2013년 23,042명으로 비중은 11% 정도였으나 2023년 24%로 증가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와 중복수급을 하는 경우는 2023년 36,504명이며 전체 수급자 중 4% 정도로 크지 않게 나타났으나, 공제인원은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2013~2023년간 추세를 살펴보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수는 2013년 7,452명, 비중은 2% 정도였으나 2023년에는 36,504명으로 4%를 차지함

<표 II -29> 중복수급 인원: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주택자금 관련 특별소득공제

(단위: 명, %)

귀속연도	주택청약 종합저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¹⁾		장기주택저당차입금 ²⁾	
		공제인원(A)	공제인원(B)	비율(B/A)	공제인원(C)
2013	302,490	32,042	11%	7,452	2%
2014	362,488	43,681	12%	9,972	3%
2015	440,871	54,309	12%	14,117	3%
2016	488,300	63,718	13%	16,501	3%
2017	550,119	77,831	14%	19,907	4%
2018	595,611	96,008	16%	19,447	3%
2019	690,048	138,072	20%	21,560	3%
2020	837,011	188,953	23%	26,283	3%
2021	954,251	240,722	25%	34,167	4%
2022	991,357	249,468	25%	34,080	3%
2023	978,471	233,270	24%	36,504	4%

주: 1) 연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혜자 중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공제인원을 의미

2) 연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혜자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공제인원을 의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본 조세특례와 중복수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1인당 공제금액은 본 조세특례에서의 1인당 공제금액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중복수급 정도는 통합한도에 비하여 크지 않음
- 2023년 기준 중복수급자의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1인당 공제금액은 2023년 1,066,164원 수준이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경우 3,948,279원으로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소득공제로 인한 1인당 공제금액이 393,102원이라는 것을 고려할 때, 관련된 두 소득공제의 경감 정도가 더 크게 나타남
- 두 가지 제도를 각각 중복수급하는 경우 평균적인 공제대상금액을 1인당 평균 공제액의 합을 통해서 추정해 보면 법적 통합한도에 미치지 않는 수준으로 보임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1인당 평균공제액의 합은(공제율 적용 시 58만원) 연 합산한도인 400만원에는 미치지 못함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받는 수급자의 1인당 평균공제액의 합은(공제율 적용 시 411만원) 연 합산한도인 600만~2,0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보임

<표 II -30> 중복수급 금액: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주택자금 관련 특별소득공제

(단위: 원)

귀속 연도	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임차자금 차입금 ¹⁾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²⁾		
	1인당 공제금액 (A)	1인당 경감세액	1인당 공제금액 (B)	1인당 경감세액	1인당 공제금액 합계 (C=A+B)	1인당 공제금액 (D)	1인당 경감세액	1인당 공제금액 합계 (E=A+D)
2013	356,849	38,938	909,386	99,229	1,266,235	2,142,168	233,745	2,499,017
2014	364,103	43,077	928,663	109,871	1,292,765	2,152,315	254,642	2,516,418
2015	473,999	55,480	947,415	110,892	1,421,415	2,108,311	246,771	2,582,310
2016	475,234	55,315	945,146	110,010	1,420,379	2,177,269	253,422	2,652,502
2017	456,703	53,218	971,053	113,154	1,427,756	2,345,689	273,336	2,802,391
2018	442,498	45,387	914,555	93,806	1,357,053	2,564,232	263,012	3,006,731
2019	427,354	43,674	888,986	90,850	1,316,340	2,754,883	281,536	3,182,237
2020	441,180	44,508	808,521	81,567	1,249,701	2,588,732	261,161	3,029,913
2021	444,285	45,195	794,917	80,862	1,239,202	2,820,812	286,945	3,265,096
2022	416,731	42,570	1,007,334	102,900	1,424,065	3,418,563	349,209	3,835,294
2023	393,102	37,997	1,066,164	103,055	1,459,267	3,948,279	381,640	4,341,382

주: 1) 연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혜자 중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1인당 공제금액 및 경감세액을 의미
 2) 연도별 주택청약종합저축 수혜자 중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를 동시에 수급하는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에 대한 1인당 공제금액 및 경감세액을 의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 이 외에도 본 조세특례와 정책목표가 유사하고 중복수급이 가능한 재정사업들이 존재하나 수혜대상 및 보조방식 측면에서 차이점이 있으며 보완관계에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복 재정지원사업으로는 주택구입에 대한 용자사업이 있으나 지원대상이 본 조세특례에 비하여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다는 점과 자금형성 유도보다는 구매자금을 대출 형태로 지원한다는 점에서 차이점 및 보완점이 있을 것으로 보임

-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소득 6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를 대상으로 최대 2억~3.2억원 대출
-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소득 7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또는 1주택 소유자를 대상으로 최대 3.6억~4.2억원 대출

<표 II -31> 주거안정을 위한 재정지원: 주택구입 및 전월세자금 금융지원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부처 및 회계	
주택 구입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생애최초 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는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는 연소득 8.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이 4.88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주택구입자금을 저금리(기간 및 소득별로 연 2.85~4.15%)로 최대 2억~3.2억원 이내 최장 30년 대출	국토부 (주택도시 기금)
	보금 자리론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대출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이 7년 이내인 신혼부부(결혼예정자) 8,500만원 이하, 미성년 자녀 1자녀 9천만원, 다자녀가구 1억원)이고 채무자와 배우자의 총 주택 보유 수가 본 건 담보주택을 제외하고 무주택 또는 1주택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자금을 우대금리(최대 1%p)를 적용하여 최대 3.6억원(다자녀 가구·전세사기 피해자 4억원, 생애최초 4.2억) 이내 대출	금융위 (일반회계)
전 월 세 자 금 지 원	버팀목 전세 자금 대출	부부합산소득 5천만원 이하(2자녀 이상 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종사자 및 재개발지역 이주자는 6천만원, 신혼부부인 경우 7,700만원까지 허용)이고 순자산 기준금액이 3.37억원 이하인 만 19세 이상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임차보증금의 70%를 저금리로 2년간(최장 10년) 수도권 1억 2천만원, 지방 8천만원 이내 대출	국토부 (주택도시 기금)

<표 II -31>의 계속

구분	지원대상	지원내용	소관부처 및 회계
버팀목 대출 보증	주택도시기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보증 대상자로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주택보유 수가 1주택 이내이고, 규제대상 아파트(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 소재 시가 3억원 초과 아파트)를 취득하지 않은 자로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세대주	임차보증금 수도권 7억원 이하, 지방 5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대출금의 90% 이내에서 보증지원 (보증한도는 보증신청인 개인별 연간소득금액 및 연간부채상환 예상액에 따라 다르게 적용)	금융위 (금융정책과)
주거 안정 월세 대출 ¹⁾	(공통요건) 부부합산 순자산 3.37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일반형) 우대형 외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최대 1,440만원(매월 최대 60만원 이내) 한도로 2년(최대 10년)간 월세자금 저금리 대출(우대형 연1.3%, 일반형 연1.8%)	국토부 (주택도시기금)

주: 1)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중앙)」,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11M.do?welfareInfoId=WLF00001063>, 검색일자: 2025. 6. 30.

자료: 홍범교·김진영(2017) <표 IV-5>를 바탕으로 복지로(<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elfareInfo/moveTWAT52005M.do>); 한국주택금융공사(https://www.hf.go.kr/ko/sub01/sub01_02_01.do#); 주택도시기금(<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재작성

3. 효과성 분석

가. 개요

- 본 연구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성에 대한 심층분석을 수행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 본 연구에서 정의하는 소득공제의 효과성이란 본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의미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유지하는 동기를 분석하고 소득공제가 주는 추가적인 효과를 살펴봄으로써 제도의 확대 혹은 축소가 가져올 수 있는 효과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 주택청약제도 자체가 자산축적 및 주택구매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지는 않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가 실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신규 가입 및 유지에 효과가 있는지를 이중차분법 등의 실증적 방법론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필요함
- 제도의 시행 전후로 임의 추출된 개인들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에 대한 정보 (계좌의 유무, 계좌가 있다면 얼마나 유지하고 있었는지 등)
 - 이상과 같이 임의 추출된 개인들의 기본정보(소득, 자산, 가구정보, 등) 및 소득공제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
- 이상과 같은 자료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실증적 방법론을 이용해서 제도의 효과성을 분석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음
- 거시적인 자료(주택청약종합저축 계좌수 등)만을 이용할 경우, 제도의 효과성을 거시경제 충격의 효과와 구별하기 힘들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설문조사를 이용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구조모형과 결합하여 효과성을 분석함
- 본 연구의 설문조사에서는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기대수익, 비용 등을 추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관적으로 느끼는 효과성의 유무를 묻는 질문에는 실제 행태와 다른 답변을 할 가능성이 있음
 - 또한 제도의 효과를 추정하기 위한 반사실적 분석을 위해서는 효과성의 유무보다 더 구체적인 정보들이 필요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및 납입액수에 더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주택청약저축의 효용(당첨 확률 및 당첨시 자본이득)과 비용에 대해 조사
 - 이상의 추정 결과를 간단한 구조모형에 대입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및 유지가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인센티브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살펴봄

- 구조모형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치가 어떠한 모수들에 의존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줌
- 구조모형의 모수들로는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수익률, 소득공제의 크기, 주관적으로 느끼는 당첨 확률 및 자산이득, 주택청약종합저축이 갖는 유동성 제약의 비용, 그리고 소득공제로부터 오는 가치 등이 들어감
- 추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제도개선과 관련한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
 - 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질 경우 해지율이 얼마나 늘어날 것인지, 소득공제 제도가 확대될 경우 얼마나 많은 비가입자들이 새로 가입할 것인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

나. 설문조사

- 본 조세특례 제도의 정책 대상자와 비대상자를 각각 550개 표본, 전체 1,100개 표본에 대한 조사를 수행
 - 조사는 (주)리서치앤리서치에 의해 수행되었으며,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설문조사 결과를 수득해 이를 평가
 - 2025년 3월 24일부터 2025년 4월 8일까지 온라인을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
-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며, 2024년 1년간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이 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책대상자로, 그 이외의 경우 정책 비대상자로 분류
 - 정책대상자 중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경우 수급자로 분류
 - 정책대상자 중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비수급자로 분류
- 설문 문항은 ‘A. 응답자 특성’, ‘B. 자산 및 부채’, ‘C. 주거’, ‘D.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으로 구성됨
 - 세부 항목은 다음과 같으며, 구체적인 설문지는 부록에 첨부

〈표 II -32〉 주요 설문조사 세부항목

구 분	세부항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기준 세대주 여부 • 2024년 기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 소유 유무 • 2024년 근로소득 유무 • 2024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여부 • 2024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대상자 여부 •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 월평균 개인 지출액 •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 지출액
자산 및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보유 여부 및 납입원금(현재가치) • 부채 보유 여부 및 원금(잔액)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입주 형태 • 주택 가격(시세) 또는 임차료 •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의견 • ‘집값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에 대한 의견 • ‘정부정책 등의 도움으로 원하는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에 대한 의견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및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형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연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유 •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 청약지원 시 당첨 확률 •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 시세와 비교) •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상 관련 가입 의향 •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 만약 소득공제 받지 못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의향 • 소득공제 혜택 받지 못한 이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소득공제제도 개편안에 대한 주택마련 및 제도 사용 도움 정도 •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자료: 저자 작성

1) 기초 통계

□ 응답자들의 기본적인 개인정보는 다음과 같음

- 남성의 비율(60.2%)이 더 높고, 평균 및 중위 연령값은 44세이며, 학력에서는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자의 비율(66.7%)이 가장 높았음
- 응답자의 대부분은 세대주였고(80.8%), 기혼자(52.4%)의 비율이 그 밖의 혼인상태보다 더 높았으며, 부부 2인과 자녀로 이루어진 가족 형태가 가장 많았음(44.4%)

<표 II -33> 응답자 특성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비중
전 체		(1,100)	100.0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50.0
	비대상자	(550)	50.0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33.5
	비수급자(대상자)	(181)	16.5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50.0
세대주 여부	세대주	(889)	80.8
	비세대주	(211)	19.2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33.6
	가입	(730)	66.4
성별	남성	(662)	60.2
	여성	(438)	39.8
연령	20세~29세	(100)	9.1
	30세~39세	(295)	26.8
	40세~49세	(327)	29.7
	50세~59세	(235)	21.4
	60세 이상	(143)	13.0
수도권	수도권	(726)	66.0
	비수도권	(374)	34.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5)	11.4
	2~3년제 대학	(128)	11.6
	4년제 대학	(734)	66.7
	대학원 석사 이상	(113)	10.3
혼인상태	미혼	(471)	42.8
	기혼	(576)	52.4
	별거·사별·이혼·기타	(53)	4.8
가구원수	1명	(331)	30.1
	2명	(215)	19.5
	3명	(281)	25.5
	4명 이상	(273)	24.8
자녀수	0명	(573)	52.1
	1명	(220)	20.0
	2명 이상	(307)	2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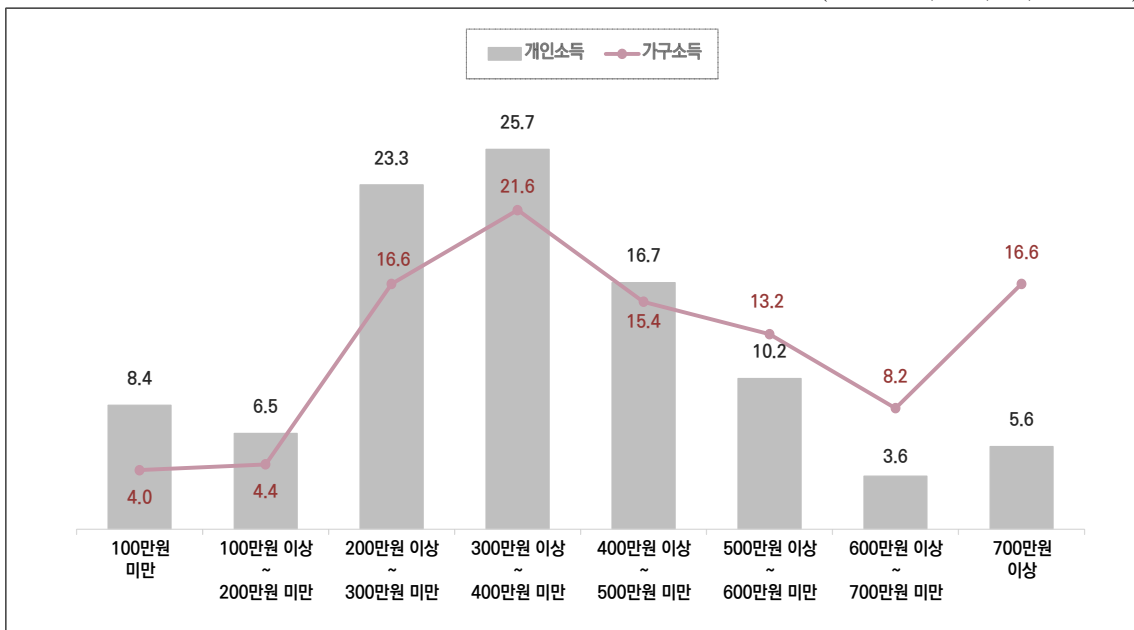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응답자들의 개인 및 가구소득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월평균 세전소득은 ‘300만~400만원’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또한 ‘300만~400만원’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세전 개인소득의 중간값은 ‘300만~400만원’, 가구소득의 중간값은 ‘400만~500만원’이었음²⁹⁾

[그림 II -6] 월평균 세전 개인 및 가구소득

(base 전체, n=1,100,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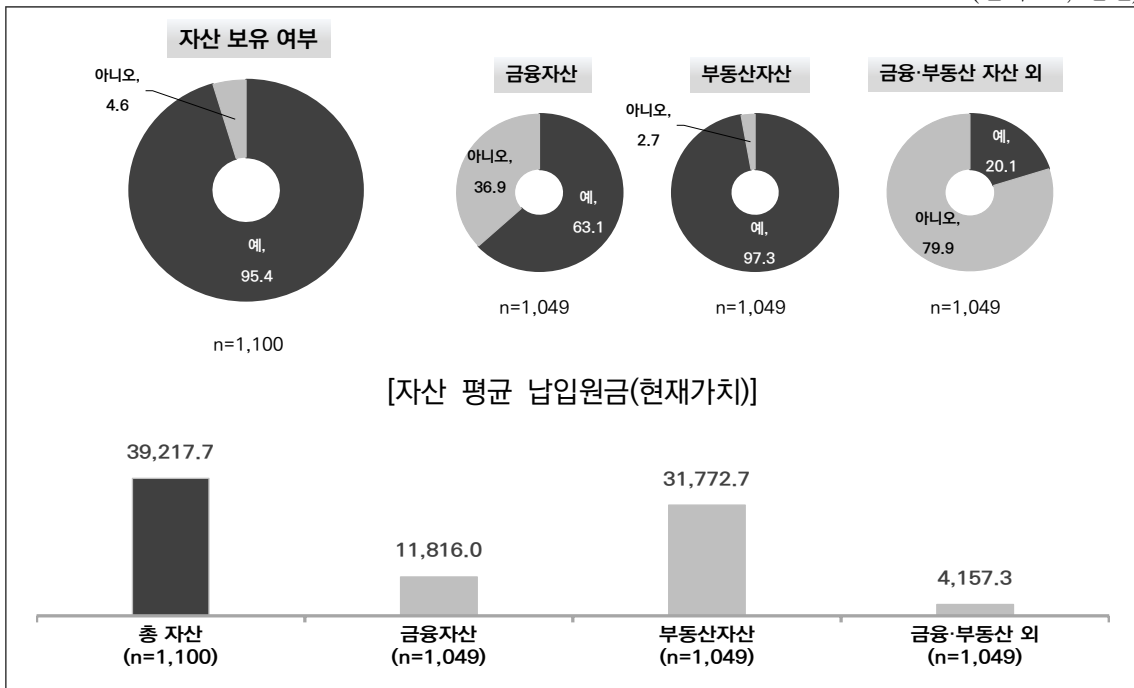
□ 응답자들의 자산 및 부채에 대한 정보는 다음과 같음

- 자산 보유 여부의 경우 응답자의 95.4%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자산 유형으로는 부동산 자산(97.3%)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자산(63.1%), 금융·부동산 외 자산(20.1%) 순으로 나타남
- 부채 보유 여부의 경우 응답자의 38.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부채 유형으로는 그 외 부채(44.5%)가 가장 많았고, 전세(월세) 보증금(42.6%), 주택구매(40.5%) 순으로 나타남
-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은 3억 9천만원, 부채의 평균은 1억 2천만원이었음

29) 2024년 중위가구소득은 473만원임.

[그림 II -7]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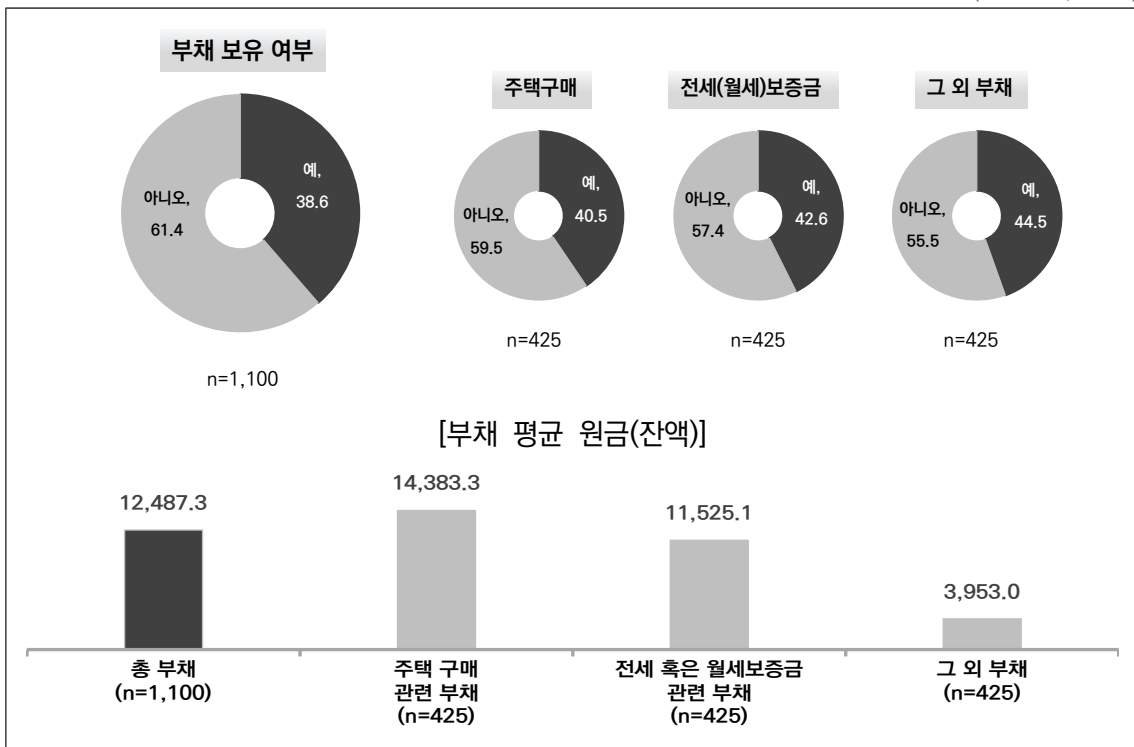
(단위: %, 만원)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 -8] 부채 보유 및 현황

(단위: %, 만원)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주거 관련

- 주택 입주 형태의 경우 자가(36.6%), 전세(31.3%), 보증금 있는 월세(24.2%)의 순서로 나타남
-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의 경우 전세(52.4%)의 비중이 가장 높았고, 비대상자는 자가(73.3%)의 비율이 높았음
 - 자가일 경우 평균 주택가격은 약 6억원, 전세의 경우 평균 주택임차료는 1억 9천만원으로 나타남

〈표 II -34〉 주택 입주 형태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기타
전 체		(1,100)	36.6	31.3	24.2	2.3	5.6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0.0	52.4	39.6	2.9	5.1
	비대상자	(550)	73.3	10.2	8.7	1.6	6.2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0.0	53.9	38.2	2.4	5.4
	비수급자(대상자)	(181)	0.0	49.2	42.5	3.9	4.4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73.3	10.2	8.7	1.6	6.2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47.0	21.9	21.4	3.2	6.5
	가입	(730)	31.4	36.0	25.6	1.8	5.2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표 II -35〉 평균 주택가격(시세) 및 임차료

(단위: 명, 만원)

구 분	주택가격(시세)		전세보증금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례수 ¹⁾	평균	사례수 ²⁾	평균	사례수 ³⁾	보증금 월세	사례수 ⁴⁾	평균		
전 체	(403)	60,166.6	(344)	18,888.6	(266)	4,371.4	47.7	(25)	35.8	
정책 대상 여부	대상자	(0)	-	(288)	18,395.7	(218)	4,222.4	47.1	(16)	32.6
	비대상자	(403)	60,166.6	(56)	21,423.6	(48)	5,048.4	50.3	(9)	41.6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0)	-	(199)	19,097.1	(141)	5,000.2	48.1	(9)	38.6
	비수급자(대상자)	(0)	-	(89)	16,827.5	(77)	2,798.1	45.2	(7)	25.0

<표 II -35>의 계속

(단위: 명, 만원)

구 분		주택가격(시세)		전세보증금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례수 ¹⁾	평균	사례수 ²⁾	평균	사례수 ³⁾	보증금	월세	사례수 ⁴⁾	평균
소득공제 수혜여부	비수급자 (비대상자)	(403)	60166.6	(56)	21,423.6	(48)	5,048.4	50.3	(9)	41.6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174)	55406.6	(81)	15,156.2	(79)	2,471.5	47.7	(12)	30.9
	가입	(229)	63783.4	(263)	20,038.2	(187)	5,174.1	47.7	(13)	40.4

- 주: 1) 자가 거주 응답자
 2) 전세 거주 응답자
 3)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4)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응답자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주거 관련 인식에 대해 척도형으로 질문한 뒤, 이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남

-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한 평균점수는 3.7점으로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음
 - 정책 대상자와 비대상자 간의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이는 현재 자가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 역시 자가를 구매해야 한다는 인식을 갖고 있음을 시사함
 - 주택청약에 가입한 사람의 평균이 더 높으며, 이는 응답자들이 자가를 소유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으로 주택청약을 이용하고 있을 수 있음을 의미
- ‘집값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2.6점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자와 비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자와 비대상자, 청약통장 가입자와 미가입자 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표 II -36> 주거 관련 인식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점)

구 분		사례수	자가 소유 필요 여부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전 체		(1,100)	3.7	2.6	2.8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3.7	2.4	2.8
	비대상자	(550)	3.7	2.8	2.8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3.8	2.4	2.8
	비수급자(대상자)	(181)	3.4	2.4	2.7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3.7	2.8	2.8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3.4	2.6	2.8
	가입	(730)	3.8	2.6	2.8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3) 주택청약종합저축 관련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의 경우 응답자의 66.4%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자의 가입률(74.7%)이 비대상자의 가입률(58.0%)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입 형태별로 살펴보면 대부분 일반형(86.2%) 가입자였음

<표 II -37>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

(단위: 명, %)

구 분	가입여부			사례수 ¹⁾	가입형태		총 납입액 (평균) ²⁾	
	사례수	예	아니오		일반형	창년우대형		
전 체		(1,100)	66.4	33.6	(730)	86.2	13.8	289.1만원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74.7	25.3	(411)	80.5	19.5	304.7만원
	비대상자	(550)	58.0	42.0	(319)	93.4	6.6	268.9만원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100.0	0.0	(369)	81.3	18.7	309.2만원
	비수급자(대상자)	(181)	23.2	76.8	(42)	73.8	26.2	265.0만원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58.0	42.0	(319)	93.4	6.6	268.9만원

주: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2) 2024년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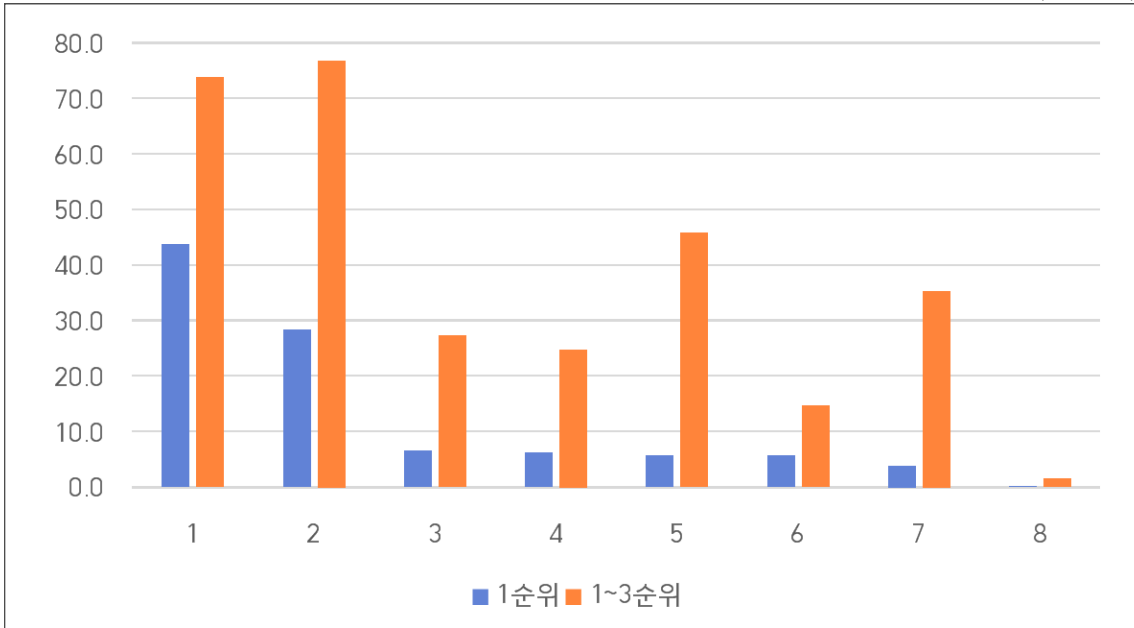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4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연 납입액 평균은 289.1만원으로 나타남
 - 가장 많은 23.15%의 사람들이 연 600만원(월 50만원)을 납부하고 있고, 다음으로 많은 15.34%의 사람들이 연 120만원(월 10만원)을 납부하고 있음
 - 월 10만원의 경우, 공공분양에 적용되는 납입 인정액에 맞춰서 납부하는 것으로 판단
 - 세액공제 한도인 연 300만원에 맞춰 납부하는 사람의 비율은 4.38%였으며, 이는 세액공제의 크기에 맞춰 납입액을 정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음을 의미함
 - 제도의 구조로부터는 이유를 찾을 수 없는 금액인 240만원, 500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비율이 각각 3.70%, 6.16%이기 때문에, 연 300만원을 납부하는 사람의 비율이 특별히 높다고 볼 수 없음
 - 소득 대비 비율의 경우 가입자들은 평균적으로 소득의 6.8%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함
 - 자산 비율로 보면 가입자들은 자신이 가진 금융자산의 9.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일 년 동안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함
 - 현재 가입자들의 평균 가입기간은 10년이고, 가입 연도의 중윗값은 2017년임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로 나타났으며(43.7%), 그 다음은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집을 구하기 위해서’로 나타남(28.4%)
 - 소득공제 등의 혜택을 이유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대답한 비율은 5.6%로 높지 않았음(7가지 이유 중 5번째)
 - 단 1~3순위 중의 하나로 소득공제등의 혜택을 선택한 사람의 비율은 45.8%로, 어느 정도 높은 편(7가지 이유 중 3번째)
 - 이는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하는 주요 이유는 아니지만 소득공제를 혜택으로 인지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꽤 높음을 의미함

[그림 II -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이유

(단위: %)



- 주: 1.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2.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3. 이자율이 높아서
 4. 부모님 등의 권유로
 5.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서
 6. 부모님 등이 가입해 두었기 때문에
 7.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적금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8. 기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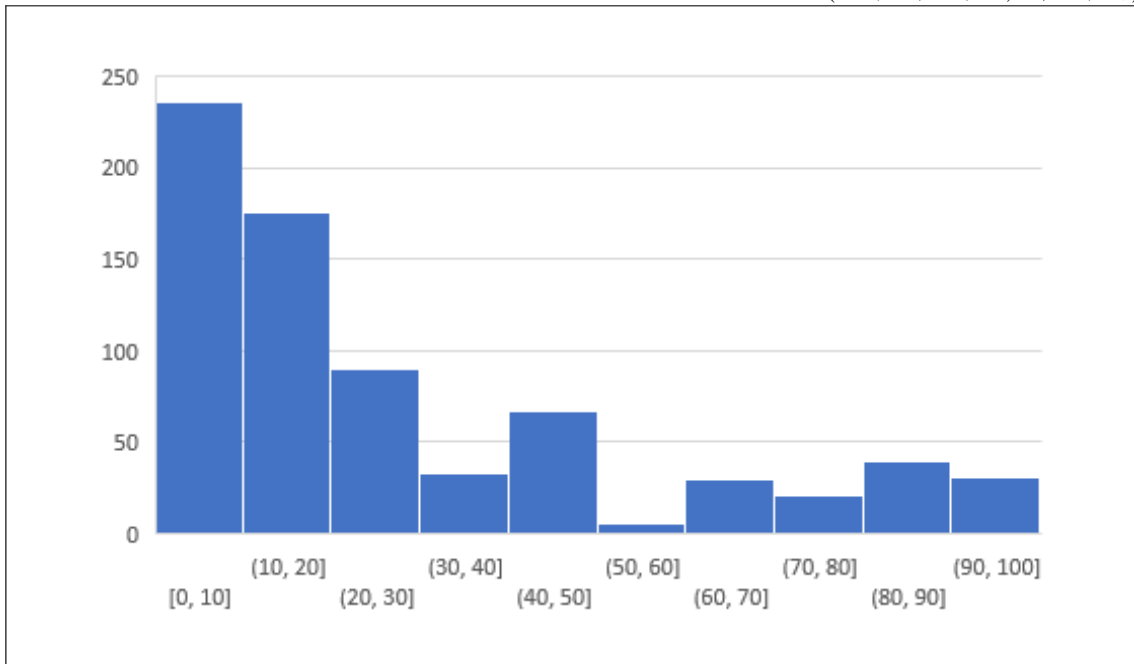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청약의 당첨확률은 19.46%, 미래에 한 번이라도 청약을 사용하게 될 확률은 40.05%로 나타났으며, 이때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적정 시세 대비 집값은 68.76%였음³⁰⁾
 - 11.64%의 사람들은 당첨확률이 0%라고 답했고, 당첨확률이 20% 이하라고 답한 사람의 비율은 70% 이상
 -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당첨확률의 중간값은 평균보다 훨씬 작은 10%였음
 - 미래에 한 번이라도 청약을 사용하게 될 확률에 대해서는 평균과 중간값이 모두 40%

30) 상위 5%의 답변을 제외한 평균값으로, 이는 적정 시세 대비 130% 이상의 값을 지불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답변을 제외한 것임.

[그림 II -10] 주관적으로 기대하는 자본이익의 크기(적정 시세 대비 할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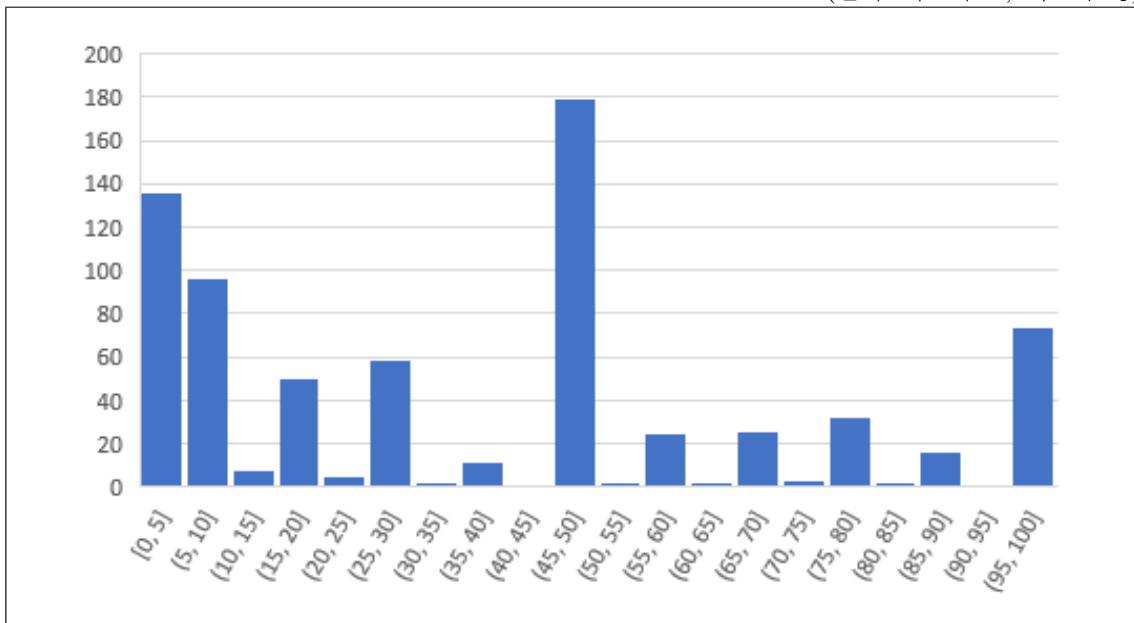
(단위: 가로축 %, 세로축 명)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그림 II -11] 미래에 한 번이라도 청약에 사용하게 될 확률

(단위: 가로축 %, 세로축 명)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청약에 통해 얻게 되는 아파트의 가격을 5억원으로 가정할 경우,³¹⁾ 가입자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청약의 기대 시세차익은 약 1억 5,600만원이며(5억원×(100-68.76)%로 계산), 이는 소득공제의 가치보다 훨씬 더 큼
 - 자본이득을 실현할 확률이 40%이고 평균적인 주택청약종합통장의 가입기간이 10년임을 고려했을 때, 자본이득의 현재가치는 대략 4,630만원에 달함
 - ‘자본이득×실현확률 40%×10년 할인율’로 계산했으며, 할인율은 2024년 말 한국은행 기준금리(3%)를 적용
 - 이는 가입자들이 갖고 있는 평균적인 인식하에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위험 및 유동성 제약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자본이득의 현재가치가 상당히 높음을 의미함
 - 한편 10년간 소득공제의 상한액인 3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것의 현재가치³²⁾는 620만원가량
 - 이는 소득공제를 최대한으로 받는 것을 가정하더라도 소득공제의 가치는 평균적으로 가입자들이 청약저축을 통해 기대하는 자본이득의 1/4가량에 불과함을 의미함
 - 단 위의 계산은 직관을 얻기 위한 단순한 계산이며, 구체적인 분석은 구조모형을 통해 이루어질 예정

- (비가입자 대상) 무주택자이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가장 큰 이유는 여유자금 부족(56.51%)이었으나, 청약의 자본이득이 높지 않기 때문에 (당첨확률 혹은 시세차익이 낮음) 가입하지 않았다는 사람의 비율도 상당히 높은 편이었음(34.93%)
 - 70% 이상의 사람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얼마이든 관계없이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답변함
 - 이 비율은 여유자금의 부족을 이유로 청약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의 경우가 조금 더 높았으나(74.19%), 자본이득이 낮아서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 중의 비율도 크게 다르지 않았음(70.59%)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이 높아진다면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들은 이자율이 현재보다 4~5%p 높아져야 한다고 답변

31) 이는 설문조사에서 조사된 자가거주자의 평균 아파트 가격보다 낮음.

32) 제도의 대상이 되는 7,000만원 이하 구간에서의 최대 한계세율인 24% 적용

- 합리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했을 때 확정적으로 작은 이익을 추가하는 것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음을 의미

4) 소득공제제도 관련

- (소득공제제도의 인지) 응답자의 78.2%가 제도를 인지하고 있다고 답하여, 본 제도의 인지도가 제도의 효과성을 저해하는 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인지하고 있다고 답변한 응답자 78.2% 중 61.7%는 제도를 인지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수급요건 및 공제액은 잘 모른다고 답했고, 제도를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16.5%였음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정책 대상자로 한정할 경우, 제도의 인지도는 84.8%로 증가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자로 한정할 경우, 비슷하게 84.5%로 증가함
 - 제도의 대상자들이 제도를 더 잘 인지하고 있는 모습을 보임
 -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인지도는 낮으므로, 제도 개혁의 효과성은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음

〈표 II -3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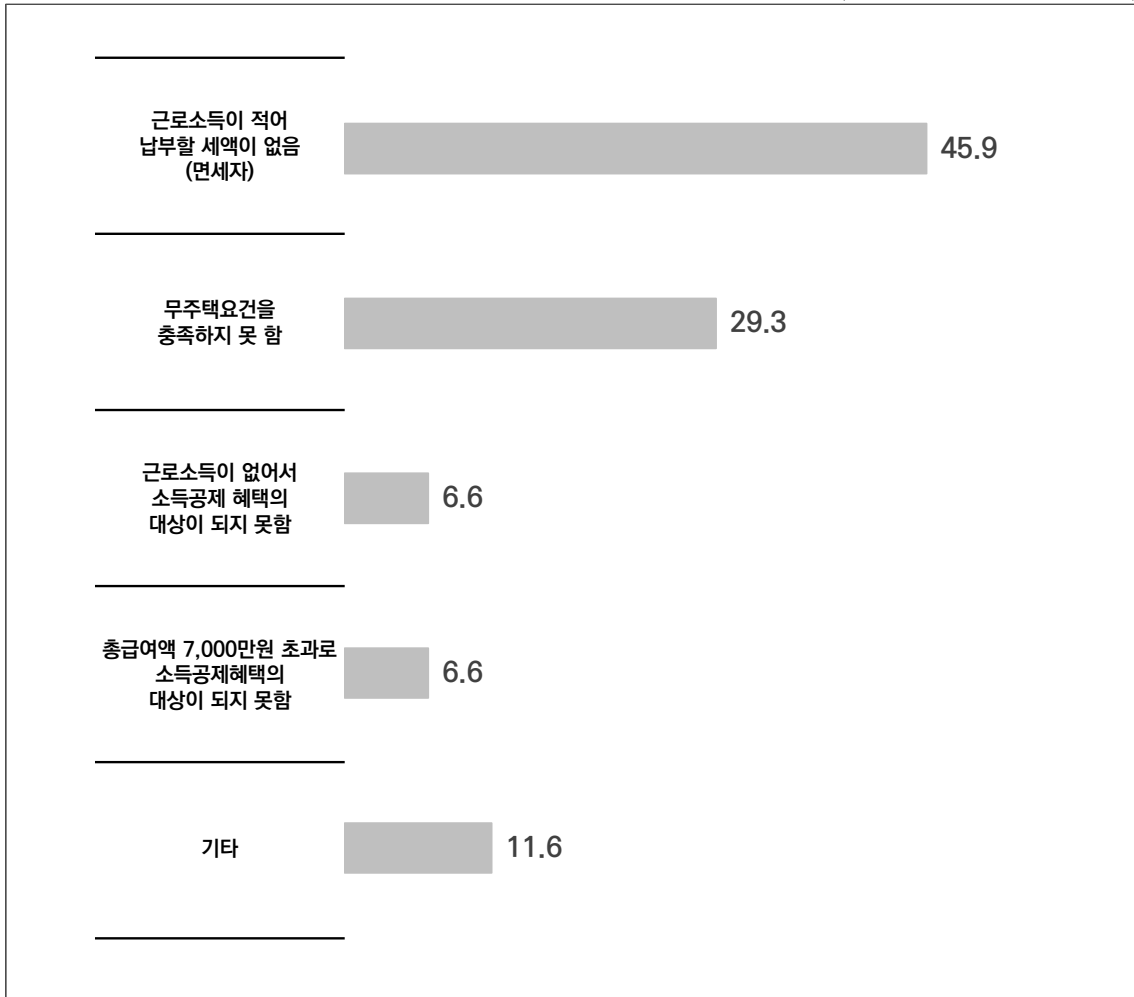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제도에 대해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제도를 알지 못함
전 체		(1,100)	16.5	61.7	21.7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17.5	67.3	15.3
	비대상자	(550)	15.6	56.2	28.2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23.0	77.0	0.0
	비수급자(대상자)	(181)	6.1	47.5	46.4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15.6	56.2	28.2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10.3	55.7	34.1
	가입	(730)	19.7	64.8	15.5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득공제제도의 이용) 응답자의 33.6%가 제도의 혜택을 경험했다고 답변함
- 제도를 인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음: 근로소득이 없거나 적어서 납부할 세액이 없음(41.3%), 유주택자여서(36.4%), 총급여액이 7,000만원 초과(19.3%)
 - 혜택을 받았던 사람들의 절반가량(48.2%)은 소득공제가 사라질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서 소득공제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을 고려했을 때, 실제 해지로 이어지는 비율은 이것보다 훨씬 작을 것으로 판단됨

[그림 II -12]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base 전체, n=181,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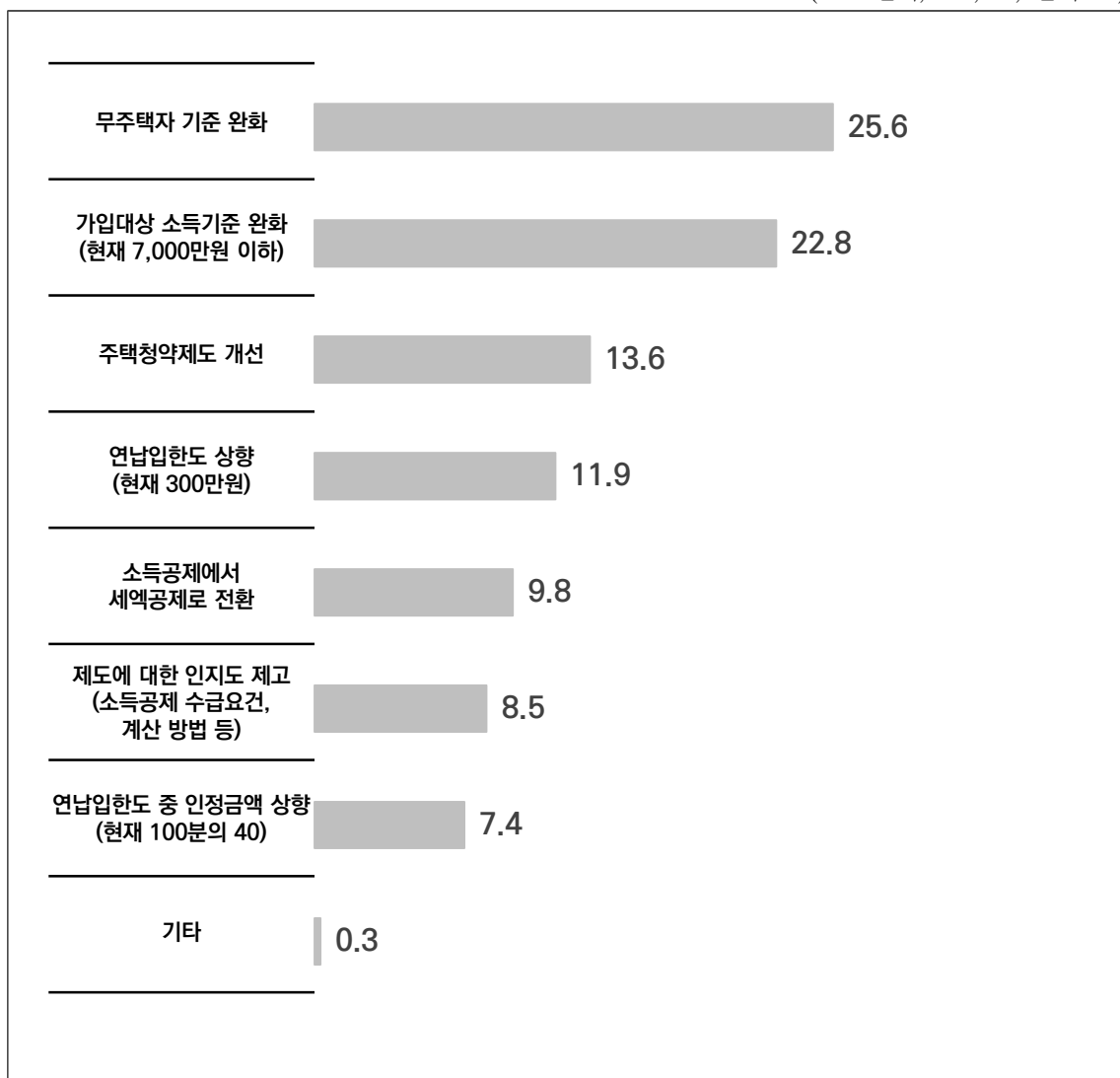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소득공제제도의 개선) 응답자들은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
 - 무주택자 기준 완화(25.6%), 7,000만원 소득기준 완화(22.8%), 주택청약제도 개선(13.6%)의 순서
 - 정책대상자와 비대상자 모두 무주택자 기준 완화를 가장 높은 비율로 선택함 (각각 22.5%와 28.7%)

[그림 II -13]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base 전체, n=1,100, 단위: %)



자료: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구조모형을 통한 소득공제의 효과성 분석

1) 모형 개괄

□ 설문조사 결과를 정리하면 구조모형이 가져야 하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을 생각할 수 있음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치는 당첨 시의 시세차익으로부터 오는 자본이득과 이자 및 소득공제를 통한 이득, 그리고 유동성 제약 등으로 인한 비용으로 구성
 - 자본이득은 납입액과 크게 관련이 없지만, 이자 및 공제를 통한 이득은 납입액에 따라 증가
- 자본이득에 대한 주관적 기대치는 개인마다 크게 다름

□ 이상의 특징들을 반영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관적인) 가치 V 를 청약 당첨 시의 (기대) 시세차익 V_a ,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 V_f , 유동성 비용 C 의 합으로 표현함³³⁾

- V_a : 청약 당첨 시의 (기대) 시세차익으로부터 오는 가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남

$$V_a = \frac{\pi\eta P_H}{r+s+\pi}$$

- r : 이자율(미래 할인율), s :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율
- π : 주택 청약 저축 당첨률, η : 시세차익의 크기(시가대비 %), P_H : 평균 주택 가격
- 당첨 여부 및 시세차익의 크기는 납입액과 관련이 없다고 가정

- V_f : 이자, 소득공제 등으로부터 오는 가치로 다음과 같이 나타남

$$V_f = \frac{d(r_e - r)}{(\delta + r - r_e)(r + \delta)} + A_0 \frac{r_e - r}{\delta + r - r_e} + \frac{T}{r + \delta}$$

- r_e : 주택 청약 저축의 이자율, d : 청약저축 납입액, δ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당첨 혹은 해지율 ($\delta = s + \pi$), A_0 : 현재 청약저축계좌 누적금액, T : 소득공제 금액

33) 구체적인 도출과정은 부록에 기술함

- C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유지비용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고 가정

$$C = \frac{c_0}{2} d^2, (c_0 > 0)$$

- 유지비용은 납입액이 클수록 증가(비유동성 증가)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조건은 $V \equiv V_a + V_f - C \geq 0$ 으로 표현됨

- 개인적인 선호의 이질성은 따로 고려하지 않음

- 본 연구에서는 개인들이 설문조사에서 응답한 시세차익의 크기 및 당첨확률 등으로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를 추정했으므로, 이는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로 해석해야 함에 유의

- 시세차익 및 확률에 대해서 개인들이 편향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이렇게 추정된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는 시장에서 합리적으로 계산된 가치와 다를 수 있음

- 주택청약저축의 가입과 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주택청약저축에 대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가치이므로 설문조사를 통해 이를 추정함

- 개인들은 (T, π, η, c_0) 에 대해서 서로 다른 값을 갖고, 나머지 모수들은 공유한다고 가정

- 개인별로 이질적인 모수: 소득공제의 크기,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자본이익의 크기(확률 및 시세차익), 유동성 비용

- 공통적인 모수: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이자율,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율, 평균적인 주택가격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개인이 느끼는 청약의 가치 V 를 구한 후, 이를 이용하여 두 가지 반사실적인 분석을 수행

- 본 소득공제가 없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것인가

- 본 소득공제의 대상자 혹은 혜택이 확대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새롭게 가입할 것인가

2) 모수 설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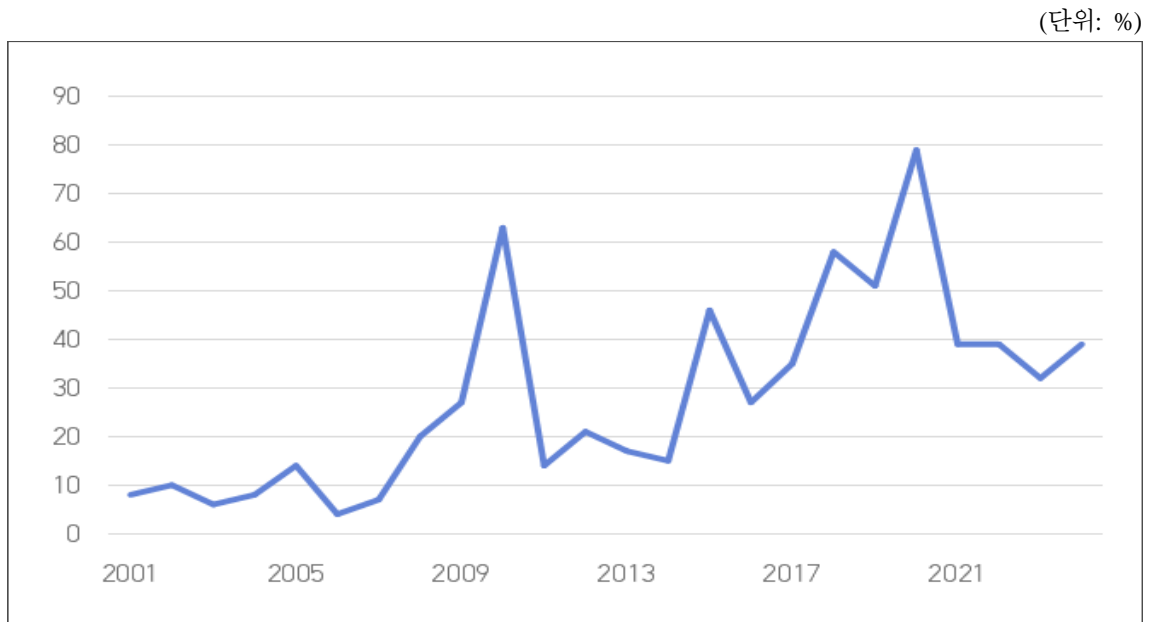
-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모수는 다음과 같이 설정함
 - (당첨률 + 해지율)의 평균은 가입연도 분포로부터 추정함
 -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율은 상품마다 다르나, 일반적으로 한국은행 기준금리보다 0.5~1%p가량 더 높아 보수적으로 설정
 - 이 값이 클수록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중에서 소득공제도가 차지하는 부분이 더 작아짐

<표 II -39> 모수 설정

모수	의미	수치	기준
r	이자율	0.03	한국은행 기준금리(2024년 말)
s	청약통장 해지율	0.0325	(당첨률 + 해지율)의 평균 = 0.0909
r_e	주택청약통장 이자율	0.035	주택청약저축의 가산금리 0.5%p
P_H	평균적인 주택가격	5억 9천만원	2024년 청약주택 평균 분양가 ¹⁾

주: 1) 60제곱미터 이상 85제곱미터 이하(한국부동산원)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 -14] 가입연도의 분포



주: 추세선: $y = 6.8281e^{0.0909x}$
 자료: 저자 작성

- 개인별로 이질적인 모수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함
 - 주택청약저축 납입금액 d
 - 2024년의 실제 납입금액으로 설정
 - 소득공제 금액 T
 - 정책 비수급자의 경우 0으로 설정
 - 정책 수급자의 경우 한계세율 15%를 적용하여 $T = \min\{d, 300\} \times 0.15$ 로 설정³⁴⁾
 - 주택청약저축의 (주관적인) 당첨률 π
 - ‘미래에 청약저축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될 확률’에 대한 답변 x 에 대해서 $\frac{\pi}{\pi+s} = x$ 를 만족하도록 설정
 - 확률에 대한 답변이 90% 이상일 경우 90%로 설정함
 - 시세차익의 크기 η
 - 관련 설문 답변으로 직접 설정
 - 시세 대비 100% 이상의 가격으로 청약 주택을 구매할 것이라는 답변을 한 사람들의 경우 $\eta = 0$ 으로 설정
 - 유동성 비용 관련 모수 c_0
 - 주어진 모수들하에서 2024년 실제 납입금액 d 가 최적이 되도록 하는 값으로 설정
 - 청약저축계좌의 현재잔고 A_0
 - 실제로 관측할 수 없으므로 2024년 납입금액 d 와 청약저축계좌 유지기간인 τ 를 이용하여 설정함
 - 구체적으로 과거 τ 기간 동안 d 만큼 꾸준히 납입하면서 r_e 의 이자율로 적립한 금액의 $z\%$ 라고 설정했으며, $z\%$ 는 A_0 의 평균이 2024년 말 기준 주택마련저축의 평균잔고액 382만원과 일치하도록 설정($z = 9.19\%$)

3) 분석 결과

- 본 모형을 통해 추정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가입자들이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주택청약저축의 총 가치는 4,637만원이었음

34) 소득 7천만원 이하 구간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계세율 15%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

- 미래 자본이익의 가치 4,250만원과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 651만원, 유동성 비용 264만원으로 이루어짐
 - 대부분의 가치가 미래 자본이익의 가치로부터 도출
 -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가 유동성 비용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은 많은 가입자들이 월 1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을 납입하고 있다는 사실로부터 도출됨
- 주택청약저축의 주관적인 가치는 개인별로 상당히 이질적임(표준편차가 큼)

<표 II -40> 모형추정 결과

(단위: 만원)

구분	의미	평균	표준편차
V	주택청약저축의 총 가치	4,637	5,809
V_a	미래 자본이익의 가치	4,250	5,874
V_f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	651	711
C	유동성 비용	264	274

자료: 저자 작성

-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 중에서 소득공제의 가치가 차지하는 비중은 크지 않음
- 전체 응답자들 대상으로 계산한 소득공제의 현재가치는 134만원으로,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 V_f 의 20.6%,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V 의 3.0%로 나타남
 - 소득공제를 수급받은 사람에 한정할 경우, 소득공제의 현재가치는 314만원으로,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 V_f 의 37.0%,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V 의 6.2%로 나타남

<표 II -41> 모형추정 결과

(단위: 만원)

대상	의미	평균	
전체	V	주택청약저축의 총 가치	4,637
	V_f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	651
	$T/(r+\delta)$	소득공제의 가치	134
소득공제 수급자	V	주택청약저축의 총 가치	5,091
	V_f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	849
	$T/(r+\delta)$	소득공제의 가치	314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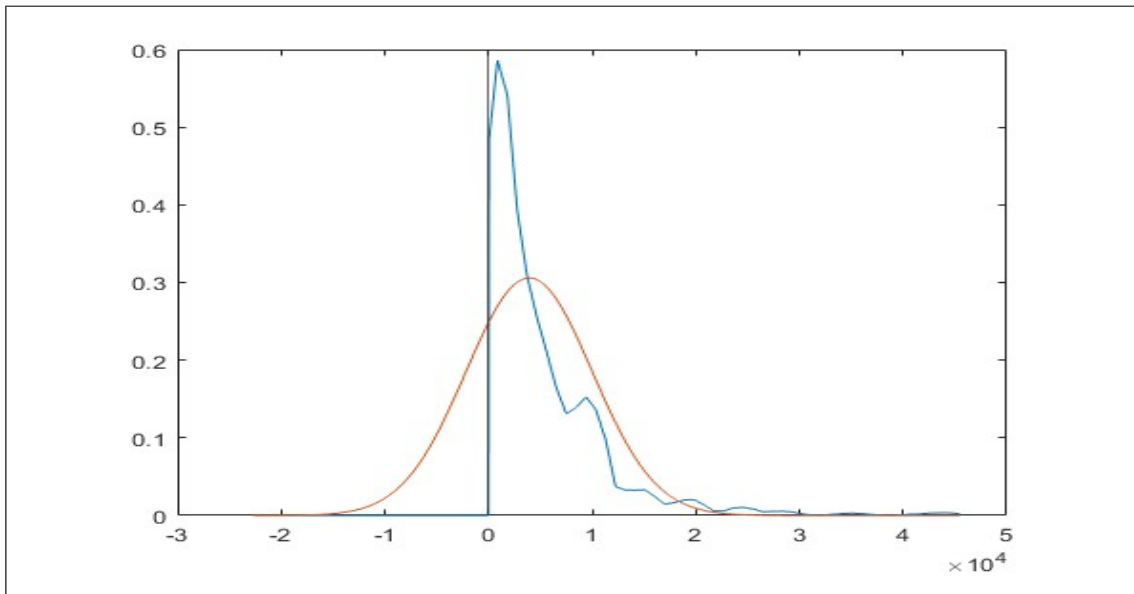
- 이상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본 소득공제 제도의 효과성을 살펴보기 위한 두 가지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
 - (반사실적 분석 1) 본 소득공제가 사라졌을 때 해지율이 얼마나 높아질 것인지 추정
 - (반사실적 분석 2) 본 소득공제가 일정 수준 확대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택청약종합저축을 가입할 것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의 두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분석을 수행
 - 시나리오1: 소득기준 혹은 무주택자 조건 완화를 통한 정책 대상자의 확대
 - 시나리오2: 연간 납입한도의 상향

- (반사실적 분석 1) 소득공제의 혜택이 완전히 없어질 경우 주택청약 가입자의 약 3.84%가 해지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추정된 주택청약의 가치에서 모든 사람의 소득공제 액수 T 가 0이 되었을 때 $V < 0$ 이 되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함
 - 이는 소득공제의 혜택이 사라지는 것이 다른 모형의 모수들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계산된 값임
 - 이 수치는 설문조사에서 소득공제가 사라질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를 고려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한 사람(48.2%)의 8% 정도에 해당

- (반사실적 분석 2) 반사실적 분석2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자료에서 관측되지 않는 주택청약저축 비가입자들의 V 를 추정해야 함
 - 주택청약저축 가입자들의 V 의 분포는 $V=0$ 을 기준으로 좌측절단(Left-Censoring)된 분포이므로,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정규분포로 근사
 - 비가입자 중에서 주택청약저축이 제공하는 수익률과 관계없이 가입할 의향이 없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제외하고, 수익률이 높아질 경우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대답한 사람들은 $V < 0$ 의 값을 갖는다고 가정하여 추정함

[그림 II -15]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V의 분포

(단위: 만원)



주: 파란선은 관측된 분포, 빨간색은 Tobit 모형을 이용하여 정규분포로 근사한 분포임
자료: 저자 작성

- (반사실적 분석 2: 시나리오 1) 정책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 비가입자 중의 20%가 대상자 확대의 수혜를 받는다고 가정할 경우 현재 비가입자의 1.27% 정도가 주택청약저축에 새롭게 가입할 것으로 추정됨
 - 대상자 확대를 통해 얻게 되는 소득공제의 크기가 현재 소득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소득공제 액수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의 결과임
 - 소득이나 무주택자 조건 등을 완화할 경우 대상자 확대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더 부유한 사람들일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소득공제의 현재 가치가 더 높을 수 있으므로, 이상의 추정치는 보수적인 추정치로 판단됨

- (반사실적 분석 2: 시나리오 2) 연간납입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할 경우, 현재 비가입자의 1.5% 정도가 주택청약저축에 새롭게 가입할 것으로 추정됨
 - 현재 소득공제 혜택을 받고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계산한 연간 납입한도 상향의 효과를 비대상자에게 모두 적용했을 때,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들의 비율을 계산
 - 현재 비가입자들의 경우 가입하더라도 소득공제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이상의 추정치는 어느 정도 과장된 추정치일 것으로 판단됨

4) 강건성 분석

- 본 절에서는 이상의 추정 결과가 미래 자본이익 및 이자수익과 연관된 모형의 모수들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에 대한 강건성 분석을 수행함
 - 현재 자본이익의 크기는 개인이 주관적으로 답변한 청약의 당첨확률 및 시세 차익을 이용해서 계산했으나, 이렇게 추정한 자본이익은 실제보다 크게 추정 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자본이익의 크기가 작을 때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
 - 주택청약저축의 수익률과 시장 이자율의 차이가 여러 가지 다른 값을 가질 때 결과들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살펴봄
 - 다른 모수들 하에서 두 가지 반사실적 분석을 수행
 - 분석 1: 소득공제가 없어졌을 때 해지하는 비율
 - 분석 2: 연간 납입한도를 600만원으로 상향했을 때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의 비율

- (강건성 분석 1) 미래 자본이익의 크기가 현재의 30%, 50%, 70%에 해당한다고 가정했을 때 반사실적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 1) 소득공제가 없어졌을 때 해지하는 비율 3.84%는 변하지 않는데, 이는 해지할 사람들은 미래 자본이익에 대한 기대가 이미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
 - (분석 2) 기대 자본이익의 크기가 현재보다 더 작다고 가정할 경우 제도 확대의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남
 - 이는 주택청약저축의 가치에서 소득공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더 커짐에 따라 같은 정도의 소득공제제도 확대가 주택청약저축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비율적으로 더 크기 때문임

<표 II -42> 강건성 분석 1

(단위: %)

	현재 대비 기대 자본이익의 크기			
	30%	50%	70%	100%
분석 1	3.84	3.84	3.84	3.84
분석 2	5.27	3.08	2.17	1.50

자료: 저자 작성

- (강건성 분석 2) 수익률과 시장이자율의 차이를 각각 0.3%p, 0.5%p(현재), 0.7%p로 설정하고 수행한 반사실적 분석의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분석 1) 이자율 차이가 클수록 소득공제가 없어졌을 때 해지하는 사람의 비율이 작아짐
 - 이자율 차이가 0.3~0.7%p일 때, 해지율은 7.12~0.82%로 크게 변하는 모습을 보임
 - (분석 2) 이자율 차이가 클수록 새롭게 가입하는 사람의 비율이 커지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음
 - 단 이 분석은 이미 가입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시장 이자율하에서 선택을 했었다고 가정하고 추정된 모형을 통해 계산한 결과이므로, 제도 변화 등으로 인해 현재 상태에서 이자율이 변하는 것의 효과로 해석할 수는 없음

〈표 II -43〉 강건성 분석 2

(단위: %)

	주택청약저축과 시장 이자율 간의 차이		
	0.3%p	0.5%p	0.7%p
분석 1	7.12	3.84	0.82
분석 2	1.48	1.50	1.52

자료: 저자 작성

라. 결론

- 본 연구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성을 설문조사 및 구조모형을 통해 분석함
 - 본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주택청약제도 자체가 자산축적, 주택구매와 같은 거시변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분석은 본 연구의 범위를 벗어남
- 설문조사의 결과, 청약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고(약 66%),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70% 이상), 인지도가 낮아서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16.5%) 제도의 작은 개혁은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추정 결과,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는 4,637만원이었고, 그중에서 대부분인 4,250만원은 자본이익에서 도출되었으며, 소득공제의 가치는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중 3%만을 차지함
 - 소득공제를 수급받은 사람에 한정할 경우는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6.2%로 나타남
 - 이는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저축의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음을 의미
- (반사실적 분석 1) 소득공제 제도가 없어질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가입자의 비율은 3.84%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대 자본이익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었음
 - 이는 해지하는 선택을 하는 가입자들은 이미 기대 자본이익이 0이라고 생각하는 가입자들이기 때문임
 - 이 수치는 설문조사에서 소득공제가 사라질 경우 해지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의 8% 정도에 해당함
- (반사실적 분석 2) 소득공제의 대상자 혹은 혜택이 확대되었을 때 추가적인 가입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소득공제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 비가입자의 20% 정도가 추가적으로 대상자 확대의 혜택을 받을 경우, 현재 비가입자의 1.27% 정도가 새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 비가입자의 1.5% 정도가 새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

Ⅲ.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Ⅲ.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 제도 운영 현황

가. 제도 개요 및 수급 현황

- (도입 목적)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는 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에 대한 비과세 제도로서 노인·장애인·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가 어려운 소외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도입됨
- 2014년 10월 법 개정 시 중복되는 과세특례 상품을 조정하기 위해 기존의 생계형 저축이라는 명칭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변경(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과 통합)하고 세제지원을 강화함

<표 Ⅲ-1> 기존 저축지원 상품과의 비교

구 분	비과세종합저축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근거조문	「조특법」 제88조의2	「조특법」 제88조의2	「조특법」 제89조
도입연도	2015. 1. 1. 명칭 변경 (2000. 10. 21.)	2000. 10. 21.	1999. 12. 28.
일몰기한	2025. 12. 31.	2015년부터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재설계	2014. 12. 31.
지원대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65세 이상 거주자 • 장애인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 등록 상이자 • 기초생활수급자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5·18민주화운동부상자 	20세 이상

<표 III-1>의 계속

구 분	비과세종합저축	노인·장애인등의 생계형 저축	세금우대종합저축
세제혜택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이자·배당소득 9% 분리과세
납입한도	5천만원	3천만원	• 20세 이상: 1천만원 • 60세 이상, 장애인, 독 립유공자 등: 3천만원
의무납입 기간	-	-	1년 이상 가입

자료: 정다운·정재현(2022), p. 30, <표 II-1>을 바탕으로 재구성

□ (정책대상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1인당 저축원금과 「조특법」 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함

○ 정책대상자는 다음과 같음

- ① 65세 이상인 거주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④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⑦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비과세종합저축의 범위 및 수혜요건) 비과세종합저축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을 의미하며, 수혜요건을 만족하는 저축자가 가입 당시 비과세 적용을 신청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됨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보험·공제·증권저축·채권저축 등 포함)일 것
 -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및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함

□ (수혜내용)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함

-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 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함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함(「조특령」 §82의2②)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동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령」 §82의2⑤)
 - 「조특법」 제88조의2에 따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계좌의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기준금액을 초과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함(「조특법」 제129조의2)

□ (제도 연혁) 2015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제도로 명칭을 변경한 이후 정책대상자 및 저축한도, 소득요건 등을 개정함

- 2015년부터 정책대상자를 60세 이상 노인에서 65세 이상 거주자로 변경하였으며, 저축한도를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증액함
- 2020년부터는 새로운 소득요건이 추가되었는데,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

<표 III-2> 주요 연혁

개정일	주요 변경사항
2000. 10. 21.	○ 65세 이상의 노인·장애인 등의 2천만원 이하 저축(생계형 저축)의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
2000. 12. 29.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도 대상에 포함
2004. 07. 26.	○ 65세 이상 노인을 60세 이상 노인으로 대상 확대 ○ 저축한도: 2천만원 → 3천만원으로 인상
2004. 12. 31.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도 대상에 포함
2006. 12. 30.	○ 60세 이상의 노인을 남자는 60세 이상, 여자는 55세 이상으로 대상 확대 ○ 일몰조항 신설: 2008년 12월 31일까지 가입
2008. 12. 26.	○ 가입대상 연령을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 ○ 일몰연장: 2011년 12월 31일까지 가입
2011. 12. 31.	○ 일몰연장: 2014년 12월 31일까지 가입
2014. 12. 23.	○ 명칭 변경(노인·장애인 등의 생계형 저축 → 비과세종합저축) ○ 기존의 세금우대종합저축(2014년 말 일몰 종료)을 비과세종합저축으로 통합 ○ 60세 이상의 노인을 65세 이상 거주자로 대상 조정 ○ 저축한도 증액: 3천만원 → 5천만원으로 인상 ○ 일몰연장: 2019년 12월 31일까지 가입
2019. 12. 31.	○ 소득상위계층 가입을 제외하는 소득요건 추가 - 직전 3개 과세기간 동안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일몰연장: 2020년 12월 31일까지 가입
2020. 12. 29.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 본 조의 과세특례 적용을 배제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법 제129조의2로 이관하여 정비 ○ 일몰연장: 2022년 12월 31일까지 가입
2021. 12. 28.	○ 비과세종합저축소득 범위를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서 “이자소득, 배당소득 및 금융투자소득”으로 변경 - 다만 금융투자소득 합산 규정은 2025. 1. 1.부터 시행(부칙 (2021. 12. 28. 법률 제18634호)) ○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는 금융투자소득에 대하여 본 조항을 적용받지 아니할 것을 신청한 경우, 『소득세법』 제87조의4를 적용한다는 조항을 신설(『조특법』 제88조의2 ②항 신설)
2022. 12. 31.	○ 일몰연장: 2025년 12월 31일까지 가입

자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검색일자: 2025. 6. 30.

□ (조세지출 규모) 조세지출예산서상 동 항목 조세지출 규모는 2023년 5,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준이며, 이후 규모도 2023년 대비 2배 정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조세지출 규모는 2014년 4,434억원을 기록한 이후 3,000억원대 수준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2022년에는 2,554억원까지 규모가 축소됨
- 2023년에는 조세지출 규모가 5,000억원대로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2024년부터는 1조원 이상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5년 전망치는 1조 1,929억원임
- 2023년의 조세지출 규모 확대는 직전 연도 기준금리 상승이 주요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은 제3절 효과성 분석에서 살펴봄
 - 본 조세특례에 대한 지출규모 확대는 가입자수 혹은 납입금액의 증가, 이자율 상승 등으로 인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증가하는 경우 발생함
 - 2023년에는 납입금액, 총 수혜자수, 해지·신규 계좌수는 급격하게 변하지 않았으나 총수혜금액은 2조 1천억원에서 4조 7천억원으로 약 2.24배 증가(<표 III-4, 5, 6>, [그림 III-1] 참고)

<표 III-3> 연도별 조세지출 감면 규모

(단위: 억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전망	2025년 전망
소득세	4,434	3,647	3,742	3,149	3,182	3,262	3,386	2,575	2,554	5,461	10,914	11,929

자료: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표 III-4>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자 및 수혜금액(2013~2023년)

(단위: 명, 원, %)

귀속연도	총 수혜자 수		총 수혜금액 ¹⁾		평균 수혜금액	조세지출추정액 (총 수혜금액 ×14%)
	총 인원	증감율	총액	증감율		
2013	4,007,193		308.57		770,039	43.20
2014	4,031,876	1%	248.08	-20%	615,306	34.73
2015	4,361,625	8%	225.29	-9%	516,523	31.54
2016	4,238,900	-3%	218.56	-3%	515,612	30.60
2017	4,058,685	-4%	200.61	-8%	494,265	28.08
2018	3,834,820	-6%	196.79	-2%	513,157	27.55
2019	3,760,551	-2%	236.84	20%	629,794	33.16
2020	3,746,625	0%	248.59	5%	663,501	34.80

<표 III-4>의 계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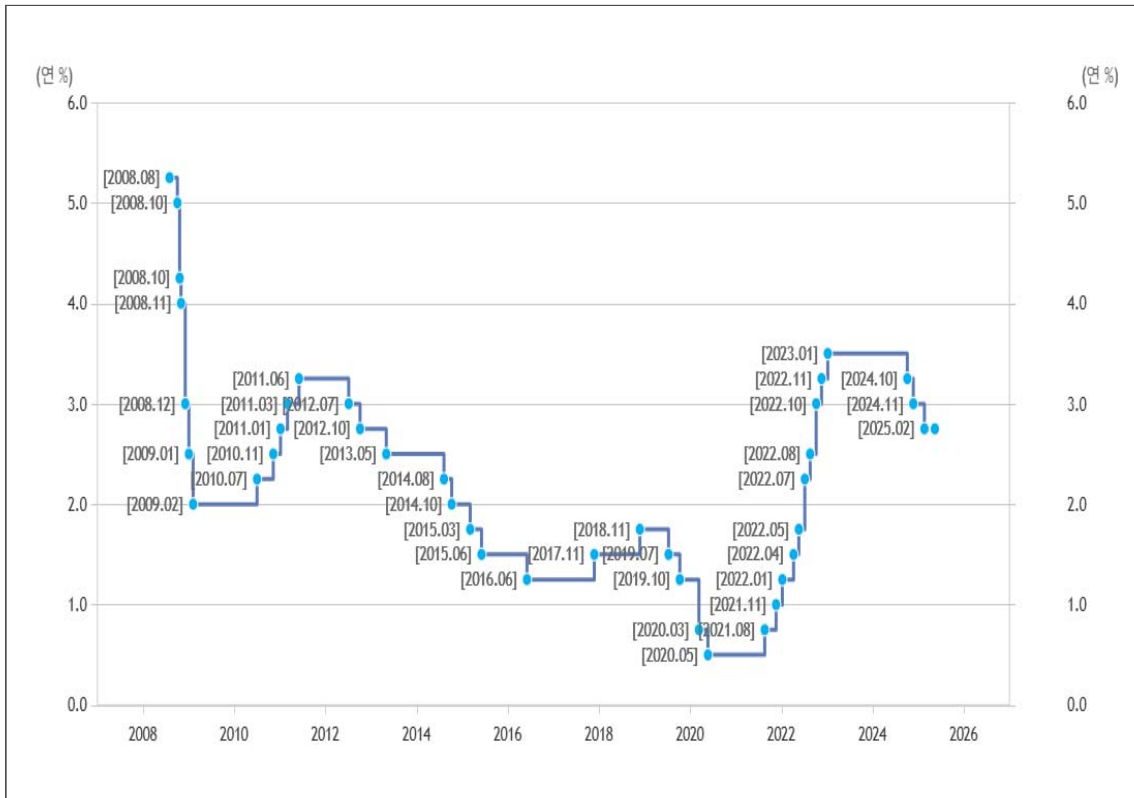
(단위: 명, 원, %)

귀속연도	총 수혜자 수		총 수혜금액 ¹⁾		평균 수혜금액	조세지출추정액 (총 수혜금액 ×14%)
	총 인원	증감율	총액	증감율		
2021	3,769,420	1%	186.95	-25%	495,961	26.17
2022	4,004,620	6%	214.16	15%	534,781	29.98
2023	4,405,955	10%	470.43	120%	1,067,705	65.86

주: 1) 총수혜금액은 지급명세서 기준 본 조세특례 대상 비과세 금융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원천징수 신고서 기준으로 작성된 조세지출예산서의 값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그림 III-1] 한국은행 기준금리



주: 1. 2008년 2월까지의 콜금리 목표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menuNo=200643>, 검색일자: 2025. 5. 19.

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수 및 가입자수, 한도금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2020~2024년 평균 계좌 소유기간은 12.2~12.7개월, 평균연령은 약 73세, 남성 비율은 약 40% 수준임
- 2020년 12월 기준으로 활동 중인 계좌수는 약 780만개이며, 이후 지속적으로 계좌수가 늘어나 2024년 12월에는 1,000만개를 상회함
- 2020년 12월 기준으로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수는 약 423만명에서 2024년 12월 약 542만명까지 증가함
- 비과세종합저축 한도금액은 2020년 12월에 약 130조원에서 2024년 12월에 약 183조원까지 늘어남

〈표 III-5〉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단위: 명, 백억원, 개월, 세, %)

기준연월	계좌수 ¹⁾	신규 계좌수 ²⁾	해지 계좌수 ³⁾	가입자 수 ⁴⁾	한도 금액 ⁵⁾	평균 계좌 소유기간 ⁶⁾	평균 연령 ⁷⁾	남성 비율 ⁸⁾
2020. 12.	7,799,461	6,889,402	7,082,289	4,230,086	12,956	12.58	72.94	40.09%
2021. 12.	7,912,717	7,038,086	7,016,097	4,346,098	13,512	12.67	73.18	39.83%
2022. 12.	8,903,875	9,759,520	8,836,983	4,897,897	15,965	12.36	73.02	40.25%
2023. 12.	9,605,841	8,940,672	8,378,731	5,187,421	17,211	12.26	73.11	40.20%
2024. 12.	10,085,000	9,476,829	9,101,001	5,416,950	18,271	12.24	73.20	39.87%

- 주: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신규 계좌수는 해당 연도에 신규 개설된 계좌수를 의미함
 3) 해지 계좌수는 해당 연도에 해지된 계좌수를 의미함
 4)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5)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6) 평균 계좌 소유기간은 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개월 수 평균을 의미함
 7) 평균연령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을 의미함
 8) 남성비율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가입자 중 남성의 비율(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표 III-6>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직전 연도 대비 증감율

(단위: %)

기준연월	계좌수 ¹⁾	신규 계좌수 ²⁾	해지 계좌수 ³⁾	가입자 수 ⁴⁾	한도 금액 ⁵⁾	평균 계좌 소유기간 ⁶⁾	평균 연령 ⁷⁾	남성 비율 ⁸⁾
2020. 12.	-	-	-	-	-	-	-	-
2021. 12.	1%	2%	-1%	3%	4%	1%	0%	-1%
2022. 12.	13%	39%	26%	13%	18%	-2%	0%	1%
2023. 12.	8%	-8%	-5%	6%	8%	-1%	0%	0%
2024. 12.	5%	6%	9%	4%	6%	0%	0%	-1%

- 주: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신규 계좌수는 해당 연도에 신규 개설된 계좌수를 의미함
 3) 해지 계좌수는 해당 연도에 해지된 계좌수를 의미함
 4)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5)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6) 평균 계좌 소유기간은 개설일로부터 해지일까지의 개월 수 평균을 의미함
 7) 평균연령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가입자들의 평균 연령(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을 의미함
 8) 남성비율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가입자 중 남성의 비율(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산정)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가입 규모별 비과세종합저축 현황을 살펴보면, 500만~1,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계좌 수가 많고, 1,000만~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가입자수가 많으며, 4,000만~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한도금액이 많음
- 계좌수는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약 22만개로 가장 적고, 500만~1,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약 250만개로 가장 많음
 - 가입자수는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약 18만명으로 가장 적고, 1,000만~2,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약 184만명으로 가장 많음
 - 한도금액은 1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약 1,500억원으로 가장 적고, 4,000만~5,000만원 이하 구간에서 약 62조 3,300억원으로 가장 많음

<표 III-7>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규모별 가입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백억원)

가입규모	계좌수 ¹⁾	가입자수 ²⁾	한도금액 ³⁾
~100만원 이하	219,036	178,232	15
100만원~300만원 이하	902,658	697,734	199
300만원~500만원 이하	1,116,658	915,403	504
500만원~1,000만원 이하	2,490,504	1,817,102	2,191
1,000만원~2,000만원 이하	2,303,905	1,838,668	3,740
2,000만원~3,000만원 이하	1,187,874	1,101,050	3,208
3,000만원~4,000만원 이하	593,358	592,440	2,181
4,000만원~5,000만원 이하	1,271,007	1,267,671	6,233
소계	10,085,000	8,408,300	18,271

주: 1. 계좌 기준으로 한도 금액별 집계함. 예를 들어, 한 사람이 100만원, 500만원 한도인 계좌 2개를 보유한 경우, '100만원 이하', '300만~500만원 이하'에 계좌수와 가입자수가 각각 집계됨. 반면, 한 사람이 100만원 한도인 계좌 2건을 보유한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에 계좌수는 2건으로 집계되지만, 가입자수는 한 명으로 계산됨. 따라서 '가입자수'는 하나의 주민등록번호가 중복으로 집계되므로 (동일인이 여러명으로 계산됨) 가입자수 합계와 실제 총 가입자수는 불일치함.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3)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비과세종합저축 현황을 가입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2024년 12월 기준으로 계좌수, 가입자수, 한도금액 모두 65세 이상 유형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고 있으며, 장애인 유형이 그 뒤를 이음

○ 계좌수는 65세 이상(약 944만개), 장애인(약 57만개), 국가유공상이자(약 4만개) 유형 순으로 많음

○ 가입자 수는 65세 이상(약 507만명), 장애인(약 30만명),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약 2만명) 유형 순으로 많음

○ 한도금액은 65세 이상(약 172조원), 장애인(약 9.6조원), 국가유공상이자(약 7,200억원) 유형 순으로 많음

<표 III-8>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명, 백억원)

구분	계좌수 ¹⁾	가입자수 ²⁾	한도금액 ³⁾
장애인	569,572	303,253	957
국가유공상이자	39,019	19,746	7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1,799	20,162	27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406	3,664	14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425	629	3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556	311	1
65세 이상	9,435,223	5,069,185	17,198

주: 1. 가입자 유형의 우선순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장애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상이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 65세 이상 순 (동일인이 여러 유형으로 등록된 경우 우선순위가 높은 유형으로 집계)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3)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65세 이상 거주자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의 경우, 계좌수와 가입자수, 한도금액 모두 2020~202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계좌당 평균한도, 가입자당 평균한도 및 가입자당 계좌수 또한 전반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2020년 12월 기준 약 743만 수준이었던 계좌수는 2024년 12월 약 970만까지 증가하였고, 가입자수는 약 401만명(2020년 12월)에서 약 519만명(2024년 12월)으로, 한도금액은 약 124조(2020년 12월)에서 약 176조(2024년 12월)로 증가함

○ 계좌당 평균한도는 2020년 12월 약 1,668만원에서 2024년 약 1,820만원으로 증가하였고, 동 기간 가입자당 평균한도는 약 3,086만원에서 3,398만원으로 증가함

○ 2020~2024년 가입자당 계좌수는 1.8~1.9개 수준을 유지함

<표 III-9> 65세 이상 거주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단위: 명, 원)

기준연월	계좌수 ¹⁾	가입자수 ²⁾	한도금액 ³⁾ (백억원)	계좌당 평균한도	가입자당 평균한도	가입자당 계좌수
2020. 12.	7,424,783	4,011,740	12,381	16,675,808	30,862,982	1.85
2021. 12.	7,565,592	4,139,745	12,968	17,141,378	31,326,729	1.83
2022. 12.	8,533,185	4,679,017	15,355	17,994,596	32,816,981	1.82
2023. 12.	9,218,532	4,963,937	16,586	17,991,991	33,412,942	1.86
2024. 12.	9,692,007	5,191,635	17,642	18,202,905	33,982,104	1.87

주: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3)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표 III-10> 65세 이상 거주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직전 연도 대비 증감율

(단위: %)

기준연월	계좌수 ¹⁾	가입자수 ²⁾	한도금액 ³⁾ (백억원)	계좌당 평균한도	가입자당 평균한도	가입자당 계좌수
2020. 12.	-	-	-	-	-	-
2021. 12.	2	3	5	3	2	-1
2022. 12.	13	13	18	5	5	0
2023. 12.	8	6	8	0	2	2
2024. 12.	5	5	6	1	2	1

주: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3)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 2024년 12월 기준 연령별 가입 현황의 경우에는 남성, 여성, 전체 모두 65~69세 구간에서 계좌수, 가입자수, 한도금액의 규모가 가장 크고, 연령 구간이 높아질수록 각 규모는 작아짐

○ 65세 미만 구간을 제외하고는 계좌수, 가입자수, 한도금액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더 크며, 90세 이상 구간에서 계좌수, 가입자수, 한도금액이 급격히 줄어들음

- 65세 미만 구간에서의 계좌수는 남성이 약 22만개, 여성이 약 18만개이고,

가입자수는 각각 약 13만명(남성), 약 9.6만명(여성)이며, 한도금액은 각각 약 3.8조원(남성), 약 2.5조원(여성)임

- 65~69세 구간에서 계좌수는 남성이 약 99만개, 여성이 약 192만개이며, 80~89세 구간에서는 각각 약 76만개(남성), 약 118만개(여성)로 계좌수가 감소하다 90세 이상 구간에서 약 8만개(남성), 약 12만개(여성)로 계좌수가 급격히 줄어들
- 65~69세 구간에서 가입자수는 남성이 약 60만명, 여성이 약 98만명이고,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남성과 여성 모두 가입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이나, 여성의 경우 75~79세 구간보다 80~89세 구간에서 가입자수가 약 2.3만명 정도 많음
- 65~69세 구간에서 한도금액은 남성이 약 21조원, 여성이 약 34조원이며, 90세 이상 구간에서 한도금액이 각각 약 1.4조원, 약 2조원으로 감소함

<표 III-11> 비과세종합저축 연령별 가입 현황(2024년 12월 기준)

(단위: 개, 명, 백억원)

구분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9세	90세 이상
남성	계좌수 ¹⁾	217,696	990,693	945,780	776,510	761,834	80,078
	가입자수 ²⁾	129,837	598,076	536,137	425,211	415,363	55,149
	한도금액 ³⁾	377	2,084	1,848	1,483	1,452	141
여성	계좌수 ¹⁾	175,297	1,917,660	1,661,739	1,254,212	1,180,413	123,088
	가입자수 ²⁾	95,478	983,921	813,456	624,056	646,882	93,384
	한도금액 ³⁾	252	3,381	2,811	2,142	2,099	202
전체	계좌수 ¹⁾	392,993	2,908,353	2,607,519	2,030,722	1,942,247	203,166
	가입자수 ²⁾	225,315	1,581,997	1,349,593	1,049,267	1,062,245	148,533
	한도금액 ³⁾	629	5,465	4,659	3,626	3,551	342

주: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3)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표 III-12> 비과세종합저축 연령별 가입 현황(2024년 12월 기준): 전체 대비 비중

(단위: %)

구분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9세	90세 이상
남성	계좌수 ¹⁾	55	34	36	38	39	39
	가입자수 ²⁾	58	38	40	41	39	37
	한도금액 ³⁾	60	38	40	41	41	41

<표 III-12>의 계속

(단위: %)

구분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9세	90세 이상
여성	계좌수 ¹⁾	45	66	64	62	61	61
	가입자수 ²⁾	42	62	60	59	61	63
	한도금액 ³⁾	40	62	60	59	59	59

주: 1) 계좌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계좌 건수를 의미함

2) 가입자수는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총 가입자 수(주민등록번호 기준으로 중복 제거)를 의미함

3) 한도금액은 활동계좌(해지계좌 제외)에서 추출한 한도금액의 합산을 의미함

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 현황

- 본 과세특례 수혜 현황을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귀속연도 기준 2023년 총 수혜자는 441만명, 총 수혜금액(비과세 금융소득)은 4조 7,043억원 규모였으며, 1인당 수혜금액은 107만원 수준으로 나타남
 - 총 수혜자 수는 2013년(400만명)~2015년(436만명)에 증가하다가 2016년부터 감소세로 돌아서서 2019년 376만명 수준을 기록하였음
 - 총 수혜자 수는 2020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23년 총 수혜자는 441만명
 - 총 수혜금액은 반대로 2013년 3조 857억원에서 2018년 1조 9,679억원까지 감소하다가, 2019년 증가세로 돌아서 2조 3,684억원 수준
 - 2019년 이후에는 총 수혜금액의 증감을 보였으며 2023년에는 4조 7,042억원을 기록함
 - 1인당 수혜금액은 2013년(77만원)~2017년(49만원)에 감소하다가 2018년부터 증가세로 돌아서 51만원수준이며, 그 이후에는 증감을 보이며 2023년 1인당 수혜금액은 107만원 수준

- 총 수혜자 수, 총 수혜금액, 1인당 수혜금액의 증감을 살펴보면 총 수혜자 수보다는 총 수혜금액 및 1인당 수혜금액의 증감이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이자율 변동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임
 - 총 수혜자 수의 증감률은 -6~10%이며 큰 변화는 2018년(-6%)과 2023년(10%)에 발생

- 총 수혜금액의 증감률은 -25~120%로 큰 변화는 2021년(-25%)과 2023년(120%)에 나타났으며, 이는 조세지출의 큰 변화를 의미함
- 1인당 수혜금액은 총 수혜금액과 유사하게 증감률이 -25~100%로 크게 나타났으며, 큰 변화는 2021년(-25%)과 2023년(100%)에 나타났음
 - 이는 총 수혜금액의 변화는 총 수혜자수의 변화보다는 이자율 상승과 같은 금융소득의 증가가 크게 작용하였을 가능성 시사함

<표 III -13>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 현황: 2013~2023년

(단위: 명, 백억원, 원, %)

귀속 연도	총 수혜자 수	전년 대비 ²⁾ (%)	총 수혜금액 ¹⁾		1인당 수혜금액	
			전년 대비 ²⁾ (%)	전년 대비 ²⁾ (%)	전년 대비 ²⁾ (%)	
2013	4,007,193	-	308.57	-	770,039	-
2014	4,031,876	1%	248.08	-20%	615,306	-20%
2015	4,361,625	8%	225.29	-9%	516,523	-16%
2016	4,238,900	-3%	218.56	-3%	515,612	0%
2017	4,058,685	-4%	200.61	-8%	494,265	-4%
2018	3,834,820	-6%	196.79	-2%	513,157	4%
2019	3,760,551	-2%	236.84	20%	629,794	23%
2020	3,746,625	0%	248.59	5%	663,501	5%
2021	3,769,420	1%	186.95	-25%	495,961	-25%
2022	4,004,620	6%	214.16	15%	534,781	8%
2023	4,405,955	10%	470.43	120%	1,067,705	100%

주: 1) 총수혜금액은 지급명세서 기준 본 조세특례 대상 비과세 금융소득금액을 의미

2) 전년 대비(%)는 [(당해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이전연도 수치]의 비율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연령별 수혜 현황을 살펴보면 2023년 기준 수혜자 수 및 수혜금액이 가장 큰 연령 구간은 70~80세 미만으로 나타났으며, 70~80세 미만까지는 연령이 증가할수록 총 수혜자수와 금액, 1인당 수혜금액이 모두 증가하는 경향성이 발견됨
 - 70~80세 미만의 수혜자는 198만명으로 비중은 44.90%이며, 수혜금액은 2조 2,265억 원으로 비중은 47.35%로 나타남
 - 70~80세 미만의 1인당 수혜금액은 113만원으로 수혜자 전체 평균인 107만원의 105.45% 수준

<표 III-14> 연령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 현황: 2023년

(단위: 명, 백억원, 원, %)

연령	총 수혜자 수		총 수혜금액 ¹⁾		1인당 수혜금액	전체 대비 비중
	총 수혜자 수	비중	총 수혜금액 ¹⁾	비중		
전체	4,405,881		470.23		1,067,272	
20세미만	7,604	0.17%	0.26	0.05%	337,352	31.61%
20~30세 미만	22,949	0.52%	0.94	0.20%	407,428	38.17%
30~40세 미만	44,177	1.00%	1.71	0.36%	386,754	36.24%
40~50세 미만	81,043	1.84%	4.06	0.86%	501,431	46.98%
50~60세 미만	98,006	2.22%	8.98	1.91%	916,481	85.87%
60~70세 미만	1,153,859	26.19%	126.16	26.83%	1,093,363	102.44%
70~80세 미만	1,978,287	44.90%	222.65	47.35%	1,125,484	105.45%
80~90세 미만	938,541	21.30%	98.42	20.93%	1,048,679	98.26%
90세 이상	81,415	1.85%	7.05	1.50%	865,576	81.10%

주: 1) 총수혜금액은 지급명세서 기준 본 조세특례 대상 비과세 금융소득금액을 의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수혜자 특성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본 결과 65세 미만은 남성 수혜자가, 65세 이상은 여성 수혜자가 많았으며 1인당 수혜금액은 65세 미만은 여성에서, 65세 이상에서는 남성 수혜자가 더 많았음

<표 III-15> 성별 및 연령별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수혜 현황: 2023년

(단위: 명, 원)

구분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9세	90세 이상
남성	총 수혜자 수	166,790	410,534	433,353	352,230	372,786	31,733
	총 수혜금액 ¹⁾	12.45	46.29	50.22	41.33	42.52	3.11
	1인당 수혜금액	746,695	1,127,540	1,158,790	1,173,388	1,140,553	978,999
여성	총 수혜자 수	150,288	680,100	671,566	521,138	565,755	49,682
	총 수혜금액 ¹⁾	11.30	72.26	74.33	56.77	55.90	3.94
	1인당 수혜금액	752,130	1,062,433	1,106,865	1,089,403	988,142	793,131
합계	총 수혜자 수	317,078	1,090,634	1,104,919	873,368	938,541	81,415
	총 수혜금액 ¹⁾	23.76	118.55	124.55	98.10	98.42	7.05
	1인당 수혜금액	749,271	1,086,941	1,127,230	1,123,274	1,048,679	865,576

주: 1) 총수혜금액은 지급명세서 기준 본 조세특례 대상 비과세 금융소득금액을 의미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나. 해외 사례 조사

1) 미국

가) 저소득층 대상 저축 지원 - Saver's Credit³⁵⁾

- Saver's Credit은 저소득 및 중간소득 납세자들의 은퇴 후 노후자금 마련을 장려하기 위해 IRA 계좌나 퇴직연금 계좌 등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임
 - 수혜자 요건은 18세 이상이고, 다른 사람의 세금신고서에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야 하며, 전업학생이 아니어야 함
 - 전통적 IRA 또는 Roth IRA와 같은 개인은퇴저축계좌 및 401(k), 403(b), 정부 457(b), SARSEP, SIMPLE Plan과 같은 직장기반은퇴저축, 501(c)(18)과 같은 노동조합 관련 은퇴플랜, ABLE(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와 같은 장애인을 위한 저축 계좌에 대한 기여금 등이 공제 대상임
- 세액공제율은 개인의 조정총소득(Adjusted Gross Income, AGI)에 따라 50%, 20%, 10%로 차등 적용함
 - 2024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소득이 46,000달러 이하이면 50%, 46,000달러 초과 50,000달러 이하이면 20%, 50,000달러 초과 76,500달러 이하이면 10%의 공제율을 적용함

〈표 III-16〉 Saver's Credit 공제율 기준(2024년)

(단위: 달러)

공제율	부부 합산	세대주	다른 신고 유형
납입액의 50%	AGI ≤ 46,000	AGI ≤ 34,500	AGI ≤ 23,000
납입액의 20%	46,001~50,000	34,501~37,500	23,001~25,000
납입액의 10%	50,001~76,500	37,501~57,375	25,001~38,250
납입액의 0%	>76,500	>57,375	>38,250

자료: IRS,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Saver's Credit),"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credit-savers-credit>, 검색일자: 2025. 2. 17.

35) IRS,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Saver's Credit),"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credit-savers-credit>, 검색일자: 2025. 2. 17. 참고하여 작성함

-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최대 입금액은 2,000달러(부부공동신고의 경우 4,000달러)이며, 최대 세액공제 금액은 1,000달러임

나) 장애인 대상 저축 지원 - ABLE Account³⁶⁾

- ABLE(Achieving a Better Life Experience) 계좌는 장애인의 재정적 안정을 돕기 위한 조세지원 제도로, ABLE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정책대상자) 「사회보장법」 Title II 또는 XVI에 따른 장애 혹은 시각장애 관련 혜택을 받는 사람
 - 26세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 ABLE 계좌를 개설할 수 있음
 - 본인이 계좌를 개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위임장 소지자, 후견인, 배우자,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사회보장청(SSA) 지정 대리 수령인)이 개설할 수 있으나, 비과세 혜택을 받는 사람은 장애인 본인임
 - 1인당 1개의 ABLE 계좌만 허용함
- (수혜내용) ABLE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에서 적격한 장애 경비(Qualified Disability Expenses)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적격한 장애 경비는 시각장애 및 기타 장애와 관련된 비용으로, 장애인의 건강과 독립,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유지시키기 위한 비용을 포함함
 - 구체적으로 교육, 주거, 교통, 고용 훈련 및 지원, 보조 기술, 개인 지원 서비스, 건강, 예방 및 웰빙, 재정 관리, 행정 서비스, 법률 수수료, 감독 및 모니터링 비용, 장례 및 매장 비용 등이 포함됨
- (과세비율) 장애 경비를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의 계산에 따라 비과세 한도가 결정됨
 - (해당 과세연도 적격 장애 경비 ÷ 계좌 총액) × 해당 과세연도 (이자)소득액 = 비과세 한도
 - 예를 들어 2023년 8월 2일 ABLE 계좌 잔액이 \$2,400(\$2,000는 납입금, \$400는

36) IRS, "Publication 907(2024), Tax Highl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www.irs.gov/publications/p907#en_US_2023_publink100034073, 검색일자: 2025. 2. 17. 참고하여 작성함

이자수익)이고, 적격 장애 경비가 \$1,600인 경우 비과세 금액은 \$266.67 ($(\$1,600 \div \$2,400) \times \$400$)이므로, 결과적으로 \$133.33($\$400 - \266.67)만큼이 해당 연도 총 소득에 포함됨

□ (한도) ABLE 계좌는 Section 529 계좌에서 이전된 금액을 포함하여 연간 납입한도 및 누적 잔액한도가 있음

○ (연간 납입한도) 연간 증여세 면제액(gift tax exclusion) + 고용된 장애인의 추가 납입액

- 2024년 기준 연간 증여세 면제 금액은 \$18,000임

- 고용된 장애인의 추가 납입액 한도는 지정장애수당금과 최저소득한도 중 적은 금액으로 결정됨

• 최저소득한도는 미국 본토 \$14,580, 하와이 \$16,770, 알래스카 \$18,210

○ (한도 초과) 연간 납입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초과 납입금과 해당 납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익 부분을 환급해야 함

- ABLE 프로그램 운영 기관은 소득세 신고 마감일(보통 4월 15일)까지 이를 처리하고 수혜자에게 해당 조치를 통보해야 함

- 초과 납입금과 해당 이자수익을 환급하지 않으면 초과 금액에 대하여 6%의 소비세(excise tax)가 부과됨

□ (자격 상실) ABLE 계좌를 개설한 후 증상이 완화되는 등의 이유로 더 이상 수혜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해 첫날부터 자격이 상실됨

○ 다만 증상이 재발하여 적격자가 되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 캐나다

가) Tax Free Savings Account(TFSA)³⁷⁾

□ 2009년부터 시행된 캐나다의 세금우대저축계좌(Tax Free Savings Account) 프로그램은 본 계좌에 납입한 금액 및 이자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37) Government of Canada, "Tax-Free Savings Account (TFSA), Guide for Individual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6/tax-free-savings-account-tfsguide-individuals.html#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5. 2. 20. 참고하여 작성함

- 캐나다 국민들의 저축 및 투자를 촉진시키고, 세후 소득으로 저축한 금액에 대한 추가 과세를 방지하며, 은퇴 후 소득 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됨
- (정책대상자) 만 18세 이상의 유효한 사회보험번호(Social Insurance Number, SIN)가 있는 캐나다 거주자
- (한도) 매년 납입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2025년 한도는 7,000CAD이며 TFSA에 납입한 금액은 소득공제되지 않음
 -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며 인출한 금액만큼 다음 해 납입한도가 증가함
 - 미사용 한도액은 이연 가능함
 - 단 한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금액에 대해 월 1%의 세금이 부과됨

<표 III-17> TFSA 연도별 납입한도

(단위: 캐나다달러)

연도	납입한도
2009~2012	5,000
2013~2014	5,500
2015	10,000
2016~2018	5,500
2019~2022	6,000
2023	6,500
2024~2025	7,000

자료: Government of Canada, "Tax-Free Savings Account (TFSA), Guide for Individual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6/tax-free-savings-account-tfsa-guide-individuals.html#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5. 2. 20.

나)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RDSP)³⁸⁾

- 등록장애인 저축지원 제도(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s)는 장애인 세액공제 (Disability Tax Credit, DTC)를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장기적인 재정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38) Government of Canada,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0/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html#P44_1113, 검색일자: 2025. 2. 20. 참고하여 작성함

- (정책대상자) RDSP 수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만족해야 하며, 1인당 1개의 RDSP를 가질 수 있음
 - 장애 세액공제 승인을 받아야 함
 - 유효한 사회보험번호를 보유해야 함
 - RDSP 개설 시 캐나다 거주자여야 함
 - 60세 미만이어야 함
 - 단 기존 RDSP에서 새로운 RDSP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나이 제한 없음

- (한도) 연간 납입한도 없이 수혜자가 만 59세가 되는 해의 연말까지 200,000CAD 까지 납입할 수 있음
 - 납입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은 없고, 이자수익에 비과세 혜택을 적용함

- (정부지원) 캐나다 정부에서는 RDSP에 보조금을 지급하는데, 수혜자의 조정된 가구 순소득 및 납입금에 따라 300%, 200%, 100%의 매칭 보조금을 지급함
 - 조정된 가구 순소득은 다음과 같이 계산됨
 - 출생부터 수혜자가 18세가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는 해당 수혜자의 캐나다 아동수당(Canada child benefit, CCB) 결정에 사용된 소득 정보를 기준으로 함
 - 수혜자가 19세가 되는 해부터 RDSP가 종료될 때까지는 수혜자의 소득과 배우자 또는 사실혼 파트너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함
 - 수혜자가 연중 최소 1개월 이상 부서, 기관 또는 시설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아동 특별 수당법(Children’s Special Allowances Act)」에 따라 해당 부서, 기관 또는 시설에 지급 가능한 수당을 기준으로 함
 - 매칭 보조금은 1년에 최대 3,500CAD, 평생 동안 70,000CAD만큼 받을 수 있음

<표 III-18> RDSP 소득별 보조금

(단위: 캐나다달러)

수혜자의 조정된 가구 순소득(2024년 기준)	보조금	최대 금액
\$111,733 미만		
첫 \$500	\$1 납입 시 \$3 보조	\$1,500
그 다음 \$1,000	\$1 납입 시 \$2 보조	\$2,000
\$111,733 이상		
첫 \$1,000	\$1 납입 시 \$1 보조	\$1,000

자료: Government of Canada,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0/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html#P44_1113, 검색일자: 2025. 2. 20.

3) 프랑스

가) 보통예금저축(Livret d' Epargne Populaire, LEP)³⁹⁾

- 프랑스의 보통예금저축(Livret d'Epargne Populaire)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비과세 저축 계좌로, 일반적인 A저축(Livret A)보다 이자율이 더 높으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2025년 2월 1일부터 LEP 이자율은 3.5%
 - 이자는 매월 1일과 16일에 계산되며, 매년 12월 31일에 원금에 가산되어 지급됨
- (자격요건)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가족계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만족해야 하며, 계좌 개설 한도는 1인당 1개로 가구당 최대 2개 계좌까지 개설 가능함
 - 가구 구성원에 따라 가족계수가 계산되는데, 독신자의 경우는 1, 부부의 경우는 2이며, 미성년 부양자녀가 있을 경우 0.5가 가산되고, 세 번째 자녀부터는 1씩 가산됨
 - 2년 연속 소득 기준을 초과할 시에는 계좌가 해지됨

〈표 III-19〉 가족계수별 LEP 가입 가능한 소득한도

(단위: 유로)

가족계수	소득한도
1	22,419
1.5	28,406
2	34,393
2.5	40,380
3	46,367
3.5	52,354
4	58,341
4.5	64,328
5	70,315

자료: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 주권부 홈페이지, “Livret d'épargne populaire(LEP): comment ça marche?,”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livret-epargne-populaire-lep>, 검색일자: 2025. 3. 10.

39)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 주권부 홈페이지, “Livret d'épargne populaire(LEP): comment ça marche?,”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livret-epargne-populaire-lep>, 검색일자: 2025. 3. 10. 참고하여 작성함.

□ (한도) 최소 예치 금액은 30유로이며, 최대 1만유로까지 예치할 수 있음

나) 이자소득에 비과세·분리과세 혜택을 주는 기타 상품⁴⁰⁾

□ A저축(Livret A)은 프랑스의 대표적인 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요건) 연령 및 국적, 소득요건 없이 누구나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며, 1인당 1계좌만 허용됨
 - 미성년자도 법적 대리인 없이 계좌를 개설할 수 있으나, 16세가 될 때까지는 인출할 수 없으며 인출하기 위해서는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함
- (한도) 최소 납입금액은 10유로이고, 최대 납입금액은 22,950유로임
 - 우체국 은행(La Banque Postale)에서 가입하는 경우 최소 납입금액은 1.5유로임
 - 협회나 조합이 가입하는 경우에는 최대 76,500유로까지 납입할 수 있음
- 2025년 2월 1일부터 A저축의 이자율은 2.4%

□ 청색저축(Livret Bleu)은 상호신용금고(Crédit Mutuel)에서 만든 저축상품으로, A저축과 마찬가지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⁴¹⁾

- (요건) 연령 및 소득 제한 등 가입요건에 제한이 없음
- (한도) 최소 납입금액은 10유로이고, 최대 납입금액은 22,950유로임
- 2025년 2월 1일부터 청색저축의 이자율은 2.4%

□ 지속성장저축(Livre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solidaire, LDDS)은 산업성장 및 중소기업 지원 등을 위한 저축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요건) 프랑스에 거주하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며,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개인 소득이 있고 부모의 세대별 과세 단위에 포함되지 않으면 가입할 수 있음
 - 1인당 1개의 계좌만을 허용하며, 가구당 최대 2개까지 개설 가능함
- (한도) 최소 납입금액은 15유로이고, 최대 납입금액은 12,000유로임
- 이자율은 2.4%

40) 프랑스 공공행정 포털 홈페이지, “Livrets, plans et comptes d'épargn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20376>, 2025.3.10. 참고하여 작성함.

41) Crédit Mutuel, “Livret Bleu: le Livret A du Crédit Mutuel,” <https://www.creditmutuel.fr/fr/particuliers/epargne/livret-bleu.html#n3>, 검색일자: 2025. 3. 10.

- 청소년 저축(Livret Jeune)은 12~25세 사이의 청소년을 위한 저축상품으로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요건) 연령요건을 만족하면서 프랑스에 거주하고 있어야 하고, 청소년 저축통장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야 함
 - 1인당 1개의 계좌만을 허용함
 - (한도) 최소 납입금액은 10유로이고, 최대 납입금액은 1,600유로임
 - 청소년 저축의 이자율은 은행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으나 A저축의 이자율(2.4%)보다 낮을 수는 없음

- 단·중기적금(Compte à terme, CAT)은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는 상품으로, 가입대상자는 연령제한 및 소득제한 없이 프랑스에 거주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하며 납입한도도 존재하지 않음
 - 단 불입한 금액은 일정 기간 동안 출금할 수 없음
 - 가입 시에는 최소 및 최대 예치 가능 금액, 계약기간, 이자 계산 방식, 이자 지급 시기, 중도 인출 시 패널티, 갱신 조건 등을 정함
 - 예치 기간은 최소 1개월에서 최대 5년으로 설정할 수 있음

4) 일본

가) 장애인 등의 소액예금 및 소액채권 이자소득 비과세에 따른 한도의 특례⁴²⁾

- 장애인의 소액 예금에 대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와 장애인을 위한 소액 공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면세 제도를 운영 중임
 - 일반적으로 예금, 채권, 채권에 대한 이자는 15.315%의 세율(지방세 5% 추가)로 원천징수되나, 장애인 등의 저축에 대한 이자는 비과세됨
 - (소액예금 비과세) 비과세 대상이 되는 저축은 예적금, 합동운용신탁, 특정공모공사채 등 운용투자신탁, 특정유가증권이며, 이 네 종류 저축원금의 총액 350만엔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소액채권 비과세) 국채 및 지방채의 액면 총액 350만엔 한도 내에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42) 일본 국세청, 「No.1313 障害者等のマル優(非課税貯蓄)」,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3.htm>, 검색일자: 2025. 3. 10.

- (정책대상자) 일본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장애인으로 신체장애인 수첩, 연금 수첩, 개인 번호 카드 등의 확인 서류를 특별비과세저축신고서와 함께 금융기관을 통해 제출한 자를 대상으로 함
- 의무보유기간은 없음

나) 근로자 재산형성연금저축의 이자 비과세 제도⁴³⁾

- 재산형성연금저축이란 근로자의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저축제도로, 5년 이상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60세 이후 연금 개시일까지 인출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금 550만 엔까지의 이자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
 - 일본에 거주하는 55세 미만의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고, 1인당 1건의 계약만 허용함
 - 퇴직 등으로 근로자가 아닌 경우에도 그 퇴직 등이 재산형성연금저축의 적립기간 종료 이후에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연금개시일 이전에 인출하면 5년간 소급하여 과세됨

5) 소결

- 미국, 캐나다, 프랑스, 일본 주요국을 대상으로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정책을 살펴본 결과, 조사 국가들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의 저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우리와 유사한 과세특례 제도를 운영 중
 - 미국은 장애인 및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재산형성 지원을 위한 저축상품에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장애인의 경우 장애경비 지출액을 반영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거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캐나다는 등록장애인의 조정된 가구 순소득 및 납입금에 따라 300%, 200%, 100%의 매칭 보조금을 지급하며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 프랑스는 가족계수에 따른 소득 기준을 만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높은 이자율을 적용하며,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
 - 일본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으며, 일반 근로자를 대상으로도 저축원금 550만엔 한도까지의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43) 일본 국세청, “No.1319 財形年金貯蓄,”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9.htm>, 검색일자: 2025. 3. 10.

- 해외 주요국에서는 비과세 혜택이 있는 연금·저축제도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들 제도의 소득요건이 매년 완화되고 있음
 - 미국의 Saver's credit 공제율별 소득기준, 캐나다의 등록장애인 저축지원 제도 (RDSP) 보조금에 적용되는 소득기준, 프랑스 보통예금저축 가입을 위한 소득 한도가 완화됨

2. 타당성 평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의 타당성 평가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저축 및 자산을 지원에 정부 개입 근거의 타당성, 정책대상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평가, 제도 간 유사 및 중복을 검토
 - 수혜대상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비중이 가장 높은 65세 이상 고령자(93.6%), 장애인(5.6%), 기초생활수급자(0.4%)를 중심으로 살펴봄

가. 정부역할의 적절성

- 만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저축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을 정책목표로 하고 있는 본 과세특례에 대한 타당성은 취약계층에 대한 저축지원과 자산형성 지원의 필요성에서 평가될 수 있음
 - 특히 노동소득 및 사업소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는 경제적 취약계층으로, 단순한 소득보장정책이 아닌 실질적 경제적 자립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가 필요할 수 있음
 - 가입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를 중심으로 정부 역할의 적정성을 살펴보고자 함
- 저축지원과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을 살펴볼 때 주된 수혜자인 만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기초생활 수급자는 지원대상으로서 다소 상이한 점이 있어, 수혜대상을 구분하여 별도로 살펴봄
 - 만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배제요건을 제외하면 소득 및 재산에 대한 제한 없이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어 「기초생활보장법」에 의

해 별도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기준으로 선정된 기초생활 수급자와는 상이함

-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지원의 필요성은 노후소득 보장 및 소득 다변화 측면에서,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기존 소득보장 지원제도의 한계 측면에서 검토를 수행함

□ (만 65세 이상 노인)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저축지원 및 자산형성지원의 필요성은 노후소득 보장 및 소득다변화 필요성 측면에서 논의할 수 있음

- 주된 일자리로부터의 은퇴 등으로 양질의 소득활동 기회가 줄어드는 노년층에게는 대체적인 경제적 수단의 필요성 측면에서 자산형성지원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가계금융복지조사」를 사용하여 가구주 연령별 소득분포를 살펴본 전병목(2021)에 따르면, 연령이 증가할수록 근로소득 수준 및 비중은 감소하고 공적 이전소득에 대한 의존도는 증가함

- 2019년 기준 중위소득 100~150% 이하 50~54세의 근로소득은 평균은 4,711만원이지만, 65세 이상 가구주의 경우 2,037만원으로 크게 감소

- 소득구성을 살펴보면 중위소득 100~150% 이하 50~54세의 근로소득 비중이 71.2%에서 65세 이상 40.2%로 크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공적이전 소득 비중은 50~54세 2.5%에서 65세 이상에서 27%로 크게 증가함

- 이철희·이재원(2015) 등의 선행연구는 우리나라의 노후소득 보장수준은 높지 않은 수준으로 보고함

- 이철희·이재원(2015)은 장년소득 대비 노후소득 비율이 65세에 50%, 70세에 40%, 75세에 30% 수준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한국노동패널 1~10차년도 자료를 사용한 석상훈·장선구(2009) 또한 비슷하게 주된 일자리를 그만두는 경우의 소득감소는 은퇴 직전 일자리에서의 소득 대비 약 24% 정도로 보고함

- 이는 기존 국내 선행연구들이 제시한 적정 노후소득대체율의 추정치(50~70%)나 1990년대 미국의 55세 소득 대비 70세 소득비율(60~70%)에 비하여서도 낮은 수준(이철희, 2014)

- 반면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 가구소득 중 근로소득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자산은 유동성이 낮은 부동산 자산의 비중이 높아 금융소득 창출을 돕기 위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 전병목(2021)에 제시된 중위소득 100~150% 이하 65세 이상 가구주의 소득비중은 근로소득(40.2%)이 가장 높으며, 그 다음은 공적이전소득(27%), 재산소득(12.4%) 순이었음
- 한국노동패널(2017) 자료를 사용하여 50세 이상 65세 미만의 자산 구성을 살펴보면 부동산 자산(83.42%)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가용할 수 있는 유동성이 높은 금융자산의 비중은 13.6%로 낮은 수준(조규형 외, 2019)
- 현재 고령인구 고용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하여서 높다는 점이나 고령인력에 대한 노동시장수요의 부정적인 변화를 생각할 때, 근로소득 증가를 통한 노후 소득대체율 상승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의견도 제시됨(이철희, 2014)
- 이에 선행연구들은 주택연금제도 등을 통한 노후소득원의 다변화(전병목, 2021; 김민기 외, 2025)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어, 금융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자산형성에 대한 정부 개입의 타당성은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됨

□ 더불어 자산형성 지원은 부가적으로 노인들의 삶에 대한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음

- 신용석 외(2017)⁴⁴⁾는 2016년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기반하여 가구주 나이와 가구소득, 가구당 자산 보유액을 살펴본 결과, 평균소득은 60세 이상이 가장 낮았지만 자산은 60세 이상이 50대 다음으로 높게 나타나 노인들의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 소득보다 자산이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발견함
- 「고령화연구패널조사」 5차 자료를 이용한 분석에서 순자산 보유액이 많은 노인일수록 삶의 만족도가 단계적(51.7~61.8점)으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저축지원을 통한 자산형성은 저소득층 소득보장 지원제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실질적인 자립을 돕는다는 측면에서의 타당성을 지닐 것으로 보임

- 장애인 및 기초생활 수급자에 대한 소득보장 지원제도는 기본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보조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을 수 있으나, 근로의욕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신동면, 2009)이나 미래에 대한 설계 및 준비와 같은 자립을 향상시키는 효과는 미흡할 수 있음

44) 신용석·원도연·노재현(2017),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참고하여 작성함.

- 자산형성에 대한 사회정책적인 관점에서 제시되고 있는 이론에 따르면, 자산형성 지원제도는 이러한 공공부조정책의 한계를 보완하여 근로의욕 고취, 미래 발전 도모, 사회참여 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음
 - Sherraden(1991)은 자산이 가져오는 긍정적 복지효과를 자산복지효과(welfare effects of assets)로 정의하고 안정성 향상, 미래 지향성 창출, 인적자본과 같은 다른 자산의 발달 촉진, 개인의 집중과 특화 유도, 위험감수의 기반 제공, 개인적 효능감 증진, 사회적 영향력 증진, 정치적 참여 증진, 후세대 복지 향상 등의 효과로 제시하였음(신용석 외, 2017)
 - 특히 장애인의 경우 장애연금 및 장애수당과 같은 장애인 대상 소득보장체계의 급여 수준이 높지 않고, 희망저축계좌와 같은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도 쉽지 않으며, 지원 수준 역시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제도가 필요할 수 있음⁴⁵⁾
 - 기존 자산형성지원 프로그램은 근로소득자를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하고, 적립금 활용 범위를 제한하며, 사업 신청 및 참여 절차에 대한 물리적·정보적 접근성이 부족함
 - 또한 자산을 적극적으로 형성하려는 행동 변화나 자립에 대한 심리적 기대감 상승과 같은 행태 및 심리적 변화가 나타나지만 프로그램 종료 후 적립된 금액이 적어 실질적인 자립을 달성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단순한 소득보장지원제도에 비하여 본 과세특례와 같은 저축 및 자산축적에 대한 지원은 장기적인 긍정적 복지효과를 가져오며, 동기유인을 효율적으로 변화시킴으로써 소득보존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수 있음
- 실제로 서광국(2018)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현물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소득보장 중심의 정책은 단기적으로 생계유지에는 기여하나, 장기적 경제적 자립 및 수급 탈피 효과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금융서비스와 복지가 결합된 자산형성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음⁴⁶⁾
 - 즉 자산형성지원사업은 매우 실질적인 탈빈곤 촉진책이며, 희망키움통장 I 가입자 중 탈수급 성공률이 63.9%로 희망키움통장 비가입자의 탈수급률(39.3%)보다 1.63배 높다고 보고함⁴⁷⁾

45) 윤상용 외(2011),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참고하여 작성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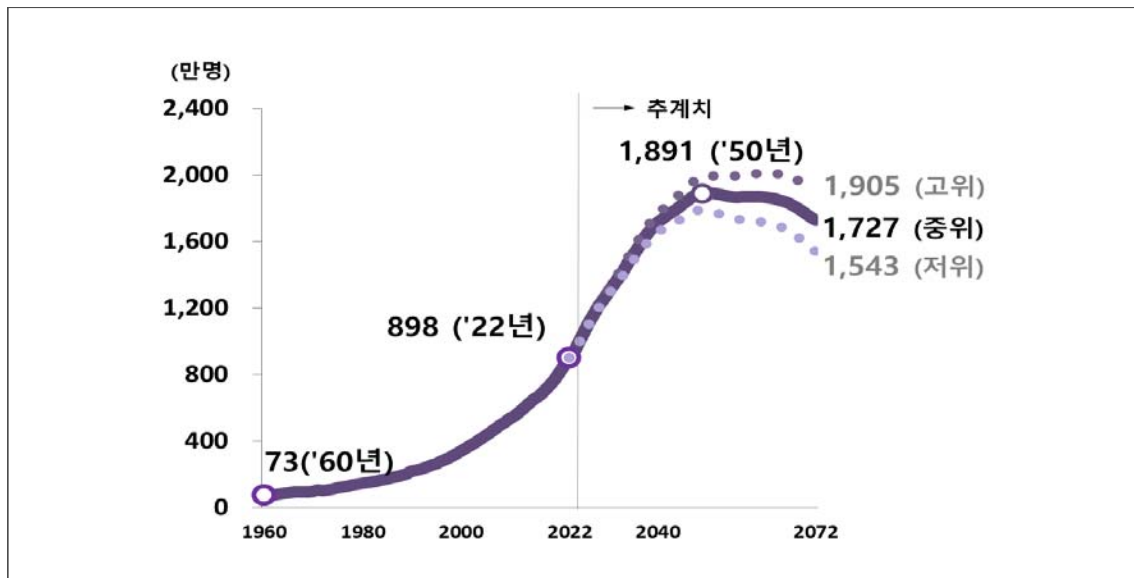
46) 서광국(2018), 『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희망키움통장 I 사업을 중심으로』 참고하여 작성함.

나. 지원대상의 적절성

1) 만 65세 이상인 노인에 대한 지원의 적절성

- 통계청(2023)⁴⁸⁾의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를 살펴보면,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2025년에 1,000만명을 넘어서고 2050년에는 40.1%가 증가한 1,891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72년에는 1,727만명(47.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이는 고령인구로 진입하는 코호트의 규모라는 인구구조적 여건과 의료기술 및 건강 향상으로 기대수명이 증가한 것에 따른 효과가 크게 작용한 결과로 보임
 - 따라서 본 조세특례의 연령요건 측면에서 정책대상자의 수가 2050년까지 급격하게 증가한 이후로도 한동안 그 규모가 유지될 것으로 간접적으로 예상할 수 있음

[그림 III-2] 고령인구 추계: 1960~2072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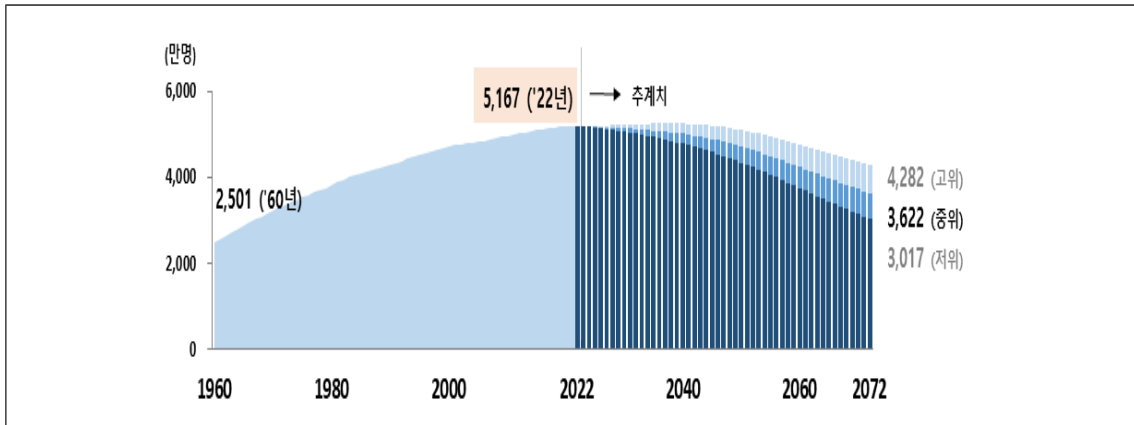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2023. 12. 14.,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act=view&list_no=428476, p. 12, [그림 1-10], 검색일자: 2025. 7. 11

47)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저축계좌, 참여이력 등 확인해 중복가입 방지」, <https://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66253>, 검색일자: 2025. 3. 19.

48)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act=view&list_no=428476, 검색일자: 2025. 3.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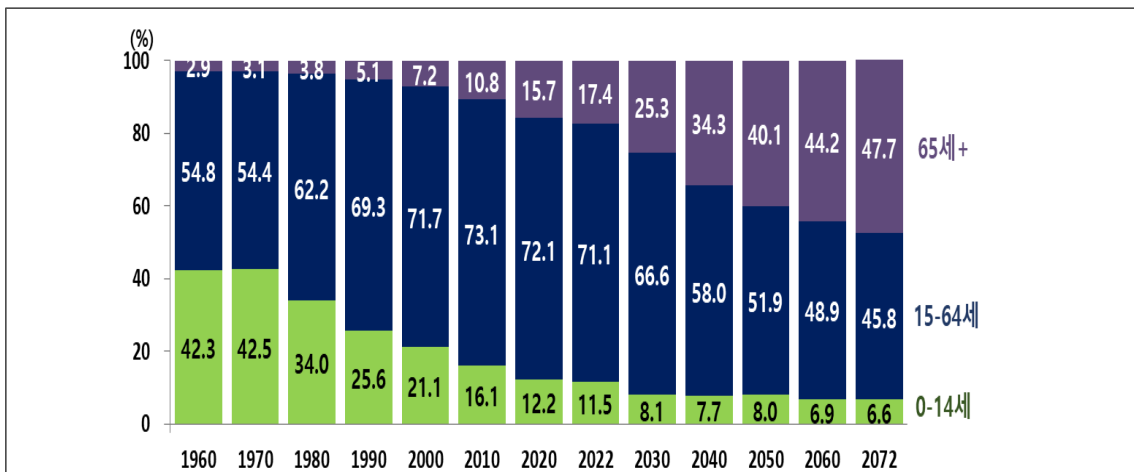
-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증가와 함께 총인구의 감소로 인하여 고령인구 비중은 급속도로 증가할 예정
 - 중위 추계 시나리오⁴⁹⁾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2년 5,167만명에서 2024년까지 5,175만명 수준으로 증가한 후, 2030년 5,131만명 수준으로 감소하고 2072년 3,622만명(1977년 수준)에 이를 전망
 - 그에 따라 고령인구 구성비는 2022년 17.4%에서 빠르게 증가하여 2025년 20%, 2036년 30%, 2050년 40%를 넘어설 전망

[그림 III-3] 총인구 추계: 1960~2072년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2023. 12. 14.,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act=view&list_no=428476, p. 12, [그림 1-1], 검색일자: 2025. 7. 11.

[그림 III-4] 연령별 인구구성비: 2022~2072년(중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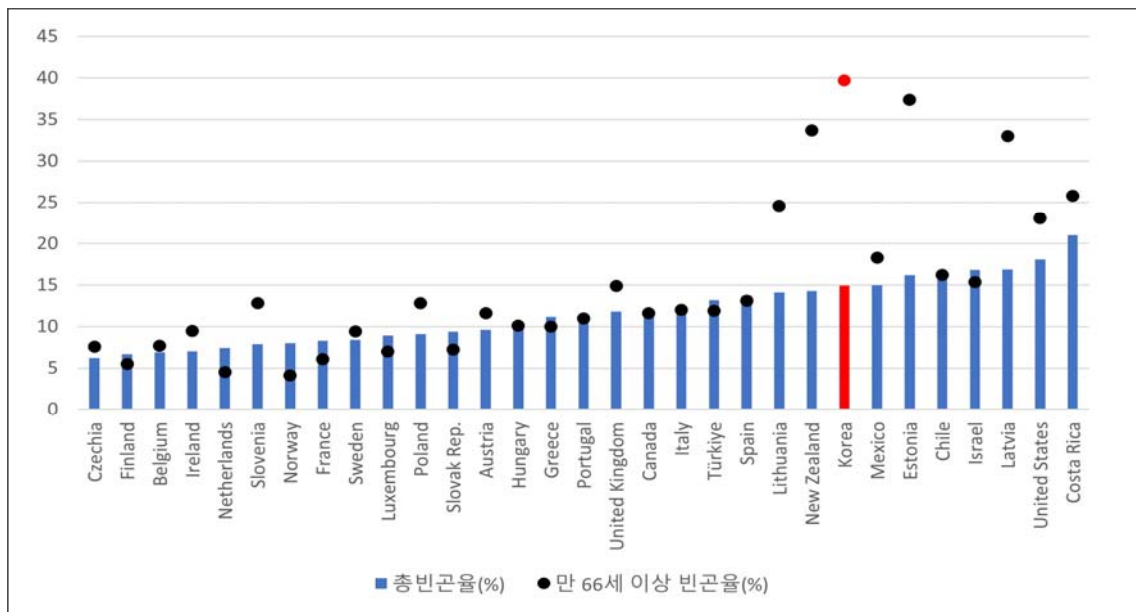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2023. 12. 14.,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act=view&list_no=428476, p. 12, [그림 1-6], 검색일자: 2025. 7. 11.

49) 인구변동요인별(출산율, 기대수명, 국제순이동) 중위(중간 수준) 가정 조합한 기준 시나리오

- 본 조세특례의 대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층을 설정하는 것의 적절성 여부는 정책 대상이 경제적 취약계층에 해당하는가에 달려 있으며, 이를 빈곤율 수준을 검토함으로써 살펴봄
 - 국제적 비교를 통해서 살펴보면, 만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의 경우에는 2022년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수준(39.7%)을 기록하여 미국(23.1%), 영국(14.9%), 프랑스(6.1%)의 노인 빈곤율 수준보다 높음
 - 총인구가 감소하고 고령화 현상이 심화되는 가운데 노인 빈곤율은 총 빈곤율의 변화로도 이어질 수 있어 이에 대한 정책대응이 필요
 - 우리나라는 총빈곤율은 15%로, OECD 주요국의 총빈곤율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으나 노인 빈곤율은 40%를 기록하고 있음
 - 노인인구의 구성비가 높아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결과적으로 이는 총 빈곤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림 III-5] OECD 주요국의 총빈곤율 및 만 66세 이상 노인 빈곤율(2022년)



자료: OECD, "Poverty rat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검색일자: 2025. 2. 27.

- 반면 고령층의 빈곤율 및 소득수준은 세대를 거듭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도 나타나고 있어 연령요건 외의 추가적인 요건 설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이승희(2023)는 출생연도별로 빈곤율을 살펴본 결과,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 세대에서의 빈곤율이 높게 나타남

- 2021년기준 1940년대생 및 그 이전 출생세대의 빈곤율은 40%이상인 반면, 1950년대생의 빈곤율은 30% 이하로 격차가 16.7%p로 나타남
 - 노인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연소할수록 빈곤문제가 완화되었으며, 특히 1950년 대생의 노인 빈곤율은 이전 세대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보건복지부(2008)⁵⁰⁾는 2008년 대비 2020년 노인 개인소득 중 근로/사업소득 사 적연금 소득 등 본인 기여 소득의 향상으로 노인의 경제적 자립성이 증대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노인의 연간 개인 총소득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08년 700만원에서 2020년 1,558만원으로 증가함
- 논의를 종합해 보면 우리나라는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향후 65세 이상 수혜대상자는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OECD 주요국들과 비교할 때 노인 빈곤율은 높은 수준으로 65세 이상의 노인에 대한 지원은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 65세 이상 노인들의 금융소득에 대하여 비과세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세후수익률 및 가처분 소득을 높임으로써 소득을 보존한다는 측면이 있음
 - 다만 비과세 수혜금액은 귀속연도 기준 2023년 평균 107만원(국세청 내부자료) 수준이며, 비과세 혜택이 주로 계좌 만기 혹은 해지 시 일시적으로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빈곤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으로 기능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추후 만 65세 이상 총인구 비중이 급격하게 증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장기적으로 재정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음
- 더불어 세대가 거듭될수록 고령층의 자산 및 소득 수준이 향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만 65세 이상이라는 연령 기준만으로 지원 대상을 설정하는 방식은 경제적 취약계층을 충분히 반영하기에 한계가 있으며, 이로 인해 지원대상 간 형평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음
- 2020년 도입된 금융소득 요건(연 2천만원 초과 시 가입 제한)은 취약계층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실제 귀속연도 기준 2023년 65세 이상 본 과세특례 수혜자들 중 종합소득금액

50) 보건복지부,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 2021. 6. 7.,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검색일자: 2025. 7. 14.

수준이 상당히 높은 자들도 포함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이 저해될 가능성도 존재함(<표 III-31> 참조)

- 이어지는 제3절의 효과성 분석에서도 2020년 도입된 금융소득 요건(연 2천만원 초과 시 가입 제한)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0.16~0.48% 수준으로 매우 적었다고 보고하고 있음
- 또한 선정과정에서 별도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적용받는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들과의 비교에서도 연령만을 기준으로 수혜자를 선정하는 경우 수혜대상 간 형평성을 해치는 측면이 있을 수 있음

2) 장애인 지원의 적절성

- 2023년 우리나라 등록 장애인은 약 263만명 수준이며, 이 중 지체장애인이 약 43.7% (115만명)를 차지하고 있음
 - 2019년부터 등록 장애인 수는 꾸준히 증가하다 2023년에 전년 대비 1만명 정도 감소함
 - 전체 등록 장애인 중에서 지체장애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감소하고 있음

<표 III-20> 등록 장애인 현황

(단위: 명)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합계	2,618,724	2,632,328	2,642,922	2,643,696	2,633,262
지체	1,223,088	1,207,197	1,191,036	1,173,652	1,151,503
시각	253,039	252,275	251,489	250,064	247,821
청각·언어	398,550	418,087	434,562	446,831	454,554
지적	212,930	217,084	221,500	225,457	229,511
뇌병변	252,112	250,130	247,636	242,939	237,562
자폐성	28,678	30,802	33,650	37,596	42,732
정신	102,974	103,502	104,152	104,175	103,907
신장	92,399	97,496	102,045	105,195	107,636
심장	5,264	5,226	5,151	5,030	4,854
호흡기	11,520	11,530	11,484	11,257	10,765
간	13,154	13,806	14,427	15,022	15,609
안면	2,672	2,676	2,710	2,719	2,747
장루·요루	15,290	15,424	16,003	16,691	17,074
뇌전증	7,054	7,093	7,077	7,068	6,987

자료: 보건복지부, 「장애인현황-전국 장애유형별,성별 등록장애인수」, 2024, 2025. 8. 26.,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conn_path=I2, 검색일자: 2025. 6. 30.

- 2022년 장애인 빈곤율은 50.5%, 비장애인 빈곤율 19.1%와 비교하여 약 2.6배 높은 수준임
 - 소득갭 비율에 빈곤율을 곱해서 산출한 빈곤갭 비율을 살펴보면, 2022년 장애인 빈곤갭 비율은 32.8%로 비장애인 빈곤갭 비율 9.4%보다 약 3.5배 높음

〈표 III-21〉 장애인 빈곤율 및 빈곤갭 비율(균등화시장소득 기준)

(단위: 만원, %)

구분		중위소득	빈곤율	빈곤갭 비율
2022	전체	3,510	20.7	10.6
	장애인	1,725	50.5	32.8
	비장애인	3,589	19.1	9.4
2021	전체	3,207	21.1	10.7
	장애인	1,597	50.1	32.1
	비장애인	3,285	19.5	9.5
2020	전체	3,018	21.5	10.7
	장애인	1,498	50.2	32.2
	비장애인	3,091	19.9	9.5
2019	전체	2,970	21.4	10.9
	장애인	1,175	56.0	36.4
	비장애인	3,024	19.9	9.8

자료: 조윤화 외(2024), 「2024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표 III-1-1>, p. 41.

-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장애인복지법」 제10조의2에 따라 1998년부터 매 5년마다 장애계, 학계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수립 중이며, 2023년 3월에 2023~2027년을 위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다양한 분야별로 장애인 정책을 추진 중임⁵¹⁾
 -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주간 및 방과후활동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자립 지원 중장기 로드맵을 보완하여 주거 자기결정권 보장을 강화하고자 함
 - 전체 학령인구는 감소 추세이나 특수교육 대상 영유아 및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생애단계별 맞춤형 교육 지원체계를 고도화하고자 함

51) 관계부처 합동(20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참고하여 작성함.

- 물가인상 등을 고려하여 장애 관련 급여액을 인상하고 장애인 일자리를 확대하는 등 소득보장제도를 강화하고 장애인 고용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제6차 종합계획 총 소요 예산은 약 31.3조원으로 추정됨

〈표 III-22〉 재정투입 계획(안)

(단위: 억원)

구분	총계	2023년	2024~2027년
복지·서비스	176,905	24,431	152,475
건강	3,306	757	2,549
보육·교육	1,713	249	1,462
경제활동	108,514	19,942	88,573
문화예술 디지털·미디어	3,170	479	2,692
체육·관광	7,234	1,323	5,912
이동·편의·안전	11,225	2,235	8,990
권익증진	726	104	621
계	312,793	49,519	263,274

주: 1. 국비 기준 잠정치이며, 전체 장애인정책 관련 예산 중 제6차 종합계획에 포함된 과제 예산만 포함함

2. 연차별 투입계획(안)은 재정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향후 기재부 등 관계부처 협의과정에서 재정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자료: 관계부처 합동(2023),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p. 17.

□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과 자산 수준이 낮아 경제적 취약성이 심각하고, 장애인 소득보장 및 고용지원 제도의 한계 등으로 자산형성이 더욱 필요한 상황으로 자산형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수행할 수 있음(정용문·윤상용, 2024)

- 2021년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에 근거하여 장애인 가구의 연간 가구소득은 비장애인 가구의 52.2%에 불과하며, 장애인 가구의 재산은 비장애인 가구 대비 73.8% 수준임
- 장애인 소득보장의 핵심인 장애인연금은 중증장애인 수급권자의 70.2%를 포괄하고 있지만 상당수의 중증장애인이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음
- 경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수당(18세 이상)과 장애아동수당(18세 미만)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만 자격이 주어지고, 지급액 측면에서도 장애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비용을 지원하기에는 적정 수준이 아님

- 경제적 지원 측면에서 직접적인 현금지원 방식보다 고용을 통한 소득활동 지원방식을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근로 능력이 없는 중증장애인에게만 급여 자격을 주고 경증장애인이나 어느 정도 근로 능력이 있는 장애인에게는 충분한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소득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음
 - 장애인 고용율이 가시적으로 개선되지 않음
- 종합해 보면 장애인의 빈곤율과 소득분포 측면에서 장애인에 대한 지원은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며, 특히 자산형성을 통한 제도적 보완 측면에서도 타당성이 있음
 - 장애인 가구는 비장애인 가구에 비해 소득 및 자산수준이 낮으며 빈곤수준이 높은 반면, 경제활동 참여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음
 - 장애인연금, 장애수당, 고용을 통한 소득활동 지원 등의 한계를 보완하고 자산형성을 통한 자기결정권 제고를 돕는 정책이 필요함

3)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의 적절성

- 본 조세특례의 정책대상자인 기초생활수급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합산한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급여종류 및 수급 여부를 결정
 - 급여는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있으며, 중위소득 대비 소득 인정액의 상대적 크기에 따라서 각 급여의 수급 여부가 결정됨
 - 기준이 되는 중위소득은 매년 보건복지부 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및 의결을 거쳐 고시되며,⁵²⁾ 중위소득이 변화함에 따라 수급자격 또한 변동됨
- 2025년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은 <표 III-23>과 같으며 작년 수준보다 증가하였음
 - 2024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713,102원, 의료급여 선정기준은 891,378원, 주거급여 선정기준은 1,069,654원, 교육급여 선정기준은 1,114,223원이었음⁵³⁾

52)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검색일자: 2025. 3. 8.

53) 보건복지부, 「수급자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검색일자: 2025. 3. 4. 참고하여 작성함.

<표 III-23> 2025년 기준 중위소득 및 급여종류별 선정 기준

(단위: 원)

구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5인 가구	6인 가구	7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2,392,013	3,932,658	5,025,353	6,097,773	7,108,192	8,064,805	8,988,428
생계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주: 1.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923,623원씩 증가
 2.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은 1인 증가 시마다 7인 가구 기준과 6인 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 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3. 8인 가구 생계급여 선정기준: 3,171,856원=2,876,297원(7인 기준)+295,559원(7인 기준-6인 기준)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소득 기준 확인하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2&search_put=, 검색일자: 2025. 3. 4.

- 소득 인정액에 사용되는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개별 가구의 재산가액에서 기본재산액⁵⁴⁾ 및 부채를 공제한 금액에 소득환산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관련 한도액 및 소득환산율 등은 <표 III-24>와 같음
-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및 기본재산액은 지역마다 상이함

<표 III-24> 수급(권)자의 주거용재산 한도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17,200만원	15,100만원	14,600만원	11,200만원

주: 주거용재산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으면 일반재산으로 반영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재산 기준 확인하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3&search_put=, 검색일자: 2025. 3. 4.

54)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재산액

<표 III-25> 수급(권)자의 기본재산액

구분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그 외 지역
생계·의료· 주거·교육급여	9,900만원	8,000만원	7,700만원	5,300만원

주: 주택·농지연금 가입 가구도 기본재산 공제액 동일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재산 기준 확인하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3&search_put=, 검색일자: 2025. 3. 4.

- 소득환산율은 재산 종류별로 상이함
 - 2013년에 주거용재산 기준을 신설하여 일반재산 중 거주 목적으로 보유하는 주택, 준주택, 임차보증금 등 주거용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완화하였음⁵⁵⁾

<표 III-26> 재산의 소득환산율

구분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소득환산율이 100% 적용되는 자동차
수급(권)자	월 1.04%	월 4.17%	월 6.26%	월 100%
부양의무자	월 1.04%	월 2.08%		

주: 부양의무자가 보유한 자동차는 부양의무자가 장애의 정도가 심한 등록장애인(상이등급 1~3급 포함)인 경우 부양의무자 본인 명의의 장애인사용자동차 1대(배기량, 차종, 운전자를 구분하지 않음)는 재산가액 산정에서 제외하고, 그 외 자동차는 일반재산 환산율 적용
 자료: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재산 기준 확인하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3&search_put=, 검색일자: 2025. 3. 4.

- 기초생활수급자는 2020년에 들어 200만명 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중위소득의 증가로 최근까지 꾸준히 규모가 늘고 있으며, 대부분이 일반수급자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최저생활을 보장받고 있음
 - 기초생활수급자는 2017년에 약 158만명으로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약 255만명을 기록함

55) 김태완 외(202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p. 191 참고하여 작성함.

<표 III-27> 기초생활수급자 현황

(단위: 명)

구분	계	일반수급자	시설수급자
2014	1,328,713	1,237,386	91,327
2015	1,646,363	1,554,484	91,879
2016	1,630,614	1,539,539	91,075
2017	1,581,646	1,491,650	89,996
2018	1,743,690	1,653,781	89,909
2019	1,881,357	1,792,012	89,345
2020	2,134,186	2,046,213	87,973
2021	2,359,672	2,268,852	90,820
2022	2,451,458	2,359,228	92,230
2023	2,554,627	2,458,608	96,019

자료: 국가통계포털,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 <https://kosis.kr/>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중 50세 이상,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도에 거주하는 가구와 단독가구의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수급자 중 여성이 56%로 가장 많으며, 50세 이상의 비중(66%)이 높게 나타남
 - 수급가구 중 도에 거주하는 경우가 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가구 유형 중에는 단독가구의 비중이 48%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28>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및 가구 특성

(단위: %)

분류	분류	2019	2021	2023
가구주 성별	남	45	45	44
	여	55	55	56
가구주 연령별	50세 미만	40	37	34
	50대	16	16	15
	60대	17	19	20
	70대	16	15	16
	80세 이상	11	13	15

<표 III-28>의 계속

(단위: %)

분류	분류	2019	2021	2023
가구주 연령별	50세 미만	40	37	34
	50대	16	16	15
	60대	17	19	20
	70대	16	15	16
	80세 이상	11	13	15
거주지역별	서울	17	18	18
	광역시 및 자치시	31	31	31
	도	52	52	52
가구유형별	단독가구	52	50	48
	부부가구	8	8	9
	단독가구, 부부가구 그 외	40	41	44

자료: 다음 자료들을 활용하여 저자 작성

1.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국민기초일반수급자수- 시도별, 성별, 연령별」, 2023,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2&conn_path=I2, 검색일자: 2025. 6. 30.;
2.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현황-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구- 시도별, 특성별」,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14_N004&conn_path=I2, 2023, 검색일자: 2025. 6. 30.

□ 기초생활보장제도 선정가구의 소득 및 재산의 규모 또한 높지 않은 수준으로 나타남

- 소득은 20만원 초과 40만원 이하 가구가 30.9%로 가장 많고, 존재하지 않는 가구의 비중이 29.2%로 그 다음으로 높음
- 재산 규모가 0원 초과~1천만원 이하인 가구의 비중이 41.7%로 가장 많고, 1천만원 초과 2천만원 이하(15.3%)인 가구의 비중이 그 다음으로 높았음

<표 III-29>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구소득 현황(2023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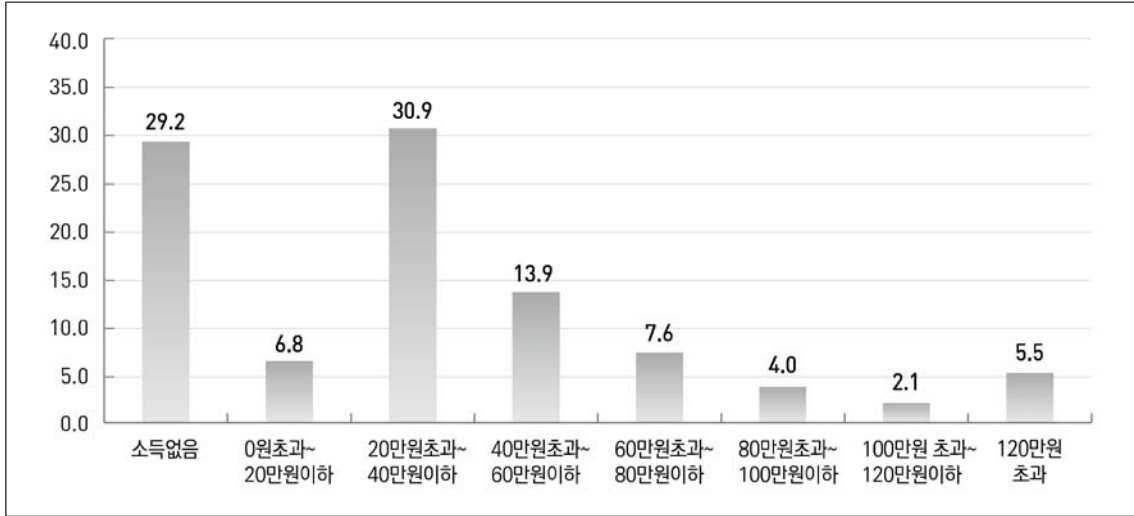
(단위: 가구, %)

구분	계	소득 없음	0원 초과~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4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6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80만원 초과~100만원 이하	100만원 초과~120만원 이하
가구수	1,788,309	522,769	120,790	552,123	249,416	135,917	71,854	36,702
구성비	100	29.2	6.8	30.9	13.9	7.6	4.0	2.1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53.

[그림 III-6]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소득분포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5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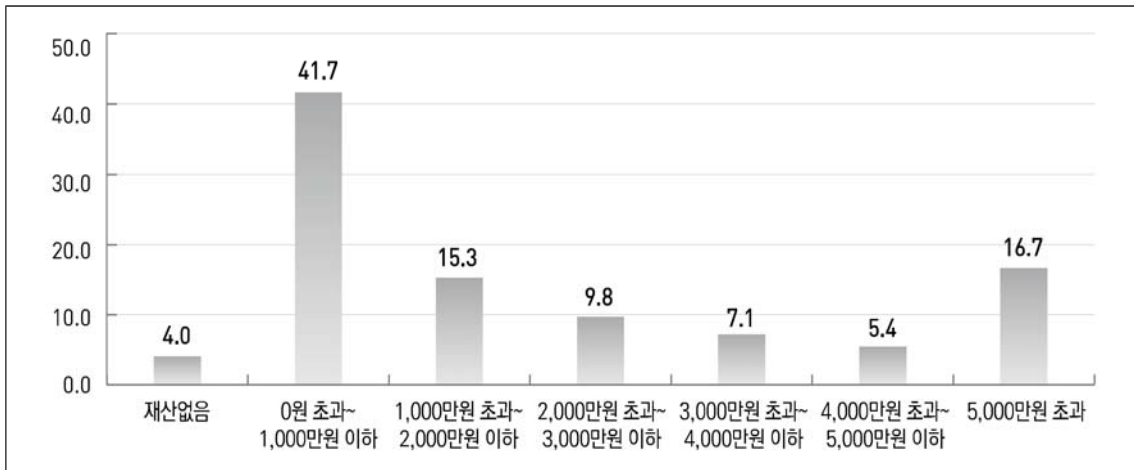
<표 III-30>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 현황(2023년)

구분	계	재산없음	0원 초과~1천만원 이하	1천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3천만원 이하	3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가구수	1,788,309	71,268	745,635	274,137	174,897	127,541	95,965	298,866
구성비	100.0	4.0	41.7	15.3	9.8	7.1	5.4	16.7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79.

[그림 III-7]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재산규모별 분포

(단위: %)



자료: 보건복지부(2024),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p. 79.

-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수급자 선정과 관련한 규정과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한 결과, 본 과세특례의 수혜대상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됨
 -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종합적 빈곤대책으로 2015년부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로 상대적 빈곤선을 도입함으로써 욕구별 지원을 강화하고 있음
 - 수급자 자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명시된 대로 소득 및 재산수준을 고려한 소득 인정액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주어짐
 - 따라서 본 과세특례에서 별도의 소득 및 자산기준을 적용하지 않으나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정을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이 수혜대상으로 선정됨
 - 이에 더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8(자산형성지원), 시행령 제21조의2(자산형성지원의 대상등) 등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가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하는 재정지원을 보장하고 있으며, 이는 본 과세특례의 제도목적과도 일치함

4) 소결

- 지원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논거를 종합해 보면,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대상인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은 저축 및 재산형성 지원대상으로 대체로 적정하다고 평가
- 다만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과는 달리 만 65세 이상 노인은 소득 및 자산수준이 향상되고 있으며 고소득 층 및 고액자산가의 경우 비과세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 또한 존재
 - 65세 이상 고령층의 소득 및 자산수준이 향상되고 있어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별도의 기준이 필요할 수 있음
 - 또한 만 65세 이상 사업자 중 고액자산가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많이 볼 수 있어 이를 배제하지 않는 경우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문제가 존재
 - 반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선정에서 이미 소득과 재산 수준이 고려되고 있다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음

- 이에 만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는 2020년에 도입된 금융소득요건(연 2천만원 초과 시 가입 제한)에 더하여 별도의 재산 및 소득요건을 추가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일정한 소득수준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을 제한하고 있는 유사 세제혜택으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 있음
 - 청년우대형종합저축은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이하 기준을 적용
 - 다만 고령층의 경우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자산 규모는 상당할 수 있어 소득 기준만으로는 본 과세특례가 대상으로 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분별이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가입요건으로 재산수준을 고려하는 과세특례 금융상품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만약 재산수준을 설정할 경우 금융기관이나 가입신청자가 재산수준 확인 및 증빙에 대한 추가적인 행정비용이 소요될 수 있음
 - 자산요건을 적용하여 수혜대상을 제한하는 조세특례의 예시로는 근로장려금이 있으나 이는 수혜대상자가 세액공제를 신청할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금융상품 가입 당시 금융기관에서 이를 확인하여야 하는 본 과세특례와는 상황적 차이가 있음
 - 다만 근로장려금과 같이 이미 구축되어 있는 과세 인프라를 공유하는 경우 행정비용은 크지 않을 가능성도 있음

- 따라서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하여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하는 것은 수혜대상 간 형평성 측면에서의 타당성이 낮아 개선이 필요할 수 있으나, 행정적 차원에서의 한계가 있어 비용 대비 효과를 고려한 정책설계가 필요함
 - 적은 행정비용으로 소득 및 자산을 모두 파악할 수 있다면 자산을 유동화하여 소득으로 전환하여 빈곤선과 비교하거나, 자산을 고려한 기초연금, 근로장려금 등의 요건을 기준으로 수혜대상을 제한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다만 현재 수혜자 중 해당되는 고자산·고소득자가 많지 않을 경우 행정비용 대비 타당성 제고효과는 적을 것임
 - 또한 추가적인 요건을 부여하는 경우 만 65세 이상 고령자 전반의 소득다변화 기능은 축소되는 점도 있음
 - 현재 운용되고 있는 유사한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소득기준을 사용하거나 연금

소득을 기준으로 가입대상자를 제한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음

- 서민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와 유사한 수준인 총급여 5천만원 이하 근로소득자,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사업소득자로 한정
- 일정 금액의 총연금수령액 이하의 연금소득자를 가입대상자로 설정(정다운·정재현, 2022)

다. 지원방식의 적절성

- 본 과세특례는 해당 정책대상자가 세금우대종합저축 계약금액과의 합계액이 5천만원 이하인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해서 이자 또는 배당소득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 2020년부터 소득요건이 추가되어 직전 3개 과세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대상에서 제외됨(『조특법』 §129의2)
- 경제적 취약계층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수단으로는 재정정책을 통한 지원방식과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방식이 존재하며, 본 과세특례는 비과세 방식에 해당함
 - 조세지출예선서에 제시된 조세지출의 유형은 영구적으로 세부담을 경감시키는 직접감면과 일정 기간 동안 과세를 연기하는 간접감면이 있음
 - 직접감면에는 비과세, 소득공제, 저율과세, 세액공제 및 감면이 있으며, 간접감면에는 준비금, 과세이연 및 이월과세가 있음
 - 직접과세 방식 중 소득공제는 수직적 형평성을 해친다고 알려져 있어 이를 세액공제로 전환하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분명한 효과성은 아직 발견되지 않음
 - 이상엽·윤성주(2020)에 따르면 2014년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세제혜택이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됨에 따라 개인의 연금저축 납입형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 결과, 세액공제로의 전환 후 저소득근로자의 연금저축 납입액에 대한 수혜 가능성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세액공제 전환 이후 상대적으로 중산층 이하 근로소득자의 수혜대상 연금저축 납입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정책 당국의 기대와는 상이함

- 비과세는 특정소득을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본 과세특례는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하여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을 비과세하는 방식임
- 비과세 방식은 과세표준의 크기나 세액공제 순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보다 유리한 측면이 있음
 - 즉 면세점 이하의 소득을 가진 수혜자 여부나 산출세액 유무 등과 무관하게 이자 및 배당소득에서 발생하는 세금을 감면받을 수 있어 조세부담 유무에 따른 혜택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음
- 반면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 방식은 금융소득이 여타 소득과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우 비과세 혜택이 고소득층일수록 더 커질 수 있어 수직적 형평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이를 국세청 내부 표본자료를 통해 살펴봄
 - 국세청 미시자료는 2023년 수혜자 대상으로 1949~1960년생까지 2,000명씩 무작위 추출한 표본자료로, 지급명세서와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금액이 존재
 - 분석 결과 종합소득 7,000만원까지는 구간 평균 혜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혜택이 역진적인 가능성이 있으나 소득분위별 차이가 크지 않으며, 7,000만원 이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도 있음
 - 본 과세특례로 인하여 비과세 혜택의 대상이 되는 이자 및 배당소득 금액은 1,000만원 이하 116만원에서 6,000만~7,000만원 126만원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나 차이는 크지 않음
 - 7,000만~8,000만원 구간 평균 혜택 금액 124만원에서 소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여 8,800만~9,000만원 이하 구간에서는 64만원까지 감소
 - 이후 1억원 이상 구간부터는 증감이 있으며 1억 5천만원 초과 구간에서 243만원을 기록함
 - 이는 과세특례의 대상이 되는 금융상품에 대한 선택이 소득수준별로 크지 않음을 의미할 수도 있고, 납입금액의 한도(5,000만원) 설정으로 소득구간별 큰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을 가능성을 보여줌
 - 다만 본 국세청 표본자료는 규모가 제한적(2023년 수혜대상자의 0.5%)이며, 소득 분포를 고려한 추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전체 수혜자들에 대한 대표성을 담보하고 있지는 않으므로 확장적으로 적용하는 것에는 주의가 필요함

<표 III-31> 2023년 비과세종합저축 수혜자 표본 특성: 소득구조 및 수급 현황

종합소득금액 구간	구간 수혜자(명)	구간 혜택 금액(원)	구간 혜택 평균(원)
10백만원 이하	17,341	20,160,303,104	1,162,580
10~14백만원	469	555,617,088	1,184,684
14~20백만원	600	676,889,152	1,128,148
20~30백만원	572	725,737,344	1,268,771
30~40백만원	279	376,820,256	1,350,610
40~50백만원	133	171,090,400	1,286,394
50~60백만원	101	147,474,272	1,460,141
60~70백만원	54	68,077,592	1,260,696
70~80백만원	38	47,194,736	1,241,966
80~88백만원	24	24,709,684	1,029,570
88~90백.만원	4	2,562,396	640,599
90~100백만원	20	19,329,924	966,496
100~110백만원	27	42,219,192	1,563,673
110~120백만원	11	14,798,655	1,345,332
120~130백만원	8	6,832,030	854,003
130~140백만원	9	8,292,807	921,423
140~150백만원	7	7,250,774	1,035,824
150백만원 초과	78	189,221,696	2,425,919

주: 1. 2023년 신고자료(출생연도 별 총화추출) 기준이며, 실제 분포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자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기준임

2.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의미하며,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국세청 자료 분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은 0으로 분류되기에 해석에 주의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수직적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20년 ‘지난 3년간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를 수혜대상에서 배제하는 요건(「조특법」 §129의2)’이 추가되었으나, 제3절의 효과성 분석의 결과를 참고하면 취약계층으로 과세특례 대상자를 한정하는 기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조특법」 §129의2) 요건은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제도 중 비과세 방식으로 혜택을 부여하는 열 가지 제도들에 동일하게 적용되어 통합한도와 유사한 방식으로 ‘중복수급의 정도’를 제한하는 역할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이는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부족한 측면이 있음

- 열 가지 제도들은 ①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② 농어가목돈 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③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④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⑤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⑥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⑦ 개인 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⑧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⑨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⑩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운영방식 측면에서도 종합소득 과세대상자인지 여부는 ‘가입 시’ 혹은 ‘연장 시’에만 확인하고 있어 적절한 수혜대상자인지 여부가 매해 확인되지 않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제외 요건에 더하여 총급여 혹은 종합소득 요건을 적용하고 있으며, 취약계층 지원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조세특례(근로장려금 등) 또한 별도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적용하고 있음
- 이어지는 제3절의 효과성 분석성 분석의 결과, 2020년 도입된 금융소득 요건(연 2천만원 초과 시 가입 제한)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0.16~0.48% 수준으로 매우 적었음
- 이에 비추어 금융소득 요건은 취약계층 선별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존재함

라. 중복성 검토

1) 조세지출과의 중복성

- 현재 운용되고 있는 금융소득에 대한 비과세·감면제도로는 총 16가지의 항목이 존재함
 -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특례는 총 14개 항목
 - 『소득세법』상 장기저축성 보험의 이자소득 비과세와 연금저축의 세액공제 두 가지 항목이 존재함
-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에 따르면, 금융소득에 대한 국세감면 규모는 5조 6,618 억원 수준으로 총 국세감면액(78조 178억원)의 7.3% 수준으로 전망됨

- 「조세특례법」상 저축지원을 위한 14개 항목의 조세지출 총액은 약 3조 2,238억원 수준으로 전망됨
 - 「소득세법」상 조세지출 규모는 약 2조 4,380억원으로 추정
 - 장기저축보험 보험차익의 이자소득 비과세가 5,039억원, 연금계좌 세액공제가 약 1조 9,341억원
- 「조세특례법」상 저축지원을 위한 조세지출 중 조합 등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의 조세지출 규모가 1조 3,716억원으로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본 조세특례의 조세지출 규모(1조 1,929억원) 두 번째로 크게 나타남
- 그 다음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4,065억원), 우리주사주 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1,348억원) 순으로 조세지출의 규모가 크게 나타남

<표 III -32>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의 현황

(단위: 억원, %)

연번	조세지출 내역	2025년 전망	비중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4,065	12.61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433	1.34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3	0.01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73	0.23
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1	0.00
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11,929	37.00
7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1,348	4.18
8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13,716	42.55
9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553	1.72
11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101	0.31
1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16	0.05
13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추정곤란	
14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추정곤란	
합계		32,238	100.00

주: 1.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4년 말까지 적용

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는 2025. 12. 31. 가입분까지만 적용 예정(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4.

- 가입대상자별 비과세·감면 금융혜택을 살펴보면, 비소득자가 받을 수 있는 비과세 감면은 5가지, 근로소득자는 10가지, 종합소득자는 9가지, 농어민 6가지가 존재
 - 본 조세특례인 비과세종합저축의 경우 비소득자, 근로자, 종합소득자, 농어민이 모두 가입할 수 있어 소득유형에 따른 중복성은 존재함
 - 다만 소득, 자산, 연령 등의 요건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 이를 추가적으로 살펴봄

<표 III-33> 가입대상자별 비과세 감면혜택

비소득자	근로자	종합소득자	농어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 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주: 1.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4년 말까지 적용
 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는 2025. 12. 31. 가입분까지만 적용 예정(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검색일자: 2025. 5. 23.

□ 각 조세특례의 소득 및 자산 요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과세연도 소득 및 자산규모에 따라 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조세특례는 총 4가지로 대부분이 청년대상의 제도들로 파악됨
 - 소득 및 자산 요건 등이 설정되어 있는 조세특례는 주택청약종합저축(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총급여 3,600만원, 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총급여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총급여 7,500만원,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⁵⁶⁾ 가 있음
- 과세연도 소득수준에 따라서 공제한도가 변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조세특례로는 소기업 소상공인에 대한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음
- 본 조세특례와 같이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인 경우를 제외(§129의2)’하는 방식으로 수급자를 한정하는 저축지원 조세특례로는 10가지가 존재
 - 10가지 제도들은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에 대한 소득공제,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표 III-34> 「조세특례제한법」상 저축지원 조세지출 소득 및 자산요건

(단위: 억원, %)

연번	조세지출 내역	소득 및 자산 요건, 공제한도 등
1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사업소득/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3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 2,600만원) 이하, 가입 당시 무주택세대주,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는 2025. 12. 31. 가입분 까지만 적용 예정(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표 III-34>의 계속

(단위: 억원, %)

연번	조세지출 내역	소득 및 자산 요건, 공제한도 등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5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7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8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9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¹⁾	투자금액 합계액 3천만원 한도
10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소득수준에 따라 비과세 금액 차등 적용 (200만~400만원)
11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비과세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12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총급여 5,0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13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²⁾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제외(§129의2), 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 6,300만원 이하
14	개인투자용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1인당 국채 매입한도 총 2억원

주: 1.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4년 말까지 적용

2.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는 2025. 12. 31.가입분 까지만 적용 예정(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 개편안 상세본』)

자료: 대한민국정부, 『2025년도 조세지출예산서』, 2025.

□ 각 조세특례별 연령에 따라 수혜 가능한 조세특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음⁵⁷⁾

- 본 조세특례와 같이 만 65세 이상으로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포함하여 9가지가 존재
 -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57)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는 2024년 말까지 적용으로 미포함

소득공제,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비과세종합저축, 개인투자국채에 대한 과세특례

-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여 보면 65세 이상 비소득자, 소득자, 종합소득자, 농어민이 본 과세특례와 중복하여 받을 수 있는 조세특례가 다수 존재하며, 대체로 과세연도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이 있음
 - 65세 이상 비소득자: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을 포함한 제도
 - 65세 이상 근로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비과세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우리사주조합원 등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을 포함한 제도
 - 65세 이상 종합소득자: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에 대한 소득공제 등,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을 포함한 제도
 - 65세 이상 농어민: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공모부동산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을 포함한 제도

- 중복수급이 가능한 조세특례 중 조세지출 규모 측면에서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과의 중복성이 가장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특정한 제도와의 중복성이 크게 발생하는지 여부는 국세청 데이터를 통해 확인하여 봄

- 국세청에서 제공한 2023년 본 과세특례 수혜자 정보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2023년 65세 이상 수혜자의 경우 조합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의 중복성(25.53%)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우 비교적 크지 않음

- 국세청 제공 2023년 수급자 전수조사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비과세·면제 금융소득 중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의 비중이 69.94%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남
- 비과세·면제 금융소득의 25.53%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이며, 4.27%가 그 외의 비과세·면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비과세·면제는 ISA에 대한 비과세 포함
 - 본 과세특례와 ISA의 중복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배제 제한을 통해 중복성의 정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복 수급자의 수는 조합 출자금·예탁금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금액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262만원)과 세금우대종합저축(106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표 III -35> 2023년 수혜자 비과세·면제 금융소득금액 구성: 65세 이상 수혜자

(단위: 명, 백억원, 원, %)

구분	수혜자 수	비과세 면제 금융소득 금액				
		총액 (A+B+C+D)	비과세종합 저축 (A)	농어가목돈 마련저축 (B)	조합등 출자금·예탁금 해당 금융소득금액 (C)	그 외 비과세·면제 (D)
총액	4,088,877	638.62	446.67	1.60	163.06	27.30
비중	-	-	69.94%	0.25%	25.53%	4.27%

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수혜자 중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거주자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를 사용하여 저자 작성

<표 III -36> 2023년 수혜자 타 비과세 감면 금융상품 중복가입 현황: 65세 이상

(단위: 명, 원)

구분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		
		수혜자 수	수혜금액	평균금액
1	조합 등 출자금	2,485,330	42.25	170,007
2	조합 등 예탁금	1,581,181	120.81	764,032
3	세금우대종합저축	16,076	1.70	1,055,666
4	농어가목돈마련저축	27,576	1.60	578,950

<표 III-36>의 계속

(단위: 명, 원)

구분	비과세종합저축과 중복		
	수혜자 수	수혜금액	평균금액
5 고배당기업 배당	36	0.00	48,461
6 개인연금저축	18,817	1.72	914,015
7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	4,179	1.09	2,615,871
합계(8=1+2+3+4+5+6+7)	4,133,195	169.17	409,287

주: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수혜자 중 2023년 기준 65세 이상인 자에 대한 전수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작성

자료: 국세청 내부자료

- 종합하면 운용되는 유사한 조세특례들은 중복가입을 막고 있지는 않으나 대체로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배제하는 방식으로 중복수급의 정도를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납세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측면에서의 장점이 있으나 고소득층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 집중될 수 있어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국세청 자료를 사용하여 살펴본 결과 중복수급은 조합 출자금·예탁금 등에서 25.36% 정도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수급금액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262만원)과 세금우대종합저축(106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대상자를 배제하는 방식은 수급자들의 금융상품에 대한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면서 ‘중복수급의 정도’를 제한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으로 생각됨

- 다만 종합소득과세대상자로 설정되기 위하여 연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창출하여야 한다는 점을 생각할 때, 실효성 있는 제약요건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및 개선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음
 - 즉 대부분을 부동산 자산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령층의 특성상 연 2,000만원의 금융소득을 창출하는 65세 이상 노인들이 극소수의 고소득층인 경우 유효한 제약이 아닐 가능성도 존재함
 - 실제로 제3절의 효과성 분석의 결과에서도 금융소득 요건을 적용할 시에 수급요건의 변화가 생긴 경우는 0.16~0.48%로 많지 않았음
 -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금융소득 종합소득과세대상자 배제’와는 별

- 도의 요건을 적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수 있음
- 다만 이에는 행정비용의 증가, 노인의 생활수준 보장 등 다양한 측면에 대한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함

2) 재정사업과의 유사·중복성 검토

- 정부는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을 위하여 조세지출을 통한 지원 외에도 대한 다양한 재정사업을 운용하고 있음
 - 주로 농어민과 근로빈곤층의 목돈 마련을 지원한다는 점에서 본 과세특례와는 그 취지와 대상측면에서 차이가 있음

- (농어가목돈마련저축⁵⁸⁾) 농어민 등의 재산형성을 지원하고 안정된 생활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저축금액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 등의 혜택을 부여한 제도임
 - (가입대상)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로, 소득·재산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건강보험제도를 활용하여 일반 농어민과 저소득 농어민을 구분함
 - (일반 농어민)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5배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이 해당됨
 - 2025. 1. 1.~2025. 12. 31. 건강보험료 납부금액(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은 월 300,460원 이하⁵⁹⁾
 - (저소득 농어민) 일반 농어민의 기준 금액 이하의 범위에서 매년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월별 건강보험료 금액 이하로 납부하는 농어민, 건강보험미대상자(의료급여수급권자 등)인 농어민, 피부양자인 농어민이 해당됨
 - 2025. 1. 1.~2025. 12. 31. 건강보험료 납부 금액(각종 경감대상자의 경우 경감 전 금액)은 월 213,890원 이하⁶⁰⁾

58) 금융감독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https://finlife.fss.or.kr/finlife/main/contents.do?menuNo=700070>, 검색일자: 2025. 5. 26.;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www.fsc.go.kr/no010101/80726?srchCtgr=&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검색일자: 2025. 5. 26.

59)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액 고시」, <https://www.fsc.go.kr/po040200/83711>, 검색일자: 2025. 5. 26.

60)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액 고시」, <https://www.fsc.go.kr/po040200/83711>, 검색일자: 2025. 5. 26.

- 가입일 또는 연장일이 속한 과세기간의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 (가입한도) 연간 240만원(월 20만원)
 - (저축기간) 소득수준에 따라 3년 또는 5년
 - (세제혜택) 이자소득 비과세, 계약기간 만료시 소정의 저축장려금 지급
- (자산형성지원사업⁶¹) 일하는 수급가구, 차상위계층 및 자활근로사업단 참여자,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의 자립·자활 지원을 위해 정부가 자산형성을 지원하며, 희망저축계좌 I, 희망저축계좌 II, 청년내일저축계좌가 있음
- (신청자격)
 - (희망저축계좌 I) 일하는 생계·의료수급가구
 - (희망저축계좌 II) 일하는 주거·교육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
 - (청년내일저축계좌) 연령은 신청 당시 만 19~34세(단 수급자·차상위자는 15~39세 까지 허용),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월 230만원 이하(단 수급자·차상위자는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지급요건 및 혜택)
 - (희망저축계좌 I)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이 매칭 지원되며, 탈수급 시에는 전액 지급함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지급함
 - (희망저축계좌 II)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10만원이 매칭 지원되며,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 완료 시에는 전액 지급함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지급함
 - (청년내일저축계좌)
 -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본인 저축액 10만원(매월 전월 23일~현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대비 정부지원금 10만원(중위소득 50% 초과~100%

61) 보건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20400>, 검색일자: 2025. 5. 26.

이하), 30만원(중위소득 50% 이하)이 정액 매칭되며, 3년간 통장 유지, 근로 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함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근로소득공제금,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내일키움수익금 등)을 지급함

3.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은 특정 조세특례 도입 후의 성과를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향후 조세특례 정책 수립 및 개선에 반영하여 조세지출의 효율적 운용과 정책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조세특례는 정부의 재정 지출과 유사한 효과를 가지므로, 일반 재정사업과 마찬가지로 체계적인 성과 관리가 필요함

- 조세특례 심층평가는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규에 명시된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평가 결과를 법규 개정 및 제도 운용에 반영하여 법적 타당성을 확보함

○ 심층평가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비효율적인 조세특례는 폐지 또는 축소하고, 필요한 제도는 개선하여 조세지출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함

- 심층평가를 통해 조세지출의 규모를 적정하게 관리하고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여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 조세특례 심층평가 결과를 공개하여 조세지출 운용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함

□ 본 연구의 효과성 분석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 제도를 대상으로 다음과 같은 분석을 실시함

○ 먼저 비과세종합저축 조세특례의 현황과 제도 활용의 요인 분석을 실시함

- 제도 활용 추이를 살펴보고, 금리 변동, 경제성장률, 소비자물가지수 등 거시경제 지표와 가계저축률, 금융상품 수익률 등의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이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분석

○ 다음으로 수혜대상에 따른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국세청 과세자료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함

- 국세청의 종합소득세 신고자료를 활용하여 수혜대상의 소득분위별, 연령대별, 성별 특성을 분석
- 마지막으로 경제적 효과 추정에서는 제도 변화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엄밀한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여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
- 제도 도입 시점과 대상 범위의 변화를 활용한 Staggered DID 분석을 통해 저축 증대 효과를 측정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건이 추가된 조건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

가. 제도 활용 현황과 요인 분석

1) 개요

- 비과세종합저축은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고령자와 사회적 배려계층을 대상으로 저축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제도임
 - 노인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노후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것을 정책목적으로 하고 있음
 - 가입 한도는 전 금융기관 통합하여 1인당 5천만원이며, 이 범위 내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가입자는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기관에 분산하여 가입할 수 있음
 - 가입대상은 만 65세 이상인 거주자 및 사회적 배려계층임
 - 사회적 배려계층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등임
 - 다만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어느 한 해라도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여 종합과세 대상이 된 경우에는 가입이 제한됨
- 본 절에서는 국세청 과세자료와 은행연합회 자료를 활용하여 제도 활용 규모와 연간 추이를 살펴보고, 거시경제적 환경 등을 고려하여 제도 활용 요인에 대해 분석하고자 함

2) 제도 활용 규모 및 추이 분석

- 은행연합회 제공 자료를 통해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활용 규모와 추이를 분석

- <표 III-37>은 2020년부터 2024년까지의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및 가입자 관련 데이터를 종합적으로 보여줌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수는 2020년 779만 9,461건에서 2024년 1,008만 5,000건으로 약 2,300만건 증가
 - 연평균 약 6.5%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였으며, 특히 2022년 이후 계좌 증가 속도가 더욱 가속화
 - 신규 계좌 수는 2020년 688만 9,402건에서 2022년 975만 9,520건으로 급증하였으며, 이후 2024년에는 947만 6,829건으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 반면 해지 계좌 수는 전체적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로, 2020년 708만 2,289건에서 2024년 910만 1,001건으로 약 200만건이 늘었음
 - 이는 신규 개설과 해지 활동이 동시에 활발해지며 계좌 회전율이 높아지고 있음을 시사
 - 총 가입자 수는 2020년 423만 86명에서 2024년 541만 6,950명으로 약 28% 증가
 - 한도금액은 2020년 약 129조 5,568억원에서 2024년 약 182조 7,120억원으로 약 53조원 이상 증가
 - 평균 계좌 소유기간은 12개월 중반대를 유지
 - 2020년 12.58개월에서 2024년 12.24개월로 소폭 감소하였으나 큰 변동은 없음
 - 계좌 개설 후 해지까지 약 1년 남짓 보유하는 패턴이 유지되고 있음
 - 가입자 평균 연령은 2020년 72.94세에서 2024년 73.20세로 거의 변화가 없음
 - 남성 비율은 약 40%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2020년 40.09%에서 2024년 39.87%로 소폭 하락
 - 여성 가입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은 비중을 차지

<표 III-37>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

기준연월	2020년 12월	2021년 12월	2022년 12월	2023년 12월	2024년 12월
계좌수	7,799,461	7,912,717	8,903,875	9,605,841	10,085,000
신규계좌수	6,889,402	7,038,086	9,759,520	8,940,672	9,476,829
해지계좌수	7,082,289	7,016,097	8,836,983	8,378,731	9,101,001
가입자수	4,230,086	4,346,098	4,897,897	5,187,421	5,416,950
한도금액(억원)	1,295,568	1,351,186	1,596,518	1,721,078	1,827,120
평균계좌 소유기간(개월)	12.58	12.67	12.36	12.26	12.24
평균연령	72.94	73.18	73.02	73.11	73.20
남성비율	40.09%	39.83%	40.25%	40.20%	39.87%

자료: 은행연합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표 III-38>은 계좌수와 한도금액의 연도별 증감률, 그리고 계좌당 평균 한도금액을 분석하였음

- 계좌수는 2021년에 전년 대비 1.45% 증가한 후 2022년에 12.53%의 큰 폭 증가하였으며, 이후 2023년에는 7.88%, 2024년에는 4.99%로 증가세가 둔화
- 한도금액은 2021년에 4.29% 증가, 2022년에는 18.16%라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으며, 2023년과 2024년에는 각각 7.80%, 6.16% 증가함
- 계좌당 평균 한도금액은 2020년 약 1,661만원에서 2024년 약 1,811만원으로 상승 - 특히 2022년에 1,793만원으로 전년 대비 약 5% 상승하며 가장 큰 증가 폭을 보임

<표 III-38>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현황2

기준연월	계좌수 증감률(%)	한도금액 증감률(%)	계좌당 평균 한도금액(원)
2020년 12월	-	-	16,610,994
2021년 12월	1.45	4.29	17,076,137
2022년 12월	12.53	18.16	17,930,599
2023년 12월	7.88	7.8	17,916,991
2024년 12월	4.99	6.16	18,117,204
평균	6.71	9.10	17,530,385

자료: 은행연합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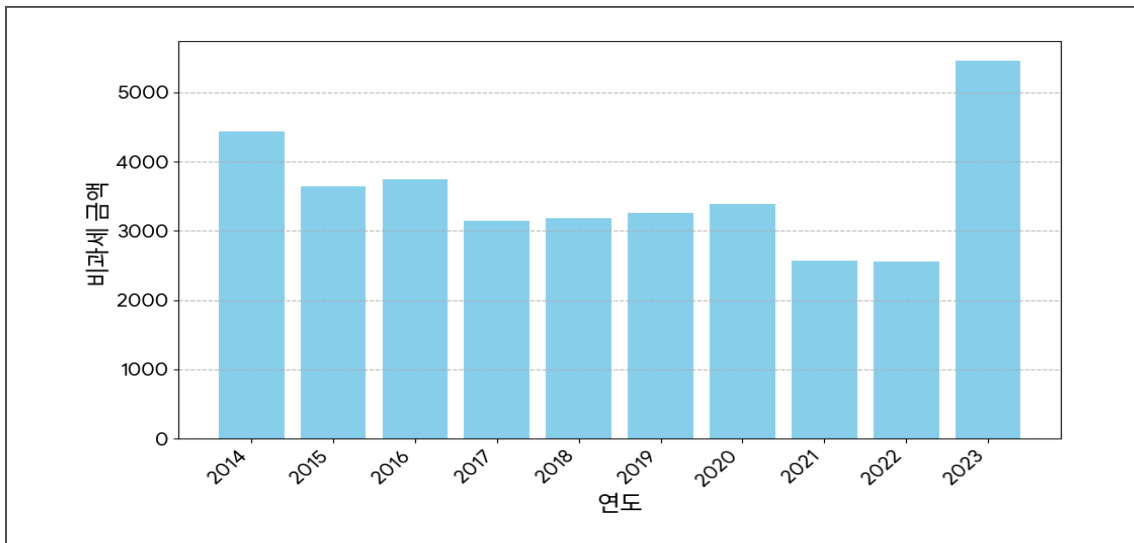
- <표 III-37>과 <표 III-38>에서 살펴볼 수 있는 현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음
 -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수는 2020년 약 780만개에서 2024년 약 1,008만개로 지속 증가했으며, 초기 특히 2022년에 가장 큰 폭(약 12.5%)으로 증가함
 - 계좌당 평균 한도금액 또한 2020년 1,661만원에서 2024년 1,812만원으로 대체로 증가한 것을 파악할 수 있음
 - 가입자 평균 연령, 평균계좌 소유기간, 남녀 비율은 고정적인 특징을 보임

3) 제도 활용 요인 분석

- 연도별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해 혜택받은 비과세 금액은 다소 편차가 큰 편임
 - [그림 III-8]은 2014년부터 2023년까지 10년간의 연도별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 추이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이며, 하락 추세를 유지하다가 2023년에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
 - 해당 그래프에 따르면 비과세 금액은 2014년 4,000억원 중반으로 시작하여 2015년부터 2020년까지는 대체로 3,000억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함
 - 이후 2021년과 2022년에는 약 2,500억원 수준으로 감소하며 조사 기간 중 가장 낮은 금액을 기록
 - 하지만 2023년에는 비과세 금액이 5,000억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급증하며 지난 10년간 최고치를 기록하였음

[그림 III-8] 연도별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

(단위: 억원)



자료: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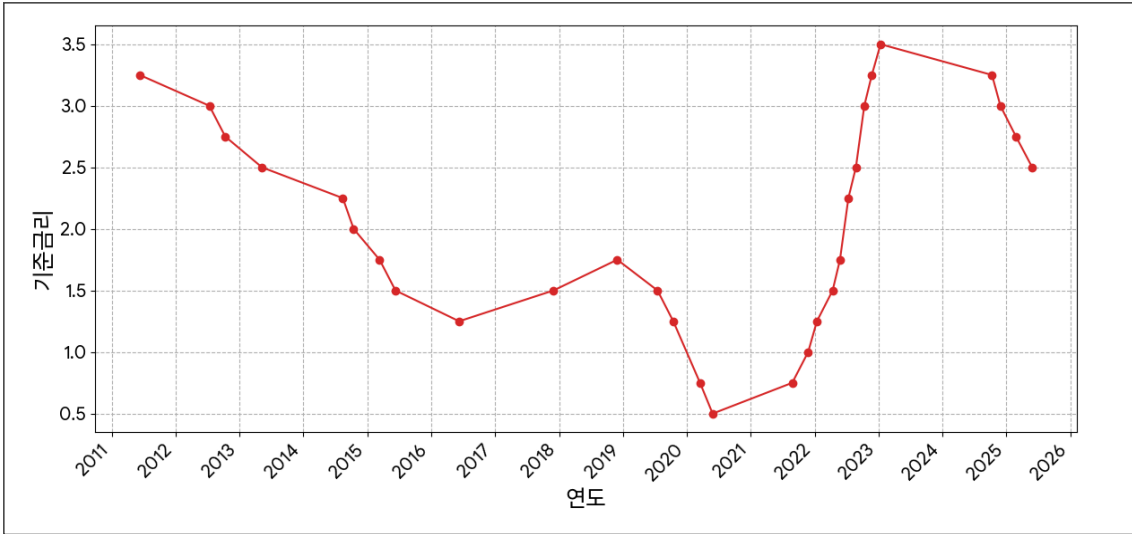
- 이러한 비과세종합저축에 따른 비과세 금액의 변화는 앞서 <표 III-37>과 <표 III-38>에서 살펴본 비과세종합저축 이용자의 형태로는 설명이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동 기간 동안 비과세종합저축 계좌수, 한도금액, 계좌당 평균 한도금액은 꾸준하게 증가 추세를 보였음
 - 반면에 연도별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은 2014년부터 2022년까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다 2023년에 급격한 증가를 보임
 - 이는 결국 지원 대상의 범위가 변화하는 것 이외에 다른 주요한 원인이 있음을 시사함

- 제도 대상의 변화 이외에 동 제도와 가장 관련 있는 지표는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한 투자대상인 금융상품들의 수익률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음
 - 특히 기준금리를 비과세종합저축과 관련된 금융상품들에 대한 수익률의 지표로 고려해 볼 수 있음
 - 무위험 자산의 수익률의 경우 기준금리 자체를 차용하거나 기준금리에 일정 이상의 수익률을 추가하는 수준으로 설정이 되어 있음
 - 자본자산 가격결정 모형(Capital Asset Pricing Model, CAPM) 등의 이론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위험자산의 수익률의 경우에도 기준금리 변화와 비례하게 요구 수익률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
 - 따라서 기준금리 변화에 따른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한 비과세 면제 금액이 변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함

- 최근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장기적인 하락세 이후 급격한 상승을 보임
 - [그림 III-9]는 2011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은행 기준금리의 변동 추이를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앞서 살펴본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 변동 기간(2014~2023년) 기준금리는 꾸준한 하락 후 급등하는 모습을 보임
 - 2011년 3.25%였던 기준금리는 전반적인 하락 추세를 보이며 2021년에 0.5%라는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함
 - 하지만 이후 금리는 매우 가파르게 인상되어 2023년 초 3.5%로 정점을 찍음
 - 이후 조금씩 하락하여 2013년 초에서 2014년 중순까지의 수준과 유사해짐

[그림 III-9]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추이

(단위: %)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한국은행 기준금리와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 금액 추이를 비교하면,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 금액은 직전연도 기준금리와 유사하게 움직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기준금리와 조세지출액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처럼 나타남
 - 기준금리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2021년 0.5%라는 역대 최저 수준에 도달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시기에 조세지출액 역시 2014년 4,434억원에서 2021년 2,575억원까지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고 2023년에 3.5%라는 고금리 수준에 도달하였고, 2023년 조세지출액은 5,461억원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폭증
 - 금리인상 효과가 시차를 두고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앞서 살펴본 결과에도 평균적인 계좌 보유 기간이 약 1년인 것을 감안하면, <표 III-39>에서 나타는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 금액의 후행성을 이해할 수 있음
 - 대체적으로 특정 연도의 전년 대비 조세지출액 비율이 직전연도의 전년 대비 기준금리 비율과 유사한 측면이 있음
 - 예를 들어 2015년 전년 대비 조세지출액 비율은 0.823이고, 2014년 전년 대비 기준금리 비율은 0.857임
 - 또한 조세지출액이 전년 대비 급등하였던 2023년의 비율은 2.138이고, 직전연도의 전년 대비 기준금리 비율은 2.750임

〈표 III-39〉 기준금리와 비과세종합저축 조세지출 금액 추이 비교

기간		기준금리 (%)	전년 대비 기준금리(배)	조세지출액 (억원)	전년 대비 조세지출액(배)
2013년	1월 1일 ~ 5월 8일	2.75	-	-	-
	5월 9일 ~ 12월 31일	2.5			
2014년	1월 1일 ~ 8월 13일	2.5	0.857	4,434	-
	8월 14일 ~ 10월 14일	2.25			
	10월 15일 ~ 12월 31일	2			
2015년	1월 1일 ~ 3월 11일	2	0.778	3,647	0.823
	3월 12일 ~ 6월 10일	1.75			
	6월 11일 ~ 12월 31일	1.5			
2016년	1월 1일 ~ 6월 8일	1.5	0.786	3,742	1.026
	6월 9일 ~ 12월 31일	1.25			
2017년	1월 1일 ~ 11월 29일	1.25	1	3,149	0.842
	11월 30일 ~ 12월 31일	1.5			
2018년	1월 1일 ~ 11월 29일	1.5	1.182	3,182	1.010
	11월 30일 ~ 12월 31일	1.75			
2019년	1월 1일 ~ 7월 17일	1.75	0.923	3,262	1.025
	7월 18일 ~ 10월 15일	1.5			
	10월 16일 ~ 12월 31일	1.25			
2020년	1월 1일 ~ 3월 16일	1.25	0.556	3,386	1.038
	3월 17일 ~ 5월 27일	0.75			
	5월 28일 ~ 12월 31일	0.5			
2021년	1월 1일 ~ 8월 25일	0.5	0.900	2,575	0.760
	8월 26일 ~ 11월 24일	0.75			
	11월 25일 ~ 12월 31일	1			
2022년	1월 1일 ~ 1월 13일	1	2.750	2,554	0.992
	1월 14일 ~ 4월 13일	1.25			
	4월 14일 ~ 5월 25일	1.5			
	5월 26일 ~ 7월 12일	1.75			
	7월 13일 ~ 8월 24일	2.25			
	8월 25일 ~ 10월 11일	2.5			
	10월 12일 ~ 11월 23일	3			
	11월 24일 ~ 12월 31일	3.25			
2023년	1월 1일 ~ 1월 12일	3.25	1.636	5,461	2.138
	1월 13일 ~ 12월 31일	3.5			
2024년	1월 1일 ~ 10월 10일	3.5	0.963	10,914(e)	1.999
	10월 11일 ~ 11월 27일	3.25			
	11월 28일 ~ 12월 31일	3			
2025년	1월 1일 ~ 2월 24일	3	0.885	11,929(e)	1.093
	2월 25일 ~ 5월 28일	2.75			

주: 2024년과 2025년 조세지출액은 예측치이며, 전년 대비 기준금리 계산 시 기준금리는 단순평균을 사용함
 자료: 한국은행 기준금리 자료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나. 수혜대상 분석

- 사회 및 경제적 특성에 따른 수혜대상의 분포를 분석하기 위해 은행연합회와 국세청 미시자료를 활용하였음

1) 은행연합회 2024년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자료

- 2024년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 유형별 현황을 살펴보면, 정책 수혜대상이 고령층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표 III-40>)
 - 수혜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되어 있음
 - 전체 1,008만 5천개의 계좌 중 약 94%에 해당하는 943만 5천여 개가 65세 이상
 - 가입자 수 기준으로도 541만 7천명 중 약 93.6%가 고령층
 - 총 한도금액 182조 7,120억원 가운데 약 94.1%가 65세 이상에 배분
 - 고령층 다음으로는 장애인 집단의 비중이 큼
 - 장애인 계좌는 56만 9천여 개, 가입자 수는 30만 3천여 명이며, 총 한도금액은 9만 5,652억원으로 총한도의 약 5.2%를 차지
 - 나머지 집단(국가유공상이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은 합산해도 1% 미만임
- 가입자별 평균한도를 분석한 결과, 집단별로 차별화된 한도 구조를 보임(<표 III-40>)
 - 전체 평균한도는 약 3,373만원 수준
 - 65세 이상은 약 3,393만원으로 전체 평균과 유사하거나 소폭 상회
 - 장애인은 약 3,154만원으로 소폭 낮은 수준
 - 특별 공헌·피해 집단은 평균한도가 전체 평균 대비 높게 설정
 - 국가유공상이자 약 3,645만원, 독립유공자·유족 약 3,823만원, 5·18 부상자 약 3,801만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약 4,178만원으로 전체 평균 대비 8~25%가량 상회하는 수준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의 평균한도는 약 1,334만원으로 전체 평균 대비 약 60% 낮아 가장 작은 수준임

- 전체적으로 계좌수/가입자수 비율은 약 1.86 수준이며, 특별 집단의 중복 보유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임(<표 III-40> 참고)
 - 중복 보유로 인해 계좌 단위 통계보다는 개인 단위 지표가 보다 정확할 가능성이 높음

<표 III-40>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유형별 현황

구분	계좌수	가입자수	한도금액 (억원)	가입자별 평균한도(원)
장애인	569,572	303,253	95,652	31,541,926
국가유공상이자	39,019	19,746	7,197	36,445,94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31,799	20,162	2,689	13,338,244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7,406	3,664	1,401	38,232,848
고엽제후유의증환자	1,425	629	263	41,778,207
5월18일민주화운동 부상자	556	311	118	38,013,622
65세 이상	9,435,223	5,069,185	1,719,800	33,926,566
합계	10,085,000	5,416,950	1,827,120	33,729,682

주: 2024년 말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4년 말 기준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의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65세 이상에 전체 규모의 약 96%가 집중되며, 특히 65~79세 구간이 정책 수혜의 핵심층을 형성 (<표 III-41> 참고)
 - 65세 이상이 가입자의 95.8%, 계좌의 96.1%, 한도금액의 96.6%를 차지
 - 가입자별 평균한도는 65~79세에서 3,454만~3,455만원으로 거의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80~89세 3,343만원으로 소폭 감소, 90세 이상 2,305만원으로 급격히 하락하는 경향을 보임
 - 65세 미만(2,791만원)과 90세 이상(2,305만원)은 전체 평균(3,373만원) 대비 각각 17%, 32% 낮은 수준임
-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자의 성별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이 전체 규모에서는 과반을 차지하나, 개인당 평균한도는 남성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성별 격차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임

- 여성이 가입자의 60.1%, 한도금액의 59.6%를 차지하여 규모 면에서 우세
- 개인당 평균한도는 남성 3,419만원, 여성 3,342만원으로 남성이 약 2.3% 높음
- 고령층에서 성별 격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음
 - 80~89세는 여성이 남성 대비 약 7% 낮고, 90세 이상에서는 약 15% 낮음

<표 III-41>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성별·연령별 현황

구분		65세 미만	65~69세	70~74세	75~79세	80~89세	90세 이상	합계
남성	계좌수	217,696	990,693	945,780	776,510	761,834	80,078	3,772,591
	가입자수	129,837	598,076	536,137	425,211	415,363	55,149	2,159,773
	한도금액(억원)	37,660	208,393	184,814	148,326	145,196	14,070	738,461
	가입자별 평균한도(원)	29,006,041	34,843,968	34,471,531	34,883,012	34,956,470	25,512,797	34,191,617
여성	계좌수	175,297	1,917,660	1,661,739	1,254,212	1,180,413	123,088	6,312,409
	가입자수	95,478	983,921	813,456	624,056	646,882	93,384	3,257,177
	한도금액(억원)	25,232	338,065	281,065	214,229	209,898	20,168	1,088,658
	가입자별 평균한도(원)	26,427,670	34,358,967	34,551,973	34,328,491	32,447,727	21,597,236	33,423,381
전체	계좌수	392,993	2,908,353	2,607,519	2,030,722	1,942,247	203,166	10,085,000
	가입자수	225,315	1,581,997	1,349,593	1,049,267	1,062,245	148,533	5,416,950
	한도금액(억원)	62,893	546,458	465,879	362,555	355,094	34,238	1,827,119
	가입자별 평균한도(원)	27,913,448	34,542,322	34,520,017	34,553,208	33,428,705	23,051,049	33,729,682

주: 2024년 말 기준

자료: 은행연합회 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2) 국세청 2023년 수혜자 미시자료

- 국세청 미시자료는 2023년 수혜자를 대상으로 전체 수혜자(440만 5,955명) 대비 0.5%에 해당하는 24,000명을 추출한 과세자료로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음
 - 2023년 수혜자를 대상으로 1949년생부터 1960년생까지 출생연도별로 각각 2,000명씩 무작위 추출하여 총 24,000명의 표본을 구성
 - 해당 표본은 2023년에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금액이 0보다 큰 실제 수혜자들로 한정함
 - 추출 대상: 2023년 기준 비과세종합저축 실제 수혜자

- 추출 방법: 출생연도별 층화무작위추출(각 연도별 2,000명)
 - 추출 범위: 1949년생~1960년생(총 12개 출생연도)
 - 총 표본 규모: 24,000명(12개 연도 × 2,000명)
 - 본 표본은 2023년 전체 수혜자의 약 0.5%로 규모가 제한적이며 추출과정에서 소득구간별 분포가 고려되지 않아 전체 수혜자의 실제 소득분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음
 - 실제 분석 대상에서 1959년생과 1960년생은 2023년 기준 만 65세 미만으로, 일반적인 연령 요건이 아닌 다른 특별 요건에 따른 특례대상으로 간주하여 분석에 제외함
 - 완결되지 않은 자료가 있는 경우 표본에서 제외하였음
 - 코호트별(연령그룹별)로 약 0.75~1.5% 수준이 제외되었음
- 2023년 기준 만 65세에서 만 74세 인구는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종합소득은 낮아지는 반면에 1인당 평균 비과세종합저축을 통한 조세 혜택은 늘어나는 경향을 보임(<표 III-42> 참고)
- 구간별 총 조세 혜택액은 대부분 23억~24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고령층에 해당하는 1949년생(만 74세)은 약 24억 1,563만원, 가장 젊은 1958년생(만 65세)은 약 19억 5,349만원으로, 연령이 낮을수록 혜택 총액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임
 - 개인별 평균 혜택액 역시 나이가 많을수록 높은 경향을 뚜렷하게 나타남
 - 1949년생(74세)의 평균 혜택은 약 122만원이며, 연령이 점차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여 1954년생(69세)은 약 120만원, 가장 젊은 1958년생(65세)의 경우 약 99만원으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
 - 반면 연령이 낮아질수록 종합소득 평균은 현저히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임
 - 1949년생(74세)의 평균 소득은 약 255만원으로 가장 낮고, 이후 연령이 1년씩 젊어질 때마다 소득이 상승하여 1953년생(70세)은 약 451만원, 1956년생(67세)은 약 615만원을 기록했으며, 가장 젊은 1958년생(65세)은 약 807만원의 가장 높은 평균 소득을 나타냄

<표 III-42> 출생연도별 수혜자 통계(2023년 기준)

출생연도	만 나이	관측수	구간 혜택(합)	구간 혜택(평균)	종합소득 평균
1949	74	1,979	2,415,632,384	1,220,632	2,551,838
1950	73	1,975	2,475,975,168	1,253,658	3,129,949
1951	72	1,970	2,372,285,696	1,204,206	3,969,075
1952	71	1,978	2,349,409,536	1,187,770	4,017,547
1953	70	1,985	2,388,988,160	1,203,520	4,507,499
1954	69	1,970	2,365,669,120	1,200,847	5,430,064
1955	68	1,980	2,309,406,720	1,166,367	5,554,330
1956	67	1,979	2,264,524,544	1,144,277	6,154,047
1957	66	1,979	2,343,100,416	1,183,982	6,191,354
1958	65	1,980	1,959,430,016	989,611	8,068,830

주: 2023년 신고자료(출생연도 별 총화추출) 기준이며, 실제 분포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3년 기준 남성 수혜자는 여성보다 평균 소득과 1인당 평균 혜택액이 더 높은 반면, 여성 수혜자는 낮은 소득으로 인해 전체 소득에서 조세 혜택이 차지하는 비중이 훨씬 더 큰 경향이 있음(<표 III-43> 참고)
 - 구간별 조세 혜택 총합을 살펴보면 남성은 약 104억 7,286만원을, 여성은 약 127억 7,156만원을 수혜한 것으로 나타나, 여성 수혜자의 총 혜택 규모가 남성보다 크게 나타남
 - 반면 개인당 평균 혜택액은 남성 수혜자가 약 121만원으로, 여성 수혜자의 약 115만원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며, 종합소득의 경우에도 남성이 평균 약 819만원으로 여성(평균 약 243만원)보다 약 3배 이상 높은 소득 수준을 기록
 - 또한 혜택 비중(조세혜택의 종합소득 대비 비율)을 보면 남성은 14.73%로 비교적 낮은 반면, 여성은 47.37%로 매우 높은 수준을 파악됨

<표 III-43> 성별 수혜자 통계(2023년 기준)

성별	관측수	구간 혜택(합)	구간 혜택(평균)	종합소득 평균	혜택 비중(%)
남성	8,674	10,472,860,672	1,207,385	8,195,539	14.73
여성	11,101	12,771,560,448	1,150,487	2,428,559	47.37

주: 2023년 신고자료(출생연도 별 총화추출) 기준이며, 실제 분포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2023년 수혜자 표본자료에서는 1949년생부터 1958년생까지 모든 연령대에서 남성이 여성보다 평균 소득은 월등히 높지만, 소득 대비 조세 혜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여성이 훨씬 더 큰 것으로 파악됨(<표 III-44> 참고)
 - 수혜금액 평균은 전반적으로 남성이 여성에 비해 조금 더 높은 경향성이 있음
 - 예를 들어 1949년생의 경우 남성은 약 126만원, 여성은 약 119만원이고 1952년생의 경우 남성은 약 124만원, 여성은 약 114만원으로 남성이 소폭 높음
 - 특히 1958년생의 경우 남성은 약 115만원, 여성은 약 89만원으로 비교적 큰 차이를 보임
 - 한편 평균 종합소득에서는 남성이 여성보다 현저히 높은 수준을 보임
 - 1949년생 남성은 약 349만원, 여성은 약 178만원으로 약 2배 차이를 보이며, 1953년생은 남성이 약 731만원인 데 비해 여성은 약 212만원으로, 3배 이상 차이를 보임
 - 1958년생의 경우 남성 평균소득은 약 404만원이며 여성 평균소득은 약 89만원으로, 약 4배 이상의 큰 차이
 - 혜택의 비율(평균 수혜 금액이 평균 종합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여성 수혜자가 남성 수혜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남
 - 특히 소득이 낮은 여성일수록 비율이 높게 나타나며, 1958년생 여성의 경우 소득 대비 혜택 비율이 약 22%로 매우 높은 편
 - 반면 1958년생 남성의 소득 대비 혜택 비율은 약 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임

<표 III-44> 출생연도별·성별 수혜자 통계(2023년 기준)

출생연도	성별	관측수	수혜 금액 평균	종합소득 평균	비율
1949	남성	891	1,259,135.50	3,491,971.25	0.36058
	여성	1,088	1,189,101.63	1,781,932	0.66731
1950	남성	942	1,237,299.25	4,858,728.50	0.254655
	여성	1,033	1,268,576.25	1,553,464.25	0.816611
1951	남성	845	1,214,685.25	6,800,501.50	0.178617
	여성	1,125	1,196,334.88	1,842,359.75	0.649349
1952	남성	983	1,237,603.75	6,498,338.50	0.190449
	여성	995	1,138,537.75	1,566,675.38	0.726722

<표 III-44>의 계속

출생연도	성별	관측수	수혜 금액 평균	종합소득 평균	비율
1953	남성	912	1,253,002.50	7,312,048	0.171361
	여성	1,073	1,161,463.13	2,123,763	0.546889
1954	남성	972	1,205,882.25	8,671,226	0.139067
	여성	998	1,195,943.50	2,273,342	0.526073
1955	남성	752	1,158,079.38	10,275,849	0.112699
	여성	1,228	1,171,442.13	2,662,976.25	0.4399
1956	남성	727	1,151,153.63	11,586,028	0.099357
	여성	1,252	1,140,284.25	2,999,853.50	0.380113
1957	남성	760	1,219,819.50	11,110,563	0.109789
	여성	1,219	1,161,638.75	3,124,414.50	0.371794
1958	남성	890	1,115,481.63	13,004,513	0.085777
	여성	1,090	886,836.13	4,038,778	0.21958

주: 2023년 신고자료(출생연도 별 총화추출) 기준이며, 실제 분포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수혜자 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종합소득금액이 낮은 저소득층에 속하나 일부는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고소득층 수혜자도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남(<표 III-45> 참고)
 - 2023년 수혜자 표본의 상당수는 연간 종합소득금액이 1,000만원 이하 구간에 속하며, 종합소득금액이 0원인 경우도 다수로 대체로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취약계층이 주를 이룸
 - 다만 산정에 사용된 종합소득금액은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국세청의 자료 분류 표기 방식에 따라 0원으로 표기되었으며 필요경비, 근로소득공제 등을 반영한 금액이므로 실제 소득수준을 과소반영할 가능성도 있음
 - 또한 고령층의 특성상 소득수준이 낮더라도 자산수준은 높을 수 있으나 이에 대한 확인은 데이터 한계상 어려워 해석에는 유의가 필요함
 - 반면 수혜자 표본 중에는 부부가구 기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인 월 364.8만원(연간 약 4,300만원) 이상이거나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등 취약계층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도 포함되어 있음을 확인함

- 종합소득금액 구간별 1인당 평균 혜택금액은 전반적으로 유사하거나 뚜렷한 패턴이 발견되지 않으나 일부 고소득 구간 수혜자들의 혜택금액이 높은 특징이 있음
- 예컨대 20백~30백만원 구간 수혜자의 평균혜택금액은 126만원이며, 30백~40백만원 구간은 141만원으로 더 높아졌다가, 40백~50백만원 구간은 122만원으로 다소 감소함
- 반면 1인당 평균 혜택금액이 가장 높은 소득구간은 1억 5천만원 초과로 평균 389만원이었으며, 그 다음은 70백~80백만원 구간으로 평균 201만원을 기록함

〈표 III-45〉 종합소득 수준에 따른 수혜자 통계(2023년 기준)

종합소득금액 구간	구간 수혜자(명)	구간 혜택 금액(원)	구간 혜택 평균(원)	이자배당소득 평균(원)
10백만원 이하	17,168	19,961,974,520	1,162,743	3,670,441
10~14백만원	494	553,788,312	1,121,029	4,143,326
14~20백만원	578	666,892,150	1,153,793	4,524,281
20~30백만원	667	837,688,610	1,255,905	7,450,022
30~40백만원	346	487,444,133	1,408,798	9,782,976
40~50백만원	161	195,628,211	1,215,082	14,274,515
50~60백만원	114	173,621,326	1,522,994	12,581,826
60~70백만원	68	120,285,459	1,768,904	18,998,006
70~80백만원	48	51,277,608	1,068,284	20,142,706
80~88백만원	32	44,937,696	1,404,303	16,326,961
88~90백만원	5	7,180,828	1,436,166	12,062,130
90~100백만원	27	37,679,163	1,395,525	22,512,200
100~110백만원	26	29,194,965	1,122,883	15,329,124
110~120백만원	10	13,197,550	1,319,755	15,694,398
120~130백만원	22	23,157,455	1,052,612	31,697,790
130~140백만원	14	20,182,556	1,441,611	18,537,448
140~150백만원	14	18,713,042	1,336,646	72,463,648
150백만원 초과	77	299,929,839	3,895,193	38,847,584

주: 1. 2023년 신고자료(출생연도 별 총화추출) 기준이며, 실제 분포와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음; 이자배당소득은 지급명세서 기준임

2. 종합소득은 근로소득금액, 사업소득금액,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금액, 연금소득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을 의미하며, 근로소득만 존재하는 경우 국세청 자료 분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은 0으로 분류되기에 해석에 주의

자료: 국세청 제공자료를 바탕으로 저자 작성

다. 경제적 효과 분석

1) 실증분석 개요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의 경제적 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자연실험적 상황을 활용한 고도화된 계량경제학적 분석을 실시
 - 제도 변화에 따른 인과적 영향을 파악하고 정책 효과를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정책 의사결정에 필요한 실증적 근거를 제공하고자 함

-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2015년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생계형저축」 및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통합하거나 대체하는 형태로 자리 잡았음
 - 기존 생계형저축 고객의 경우 별도의 계좌 개설 없이 2015년 이후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 조건을 충족하면 남아 있는 한도 내에서 증액이 가능
 - 기존 세금우대종합저축과 생계형저축의 한도를 포함한 통합 한도 5천만원으로 설정되었음

- 동 제도는 정책 시행 이후 다음과 같이 여러 차례 중요한 변화가 있었음
 - 고령자 가입 연령이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
 - 2015년부터 매년 1세씩 상향되어 2019년에는 만 65세 이상만 가입할 수 있도록 변경
 - 2015년: 만 61세 이상 가입 가능
 - 2016년: 만 62세 이상 가입 가능
 - 2017년: 만 63세 이상 가입 가능
 - 2018년: 만 64세 이상 가입 가능
 - 2019년: 만 65세 이상 가입 가능
 - 금융소득 종합과세 요건 추가
 - 2020년 1월 1일부터는 직전 3개 과세 기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금융소득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는 비과세종합저축 가입 대상에서 제외

〈표 III-46〉 비과세종합저축 주요 정책 변화 연혁

시행일	정책 변화	상세 내용
2015. 1. 1.	정책 명칭 및 구조 변경	「생계형저축 특약」에서 「비과세종합저축 특약」으로 명칭 변경 및 통합
	고령자 가입 연령 상향	만 60세 이상에서 만 61세 이상으로 상향
2016. 1. 1.	고령자 가입 연령 상향	만 62세 이상으로 상향
2017. 1. 1.	고령자 가입 연령 상향	만 63세 이상으로 상향
2018. 1. 1.	고령자 가입 연령 상향	만 64세 이상으로 상향
2019. 1. 1.	고령자 가입 연령 상향	만 65세 이상으로 상향
2020. 1. 1.	가입 제외 대상 추가	직전 3개 과세 기간 내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연간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 제외

자료: 「조세특례제한법」 각 연도 개정을 바탕으로 저자 작성

- 이러한 정책변화에 있어 계량경제학적으로 가장 적합한 추정 방식인 Staggered 이 중차분법을 적용하여 경제적 분석을 실시
- 연령 하한선이 2016~2019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상향되면서, 1954년생의 경우 지속적으로 혜택을 받는 반면, 1955년생 이후는 2019년 또는 그 이후에 혜택을 받기 시작함
 - 출생연도·시점별로 정책 적용 시점이 달라지는(staggered adoption) 구조
 - 각 코호트가 “처음으로 혜택 대상이 되는 해(첫 처리 시점)”가 다르다는 점을 활용하는 Staggered DID가 자연스러운 식별전략임
 - 이 경우 일반적인 이중차분법을 사용할 경우 정책효과가 정확히 추정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⁶²⁾
 - 처리시점이 다른 집단들 사이에 처치효과가 시점·코호트별로 이질적이면, 이미 처리된 집단이 미처리 집단의 통제로 쓰이면서 “변질된 비교(confounded comparisons)”가 발생
 - 이에 따라 전체 계수가 실제 평균처치효과와 다른 방향으로 왜곡될 수 있음

62) Sun, L., & Abraham, S., “Estimating dynamic treatment effects in event studies with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Journal of econometrics*, 225(2), 2021, pp. 175-199; De Chaisemartin, C., & d’Haultfoeuille, X., “Two-way fixed effects estimators with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American economic review*, 110(9), 2020, pp. 2964-2996; Callaway, B., & Sant’Anna, P. H.,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multiple time periods,” *Journal of econometrics*, 225(2), 2021, pp. 200-230.

- 분석에 활용한 자료는 국세청으로부터 수득한 2023년 수혜자 대상으로 생년별 무작위 추출한 자료이며, 이들에 대한 2013~2023년 과세자료가 패널형태로 구축되어 있음
 - 지급명세서,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금액, 종합소득 자료가 병합되어 있음
 - 선택 편의(Selection Bias)가 발생할 수 있는 자료이나 개인정보보호 및 여러 제한으로 인해 부득이하게 해당 자료를 활용함
 - 특히 수혜자의 전체 소득분포가 반영되지 못한 형태의 데이터로 소득분포와 관련된 결과를 해석할 시에는 주의가 필요함

2) 제도 변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추정

- 전통적인 이중차분법(DiD)은 정책이 특정 시점에 한 그룹에만 도입되고 다른 그룹에는 도입되지 않는 단순한 상황을 가정하나, 비과세종합저축의 도입은 연령그룹에 여러 시점에 걸쳐 순차적으로 도입되는 특성을 가짐
- 이러한 시차를 둔 정책 도입 상황에서 전통적인 이중차분법을 그대로 사용하면, 이미 정책의 영향을 받은 그룹이 나중에 정책의 영향을 받는 그룹의 “통제집단” 역할을 하게 되어 분석 결과에 심각한 편향(bias)이 발생할 수 있음
 - 예시로 전국의 도시들이 저소득층 소득 증대를 위해 최저임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하고, 다음과 같이 도시별 제도 도입의 시차가 있다고 가정
 - A 그룹 도시: 2018년에 최저임금을 인상(조기 시행 집단)
 - B 그룹 도시: 2020년에 최저임금을 인상(후기 시행 집단)
 - C 그룹 도시: 최저임금을 인상하지 않음(순수 통제 집단)
 - 해당 정책이 ‘저임금 근로자의 평균 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할 때 기존의 방식인 이중차분법 모형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음

$$Y_{it} = \alpha_i + \lambda_t + \beta \times Treated_{it} + \epsilon_{it}$$

- 여기서 Treated 변수는 도시 i 가 시점 t 에 정책의 영향을 받고 있으면 1, 아니면 0을 가지며, 이 모형은 β 를 통해 “평균적인” 정책효과를 추정함
- 그러나 2020년 시점에서 B그룹 도시들이 막 정책을 도입하게 되면, 해당 모형은

B그룹의 소득 변화를 정책을 시행하지 않은 C그룹뿐만 아니라, 이미 2018년에 정책을 시행한 A그룹도 포함됨

- 이것이 바로 “오염된 통제집단 (Bad Controls)” 문제이며, 이를 보다 정확히 추정하기 위해서 Callaway & Sant’Anna(2021) 등이 제시한 Staggered DID 모형을 활용해야 함
 - A그룹은 이미 2018년부터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그들의 2019년 대비 2020년 소득 변화는 정책이 없는 상태의 자연스러운 변화가 아님
 - 만일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더 커진다면, A그룹의 소득은 C그룹보다 더 많이 증가했을 것이며, A그룹을 B그룹의 통제집단으로 사용하면, B그룹의 정책 효과는 실제보다 작게 추정되는 편향이 발생함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오염된 통제집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Callaway & Sant’Anna (2021)의 모형을 바탕으로 Staggered DID를 추정함

- 전통적인 이중차분법과 다르게 2단계(two-step) 접근법을 사용함
 - 1단계: 그룹-시점별 평균처리효과(ATT(g,t))의 추정
 - 2단계: 추정된 ATT(g,t)들의 종합(Aggregation)
- 1단계인 그룹-시점별 평균 처리효과 추정과정에서는 모든 처치 그룹 g(정책을 처음 도입한 집단)와 시간 t의 조합에 대해 각각의 정책효과인 ATT(g,t)를 별도로 다음과 같이 추정함

$$Y_{it} = \beta_0 + \beta_1 Post_t + \beta_2 Treated_i + \delta(Post_t \times Treated_i) + \gamma X_{it} + \epsilon_{it}$$

- Y_{it} : 개인 i 의 시점 t 에서의 결과 변수이며, 본 연구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혜택 금액, 비과세 면제 금액 또는 지급명세서상 이자배당 금액을 고려함
- $Post_t$: 시점 t 가 정책 시행 후 기간(post-treatment period)이면 1, 정책 시행 전 기간(pre-treatment period, 보통 $g-1$ 시점)이면 0인 더미변수
- $Treated_i$: 개인 i 가 처치 그룹 g 에 속하면 1, “깨끗한” 통제집단에 속하면 0인 더미변수
- $Post_t \times Treated_i$: 상호작용항으로, 이 항의 계수인 δ 가 바로 우리가 찾고자 하는 ATT(g,t)임
- X_{it} : 통제변수로 본 연구에서는 모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사용함

-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얻은 그룹-시점별 평균 처치효과들을 목적에 따라 가중 평균하여 최종 결과를 도출함
 - 예를 들어 전체 평균 처치효과는 $ATT(g,t)$ 를 해당 그룹의 관측치 수 등을 고려하여 가중 평균한 값이며, 연도별 효과의 경우 특정 연도에 나타난 평균 처치효과를 가중 평균함으로써 특정 연도의 평균적인 정책효과를 파악하는 데 활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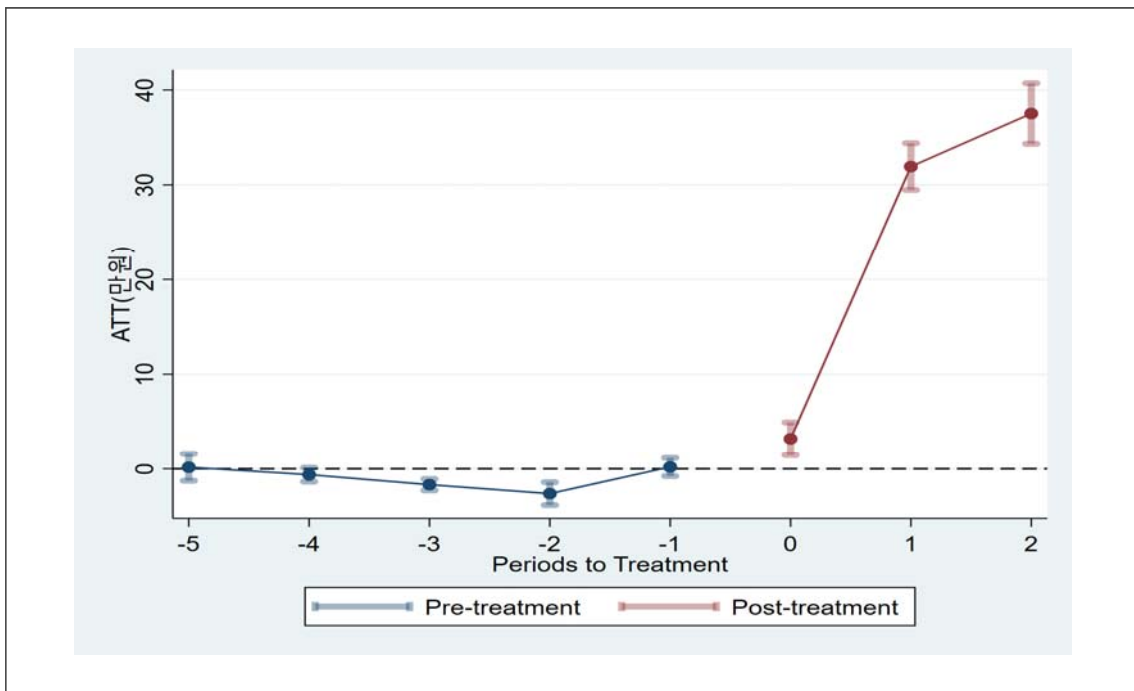
- 다만 Callaway & Sant'Anna(2021)의 모형은 한 번 처치가 된 이후에는 해당 처치 상태가 지속되는 Staggered Adoption 가정이 있으나, 동 조세특례의 경우에는 2020년 금융소득 요건이 추가되면서 이러한 가정과 완전히 부합하지는 않음

-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금융소득 요건 도입으로 인해 연령 조건을 만족한 대상들 중에 금융소득 요건으로 인해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는 극히 일부인 측면이 있어 통계적 분석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본 연구에서는 보다 엄밀한 분석을 위해 금융요건 제약으로 인해 대상에서 제외되는 관측치를 제외한 표본에 대해 Callaway & Sant'Anna(2021)의 모형을 활용함으로써 구조적으로 Staggered Adoption 가정을 만족시키게 하였음

- [그림 III-10]부터 [그림 III-12]는 정책 도입(시점 0) 전후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정책 도입을 기점으로 동 제도의 비과세 혜택, 총 비과세 면제액, 이자배당소득이 통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음
 - [그림 III-10]은 동 제도 도입 이후에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것임
 - 정책 도입 전에는 평균 처치효과가 0에 근접하여 처치 집단과 비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음
 - 반면에 정책 도입 시점부터 비과세 금액이 유의미하게 증가하기 시작했으며, 1년 뒤에는 약 32만원, 2년 뒤에는 약 38만원까지 그 효과가 점차 커지는 것을 확인함
 - [그림 III-11]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 적용 이후에 비수혜자 대비 수혜자의 총 비과세 면제 금액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것임
 - 정책 도입 전에는 평균 처치효과가 0에 근접하여 평행추세 가정을 충족한다고 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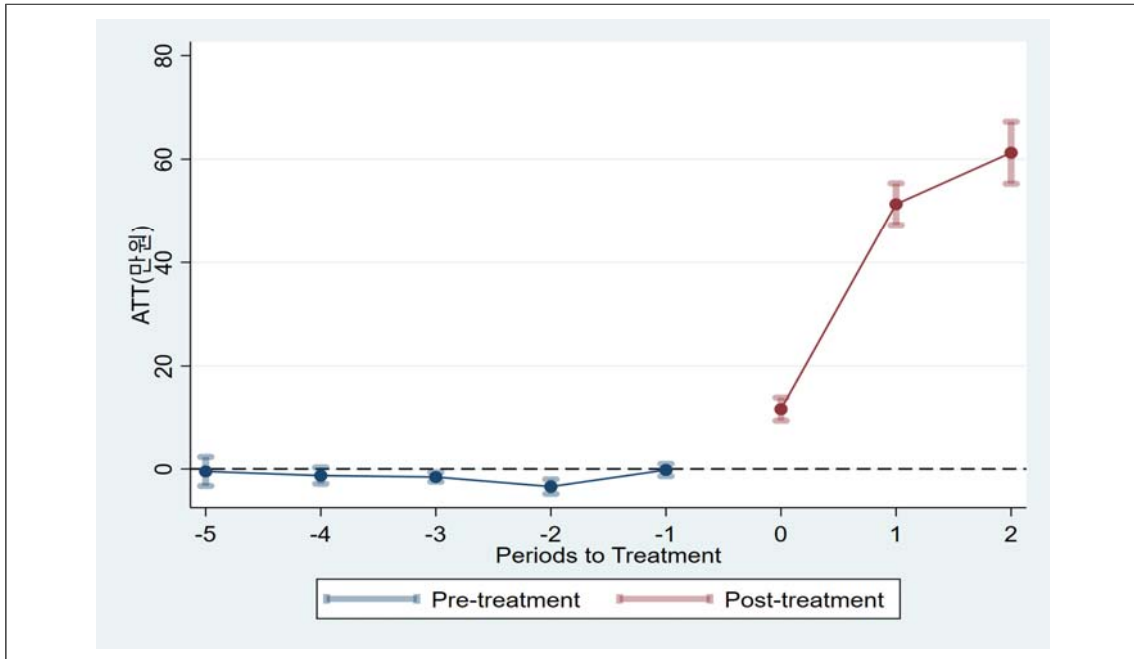
- 정책 도입과 함께 총 비과세 면제 금액이 10만원 이상 증가했으며, 1년 후에는 약 52만원, 2년 후에는 약 62만원으로 효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확대
- [그림 III-12]는 동 조세특례 적용 이후에 이자배당금액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것임
- 정책 도입 전에는 이전 그래프들과 마찬가지로 평균처리효과가 0에 가까워 두 집단 간 사전 추세가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음
- 정책 도입 시점(0)에 이자배당금액이 약 45만원 증가했으며, 1년 후와 2년 후에는 약 150만원 수준으로 급증하여 높은 수준을 유지

[그림 III-10]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에 대한 정책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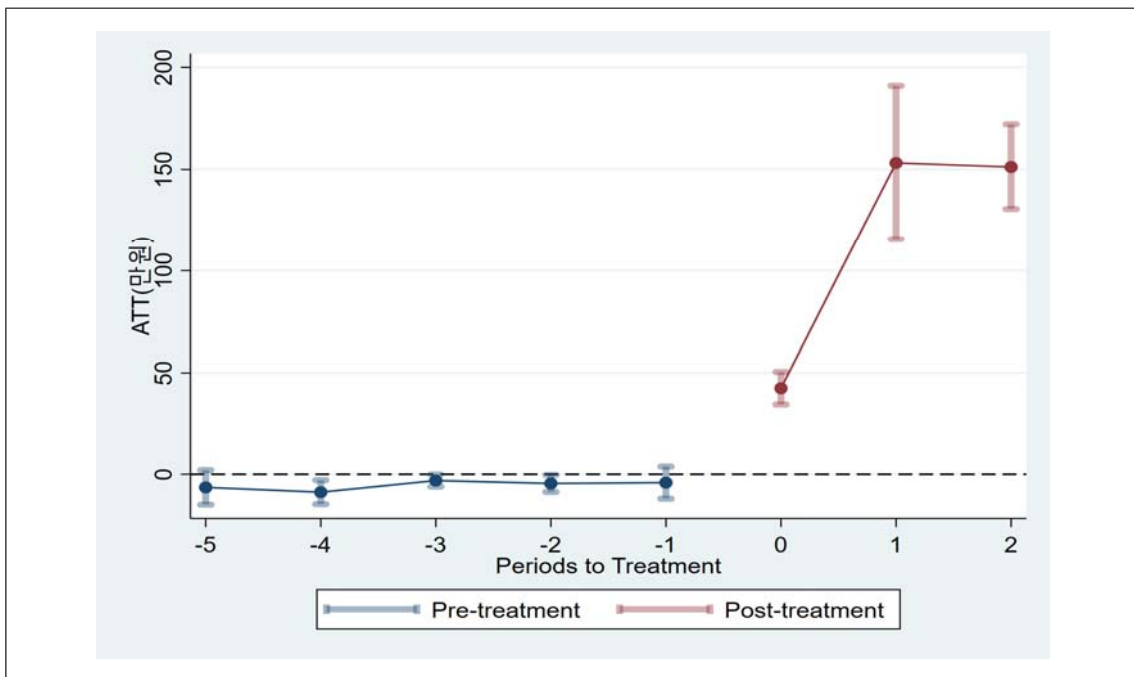
주: 시점 0이 제도 도입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1] 총 비과세 면제 금액에 대한 정책효과



주: 시점 0이 제도 도입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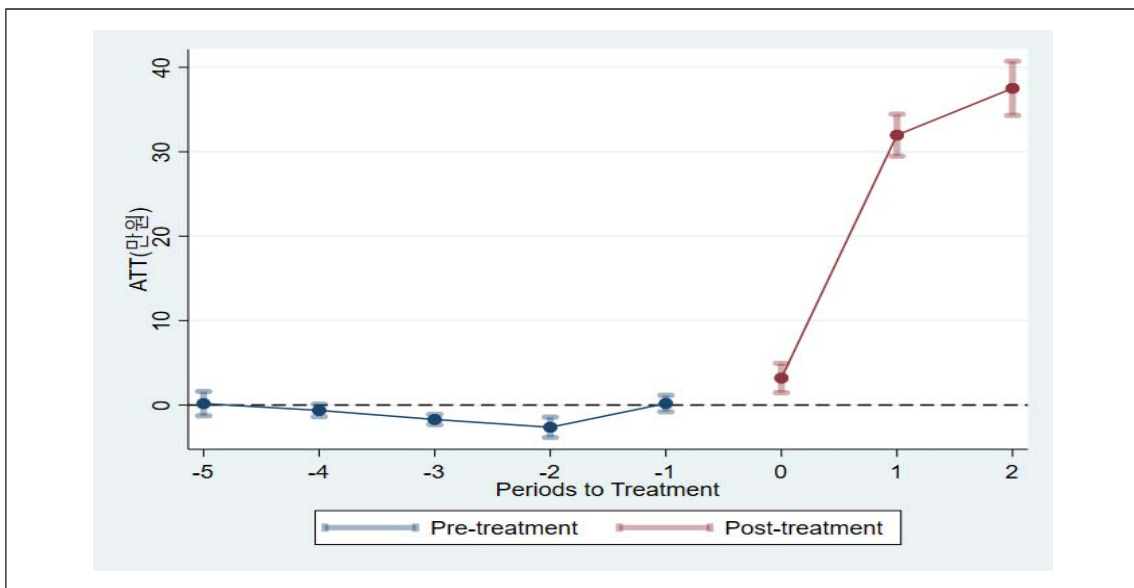
[그림 III-12] 이자배당금액에 대한 정책효과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이자배당금액은 지급명세서상 금액
 자료: 저자 작성

- 이하에서 제시된 그래프들은 기존 분석을 더욱 심도 있게 살펴보기 위해, 정책효과를 절대 금액뿐만 아니라 소득 대비 비율로도 분석한 결과를 정리하였음
 - [그림 III-13]에서 [그림 III-15]은 종합소득 금액을 통제변인으로 추가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앞서 설명한 그래프들과 사실상 동일한 결과를 보여줌
 - 소득수준을 통제하더라도 정책 도입 이후, 제도의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그리고 매우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그림 III-16]에서 [그림 III-18]은 종속변수에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로 설정하여 동일한 분석을 실시한 결과를 정리하였으며, 앞서의 결과와는 다르게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음
 - 절대적인 금액이 아닌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로 살펴보는 것은 사람들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늘려가며 저축했는지, 즉 저축행태 자체에 변화가 있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함임
 - 정책 도입 전후에 모든 경우에 신뢰구간이 0을 포함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음
 - 이는 정책이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소득에서 더 높은 ‘비율’을 할애하여 저축하도록 행동을 바꾸는 데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그림 III-13]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에 대한 정책효과(통제변인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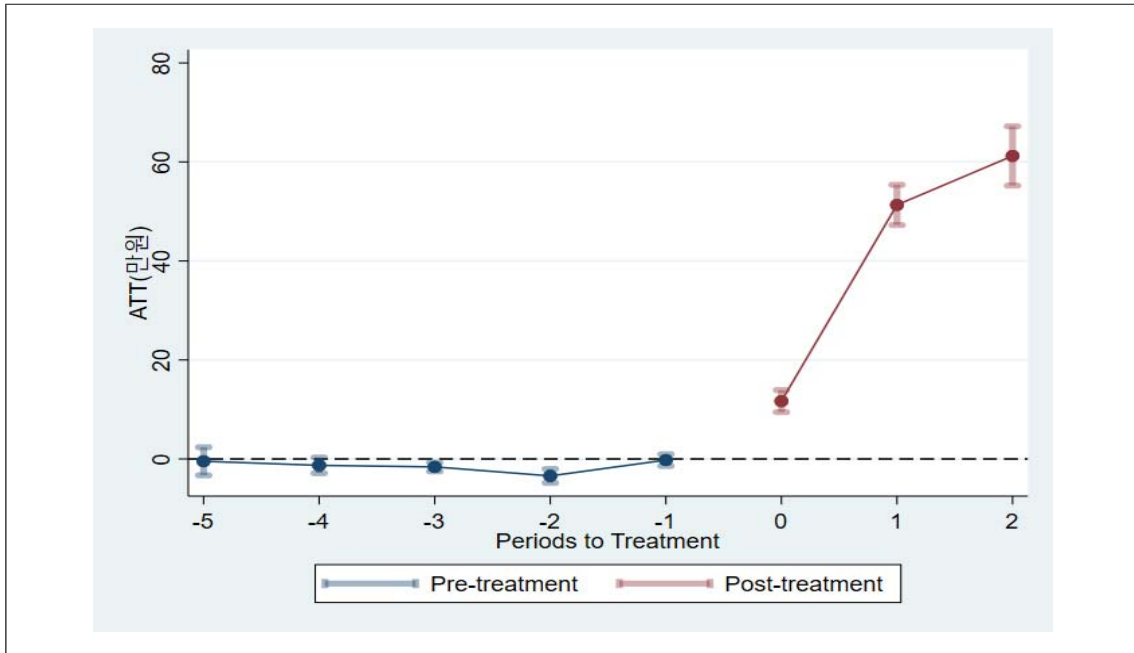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통제변인은 종합소득금액을 사용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4] 총 비과세 면제 금액에 대한 정책효과(통제변인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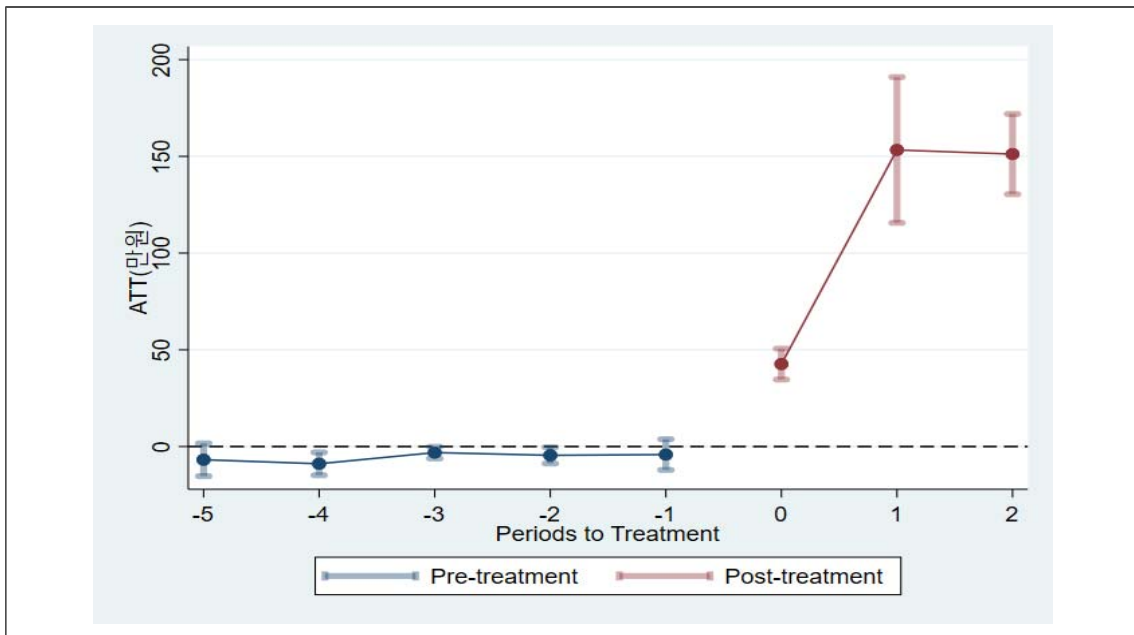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통제변인은 종합소득금액을 사용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5] 이자배당금액에 대한 정책효과(통제변인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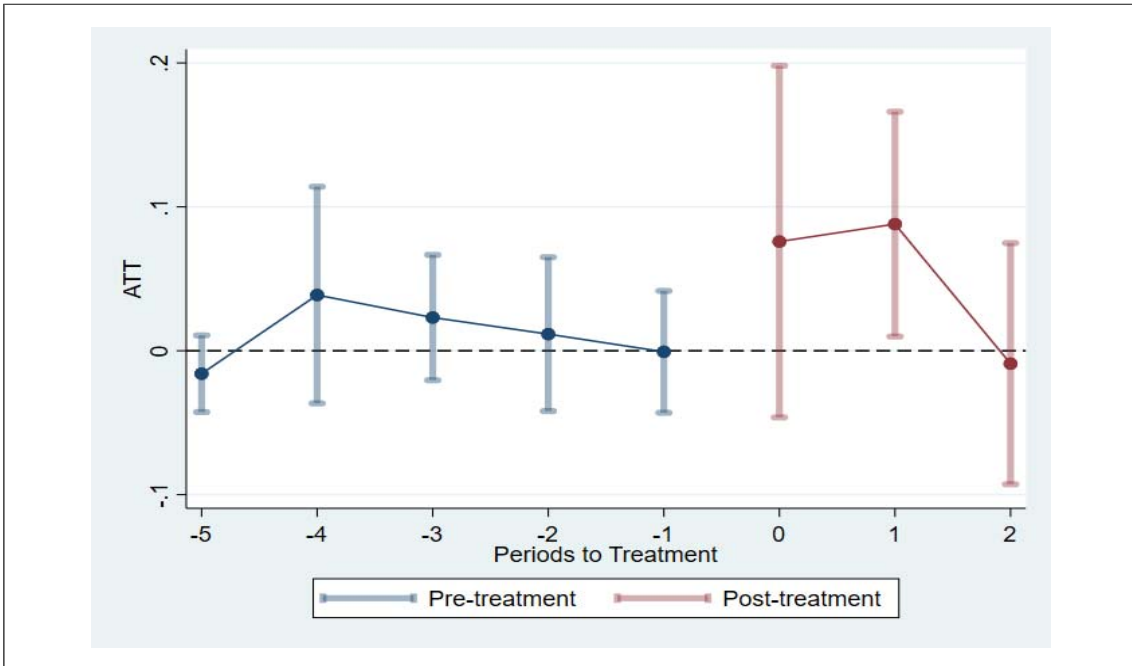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통제변인은 종합소득금액을 사용

3. 이자배당금액은 지급명세서상 금액임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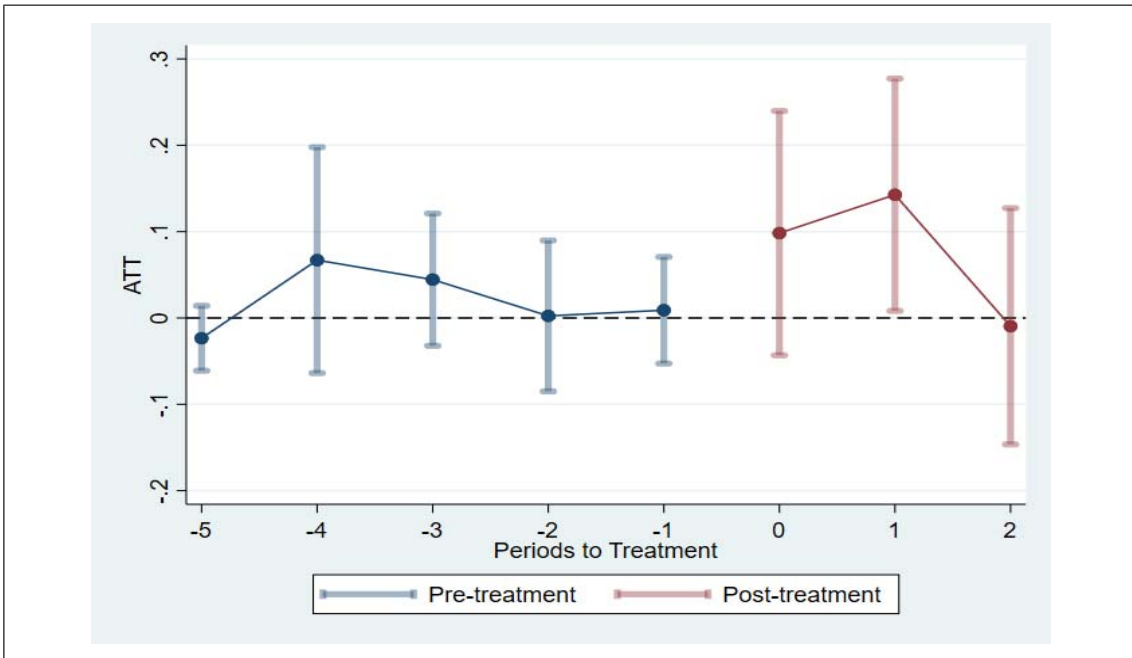
[그림 III-16]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비율)에 대한 정책효과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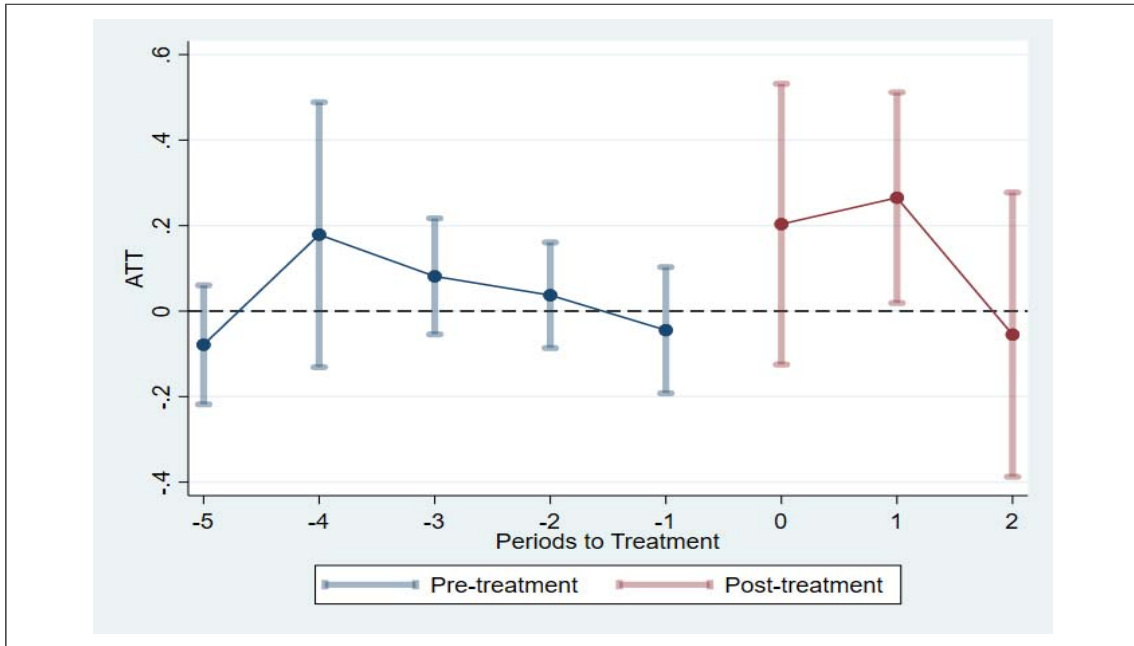
[그림 III-17] 총 비과세 면제 금액(비율)에 대한 정책효과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함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18] 이자배당금액(비율)에 대한 정책효과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종합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종속변수로 사용함
 3. 지급명세서상 이자배당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

자료: 저자 작성

- 2020년 이후 금융소득 요건이 추가되면서 기존 처치군에 속하였던 사람들이 도중에 제외되거나 추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발생하며, 이러한 가능성을 정책의 수혜자와 비수혜자 비교 분석을 통해 확인함
 - 분석 결과 전체 인원 대비 규모가 큰 수준은 아니나 금융소득 요건의 도입으로 제외되는 인원이 존재함을 확인함
 - 2019년에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혜택을 받은 사람 중 2020년 새로운 금융소득 요건이 도입되면서 제외된 사람의 비율은 0.44% 수준임
 - 2020년에 연령 요건을 만족하는 사람 대비 연령 및 금융소득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사람의 비중은 약 0.48% 수준임
 - 2021년과 2022년은 각각 0.30%와 0.16%로 매우 낮은 수치임
 - 또한 금융소득 요건으로 인한 고소득자의 제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에 속하지만 고소득자만을 제외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됨
 - 예를 들어 10백만원 이하 소득구간의 전체 인원(10,880명) 중 비수혜자는 30명으로, 해당 구간 인원의 약 0.28%가 금융소득 요건으로 제외

- 반면에 40~50백만원 소득 구간의 전체 인원(42명) 중 비수혜자는 2명으로, 해당 구간 인원의 약 4.76%가 금융소득 요건으로 제외되었음

- 이러한 금융소득 요건의 추가로 인한 정책 효과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앞서 사용한 Callaway & Sant'Anna(2021)의 Staggered DID 모형은 적합하지 않음
 - Callaway & Sant'Anna(2021)의 모형은 처치가 발생한 집단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처치 상태가 유지되는 Staggered Adoption을 가정하고 있음
 - 반면에 금융요건의 추가로 인해 기존의 처치군에서도 탈락하는 사람이 발생하게 되며 이러한 상황은 Staggered Adoption의 가정을 위배함
-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득 요건의 효과를 면밀하게 추정하기 위해 Staggered Adoption 가정을 완화한 De Chaisemartin & D'Haultfoeuille(dC & H, 2024) 모형을 적용함
 - dC & H 모형은 “두 시점 사이에 처치 상태가 변한 그룹(Switchers)”과 “변하지 않은 그룹(Stayers)”을 비교하며 이러한 두 그룹 간 차이는 다음과 같이 수식으로 나타낼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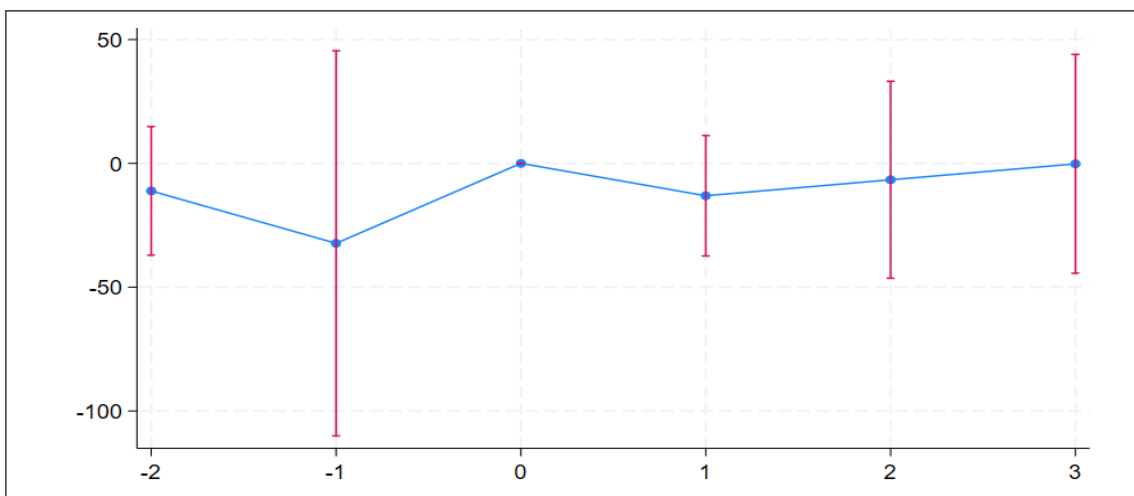
$$\delta_{st} = E[\Delta Y_t | S_{st} = 1] - E[\Delta Y_t | S_{st} = 0]$$

- δ_{st} : 기간 t 동안 처치 상태를 바꾼 그룹의 평균적인 정책 효과
- $\Delta Y_t = Y_t - Y_{t-1}$: 시점 $t-1$ 에서 t 까지의 성과의 변화량이며, 본 보고서에서는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 총 비과세 면제 금액, 이자배당금액의 변화량임
- $S_{st} = 1$: 해당 개체가 기간 $t-1$ 에서 t 사이에 처치 상태나 강도를 바꾼 ‘Switcher’ 그룹에 속함을 의미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득 요건으로 인하여 기존의 연령 요건 기준으로 수혜자인 사람이 제외되는 경우를 의미함
- $S_{st} = 0$: 해당 개체가 기간 $t-1$ 에서 t 사이에 처치 상태나 강도가 동일하게 유지된 ‘Stayer’ 그룹에 속함을 의미하며, 본 보고서에서는 금융소득 요건이 도입되어도 그대로 수혜자인 사람인 집단을 의미함

- [그림 III-10]부터 [그림 III-12]는 비과세종합저축 제도에 금융소득 요건 적용 시점(시점 1) 전후의 효과를 시각적으로 나타내었으며, 해당 요건 도입 전후로 유의미한 차이를 확인할 수 없었음

- [그림 III-19]는 금융소득 요건이 적용됨에 따라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것임
 - 정책 변경 전($t=-2, -1$): 추정치가 0을 중심으로 변동하고, 신뢰구간(오차 막대)이 0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는 정책 변경 전 두 그룹(Switcher와 Stayer) 간에 유의미한 추세 차이가 없었음을 시사함
 - 정책 변경 후($t=1, 2, 3$): 정책 변경 후 추정치가 0에 매우 가깝게 나타나며, 이는 해당 요건 변화가 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없었음을 의미함
- [그림 III-20]은 금융소득 요건 적용 전후에 Switcher와 Stayer의 총 비과세 면제 금액에 대한 차이를 살펴본 것임
 - 정책 변경 전과 정책 변경 후 모두 추정치가 0 주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 정책 변화는 총 비과세 면제 금액에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음을 확인
- [그림 III-21]은 동 조세특례 요건 추가 전후에 두 그룹 사이의 이자배당금액에 대한 변화를 살펴본 것임
 - 정책 변경 후에 이자배당금액이 양(+)¹⁾의 값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신뢰구간이 여전히 0을 포함하고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증가시키지 못하였음을 시사

[그림 III-19] 금융소득 요건 도입 효과(비과세종합저축 비과세 금액, 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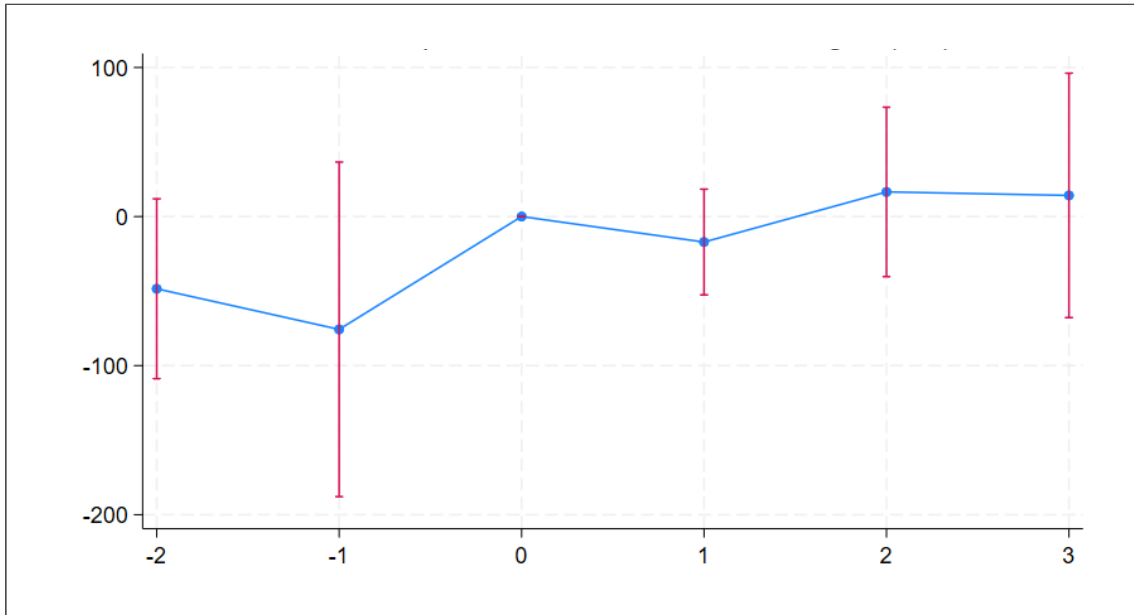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직전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통제변인은 종합소득금액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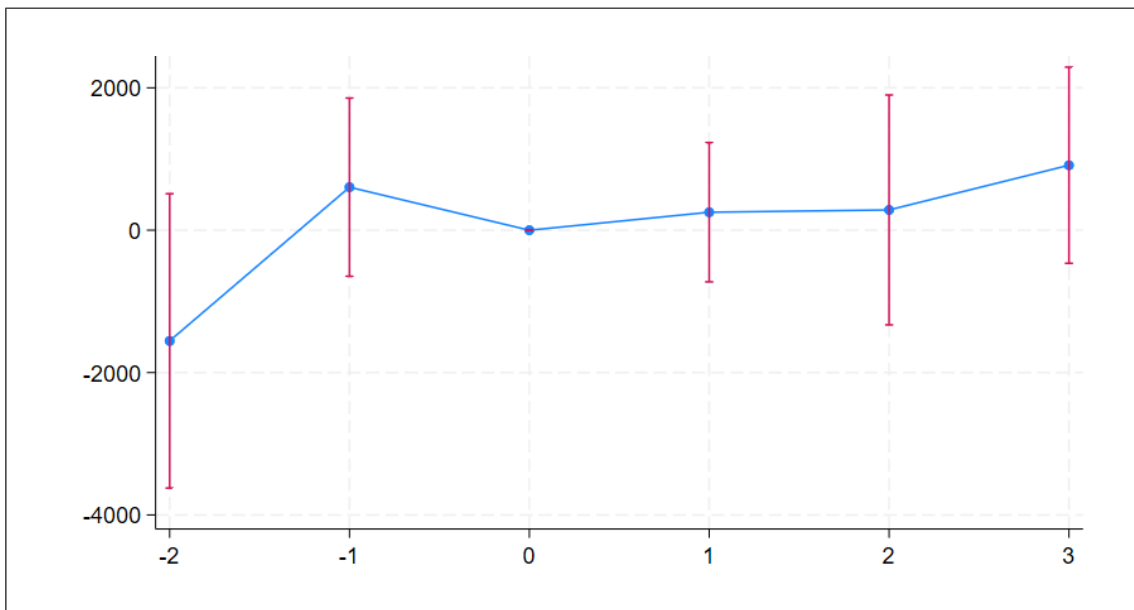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0] 금융소득 요건 도입 효과(총 비과세 면제 금액, 만원)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직전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통제변인은 종합소득금액을 사용
 자료: 저자 작성

[그림 III-21] 금융소득 요건 도입 효과(이자배당금액, 만원)



주: 1. 시점 0이 제도 도입 직전 시점을 나타내며, 막대 범위는 95% 신뢰구간임
 2. 통제변인은 종합소득금액을 사용
 자료: 저자 작성

라. 소결

1) 제도 활용 현황 및 요인 분석

□ 제도 활용 규모 및 추이

- (계좌 및 가입자 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비과세종합저축 계좌 수는 약 780만개에서 1,008만개로, 총가입자 수는 약 423만명에서 541만명으로 꾸준히 증가함
- (한도금액) 총 한도금액은 2020년 약 129.6조원에서 2024년 약 182.7조원으로 증가하였으며, 2022년에는 한도금액 증가율이 18.16%로 가장 높았음
- (가입자 특성) 가입자 평균 연령은 73세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여성 가입자 비율이 약 60%로 남성보다 높은 측면이 있음

□ 제도 활용 요인 분석

- (비과세 금액 변동) 연도별 비과세 혜택 금액은 2014년 이후 감소 추세를 보이다 2023년에 5천억원을 넘어서며 급증하였으며, 이는 가입자 수의 꾸준한 증가세와는 다른 양상임
- (기준금리와의 연관성) 2022년부터 기준금리가 가파르게 상승하자 약 1년의 시차를 두고 2023년 비과세 혜택 금액이 폭증하였으며, 이는 평균 계좌 보유 기간이 약 1년이라는 점과도 일치함
 - 실제로 특정 연도의 조세지출액 증감 비율은 직전 연도의 기준금리 증감 비율과 유사한 패턴을 보임

2) 수혜대상 분석

□ 수혜자 미시자료 분석

- (소득과 혜택의 역상관 관계) 만 65세에서 74세 사이 인구에서는 나이가 많을수록 평균 종합소득은 낮아지지만, 1인당 평균 비과세 혜택은 오히려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남
- (소득수준별 분포) 수혜자의 대부분은 저소득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이 넘는 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며, 1인당 평균 혜택금액은 오히

- 러 일부 고소득 구간에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발견됨
- 특히 1억 5천만원 초과 소득 구간의 평균 혜택이 가장 컸음
- 별도의 소득 및 자산요건을 설정하지 않는 경우 고소득자들 또한 수혜 가능 집단에 포함될 수 있음

3) 경제적 효과 분석

- 제도 도입의 저축 증대 효과: 연령 기준이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활용한 분석 결과,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수혜자의 저축 관련 금액을 유의미하게 증가 시킨 것을 확인함
 - (절대 금액 증가) 제도 도입 후 1년 뒤 비과세 혜택 금액은 약 32만원, 2년 뒤에는 약 38만원 증가하였으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2년 후 약 150만원 수준으로 급증함
 - (저축행태 변화 미미) 종합소득 대비 ‘비율’로 동일한 분석을 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이는 제도가 수혜자의 절대적인 저축액은 늘렸지만 소득에서 더 높은 비율을 저축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행동 변화까지는 유도하지 못했음을 시사
- 금융소득 요건 추가의 효과: 2020년 금융소득 요건 추가로 인한 수혜자 구성의 변화나 제도 효과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 2020년 도입된 금융소득 요건(연 2천만원 초과 시 가입 제한)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0.16~0.48% 수준으로 매우 적었음
 - 이는 종합소득이 낮은 사람도 금융소득이 많으면 제외될 수 있음을 시사함
 - 제도 효과에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것은 해당 요건으로 인해 수혜자 격이 박탈된 인원이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정책이 비과세 혜택 금액이나 이자배당소득 규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

IV. 결론 및 정책제언



IV. 결론 및 정책제언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가. 분석 결과의 요약

1) 타당성 평가

- 본 조세특례의 타당성 평가는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 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로서의 적절성, 지원대상의 적절성, 지원방식의 적절성, 그리고 유사·중복 여부를 기준으로 수행

- (정부역할의 적절성) 주택보유 현황 및 보유에 대한 인식과 정책대상자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높은 사용률을 고려할 때 정부가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마련을 지원하는 것에 대한 타당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
 - 우리나라 PIR은 84.8로 OECD 평균인 115.9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높지 않은 수준이나, 주택의식 대비 실제 자가보유율은 낮은 수준
 - ‘주택을 꼭 소유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87.3%)에 비해 자가보유율(60.7%)이 낮게 나타남(『주거실태조사』, 2023)
 - 연구진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부동산 축적을 위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선호(69.5%)와 사용률(66.4%)이 높게 나타났으며, 본 조세특례의 수혜대상자인 정책대상자의 가입 비율이 74.7%로 비대상자(58%)보다 높게 나타남

- 반면 주택청약종합저축과 그에 대한 소득공제가 주택마련에 기여하는 정도는 설문조사 결과 크지 않게 나타나, 이를 통한 지원이 효과적 정책수단인지 여부에 대하여서는 의문이 제기됨
 - 설문조사 응답자들은 주택청약종합저축(3.2점)이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 소득공제제도(3.2점)의 효과성은 보통 혹은 그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인식
- 1: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2: 도움이 되지 않음, 3: 보통, 4: 도움이 됨, 5: 매우 도움이 됨

- (지원대상의 적절성) 본 조세특례가 연소득 7,000만원 이하의 소득자로 지원대상을 설정하고 있는 점은 지원의 필요성이 낮은 자들을 배제하고 소득공제의 역진성을 완화한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있어 보임
 - 7,000만원 이하 가구의 자가보유율은 62.94%로 7,000만원 초과 가구(72.22%)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PIR 또한 6.67배로 7,000만원 초과 가구(5배)보다 높게 나타남
 - 7,000만원 이하 소득요건을 적용함으로써 수혜자 간 세액공제의 차이가 최대 11.3배에서 최대 3.73배로 감소

- (지원방식의 적절성) 본 조세특례는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납입금의 일부를 소득공제 형태로 감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며 주택자금소득공제와 한도가 연동되는 형태로 운영된다는 특징이 있음
 - 이러한 지원방식은 수혜자의 다양한 선택권과 주택구매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한 효율적인 접근이며, 소득요건을 부여함으로써 역진성을 완화하는 측면에서도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다만, 통합 한도 운영에 있어서는 향후 개선을 위한 논의가 필요할 수 있음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이 상이하나 한도가 연동되어 납세자의 세법 이해도를 낮출 수 있음

- (중복성 검토) 본 조세특례와 정책목표가 유사하고 중복수급이 가능한 재정지원 사업으로는 주택구입에 대한 융자사업, 전월세자금 지원사업 등이 있으나 지원대상을 저소득층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주로 대출을 지원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차이점 및 보완점이 있다고 판단됨

2) 효과성 분석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효과성은 설문조사 및 구조모형을 통해 본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 및 유지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춤
- 설문조사의 결과, 청약에 가입한 사람의 비율은 상당히 높았고(약 66%), 소득공제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상당히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에(70% 이상), 인지도가 낮아서 효과성이 나타나지 않을 우려는 적은 것으로 판단됨
 - 단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까지 알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은 높지 않았기 때문에(16.5%), 제도의 작은 개혁은 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음
- 추정 결과 개인들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는 4,637만원이었고, 그중에서 대부분인 4,250만원은 자본이익에서 도출되었으며, 소득공제의 가치는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 중 3%만을 차지함
 - 소득공제를 수급받은 사람에 한정할 경우는 전체 주택청약저축의 가치는 6.2%로 나타남
 - 이는 소득공제가 주택청약저축의 가치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지는 않음을 의미
- (반사실적 분석 1) 소득공제제도가 사라질 경우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가입자의 비율은 3.84%로 나타났으며, 이는 기대 자본이익의 크기와는 관계가 없었음
 - 이는 해지를 선택하는 가입자들은 이미 기대 자본이익이 0이라고 생각하는 가입자들이기 때문임
 - 이 수치는 설문조사에서 소득공제가 사라질 경우 해지를 고려하겠다고 답한 사람들의 8% 정도에 해당함
- (반사실적 분석 2) 소득공제의 대상자 혹은 혜택이 확대되었을 때 추가적인 가입자의 비율은 다음과 같이 추정됨
 - 소득공제의 대상자가 확대되어 현재 비가입자의 20%정도가 추가적으로 대상자 확대의 혜택을 받을 경우, 현재 비가입자의 1.27% 정도가 새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

-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연간 납입한도가 600만원으로 증가할 경우 현재 비가입자의 1.5% 정도가 새로 가입할 것으로 추정

나. 정책제언

- 본 조세특례가 목적으로 하는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마련 지원에 대한 정부 역할, 지원대상의 적절성은 충분한 것으로 평가
-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제공하는 것이 얼마나 효과적인 방식인지에 관하여서는 고민이 필요함
 - 본 효과성 검증 결과 소득공제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을 유인하는 효과가 있었지만 소득공제의 가치는 크지 않게 인식하고 있어 대체로 주택청약에 대한 수단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치를 인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생각됨
 - 또한 1인당 경감세액이 37,997원 수준으로 크지 않아 소득공제의 금액적인 측면에서는 주택마련에 실질적인 효과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움
- 이는 주로 주택구매에 대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해외 사례와는 상반됨
 - 이에 소득공제가 주택마련 지원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바탕으로 제도 운용을 고민할 필요가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은 주택시장 참여를 유도하고 자산축적의 시작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일정 부분 의미가 있을 수 있으며, 이러한 측면에 초점을 둔 소득공제 및 금융상품, 청약제도에 대한 고민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실제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가입이 주택구매를 위한 자산축적의 중요한 수단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자산축적을 계획하고 부동산 시장에 참여하게 하는 심리적 유인이 존재할 가능성도 있음
- 더불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중 부양가족 및 부양자녀가 없는 수혜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수가 최근에 감소하고 있는 추세, 세대 간 주거소비 특성의 변화 등 정책환경 또한 변화하고 있어, 이를 꾸준히 모니터링하고 그에 맞는 유연한 정책방향 설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과정에서 운용방식에 있어서는 다음의 두 가지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음

- 개정 시 납세자들의 세법 이해도를 고려 필요
 - 설문조사의 결과를 참고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대한 인지는 높지만,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는 경우(61.7%)가 많았음
 - 제도의 작은 개정은 그 유인효과가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며 제도를 복잡하게 만드는 경우 납세자들의 이해도는 더 감소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개정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와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의 통합한도 운영방식에 대한 개선 필요
 -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는 무주택 및 1주택 소유자가 수급이 가능하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서 발생한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이라는 특성상 1주택 소유자의 비중이 높을 것으로 보임
 - 이러한 경우 1주택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를 동시에 수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중복수급은 많이 발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음
 - 중복수급이 많이 발생하지 않는 제도에 대하여 통합한도를 연동하는 것은 불필요한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의 한도를 분리하여 통합한도가 아닌 독립적인 한도로 낮추어서 운영하는 것으로 고려할 수 있음

2.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가. 분석 결과의 요약

1) 타당성 평가

- 본 과세특례에 대한 타당성 평가는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등과 같은 취약계층의 저축 및 자산 지원에 정부개입 근거의 타당성, 정책대상 및 지원방식의 적절성, 제도 간 유사 및 중복성을 검토
- (정부역할 및 지원대상의 적절성) 만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노후소득 보장 및 소득다변화 필요성과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실질적 자립을 유도한다는 측면에서 저축지원 및 자산형성 지원 정책은 중요한 정책목표
- (지원대상의 적절성)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및 기초생활수급자는 지원대상으로 적절하다고 평가되나 향후 소득 및 자산 수준의 향상이 가능하며 고소득층 및 고액자산가가 일부 존재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할 수 있음
 - 지원대상 중 만 65세 이상 노인은 전체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자 중 93.6%를 차지하며, 고령화에 따라 총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지원방식의 적절성) 동 과세특례의 비과세 지원방식은 정책목표 달성에 적절한 것으로 보이나 소득 및 재산요건을 적용하지 않는 65세 이상 고령층에 대해서는 수혜자 간 형평성 측면에서의 개선이 필요할 수 있음
 - 비과세 방식은 행정적으로 효율적이며 납세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부여한다는 장점이 있으며(김학수·박노욱, 2013), 과세표준의 크기나 세액공제 순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소득공제 혹은 세액공제보다는 형평성 측면에서 유리한 점이 있음
 - 다만 금융소득에 대한 제한 외에 소득·자산에 대한 제약이 없어 수직적 형평성 저해 가능성이 존재

- (중복성) 2023년 65세 이상 수혜자의 경우 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와의 중복성(25.53%)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외의 경우 비교적 크지 않음
 - 국세청 제공 2023년 수급자 전수조사 기초통계를 이용하여 살펴본 결과, 비과세·면제 금융소득 중 비과세종합저축 혜택을 받는 금융소득의 비중이 69.94% 정도로 가장 크게 나타났음
 - 비과세·면제 금융소득의 25.53%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이며, 4.27%가 그 외의 비과세·면제를 받는 것으로 나타남
 - 기타 비과세·면제는 ISA에 대한 비과세 포함
 - 본 과세특례와 ISA의 중복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금융소득 종합과세자 배제 제한을 통해 중복성의 정도를 제한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중복수급자의 수는 조합 출자금·예탁금 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평균금액은 소기업 소상공인 공제부금(262만원)과 세금우대종합저축(106만원)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2) 효과성 분석

- 효과성 분석 결과 본 과세특례가 수혜자의 저축 관련 금액을 유의미하게 증가시키는 효과가 있었으나 2020년 금융소득 요건 추가가 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 (효과성 분석 결과 1) 연령 기준이 순차적으로 상향 조정된 점을 활용한 분석 결과 비과세종합저축 제도는 수혜자의 저축 관련 금액은 유의미하게 증가시켰으나 저축행태 변화는 가져오지 않음
 - (절대 금액 증가) 제도 도입 후 1년 뒤 비과세 혜택 금액은 약 32만원, 2년 뒤에는 약 38만원까지 증가하였으며, 이자배당소득의 경우에는 1~2년 후 약 150만원 수준으로 급증함
 - (저축행태 변화 미미) 종합소득 대비 '비율'로 동일한 분석을 하였을 때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음
 - 이는 제도가 수혜자의 절대적인 저축액은 늘렸지만 소득에서 더 높은 비율을 저축하도록 하는 근본적인 행동 변화까지는 유도하지 못했음을 시사

- (효과성 분석 결과 2) 2020년 금융소득 요건 추가가 제도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음
 - 이는 해당 요건으로 인해 수혜 자격이 박탈된 인원이 매우 적었기 때문으로, 정책이 비과세 혜택 금액이나 이자배당소득 규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
 - 2020년 도입된 금융소득 요건(연 2천만원 초과 시 가입 제한)으로 인해 혜택에서 제외된 인원은 전체 대상자의 0.16~0.48% 수준으로 매우 적었음

나. 정책제언

- 취약계층의 저축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본 과세특례의 목표는 타당한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금융소득을 증가시키는 효과가 발견되었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성이 발견된 것으로 보임
- 수혜대상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65세 이상 고령층 인구의 증가로 장기적으로 본 과세특례에 대한 조세지출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소득 및 자산요건 없이 고령층 전체를 포괄하는 현행 운용방식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시점으로 판단됨
 - 65세 이상 노인인구를 모두 포괄하는 현재의 운용방식은 본 과세특례가 노후소득 보장에 효과적인 방안인지 여부에 달려 있음
 - 본 과세특례의 혜택은 만기 혹은 해지 시에 일시적으로 발생하여 노후소득을 근본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수단으로 사용되기는 어려움
 - 따라서 본 과세특례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도록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고령층의 자산 및 소득수준이 세대를 지나면서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층 내에도 고소득 및 고자산 계층이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취약계층을 선별함으로써 수혜대상의 적절성과 수혜자 간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수혜대상 중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는 이미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받고 있어 고액의 자산가 및 고소득층이 포함되는 경우 수혜자 간 형평성이 저하될 가능성이 있음

-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2020년부터 금융소득 요건(연 2천만원 초과 시 가입 제한)을 적용하고 있으나, 이는 취약계층을 선별하는 데 효과적인 방식이 아닐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됨
- 따라서 추가적으로 소득 및 자산요건을 적용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는데, 유사하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면서 고령층 수혜자를 상당수 포함하고 있는 근로장려금,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제도 등의 예를 참고할 수 있음
 - 근로장려금은 소득 및 자산 요건을 각각 적용하고 있으며,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과 자산을 소득인정액이라는 개념으로 총합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음
 - 근로장려금은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 연계형 소득지원제도로 소득요건 및 재산요건을 만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함⁶³⁾
 - 단독가구 기준 2025년 소득요건은 연간 총소득 2,2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2억 4천만원 미만이며, 2024년 기준 60세 이상 수혜자는 전체 수혜자의 32%를 차지함⁶⁴⁾
 - 기초연금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과 자산(수도권·비수도권 등)을 고려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만 65세 이상 노인가구에 지급됨
 - 만 65세 이상 노인인구 중 70% 수준까지 지급하며,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2025년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228만원, 배우자가 있는 노인가구의 경우 월 364.8만원 수준⁶⁵⁾
 - 소득인정액이란 본인 및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함
 - 소득평가액은 ‘[0.7×(근로소득 - 112만원)]+기타소득’⁶⁶⁾으로 산정하며,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 기본재산공제액)+(금융재산 - 2,000만원)-부채]×재산

63)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5. 7. 30.

64)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2024.

65)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2025. 1. 1. 시행)」, https://basicpension.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2&list_no=21865&act=view, 검색일자: 2025. 7. 30.

66) 기타소득에는 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이 포함

의 소득환산율(4%)/12개월]+고급자동차 및 회원권 가액'으로 정의됨⁶⁷⁾

- 근로장려금의 수혜자와 유사한 취약계층을 고려한다면, 근로장려금이 사용하고 있는 소득 및 재산요건을 확인하는 과세 인프라를 함께 사용함으로써 행정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나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함
 - 근로장려금의 경우 신청 이후에 사후적으로 수급자격을 확인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점에 수시로 대상 여부를 바로 확인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음
 - 또한 근로장려금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로 한정된다는 점에서 본 과세특례 제도의 목적과는 일치하지 않을 수 있음

- 소득과 자산을 함께 고려하는 방식 중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수혜대상을 기초연금 수급자로 한정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유사한 제도 목적을 가진 조세특례에서 이미 활용되고 있음
 - 기초연금 수급자로 수혜대상을 한정하는 조세특례로는 2024년 신설된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조특법」 §99의14)」가 있음⁶⁸⁾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1억원 한도) 시 10%를 세액 공제하는 제도
 - 적용요건은 기초연금 수급자 중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로 양도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 반면 기초연금 수급자로 수혜대상자를 한정하는 경우 다음과 같은 한계점도 존재함
 - 기초연금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의 하위 70%를 대상으로 급여를 지급한다는 목적을 설정하고 이에 맞는 소득 및 자산요건을 설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본 과세특례와는 목적이 상이할 수 있음
 - 실제로 2023년 기초연금 수급률은 67%를 기록함⁶⁹⁾

67)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7. 30.

68)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911&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5. 8. 13.

- 즉 기초연금은 보다 보편적 성격의 노후소득보장제도로 장애인 및 기초생활 보장제도 수급자와 유사한 취약계층은 아닐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김도헌·이승희(2025)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노인의 경제상황 개선으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점차 기준중위소득에 수렴하고 있어 취약계층 선정을 위한 기준으로 사용되기에는 부적절할 가능성이 있음
 - 김도헌·이승희(2025)는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2015년에는 기준중위소득 대비 56% 수준이었으나 2025년 93%로 빠르게 상승했으며, 2030년에는 107%에 이를 것으로 추정함
-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여 기초연금의 소득인정액 개념을 사용하되 기초생활보장 제도처럼 전체 소득분포를 고려한 중위소득을 기준점으로 삼거나 근로장려금 등의 사례를 참고하여 별도의 선정 기준액을 설정하는 방식을 고려할 수 있음
- 이를 통해 기초연금 등과는 독립적으로 본 과세특례의 정책목적에 좀 더 적합한 수혜대상을 설정하고 제도를 운영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69) 보건복지부,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11.

참고문헌

<국내 문헌>

- 관계부처합동,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2023~2027)』, 2023.
- 국세청, 『국세통계연보』, 각 연도.
- 국토교통부, 『2014년도 주거실태조사-연구보고서』, 2014.
- _____, 『2023년도 주거실태조사-(일반가구) 연구보고서』, 2024.
- 기획재정부, 『2025년 세제개편안』, 2025. 7. 31.
- 김도현·이승희, 『기초연금 선정방식 개편방향』, KID Focus, 2025.
- 김민기·정희철·김재철, 『고령화와 가계 자산 및 소비(Ⅱ): 고령가구의 소비와 자산 적정성』, 연구보고서 25-03, 자본시장연구원, 2025.
- 김태완·김미곤·노대명·김문길·임완섭·조성은·황도경·김기태·이원진·김이배·서광국·이찬진·이주미·하은솔·이병재·강예은, 『기초생활보장제도 20년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2020.
- 김학수·박노옥, 「과세형평성 제고를 위한 2013년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에 대한 제언」, 한국조세연구원, 2013. 6.
- 남진·김진하, 『저출생 대응을 위한 주택청약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2024.
- 대한민국정부, 『조세지출예산서』, 각 연도.
- 보건복지부,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현황』, 2024.
- _____, 『통계로 본 2023년 기초연금』, 2024. 11.
- 서광국, 「소득층 자산형성지원 사업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희망 키움통장 I 사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정책』, 제25권 제1호, 2018, pp. 259~286.
- 석상훈·장선구,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비교: 성장곡선모형을 통한 분석」, 제10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09.
- 신동면, 「근로 저소득층을 위한 자산 형성 지원 제도 설계에 관한 연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6권 제3호, 2009, pp. 209~226.

- 신용석·원도연·노재현, 『노인의 자산수준이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사회활동참여의 다중매개효과를 중심으로』, 『보건사회연구』, 제37권 제2호, 2017, pp. 216~250.
- 윤상용·김태완·양정빈·현명이·김영미, 『일하는 장애인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제도 도입 방안 연구』, 남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1.
- 이삼식·최효진, 『주거행태와 결혼 출산 간 연관성 분석』, 연구보고서 2015-47-7,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 이상엽·윤성주, 『연금저축 과세특례제도 공제방식 전환에 따른 행태변화 분석』, 『조세연구』, 제20권 제2집, 2020, pp. 187~210.
- 이승희, 『소득과 자산으로 진단한 노인빈곤과 정책방향』, KDI Focus, Vol 126, 2023,
- 이창무·김미경, 『가구주의 탄생 코호트 효과를 고려한 주택수요 분석모형』, 『부동산학연구』, 제19권 제3호, 2013, pp. 5~25.
- 이철희, 『노후소득보장문제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나라경제 인사이트』, 한국개발연구원, 2014. 8.
- 이철희·이재원, 『노후소득 수준의 장기적 변화: 코호트 분석 결과』, 『한국경제연구』, 제33권 제3호, 2015, pp. 5~34.
- 전병목, 『노후소득 형성을 위한 조세지원정책: 주택연금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1.
- 정다운·정재현, 『2022년 조세특례 심층평가(6):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2.
- 정용문·윤상용, 『장애인 자산형성지원: 해외 정책 사례 및 시사점』, 『사회보장연구』, 제40권 제4호, 2024, pp. 55~80.
- 조규형·강소랑·한창근·강시온, 『중장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방안 연구』, 서울시50플러스 2019-021, 서울시50플러스재단, 2019.
- 조운화·이태현·박시은·진화영, 『2024년 장애인 빈곤 및 소득불평등 지표』, 정책 24-03, 한국장애인개발원, 2024.
- 천현숙·박천규·이윤상, 『세대간 세대내 주거소비특성 변화에 대응한 정책방향 연구』, 수시 15-01, 국토연구원, 2015. 5.
- 최보람·임영제, 『주거안정 조세지원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제34권 제1호, 2021, pp. 191~212.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년』, 보도자료, 2023. 12. 14.

홍범교·김진영, 『2017 조세특례임의심층평가 근로자의 주거안정에 관한 세제지원』,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국세청, 내부자료

국토교통부, 내부자료

은행연합회, 내부자료

<외국 문헌>

Callaway, B., & Sant'Anna, P. H., "Difference-in-differences with multiple time periods,"
Journal of econometrics, 225(2), 2021, pp. 200~230.

De Chaisemartin, C., & d'Haultfoeuille, X., "Difference-in-differences estimators of intertemporal
treatment effect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2024, pp. 1~45.

Sherraden, M., *Assets and the poor: A new American welfare policy*, Armonk, NY: M. E.
Sharpe., 1991.

Sun, L., & Abraham, S., "Estimating dynamic treatment effects in event studies with heterogeneous
treatment effects," *Journal of econometrics*, 225(2), 2021, pp. 175~199.

<웹사이트>

AEON Bank, "【2025年最新版】住宅ローン控除(減税)でいくら戻ってくるの?確定申告書
の書き方を解説!", <https://www.aeonbank.co.jp/column/mortgageloan/koujo/seido/>, 검색
일자: 2025. 3. 18.

COMPTROLLER of MARYLAND, "Tax Credits, Deductions and Subtractions," https://services.marylandcomptroller.gov/taxes/en/tax-credits-deductions-and-subtractions?sys_kb_id=733587b61b97d290168d6424604bcb8a&id=kb_article_view&sysparm_rank=1&sysparm_tsqueryId=92d7b7dc87dee650a1c8ca66cebb3572, 검색일자: 2025. 6. 19.

Crédit Mutuel, "Livret Bleu: le Livret A du Crédit Mutuel," <https://www.creditmutuel.fr/fr/particuliers/epargne/livret-bleu.html#n3>, 검색일자: 2025. 3. 10.

Government of Canada, "First Home Savings Account(FHSA),"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first-home-savings-account.html>, 검색일자:
2025. 2. 25.

- _____, “Registered Disability Savings Pla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0/registered-disability-savings-plan.html#P44_1113, 검색일자: 2025. 2. 20.
- _____, “Tax-Free Savings Account (TFSA), Guide for Individuals,”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forms-publications/publications/rc4466/tax-free-savings-account-tfsa-guide-individuals.html#contributions>, 검색일자: 2025. 2. 20.
- _____, “The Home Buyers’ Plan,” <https://www.canada.ca/en/revenue-agency/services/tax/individuals/topics/rsp-related-plans/what-home-buyers-plan.html>, 검색일자: 2025. 2. 25.
- IRS, “Publication 590-A(2024), Contributions to Individual Retirement Arrangements(IRAs),” <https://www.irs.gov/publications/p590a>, 검색일자: 2025. 2. 24.
- _____, “Publication 907(2024), Tax Highligh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https://www.irs.gov/publications/p907#en_US_2023_publink100034073, 검색일자: 2025. 2. 17.
- _____, “Retirement Savings Contributions Credit (Saver’s Credit),” <https://www.irs.gov/retirement-plans/plan-participant-employee/retirement-savings-contributions-credit-savers-credit>, 검색일자: 2025. 2. 17.
- OECD, “Housing prices,”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housing-prices.html?oe.cdcontrol-a81da07b0e-var6=HPI_YDH&oe.cdcontrol-82d381eddd-var3=2024-Q1&oe.cdcontrol-82d381eddd-var5=Q&oe.cdcontrol-3ade9064e2-var1=OECD%7CEA17%7CEA%7CAUS%7CAUT%7CBEL%7CCAN%7CCHL%7CCOL%7CCRI%7CCZE%7CDNK%7CEST%7CFIN%7CFRA%7CDEU%7CGRC%7CHUN%7CISL%7CIRL%7CISR%7CITA%7CJPN%7CKOR%7CLVA%7CLTU%7CLUX%7CMEX%7CNLD%7CNZL%7CNOR%7CPOL%7CPRT%7CSVK%7CSVN%7CESP%7CSWE%7CCHE%7CTUR%7CGBR%7CUSA&oe.cdcontrol-3ade9064e2-var2=KOR, 검색일자: 2025. 6. 30.
- _____, “Poverty rate,” <https://www.oecd.org/en/data/indicators/poverty-rate.html>, 검색일자: 2025. 2. 27.
- State of Oregon, “First-time Home Buyer Savings Accounts,” <https://www.oregon.gov/dor/programs/individuals/pages/first-time-home-buyer.aspx#>, 검색일자: 2025. 2. 24.
- Zibble, “2024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 예외 인정 기준,” https://toadhome.co/content/36#google_vignette, 검색일자: 2025. 6. 30.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_____, 「소득세법」,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6%8C%EB%>

93%9D%EC%84%B8%EB%B2%95, 검색일자: 2025. 5. 16.

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국세법령정보시스템, <https://taxlaw.nts.go.kr/>, 검색일자: 2025. 6. 30.

국세청,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8&cntntsId=239020>, 검색일자: 2024. 5. 15.

_____,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609&cntntsId=239021>, 검색일자: 2025. 5. 16.

_____,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자격」,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검색일자: 2025. 7. 30.

금융감독원, 「농어가목돈마련저축」, <https://finlife.fss.or.kr/finlife/main/contents.do?menuNo=700070>, 검색일자: 2025. 5. 26.

금융위원회, 「농어가목돈마련저축 가입기준 건강보험료액 고시」, <https://www.fsc.go.kr/po040200/83711>, 검색일자: 2025. 5. 26.

_____, 「[보도자료]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https://www.fsc.go.kr/no010101/80726?srchCtgr=&curPage=&srchKey=&srchText=&srchBeginDt=&srchEndDt=>, 검색일자: 2025. 5. 26.

기획재정부, 「[보도자료2] 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9911&menuNo=4010100, 검색일자: 2025. 8. 13.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청년저축계좌, 참여이력 등 확인해 중복가입 방지」, <https://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866253>, 검색일자: 2025. 3. 19.

보건복지부, 「기준 중위소득」,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900>, 검색일자: 2025. 3. 8.

_____, 「새로운 노인층의 등장, 달라지는 노인세대」, 2021. 6. 7., https://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ge=1&CONT_SEQ=365977, 검색일자: 2025. 7. 14.

_____, 「수급자선정기준」,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10300>, 검색일자: 2025. 3. 4.

_____, 「자산형성지원사업」, <https://www.mohw.go.kr/menu.es?mid=a10708020400>, 검색일자: 2025. 5. 26.

_____, 「장애인현황-전국 장애유형별, 성별 등록장애인수」, 2024, 2025. 8. 26., [tps://](https://)

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61_N001&conn_path=I2, 검색일자: 2025. 6. 30.

보건복지부 기초연금, 「『기초연금 지급대상자 선정기준액, 기준연금액 및 소득인정액 산정 세부기준에 관한고시』 일부개정(‘25.1.1. 시행)」, https://basicpension.mohw.go.kr/board.es?mid=a10401000000&bid=0002&list_no=21865&act=view, 검색일자: 2025. 7. 30.

_____,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20000&utm_source=chatgpt.com, 검색일자: 2025. 7. 30.

복지로, 「복지서비스 상세(중양)」, <https://www.bokjiro.go.kr/ssis-tbu/twataa/wlfareInfo/moveTWAT52011M.do?wlfareInfoId=WLF00001063>, 검색일자: 2025. 6. 30.

『시사저널e』, 「한국서 집구하기 OECD 국가보다 쉽다고?...평균의 함정」, 2016. 8. 30., <https://www.sisajournal-e.com/news/articleView.html?idxno=157230>, 검색일자: 2025. 6. 30.

주택도시기금, <http://nhuf.molit.go.kr/FP/FP05/FP0502/FP05020101.jsp>

일본 국세청, “No.1313 障害者等のマル優(非課税貯蓄),”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3.htm>, 검색일자: 2025. 3. 10.

_____, “No.1319 財形年金貯蓄”, <https://www.nta.go.jp/taxes/shiraberu/taxanswer/shotoku/1319.htm>, 검색일자: 2025. 3. 10.

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 「소득 기준 확인하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2&search_put=, 검색일자: 2025. 3. 4.

_____, 「재산 기준 확인하기」, https://www.easylaw.go.kr/CSP/CnpClsMain.laf?popMenu=ov&csmSeq=1533&ccfNo=2&cciNo=2&cnpClsNo=3&search_put=, 검색일자: 2025. 3. 4.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22~2072」, https://kostat.go.kr/board.es?mid=a10301010000&bid=207&act=view&list_no=428476, 검색일자: 2025. 3. 8.

프랑스 공공행정 포털 홈페이지, “Livrets, plans et comptes d'épargne,” <https://www.service-public.fr/particuliers/vosdroits/N20376>, 검색일자: 2025. 3. 12.

프랑스 경제·재정·산업·디지털 주권부 홈페이지, “Livret d'épargne populaire(LEP): comment ça marche ?,” <https://www.economie.gouv.fr/particuliers/livret-epargne-populaire-lep>, 검색일자: 2025. 3. 10.

한국은행, 「기준금리 추이」, <https://www.bok.or.kr/portal/singl/baseRate/list.do?dataSeCd=01>

&menuNo=200643, 검색일자: 2025. 5. 19.

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 https://www.hf.go.kr/ko/sub02/sub02_01_02.do, 검색일자: 2025. 6. 30.

부 록



부록 A. 모형도출 과정

- 청약 당첨으로부터 오는 기대 자본이익인 V_a 을 도출하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청약신청 및 해지의 사건이 연속시간에서 푸아송(Poisson) 과정을 통해 나타나고, 모든 모수들이 시간에 대해 일정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을 이용해서 주택을 구매하는 순간 주택청약종합저축은 해지

- 위의 가정하에서 V_a 는 다음의 Hamilton-Jacobi-Bellman 식을 만족해야 함

$$rV_a = \pi(\eta P_H - V_a) - s(0 - V_a)$$

- π 는 청약을 신청할 기회가 올 확률과 신청 시 당첨이 될 확률을 곱한 값으로,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의 자본이익은 ηP_H 로 나타남
 - s 는 당첨이 아닌 다른 이유로 청약을 해지하게 되는 확률로, 이러한 사건이 생겼을 때 자본이익은 0이 됨
- 이자 및 소득공제에서 오는 가치인 V_f 를 도출하기 위한 가정은 다음과 같음
 - 주택청약저축의 수익률 r_e , 이자율 r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당첨 및 해지율(s, π)가 일정함
 - 향후 청약저축에 납입하는 금액이 2024년의 청약저축 납입액 d 와 같음
 - 미래에 소득공제를 통해 받게되는 혜택이 항상 T 로 일정함
 - 한편 이자 및 소득공제의 가치는 현재 잔고액에 의존하는데, 설문조사에서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현재 잔고액을 알 수 없으므로, 다음의 가정을 통해 현재 잔고액을 추정함
 - 관측할 수 있는 가입기간 τ 동안, 매년 2024년의 납입액인 d 만큼 꾸준히 납입했다고 가정하고, 가입기간 동안 r_e 의 이자율이 복리로 적용된 금액을 x 라고 상정
 - 현재 잔고액 A_0 은 위와 같이 정의한 x 의 일정 비율($z\%$)이라고 설정했으며, 이 비율은 현재 잔고액의 평균이 2024년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평균 잔고액 382만원과 일치하도록 설정($z = 9.19\%$)

- 이러한 가정은 현재 납입액이 높고 가입기간이 긴 사람일수록 현재 잔고가 많을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과 같음

□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V_f 는 다음과 같은 과정을 통해 도출할 수 있음

- 현재 잔고가 A_0 인 계좌에 일정금액 d 를 계속 납입하고, 계좌의 잔고가 r_e 의 수익률로 증가할 경우, t 시점 이후의 계좌잔고 $A(t)$ 는 다음의 식을 따름

$$A(t) = \frac{d}{r_e}(e^{r_e t} - 1) + A_0 e^{r_e t}$$

- 이러한 계좌를 유지하는 것의 현재가치는 $\delta = s + \pi$ 의 빈도로 나타나는 Stopping-Time τ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표현됨

$$V_0 = E_\tau[e^{-r\tau}A(\tau)] - \frac{d}{r + \delta}$$

- 두 번째항은 d 만큼의 금액을 계속 납입하는 것의 비용을 나타냄
- 위의 평균을 계산하면 다음의 식을 얻을 수 있으며, $r = r_e$ 일 경우 이 계좌의 가치는 현재의 잔고 A_0 와 같음을 알 수 있음

$$V_0 = \frac{d}{r_e} \left(\frac{r_e(r_e - r)}{(\delta + r - r_e)(r + \delta)} \right) + A_0 \frac{\delta}{\delta + r - r_e}$$

- V_f 는 위의 값에 소득공제의 현재가치 $\frac{T}{r + \delta}$ 를 더하고, 현재계좌의 잔고량 A_0 를 빼서 구할 수 있음

$$V_f = \frac{d(r_e - r)}{(\delta + r - r_e)(r + \delta)} + A_0 \frac{r_e - r}{\delta + r - r_e} + \frac{T}{r + \delta}$$

- 현재의 잔고량 A_0 를 빼는 이유는 주택청약종합저축계좌를 해지할 경우 A_0 의 가치를 얻을 수 있기 때문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 비용은 없다고 가정함

□ 유동성 비용 C 는 현재 납입액에 대해 증가하는 이차함수라고 가정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유동성 비용이 현재 납입액 d 에 대해 증가한다고 가정하

는 것은 자연스러움

- 이차함수라고 가정한 이유는 유동성 비용이 현재 납입액에 대한 볼록함수 (Convex function)가 아닐 경우, 최적 납입액이 잘 정의되지 않기 때문임
 - 이자수익은 d 에 대해 선형으로 증가하므로, 비용이 d 에 대해 선형으로 증가할 경우 납입을 전혀 하지 않거나 무한히 하는 것이 최적이 됨
- 설문조사에서 나타난 납입액의 분포는 최적 납입액이 최대 혹은 최소에서 결정되기보다는 중간지점에서 정해지는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유동성 비용이 볼록함수임을 시사

□ (모수 설정)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관적인) 당첨률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함

- 해지율 s 는 주어져 있다고 가정하고, 당첨률 π 를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가정을 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당첨 및 해지는 서로 독립적인 푸아송 과정에 의해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해지가 푸아송 과정이라는 것은 개인이 유동성 충격 등으로 인해 청약저축을 해지하게 되는 이벤트가 확률적으로 나타난다고 가정하는 것
 - 해지율 s 는 모든 사람에게 같음
- 위와 같은 가정하에서 단위 시간당 당첨률 π 와 해지율 s 가 주어질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이 해지되기 전에 당첨될 확률은 $\frac{\pi}{\pi+s}$ 임
- 이 값이 곧 청약저축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될 확률과 같으므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 x 에 대해서, $\frac{\pi}{\pi+s}=x$ 를 만족하도록 설정

□ (모수 설정) 위에서 주어져 있다고 가정했던 해지율 s 는 다음과 같이 추정

- 가입연도의 분포로부터 주택청약종합저축의 (가입율 + 해지율)을 추정
 - 당첨과 해지가 실제로 푸아송 과정에 의해 나타날 경우, 가입연도의 분포는 지수 분포(Exponential Distribution)를 따르고, 그 모수가 곧 (가입율 + 해지율)이 됨
- 전체 샘플의 $\pi+s$ 의 평균이 (가입율 + 해지율)의 평균과 같아지도록 해지율 s 를 설정함

- 각 개인이 주관적으로 느끼는 당침률 π 는 주어진 x 에 대해서 해지율 s 의 증가함수로 나타나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산

부록 B.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관련 설문조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관련 의견조사」 결과보고서

2025. 5.

목 차

I. 조사개요	1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1
2. 조사 설계	1
3. 조사 내용	2
4. 자료 처리	3
5. 응답자 분류 기준 및 특성	3
II. 조사 결과	5
1. 응답자 특성	5
1) 월평균 세전 개인 및 가구소득	5
2) 월평균 개인 및 가구 지출액	7
2. 자산 및 부채	9
1) 자산 보유 여부	9
2)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	9
3) 부채 보유 여부	11
4)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	11
3. 주거	13
1) 주택 입주 형태	13
2) 평균 주택 가격(시세) 및 임차료	14
3) 주거 관련 인식	15
4)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16
5)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	17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19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19
2) 주택청약 관련 인식	2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 여부	21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24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24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25
3) 주택청약 관련 인식	26
4) 소득공제제도 개편 관련 인식	27
5)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28

III. 정책대상자

1. 수급자	30
1) 응답자 특성	30
(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30
(2) 월평균 개인 지출액	32
(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34
(4) 월평균 가구 지출액	36
2) 자산 및 부채	38
(1) 자산 보유 현황	38
(2) 자산 보유 여부	38
(3)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0
(4)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2
(5)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4
(6)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6
(7) 부채 보유 여부	48
(8)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	48
(9) 총 부채 원금(잔액)	50
(10)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52
(11)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54
(12) 그 외 부채 원금(잔액)	56
3) 주거	58
(1) 주택 입주 형태	58
(2)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60
(3)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	62
(4)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65
(5) 자가 소유 필요 여부	67

(6)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69
(7)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71
(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73
(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	75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77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77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79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81
(4)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85
(5)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87
(6)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89
(7)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91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93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93
(2)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95
(3) 만약 소득공제 받지 못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의향	97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99
(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101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03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105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107
(9)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109
(10)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111
(11)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113
(12)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115
2. 비수급자	119
1) 응답자 특성	119
(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119
(2) 월평균 개인 지출액	121
(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123
(4) 월평균 가구 지출액	125

2) 자산 및 부채	127
(1) 자산 보유 여부	127
(2)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	127
(3)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29
(4)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1
(5)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3
(6)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5
(7) 부채 보유 여부	137
(8)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	137
(9) 총 부채 원금(잔액)	139
(10)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141
(11)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143
(12) 그 외 부채 원금(잔액)	145
3) 주거	147
(1) 주택 입주 형태	147
(2)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149
(3)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	151
(4)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154
(5) 자가 소유 필요 여부	156
(6)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158
(7)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160
(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162
(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	164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166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166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168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170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172
(5)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176
(6)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178
(7)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180
(8)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182
(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184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186

(11)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188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190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190
(2)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192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94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196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98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200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202
(8)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204
(9)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206
(10)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208
(11)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210
IV. 정책비대상자	214
1. 응답자 특성	214
1) 2024년 기준 세대주 여부	214
2) 2024년 기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 소유 유무	216
3) 2024년 근로소득 유무	218
4) 2024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여부	220
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22
6) 월평균 개인 지출액	224
7)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226
8) 월평균 가구 지출액	228
2. 자산 및 부채	230
1) 자산 보유 여부	230
2)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	230
3)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2
4)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4
5)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6
6)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8
7) 부채 보유 여부	240
8)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	240

9) 총 부채 원금(잔액)	242
10)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244
11)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246
12) 그 외 부채 원금(잔액)	248
3. 주거	250
1) 주택 입주 형태	250
2) 주택 가격(시세)	252
3)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254
4)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	256
5)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259
6) 자가 소유 필요 여부	261
7)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263
8)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265
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267
10)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	269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271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271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273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275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277
5)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281
6)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283
7)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285
8)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287
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289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291
11)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293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295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295
2) 소득공제혜택 받지 못한 이유	297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299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301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303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305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307
8)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309
9)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311
10)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313
11)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315
〈 부 록 〉 설문지	319

표 목 차

〈표 Ⅰ-1〉 조사 설계	1
〈표 Ⅰ-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2
〈표 Ⅰ-3〉 응답자 특성	4
〈표 Ⅱ-1〉 월평균 세전 개인 및 가구소득	6
〈표 Ⅱ-2〉 월평균 개인 및 가구 지출액	8
〈표 Ⅱ-3〉 자산 보유 여부	10
〈표 Ⅱ-4〉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	10
〈표 Ⅱ-5〉 부채 보유 여부	12
〈표 Ⅱ-6〉 부채별 평균 원금(잔액)	12
〈표 Ⅱ-7〉 주택 입주 형태	13
〈표 Ⅱ-8〉 평균 주택 가격(시세) 및 임차료	14
〈표 Ⅱ-9〉 주거 관련 인식	15
〈표 Ⅱ-10〉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16
〈표 Ⅱ-11〉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18
〈표 Ⅱ-12〉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	20
〈표 Ⅱ-13〉 주택청약 관련 인식	20
〈표 Ⅱ-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22
〈표 Ⅱ-15〉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22
〈표 Ⅱ-16〉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23
〈표 Ⅱ-1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24
〈표 Ⅱ-1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25
〈표 Ⅱ-19〉 주택청약 관련 인식	26
〈표 Ⅱ-20〉 소득공제제도 개편 관련 인식	27
〈표 Ⅱ-21〉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29
〈표 Ⅲ-1-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31
〈표 Ⅲ-1-2〉 월평균 개인 지출액	33
〈표 Ⅲ-1-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35
〈표 Ⅲ-1-4〉 월평균 가구 지출액	37
〈표 Ⅲ-1-5〉 자산 보유 여부	39
〈표 Ⅲ-1-6〉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1
〈표 Ⅲ-1-7〉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3

〈표 Ⅲ-1-8〉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5
〈표 Ⅲ-1-9〉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7
〈표 Ⅲ-1-10〉 부채 보유 여부	49
〈표 Ⅲ-1-11〉 총 부채 원금(잔액)	51
〈표 Ⅲ-1-12〉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53
〈표 Ⅲ-1-13〉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55
〈표 Ⅲ-1-14〉 그 외 부채 원금(잔액)	57
〈표 Ⅲ-1-15〉 주택 입주 형태	59
〈표 Ⅲ-1-16〉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61
〈표 Ⅲ-1-17〉 주택 임차료(보증금)	63
〈표 Ⅲ-1-18〉 주택 임차료(월세)	64
〈표 Ⅲ-1-19〉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66
〈표 Ⅲ-1-20〉 자가 소유 필요 여부	68
〈표 Ⅲ-1-21〉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70
〈표 Ⅲ-1-22〉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72
〈표 Ⅲ-1-23〉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74
〈표 Ⅲ-1-24〉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76
〈표 Ⅲ-1-2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78
〈표 Ⅲ-1-2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80
〈표 Ⅲ-1-2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82
〈표 Ⅲ-1-28〉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84
〈표 Ⅲ-1-29〉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86
〈표 Ⅲ-1-30〉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88
〈표 Ⅲ-1-31〉 청약 지원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90
〈표 Ⅲ-1-32〉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92
〈표 Ⅲ-1-3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94
〈표 Ⅲ-1-34〉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96
〈표 Ⅲ-1-35〉 만약 소득공제 받지 못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의향	98
〈표 Ⅲ-1-36〉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00
〈표 Ⅲ-1-37〉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102
〈표 Ⅲ-1-3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04
〈표 Ⅲ-1-3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	106
〈표 Ⅲ-1-40〉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108
〈표 Ⅲ-1-41〉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정도	110
〈표 Ⅲ-1-42〉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112
〈표 Ⅲ-1-43〉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114

〈표 III-1-44〉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116
〈표 III-1-45〉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118
〈표 III-2-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120
〈표 III-2-2〉 월평균 개인 지출액	122
〈표 III-2-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124
〈표 III-2-4〉 월평균 가구 지출액	126
〈표 III-2-5〉 자산 보유 여부	128
〈표 III-2-6〉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0
〈표 III-2-7〉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2
〈표 III-2-8〉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4
〈표 III-2-9〉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6
〈표 III-2-10〉 부채 보유 여부	138
〈표 III-2-11〉 총 부채 원금(잔액)	140
〈표 III-2-12〉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142
〈표 III-2-13〉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144
〈표 III-2-14〉 그 외 부채 원금(잔액)	146
〈표 III-2-15〉 주택 입주 형태	148
〈표 III-2-16〉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150
〈표 III-2-17〉 주택 임차료(보증금)	152
〈표 III-2-18〉 주택 임차료(월세)	153
〈표 III-2-19〉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155
〈표 III-2-20〉 자가 소유 필요 여부	157
〈표 III-2-21〉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159
〈표 III-2-22〉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161
〈표 III-2-23〉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163
〈표 III-2-24〉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선택)	165
〈표 III-2-2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167
〈표 III-2-2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169
〈표 III-2-2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171
〈표 III-2-28〉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173
〈표 III-2-29〉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175
〈표 III-2-30〉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177
〈표 III-2-31〉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179
〈표 III-2-32〉 청약 지원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181
〈표 III-2-33〉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183

〈표 III-2-3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185
〈표 III-2-35〉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187
〈표 III-2-36〉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189
〈표 III-2-3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191
〈표 III-2-38〉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193
〈표 III-2-3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95
〈표 III-2-40〉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197
〈표 III-2-4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99
〈표 III-2-4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201
〈표 III-2-4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203
〈표 III-2-44〉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정도	205
〈표 III-2-45〉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207
〈표 III-2-46〉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209
〈표 III-2-47〉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211
〈표 III-2-48〉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213
〈표 IV-1〉 2024년 기준 세대주 여부	215
〈표 IV-2〉 2024년 기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 소유 유무	217
〈표 IV-3〉 2024년 근로소득 유무	219
〈표 IV-4〉 2024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여부	221
〈표 IV-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23
〈표 IV-6〉 월평균 개인 지출액	225
〈표 IV-7〉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227
〈표 IV-8〉 월평균 가구 지출액	229
〈표 IV-9〉 자산 보유 여부	231
〈표 IV-10〉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3
〈표 IV-11〉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5
〈표 IV-12〉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7
〈표 IV-13〉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9
〈표 IV-14〉 부채 보유 여부	241
〈표 IV-15〉 총 부채 원금(잔액)	243
〈표 IV-16〉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245
〈표 IV-17〉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247
〈표 IV-18〉 그 외 부채 원금(잔액)	249
〈표 IV-19〉 주택 입주 형태	251
〈표 IV-20〉 주택 가격(시세)	253

〈표 IV-21〉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255
〈표 IV-22〉 주택 임차료(보증금)	257
〈표 IV-23〉 주택 임차료(월세)	258
〈표 IV-24〉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260
〈표 IV-25〉 자가 소유 필요 여부	262
〈표 IV-26〉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264
〈표 IV-27〉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266
〈표 IV-2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268
〈표 IV-2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270
〈표 IV-30〉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272
〈표 IV-3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274
〈표 IV-3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276
〈표 IV-3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278
〈표 IV-3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280
〈표 IV-35〉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282
〈표 IV-36〉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284
〈표 IV-37〉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286
〈표 IV-38〉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288
〈표 IV-3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290
〈표 IV-40〉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292
〈표 IV-41〉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294
〈표 IV-4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296
〈표 IV-4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298
〈표 IV-4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300
〈표 IV-4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302
〈표 IV-4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304
〈표 IV-4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306
〈표 IV-4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308
〈표 IV-49〉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310
〈표 IV-50〉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312
〈표 IV-51〉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314
〈표 IV-52〉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316
〈표 IV-53〉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318

그림 목 차

〈그림 Ⅱ-1〉 월평균 세전 개인 및 가구소득	5
〈그림 Ⅱ-2〉 월평균 개인 및 가구 지출액	7
〈그림 Ⅱ-3〉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9
〈그림 Ⅱ-4〉 부채 보유 여부 및 현황	11
〈그림 Ⅱ-5〉 주택 입주 형태	13
〈그림 Ⅱ-6〉 평균 주택 가격(시세) 및 임차료	14
〈그림 Ⅱ-7〉 주거 관련 인식	15
〈그림 Ⅱ-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16
〈그림 Ⅱ-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17
〈그림 Ⅱ-10〉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19
〈그림 Ⅱ-1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21
〈그림 Ⅱ-1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24
〈그림 Ⅱ-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25
〈그림 Ⅱ-14〉 주택청약 관련 인식	26
〈그림 Ⅱ-15〉 소득공제제도 개편 관련 인식	27
〈그림 Ⅱ-16〉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28
〈그림 Ⅲ-1-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30
〈그림 Ⅲ-1-2〉 월평균 개인 지출액	32
〈그림 Ⅲ-1-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34
〈그림 Ⅲ-1-4〉 월평균 가구 지출액	36
〈그림 Ⅲ-1-5〉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38
〈그림 Ⅲ-1-6〉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0
〈그림 Ⅲ-1-7〉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2
〈그림 Ⅲ-1-8〉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4
〈그림 Ⅲ-1-9〉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46
〈그림 Ⅲ-1-10〉 부채 보유 여부 및 현황	48
〈그림 Ⅲ-1-11〉 총 부채 원금(잔액)	50
〈그림 Ⅲ-1-12〉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52
〈그림 Ⅲ-1-13〉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54
〈그림 Ⅲ-1-14〉 그 외 부채 원금(잔액)	56
〈그림 Ⅲ-1-15〉 주택 입주 형태	58
〈그림 Ⅲ-1-16〉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60

〈그림 Ⅲ-1-17〉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62
〈그림 Ⅲ-1-18〉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65
〈그림 Ⅲ-1-19〉 자가 소유 필요 여부	67
〈그림 Ⅲ-1-20〉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69
〈그림 Ⅲ-1-21〉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71
〈그림 Ⅲ-1-22〉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73
〈그림 Ⅲ-1-23〉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75
〈그림 Ⅲ-1-2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77
〈그림 Ⅲ-1-2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79
〈그림 Ⅲ-1-2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81
〈그림 Ⅲ-1-2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83
〈그림 Ⅲ-1-28〉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85
〈그림 Ⅲ-1-29〉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87
〈그림 Ⅲ-1-30〉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89
〈그림 Ⅲ-1-31〉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91
〈그림 Ⅲ-1-3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93
〈그림 Ⅲ-1-33〉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95
〈그림 Ⅲ-1-34〉 만약 소득공제 받지 못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의향	97
〈그림 Ⅲ-1-3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99
〈그림 Ⅲ-1-36〉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101
〈그림 Ⅲ-1-3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03
〈그림 Ⅲ-1-3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	105
〈그림 Ⅲ-1-3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107
〈그림 Ⅲ-1-40〉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109
〈그림 Ⅲ-1-41〉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111
〈그림 Ⅲ-1-42〉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113
〈그림 Ⅲ-1-43〉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115
〈그림 Ⅲ-1-44〉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117
〈그림 Ⅲ-2-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119
〈그림 Ⅲ-2-2〉 월평균 개인 지출액	121
〈그림 Ⅲ-2-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123
〈그림 Ⅲ-2-4〉 월평균 가구 지출액	125
〈그림 Ⅲ-2-5〉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127
〈그림 Ⅲ-2-6〉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29
〈그림 Ⅲ-2-7〉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1

〈그림 Ⅲ-2-8〉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3
〈그림 Ⅲ-2-9〉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135
〈그림 Ⅲ-2-10〉 부채 보유 여부 및 현황	137
〈그림 Ⅲ-2-11〉 총 부채 원금(잔액)	139
〈그림 Ⅲ-2-12〉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141
〈그림 Ⅲ-2-13〉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143
〈그림 Ⅲ-2-14〉 그 외 부채 원금(잔액)	145
〈그림 Ⅲ-2-15〉 주택 입주 형태	147
〈그림 Ⅲ-2-16〉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149
〈그림 Ⅲ-2-17〉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151
〈그림 Ⅲ-2-18〉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154
〈그림 Ⅲ-2-19〉 자가 소유 필요 여부	156
〈그림 Ⅲ-2-20〉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158
〈그림 Ⅲ-2-21〉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160
〈그림 Ⅲ-2-22〉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162
〈그림 Ⅲ-2-23〉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선택)	164
〈그림 Ⅲ-2-2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166
〈그림 Ⅲ-2-2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168
〈그림 Ⅲ-2-2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170
〈그림 Ⅲ-2-2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172
〈그림 Ⅲ-2-28〉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174
〈그림 Ⅲ-2-29〉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176
〈그림 Ⅲ-2-30〉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178
〈그림 Ⅲ-2-31〉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180
〈그림 Ⅲ-2-32〉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182
〈그림 Ⅲ-2-3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184
〈그림 Ⅲ-2-34〉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186
〈그림 Ⅲ-2-35〉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188
〈그림 Ⅲ-2-3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190
〈그림 Ⅲ-2-37〉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192
〈그림 Ⅲ-2-38〉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94
〈그림 Ⅲ-2-3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196
〈그림 Ⅲ-2-40〉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198
〈그림 Ⅲ-2-4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200
〈그림 Ⅲ-2-4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202
〈그림 Ⅲ-2-43〉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204

〈그림 Ⅲ-2-44〉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206
〈그림 Ⅲ-2-45〉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208
〈그림 Ⅲ-2-46〉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210
〈그림 Ⅲ-2-47〉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212
〈그림 Ⅳ-1〉 2024년 기준 세대주 여부	214
〈그림 Ⅳ-2〉 2024년 기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 소유 유무	216
〈그림 Ⅳ-3〉 2024년 근로소득 유무	218
〈그림 Ⅳ-4〉 2024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여부	220
〈그림 Ⅳ-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22
〈그림 Ⅳ-6〉 월평균 개인 지출액	224
〈그림 Ⅳ-7〉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226
〈그림 Ⅳ-8〉 월평균 가구 지출액	228
〈그림 Ⅳ-9〉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230
〈그림 Ⅳ-10〉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2
〈그림 Ⅳ-11〉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4
〈그림 Ⅳ-12〉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6
〈그림 Ⅳ-13〉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238
〈그림 Ⅳ-14〉 부채 보유 여부 및 현황	240
〈그림 Ⅳ-15〉 총 부채 원금(잔액)	242
〈그림 Ⅳ-16〉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244
〈그림 Ⅳ-17〉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246
〈그림 Ⅳ-18〉 그 외 부채 원금(잔액)	248
〈그림 Ⅳ-19〉 주택 입주 형태	250
〈그림 Ⅳ-20〉 주택 가격(시세)	252
〈그림 Ⅳ-21〉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254
〈그림 Ⅳ-22〉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	256
〈그림 Ⅳ-23〉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259
〈그림 Ⅳ-24〉 자가 소유 필요 여부	261
〈그림 Ⅳ-25〉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263
〈그림 Ⅳ-26〉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265
〈그림 Ⅳ-27〉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267
〈그림 Ⅳ-2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269
〈그림 Ⅳ-29〉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271
〈그림 Ⅳ-30〉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273
〈그림 Ⅳ-3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275

〈그림 IV-3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277
〈그림 IV-3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279
〈그림 IV-34〉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281
〈그림 IV-35〉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283
〈그림 IV-36〉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285
〈그림 IV-37〉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287
〈그림 IV-3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289
〈그림 IV-39〉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291
〈그림 IV-40〉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293
〈그림 IV-4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295
〈그림 IV-42〉 소득공제혜택 받지 못한 이유	297
〈그림 IV-4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299
〈그림 IV-4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301
〈그림 IV-4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303
〈그림 IV-4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	305
〈그림 IV-4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307
〈그림 IV-48〉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309
〈그림 IV-49〉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311
〈그림 IV-50〉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313
〈그림 IV-51〉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315
〈그림 IV-52〉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317

I. 조사개요

1. 조사의 배경 및 목적

-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에 따른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제도의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적으로 의견조사를 진행함
-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정책 대상자 및 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함
- 본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그동안 해당 제도의 운영성과 평가와 함께 향후 제도 개선방향 등을 파악하는 기초자료로 사용하고자 함

2. 조사 설계

- 본 조사는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정책 대상자 및 비대상자를 대상으로 정량적인 설문조사를 진행했으며, 구체적인 조사 설계는 아래와 같음

〈표 1-1〉 조사 설계

구 분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관련 의견조사
조사 대상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정책 대상자
표본수	1,100명(정책 대상자 550명, 정책 비대상자 550명)
조사 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
조사 기간	2025년 3월 24일 ~ 4월 9일
조사 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3. 조사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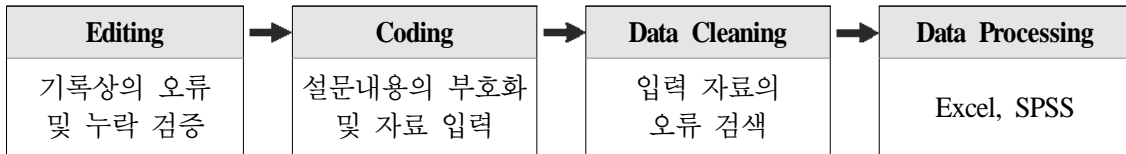
□ 본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1-2〉 주요 설문조사 세부 항목

구분	세부 항목
응답자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4년 기준 세대주 여부 • 2024년 기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 소유 유무 • 2024년 근로소득 유무 • 2024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여부 • 2024년 기준 주택청약종합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 대상자 여부 •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 월평균 개인 지출액 •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 월평균 가구 지출액
자산 및 부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 보유 여부 및 납입원금(현재가치) • 부채 보유 여부 및 원금(잔액)
주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 입주 형태 • 주택 가격(시세) 또는 임차료 •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에 대한 의견 • ‘집값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에 대한 의견 • ‘정부정책 등의 도움으로 원하는 주택 마련이 가능하다’에 대한 의견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및 종류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이유 •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 청약지원 시 당첨 확률 •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상 관련 가입 의향 •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청약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 만약 소득공제 받지 못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의향 • 소득공제혜택 받지 못한 이유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소득공제제도 개편안에 대한 주택마련 및 제도사용 도움 정도 •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

4. 자료 처리

- 수집된 자료(Raw Data)는 Editing, Coding, 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전산 처리하였음



5. 응답자 분류 기준 및 특성

- 응답자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분류하였음
 - 202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세대주이며, 2024년 1년간 기준으로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 근로소득이 총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정책대상자로 분류하였음. 그 이외의 경우 정책 비대상자로 분류하였음
 - 정책대상자 중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경우 수급자로 분류
 - 정책대상자 중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적이 없는 경우 비수급자로 분류

〈표 1-3〉 응답자 특성

구 분	사 례 수(명)	%	
전 체	(1,100)	100.0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50.0
	비대상자	(550)	50.0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33.5
	비수급자(대상자)	(181)	16.5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50.0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33.6
	가입	(730)	66.4
성별	남성	(662)	60.2
	여성	(438)	39.8
연령	20세~29세	(100)	9.1
	30세~39세	(295)	26.8
	40세~49세	(327)	29.7
	50세~59세	(235)	21.4
	60세 이상	(143)	13.0
수도권	수도권	(726)	66.0
	비수도권	(374)	34.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5)	11.4
	2~3년제 대학	(128)	11.6
	4년제 대학	(734)	66.7
	대학원 석사 이상	(113)	10.3
혼인상태	미혼	(471)	42.8
	기혼	(576)	52.4
	별거·사별·이혼·기타	(53)	4.8
가구원수	1명	(331)	30.1
	2명	(215)	19.5
	3명	(281)	25.5
	4명 이상	(273)	24.8
자녀수	0명	(573)	52.1
	1명	(220)	20.0
	2명 이상	(307)	27.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3)	14.8
	200~300만원 미만	(256)	23.3
	300~400만원 미만	(283)	25.7
	400~500만원 미만	(184)	16.7
	500만원 이상	(214)	19.5

II. 조사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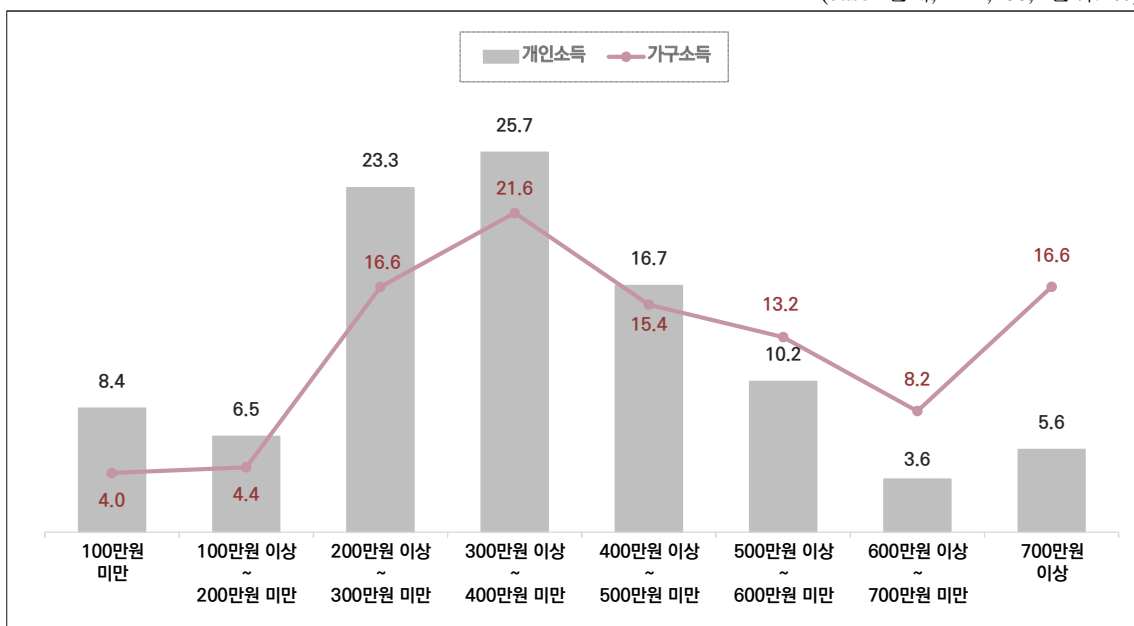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1) 월평균 세전 개인 및 가구소득

-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에 대해 알아본 결과,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2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또한 ‘300만원~400만원 미만’이 2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을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는 ‘300만원~400만원 미만’(34.0%)에서 가장 높았고, ‘비대상자’ 또한 ‘300만원~400만원 미만’(17.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을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는 ‘300만원~400만원 미만’(26.2%)에서 가장 높았고, ‘비대상자’는 ‘700만원 이상’(25.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1〉 월평균 세전 개인 및 가구소득

(base 전체, n=1,100, 단위: %)



〈표 II-1〉 월평균 세전 개인 및 가구소득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구 분 (개인소득)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600만원 미만	600만원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1,100)	8.4	6.5	23.3	25.7	16.7	10.2	3.6	5.6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1.8	5.8	30.2	34.0	18.0	8.9	0.7	0.5
	비대상자	(550)	14.9	7.1	16.4	17.5	15.5	11.5	6.5	10.7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69)	0.8	3.5	27.9	36.6	19.8	9.8	0.8	0.8
	비수급자 (대상자)	(181)	3.9	10.5	34.8	28.7	14.4	7.2	0.6	0.0
	비수급자 (비대상자)	(550)	14.9	7.1	16.4	17.5	15.5	11.5	6.5	10.7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14.1	7.3	23.2	20.0	14.9	9.2	4.9	6.5
	가입	(730)	5.5	6.0	23.3	28.6	17.7	10.7	3.0	5.2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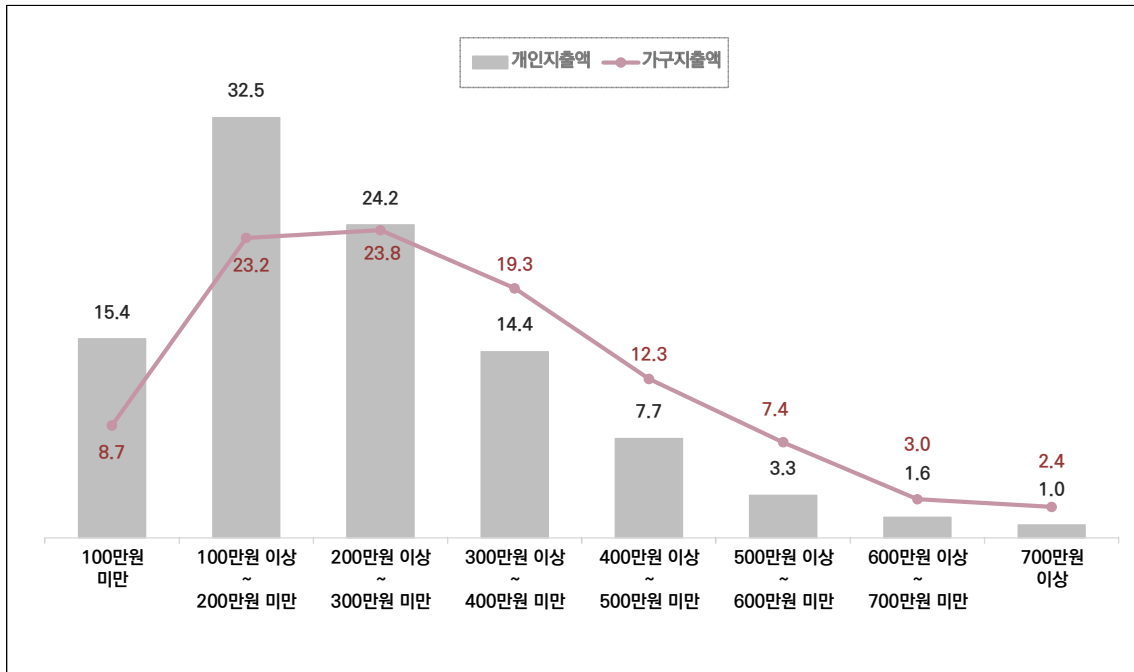
구 분 (가구소득)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600만원 미만	600만원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1,100)	4.0	4.4	16.6	21.6	15.4	13.2	8.2	16.6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1.8	4.7	23.8	26.2	17.8	12.0	5.6	8.0
	비대상자	(550)	6.2	4.0	9.5	17.1	12.9	14.4	10.7	25.3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69)	0.8	2.4	21.1	27.1	20.1	12.7	6.0	9.8
	비수급자 (대상자)	(181)	3.9	9.4	29.3	24.3	13.3	10.5	5.0	4.4
	비수급자 (비대상자)	(550)	6.2	4.0	9.5	17.1	12.9	14.4	10.7	25.3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7.3	5.4	20.5	18.6	11.9	11.6	8.1	16.5
	가입	(730)	2.3	3.8	14.7	23.2	17.1	14.0	8.2	16.7

2) 월평균 개인 및 가구 지출액

- 월평균 개인 지출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만원~200만원 미만’이 32.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평균 가구 지출액은 ‘200만원~300만원 미만’이 23.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개인 지출액을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는 ‘100만원~200만원 미만’(42.0%)에서 가장 높았고, ‘비대상자’ 또한 ‘100만원~200만원 미만’(2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월평균 가구 지출액을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는 ‘100만원~200만원 미만’(33.1%)에서 가장 높았고, ‘비대상자’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1.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2〉 월평균 개인 및 가구 지출액

(base 전체, n=1,100, 단위: %)



〈표 II-2〉 월평균 개인 및 가구 지출액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구 분 (개인 지출액)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600만원 미만	600만원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1,100)	15.4	32.5	24.2	14.4	7.7	3.3	1.6	1.0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11.3	42.0	28.0	12.0	5.6	0.9	0.2	0.0
	비대상자	(550)	19.5	22.9	20.4	16.7	9.8	5.6	3.1	2.0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69)	10.8	41.5	27.6	13.0	6.0	0.8	0.3	0.0
	비수급자 (대상자)	(181)	12.2	43.1	28.7	9.9	5.0	1.1	0.0	0.0
	비수급자 (비대상자)	(550)	19.5	22.9	20.4	16.7	9.8	5.6	3.1	2.0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18.4	27.0	23.0	15.1	9.7	3.5	1.9	1.4
	가입	(730)	13.8	35.2	24.8	14.0	6.7	3.2	1.5	0.8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구 분 (가구 지출액)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600만원 미만	600만원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1,100)	8.7	23.2	23.8	19.3	12.3	7.4	3.0	2.4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8.5	33.1	26.9	16.7	8.7	4.7	0.5	0.7
	비대상자	(550)	8.9	13.3	20.7	21.8	15.8	10.0	5.5	4.0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69)	8.1	30.9	26.0	19.2	8.9	4.9	0.8	1.1
	비수급자 (대상자)	(181)	9.4	37.6	28.7	11.6	8.3	4.4	0.0	0.0
	비수급자 (비대상자)	(550)	8.9	13.3	20.7	21.8	15.8	10.0	5.5	4.0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11.4	21.4	23.0	16.2	14.3	8.4	3.0	2.4
	가입	(730)	7.4	24.1	24.2	20.8	11.2	6.8	3.0	2.3

2. 자산 및 부채

1) 자산 보유 여부

□ 자산 보유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95.4%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자산 유형으로는 ‘부동산자산’(97.3%)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자산’(63.1%), ‘금융·부동산 외 자산’(20.1%)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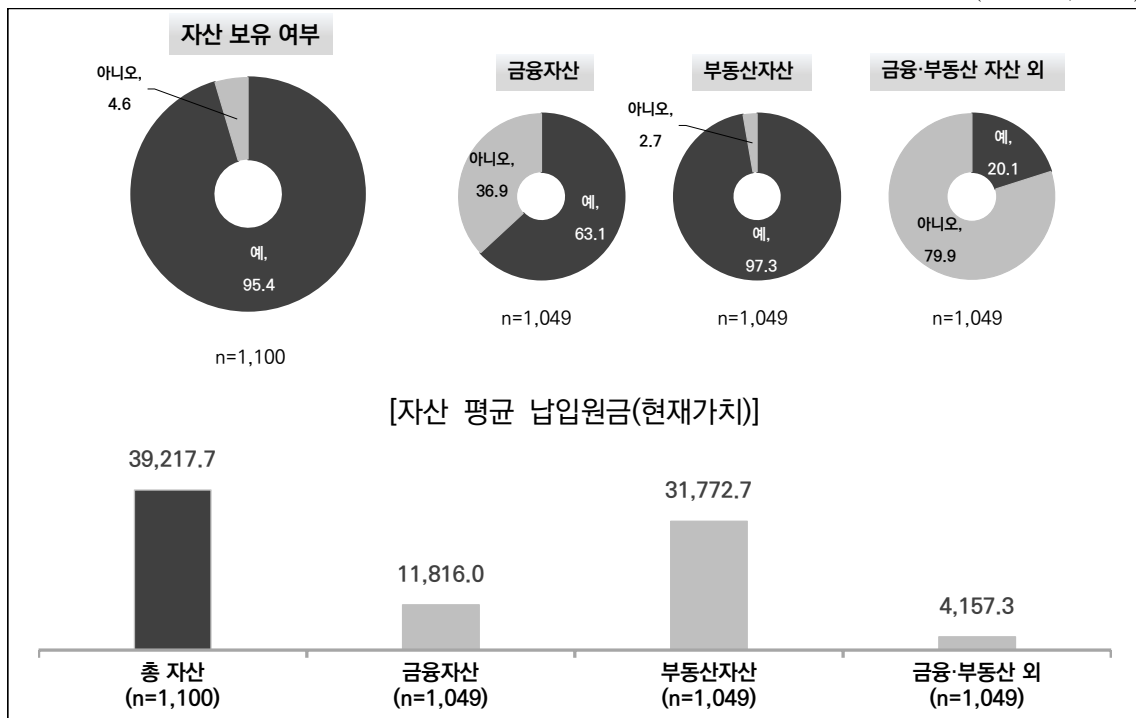
2)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

□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총 자산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은 39,217.7만원으로 나타남

○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자산’(31,772.7만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자산’(11,816.0만원), ‘금융·부동산 외 자산’(4,157.3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3〉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단위: %, 만원)



〈표 II-3〉 자산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산		사례수*	금융		부동산		금융·부동산 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1,100)	95.4	4.6	(1,049)	63.1	36.9	97.3	2.7	20.1	79.9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95.6	4.4	(526)	58.9	41.1	97.5	2.5	17.3	82.7
	비대상자	(550)	95.1	4.9	(523)	67.3	32.7	97.1	2.9	22.9	77.1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69)	97.0	3.0	(358)	63.7	36.3	96.9	3.1	18.7	81.3
	비수급자 (대상자)	(181)	92.8	7.2	(168)	48.8	51.2	98.8	1.2	14.3	85.7
	비수급자 (비대상자)	(550)	95.1	4.9	(523)	67.3	32.7	97.1	2.9	22.9	77.1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91.9	8.1	(340)	52.1	47.9	98.2	1.8	16.5	83.5
	가입	(730)	97.1	2.9	(709)	68.4	31.6	96.9	3.1	21.9	78.1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표 II-4〉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

(단위: 명, 만원)

구 분	총 자산		금융		부동산		금융·부동산 외		
	사례수 ¹⁾	평균	사례수 ²⁾	평균	사례수 ³⁾	평균	사례수 ⁴⁾	평균	
전 체	(1,049)	39,217.7	(662)	11,816.0	(1,021)	31,772.7	(211)	4,157.3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26)	17,816.5	(310)	8,048.2	(513)	12,935.2	(91)	2,645.8
	비대상자	(523)	60,741.6	(352)	15,134.3	(508)	50,795.6	(120)	5,303.6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58)	19,294.1	(228)	8,352.9	(347)	13,913.2	(67)	2,611.6
	비수급자 (대상자)	(168)	14,667.8	(82)	7,201.2	(166)	10,891.0	(24)	2,741.3
	비수급자 (비대상자)	(523)	60,741.6	(352)	15,134.3	(508)	50,795.6	(120)	5,303.6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40)	42,182.6	(177)	14,727.4	(334)	34,295.4	(56)	5,012.1
	가입	(709)	37,795.9	(485)	10,753.6	(687)	30,546.3	(155)	3,848.5

- 1)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 2)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 3)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 4) 금융·부동산 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3) 부채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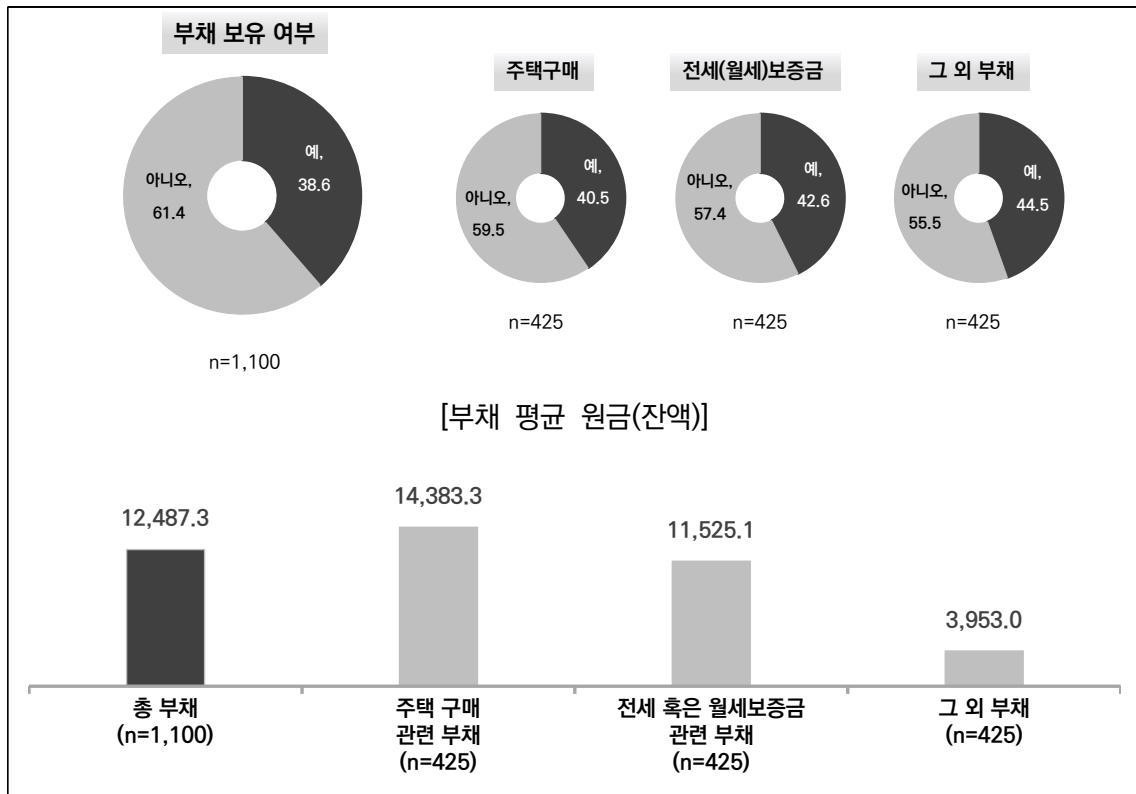
- 부채 보유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8.6%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부채 유형으로는 ‘그 외 부채’(44.5%)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세(월세)보증금’(42.6%), ‘주택구매’(40.5%) 순으로 나타남

4)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

-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총 부채 평균 원금(잔액)은 12,487.3만원으로 나타남
 - 부채 유형별로는 ‘주택구매’(14,383.3만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월세)보증금’(11,525.1만원), ‘그 외 부채’(3,953.0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4〉 부채 보유 여부 및 현황

(단위: %, 만원)



〈표 II-5〉 부채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부채		사례수*	주택구매		전세(월세)보증금		그 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1,100)	38.6	61.4	(425)	40.5	59.5	42.6	57.4	44.5	55.5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39.8	60.2	(219)	16.0	84.0	63.0	37.0	45.7	54.3
	비대상자	(550)	37.5	62.5	(206)	66.5	33.5	20.9	79.1	43.2	56.8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69)	41.7	58.3	(154)	14.9	85.1	69.5	30.5	43.5	56.5
	비수급자 (대상자)	(181)	35.9	64.1	(65)	18.5	81.5	47.7	52.3	50.8	49.2
	비수급자 (비대상자)	(550)	37.5	62.5	(206)	66.5	33.5	20.9	79.1	43.2	56.8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30.8	69.2	(114)	46.5	53.5	23.7	76.3	50.0	50.0
	가입	(730)	42.6	57.4	(311)	38.3	61.7	49.5	50.5	42.4	57.6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표 II-6〉 부채별 평균 원금(잔액)

(단위: 명, 만원)

구 분		총 부채		주택구매		전세(월세)보증금		그 외	
		사례수 ¹⁾	평균	사례수 ²⁾	평균	사례수 ³⁾	평균	사례수 ⁴⁾	평균
전 체		(425)	12,487.3	(172)	14,383.3	(181)	11,525.1	(189)	3,953.0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219)	9,661.2	(35)	12,308.6	(138)	9,872.9	(100)	3,225.4
	비대상자	(206)	15,491.7	(137)	14,913.4	(43)	16,827.7	(89)	4,770.6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154)	10,493.3	(23)	13,791.3	(107)	10,208.7	(67)	3,081.2
	비수급자 (대상자)	(65)	7,689.7	(12)	9,466.7	(31)	8,713.9	(33)	3,518.2
	비수급자 (비대상자)	(206)	15,491.7	(137)	14,913.4	(43)	16,827.7	(89)	4,770.6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114)	11,086.8	(53)	12,472.3	(27)	11,532.2	(57)	5,113.9
	가입	(311)	13,000.7	(119)	15,234.5	(154)	11,523.9	(132)	3,451.7

- 1)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 2) 주택구매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 3)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 4) 그 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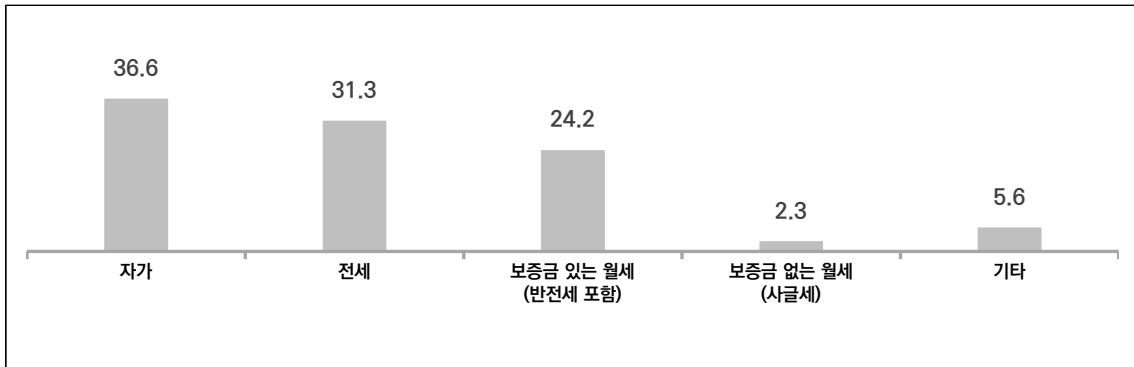
3. 주거

1) 주택 입주 형태

- 주택 입주 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가’가 36.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는 ‘전세’(31.3%),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24.2%) 순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는 ‘전세’(52.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 고, ‘비대상자’는 ‘자가’(73.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5〉 주택 입주 형태

(base 전체, n=1,100, 단위: %)



〈표 II-7〉 주택 입주 형태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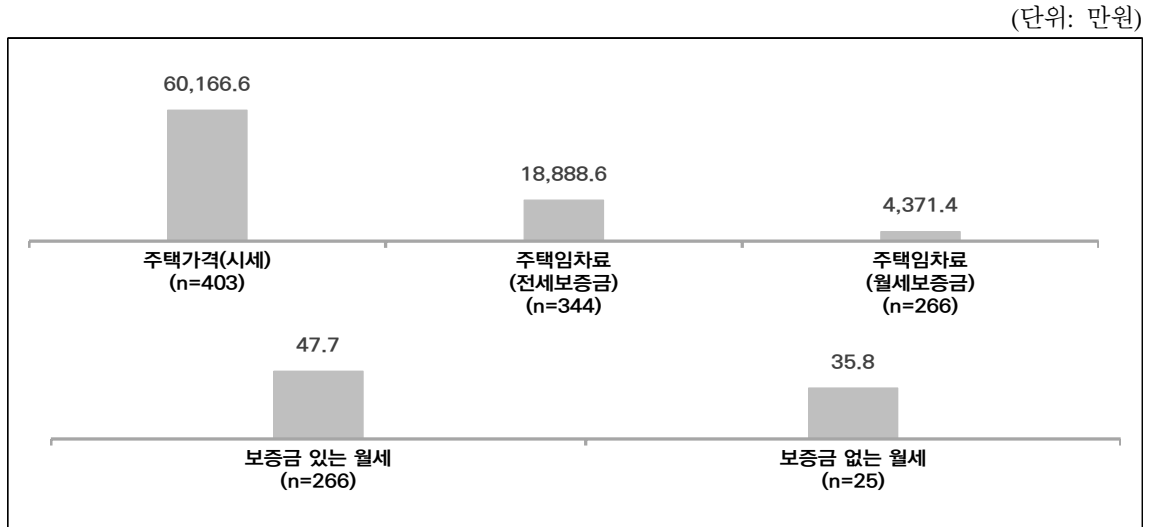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기타
전 체		(1,100)	36.6	31.3	24.2	2.3	5.6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0.0	52.4	39.6	2.9	5.1
	비대상자	(550)	73.3	10.2	8.7	1.6	6.2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0.0	53.9	38.2	2.4	5.4
	비수급자(대상자)	(181)	0.0	49.2	42.5	3.9	4.4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73.3	10.2	8.7	1.6	6.2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47.0	21.9	21.4	3.2	6.5
	가입	(730)	31.4	36.0	25.6	1.8	5.2

2) 평균 주택 가격(시세) 및 임차료

□ 평균 주택 가격(시세) 및 임차료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주택가격(시세)은 60,166.6만 원으로 나타남

□ 평균 주택임차료(전세보증금)은 18,888.6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II-6〉 평균 주택 가격(시세) 및 임차료



〈표 II-8〉 평균 주택 가격(시세) 및 임차료

(단위: 명, 만원)

구분	주택가격(시세)		전세보증금		보증금 있는 월세		보증금 없는 월세			
	사례수 ¹⁾	평균	사례수 ²⁾	평균	사례수 ³⁾	보증금	월세	사례수 ⁴⁾	평균	
전체	(403)	60,166.6	(344)	18,888.6	(266)	4,371.4	47.7	(25)	35.8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0)	-	(288)	18,395.7	(218)	4,222.4	47.1	(16)	32.6
	비대상자	(403)	60,166.6	(56)	21,423.6	(48)	5,048.4	50.3	(9)	41.6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0)	-	(199)	19,097.1	(141)	5,000.2	48.1	(9)	38.6
	비수급자 (대상자)	(0)	-	(89)	16,827.5	(77)	2,798.1	45.2	(7)	25.0
	비수급자 (비대상자)	(403)	60,166.6	(56)	21,423.6	(48)	5,048.4	50.3	(9)	41.6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174)	55,406.6	(81)	15,156.2	(79)	2,471.5	47.7	(12)	30.9
	가입	(229)	63,783.4	(263)	20,038.2	(187)	5,174.1	47.7	(13)	40.4

1) 자가 거주 응답자

2) 전세 거주 응답자

3)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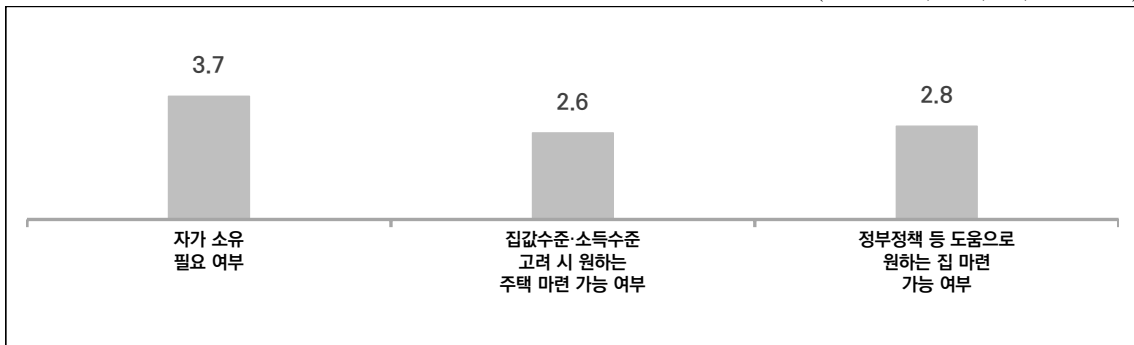
4)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응답자

3) 주거 관련 인식

- 주거 관련 인식에 대해 척도형으로 질문한 뒤, 이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남
-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3.7점으로 나타남
 - ‘집값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2.6점으로 나타남
 -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2.8점으로 나타남

〈그림 II-7〉 주거 관련 인식

(base 전체, n=1,100, 단위: 점)



〈표 II-9〉 주거 관련 인식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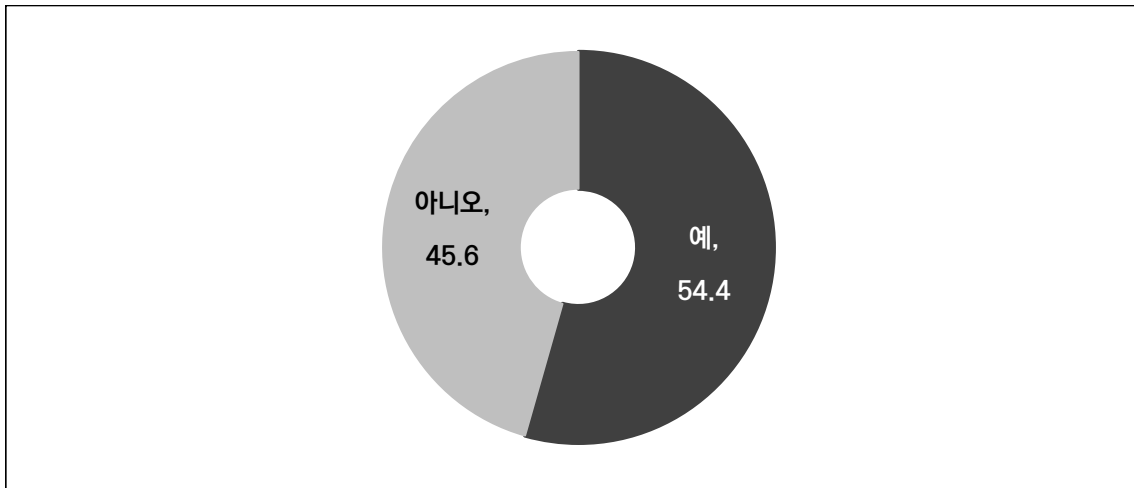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자가 소유 필요 여부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전 체	(1,100)	3.7	2.6	2.8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3.7	2.4	2.8
	비대상자	(550)	3.7	2.8	2.8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3.8	2.4	2.8
	비수급자(대상자)	(181)	3.4	2.4	2.7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3.7	2.8	2.8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3.4	2.6	2.8
	가입	(730)	3.8	2.6	2.8

4)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54.4%가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고 응답함
-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65.7%)의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보유율이 ‘비대상자’(43.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688, 단위: %)



〈표 II-10〉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688,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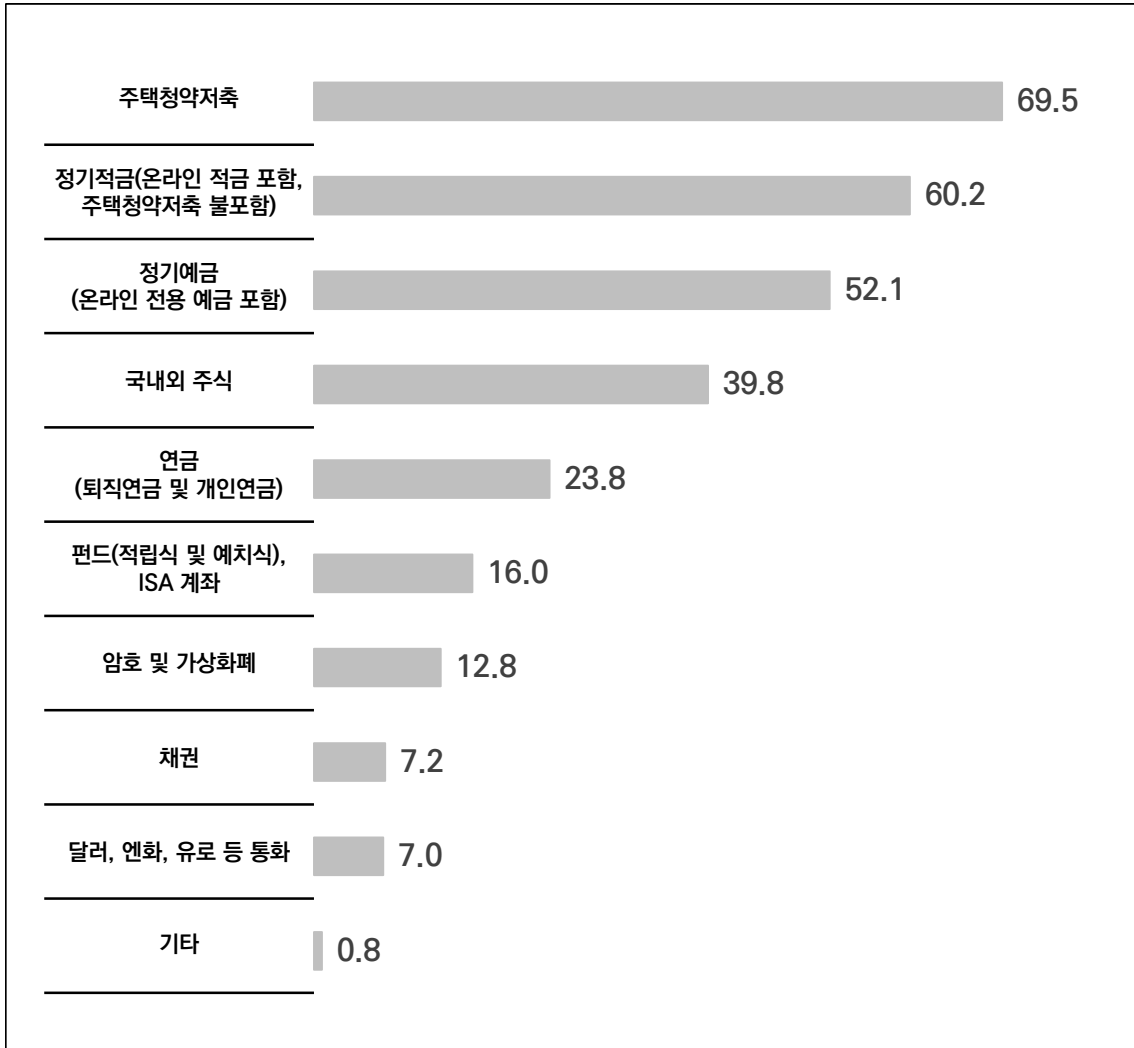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체		(688)	54.4	45.6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341)	65.7	34.3
	비대상자	(347)	43.2	56.8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249)	75.5	24.5
	비수급자(대상자)	(92)	39.1	60.9
	비수급자(비대상자)	(347)	43.2	56.8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193)	25.9	74.1
	가입	(495)	65.5	34.5

5)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주택청약저축’이 69.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정기적금(온라인 전용 적금 포함, 주택청약저축 불포함)’(60.2%), ‘정기예금(온라인 전용 예금 포함)’(52.1%) 순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는 ‘주택청약저축’(75.0%)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대상자’ 또한 ‘주택청약저축’(61.3%)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374, 단위: %)



〈표 II-11〉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374, 단위: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체	(374)	69.5	60.2	52.1	39.8	23.8	16.0	12.8	7.2	7.0	0.8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224)	75.0	64.3	53.6	36.6	21.9	16.1	13.8	6.3	4.5	0.4
	비대상자	(150)	61.3	54.0	50.0	44.7	26.7	16.0	11.3	8.7	10.7	1.3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188)	80.9	65.4	54.8	38.8	23.4	17.0	13.8	6.4	4.8	0.0
	비수급자 (대상자)	(36)	44.4	58.3	47.2	25.0	13.9	11.1	13.9	5.6	2.8	2.8
	비수급자 (비대상자)	(150)	61.3	54.0	50.0	44.7	26.7	16.0	11.3	8.7	10.7	1.3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50)	16.0	58.0	54.0	32.0	22.0	12.0	14.0	2.0	2.0	2.0
	가입	(324)	77.8	60.5	51.9	41.0	24.1	16.7	12.7	8.0	7.7	0.6

- ① 주택청약저축
- ② 정기적금(온라인 전용 적금 포함, 주택청약저축 불포함)
- ③ 정기예금(온라인 전용 예금 포함)
- ④ 국내외 주식
- ⑤ 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 ⑥ 펀드(적립식 및 예치식), ISA 계좌
- ⑦ 암호 및 가상화폐
- ⑧ 채권
- ⑨ 달러, 엔화, 유로 등 통화
- ⑩ 기타: 금, CMA, 사업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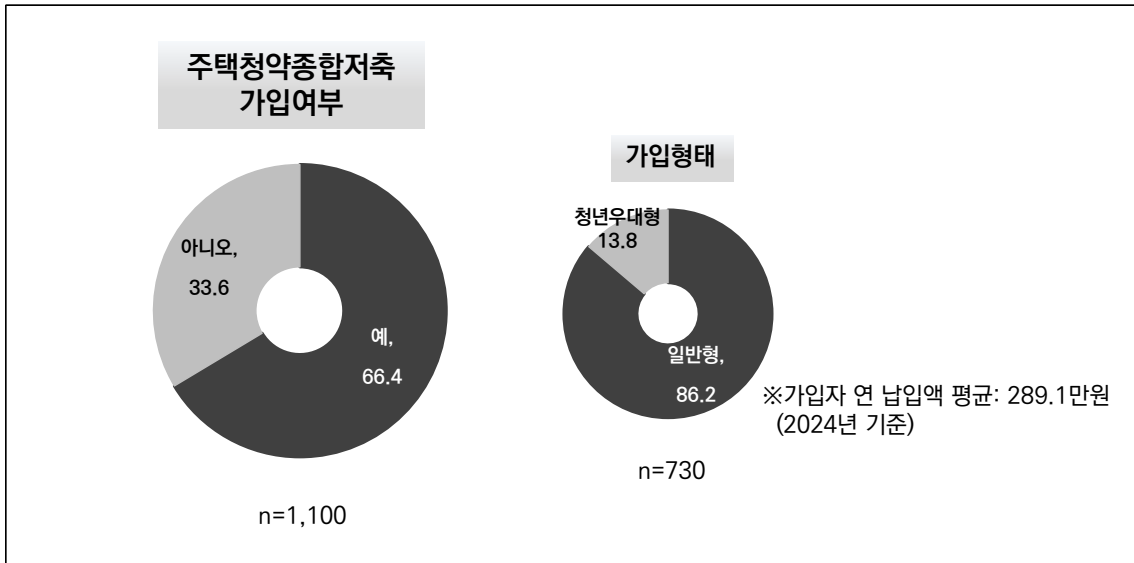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66.4%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74.7%)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률이 ‘비대상자’(58.0%)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가입형태별로 살펴보면 ‘일반형’(86.2%)이 ‘청년우대형’(13.8%) 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 2024년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연 납입액 평균은 289.1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II-10〉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단위: %)



〈표 II-12〉 주택청약종합저축 현황

(단위: 명, %)

구 분	가입여부			사례수 ¹⁾	가입형태		총 납입액 (평균) ²⁾	
	사례수	예	아니오		일반형	청년우대형		
전 체	(1,100)	66.4	33.6	(730)	86.2	13.8	289.1만원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74.7	25.3	(411)	80.5	19.5	304.7만원
	비대상자	(550)	58.0	42.0	(319)	93.4	6.6	268.9만원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100.0	0.0	(369)	81.3	18.7	309.2만원
	비수급자(대상자)	(181)	23.2	76.8	(42)	73.8	26.2	265.0만원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58.0	42.0	(319)	93.4	6.6	268.9만원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0.0	100.0	(0)	-	-	-
	가입	(730)	100.0	0.0	(730)	86.2	13.8	289.1만원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2) 2024년 기준

2) 주택청약 관련 인식

- ‘청약 지원 시 당점 확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19.5%로 나타남
- ‘청약 당점 시 지불하게 될 주택의 적정시세 대비 시세’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74.3%로 나타남
-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의 평균은 40.0%로 나타남

〈표 II-13〉 주택청약 관련 인식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73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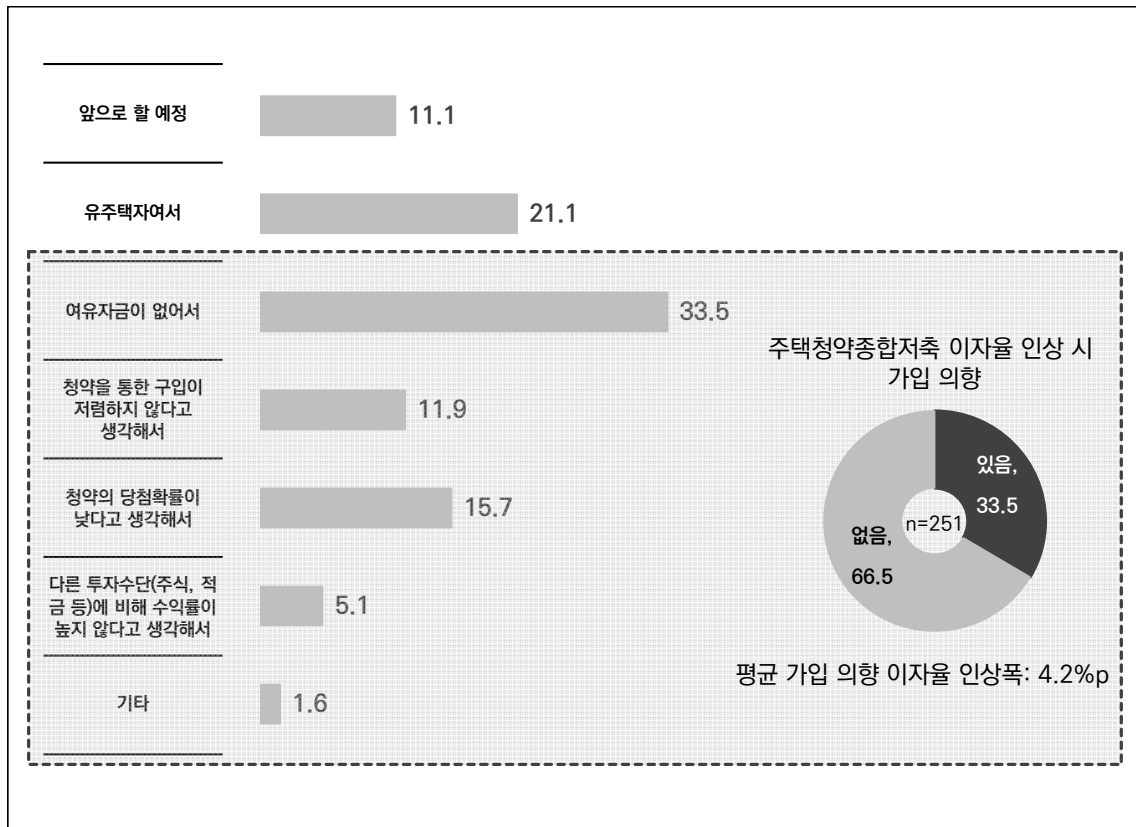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청약 지원 시 당점 확률 (평균)	청약 당점 시 지불하게 될 주택의 적정시세 대비 시세(평균)	미래 청약 혜택 사용 가능성 (평균)	
전 체	(730)	19.5	74.3	40.0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411)	20.6	74.7	43.5
	비대상자	(319)	18.0	73.8	35.6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21.7	74.5	44.3
	비수급자(대상자)	(42)	11.5	76.3	36.3
	비수급자(비대상자)	(319)	18.0	73.8	35.6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0)	-	-	-
	가입	(730)	19.5	74.3	40.0

3) 주택청약종합저축 미가입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유주택자 여서’가 33.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앞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할 예정이 아니거나 유주택자가 아닌 미가입자에게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있다’가 72.9%로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 중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4.2%p로 나타남

〈그림 II-1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n=370, 단위: %)



〈표 II-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n=37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370)	11.1	21.1	33.5	11.9	15.7	5.1	1.6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139)	18.0	1.4	38.8	13.7	20.1	4.3	3.6
	비대상자	(231)	6.9	32.9	30.3	10.8	13.0	5.6	0.4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0)	-	-	-	-	-	-	-
	비수급자(대상자)	(139)	18.0	1.4	38.8	13.7	20.1	4.3	3.6
	비수급자(비대상자)	(231)	6.9	32.9	30.3	10.8	13.0	5.6	0.4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11.1	21.1	33.5	11.9	15.7	5.1	1.6
	가입	(0)	-	-	-	-	-	-	-

- ① 앞으로 할 예정
 - ② 유주택자여서
 - ③ 여유자금이 없어서
 - ④ 청약을 통한 구입이 그다지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⑤ 청약의 당첨확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 ⑥ 다른 투자수단(주식, 적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⑦ 기타: 알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표 II-15〉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base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 아니거나 유주택자가 아닌 미가입자, n=251, 단위: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251)	72.9	27.1
청약통장 가입여부	대상자	(112)	70.5	29.5
	비대상자	(139)	74.8	25.2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0)	-	-
	비수급자(대상자)	(112)	70.5	29.5
	비수급자(비대상자)	(139)	74.8	25.2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251)	72.9	27.1
	가입	(0)	-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표 II-16〉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 n=68,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평균
전 체		(68)	10.3	7.4	7.4	19.1	4.4	38.2	13.2	4.2
청약통장 가입여부	대상자	(33)	9.1	12.1	9.1	18.2	3.0	36.4	12.1	3.9
	비대상자	(35)	11.4	2.9	5.7	20.0	5.7	40.0	14.3	4.4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0)	-	-	-	-	-	-	-	-
	비수급자(대상자)	(33)	9.1	12.1	9.1	18.2	3.0	36.4	12.1	3.9
	비수급자(비대상자)	(35)	11.4	2.9	5.7	20.0	5.7	40.0	14.3	4.4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68)	10.3	7.4	7.4	19.1	4.4	38.2	13.2	4.2
	가입	(0)	-	-	-	-	-	-	-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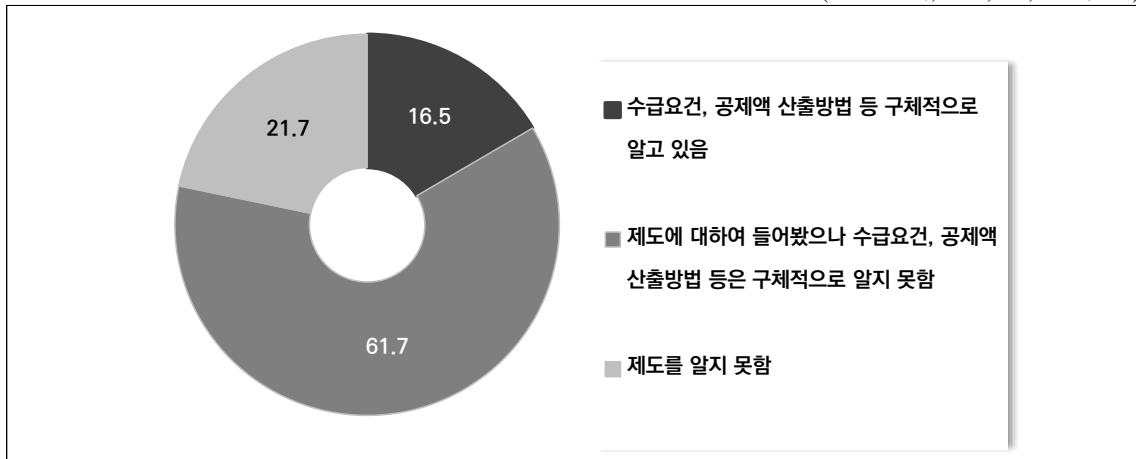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제도에 대하여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61.7%)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제도를 알지 못함’(21.7%),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16.5%)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1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base 전체, n=1,100, 단위: %)



〈표 II-1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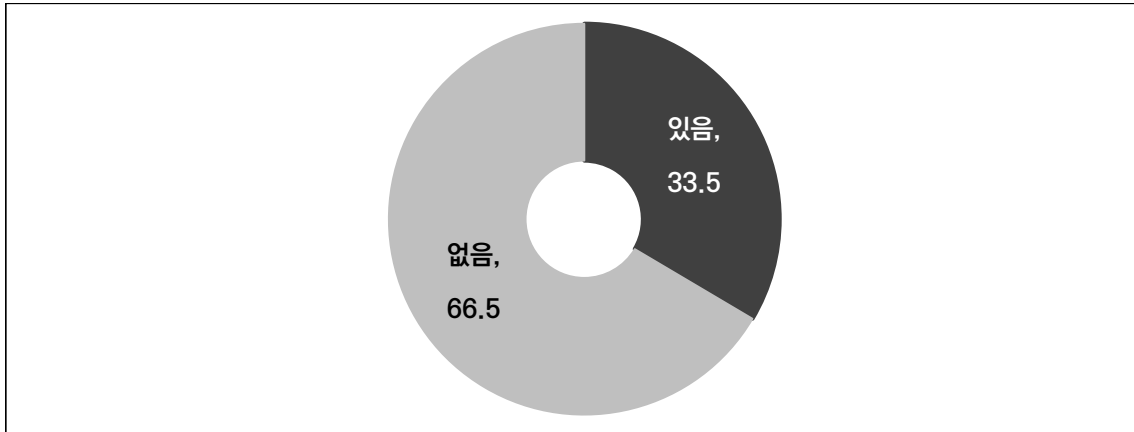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제도에 대해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제도를 알지 못함	
전체	(1,100)	16.5	61.7	21.7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17.5	67.3	15.3
	비대상자	(550)	15.6	56.2	28.2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23.0	77.0	0.0
	비수급자(대상자)	(181)	6.1	47.5	46.4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15.6	56.2	28.2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10.3	55.7	34.1
	가입	(730)	19.7	64.8	15.5

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3.5%가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 중 67.1%는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 주택청약통장 여부별로 살펴보면 ‘가입자’ 중 50.5%가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1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1,100, 단위: %)



〈표 II-1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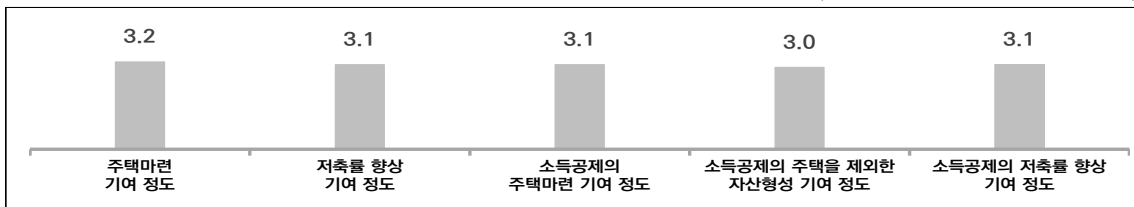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1,100)	33.5	66.5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67.1	32.9
	비대상자	(550)	0.0	100.0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100.0	0.0
	비수급자(대상자)	(181)	0.0	100.0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0.0	100.0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0.0	100.0
	가입	(730)	50.5	49.5

3) 주택청약 관련 인식

- 주택청약 관련 인식에 대해 척도형으로 질문한 뒤, 이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3.0점으로 나타남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3.1점으로 나타남

〈그림 II-14〉 주택청약 관련 인식

(base 전체, n=1,100, 단위: 점)



〈표 II-19〉 주택청약 관련 인식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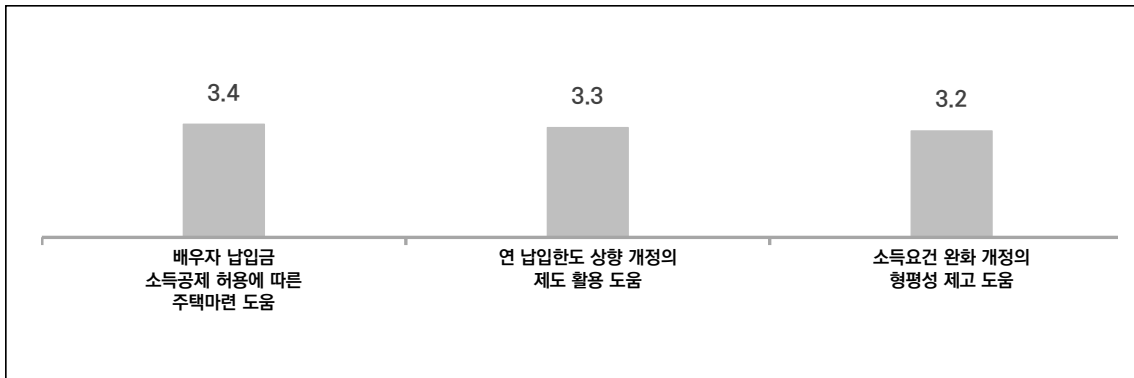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주택마련 기여 정도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전체	(1,100)	3.2	3.1	3.1	3.0	3.1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3.2	3.1	3.1	3.0	3.1
	비대상자	(550)	3.2	3.2	3.2	3.0	3.1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3.2	3.2	3.2	3.0	3.2
	비수급자(대상자)	(181)	3.1	3.1	3.1	2.9	3.0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3.2	3.2	3.2	3.0	3.1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3.2	3.1	3.1	3.0	3.0
	가입	(730)	3.2	3.2	3.2	2.9	3.1

4) 소득공제제도 개편 관련 인식

- 소득공제제도 개편 관련 인식에 대해 척도형으로 질문한 뒤, 이를 5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경향이 나타남
 -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3.4점으로 나타남
 - ‘연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른 제도 활용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3.3점으로 나타남
 -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평균 점수는 3.2점으로 나타남

〈그림 II-15〉 소득공제제도 개편 관련 인식

(base 전체, n=1,100, 단위: 점)



〈표 II-20〉 소득공제제도 개편 관련 인식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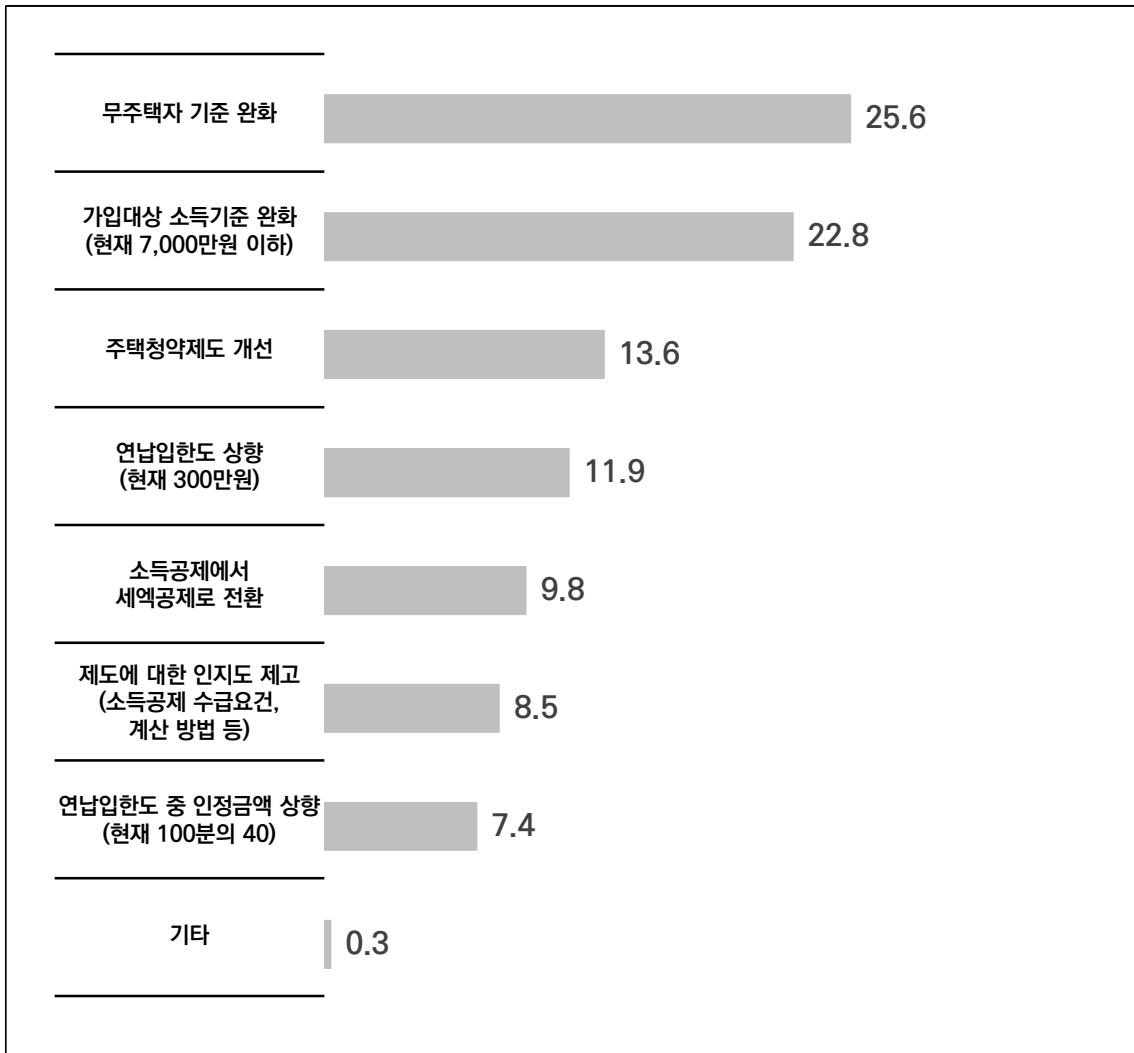
구분		사례수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소득요건 완화 개정의 형평성 제고 도움
전체		(1,100)	3.4	3.3	3.2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3.4	3.3	3.3
	비대상자	(550)	3.4	3.3	3.2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대상자)	(369)	3.5	3.3	3.3
	비수급자(대상자)	(181)	3.3	3.2	3.2
	비수급자(비대상자)	(550)	3.4	3.3	3.2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3.3	3.2	3.2
	가입	(730)	3.4	3.3	3.3

5)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25.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가입대상 소득기준 완화(현재 7,000만원 이하)’(22.8%), ‘주택청약제도 개선’(13.6%) 순으로 나타남
- 정책 대상 여부별로 살펴보면 ‘대상자’는 ‘무주택자 기준 완화’(22.5%)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비대상자’ 또한 ‘무주택자 기준 완화’(28.7%)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16〉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base 전체, n=1,100, 단위: %)



〈표 II-21〉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base 전체, n=1,10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1,100)	25.6	22.8	13.6	11.9	9.8	8.5	7.4	0.3
정책 대상여부	대상자	(550)	22.5	19.6	16.7	12.9	10.5	8.7	8.4	0.5
	비대상자	(550)	28.7	26.0	10.5	10.9	9.1	8.4	6.4	0.0
소득공제 수혜여부	수급자 (대상자)	(369)	20.6	21.4	16.8	13.8	10.3	7.9	8.7	0.5
	비수급자 (대상자)	(181)	26.5	16.0	16.6	11.0	11.0	10.5	7.7	0.6
	비수급자 (비대상자)	(550)	28.7	26.0	10.5	10.9	9.1	8.4	6.4	0.0
주택청약 통장여부	미가입	(370)	27.6	20.3	13.0	12.7	8.4	10.5	7.3	0.3
	가입	(730)	24.7	24.1	14.0	11.5	10.5	7.5	7.4	0.3

① 무주택자 기준 완화

② 가입대상 소득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 완화

③ 주택청약제도 개선

④ 연납입한도(현재 300만원) 상향

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⑥ 제도에 대한 인지도(소득공제 수급요건, 계산방법 등) 제고

⑦ 연납입한도 중 인정금액(현재 100분의 40) 상향

⑧ 기타: 소득기준을 더 낮춰야함, 서울 경기권 부동산가격 원상복귀, 중도에 저축액 다방면 실질 활용 방안 등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Ⅲ. 정책대상자

1. 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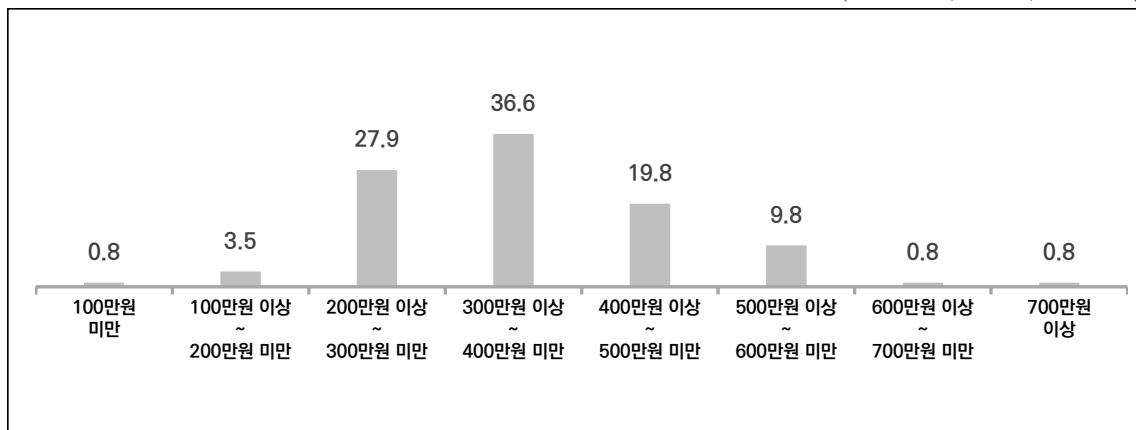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에 대해 알아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36.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7.9%),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9.8%)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40.4%)에서, ‘여성’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41.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7.5%), ‘비수도권’(34.3%) 각각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Ⅲ-1-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0.8	3.5	27.9	36.6	19.8	9.8	0.8	0.8
성별	남성	(223)	0.9	2.7	18.8	40.4	22.4	12.6	1.3	0.9
	여성	(146)	0.7	4.8	41.8	30.8	15.8	5.5	0.0	0.7
연령	20세~29세	(50)	0.0	6.0	56.0	28.0	4.0	4.0	0.0	2.0
	30세~39세	(138)	0.0	1.4	29.0	46.4	19.6	3.6	0.0	0.0
	40세~49세	(106)	0.9	2.8	19.8	31.1	28.3	15.1	0.9	0.9
	50세~59세	(55)	3.6	0.0	20.0	32.7	20.0	20.0	1.8	1.8
	60세 이상	(20)	0.0	25.0	15.0	30.0	15.0	10.0	5.0	0.0
수도권	수도권	(261)	0.4	3.4	26.4	37.5	21.1	10.0	0.4	0.8
	비수도권	(108)	1.9	3.7	31.5	34.3	16.7	9.3	1.9	0.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0.0	11.1	44.4	33.3	5.6	2.8	0.0	2.8
	2~3년제 대학	(38)	0.0	5.3	36.8	39.5	18.4	0.0	0.0	0.0
	4년제 대학	(260)	1.2	2.7	26.2	35.4	22.7	11.2	0.4	0.4
	대학원 석사 이상	(35)	0.0	0.0	14.3	45.7	14.3	17.1	5.7	2.9
혼인상태	미혼	(197)	1.5	3.0	37.6	36.5	14.2	6.1	0.0	1.0
	기혼	(157)	0.0	1.3	17.2	35.0	28.7	15.3	1.9	0.6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33.3	13.3	53.3	0.0	0.0	0.0	0.0
가구원수	1명	(169)	1.8	3.6	37.9	37.9	15.4	3.0	0.0	0.6
	2명	(70)	0.0	5.7	24.3	44.3	14.3	11.4	0.0	0.0
	3명	(59)	0.0	3.4	18.6	32.2	27.1	13.6	1.7	3.4
	4명 이상	(71)	0.0	1.4	15.5	29.6	29.6	21.1	2.8	0.0
자녀수	0명	(242)	1.2	2.9	35.5	38.4	14.5	6.6	0.0	0.8
	1명	(46)	0.0	2.2	8.7	37.0	34.8	13.0	2.2	2.2
	2명 이상	(81)	0.0	6.2	16.0	30.9	27.2	17.3	2.5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18.8	81.3	0.0	0.0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103)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400만원 미만	(135)	0.0	0.0	0.0	100.0	0.0	0.0	0.0	0.0
	400~500만원 미만	(73)	0.0	0.0	0.0	0.0	100.0	0.0	0.0	0.0
	500만원 이상	(42)	0.0	0.0	0.0	0.0	0.0	85.7	7.1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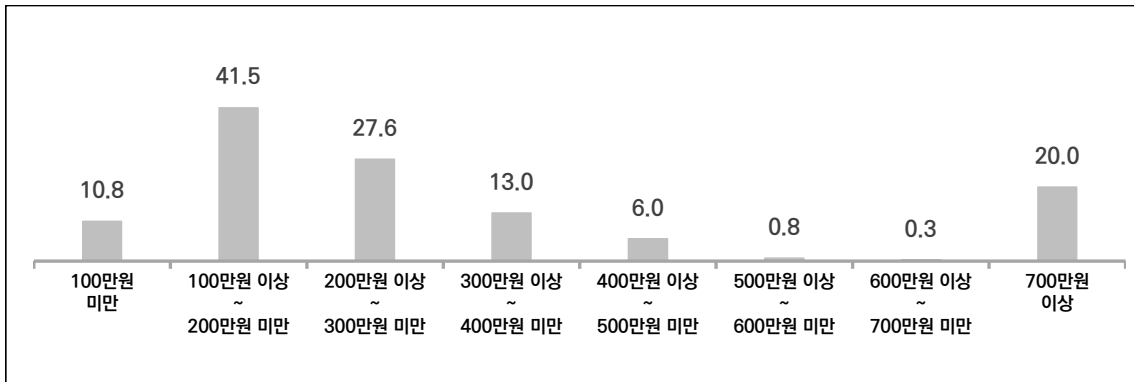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월평균 개인 지출액

- 월평균 개인 지출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1.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7.6%),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3.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4.5%), ‘여성’(52.1%)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64.0%), ‘30세~39세’(50.0%), ‘40세~49세’(33.0%)는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50세~59세’(34.5%), ‘60세 이상’(25.0%)은 각각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1.8%), ‘비수도권’(40.7%)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2〉 월평균 개인 지출액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2〉 월평균 개인 지출액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10.8	41.5	27.6	13.0	6.0	0.8	0.3	0.0
성별	남성	(223)	9.9	34.5	29.1	17.0	7.6	1.3	0.4	0.0
	여성	(146)	12.3	52.1	25.3	6.8	3.4	0.0	0.0	0.0
연령	20세~29세	(50)	16.0	64.0	16.0	4.0	0.0	0.0	0.0	0.0
	30세~39세	(138)	10.1	50.0	31.9	6.5	1.4	0.0	0.0	0.0
	40세~49세	(106)	11.3	33.0	24.5	18.9	10.4	0.9	0.9	0.0
	50세~59세	(55)	3.6	23.6	34.5	23.6	10.9	3.6	0.0	0.0
	60세 이상	(20)	20.0	20.0	25.0	20.0	15.0	0.0	0.0	0.0
수도권	수도권	(261)	11.5	41.8	28.0	13.4	4.6	0.8	0.0	0.0
	비수도권	(108)	9.3	40.7	26.9	12.0	9.3	0.9	0.9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2.2	36.1	33.3	5.6	0.0	2.8	0.0	0.0
	2~3년제 대학	(38)	5.3	63.2	18.4	13.2	0.0	0.0	0.0	0.0
	4년제 대학	(260)	10.8	39.6	29.6	12.7	6.5	0.4	0.4	0.0
	대학원 석사 이상	(35)	5.7	37.1	17.1	22.9	14.3	2.9	0.0	0.0
혼인상태	미혼	(197)	16.2	52.8	23.4	6.6	1.0	0.0	0.0	0.0
	기혼	(157)	3.8	26.8	33.8	20.4	12.7	1.9	0.6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5)	13.3	46.7	20.0	20.0	0.0	0.0	0.0	0.0
가구원수	1명	(169)	16.6	56.2	23.1	3.0	1.2	0.0	0.0	0.0
	2명	(70)	10.0	42.9	28.6	15.7	2.9	0.0	0.0	0.0
	3명	(59)	6.8	32.2	28.8	22.0	8.5	0.0	1.7	0.0
	4명 이상	(71)	1.4	12.7	36.6	26.8	18.3	4.2	0.0	0.0
자녀수	0명	(242)	14.0	52.1	25.6	7.0	1.2	0.0	0.0	0.0
	1명	(46)	4.3	28.3	30.4	21.7	13.0	0.0	2.2	0.0
	2명 이상	(81)	4.9	17.3	32.1	25.9	16.0	3.7	0.0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43.8	56.3	0.0	0.0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103)	19.4	61.2	18.4	0.0	1.0	0.0	0.0	0.0
	300~400만원 미만	(135)	5.2	45.9	40.0	8.9	0.0	0.0	0.0	0.0
	400~500만원 미만	(73)	5.5	21.9	28.8	28.8	13.7	1.4	0.0	0.0
	500만원 이상	(42)	4.8	7.1	19.0	35.7	26.2	4.8	2.4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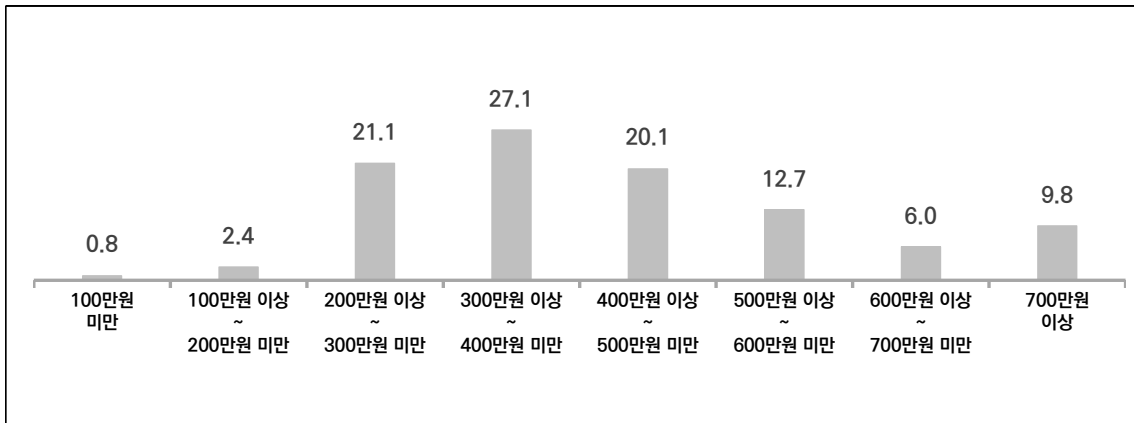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에 대해 알아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7.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1.1%),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20.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30.0%)에서, ‘여성’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2.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52.0%)에서, ‘40세~49세’(28.3%)는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에서, ‘30세~39세’(31.2%), ‘50세~59세’(32.7%), ‘60세 이상’(25.0%)은 각각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26.4%), ‘비수도권’(28.7%)은 각각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0.8	2.4	21.1	27.1	20.1	12.7	6.0	9.8
성별	남성	(223)	0.9	2.2	13.9	30.0	20.6	14.8	8.1	9.4
	여성	(146)	0.7	2.7	32.2	22.6	19.2	9.6	2.7	10.3
연령	20세~29세	(50)	0.0	6.0	52.0	22.0	6.0	8.0	0.0	6.0
	30세~39세	(138)	0.0	0.7	21.7	31.2	19.6	12.3	4.3	10.1
	40세~49세	(106)	0.9	1.9	12.3	21.7	28.3	16.0	8.5	10.4
	50세~59세	(55)	3.6	0.0	12.7	32.7	18.2	12.7	10.9	9.1
	60세 이상	(20)	0.0	15.0	10.0	25.0	20.0	10.0	5.0	15.0
수도권	수도권	(261)	0.4	2.7	19.2	26.4	22.2	14.2	4.2	10.7
	비수도권	(108)	1.9	1.9	25.9	28.7	14.8	9.3	10.2	7.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0.0	5.6	38.9	30.6	8.3	5.6	2.8	8.3
	2~3년제 대학	(38)	0.0	5.3	28.9	31.6	7.9	10.5	7.9	7.9
	4년제 대학	(260)	1.2	1.9	19.2	24.6	24.2	13.8	5.4	9.6
	대학원 석사 이상	(35)	0.0	0.0	8.6	37.1	14.3	14.3	11.4	14.3
혼인상태	미혼	(197)	1.5	3.0	34.0	34.5	15.7	5.1	0.5	5.6
	기혼	(157)	0.0	0.0	6.4	16.6	26.8	22.9	12.1	15.3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20.0	6.7	40.0	6.7	6.7	13.3	6.7
가구원수	1명	(169)	1.8	3.6	37.9	37.9	15.4	3.0	0.0	0.6
	2명	(70)	0.0	2.9	10.0	22.9	20.0	17.1	11.4	15.7
	3명	(59)	0.0	1.7	6.8	16.9	23.7	23.7	8.5	18.6
	4명 이상	(71)	0.0	0.0	4.2	14.1	28.2	22.5	12.7	18.3
자녀수	0명	(242)	1.2	2.5	29.3	31.8	15.7	9.1	2.9	7.4
	1명	(46)	0.0	0.0	2.2	21.7	30.4	23.9	10.9	10.9
	2명 이상	(81)	0.0	3.7	7.4	16.0	27.2	17.3	12.3	16.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18.8	56.3	6.3	6.3	12.5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103)	0.0	0.0	74.8	6.8	9.7	6.8	0.0	1.9
	300~400만원 미만	(135)	0.0	0.0	0.0	68.1	6.7	11.1	7.4	6.7
	400~500만원 미만	(73)	0.0	0.0	0.0	0.0	72.6	12.3	2.7	12.3
	500만원 이상	(42)	0.0	0.0	0.0	0.0	0.0	38.1	23.8	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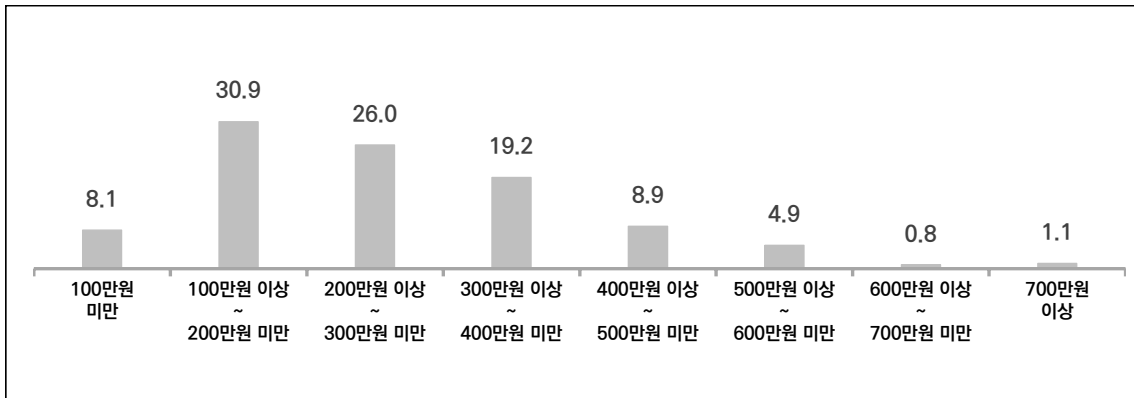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월평균 가구 지출액

- 월평균 가구 지출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0.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6.0%),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9.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6.0%), ‘여성’(38.4%)은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5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이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0.3%), ‘비수도권’(32.4%)은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4〉 월평균 가구 지출액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4〉 월평균 가구 지출액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8.1	30.9	26.0	19.2	8.9	4.9	0.8	1.1
성별	남성	(223)	8.1	26.0	25.1	22.0	9.4	6.7	1.3	1.3
	여성	(146)	8.2	38.4	27.4	15.1	8.2	2.1	0.0	0.7
연령	20세~29세	(50)	12.0	54.0	20.0	10.0	2.0	0.0	0.0	2.0
	30세~39세	(138)	8.0	32.6	31.9	17.4	5.1	4.3	0.7	0.0
	40세~49세	(106)	8.5	24.5	22.6	22.6	14.2	5.7	0.9	0.9
	50세~59세	(55)	3.6	20.0	27.3	25.5	12.7	5.5	1.8	3.6
	60세 이상	(20)	10.0	25.0	15.0	20.0	15.0	15.0	0.0	0.0
수도권	수도권	(261)	8.8	30.3	24.9	21.1	8.0	5.0	0.8	1.1
	비수도권	(108)	6.5	32.4	28.7	14.8	11.1	4.6	0.9	0.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16.7	36.1	30.6	8.3	5.6	2.8	0.0	0.0
	2~3년제 대학	(38)	5.3	42.1	26.3	21.1	2.6	2.6	0.0	0.0
	4년제 대학	(260)	8.1	29.2	26.5	19.6	9.6	4.6	1.2	1.2
	대학원 석사 이상	(35)	2.9	25.7	17.1	25.7	14.3	11.4	0.0	2.9
혼인상태	미혼	(197)	14.2	45.7	23.4	11.7	2.0	2.5	0.0	0.5
	기혼	(157)	1.3	10.8	29.3	28.7	17.8	8.3	1.9	1.9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46.7	26.7	20.0	6.7	0.0	0.0	0.0
가구원수	1명	(169)	15.4	52.7	24.3	4.7	2.4	0.6	0.0	0.0
	2명	(70)	5.7	18.6	34.3	27.1	8.6	5.7	0.0	0.0
	3명	(59)	0.0	18.6	22.0	39.0	10.2	5.1	3.4	1.7
	4명 이상	(71)	0.0	1.4	25.4	29.6	23.9	14.1	1.4	4.2
자녀수	0명	(242)	11.6	40.9	26.0	14.5	3.7	2.9	0.0	0.4
	1명	(46)	0.0	17.4	26.1	34.8	15.2	2.2	4.3	0.0
	2명 이상	(81)	2.5	8.6	25.9	24.7	21.0	12.3	1.2	3.7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25.0	68.8	6.3	0.0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103)	14.6	45.6	23.3	9.7	3.9	1.9	0.0	1.0
	300~400만원 미만	(135)	5.2	30.4	34.8	22.2	4.4	2.2	0.0	0.7
	400~500만원 미만	(73)	4.1	17.8	23.3	27.4	17.8	8.2	1.4	0.0
	500만원 이상	(42)	2.4	4.8	16.7	26.2	23.8	16.7	4.8	4.8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자산 및 부채

(1) 자산 보유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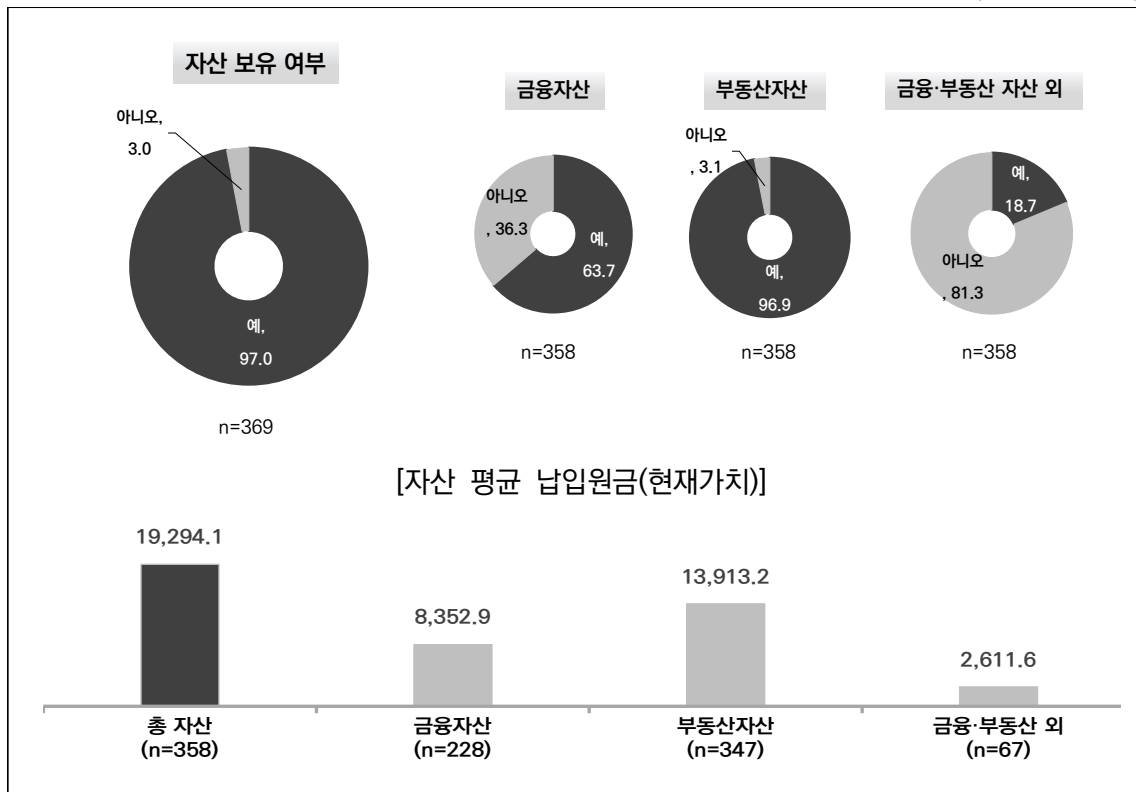
- 자산 보유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97.0%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자산 유형으로는 부동산자산(96.9%)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자산(63.7%), 금융·부동산 외 자산(18.7%) 순으로 나타남

(2) 자산 보유 여부

-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총 자산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은 19,294.1만원으로 나타남
 -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자산(13,913.2만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금융자산(8,352.9만원), 금융·부동산 외 자산(2,611.6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1-5〉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단위: %, 만원)



〈표 III-1-5〉 자산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산		사례수*	금융		부동산		금융·부동산 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97.0	3.0	(358)	63.7	36.3	96.9	3.1	18.7	81.3	
성별	남성	(223)	96.9	3.1	(216)	63.4	36.6	97.7	2.3	22.7	77.3
	여성	(146)	97.3	2.7	(142)	64.1	35.9	95.8	4.2	12.7	87.3
연령	20세~29세	(50)	92.0	8.0	(46)	69.6	30.4	93.5	6.5	13.0	87.0
	30세~39세	(138)	95.7	4.3	(132)	68.2	31.8	97.7	2.3	19.7	80.3
	40세~49세	(106)	100.0	0.0	(106)	67.0	33.0	95.3	4.7	24.5	75.5
	50세~59세	(55)	98.2	1.8	(54)	42.6	57.4	100.0	0.0	13.0	87.0
	60세 이상	(20)	100.0	0.0	(20)	60.0	40.0	100.0	0.0	10.0	90.0
수도권	수도권	(261)	96.6	3.4	(252)	63.9	36.1	98.0	2.0	17.5	82.5
	비수도권	(108)	98.1	1.9	(106)	63.2	36.8	94.3	5.7	21.7	78.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94.4	5.6	(34)	55.9	44.1	97.1	2.9	17.6	82.4
	2~3년제 대학	(38)	94.7	5.3	(36)	58.3	41.7	94.4	5.6	25.0	75.0
	4년제 대학	(260)	97.3	2.7	(253)	64.8	35.2	97.2	2.8	18.2	81.8
	대학원 석사 이상	(35)	100.0	0.0	(35)	68.6	31.4	97.1	2.9	17.1	82.9
혼인상태	미혼	(197)	95.9	4.1	(189)	66.1	33.9	95.2	4.8	16.9	83.1
	기혼	(157)	98.7	1.3	(155)	61.9	38.1	98.7	1.3	21.9	78.1
	별거·사별·이혼·기타	(15)	93.3	6.7	(14)	50.0	50.0	100.0	0.0	7.1	92.9
가구원수	1명	(169)	95.9	4.1	(162)	63.6	36.4	96.3	3.7	14.8	85.2
	2명	(70)	97.1	2.9	(68)	58.8	41.2	97.1	2.9	19.1	80.9
	3명	(59)	98.3	1.7	(58)	72.4	27.6	96.6	3.4	22.4	77.6
	4명 이상	(71)	98.6	1.4	(70)	61.4	38.6	98.6	1.4	24.3	75.7
자녀수	0명	(242)	95.9	4.1	(232)	65.1	34.9	95.7	4.3	16.8	83.2
	1명	(46)	100.0	0.0	(46)	65.2	34.8	100.0	0.0	23.9	76.1
	2명 이상	(81)	98.8	1.2	(80)	58.8	41.3	98.8	1.3	21.3	78.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87.5	12.5	(14)	28.6	71.4	100.0	0.0	7.1	92.9
	200~300만원 미만	(103)	97.1	2.9	(100)	63.0	37.0	95.0	5.0	15.0	85.0
	300~400만원 미만	(135)	97.0	3.0	(131)	60.3	39.7	97.7	2.3	16.0	84.0
	400~500만원 미만	(73)	98.6	1.4	(72)	66.7	33.3	95.8	4.2	23.6	76.4
	500만원 이상	(42)	97.6	2.4	(41)	82.9	17.1	100.0	0.0	31.7	68.3

*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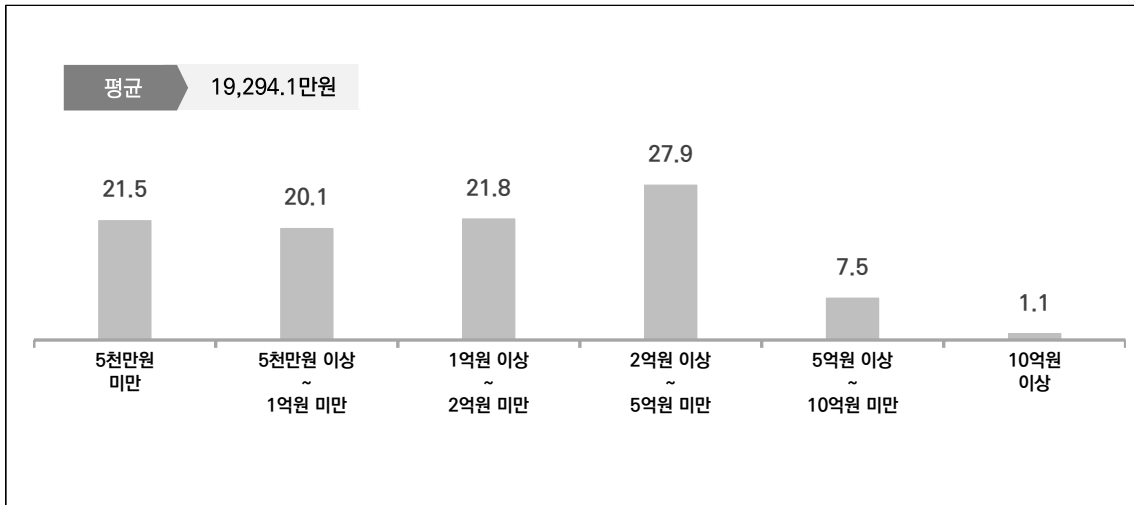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자산별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27.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1.8%), ‘5천만원 미만’(21.5%) 순으로 나타남.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의 평균은 19,294.1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29.2%)에서, ‘여성’은 ‘5천만원 미만’(26.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37.0%), ‘50세~59세’(25.9%)는 각각 ‘5천만원 미만’에서, ‘30세~39세’(30.3%), ‘40세~49세’(38.7%)는 각각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에서, ‘60세 이상’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3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30.2%)에서, ‘비수도권’은 ‘5천만원 미만’(29.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6〉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58, 단위: %)



〈표 III-1-6〉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58,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58)	21.5	20.1	21.8	27.9	7.5	1.1	19,294.1
성별	남성	(216)	18.1	19.4	22.2	29.2	10.2	0.9	20,485.1
	여성	(142)	26.8	21.1	21.1	26.1	3.5	1.4	17,482.6
연령	20세~29세	(46)	37.0	32.6	17.4	10.9	2.2	0.0	8,979.1
	30세~39세	(132)	17.4	21.2	27.3	30.3	3.0	0.8	17,376.4
	40세~49세	(106)	17.0	14.2	17.0	38.7	12.3	0.9	23,732.7
	50세~59세	(54)	25.9	18.5	18.5	20.4	14.8	1.9	23,255.8
	60세 이상	(20)	25.0	20.0	30.0	15.0	5.0	5.0	21,455.0
수도권	수도권	(252)	18.3	21.4	19.0	30.2	10.3	0.8	21,123.5
	비수도권	(106)	29.2	17.0	28.3	22.6	0.9	1.9	14,945.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4)	38.2	20.6	29.4	8.8	2.9	0.0	10,996.5
	2~3년제 대학	(36)	19.4	16.7	25.0	25.0	11.1	2.8	24,083.4
	4년제 대학	(253)	20.6	21.7	20.2	29.2	7.5	0.8	18,834.4
	대학원 석사 이상	(35)	14.3	11.4	22.9	40.0	8.6	2.9	25,751.7
혼인상태	미혼	(189)	31.2	25.9	19.0	18.5	4.2	1.1	13,849.1
	기혼	(155)	9.0	13.5	22.6	41.3	12.3	1.3	26,612.4
	별거·사별·이혼·기타	(14)	28.6	14.3	50.0	7.1	0.0	0.0	11,778.6
가구원수	1명	(162)	34.6	25.9	19.1	17.3	2.5	0.6	11,875.8
	2명	(68)	14.7	20.6	30.9	26.5	7.4	0.0	17,861.9
	3명	(58)	10.3	12.1	20.7	39.7	13.8	3.4	31,421.6
	4명 이상	(70)	7.1	12.9	20.0	44.3	14.3	1.4	27,805.3
자녀수	0명	(232)	27.6	25.9	21.1	19.8	4.7	0.9	14,674.9
	1명	(46)	8.7	4.3	26.1	45.7	13.0	2.2	31,194.6
	2명 이상	(80)	11.3	12.5	21.3	41.3	12.5	1.3	25,847.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4)	57.1	28.6	14.3	0.0	0.0	0.0	4,692.9
	200~300만원 미만	(100)	34.0	29.0	16.0	16.0	3.0	2.0	13,693.7
	300~400만원 미만	(131)	20.6	19.8	26.0	29.0	3.8	0.8	17,257.2
	400~500만원 미만	(72)	6.9	9.7	30.6	43.1	9.7	0.0	24,273.4
	500만원 이상	(41)	7.3	14.6	9.8	36.6	29.3	2.4	35,70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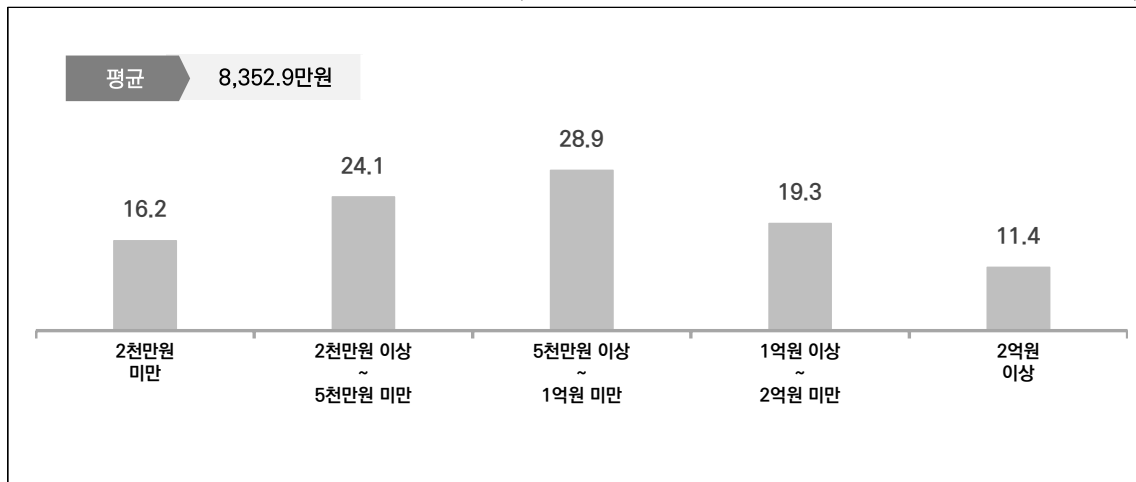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8.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4.1%), ‘1억원 이상~2억원 미만’(19.3%) 순으로 나타남.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의 평균은 8,352.9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1.4%), ‘여성’(25.3%) 각각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27.3%), ‘비수도권’(32.8%) 각각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7〉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228, 단위: %)



〈표 III-1-7〉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228,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228)	16.2	24.1	28.9	19.3	11.4	8,352.9
성별	남성	(137)	11.7	24.1	31.4	21.9	10.9	8,663.1
	여성	(91)	23.1	24.2	25.3	15.4	12.1	7,885.7
연령	20세~29세	(32)	40.6	37.5	21.9	0.0	0.0	2,681.3
	30세~39세	(90)	14.4	27.8	23.3	23.3	11.1	8,167.2
	40세~49세	(71)	15.5	16.9	29.6	23.9	14.1	9,402.8
	50세~59세	(23)	0.0	17.4	52.2	17.4	13.0	11,934.8
	60세 이상	(12)	0.0	16.7	41.7	16.7	25.0	11,791.7
수도권	수도권	(161)	15.5	23.0	27.3	21.7	12.4	8,967.4
	비수도권	(67)	17.9	26.9	32.8	13.4	9.0	6,876.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	36.8	21.1	21.1	15.8	5.3	4,721.1
	2~3년제 대학	(21)	9.5	14.3	47.6	9.5	19.0	12,014.3
	4년제 대학	(164)	15.2	25.0	28.0	21.3	10.4	8,220.4
	대학원 석사 이상	(24)	12.5	29.2	25.0	16.7	16.7	8,929.2
혼인상태	미혼	(125)	22.4	24.0	25.6	16.8	11.2	7,822.8
	기혼	(96)	8.3	25.0	31.3	22.9	12.5	9,308.3
	별거·사별·이혼·기타	(7)	14.3	14.3	57.1	14.3	0.0	4,714.3
가구원수	1명	(103)	22.3	22.3	27.2	18.4	9.7	7,539.3
	2명	(40)	7.5	42.5	35.0	10.0	5.0	5,605.0
	3명	(42)	9.5	19.0	31.0	16.7	23.8	12,021.4
	4명 이상	(43)	16.3	16.3	25.6	32.6	9.3	9,274.4
자녀수	0명	(151)	20.5	28.5	25.8	15.2	9.9	7,346.0
	1명	(30)	3.3	13.3	40.0	23.3	20.0	11,846.7
	2명 이상	(47)	10.6	17.0	31.9	29.8	10.6	9,357.4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4)	0.0	25.0	75.0	0.0	0.0	4,500.0
	200~300만원 미만	(63)	31.7	28.6	27.0	6.3	6.3	5,645.2
	300~400만원 미만	(79)	15.2	26.6	31.6	17.7	8.9	7,626.6
	400~500만원 미만	(48)	2.1	14.6	27.1	39.6	16.7	11,575.0
	500만원 이상	(34)	11.8	23.5	23.5	20.6	20.6	10,96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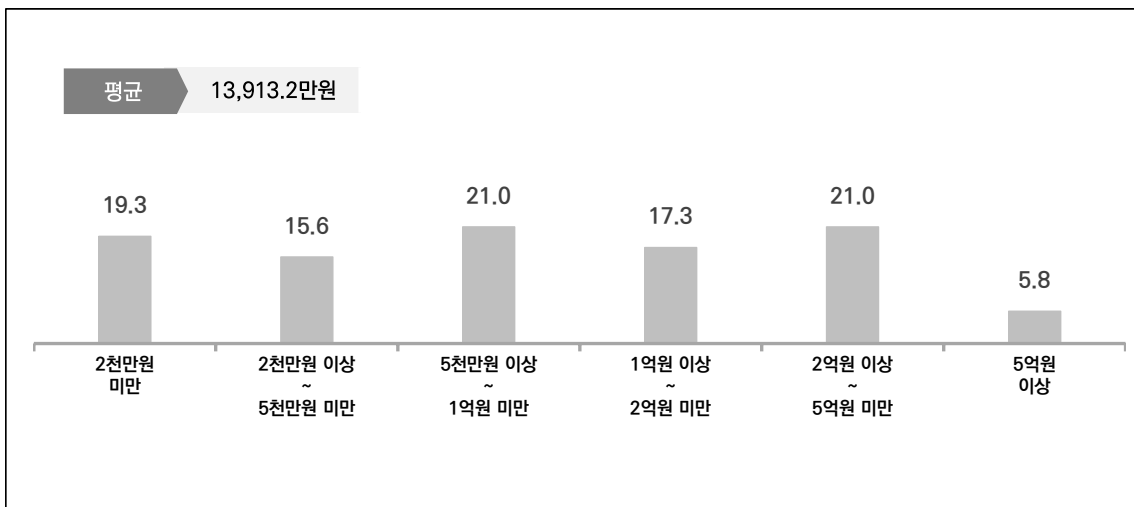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각각 21.0%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는 ‘2천만원 미만’(19.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23.7%)에서, ‘여성’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1.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2천만원 미만’(30.2%)에서, ‘30세~39세’(26.4%), ‘60세 이상’(35.0%)은 각각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40세~49세’(30.7%), ‘50세~59세’(22.2%)는 각각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23.5%)에서, ‘비수도권’은 ‘2천만원 미만’(24.0%)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8〉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47, 단위: %)



〈표 III-1-8〉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47,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47)	19.3	15.6	21.0	17.3	21.0	5.8	13,913.2
성별	남성	(211)	19.0	12.8	23.2	14.7	23.7	6.6	14,648.6
	여성	(136)	19.9	19.9	17.6	21.3	16.9	4.4	12,772.2
연령	20세~29세	(43)	30.2	20.9	18.6	18.6	9.3	2.3	7,389.3
	30세~39세	(129)	19.4	14.7	26.4	19.4	17.8	2.3	11,576.4
	40세~49세	(101)	14.9	14.9	12.9	18.8	30.7	7.9	17,619.5
	50세~59세	(54)	20.4	11.1	20.4	13.0	22.2	13.0	17,678.0
	60세 이상	(20)	15.0	25.0	35.0	5.0	15.0	5.0	14,130.0
수도권	수도권	(247)	17.4	13.0	22.3	16.6	23.5	7.3	15,193.1
	비수도권	(100)	24.0	22.0	18.0	19.0	15.0	2.0	10,751.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	27.3	21.2	30.3	12.1	6.1	3.0	8,460.0
	2~3년제 대학	(34)	14.7	14.7	17.6	20.6	17.6	14.7	17,182.4
	4년제 대학	(246)	18.3	15.9	22.8	16.3	22.8	4.1	13,347.1
	대학원 석사 이상	(34)	23.5	8.8	2.9	26.5	26.5	11.8	20,032.4
혼인상태	미혼	(180)	31.7	20.0	21.1	13.9	11.1	2.2	8,688.8
	기혼	(153)	5.2	9.2	20.9	20.3	34.0	10.5	20,471.2
	별거·사별·이혼·기타	(14)	14.3	28.6	21.4	28.6	7.1	0.0	9,414.3
가구원수	1명	(156)	34.6	21.8	21.8	12.2	7.7	1.9	7,118.5
	2명	(66)	10.6	12.1	22.7	27.3	22.7	4.5	14,433.6
	3명	(56)	7.1	10.7	23.2	14.3	35.7	8.9	22,567.9
	4명 이상	(69)	2.9	8.7	15.9	21.7	37.7	13.0	21,753.2
자녀수	0명	(222)	27.0	18.5	21.6	17.1	12.6	3.2	9,954.5
	1명	(46)	4.3	10.9	21.7	15.2	39.1	8.7	22,556.5
	2명 이상	(79)	6.3	10.1	19.0	19.0	34.2	11.4	20,004.7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4)	28.6	50.0	14.3	7.1	0.0	0.0	3,371.4
	200~300만원 미만	(95)	27.4	23.2	20.0	10.5	13.7	5.3	10,407.4
	300~400만원 미만	(128)	21.1	10.9	21.9	21.9	21.1	3.1	12,679.0
	400~500만원 미만	(69)	7.2	11.6	27.5	23.2	23.2	7.2	16,311.4
	500만원 이상	(41)	12.2	7.3	12.2	12.2	41.5	14.6	25,45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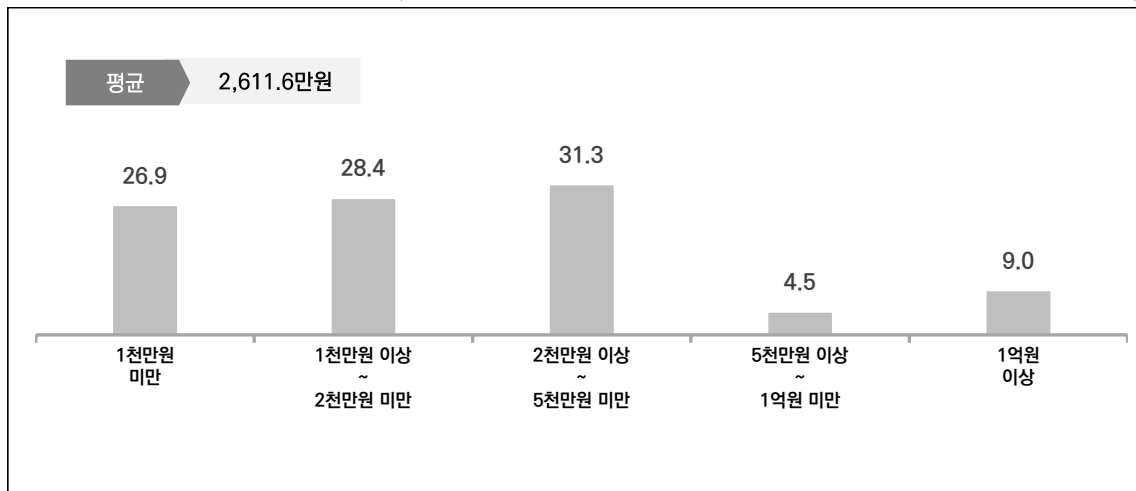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28.4%), ‘1천만원 미만’(26.9%) 순으로 나타남. 금융·부동산 외 자산의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은 2,611.6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34.7%)에서, ‘여성’은 ‘1천만원 미만’(44.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36.4%)에서, ‘비수도권’은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각각 34.8%)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9〉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부동산 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67, 단위: %)



〈표 III-1-9〉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부동산 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67,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67)	26.9	28.4	31.3	4.5	9.0	2,611.6
성별	남성	(49)	20.4	30.6	34.7	2.0	12.2	3,001.4
	여성	(18)	44.4	22.2	22.2	11.1	0.0	1,550.6
연령	20세~29세	(6)	16.7	66.7	16.7	0.0	0.0	1,583.2
	30세~39세	(26)	26.9	23.1	38.5	3.8	7.7	2,510.8
	40세~49세	(26)	30.8	30.8	23.1	3.8	11.5	2,634.6
	50세~59세	(7)	28.6	14.3	28.6	14.3	14.3	3,814.3
	60세 이상	(2)	0.0	0.0	100.0	0.0	0.0	2,500.0
수도권	수도권	(44)	22.7	25.0	36.4	4.5	11.4	2,879.1
	비수도권	(23)	34.8	34.8	21.7	4.3	4.3	2,1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	66.7	16.7	16.7	0.0	0.0	833.3
	2~3년제 대학	(9)	0.0	22.2	44.4	22.2	11.1	3,388.9
	4년제 대학	(46)	23.9	30.4	32.6	2.2	10.9	2,903.7
	대학원 석사 이상	(6)	50.0	33.3	16.7	0.0	0.0	985.0
혼인상태	미혼	(32)	34.4	31.3	21.9	0.0	12.5	2,363.7
	기혼	(34)	17.6	26.5	41.2	8.8	5.9	2,918.8
	별거·사별·이혼·기타	(1)	100.0	0.0	0.0	0.0	0.0	100.0
가구원수	1명	(24)	41.7	33.3	20.8	0.0	4.2	1,535.0
	2명	(13)	30.8	7.7	46.2	0.0	15.4	2,906.9
	3명	(13)	23.1	23.1	30.8	7.7	15.4	4,134.6
	4명 이상	(17)	5.9	41.2	35.3	11.8	5.9	2,741.2
자녀수	0명	(39)	38.5	25.6	25.6	0.0	10.3	2,190.5
	1명	(11)	18.2	27.3	36.4	9.1	9.1	3,813.6
	2명 이상	(17)	5.9	35.3	41.2	11.8	5.9	2,80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	100.0	0.0	0.0	0.0	0.0	500.0
	200~300만원 미만	(15)	33.3	26.7	33.3	6.7	0.0	1,667.3
	300~400만원 미만	(21)	28.6	38.1	28.6	0.0	4.8	1,680.0
	400~500만원 미만	(17)	17.6	17.6	41.2	11.8	11.8	3,917.6
	500만원 이상	(13)	23.1	30.8	23.1	0.0	23.1	3,660.8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부채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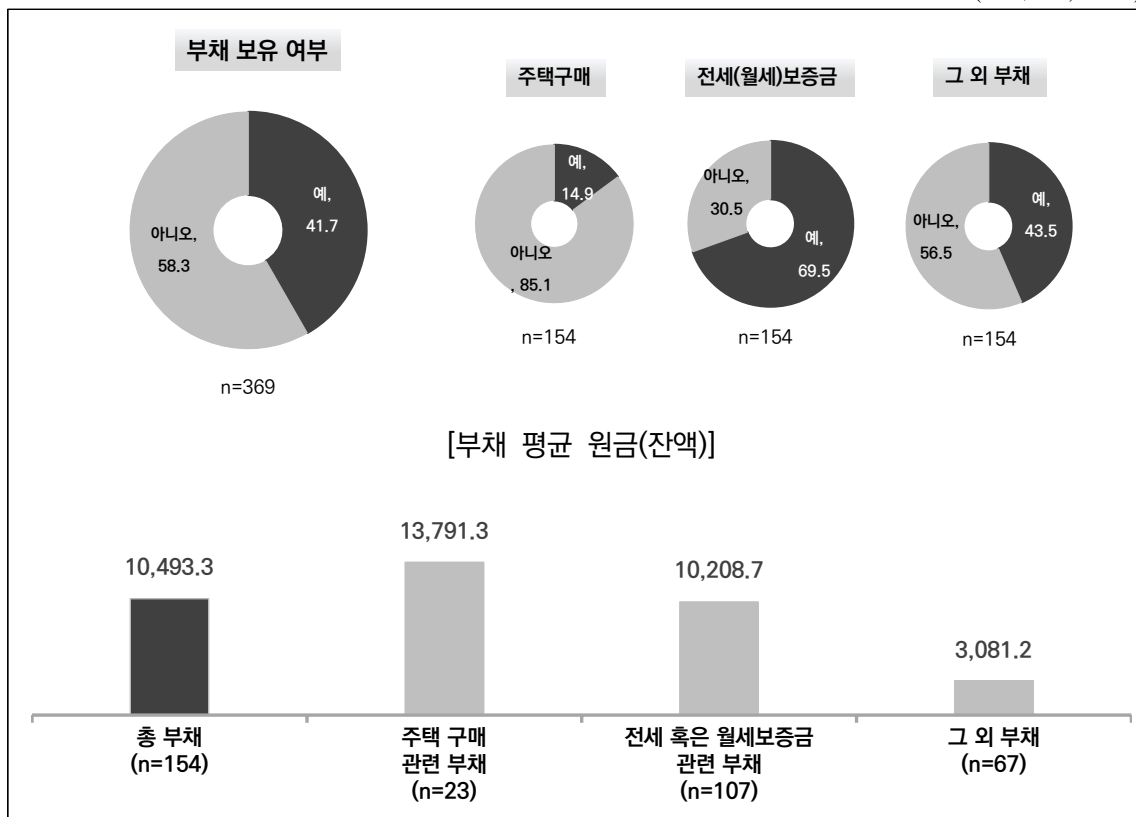
- 부채 보유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41.7%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부채 유형으로는 ‘전세(월세)보증금’(69.5%)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그 외 부채’(43.5%), ‘주택구매’(14.9%) 순으로 나타남

(8)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

-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총 부채 평균 원금(잔액)은 10,493.3만원으로 나타남
 - 부채 유형별로는 ‘주택구매’(13,791.3만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월세)보증금’(10,208.7만원), ‘그 외 부채’(3,081.2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1-10〉 부채 보유 여부 및 현황

(단위: %, 만원)



〈표 III-1-10〉 부채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부채		사례수*	주택구매		전세(월세)보증금		그 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41.7	58.3	(154)	14.9	85.1	69.5	30.5	43.5	56.5	
성별	남성	(223)	43.9	56.1	(98)	15.3	84.7	68.4	31.6	44.9	55.1
	여성	(146)	38.4	61.6	(56)	14.3	85.7	71.4	28.6	41.1	58.9
연령	20세~29세	(50)	42.0	58.0	(21)	0.0	100.0	81.0	19.0	38.1	61.9
	30세~39세	(138)	44.2	55.8	(61)	11.5	88.5	77.0	23.0	31.1	68.9
	40세~49세	(106)	38.7	61.3	(41)	24.4	75.6	56.1	43.9	46.3	53.7
	50세~59세	(55)	49.1	50.9	(27)	22.2	77.8	66.7	33.3	70.4	29.6
	60세 이상	(20)	20.0	80.0	(4)	0.0	100.0	50.0	50.0	50.0	50.0
수도권	수도권	(261)	41.0	59.0	(107)	15.0	85.0	72.0	28.0	43.0	57.0
	비수도권	(108)	43.5	56.5	(47)	14.9	85.1	63.8	36.2	44.7	55.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41.7	58.3	(15)	6.7	93.3	53.3	46.7	80.0	20.0
	2~3년제 대학	(38)	39.5	60.5	(15)	40.0	60.0	66.7	33.3	40.0	60.0
	4년제 대학	(260)	42.3	57.7	(110)	13.6	86.4	70.0	30.0	38.2	61.8
	대학원 석사 이상	(35)	40.0	60.0	(14)	7.1	92.9	85.7	14.3	50.0	50.0
혼인상태	미혼	(197)	35.5	64.5	(70)	11.4	88.6	65.7	34.3	40.0	60.0
	기혼	(157)	47.8	52.2	(75)	20.0	80.0	73.3	26.7	45.3	54.7
	별거·사별·이혼·기타	(15)	60.0	40.0	(9)	0.0	100.0	66.7	33.3	55.6	44.4
가구원수	1명	(169)	35.5	64.5	(60)	8.3	91.7	66.7	33.3	40.0	60.0
	2명	(70)	57.1	42.9	(40)	7.5	92.5	77.5	22.5	50.0	50.0
	3명	(59)	39.0	61.0	(23)	21.7	78.3	65.2	34.8	39.1	60.9
	4명 이상	(71)	43.7	56.3	(31)	32.3	67.7	67.7	32.3	45.2	54.8
자녀수	0명	(242)	40.9	59.1	(99)	10.1	89.9	68.7	31.3	44.4	55.6
	1명	(46)	45.7	54.3	(21)	14.3	85.7	76.2	23.8	38.1	61.9
	2명 이상	(81)	42.0	58.0	(34)	29.4	70.6	67.6	32.4	44.1	55.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43.8	56.3	(7)	14.3	85.7	28.6	71.4	57.1	42.9
	200~300만원 미만	(103)	40.8	59.2	(42)	16.7	83.3	66.7	33.3	47.6	52.4
	300~400만원 미만	(135)	43.0	57.0	(58)	13.8	86.2	74.1	25.9	41.4	58.6
	400~500만원 미만	(73)	42.5	57.5	(31)	16.1	83.9	67.7	32.3	41.9	58.1
	500만원 이상	(42)	38.1	61.9	(16)	12.5	87.5	81.3	18.8	37.5	62.5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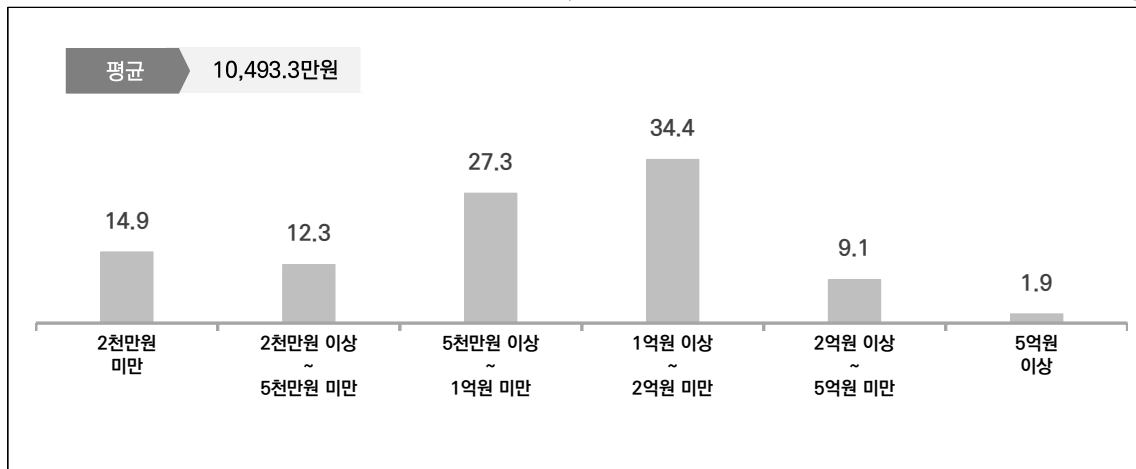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총 부채 원금(잔액)

- 총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34.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7.3%), ‘2천만원 미만’(14.9%) 순으로 나타남. 총 부채 원금(잔액)의 평균은 10,493.3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5.7%), ‘여성’(32.1%) 각각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이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각각 30.8%)에서, ‘비수도권’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42.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11〉 총 부채 원금(잔액)

(base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54, 단위: %)



〈표 III-1-11〉 총 부채 원금(잔액)

(base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54,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154)	14.9	12.3	27.3	34.4	9.1	1.9	10,493.3
성별	남성	(98)	11.2	12.2	28.6	35.7	12.2	0.0	10,026.5
	여성	(56)	21.4	12.5	25.0	32.1	3.6	5.4	11,310.2
연령	20세~29세	(21)	23.8	9.5	33.3	33.3	0.0	0.0	7,576.2
	30세~39세	(61)	11.5	13.1	29.5	34.4	11.5	0.0	9,801.8
	40세~49세	(41)	9.8	14.6	24.4	43.9	2.4	4.9	11,514.9
	50세~59세	(27)	22.2	7.4	18.5	25.9	22.2	3.7	13,678.9
	60세 이상	(4)	25.0	25.0	50.0	0.0	0.0	0.0	4,380.0
수도권	수도권	(107)	13.1	11.2	30.8	30.8	12.1	1.9	10,817.5
	비수도권	(47)	19.1	14.9	19.1	42.6	2.1	2.1	9,755.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	33.3	20.0	26.7	13.3	6.7	0.0	7,824.7
	2~3년제 대학	(15)	6.7	26.7	26.7	33.3	0.0	6.7	11,120.0
	4년제 대학	(110)	13.6	9.1	29.1	36.4	10.0	1.8	10,620.9
	대학원 석사 이상	(14)	14.3	14.3	14.3	42.9	14.3	0.0	11,678.6
혼인상태	미혼	(70)	18.6	17.1	31.4	24.3	5.7	2.9	9,519.9
	기혼	(75)	8.0	8.0	25.3	44.0	13.3	1.3	11,970.1
	별거·사별·이혼·기타	(9)	44.4	11.1	11.1	33.3	0.0	0.0	5,757.8
가구원수	1명	(60)	20.0	20.0	36.7	18.3	3.3	1.7	7,628.2
	2명	(40)	15.0	5.0	22.5	47.5	10.0	0.0	10,117.5
	3명	(23)	8.7	13.0	21.7	30.4	21.7	4.3	14,073.9
	4명 이상	(31)	9.7	6.5	19.4	51.6	9.7	3.2	13,867.1
자녀수	0명	(99)	16.2	14.1	30.3	30.3	7.1	2.0	9,731.0
	1명	(21)	9.5	9.5	28.6	33.3	19.0	0.0	10,515.2
	2명 이상	(34)	14.7	8.8	17.6	47.1	8.8	2.9	12,699.4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7)	28.6	42.9	14.3	0.0	0.0	14.3	9,717.1
	200~300만원 미만	(42)	26.2	11.9	26.2	28.6	2.4	4.8	10,565.0
	300~400만원 미만	(58)	12.1	8.6	31.0	37.9	10.3	0.0	10,098.4
	400~500만원 미만	(31)	9.7	12.9	19.4	45.2	12.9	0.0	10,151.6
	500만원 이상	(16)	0.0	12.5	37.5	31.3	18.8	0.0	12,73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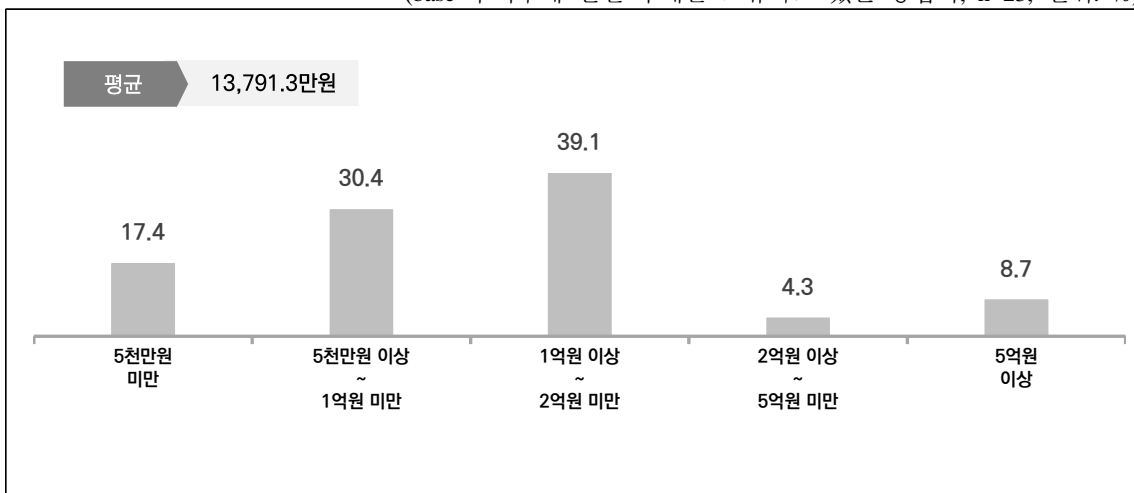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0)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39.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30.4%), ‘5천만원 이상’(17.4%) 순으로 나타남.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의 평균은 13,791.3만원임

〈그림 III-1-12〉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주택구매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23, 단위: %)



〈표 III-1-12〉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주택구매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23,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23)	17.4	30.4	39.1	4.3	8.7	13,791.3
성별	남성	(15)	26.7	33.3	33.3	6.7	0.0	8,613.3
	여성	(8)	0.0	25.0	50.0	0.0	25.0	23,500.0
연령	20세~29세	(0)	-	-	-	-	-	-
	30세~39세	(7)	14.3	42.9	42.9	0.0	0.0	9,128.6
	40세~49세	(10)	10.0	20.0	50.0	0.0	20.0	20,030.0
	50세~59세	(6)	33.3	33.3	16.7	16.7	0.0	8,833.3
	60세 이상	(0)	-	-	-	-	-	-
수도권	수도권	(16)	18.8	37.5	37.5	0.0	6.3	10,106.3
	비수도권	(7)	14.3	14.3	42.9	14.3	14.3	22,214.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0.0	100.0	0.0	0.0	0.0	5,000.0
	2~3년제 대학	(6)	50.0	33.3	16.7	0.0	0.0	6,000.0
	4년제 대학	(15)	6.7	26.7	46.7	6.7	13.3	17,346.7
	대학원 석사 이상	(1)	0.0	0.0	100.0	0.0	0.0	16,000.0
혼인상태	미혼	(8)	12.5	25.0	25.0	12.5	25.0	24,300.0
	기혼	(15)	20.0	33.3	46.7	0.0	0.0	8,186.7
	별거·사별·이혼·기타	(0)	-	-	-	-	-	-
가구원수	1명	(5)	20.0	40.0	0.0	20.0	20.0	18,880.0
	2명	(3)	0.0	0.0	100.0	0.0	0.0	12,666.7
	3명	(5)	40.0	20.0	20.0	0.0	20.0	20,200.0
	4명 이상	(10)	10.0	40.0	50.0	0.0	0.0	8,380.0
자녀수	0명	(10)	10.0	20.0	40.0	10.0	20.0	22,240.0
	1명	(3)	66.7	33.3	0.0	0.0	0.0	3,666.7
	2명 이상	(10)	10.0	40.0	50.0	0.0	0.0	8,38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	0.0	0.0	0.0	0.0	100.0	50,000.0
	200~300만원 미만	(7)	42.9	14.3	28.6	0.0	14.3	17,428.6
	300~400만원 미만	(8)	0.0	37.5	50.0	12.5	0.0	11,487.5
	400~500만원 미만	(5)	20.0	40.0	40.0	0.0	0.0	7,660.0
	500만원 이상	(2)	0.0	50.0	50.0	0.0	0.0	7,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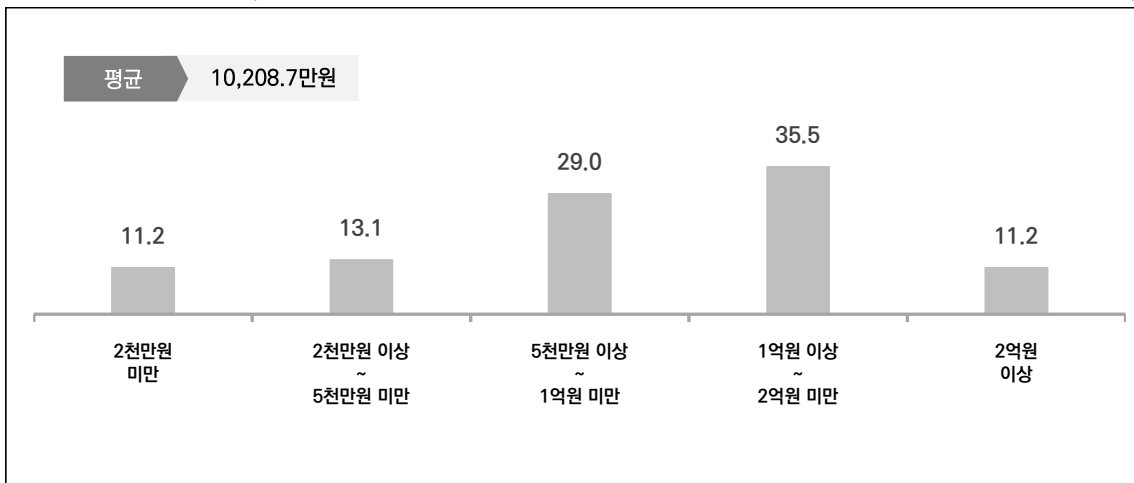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1)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35.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9.0%),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13.1%) 순으로 나타남.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의 평균은 10,208.7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38.8%)에서, ‘여성’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3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각각 31.2%)에서, ‘비수도권’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46.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13〉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07, 단위: %)



〈표 III-1-13〉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07,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107)	11.2	13.1	29.0	35.5	11.2	10,208.7
성별	남성	(67)	10.4	10.4	26.9	38.8	13.4	10,384.3
	여성	(40)	12.5	17.5	32.5	30.0	7.5	9,914.5
연령	20세~29세	(17)	5.9	17.6	41.2	35.3	0.0	8,547.1
	30세~39세	(47)	10.6	12.8	27.7	34.0	14.9	10,187.0
	40세~49세	(23)	8.7	8.7	30.4	47.8	4.3	9,485.2
	50세~59세	(18)	22.2	11.1	16.7	27.8	22.2	13,443.3
	60세 이상	(2)	0.0	50.0	50.0	0.0	0.0	4,050.0
수도권	수도권	(77)	10.4	11.7	31.2	31.2	15.6	10,946.1
	비수도권	(30)	13.3	16.7	23.3	46.7	0.0	8,316.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8)	12.5	25.0	37.5	12.5	12.5	10,397.5
	2~3년제 대학	(10)	10.0	20.0	40.0	20.0	10.0	10,430.0
	4년제 대학	(77)	11.7	10.4	26.0	40.3	11.7	10,289.0
	대학원 석사 이상	(12)	8.3	16.7	33.3	33.3	8.3	9,383.3
혼인상태	미혼	(46)	17.4	17.4	30.4	30.4	4.3	8,145.4
	기혼	(55)	5.5	9.1	29.1	38.2	18.2	12,213.5
	별거·사별·이혼·기타	(6)	16.7	16.7	16.7	50.0	0.0	7,650.0
가구원수	1명	(40)	20.0	20.0	30.0	27.5	2.5	7,487.3
	2명	(31)	6.5	9.7	25.8	45.2	12.9	10,363.2
	3명	(15)	6.7	6.7	20.0	46.7	20.0	11,826.7
	4명 이상	(21)	4.8	9.5	38.1	28.6	19.0	14,008.6
자녀수	0명	(68)	11.8	16.2	30.9	33.8	7.4	8,906.6
	1명	(16)	12.5	0.0	18.8	50.0	18.8	11,443.8
	2명 이상	(23)	8.7	13.0	30.4	30.4	17.4	13,199.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	0.0	100.0	0.0	0.0	0.0	2,550.0
	200~300만원 미만	(28)	14.3	17.9	28.6	32.1	7.1	9,995.7
	300~400만원 미만	(43)	16.3	11.6	27.9	32.6	11.6	9,409.1
	400~500만원 미만	(21)	4.8	4.8	23.8	52.4	14.3	11,781.0
	500만원 이상	(13)	0.0	7.7	46.2	30.8	15.4	11,950.8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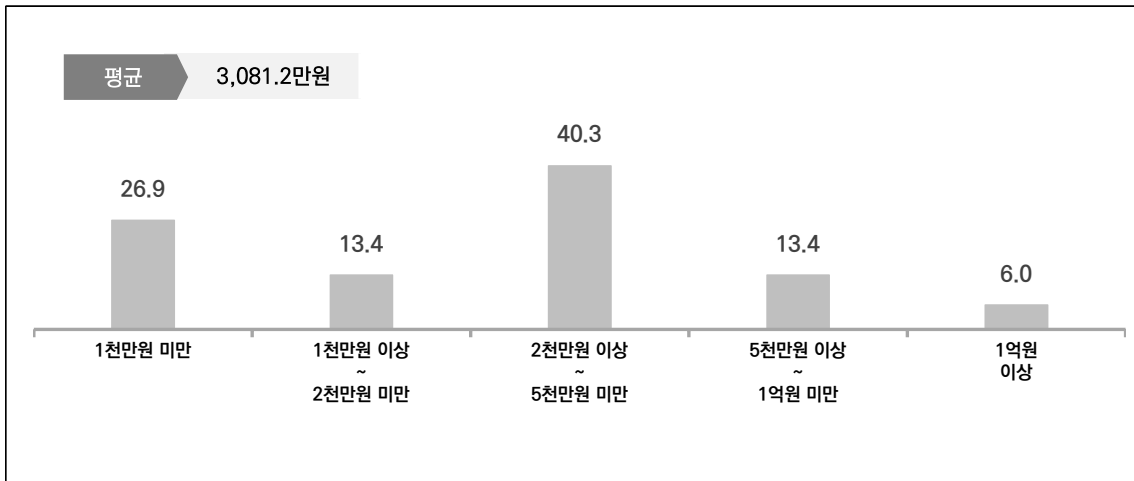
(12) 그 외 부채 원금(잔액)

□ 그 외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40.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천만원 미만’(26.9%),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각각 13.4%) 순으로 나타남. 그 외 부채의 평균 원금(잔액)은 3,081.2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43.2%)에서, ‘여성’은 ‘1천만원 미만’(3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3.5%), ‘비수도권’(33.3%)에서 각각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14〉 그 외 부채 원금(잔액)

(base 그 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67, 단위: %)



〈표 III-1-14〉 그 외 부채 원금(잔액)

(base 그 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67,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67)	26.9	13.4	40.3	13.4	6.0	3,081.2
성별	남성	(44)	20.5	11.4	43.2	18.2	6.8	3,583.0
	여성	(23)	39.1	17.4	34.8	4.3	4.3	2,121.3
연령	20세~29세	(8)	75.0	12.5	0.0	0.0	12.5	1,725.0
	30세~39세	(19)	15.8	21.1	42.1	21.1	0.0	2,906.3
	40세~49세	(19)	21.1	0.0	63.2	10.5	5.3	2,823.7
	50세~59세	(19)	21.1	21.1	36.8	10.5	10.5	3,913.2
	60세 이상	(2)	50.0	0.0	0.0	50.0	0.0	4,710.0
수도권	수도권	(46)	28.3	8.7	43.5	10.9	8.7	3,324.3
	비수도권	(21)	23.8	23.8	33.3	19.0	0.0	2,548.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	25.0	16.7	41.7	16.7	0.0	2,432.5
	2~3년제 대학	(6)	0.0	16.7	50.0	16.7	16.7	4,416.7
	4년제 대학	(42)	31.0	14.3	38.1	11.9	4.8	2,758.3
	대학원 석사 이상	(7)	28.6	0.0	42.9	14.3	14.3	4,985.7
혼인상태	미혼	(28)	39.3	7.1	32.1	14.3	7.1	3,475.0
	기혼	(34)	11.8	20.6	47.1	14.7	5.9	3,035.9
	별거·사별·이혼·기타	(5)	60.0	0.0	40.0	0.0	0.0	1,184.0
가구원수	1명	(24)	41.7	8.3	33.3	16.7	0.0	2,658.3
	2명	(20)	15.0	25.0	50.0	10.0	0.0	2,272.0
	3명	(9)	22.2	0.0	44.4	22.2	11.1	5,033.3
	4명 이상	(14)	21.4	14.3	35.7	7.1	21.4	3,707.1
자녀수	0명	(44)	29.5	15.9	36.4	13.6	4.5	3,075.5
	1명	(8)	12.5	0.0	62.5	25.0	0.0	3,340.0
	2명 이상	(15)	26.7	13.3	40.0	6.7	13.3	2,96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4)	25.0	25.0	25.0	25.0	0.0	3,230.0
	200~300만원 미만	(20)	45.0	20.0	20.0	15.0	0.0	2,092.5
	300~400만원 미만	(24)	16.7	8.3	50.0	12.5	12.5	3,717.5
	400~500만원 미만	(13)	23.1	7.7	61.5	7.7	0.0	2,230.8
	500만원 이상	(6)	16.7	16.7	33.3	16.7	16.7	5,575.0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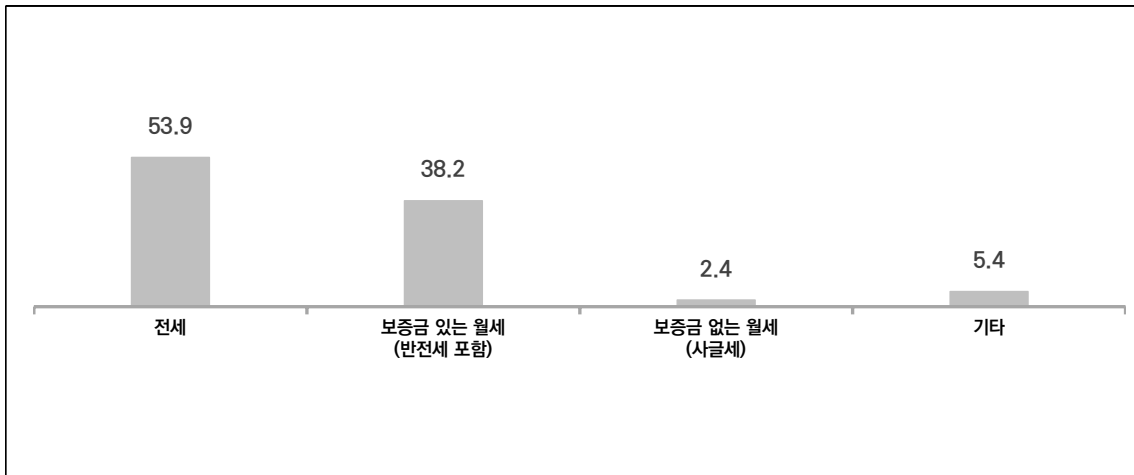
3) 주거

(1) 주택 입주 형태

- 주택 입주 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세’가 53.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는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38.2%), ‘기타’(5.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전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56.5%)이 ‘여성’(50.0%) 보다 전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수도권’(54.4%)이 ‘비수도권’(52.8%)보다 전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15〉 주택 입주 형태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15〉 주택 입주 형태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 (사글세)	기타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53.9	38.2	2.4	5.4
성별	남성	(223)	56.5	36.8	2.2	4.5
	여성	(146)	50.0	40.4	2.7	6.8
연령	20세~29세	(50)	38.0	46.0	10.0	6.0
	30세~39세	(138)	50.7	42.0	2.2	5.1
	40세~49세	(106)	63.2	27.4	0.9	8.5
	50세~59세	(55)	56.4	41.8	0.0	1.8
	60세 이상	(20)	60.0	40.0	0.0	0.0
수도권	수도권	(261)	54.4	38.7	2.3	4.6
	비수도권	(108)	52.8	37.0	2.8	7.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36.1	55.6	5.6	2.8
	2~3년제 대학	(38)	50.0	36.8	5.3	7.9
	4년제 대학	(260)	56.5	35.8	1.9	5.8
	대학원 석사 이상	(35)	57.1	40.0	0.0	2.9
혼인상태	미혼	(197)	41.1	48.7	4.1	6.1
	기혼	(157)	71.3	23.6	0.6	4.5
	별거·사별·이혼·기타	(15)	40.0	53.3	0.0	6.7
가구원수	1명	(169)	41.4	50.9	4.1	3.6
	2명	(70)	55.7	35.7	1.4	7.1
	3명	(59)	59.3	32.2	1.7	6.8
	4명 이상	(71)	77.5	15.5	0.0	7.0
자녀수	0명	(242)	44.6	45.5	3.7	6.2
	1명	(46)	69.6	30.4	0.0	0.0
	2명 이상	(81)	72.8	21.0	0.0	6.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18.8	68.8	12.5	0.0
	200~300만원 미만	(103)	41.7	47.6	2.9	7.8
	300~400만원 미만	(135)	54.1	38.5	3.0	4.4
	400~500만원 미만	(73)	67.1	26.0	0.0	6.8
	500만원 이상	(42)	73.8	23.8	0.0	2.4

기타: 가족 소유 주택 무상 거주, 사택, 상가, 무상임대, 주거형 오피스텔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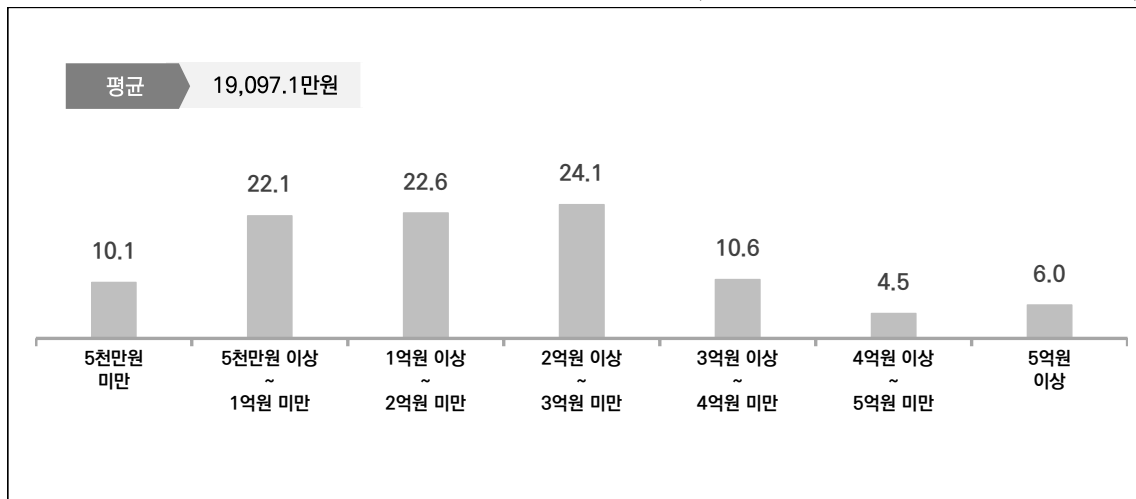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이 24.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2.6%),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2.1%) 순으로 나타남. 주택의 평균 임차료(전세보증금)는 19,097.1만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억원 이상~3억원 미만’(각각 23.8%)에서, ‘여성’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6.0%)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47.4%)에서, ‘30세~39세’(28.6%), ‘40세~49세’(23.9%), ‘50세~59세(29.0%)’는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60세 이상’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50.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23.2%), ‘비수도권’(26.3%)은 각각 ‘2억원 이상~3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16〉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base=전세 거주 응답자, n=199, 단위: %)



〈표 III-1-16〉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base=전세 거주 응답자, n=199,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199)	10.1	22.1	22.6	24.1	10.6	4.5	6.0	19,097.1
성별	남성	(126)	9.5	23.8	20.6	23.8	10.3	4.8	7.1	19,459.0
	여성	(73)	11.0	19.2	26.0	24.7	11.0	4.1	4.1	18,472.3
연령	20세~29세	(19)	5.3	31.6	47.4	15.8	0.0	0.0	0.0	11,436.8
	30세~39세	(70)	10.0	22.9	22.9	28.6	10.0	2.9	2.9	17,922.4
	40세~49세	(67)	11.9	14.9	22.4	23.9	16.4	3.0	7.5	19,984.6
	50세~59세	(31)	9.7	19.4	12.9	29.0	3.2	9.7	16.1	25,144.5
	60세 이상	(12)	8.3	50.0	8.3	0.0	16.7	16.7	0.0	17,500.0
수도권	수도권	(142)	5.6	21.8	21.8	23.2	13.4	5.6	8.5	21,318.6
	비수도권	(57)	21.1	22.8	24.6	26.3	3.5	1.8	0.0	13,562.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	7.7	61.5	15.4	7.7	0.0	0.0	7.7	13,075.4
	2~3년제 대학	(19)	5.3	26.3	21.1	15.8	5.3	5.3	21.1	23,539.5
	4년제 대학	(147)	12.2	20.4	23.1	23.8	12.2	4.1	4.1	18,312.8
	대학원 석사 이상	(20)	0.0	5.0	25.0	45.0	10.0	10.0	5.0	24,555.0
혼인상태	미혼	(81)	14.8	32.1	25.9	19.8	4.9	2.5	0.0	13,250.0
	기혼	(112)	7.1	15.2	17.9	28.6	14.3	6.3	10.7	23,455.0
	별거·사별·이혼·기타	(6)	0.0	16.7	66.7	0.0	16.7	0.0	0.0	16,683.3
가구원수	1명	(70)	14.3	35.7	28.6	20.0	0.0	1.4	0.0	11,846.4
	2명	(39)	10.3	12.8	25.6	25.6	10.3	7.7	7.7	21,582.6
	3명	(35)	0.0	25.7	11.4	22.9	22.9	11.4	5.7	24,862.9
	4명 이상	(55)	10.9	9.1	20.0	29.1	16.4	1.8	12.7	22,893.5
자녀수	0명	(108)	13.9	26.9	26.9	22.2	4.6	2.8	2.8	15,239.5
	1명	(32)	0.0	18.8	15.6	25.0	21.9	12.5	6.3	26,025.0
	2명 이상	(59)	8.5	15.3	18.6	27.1	15.3	3.4	11.9	22,400.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3)	33.3	33.3	33.3	0.0	0.0	0.0	0.0	6,333.3
	200~300만원 미만	(43)	20.9	25.6	14.0	27.9	2.3	4.7	4.7	15,500.7
	300~400만원 미만	(73)	8.2	26.0	30.1	23.3	8.2	1.4	2.7	16,339.9
	400~500만원 미만	(49)	4.1	22.4	24.5	20.4	12.2	8.2	8.2	21,483.7
	500만원 이상	(31)	6.5	6.5	12.9	29.0	25.8	6.5	12.9	28,04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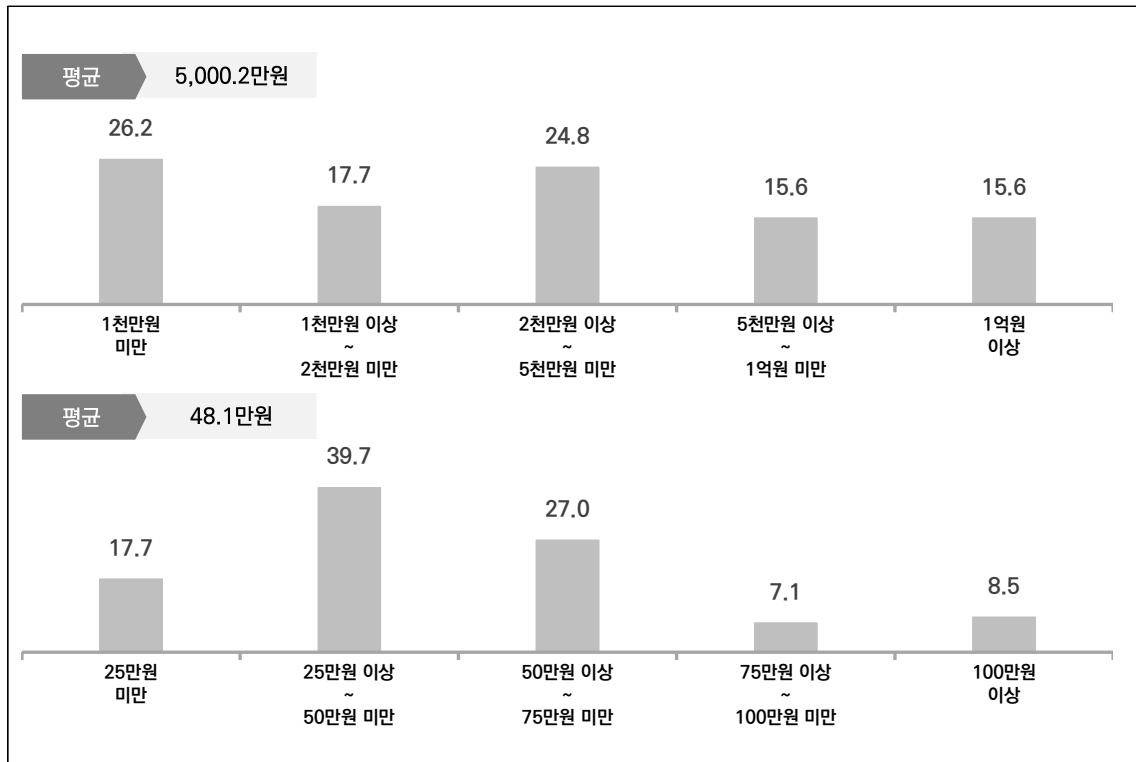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

-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증금은 ‘1천만원 미만’이 26.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는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39.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증금 있는 월세의 평균 보증금은 5,000.2만원이고, 평균 월세는 48.1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III-1-17〉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base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n=141, 단위: %)



〈표 III-1-17〉 주택 임차료(보증금)

(base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n=141,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141)	26.2	17.7	24.8	15.6	15.6	5,000.2
성별	남성	(82)	24.4	20.7	22.0	15.9	17.1	5,534.9
	여성	(59)	28.8	13.6	28.8	15.3	13.6	4,257.0
연령	20세~29세	(23)	39.1	21.7	21.7	4.3	13.0	3,276.6
	30세~39세	(58)	27.6	13.8	20.7	24.1	13.8	5,157.4
	40세~49세	(29)	24.1	17.2	31.0	3.4	24.1	6,141.4
	50세~59세	(23)	21.7	21.7	21.7	21.7	13.0	5,340.5
	60세 이상	(8)	0.0	25.0	50.0	12.5	12.5	3,700.0
수도권	수도권	(101)	23.8	16.8	24.8	17.8	16.8	5,706.3
	비수도권	(40)	32.5	20.0	25.0	10.0	12.5	3,217.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	40.0	5.0	35.0	10.0	10.0	2,970.0
	2~3년제 대학	(14)	28.6	14.3	35.7	0.0	21.4	3,946.5
	4년제 대학	(93)	20.4	22.6	21.5	21.5	14.0	5,219.1
	대학원 석사 이상	(14)	42.9	7.1	21.4	0.0	28.6	7,500.0
혼인상태	미혼	(96)	36.5	21.9	22.9	11.5	7.3	2,912.9
	기혼	(37)	5.4	8.1	21.6	27.0	37.8	10,537.5
	별거·사별·이혼·기타	(8)	0.0	12.5	62.5	12.5	12.5	4,437.5
가구원수	1명	(86)	39.5	22.1	23.3	10.5	4.7	2,559.7
	2명	(25)	12.0	8.0	24.0	28.0	28.0	6,736.0
	3명	(19)	0.0	21.1	36.8	10.5	31.6	8,584.2
	4명 이상	(11)	0.0	0.0	18.2	36.4	45.5	13,944.4
자녀수	0명	(110)	33.6	19.1	22.7	14.5	10.0	3,485.8
	1명	(14)	0.0	14.3	28.6	21.4	35.7	10,535.7
	2명 이상	(17)	0.0	11.8	35.3	17.6	35.3	10,240.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1)	9.1	18.2	63.6	0.0	9.1	2,909.1
	200~300만원 미만	(49)	34.7	18.4	22.4	18.4	6.1	3,162.8
	300~400만원 미만	(52)	26.9	23.1	15.4	11.5	23.1	6,539.6
	400~500만원 미만	(19)	10.5	10.5	31.6	26.3	21.1	6,078.3
	500만원 이상	(10)	30.0	0.0	30.0	20.0	20.0	6,250.0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표 III-1-18〉 주택 임차료(월세)

(base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n=141,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141)	17.7	39.7	27.0	7.1	8.5	48.1
성별	남성	(82)	18.3	37.8	20.7	9.8	13.4	52.3
	여성	(59)	16.9	42.4	35.6	3.4	1.7	42.4
연령	20세~29세	(23)	8.7	47.8	34.8	8.7	0.0	45.0
	30세~39세	(58)	22.4	39.7	24.1	10.3	3.4	46.4
	40세~49세	(29)	13.8	37.9	34.5	3.4	10.3	49.4
	50세~59세	(23)	17.4	30.4	26.1	4.3	21.7	53.8
	60세 이상	(8)	25.0	50.0	0.0	0.0	25.0	49.3
수도권	수도권	(101)	15.8	34.7	30.7	8.9	9.9	51.4
	비수도권	(40)	22.5	52.5	17.5	2.5	5.0	4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0)	20.0	70.0	5.0	0.0	5.0	34.2
	2~3년제 대학	(14)	14.3	57.1	21.4	0.0	7.1	43.8
	4년제 대학	(93)	20.4	30.1	31.2	8.6	9.7	50.6
	대학원 석사 이상	(14)	0.0	42.9	35.7	14.3	7.1	56.1
혼인상태	미혼	(96)	15.6	43.8	28.1	7.3	5.2	44.9
	기혼	(37)	18.9	27.0	27.0	8.1	18.9	61.1
	별거·사별·이혼·기타	(8)	37.5	50.0	12.5	0.0	0.0	27.5
가구원수	1명	(86)	16.3	44.2	27.9	8.1	3.5	43.6
	2명	(25)	28.0	44.0	20.0	4.0	4.0	39.6
	3명	(19)	10.5	21.1	31.6	5.3	31.6	73.2
	4명 이상	(11)	18.2	27.3	27.3	9.1	18.2	59.8
자녀수	0명	(110)	17.3	43.6	27.3	7.3	4.5	43.8
	1명	(14)	21.4	14.3	21.4	7.1	35.7	78.8
	2명 이상	(17)	17.6	35.3	29.4	5.9	11.8	50.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1)	36.4	45.5	18.2	0.0	0.0	28.5
	200~300만원 미만	(49)	24.5	46.9	28.6	0.0	0.0	36.1
	300~400만원 미만	(52)	13.5	38.5	28.8	11.5	7.7	48.7
	400~500만원 미만	(19)	5.3	26.3	31.6	15.8	21.1	74.4
	500만원 이상	(10)	10.0	30.0	10.0	10.0	40.0	7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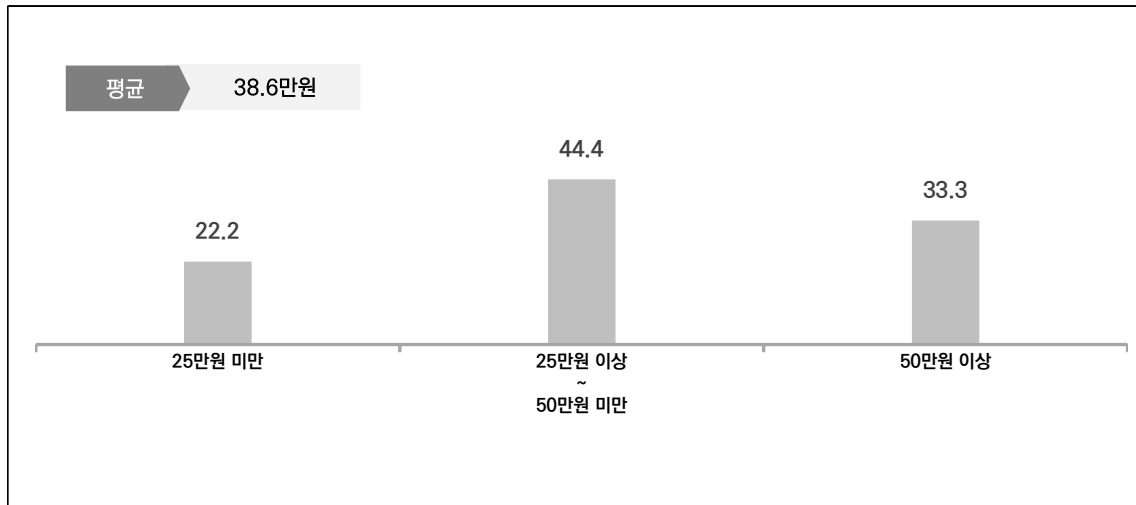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에 대해 물어본 결과,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4.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0만원 이상’(33.3%), ‘25만원 미만’(22.2%) 순으로 나타남. 보증금 없는 월세의 평균은 38.6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III-1-18〉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base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응답자, n=9, 단위: %)



〈표 III-1-19〉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base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응답자, n=9,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9)	22.2	44.4	33.3	38.6
성별	남성	(5)	20.0	20.0	60.0	48.0
	여성	(4)	25.0	75.0	0.0	26.8
연령	20세~29세	(5)	0.0	60.0	40.0	43.4
	30세~39세	(3)	33.3	33.3	33.3	36.7
	40세~49세	(1)	100.0	0.0	0.0	20.0
	50세~59세	(0)	-	-	-	-
	60세 이상	(0)	-	-	-	-
수도권	수도권	(6)	16.7	33.3	50.0	44.2
	비수도권	(3)	33.3	66.7	0.0	27.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50.0	0.0	50.0	45.0
	2~3년제 대학	(2)	0.0	100.0	0.0	25.0
	4년제 대학	(5)	20.0	40.0	40.0	41.4
	대학원 석사 이상	(0)	-	-	-	-
혼인상태	미혼	(8)	25.0	37.5	37.5	40.3
	기혼	(1)	0.0	100.0	0.0	25.0
	별거·사별·이혼·기타	(0)	-	-	-	-
가구원수	1명	(7)	28.6	28.6	42.9	42.4
	2명	(1)	0.0	100.0	0.0	25.0
	3명	(1)	0.0	100.0	0.0	25.0
	4명 이상	(0)	-	-	-	-
자녀수	0명	(9)	22.2	44.4	33.3	38.6
	1명	(0)	-	-	-	-
	2명 이상	(0)	-	-	-	-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	0.0	50.0	50.0	42.5
	200~300만원 미만	(3)	33.3	33.3	33.3	42.3
	300~400만원 미만	(4)	25.0	50.0	25.0	33.8
	400~500만원 미만	(0)	-	-	-	-
	500만원 이상	(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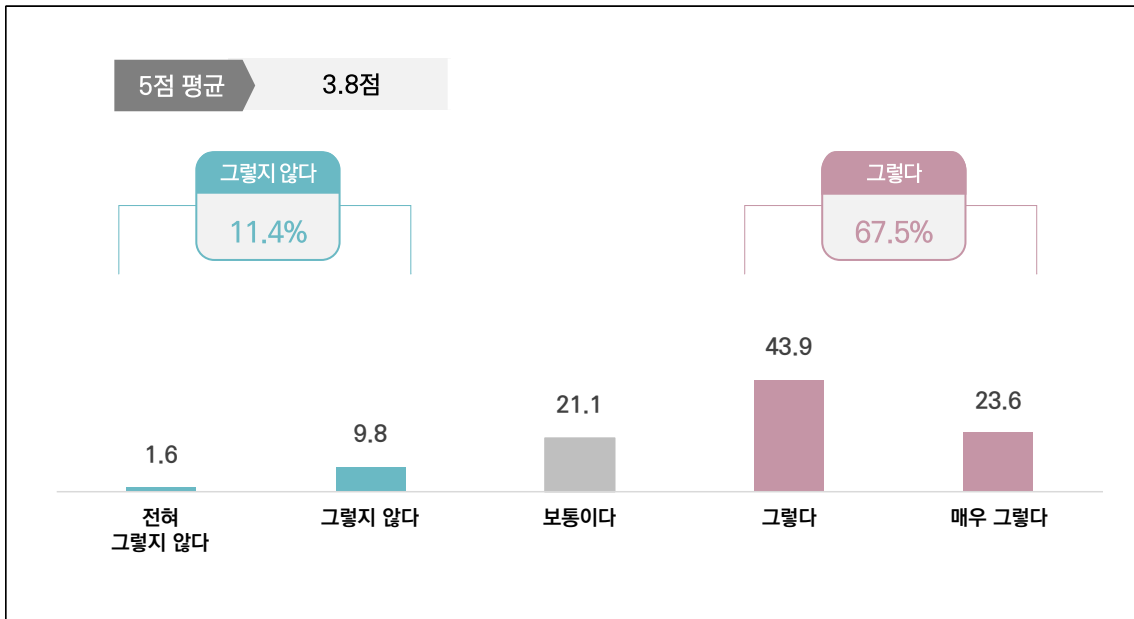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자가 소유 필요 여부

-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67.5%로 ‘그렇지 않다’(11.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8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64.6%, ‘여성’ 71.9%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76.0%, ‘30세~39세’ 76.8%, ‘40세~49세’ 68.9%, ‘50세~59세’ 43.6%, ‘60세 이상’ 4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69.7%, ‘비수도권’ 62.0%로 나타남

〈그림 III-1-19〉 자가 소유 필요 여부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20〉 자가 소유 필요 여부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1.6	9.8	21.1	43.9	23.6	11.4	67.5	3.8	
성별	남성	(223)	1.8	9.9	23.8	41.7	22.9	11.7	64.6	3.7
	여성	(146)	1.4	9.6	17.1	47.3	24.7	11.0	71.9	3.8
연령	20세~29세	(50)	2.0	6.0	16.0	40.0	36.0	8.0	76.0	4.0
	30세~39세	(138)	1.4	6.5	15.2	50.7	26.1	8.0	76.8	3.9
	40세~49세	(106)	0.9	9.4	20.8	43.4	25.5	10.4	68.9	3.8
	50세~59세	(55)	1.8	20.0	34.5	32.7	10.9	21.8	43.6	3.3
	60세 이상	(20)	5.0	15.0	40.0	40.0	0.0	20.0	40.0	3.2
수도권	수도권	(261)	1.5	9.2	19.5	45.6	24.1	10.7	69.7	3.8
	비수도권	(108)	1.9	11.1	25.0	39.8	22.2	13.0	62.0	3.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8	19.4	27.8	27.8	22.2	22.2	50.0	3.5
	2~3년제 대학	(38)	0.0	13.2	15.8	60.5	10.5	13.2	71.1	3.7
	4년제 대학	(260)	1.9	6.2	21.9	45.0	25.0	8.1	70.0	3.9
	대학원 석사 이상	(35)	0.0	22.9	14.3	34.3	28.6	22.9	62.9	3.7
혼인상태	미혼	(197)	1.5	9.1	21.3	43.7	24.4	10.7	68.0	3.8
	기혼	(157)	1.9	8.9	21.0	45.2	22.9	10.8	68.2	3.8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26.7	20.0	33.3	20.0	26.7	53.3	3.5
가구원수	1명	(169)	1.8	9.5	21.9	42.0	24.9	11.2	66.9	3.8
	2명	(70)	4.3	8.6	21.4	40.0	25.7	12.9	65.7	3.7
	3명	(59)	0.0	11.9	15.3	54.2	18.6	11.9	72.9	3.8
	4명 이상	(71)	0.0	9.9	23.9	43.7	22.5	9.9	66.2	3.8
자녀수	0명	(242)	2.1	9.5	20.7	42.1	25.6	11.6	67.8	3.8
	1명	(46)	0.0	8.7	19.6	54.3	17.4	8.7	71.7	3.8
	2명 이상	(81)	1.2	11.1	23.5	43.2	21.0	12.3	64.2	3.7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12.5	25.0	50.0	12.5	12.5	62.5	3.6
	200~300만원 미만	(103)	2.9	10.7	22.3	38.8	25.2	13.6	64.1	3.7
	300~400만원 미만	(135)	1.5	11.1	17.8	45.9	23.7	12.6	69.6	3.8
	400~500만원 미만	(73)	0.0	6.8	21.9	49.3	21.9	6.8	71.2	3.9
	500만원 이상	(42)	2.4	7.1	26.2	38.1	26.2	9.5	64.3	3.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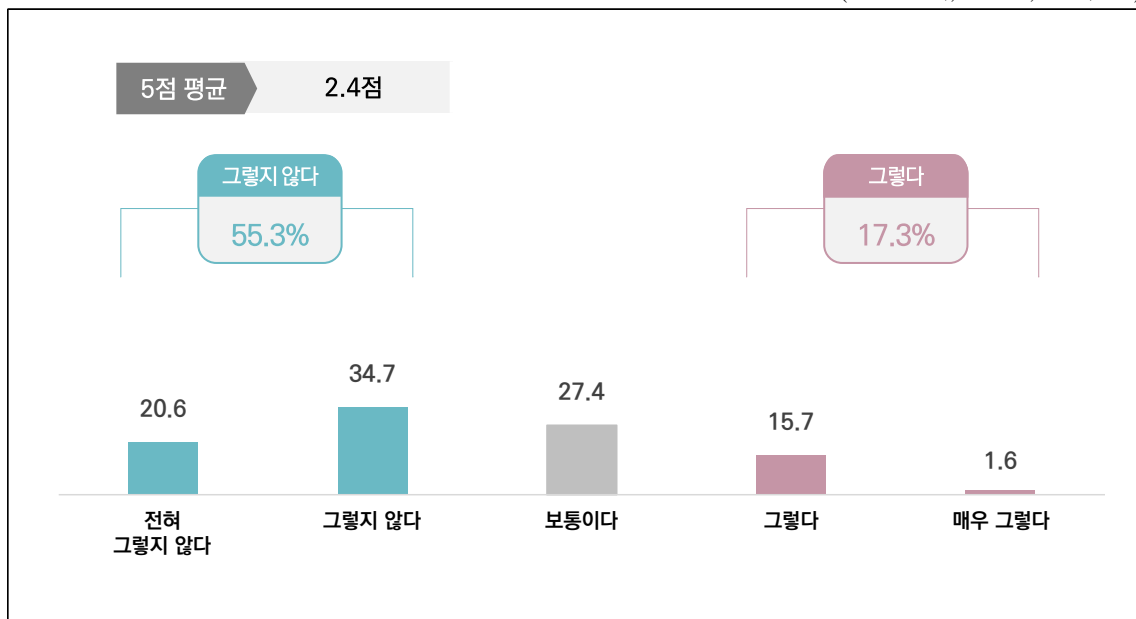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 ‘집값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55.3%로 ‘그렇다’(17.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4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가 53.8%, ‘여성’ 57.5%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지 않다’가 54.0%, ‘30세~39세’ 60.9%, ‘40세~49세’ 50.9%, ‘50세~59세’ 54.5%, ‘60세 이상’ 45.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가 58.6%, ‘비수도권’ 47.2%로 나타남

〈그림 III-1-20〉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21〉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20.6	34.7	27.4	15.7	1.6	55.3	17.3	2.4
성별	남성	(223)	16.6	37.2	29.6	14.8	1.8	53.8	16.6	2.5
	여성	(146)	26.7	30.8	24.0	17.1	1.4	57.5	18.5	2.4
연령	20세~29세	(50)	34.0	20.0	18.0	24.0	4.0	54.0	28.0	2.4
	30세~39세	(138)	21.7	39.1	28.3	9.4	1.4	60.9	10.9	2.3
	40세~49세	(106)	15.1	35.8	29.2	18.9	0.9	50.9	19.8	2.5
	50세~59세	(55)	16.4	38.2	23.6	20.0	1.8	54.5	21.8	2.5
	60세 이상	(20)	20.0	25.0	45.0	10.0	0.0	45.0	10.0	2.5
수도권	수도권	(261)	22.6	36.0	25.7	14.6	1.1	58.6	15.7	2.4
	비수도권	(108)	15.7	31.5	31.5	18.5	2.8	47.2	21.3	2.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36.1	33.3	11.1	16.7	2.8	69.4	19.4	2.2
	2~3년제 대학	(38)	15.8	31.6	36.8	15.8	0.0	47.4	15.8	2.5
	4년제 대학	(260)	18.5	35.4	28.1	16.5	1.5	53.8	18.1	2.5
	대학원 석사 이상	(35)	25.7	34.3	28.6	8.6	2.9	60.0	11.4	2.3
혼인상태	미혼	(197)	25.4	34.0	25.4	13.7	1.5	59.4	15.2	2.3
	기혼	(157)	15.3	36.3	29.3	17.8	1.3	51.6	19.1	2.5
	별거·사별·이혼·기타	(15)	13.3	26.7	33.3	20.0	6.7	40.0	26.7	2.8
가구원수	1명	(169)	26.0	34.9	24.9	13.0	1.2	60.9	14.2	2.3
	2명	(70)	17.1	37.1	25.7	15.7	4.3	54.3	20.0	2.5
	3명	(59)	15.3	32.2	28.8	23.7	0.0	47.5	23.7	2.6
	4명 이상	(71)	15.5	33.8	33.8	15.5	1.4	49.3	16.9	2.5
자녀수	0명	(242)	23.6	36.4	24.8	13.6	1.7	59.9	15.3	2.3
	1명	(46)	15.2	32.6	28.3	21.7	2.2	47.8	23.9	2.6
	2명 이상	(81)	14.8	30.9	34.6	18.5	1.2	45.7	19.8	2.6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18.8	25.0	31.3	25.0	0.0	43.8	25.0	2.6
	200~300만원 미만	(103)	30.1	30.1	28.2	9.7	1.9	60.2	11.7	2.2
	300~400만원 미만	(135)	17.0	43.7	22.2	15.6	1.5	60.7	17.0	2.4
	400~500만원 미만	(73)	21.9	28.8	31.5	15.1	2.7	50.7	17.8	2.5
	500만원 이상	(42)	7.1	31.0	33.3	28.6	0.0	38.1	28.6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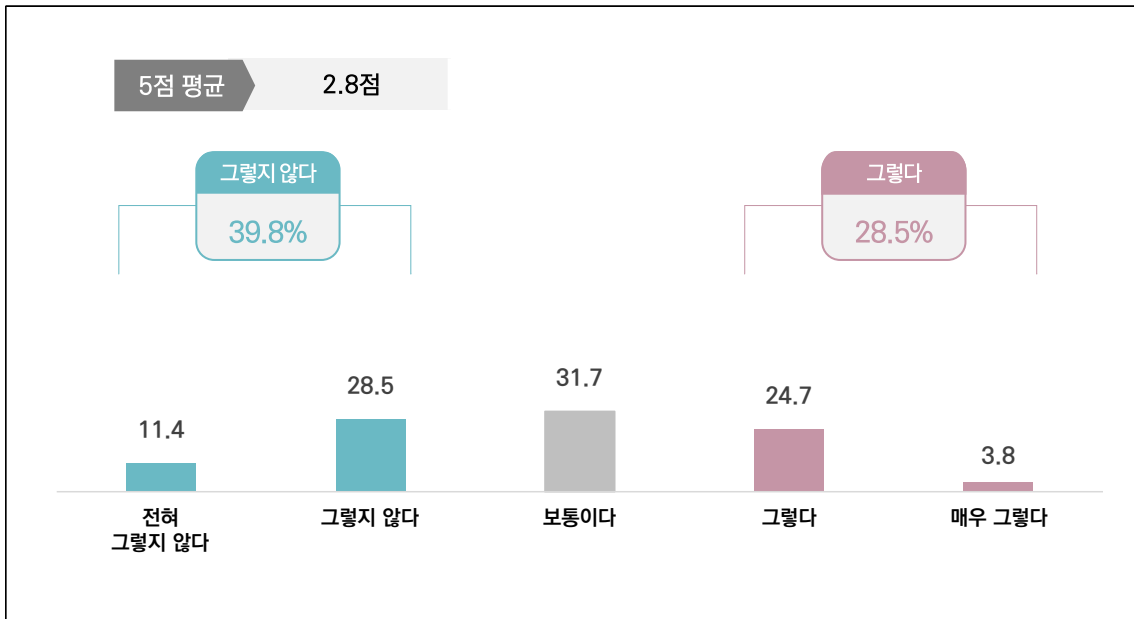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39.8%로 ‘그렇다’(28.5%) 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가 38.1%, ‘여성’ 42.5%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지 않다’가 34.0%, ‘30세~39세’ 36.2%, ‘40세~49세’ 41.5%, ‘50세~59세’ 50.9%, ‘60세 이상’ 4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가 42.1%, ‘비수도권’ 34.3%로 나타남

〈그림 III-1-21〉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22〉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11.4	28.5	31.7	24.7	3.8	39.8	28.5	2.8
성별	남성	(223)	9.4	28.7	32.7	25.6	3.6	38.1	29.1	2.9
	여성	(146)	14.4	28.1	30.1	23.3	4.1	42.5	27.4	2.7
연령	20세~29세	(50)	12.0	22.0	22.0	32.0	12.0	34.0	44.0	3.1
	30세~39세	(138)	13.8	22.5	36.2	25.4	2.2	36.2	27.5	2.8
	40세~49세	(106)	8.5	33.0	31.1	22.6	4.7	41.5	27.4	2.8
	50세~59세	(55)	9.1	41.8	27.3	21.8	0.0	50.9	21.8	2.6
	60세 이상	(20)	15.0	25.0	40.0	20.0	0.0	40.0	20.0	2.7
수도권	수도권	(261)	12.3	29.9	30.7	23.8	3.4	42.1	27.2	2.8
	비수도권	(108)	9.3	25.0	34.3	26.9	4.6	34.3	31.5	2.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30.6	30.6	25.0	8.3	5.6	61.1	13.9	2.3
	2~3년제 대학	(38)	10.5	28.9	28.9	28.9	2.6	39.5	31.6	2.8
	4년제 대학	(260)	8.8	27.7	33.1	26.5	3.8	36.5	30.4	2.9
	대학원 석사 이상	(35)	11.4	31.4	31.4	22.9	2.9	42.9	25.7	2.7
혼인상태	미혼	(197)	10.7	27.9	35.0	22.8	3.6	38.6	26.4	2.8
	기혼	(157)	11.5	31.2	26.8	27.4	3.2	42.7	30.6	2.8
	별거·사별·이혼·기타	(15)	20.0	6.7	40.0	20.0	13.3	26.7	33.3	3.0
가구원수	1명	(169)	10.7	29.6	35.5	20.7	3.6	40.2	24.3	2.8
	2명	(70)	20.0	21.4	30.0	22.9	5.7	41.4	28.6	2.7
	3명	(59)	10.2	25.4	28.8	33.9	1.7	35.6	35.6	2.9
	4명 이상	(71)	5.6	35.2	26.8	28.2	4.2	40.8	32.4	2.9
자녀수	0명	(242)	12.4	28.1	32.6	23.6	3.3	40.5	26.9	2.8
	1명	(46)	13.0	21.7	32.6	28.3	4.3	34.8	32.6	2.9
	2명 이상	(81)	7.4	33.3	28.4	25.9	4.9	40.7	30.9	2.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6.3	25.0	37.5	31.3	0.0	31.3	31.3	2.9
	200~300만원 미만	(103)	14.6	27.2	32.0	20.4	5.8	41.7	26.2	2.8
	300~400만원 미만	(135)	13.3	28.1	30.4	24.4	3.7	41.5	28.1	2.8
	400~500만원 미만	(73)	9.6	27.4	34.2	24.7	4.1	37.0	28.8	2.9
	500만원 이상	(42)	2.4	35.7	28.6	33.3	0.0	38.1	33.3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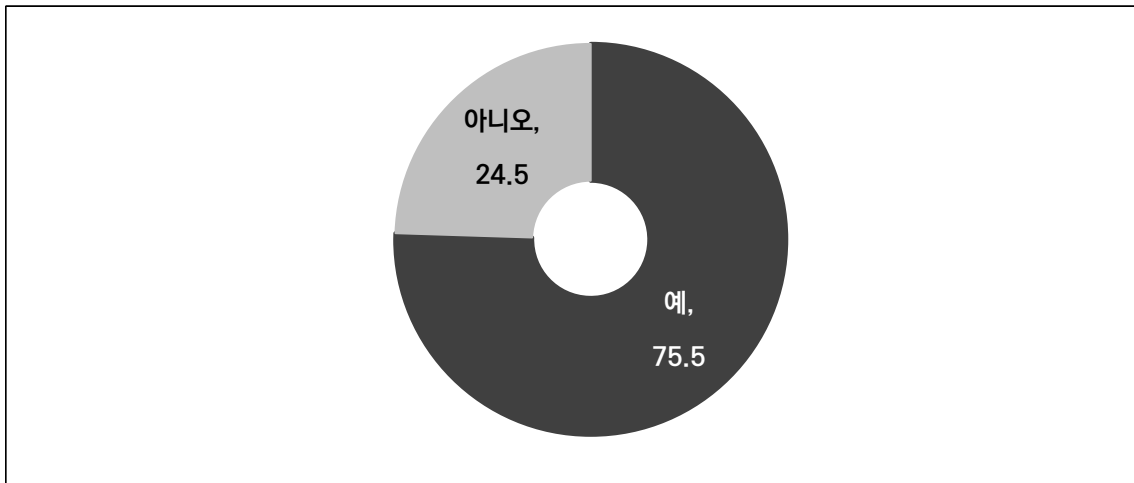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75.5%가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78.1%)의 자산 보유율이 ‘남성’(73.6%)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39세’(81.1%)의 자산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75.8%)과 ‘비수도권’(74.6%)의 자산 보유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22〉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249, 단위: %)



〈표 III-1-23〉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24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249)	75.5	24.5
성별	남성	(144)	73.6	26.4
	여성	(105)	78.1	21.9
연령	20세~29세	(38)	71.1	28.9
	30세~39세	(106)	81.1	18.9
	40세~49세	(73)	80.8	19.2
	50세~59세	(24)	50.0	50.0
	60세 이상	(8)	50.0	50.0
수도권	수도권	(182)	75.8	24.2
	비수도권	(67)	74.6	25.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	61.1	38.9
	2~3년제 대학	(27)	77.8	22.2
	4년제 대학	(182)	78.0	22.0
	대학원 석사 이상	(22)	63.6	36.4
혼인상태	미혼	(134)	73.9	26.1
	기혼	(107)	76.6	23.4
	별거·사별·이혼·기타	(8)	87.5	12.5
가구원수	1명	(113)	70.8	29.2
	2명	(46)	87.0	13.0
	3명	(43)	83.7	16.3
	4명 이상	(47)	68.1	31.9
자녀수	0명	(164)	76.2	23.8
	1명	(33)	81.8	18.2
	2명 이상	(52)	69.2	30.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60.0	40.0
	200~300만원 미만	(66)	65.2	34.8
	300~400만원 미만	(94)	81.9	18.1
	400~500만원 미만	(52)	76.9	23.1
	500만원 이상	(27)	81.5	18.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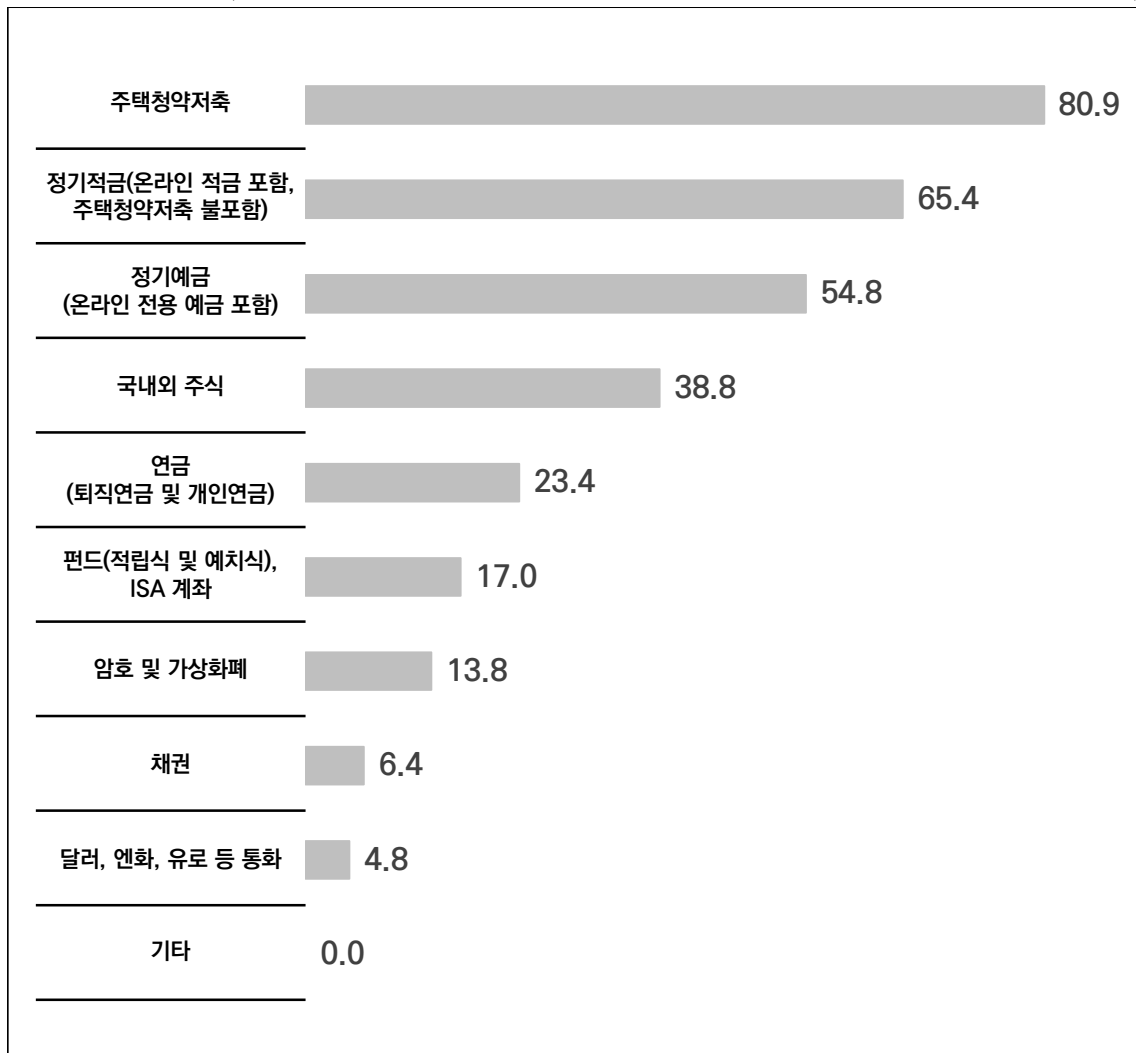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주택청약저축’이 80.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주택청약저축’이 ‘남성’ 80.2%, ‘여성’ 81.7%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택청약저축’이 ‘20세~29세’ 77.8%, ‘30세~39세’ 81.4%, ‘40세~49세’ 76.3%, ‘50세~59세’ 100.0%, ‘60세 이상’ 10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주택청약저축’이 ‘수도권’ 82.6%, ‘비수도권’ 76.0%로 나타남

〈그림 III-1-23〉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188, 단위: %)



〈표 III-1-24〉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188,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188)	80.9	65.4	54.8	38.8	23.4	17.0	13.8	6.4	4.8	0.0	
성별	남성	(106)	80.2	60.4	50.9	47.2	28.3	20.8	17.9	5.7	5.7	0.0
	여성	(82)	81.7	72.0	59.8	28.0	17.1	12.2	8.5	7.3	3.7	0.0
연령	20세~29세	(27)	77.8	66.7	40.7	37.0	11.1	22.2	11.1	7.4	14.8	0.0
	30세~39세	(86)	81.4	65.1	57.0	41.9	26.7	18.6	19.8	5.8	4.7	0.0
	40세~49세	(59)	76.3	69.5	59.3	37.3	27.1	15.3	10.2	8.5	1.7	0.0
	50세~59세	(12)	100.0	58.3	50.0	25.0	16.7	8.3	0.0	0.0	0.0	0.0
	60세 이상	(4)	100.0	25.0	50.0	50.0	0.0	0.0	0.0	0.0	0.0	0.0
수도권	수도권	(138)	82.6	68.1	58.0	40.6	20.3	18.1	13.0	8.0	5.1	0.0
	비수도권	(50)	76.0	58.0	46.0	34.0	32.0	14.0	16.0	2.0	4.0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	90.9	54.5	45.5	18.2	18.2	0.0	0.0	0.0	0.0	0.0
	2~3년제 대학	(21)	81.0	47.6	38.1	23.8	19.0	9.5	4.8	0.0	0.0	0.0
	4년제 대학	(142)	80.3	65.5	56.3	42.3	24.6	19.0	16.9	7.7	6.3	0.0
	대학원 석사 이상	(14)	78.6	100.0	71.4	42.9	21.4	21.4	7.1	7.1	0.0	0.0
혼인상태	미혼	(99)	76.8	66.7	48.5	38.4	20.2	16.2	11.1	6.1	7.1	0.0
	기혼	(82)	84.1	69.5	63.4	36.6	26.8	19.5	17.1	7.3	2.4	0.0
	별거·사별·이혼·기타	(7)	100.0	0.0	42.9	71.4	28.6	0.0	14.3	0.0	0.0	0.0
가구원수	1명	(80)	77.5	67.5	47.5	35.0	17.5	17.5	8.8	5.0	7.5	0.0
	2명	(40)	85.0	60.0	50.0	50.0	25.0	15.0	15.0	5.0	2.5	0.0
	3명	(36)	86.1	61.1	63.9	36.1	22.2	16.7	16.7	11.1	0.0	0.0
	4명 이상	(32)	78.1	71.9	68.8	37.5	37.5	18.8	21.9	6.3	6.3	0.0
자녀수	0명	(125)	79.2	67.2	47.2	40.0	20.8	16.8	12.0	5.6	6.4	0.0
	1명	(27)	85.2	59.3	70.4	29.6	22.2	18.5	14.8	11.1	0.0	0.0
	2명 이상	(36)	83.3	63.9	69.4	41.7	33.3	16.7	19.4	5.6	2.8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6)	83.3	50.0	33.3	50.0	16.7	33.3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43)	74.4	58.1	46.5	32.6	11.6	20.9	14.0	4.7	9.3	0.0
	300~400만원 미만	(77)	83.1	64.9	55.8	42.9	31.2	14.3	16.9	7.8	2.6	0.0
	400~500만원 미만	(40)	80.0	67.5	60.0	37.5	22.5	17.5	15.0	5.0	2.5	0.0
	500만원 이상	(22)	86.4	81.8	63.6	36.4	22.7	13.6	4.5	9.1	9.1	0.0

- ① 주택청약저축
 - ② 정기적금(온라인 전용 적금 포함, 주택청약저축 불포함)
 - ③ 정기예금(온라인 전용 예금 포함)
 - ④ 국내외 주식
 - ⑤ 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 ⑥ 펀드(적립식 및 예치식), ISA 계좌
 - ⑦ 압호 및 가상화폐
 - ⑧ 채권
 - ⑨ 달러, 엔화, 유로 등 통화
 - ⑩ 기타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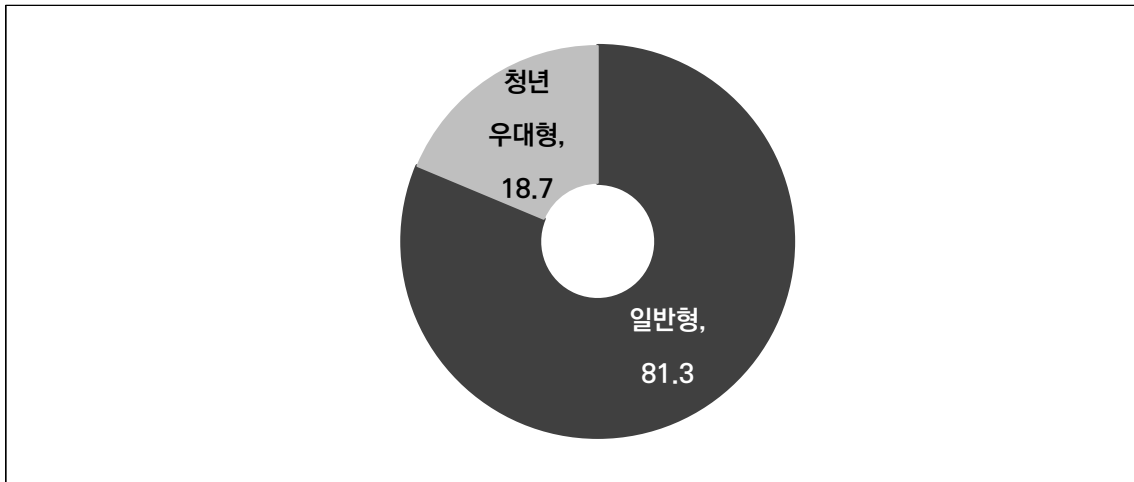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입자 중 81.3%가 ‘일반형’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4.8%)의 일반형 가입률이 ‘여성’(76.0%)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은 응답자 전원이 ‘일반형’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비수도권’(83.3%)의 일반형 가입률이 ‘수도권’(80.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2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2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일반형 (주택청약저축)	청년우대형 (청년우대형/청년주택드림청약)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81.3	18.7
성별	남성	(223)	84.8	15.2
	여성	(146)	76.0	24.0
연령	20세~29세	(50)	48.0	52.0
	30세~39세	(138)	68.8	31.2
	40세~49세	(106)	100.0	0.0
	50세~59세	(55)	100.0	0.0
	60세 이상	(20)	100.0	0.0
수도권	수도권	(261)	80.5	19.5
	비수도권	(108)	83.3	16.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83.3	16.7
	2~3년제 대학	(38)	84.2	15.8
	4년제 대학	(260)	80.4	19.6
	대학원 석사 이상	(35)	82.9	17.1
혼인상태	미혼	(197)	72.6	27.4
	기혼	(157)	91.1	8.9
	별거·사별·이혼·기타	(15)	93.3	6.7
가구원수	1명	(169)	72.2	27.8
	2명	(70)	84.3	15.7
	3명	(59)	89.8	10.2
	4명 이상	(71)	93.0	7.0
자녀수	0명	(242)	73.6	26.4
	1명	(46)	95.7	4.3
	2명 이상	(81)	96.3	3.7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93.8	6.3
	200~300만원 미만	(103)	69.9	30.1
	300~400만원 미만	(135)	80.0	20.0
	400~500만원 미만	(73)	90.4	9.6
	500만원 이상	(42)	92.9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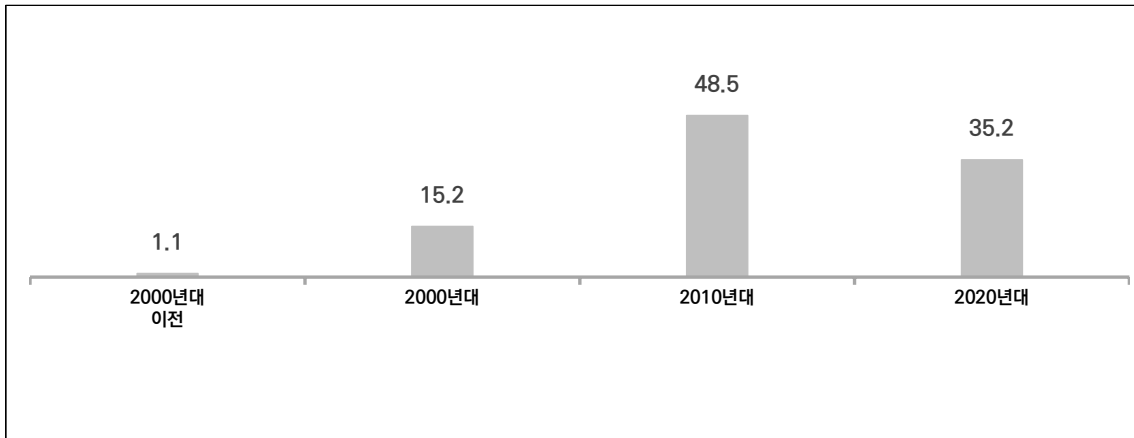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2010년대’가 48.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20년대’(35.2%), ‘2000년대’(15.2%), ‘2000년대 이전’(1.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52.0%)과 ‘여성’(43.2%) 모두 ‘2010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52.0%), ‘50세~59세’(40.0%), ‘60세 이상’(50.0%)은 ‘2020년대’에서, ‘30세~39세’(56.5%), ‘40세~49세’(50.0%)는 ‘2010년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8.7%)과 ‘비수도권’(48.1%) 모두 ‘2010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2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2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1.1	15.2	48.5	35.2
성별	남성	(223)	1.8	14.8	52.0	31.4
	여성	(146)	0.0	15.8	43.2	41.1
연령	20세~29세	(50)	0.0	10.0	38.0	52.0
	30세~39세	(138)	0.0	14.5	56.5	29.0
	40세~49세	(106)	0.0	19.8	50.0	30.2
	50세~59세	(55)	5.5	16.4	38.2	40.0
	60세 이상	(20)	5.0	5.0	40.0	50.0
수도권	수도권	(261)	1.5	16.9	48.7	33.0
	비수도권	(108)	0.0	11.1	48.1	40.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8	8.3	41.7	47.2
	2~3년제 대학	(38)	2.6	21.1	42.1	34.2
	4년제 대학	(260)	0.4	14.2	51.5	33.8
	대학원 석사 이상	(35)	2.9	22.9	40.0	34.3
혼인상태	미혼	(197)	0.0	14.7	50.3	35.0
	기혼	(157)	2.5	17.2	46.5	33.8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0.0	46.7	53.3
가구원수	1명	(169)	0.0	11.8	52.1	36.1
	2명	(70)	1.4	14.3	45.7	38.6
	3명	(59)	1.7	22.0	52.5	23.7
	4명 이상	(71)	2.8	18.3	39.4	39.4
자녀수	0명	(242)	0.0	14.0	50.4	35.5
	1명	(46)	0.0	19.6	54.3	26.1
	2명 이상	(81)	4.9	16.0	39.5	39.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0.0	43.8	56.3
	200~300만원 미만	(103)	0.0	9.7	44.7	45.6
	300~400만원 미만	(135)	0.7	12.6	54.8	31.9
	400~500만원 미만	(73)	2.7	24.7	45.2	27.4
	500만원 이상	(42)	2.4	26.2	45.2	2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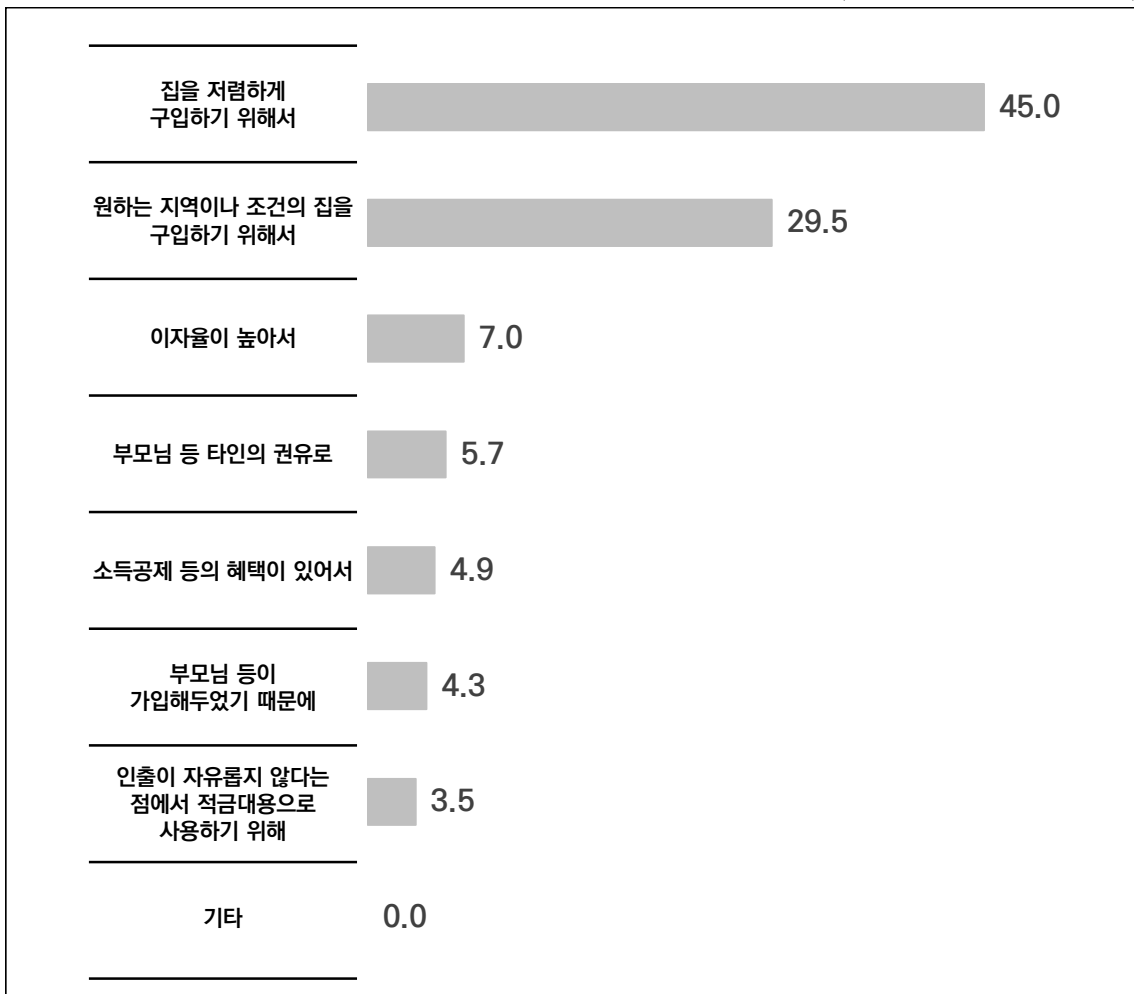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가 45.0%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가 ‘남성’ 47.1%, ‘여성’ 41.8%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가 ‘20세~29세’ 44.0%, ‘30세~39세’ 42.8%, ‘40세~49세’ 48.1%, ‘50세~59세’ 41.8%, ‘60세 이상’ 55.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가 ‘수도권’ 45.6%, ‘비수도권’ 43.5%로 나타남

〈그림 III-1-2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2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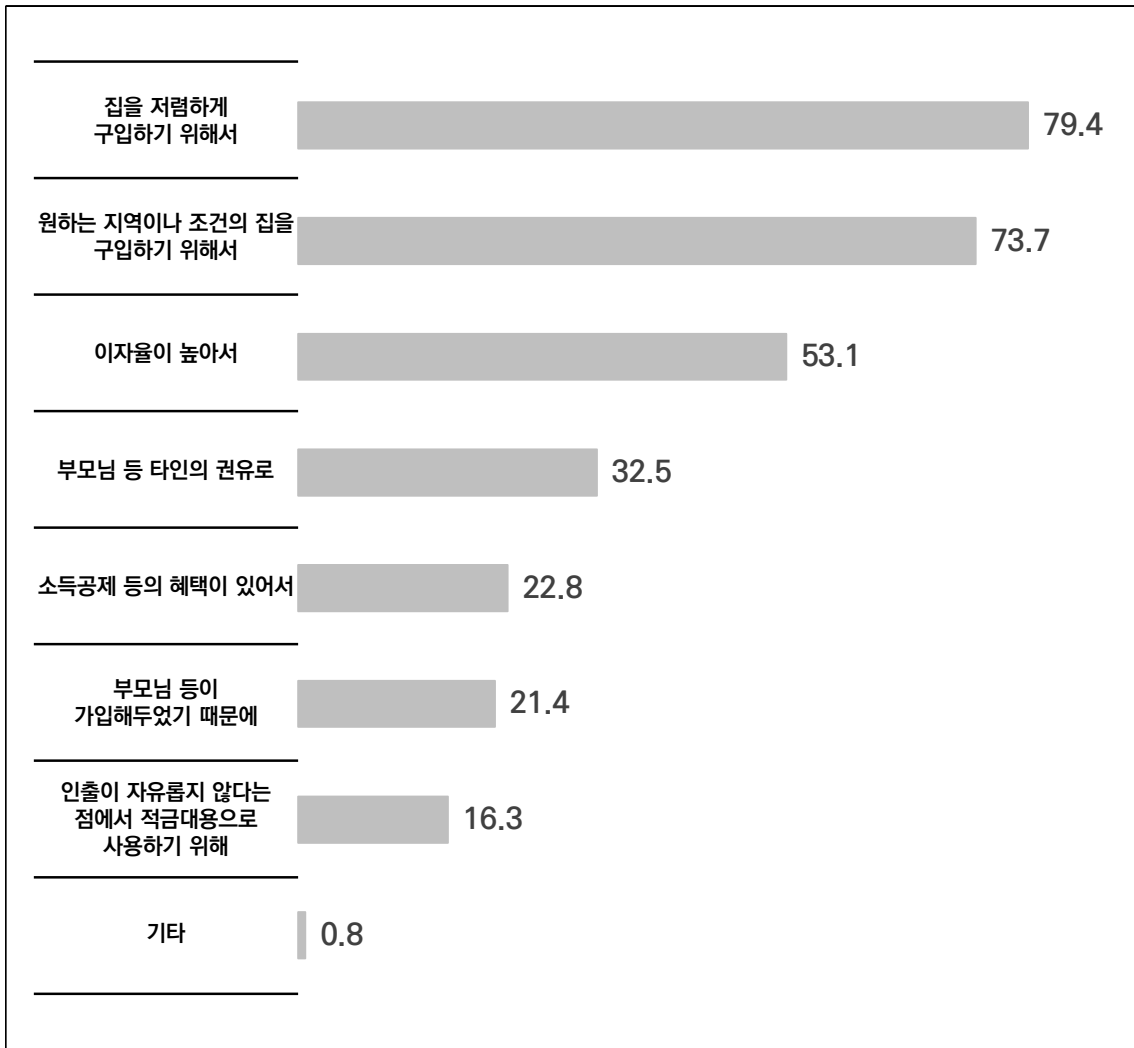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45.0	29.5	7.0	5.7	4.9	4.3	3.5	0.0
성별	남성	(223)	47.1	31.8	7.2	2.7	4.5	4.0	2.7	0.0
	여성	(146)	41.8	26.0	6.8	10.3	5.5	4.8	4.8	0.0
연령	20세~29세	(50)	44.0	22.0	6.0	18.0	2.0	4.0	4.0	0.0
	30세~39세	(138)	42.8	29.7	6.5	8.0	2.9	6.5	3.6	0.0
	40세~49세	(106)	48.1	29.2	8.5	0.9	7.5	3.8	1.9	0.0
	50세~59세	(55)	41.8	38.2	9.1	0.0	3.6	1.8	5.5	0.0
	60세 이상	(20)	55.0	25.0	0.0	0.0	15.0	0.0	5.0	0.0
수도권	수도권	(261)	45.6	31.0	5.7	6.1	4.6	3.8	3.1	0.0
	비수도권	(108)	43.5	25.9	10.2	4.6	5.6	5.6	4.6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50.0	16.7	11.1	0.0	2.8	5.6	13.9	0.0
	2~3년제 대학	(38)	42.1	34.2	2.6	10.5	7.9	0.0	2.6	0.0
	4년제 대학	(260)	46.2	30.4	6.9	5.4	4.6	4.2	2.3	0.0
	대학원 석사 이상	(35)	34.3	31.4	8.6	8.6	5.7	8.6	2.9	0.0
혼인상태	미혼	(197)	43.1	27.9	5.1	9.1	4.6	6.6	3.6	0.0
	기혼	(157)	48.4	31.8	8.3	1.9	4.5	1.9	3.2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5)	33.3	26.7	20.0	0.0	13.3	0.0	6.7	0.0
가구원수	1명	(169)	43.8	26.0	5.3	8.9	4.7	7.1	4.1	0.0
	2명	(70)	42.9	30.0	12.9	4.3	5.7	1.4	2.9	0.0
	3명	(59)	50.8	28.8	10.2	3.4	5.1	1.7	0.0	0.0
	4명 이상	(71)	45.1	38.0	2.8	1.4	4.2	2.8	5.6	0.0
자녀수	0명	(242)	43.4	28.5	7.4	7.9	3.7	5.8	3.3	0.0
	1명	(46)	52.2	26.1	8.7	2.2	8.7	0.0	2.2	0.0
	2명 이상	(81)	45.7	34.6	4.9	1.2	6.2	2.5	4.9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43.8	18.8	6.3	0.0	12.5	0.0	18.8	0.0
	200~300만원 미만	(103)	47.6	25.2	3.9	5.8	6.8	4.9	5.8	0.0
	300~400만원 미만	(135)	40.7	31.1	9.6	7.4	3.7	5.2	2.2	0.0
	400~500만원 미만	(73)	56.2	24.7	6.8	4.1	5.5	1.4	1.4	0.0
	500만원 이상	(42)	33.3	47.6	7.1	4.8	0.0	7.1	0.0	0.0

- ①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 ②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 ③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서
 - ④ 부모님 등이 가입해두었기 때문에
 - ⑤ 이자율이 높아서
 - ⑥ 부모님 등 타인의 권유로
 - ⑦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적금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⑧ 기타: 장기전세위해서, 주거지안정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그림 III-1-2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28〉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79.4	73.7	53.1	32.5	22.8	21.4	16.3	0.8
성별	남성	(223)	78.5	75.3	55.2	31.8	22.4	21.5	14.3	0.9
	여성	(146)	80.8	71.2	50.0	33.6	23.3	21.2	19.2	0.7
연령	20세~29세	(50)	72.0	70.0	50.0	28.0	20.0	22.0	38.0	0.0
	30세~39세	(138)	81.9	64.5	55.8	30.4	22.5	26.8	17.4	0.7
	40세~49세	(106)	81.1	79.2	46.2	33.0	23.6	23.6	12.3	0.9
	50세~59세	(55)	83.6	87.3	60.0	36.4	18.2	9.1	5.5	0.0
	60세 이상	(20)	60.0	80.0	60.0	45.0	40.0	5.0	5.0	5.0
수도권	수도권	(261)	81.6	73.9	53.3	32.2	20.3	20.7	17.2	0.8
	비수도권	(108)	74.1	73.1	52.8	33.3	28.7	23.1	13.9	0.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75.0	75.0	38.9	55.6	25.0	27.8	2.8	0.0
	2~3년제 대학	(38)	71.1	73.7	42.1	34.2	42.1	7.9	26.3	2.6
	4년제 대학	(260)	80.4	73.8	55.4	30.4	20.0	22.7	16.9	0.4
	대학원 석사 이상	(35)	85.7	71.4	62.9	22.9	20.0	20.0	14.3	2.9
혼인상태	미혼	(197)	78.7	69.0	52.8	29.9	26.4	24.4	17.8	1.0
	기혼	(157)	79.0	81.5	53.5	34.4	17.2	18.5	15.3	0.6
	별거·사별·이혼·기타	(15)	93.3	53.3	53.3	46.7	33.3	13.3	6.7	0.0
가구원수	1명	(169)	77.5	69.8	53.3	32.0	27.8	23.1	15.4	1.2
	2명	(70)	82.9	74.3	50.0	37.1	17.1	21.4	17.1	0.0
	3명	(59)	78.0	76.3	62.7	28.8	20.3	18.6	15.3	0.0
	4명 이상	(71)	81.7	80.3	47.9	32.4	18.3	19.7	18.3	1.4
자녀수	0명	(242)	79.8	70.7	52.9	31.4	23.6	23.6	17.4	0.8
	1명	(46)	73.9	82.6	60.9	37.0	19.6	15.2	10.9	0.0
	2명 이상	(81)	81.5	77.8	49.4	33.3	22.2	18.5	16.0	1.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81.3	75.0	43.8	56.3	31.3	6.3	6.3	0.0
	200~300만원 미만	(103)	76.7	71.8	43.7	37.9	29.1	23.3	15.5	1.9
	300~400만원 미만	(135)	81.5	68.1	55.6	26.7	23.7	22.2	22.2	0.0
	400~500만원 미만	(73)	75.3	79.5	57.5	37.0	17.8	20.5	12.3	0.0
	500만원 이상	(42)	85.7	85.7	64.3	21.4	9.5	21.4	9.5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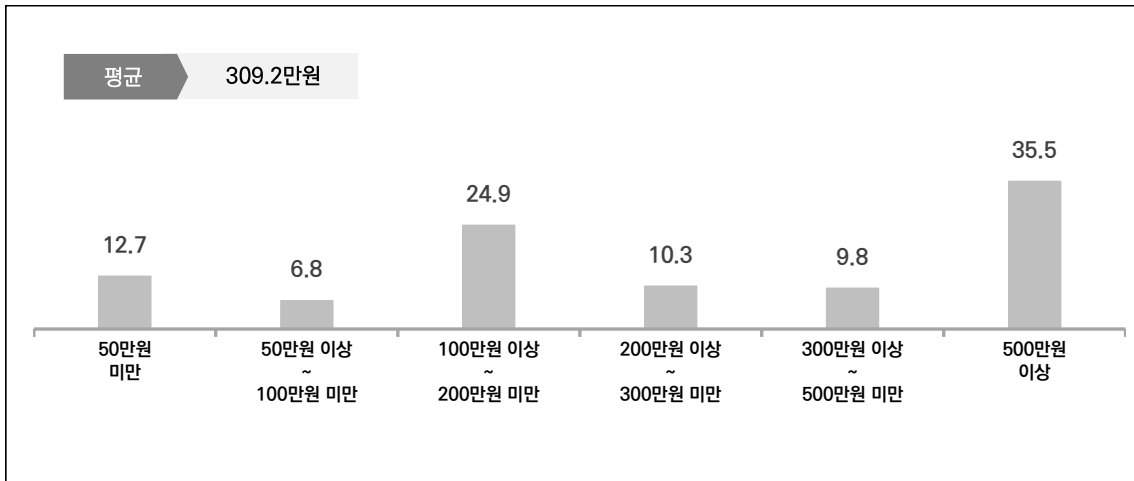
- ①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 ②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 ③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서
- ④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적금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⑤ 이자율이 높아서
- ⑥ 부모님 등 타인의 권유로
- ⑦ 부모님 등이 가입해두었기 때문에
- ⑧ 기타: 장기전세위해서, 주거지안정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500만원 이상’이 35.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4.9%), ‘50만원 미만’(12.7%) 순으로 나타남.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의 평균은 309.2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6.8%), ‘여성’(33.6%)에서 각각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5.6%), ‘비수도권’(35.2%)에서 각각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28〉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29〉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12.7	6.8	24.9	10.3	9.8	35.5	309.2
성별	남성	(223)	10.8	7.2	24.2	9.4	11.7	36.8	322.3
	여성	(146)	15.8	6.2	26.0	11.6	6.8	33.6	289.3
연령	20세~29세	(50)	20.0	8.0	28.0	10.0	8.0	26.0	262.0
	30세~39세	(138)	10.9	6.5	29.0	12.3	10.1	31.2	302.6
	40세~49세	(106)	13.2	6.6	17.0	8.5	9.4	45.3	341.4
	50세~59세	(55)	9.1	7.3	29.1	7.3	9.1	38.2	314.1
	60세 이상	(20)	15.0	5.0	20.0	15.0	15.0	30.0	288.5
수도권	수도권	(261)	12.3	8.8	25.7	8.4	9.2	35.6	310.8
	비수도권	(108)	13.9	1.9	23.1	14.8	11.1	35.2	305.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5.0	8.3	16.7	11.1	5.6	33.3	260.6
	2~3년제 대학	(38)	13.2	7.9	23.7	18.4	18.4	18.4	242.9
	4년제 대학	(260)	11.2	5.8	26.9	9.6	8.8	37.7	324.8
	대학원 석사 이상	(35)	11.4	11.4	20.0	5.7	11.4	40.0	315.2
혼인상태	미혼	(197)	13.2	8.1	26.9	8.6	8.6	34.5	303.2
	기혼	(157)	11.5	4.5	24.2	12.1	11.5	36.3	316.6
	별거·사별·이혼·기타	(15)	20.0	13.3	6.7	13.3	6.7	40.0	311.6
가구원수	1명	(169)	15.4	8.9	24.3	8.3	7.7	35.5	302.7
	2명	(70)	15.7	2.9	22.9	14.3	14.3	30.0	294.4
	3명	(59)	6.8	5.1	28.8	5.1	10.2	44.1	345.0
	4명 이상	(71)	8.5	7.0	25.4	15.5	9.9	33.8	309.5
자녀수	0명	(242)	14.9	6.6	26.0	9.9	9.5	33.1	297.7
	1명	(46)	4.3	6.5	21.7	8.7	10.9	47.8	368.0
	2명 이상	(81)	11.1	7.4	23.5	12.3	9.9	35.8	310.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31.3	18.8	6.3	12.5	0.0	31.3	256.6
	200~300만원 미만	(103)	22.3	3.9	22.3	12.6	7.8	31.1	265.2
	300~400만원 미만	(135)	7.4	5.2	26.7	9.6	12.6	38.5	347.4
	400~500만원 미만	(73)	8.2	9.6	27.4	9.6	11.0	34.2	305.4
	500만원 이상	(42)	7.1	9.5	28.6	7.1	7.1	40.5	32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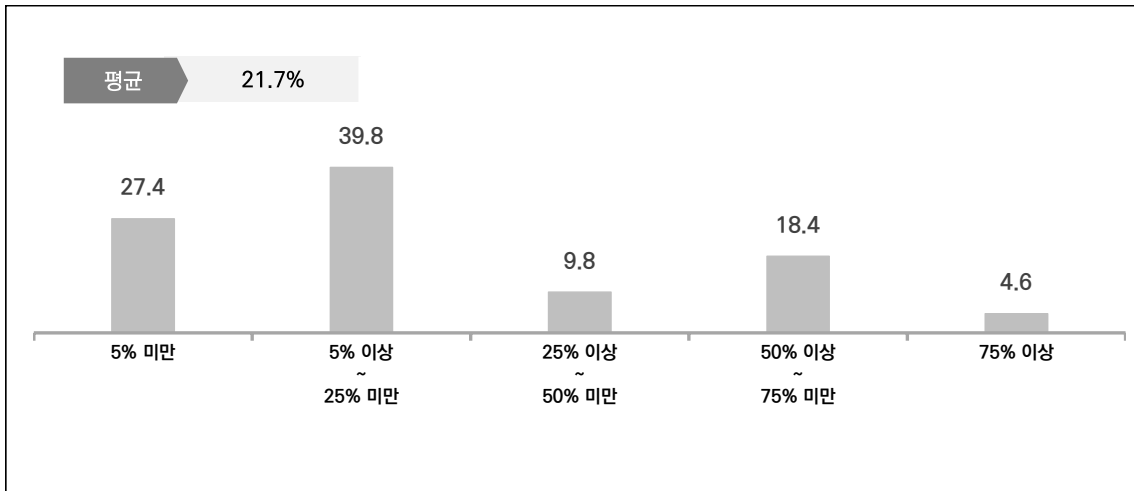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에 대해 물어본 결과, ‘5% 이상~25% 미만’이 39.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 미만’(27.4%), ‘50% 이상~75% 미만’(18.4%) 순으로 나타남.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의 평균은 21.7%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7.7%), ‘여성’(43.2%)에서 각각 ‘5% 이상~25%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5% 이상~25%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1.0%), ‘비수도권’(37.0%)에서 각각 ‘5% 이상~25%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29〉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0〉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5% 미만	5% 이상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27.4	39.8	9.8	18.4	4.6	21.7
성별	남성	(223)	27.4	37.7	9.9	20.6	4.5	22.4
	여성	(146)	27.4	43.2	9.6	15.1	4.8	20.5
연령	20세~29세	(50)	34.0	48.0	12.0	6.0	0.0	12.8
	30세~39세	(138)	33.3	37.0	9.4	16.7	3.6	19.3
	40세~49세	(106)	25.5	39.6	10.4	19.8	4.7	22.7
	50세~59세	(55)	14.5	45.5	9.1	23.6	7.3	27.1
	60세 이상	(20)	15.0	25.0	5.0	40.0	15.0	39.9
수도권	수도권	(261)	30.7	41.0	10.7	15.7	1.9	18.1
	비수도권	(108)	19.4	37.0	7.4	25.0	11.1	30.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2.2	36.1	2.8	30.6	8.3	28.7
	2~3년제 대학	(38)	26.3	44.7	7.9	21.1	0.0	18.4
	4년제 대학	(260)	28.1	39.2	10.0	17.7	5.0	21.8
	대학원 석사 이상	(35)	28.6	42.9	17.1	8.6	2.9	17.4
혼인상태	미혼	(197)	35.0	40.1	10.7	12.7	1.5	16.0
	기혼	(157)	19.1	39.5	8.9	23.6	8.9	28.2
	별거·사별·이혼·기타	(15)	13.3	40.0	6.7	40.0	0.0	27.3
가구원수	1명	(169)	36.1	40.2	9.5	13.0	1.2	15.5
	2명	(70)	22.9	32.9	12.9	25.7	5.7	26.4
	3명	(59)	20.3	47.5	8.5	20.3	3.4	22.5
	4명 이상	(71)	16.9	39.4	8.5	22.5	12.7	31.0
자녀수	0명	(242)	32.2	39.7	10.7	15.3	2.1	17.9
	1명	(46)	19.6	41.3	8.7	26.1	4.3	25.5
	2명 이상	(81)	17.3	39.5	7.4	23.5	12.3	30.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12.5	37.5	18.8	25.0	6.3	28.8
	200~300만원 미만	(103)	24.3	40.8	10.7	21.4	2.9	22.4
	300~400만원 미만	(135)	37.0	35.6	8.9	16.3	2.2	18.0
	400~500만원 미만	(73)	20.5	42.5	11.0	16.4	9.6	24.5
	500만원 이상	(42)	21.4	47.6	4.8	19.0	7.1	2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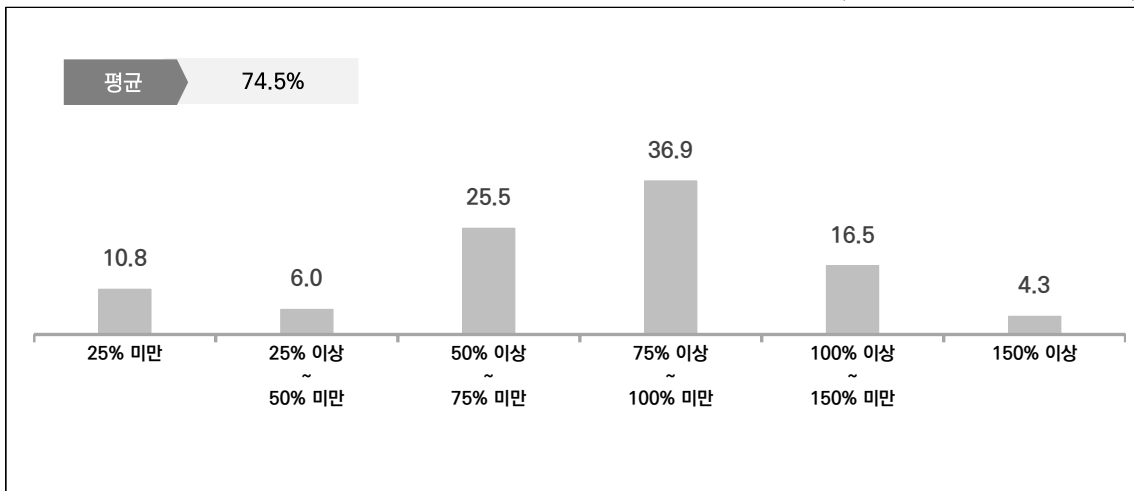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에 대해 물어본 결과, ‘75% 이상~100% 미만’이 36.9%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50% 이상~75% 미만’(25.5%), ‘100% 이상~150% 미만’(16.5%) 순으로 나타남.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의 평균은 74.5%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0.8%), ‘여성’(30.8%) 각각 ‘75% 이상~100%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75% 이상~100%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8.7%), ‘비수도권’(32.4%) 각각 ‘75% 이상~100%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30〉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1〉 청약 지원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369)	10.8	6.0	25.5	36.9	16.5	4.3	74.5
성별	남성	(223)	10.3	8.5	22.4	40.8	14.3	3.6	73.4
	여성	(146)	11.6	2.1	30.1	30.8	19.9	5.5	76.1
연령	20세~29세	(50)	8.0	6.0	50.0	22.0	12.0	2.0	67.0
	30세~39세	(138)	10.1	5.8	26.1	34.1	18.8	5.1	76.8
	40세~49세	(106)	13.2	2.8	25.5	34.0	18.9	5.7	76.1
	50세~59세	(55)	9.1	10.9	5.5	54.5	16.4	3.6	75.4
	60세 이상	(20)	15.0	10.0	15.0	60.0	0.0	0.0	65.8
수도권	수도권	(261)	8.8	6.5	27.2	38.7	16.1	2.7	73.6
	비수도권	(108)	15.7	4.6	21.3	32.4	17.6	8.3	76.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16.7	2.8	19.4	36.1	22.2	2.8	71.6
	2~3년제 대학	(38)	21.1	5.3	26.3	31.6	13.2	2.6	61.8
	4년제 대학	(260)	9.6	6.5	26.2	37.7	14.6	5.4	76.1
	대학원 석사 이상	(35)	2.9	5.7	25.7	37.1	28.6	0.0	79.1
혼인상태	미혼	(197)	9.1	8.6	28.9	33.0	16.8	3.6	72.3
	기혼	(157)	12.7	3.2	22.3	39.5	16.6	5.7	77.2
	별거·사별·이혼·기타	(15)	13.3	0.0	13.3	60.0	13.3	0.0	75.0
가구원수	1명	(169)	8.9	8.3	30.2	30.8	18.3	3.6	72.6
	2명	(70)	8.6	5.7	15.7	47.1	15.7	7.1	80.0
	3명	(59)	8.5	5.1	30.5	37.3	18.6	0.0	72.8
	4명 이상	(71)	19.7	1.4	19.7	40.8	11.3	7.0	74.7
자녀수	0명	(242)	8.7	7.4	26.9	35.1	17.4	4.5	74.7
	1명	(46)	4.3	6.5	30.4	39.1	19.6	0.0	76.3
	2명 이상	(81)	21.0	1.2	18.5	40.7	12.3	6.2	72.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18.8	0.0	31.3	37.5	12.5	0.0	64.7
	200~300만원 미만	(103)	11.7	6.8	27.2	32.0	17.5	4.9	73.7
	300~400만원 미만	(135)	7.4	8.9	26.7	35.6	17.0	4.4	74.7
	400~500만원 미만	(73)	11.0	2.7	23.3	37.0	19.2	6.8	80.3
	500만원 이상	(42)	16.7	2.4	19.0	52.4	9.5	0.0	69.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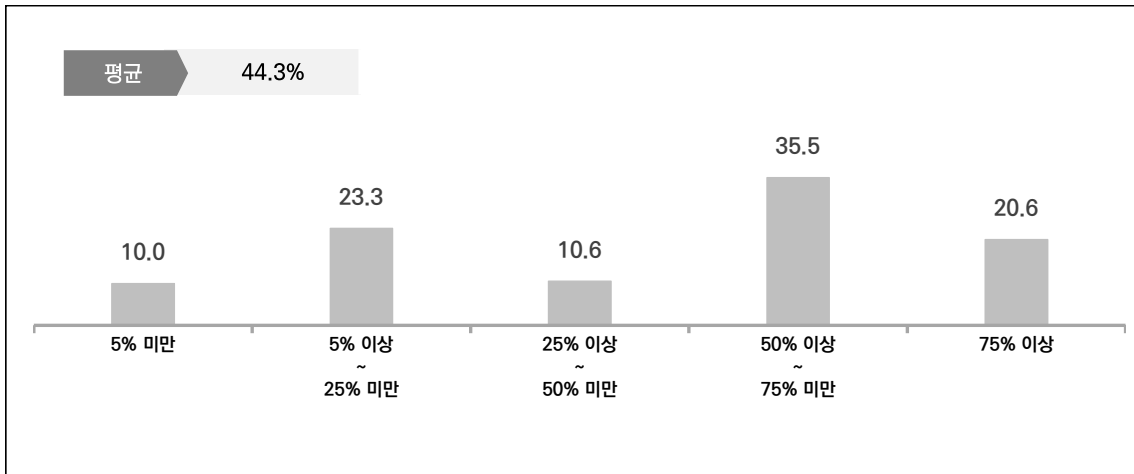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50% 이상~75% 미만’이 35.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 이상~25% 미만’(23.3%), ‘75% 이상’(20.6%) 순으로 나타남.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의 평균은 44.3%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5.9%), ‘여성’(34.9%) 각각 ‘50% 이상~75%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50% 이상~75%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5.6%), ‘비수도권’(35.2%) 각각 ‘50% 이상~75%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31〉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2〉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5% 미만	5% 이상~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10.0	23.3	10.6	35.5	20.6	44.3
성별	남성	(223)	8.1	23.3	10.8	35.9	22.0	45.6
	여성	(146)	13.0	23.3	10.3	34.9	18.5	42.3
연령	20세~29세	(50)	12.0	24.0	8.0	44.0	12.0	40.0
	30세~39세	(138)	13.8	22.5	14.5	28.3	21.0	41.6
	40세~49세	(106)	6.6	26.4	6.6	38.7	21.7	46.6
	50세~59세	(55)	5.5	23.6	12.7	32.7	25.5	47.8
	60세 이상	(20)	10.0	10.0	5.0	55.0	20.0	51.9
수도권	수도권	(261)	10.7	24.9	12.3	35.6	16.5	41.2
	비수도권	(108)	8.3	19.4	6.5	35.2	30.6	51.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11.1	22.2	11.1	41.7	13.9	40.3
	2~3년제 대학	(38)	10.5	26.3	5.3	26.3	31.6	48.7
	4년제 대학	(260)	9.6	23.1	10.4	36.9	20.0	44.3
	대학원 석사 이상	(35)	11.4	22.9	17.1	28.6	20.0	43.4
혼인상태	미혼	(197)	10.7	25.4	10.7	36.0	17.3	41.9
	기혼	(157)	8.9	21.0	10.8	34.4	24.8	47.2
	별거·사별·이혼·기타	(15)	13.3	20.0	6.7	40.0	20.0	45.4
가구원수	1명	(169)	11.2	27.2	10.1	34.9	16.6	40.5
	2명	(70)	10.0	17.1	12.9	37.1	22.9	47.0
	3명	(59)	13.6	15.3	10.2	44.1	16.9	45.4
	4명 이상	(71)	4.2	26.8	9.9	28.2	31.0	49.8
자녀수	0명	(242)	11.2	24.0	10.7	36.4	17.8	42.1
	1명	(46)	10.9	15.2	15.2	39.1	19.6	46.0
	2명 이상	(81)	6.2	25.9	7.4	30.9	29.6	49.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25.0	6.3	50.0	18.8	51.3
	200~300만원 미만	(103)	9.7	24.3	7.8	41.7	16.5	43.1
	300~400만원 미만	(135)	14.1	25.2	11.9	26.7	22.2	41.6
	400~500만원 미만	(73)	8.2	15.1	15.1	37.0	24.7	48.5
	500만원 이상	(42)	4.8	28.6	7.1	40.5	19.0	45.7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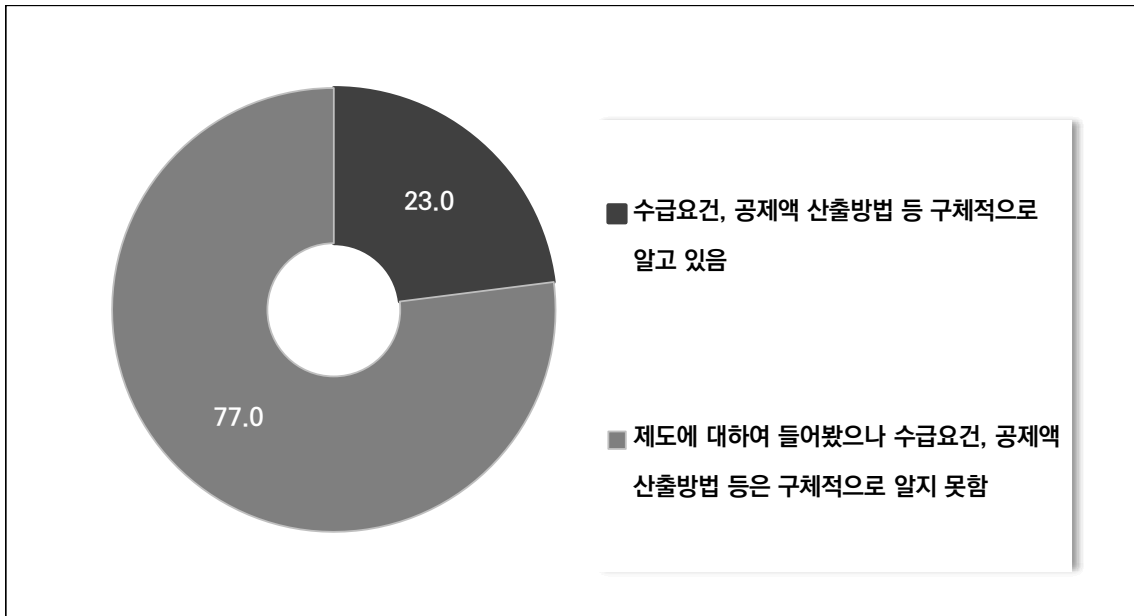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제도에 대하여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77.0%)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23.0%)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24.0%)이 ‘남성’(22.4%) 보다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49세’(26.4%)가 가장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비수도권’(28.7%)이 ‘수도권’(20.7%) 보다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1-3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제도에 대해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23.0	77.0
성별	남성	(223)	22.4	77.6
	여성	(146)	24.0	76.0
연령	20세~29세	(50)	26.0	74.0
	30세~39세	(138)	22.5	77.5
	40세~49세	(106)	26.4	73.6
	50세~59세	(55)	20.0	80.0
	60세 이상	(20)	10.0	90.0
수도권	수도권	(261)	20.7	79.3
	비수도권	(108)	28.7	71.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2.2	77.8
	2~3년제 대학	(38)	23.7	76.3
	4년제 대학	(260)	23.1	76.9
	대학원 석사 이상	(35)	22.9	77.1
혼인상태	미혼	(197)	20.3	79.7
	기혼	(157)	25.5	74.5
	별거·사별·이혼·기타	(15)	33.3	66.7
가구원수	1명	(169)	17.8	82.2
	2명	(70)	31.4	68.6
	3명	(59)	25.4	74.6
	4명 이상	(71)	25.4	74.6
자녀수	0명	(242)	22.7	77.3
	1명	(46)	19.6	80.4
	2명 이상	(81)	25.9	74.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18.8	81.3
	200~300만원 미만	(103)	17.5	82.5
	300~400만원 미만	(135)	22.2	77.8
	400~500만원 미만	(73)	28.8	71.2
	500만원 이상	(42)	31.0	6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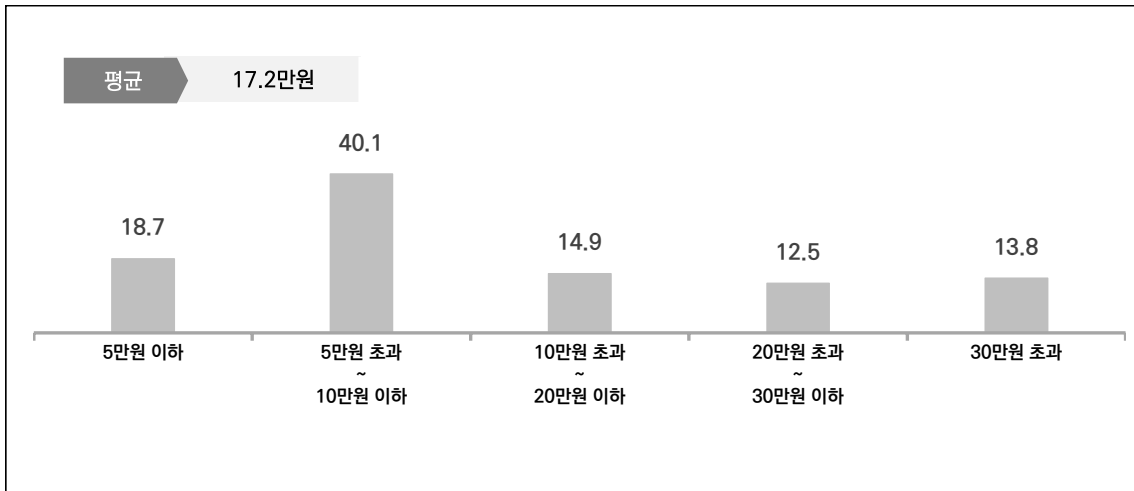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40.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만원 이하’(18.7%),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14.9%) 순으로 나타남.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의 평균은 17.2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1.3%), ‘여성’(38.4%) 각각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0.2%), ‘비수도권’(39.8%) 각각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1-33〉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4〉 주택청약종합저축 월 납입액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만원 이하	5만원 초과 ~10만원 이하	10만원 초과 ~20만원 이하	20만원 초과 ~30만원 이하	30만원 초과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18.7	40.1	14.9	12.5	13.8	17.2
성별	남성	(223)	16.1	41.3	14.8	11.7	16.1	17.8
	여성	(146)	22.6	38.4	15.1	13.7	10.3	16.2
연령	20세~29세	(50)	28.0	34.0	18.0	8.0	12.0	16.3
	30세~39세	(138)	20.3	40.6	12.3	13.0	13.8	16.7
	40세~49세	(106)	15.1	38.7	17.9	12.3	16.0	18.5
	50세~59세	(55)	12.7	47.3	14.5	10.9	14.5	17.2
	60세 이상	(20)	20.0	40.0	10.0	25.0	5.0	15.5
수도권	수도권	(261)	19.5	40.2	13.0	13.4	13.8	17.1
	비수도권	(108)	16.7	39.8	19.4	10.2	13.9	17.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30.6	41.7	8.3	8.3	11.1	14.5
	2~3년제 대학	(38)	21.1	36.8	7.9	18.4	15.8	16.7
	4년제 대학	(260)	16.2	41.2	17.7	10.8	14.2	17.6
	대학원 석사 이상	(35)	22.9	34.3	8.6	22.9	11.4	17.3
혼인상태	미혼	(197)	19.8	42.6	12.2	11.2	14.2	17.2
	기혼	(157)	14.0	38.2	19.1	14.0	14.6	17.9
	별거·사별·이혼·기타	(15)	53.3	26.7	6.7	13.3	0.0	9.3
가구원수	1명	(169)	23.1	42.6	11.8	8.3	14.2	16.6
	2명	(70)	21.4	35.7	11.4	18.6	12.9	17.2
	3명	(59)	15.3	45.8	6.8	16.9	15.3	17.9
	4명 이상	(71)	8.5	33.8	32.4	12.7	12.7	17.8
자녀수	0명	(242)	20.7	41.3	12.4	11.6	14.0	17.0
	1명	(46)	15.2	45.7	6.5	15.2	17.4	19.0
	2명 이상	(81)	14.8	33.3	27.2	13.6	11.1	16.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62.5	12.5	12.5	0.0	12.5	13.1
	200~300만원 미만	(103)	24.3	34.0	16.5	10.7	14.6	16.2
	300~400만원 미만	(135)	14.8	45.2	12.6	16.3	11.1	17.0
	400~500만원 미만	(73)	12.3	45.2	15.1	11.0	16.4	19.2
	500만원 이상	(42)	11.9	40.5	19.0	11.9	16.7	18.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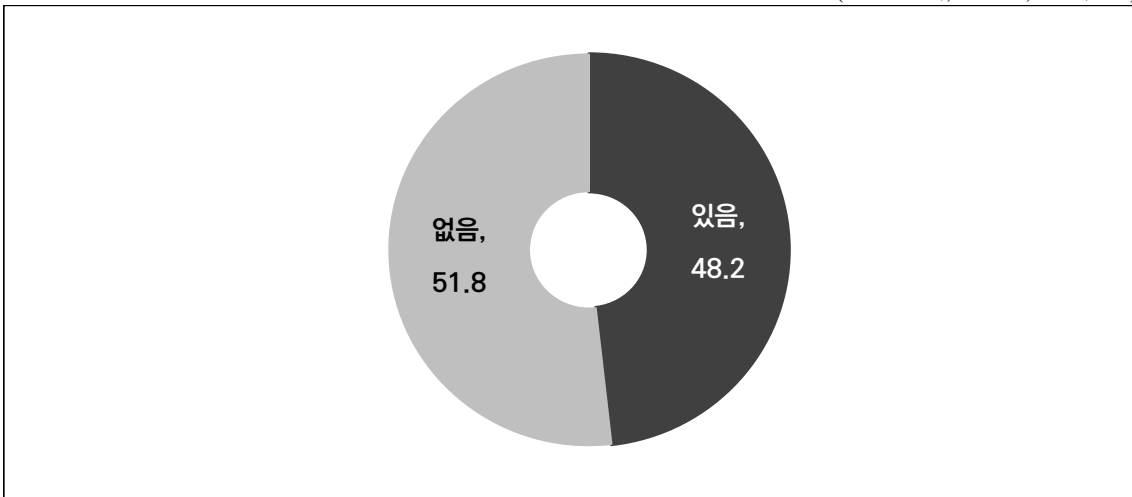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만약 소득공제 받지 못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의향

- 만약 소득공제 받지 못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48.2%가 소득공제를 받지 못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55.5%)의 해지의향이 ‘남성’(43.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54.0%)의 해지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8.3%)과 ‘비수도권’(48.1%)의 해지의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Ⅲ-1-34〉 만약 소득공제 받지 못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의향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5〉 만약 소득공제 받지 못할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해지 의향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369)	48.2	51.8
성별	남성	(223)	43.5	56.5
	여성	(146)	55.5	44.5
연령	20세~29세	(50)	54.0	46.0
	30세~39세	(138)	53.6	46.4
	40세~49세	(106)	43.4	56.6
	50세~59세	(55)	41.8	58.2
	60세 이상	(20)	40.0	60.0
수도권	수도권	(261)	48.3	51.7
	비수도권	(108)	48.1	51.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50.0	50.0
	2~3년제 대학	(38)	44.7	55.3
	4년제 대학	(260)	49.6	50.4
	대학원 석사 이상	(35)	40.0	60.0
혼인상태	미혼	(197)	49.2	50.8
	기혼	(157)	47.1	52.9
	별거·사별·이혼·기타	(15)	46.7	53.3
가구원수	1명	(169)	50.9	49.1
	2명	(70)	40.0	60.0
	3명	(59)	49.2	50.8
	4명 이상	(71)	49.3	50.7
자녀수	0명	(242)	47.1	52.9
	1명	(46)	52.2	47.8
	2명 이상	(81)	49.4	50.6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43.8	56.3
	200~300만원 미만	(103)	46.6	53.4
	300~400만원 미만	(135)	46.7	53.3
	400~500만원 미만	(73)	54.8	45.2
	500만원 이상	(42)	47.6	5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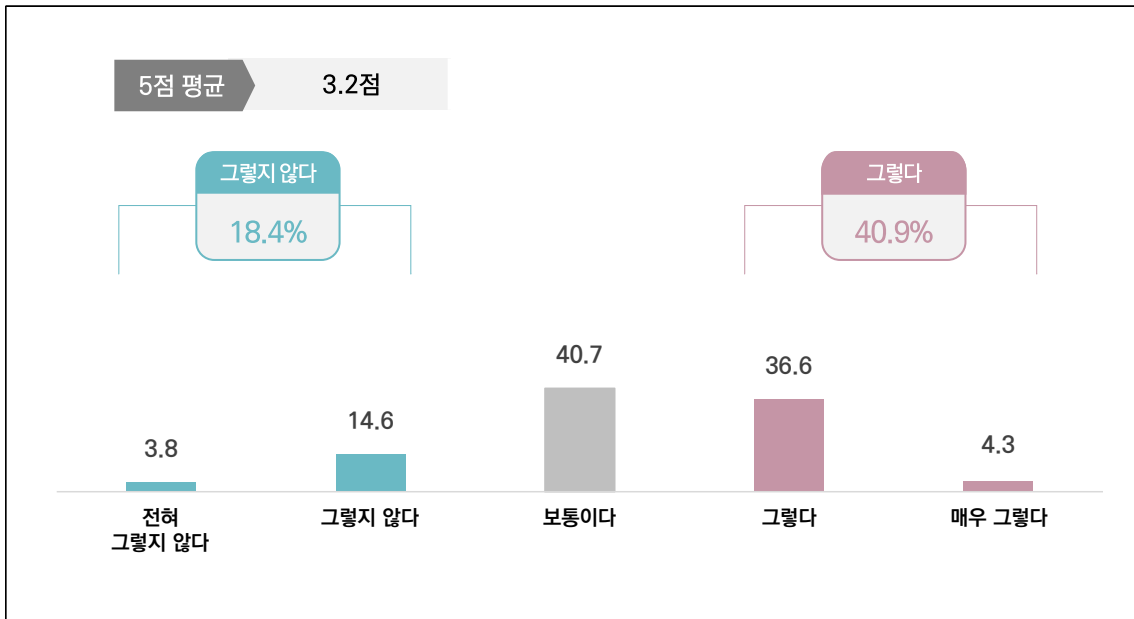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40.9%로 ‘그렇지 않다’(18.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43.0%, ‘여성’ 37.7%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30.0%, ‘30세~39세’ 37.7%, ‘40세~49세’ 40.6%, ‘50세~59세’ 52.7%, ‘60세 이상’ 6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40.6%, ‘비수도권’ 41.7%로 나타남

〈그림 III-1-3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6〉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3.8	14.6	40.7	36.6	4.3	18.4	40.9	3.2
성별	남성	(223)	4.0	11.2	41.7	39.0	4.0	15.2	43.0	3.3
	여성	(146)	3.4	19.9	39.0	32.9	4.8	23.3	37.7	3.2
연령	20세~29세	(50)	2.0	18.0	50.0	28.0	2.0	20.0	30.0	3.1
	30세~39세	(138)	6.5	18.8	37.0	33.3	4.3	25.4	37.7	3.1
	40세~49세	(106)	2.8	11.3	45.3	34.0	6.6	14.2	40.6	3.3
	50세~59세	(55)	0.0	10.9	36.4	49.1	3.6	10.9	52.7	3.5
	60세 이상	(20)	5.0	5.0	30.0	60.0	0.0	10.0	60.0	3.5
수도권	수도권	(261)	4.2	14.6	40.6	36.4	4.2	18.8	40.6	3.2
	비수도권	(108)	2.8	14.8	40.7	37.0	4.6	17.6	41.7	3.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8	16.7	41.7	36.1	2.8	19.4	38.9	3.2
	2~3년제 대학	(38)	10.5	7.9	28.9	52.6	0.0	18.4	52.6	3.2
	4년제 대학	(260)	3.1	14.2	44.2	33.8	4.6	17.3	38.5	3.2
	대학원 석사 이상	(35)	2.9	22.9	25.7	40.0	8.6	25.7	48.6	3.3
혼인상태	미혼	(197)	3.6	17.3	44.2	33.0	2.0	20.8	35.0	3.1
	기혼	(157)	4.5	11.5	36.9	40.1	7.0	15.9	47.1	3.3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13.3	33.3	46.7	6.7	13.3	53.3	3.5
가구원수	1명	(169)	3.0	18.3	43.8	33.1	1.8	21.3	34.9	3.1
	2명	(70)	7.1	10.0	42.9	35.7	4.3	17.1	40.0	3.2
	3명	(59)	5.1	11.9	35.6	45.8	1.7	16.9	47.5	3.3
	4명 이상	(71)	1.4	12.7	35.2	38.0	12.7	14.1	50.7	3.5
자녀수	0명	(242)	4.5	16.5	43.4	33.1	2.5	21.1	35.5	3.1
	1명	(46)	2.2	6.5	39.1	47.8	4.3	8.7	52.2	3.5
	2명 이상	(81)	2.5	13.6	33.3	40.7	9.9	16.0	50.6	3.4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12.5	37.5	31.3	18.8	12.5	50.0	3.6
	200~300만원 미만	(103)	2.9	14.6	43.7	37.9	1.0	17.5	38.8	3.2
	300~400만원 미만	(135)	5.9	14.8	37.8	34.8	6.7	20.7	41.5	3.2
	400~500만원 미만	(73)	2.7	17.8	45.2	32.9	1.4	20.5	34.2	3.1
	500만원 이상	(42)	2.4	9.5	35.7	47.6	4.8	11.9	52.4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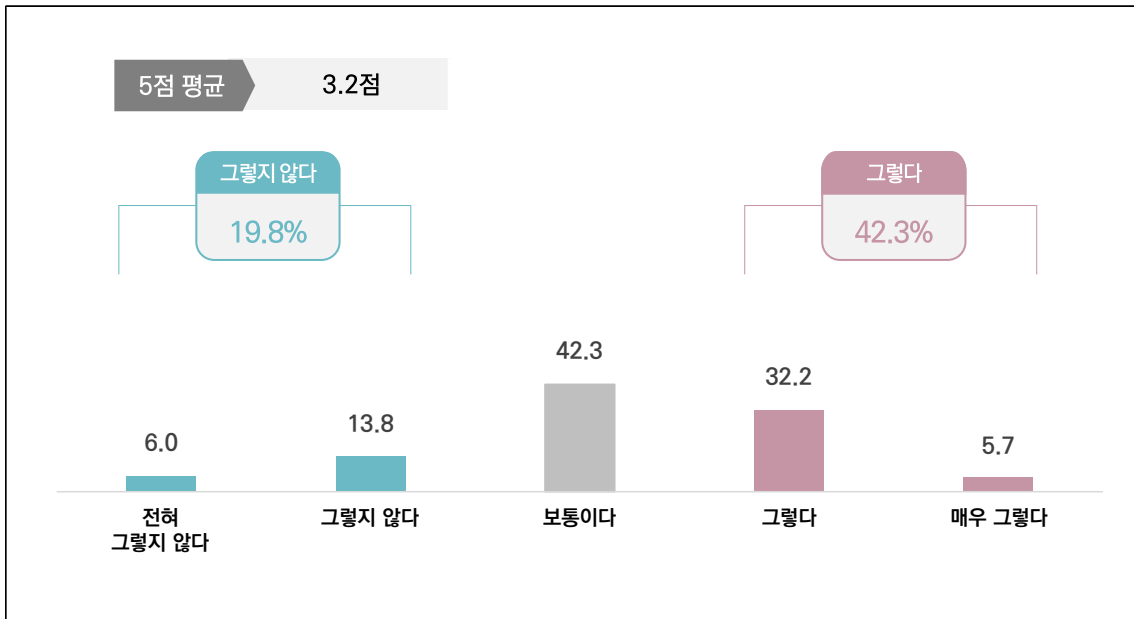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42.3%로 ‘그렇지 않다’(19.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41.7%, ‘여성’ 32.2%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42.0%, ‘30세~39세’ 31.2%, ‘40세~49세’ 38.7%, ‘50세~59세’ 43.6%, ‘60세 이상’ 55.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40.2%, ‘비수도권’ 32.4%로 나타남

〈그림 III-1-36〉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7〉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6.0	13.8	42.3	32.2	5.7	19.8	37.9	3.2
성별	남성	(223)	7.2	14.3	36.8	33.6	8.1	21.5	41.7	3.2
	여성	(146)	4.1	13.0	50.7	30.1	2.1	17.1	32.2	3.1
연령	20세~29세	(50)	2.0	18.0	38.0	36.0	6.0	20.0	42.0	3.3
	30세~39세	(138)	8.0	15.2	45.7	23.9	7.2	23.2	31.2	3.1
	40세~49세	(106)	6.6	14.2	40.6	34.9	3.8	20.8	38.7	3.2
	50세~59세	(55)	3.6	7.3	45.5	38.2	5.5	10.9	43.6	3.3
	60세 이상	(20)	5.0	10.0	30.0	50.0	5.0	15.0	55.0	3.4
수도권	수도권	(261)	6.9	15.3	37.5	33.7	6.5	22.2	40.2	3.2
	비수도권	(108)	3.7	10.2	53.7	28.7	3.7	13.9	32.4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5.6	11.1	50.0	33.3	0.0	16.7	33.3	3.1
	2~3년제 대학	(38)	13.2	13.2	42.1	28.9	2.6	26.3	31.6	2.9
	4년제 대학	(260)	5.0	12.7	43.5	31.5	7.3	17.7	38.8	3.2
	대학원 석사 이상	(35)	5.7	25.7	25.7	40.0	2.9	31.4	42.9	3.1
혼인상태	미혼	(197)	4.6	13.2	44.7	33.0	4.6	17.8	37.6	3.2
	기혼	(157)	8.3	14.6	38.2	31.2	7.6	22.9	38.9	3.2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13.3	53.3	33.3	0.0	13.3	33.3	3.2
가구원수	1명	(169)	5.3	14.8	43.2	32.0	4.7	20.1	36.7	3.2
	2명	(70)	7.1	20.0	45.7	24.3	2.9	27.1	27.1	3.0
	3명	(59)	8.5	6.8	45.8	35.6	3.4	15.3	39.0	3.2
	4명 이상	(71)	4.2	11.3	33.8	38.0	12.7	15.5	50.7	3.4
자녀수	0명	(242)	5.8	15.7	43.4	30.6	4.5	21.5	35.1	3.1
	1명	(46)	8.7	8.7	43.5	34.8	4.3	17.4	39.1	3.2
	2명 이상	(81)	4.9	11.1	38.3	35.8	9.9	16.0	45.7	3.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6.3	43.8	43.8	6.3	6.3	50.0	3.5
	200~300만원 미만	(103)	4.9	11.7	48.5	31.1	3.9	16.5	35.0	3.2
	300~400만원 미만	(135)	7.4	17.0	41.5	27.4	6.7	24.4	34.1	3.1
	400~500만원 미만	(73)	2.7	16.4	39.7	32.9	8.2	19.2	41.1	3.3
	500만원 이상	(42)	11.9	7.1	33.3	45.2	2.4	19.0	47.6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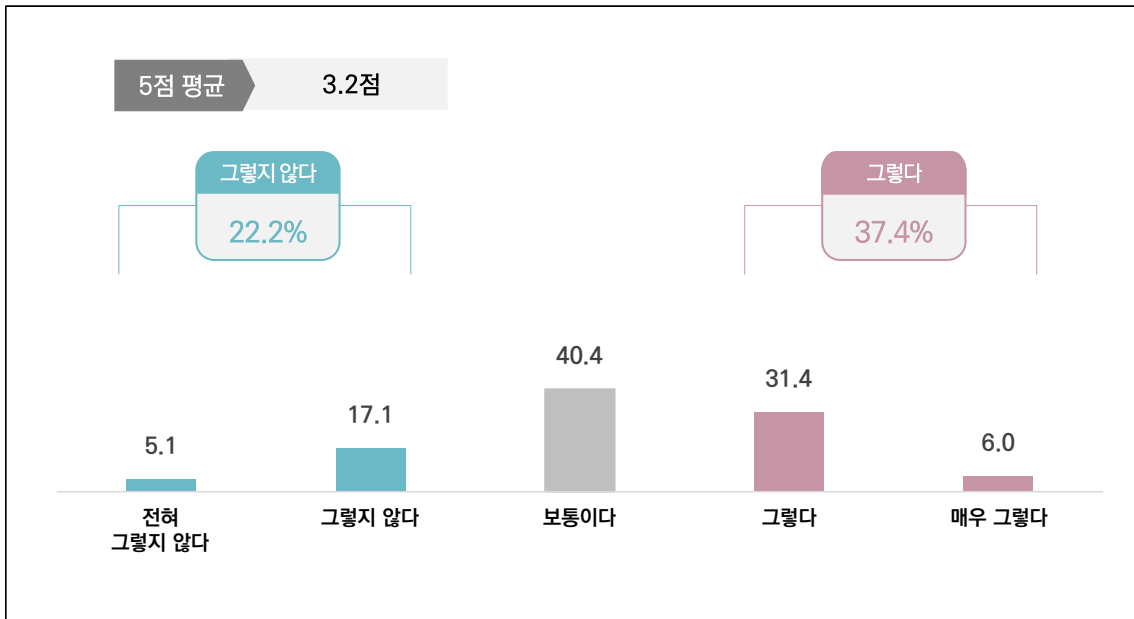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37.4%로 ‘그렇지 않다’(22.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38.6%, ‘여성’ 35.6%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46.0%, ‘30세~39세’ 32.6%, ‘40세~49세’ 41.5%, ‘50세~59세’ 29.1%, ‘60세 이상’ 5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35.2%, ‘비수도권’ 42.6%로 나타남

〈그림 III-1-3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5.1	17.1	40.4	31.4	6.0	22.2	37.4	3.2
성별	남성	(223)	4.9	16.1	40.4	33.2	5.4	21.1	38.6	3.2
	여성	(146)	5.5	18.5	40.4	28.8	6.8	24.0	35.6	3.1
연령	20세~29세	(50)	6.0	12.0	36.0	34.0	12.0	18.0	46.0	3.3
	30세~39세	(138)	6.5	21.7	39.1	29.7	2.9	28.3	32.6	3.0
	40세~49세	(106)	4.7	18.9	34.9	34.0	7.5	23.6	41.5	3.2
	50세~59세	(55)	3.6	9.1	58.2	25.5	3.6	12.7	29.1	3.2
	60세 이상	(20)	0.0	10.0	40.0	40.0	10.0	10.0	50.0	3.5
수도권	수도권	(261)	5.0	18.0	41.8	29.5	5.7	23.0	35.2	3.1
	비수도권	(108)	5.6	14.8	37.0	36.1	6.5	20.4	42.6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8.3	19.4	38.9	27.8	5.6	27.8	33.3	3.0
	2~3년제 대학	(38)	2.6	21.1	42.1	28.9	5.3	23.7	34.2	3.1
	4년제 대학	(260)	5.0	16.2	39.6	33.1	6.2	21.2	39.2	3.2
	대학원 석사 이상	(35)	5.7	17.1	45.7	25.7	5.7	22.9	31.4	3.1
혼인상태	미혼	(197)	6.1	17.8	41.1	29.4	5.6	23.9	35.0	3.1
	기혼	(157)	4.5	15.9	41.4	32.5	5.7	20.4	38.2	3.2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20.0	20.0	46.7	13.3	20.0	60.0	3.5
가구원수	1명	(169)	5.9	20.1	43.8	24.9	5.3	26.0	30.2	3.0
	2명	(70)	7.1	21.4	37.1	27.1	7.1	28.6	34.3	3.1
	3명	(59)	0.0	13.6	35.6	47.5	3.4	13.6	50.8	3.4
	4명 이상	(71)	5.6	8.5	39.4	38.0	8.5	14.1	46.5	3.4
자녀수	0명	(242)	6.2	19.8	40.9	27.7	5.4	26.0	33.1	3.1
	1명	(46)	0.0	15.2	39.1	43.5	2.2	15.2	45.7	3.3
	2명 이상	(81)	4.9	9.9	39.5	35.8	9.9	14.8	45.7	3.4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18.8	43.8	18.8	18.8	18.8	37.5	3.4
	200~300만원 미만	(103)	7.8	17.5	35.0	35.9	3.9	25.2	39.8	3.1
	300~400만원 미만	(135)	4.4	16.3	40.0	32.6	6.7	20.7	39.3	3.2
	400~500만원 미만	(73)	4.1	17.8	43.8	32.9	1.4	21.9	34.2	3.1
	500만원 이상	(42)	4.8	16.7	47.6	19.0	11.9	21.4	31.0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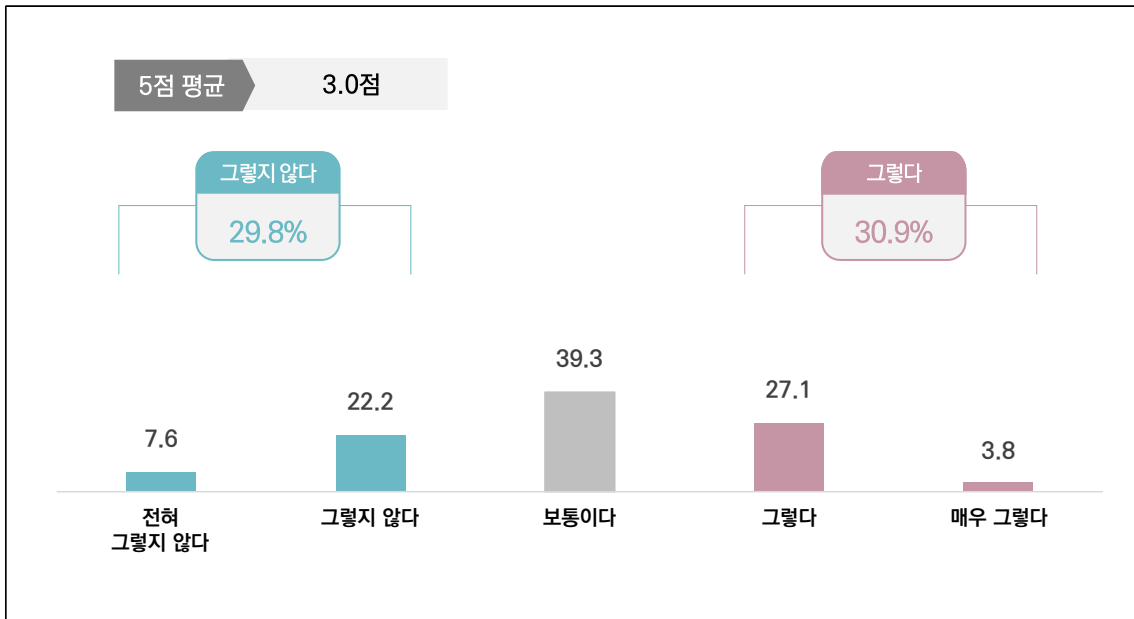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30.9%로 ‘그렇지 않다’(29.8%)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31.8%, ‘여성’ 29.5%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38.0%, ‘30세~39세’ 23.9%, ‘40세~49세’ 36.8%, ‘50세~59세’ 30.9%, ‘60세 이상’ 3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31.8%, ‘비수도권’ 28.7%로 나타남

〈그림 III-1-3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3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7.6	22.2	39.3	27.1	3.8	29.8	30.9	3.0	
성별	남성	(223)	8.1	18.8	41.3	26.9	4.9	26.9	31.8	3.0
	여성	(146)	6.8	27.4	36.3	27.4	2.1	34.2	29.5	2.9
연령	20세~29세	(50)	4.0	16.0	42.0	36.0	2.0	20.0	38.0	3.2
	30세~39세	(138)	10.9	25.4	39.9	19.6	4.3	36.2	23.9	2.8
	40세~49세	(106)	8.5	21.7	33.0	32.1	4.7	30.2	36.8	3.0
	50세~59세	(55)	3.6	21.8	43.6	27.3	3.6	25.5	30.9	3.1
	60세 이상	(20)	0.0	20.0	50.0	30.0	0.0	20.0	30.0	3.1
수도권	수도권	(261)	8.0	23.8	36.4	29.1	2.7	31.8	31.8	2.9
	비수도권	(108)	6.5	18.5	46.3	22.2	6.5	25.0	28.7	3.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8	38.9	33.3	19.4	5.6	41.7	25.0	2.9
	2~3년제 대학	(38)	7.9	15.8	36.8	34.2	5.3	23.7	39.5	3.1
	4년제 대학	(260)	7.3	19.2	41.5	28.5	3.5	26.5	31.9	3.0
	대학원 석사 이상	(35)	14.3	34.3	31.4	17.1	2.9	48.6	20.0	2.6
혼인상태	미혼	(197)	7.1	16.8	47.2	26.9	2.0	23.9	28.9	3.0
	기혼	(157)	8.3	28.0	31.2	26.8	5.7	36.3	32.5	2.9
	별거·사별·이혼·기타	(15)	6.7	33.3	20.0	33.3	6.7	40.0	40.0	3.0
가구원수	1명	(169)	8.3	16.6	46.7	27.2	1.2	24.9	28.4	3.0
	2명	(70)	8.6	31.4	38.6	15.7	5.7	40.0	21.4	2.8
	3명	(59)	6.8	23.7	32.2	30.5	6.8	30.5	37.3	3.1
	4명 이상	(71)	5.6	25.4	28.2	35.2	5.6	31.0	40.8	3.1
자녀수	0명	(242)	8.3	20.7	44.2	24.4	2.5	28.9	26.9	2.9
	1명	(46)	8.7	23.9	28.3	28.3	10.9	32.6	39.1	3.1
	2명 이상	(81)	4.9	25.9	30.9	34.6	3.7	30.9	38.3	3.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12.5	37.5	43.8	6.3	12.5	50.0	3.4
	200~300만원 미만	(103)	8.7	19.4	41.7	28.2	1.9	28.2	30.1	3.0
	300~400만원 미만	(135)	8.1	25.2	37.8	24.4	4.4	33.3	28.9	2.9
	400~500만원 미만	(73)	6.8	26.0	41.1	21.9	4.1	32.9	26.0	2.9
	500만원 이상	(42)	7.1	16.7	35.7	35.7	4.8	23.8	40.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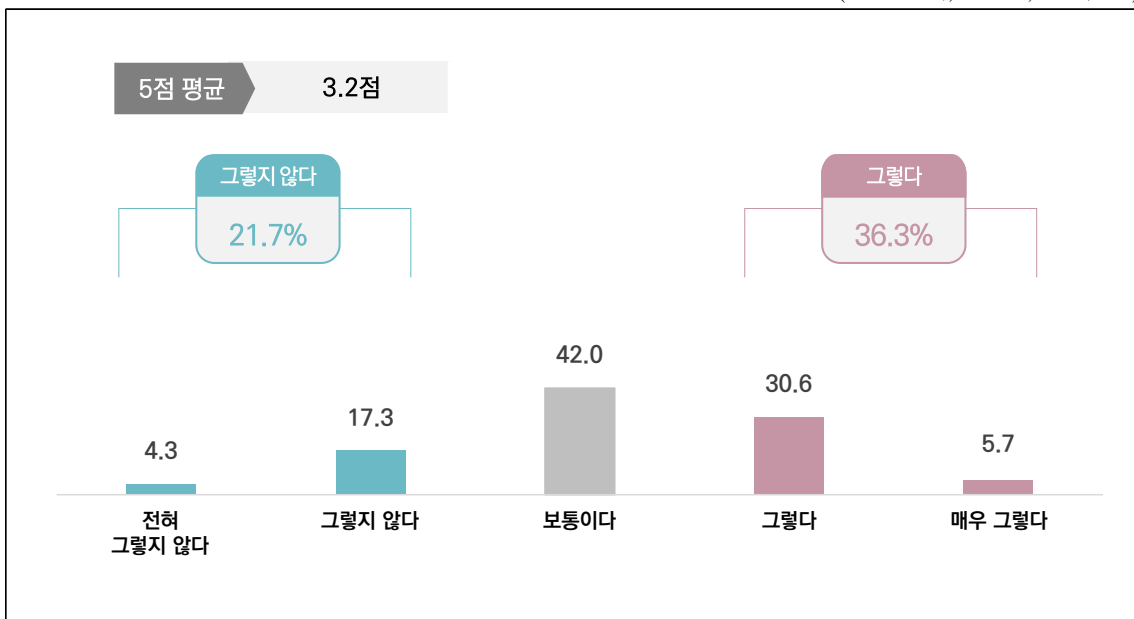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36.3%로 ‘그렇지 않다’(21.7%) 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35.9%, ‘여성’ 37.0%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44.0%, ‘30세~39세’ 29.7%, ‘40세~49세’ 41.5%, ‘50세~59세’ 34.5%, ‘60세 이상’ 4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35.6%, ‘비수도권’ 38.0%로 나타남

〈그림 III-1-3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40〉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369)	4.3	17.3	42.0	30.6	5.7	21.7	36.3	3.2
성별	남성	(223)	4.5	18.8	40.8	29.6	6.3	23.3	35.9	3.1
	여성	(146)	4.1	15.1	43.8	32.2	4.8	19.2	37.0	3.2
연령	20세~29세	(50)	0.0	20.0	36.0	36.0	8.0	20.0	44.0	3.3
	30세~39세	(138)	5.8	17.4	47.1	23.9	5.8	23.2	29.7	3.1
	40세~49세	(106)	4.7	19.8	34.0	35.8	5.7	24.5	41.5	3.2
	50세~59세	(55)	5.5	14.5	45.5	30.9	3.6	20.0	34.5	3.1
	60세 이상	(20)	0.0	5.0	55.0	35.0	5.0	5.0	40.0	3.4
수도권	수도권	(261)	3.8	21.1	39.5	29.1	6.5	24.9	35.6	3.1
	비수도권	(108)	5.6	8.3	48.1	34.3	3.7	13.9	38.0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8	19.4	41.7	30.6	5.6	22.2	36.1	3.2
	2~3년제 대학	(38)	5.3	18.4	34.2	34.2	7.9	23.7	42.1	3.2
	4년제 대학	(260)	4.6	15.8	44.2	30.4	5.0	20.4	35.4	3.2
	대학원 석사 이상	(35)	2.9	25.7	34.3	28.6	8.6	28.6	37.1	3.1
혼인상태	미혼	(197)	4.1	17.3	44.7	29.9	4.1	21.3	34.0	3.1
	기혼	(157)	5.1	17.8	38.2	31.8	7.0	22.9	38.9	3.2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13.3	46.7	26.7	13.3	13.3	40.0	3.4
가구원수	1명	(169)	4.7	19.5	42.6	28.4	4.7	24.3	33.1	3.1
	2명	(70)	2.9	15.7	52.9	21.4	7.1	18.6	28.6	3.1
	3명	(59)	3.4	22.0	35.6	39.0	0.0	25.4	39.0	3.1
	4명 이상	(71)	5.6	9.9	35.2	38.0	11.3	15.5	49.3	3.4
자녀수	0명	(242)	4.1	18.6	45.0	27.3	5.0	22.7	32.2	3.1
	1명	(46)	4.3	21.7	30.4	41.3	2.2	26.1	43.5	3.2
	2명 이상	(81)	4.9	11.1	39.5	34.6	9.9	16.0	44.4	3.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6.3	0.0	43.8	43.8	6.3	6.3	50.0	3.4
	200~300만원 미만	(103)	4.9	19.4	49.5	22.3	3.9	24.3	26.2	3.0
	300~400만원 미만	(135)	3.7	17.8	37.8	34.1	6.7	21.5	40.7	3.2
	400~500만원 미만	(73)	2.7	21.9	32.9	37.0	5.5	24.7	42.5	3.2
	500만원 이상	(42)	7.1	9.5	52.4	23.8	7.1	16.7	31.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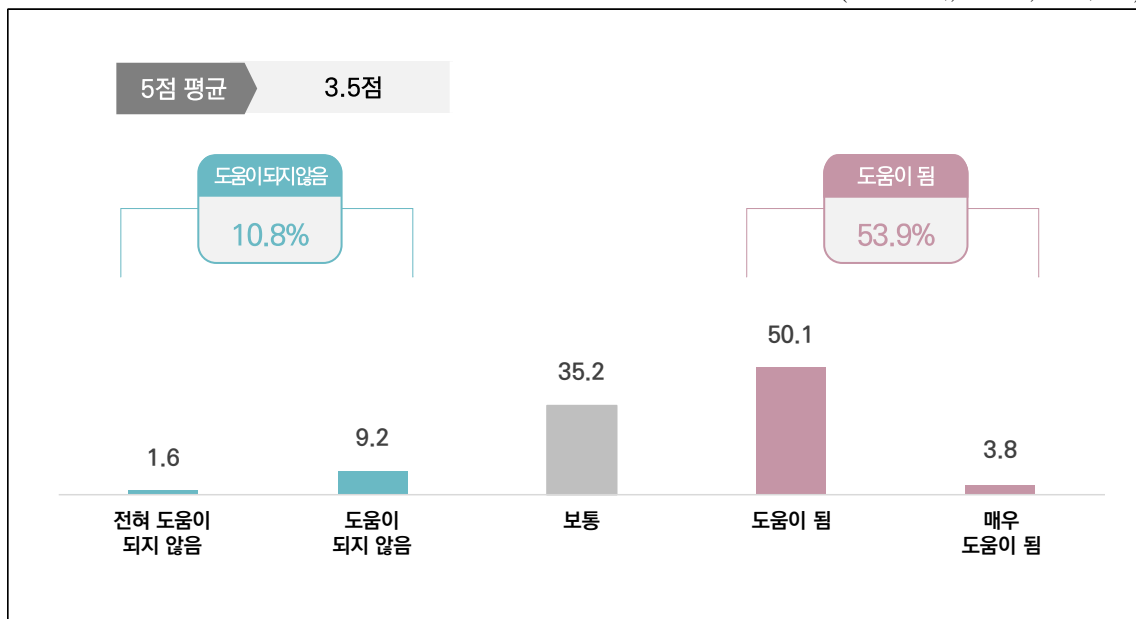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됨’(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53.9%로 ‘도움이 되지 않음’(10.8%)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5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이 됨’이 52.5%, ‘여성’ 56.2%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도움이 됨’이 56.0%, ‘30세~39세’ 50.0%, ‘40세~49세’ 53.8%, ‘50세~59세’ 58.2%, ‘60세 이상’ 65.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도움이 됨’이 48.7%, ‘비수도권’ 66.7%로 나타남

〈그림 III-1-40〉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41〉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1.6	9.2	35.2	50.1	3.8	10.8	53.9	3.5
성별	남성	(223)	2.2	7.2	38.1	48.0	4.5	9.4	52.5	3.5
	여성	(146)	0.7	12.3	30.8	53.4	2.7	13.0	56.2	3.5
연령	20세~29세	(50)	0.0	18.0	26.0	54.0	2.0	18.0	56.0	3.4
	30세~39세	(138)	2.9	10.9	36.2	44.9	5.1	13.8	50.0	3.4
	40세~49세	(106)	0.9	8.5	36.8	51.9	1.9	9.4	53.8	3.5
	50세~59세	(55)	1.8	1.8	38.2	52.7	5.5	3.6	58.2	3.6
	60세 이상	(20)	0.0	0.0	35.0	60.0	5.0	0.0	65.0	3.7
수도권	수도권	(261)	1.9	9.2	40.2	45.2	3.4	11.1	48.7	3.4
	비수도권	(108)	0.9	9.3	23.1	62.0	4.6	10.2	66.7	3.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0.0	8.3	36.1	55.6	0.0	8.3	55.6	3.5
	2~3년제 대학	(38)	0.0	5.3	42.1	50.0	2.6	5.3	52.6	3.5
	4년제 대학	(260)	1.9	7.3	36.9	49.6	4.2	9.2	53.8	3.5
	대학원 석사 이상	(35)	2.9	28.6	14.3	48.6	5.7	31.4	54.3	3.3
혼인상태	미혼	(197)	2.0	10.2	41.6	44.7	1.5	12.2	46.2	3.3
	기혼	(157)	1.3	7.6	26.8	58.0	6.4	8.9	64.3	3.6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13.3	40.0	40.0	6.7	13.3	46.7	3.4
가구원수	1명	(169)	1.8	11.2	42.0	43.8	1.2	13.0	45.0	3.3
	2명	(70)	2.9	10.0	31.4	50.0	5.7	12.9	55.7	3.5
	3명	(59)	1.7	6.8	23.7	66.1	1.7	8.5	67.8	3.6
	4명 이상	(71)	0.0	5.6	32.4	52.1	9.9	5.6	62.0	3.7
자녀수	0명	(242)	2.1	10.7	38.4	46.3	2.5	12.8	48.8	3.4
	1명	(46)	2.2	6.5	23.9	65.2	2.2	8.7	67.4	3.6
	2명 이상	(81)	0.0	6.2	32.1	53.1	8.6	6.2	61.7	3.6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0.0	68.8	31.3	0.0	0.0	31.3	3.3
	200~300만원 미만	(103)	1.9	8.7	35.9	52.4	1.0	10.7	53.4	3.4
	300~400만원 미만	(135)	1.5	8.9	31.9	54.1	3.7	10.4	57.8	3.5
	400~500만원 미만	(73)	1.4	13.7	34.2	39.7	11.0	15.1	50.7	3.5
	500만원 이상	(42)	2.4	7.1	33.3	57.1	0.0	9.5	57.1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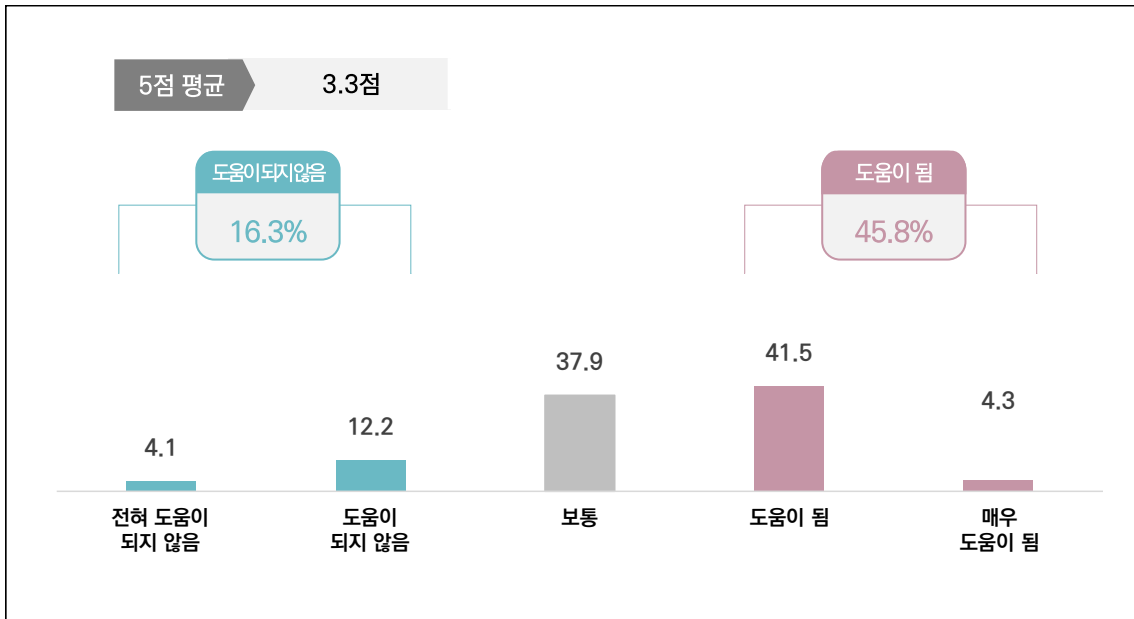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0)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 ‘연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른 제도 활용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됨’(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45.8%로 ‘도움이 되지 않음’(16.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이 됨’이 46.6%, ‘여성’ 44.5%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도움이 됨’이 56.0%, ‘30세~39세’ 38.4%, ‘40세~49세’ 38.7%, ‘50세~59세’ 60.0%, ‘60세 이상’ 7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도움이 됨’이 44.1%, ‘비수도권’ 50.0%로 나타남

〈그림 III-1-41〉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42〉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4.1	12.2	37.9	41.5	4.3	16.3	45.8	3.3
성별	남성	(223)	4.0	11.7	37.7	43.0	3.6	15.7	46.6	3.3
	여성	(146)	4.1	13.0	38.4	39.0	5.5	17.1	44.5	3.3
연령	20세~29세	(50)	6.0	18.0	20.0	50.0	6.0	24.0	56.0	3.3
	30세~39세	(138)	5.1	16.7	39.9	32.6	5.8	21.7	38.4	3.2
	40세~49세	(106)	3.8	9.4	48.1	36.8	1.9	13.2	38.7	3.2
	50세~59세	(55)	1.8	5.5	32.7	54.5	5.5	7.3	60.0	3.6
	60세 이상	(20)	0.0	0.0	30.0	70.0	0.0	0.0	70.0	3.7
수도권	수도권	(261)	4.2	13.0	38.7	39.5	4.6	17.2	44.1	3.3
	비수도권	(108)	3.7	10.2	36.1	46.3	3.7	13.9	50.0	3.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8	19.4	22.2	52.8	2.8	22.2	55.6	3.3
	2~3년제 대학	(38)	2.6	13.2	47.4	34.2	2.6	15.8	36.8	3.2
	4년제 대학	(260)	4.2	9.6	40.0	41.2	5.0	13.8	46.2	3.3
	대학원 석사 이상	(35)	5.7	22.9	28.6	40.0	2.9	28.6	42.9	3.1
혼인상태	미혼	(197)	6.1	14.7	39.1	36.5	3.6	20.8	40.1	3.2
	기혼	(157)	1.9	9.6	37.6	46.5	4.5	11.5	51.0	3.4
	별거·사별·이혼·기타	(15)	0.0	6.7	26.7	53.3	13.3	6.7	66.7	3.7
가구원수	1명	(169)	5.9	16.0	37.3	38.5	2.4	21.9	40.8	3.2
	2명	(70)	5.7	12.9	42.9	30.0	8.6	18.6	38.6	3.2
	3명	(59)	1.7	10.2	33.9	54.2	0.0	11.9	54.2	3.4
	4명 이상	(71)	0.0	4.2	38.0	49.3	8.5	4.2	57.7	3.6
자녀수	0명	(242)	5.8	15.3	39.7	35.5	3.7	21.1	39.3	3.2
	1명	(46)	2.2	10.9	30.4	54.3	2.2	13.0	56.5	3.4
	2명 이상	(81)	0.0	3.7	37.0	51.9	7.4	3.7	59.3	3.6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6.3	31.3	56.3	6.3	6.3	62.5	3.6
	200~300만원 미만	(103)	4.9	17.5	37.9	36.9	2.9	22.3	39.8	3.2
	300~400만원 미만	(135)	5.9	13.3	33.3	43.7	3.7	19.3	47.4	3.3
	400~500만원 미만	(73)	1.4	9.6	43.8	38.4	6.8	11.0	45.2	3.4
	500만원 이상	(42)	2.4	2.4	45.2	45.2	4.8	4.8	50.0	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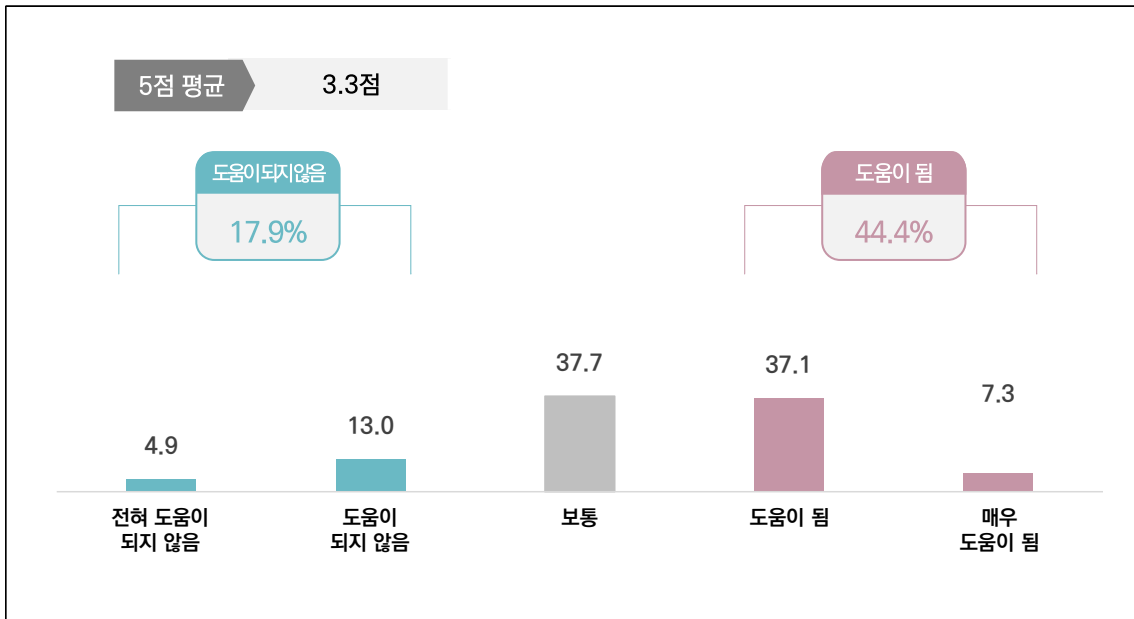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1)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됨’ (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44.4%로 ‘도움이 되지 않음’(17.9%) 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이 됨’이 44.8%, ‘여성’ 43.8%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도움이 됨’이 52.0%, ‘30세~39세’ 39.9%, ‘40세~49세’ 40.6%, ‘50세~59세’ 54.5%, ‘60세 이상’ 5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도움이 됨’이 42.5%, ‘비수도권’ 49.1%로 나타남

〈그림 III-1-42〉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43〉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4.9	13.0	37.7	37.1	7.3	17.9	44.4	3.3
성별	남성	(223)	5.8	13.0	36.3	37.2	7.6	18.8	44.8	3.3
	여성	(146)	3.4	13.0	39.7	37.0	6.8	16.4	43.8	3.3
연령	20세~29세	(50)	8.0	14.0	26.0	32.0	20.0	22.0	52.0	3.4
	30세~39세	(138)	6.5	15.2	38.4	34.8	5.1	21.7	39.9	3.2
	40세~49세	(106)	3.8	12.3	43.4	35.8	4.7	16.0	40.6	3.3
	50세~59세	(55)	1.8	12.7	30.9	47.3	7.3	14.5	54.5	3.5
	60세 이상	(20)	0.0	0.0	50.0	45.0	5.0	0.0	50.0	3.6
수도권	수도권	(261)	5.7	12.3	39.5	34.9	7.7	18.0	42.5	3.3
	비수도권	(108)	2.8	14.8	33.3	42.6	6.5	17.6	49.1	3.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5.6	19.4	33.3	38.9	2.8	25.0	41.7	3.1
	2~3년제 대학	(38)	2.6	21.1	34.2	34.2	7.9	23.7	42.1	3.2
	4년제 대학	(260)	4.2	10.0	40.4	37.3	8.1	14.2	45.4	3.4
	대학원 석사 이상	(35)	11.4	20.0	25.7	37.1	5.7	31.4	42.9	3.1
혼인상태	미혼	(197)	6.1	12.7	44.2	28.4	8.6	18.8	37.1	3.2
	기혼	(157)	3.2	14.6	29.9	46.5	5.7	17.8	52.2	3.4
	별거·사별·이혼·기타	(15)	6.7	0.0	33.3	53.3	6.7	6.7	60.0	3.5
가구원수	1명	(169)	5.9	13.0	44.4	27.8	8.9	18.9	36.7	3.2
	2명	(70)	4.3	17.1	38.6	32.9	7.1	21.4	40.0	3.2
	3명	(59)	5.1	10.2	25.4	54.2	5.1	15.3	59.3	3.4
	4명 이상	(71)	2.8	11.3	31.0	49.3	5.6	14.1	54.9	3.4
자녀수	0명	(242)	5.8	14.0	41.7	30.2	8.3	19.8	38.4	3.2
	1명	(46)	6.5	10.9	23.9	52.2	6.5	17.4	58.7	3.4
	2명 이상	(81)	1.2	11.1	33.3	49.4	4.9	12.3	54.3	3.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0.0	12.5	43.8	37.5	6.3	12.5	43.8	3.4
	200~300만원 미만	(103)	6.8	11.7	42.7	29.1	9.7	18.4	38.8	3.2
	300~400만원 미만	(135)	3.7	12.6	37.8	37.8	8.1	16.3	45.9	3.3
	400~500만원 미만	(73)	4.1	13.7	31.5	46.6	4.1	17.8	50.7	3.3
	500만원 이상	(42)	7.1	16.7	33.3	38.1	4.8	23.8	42.9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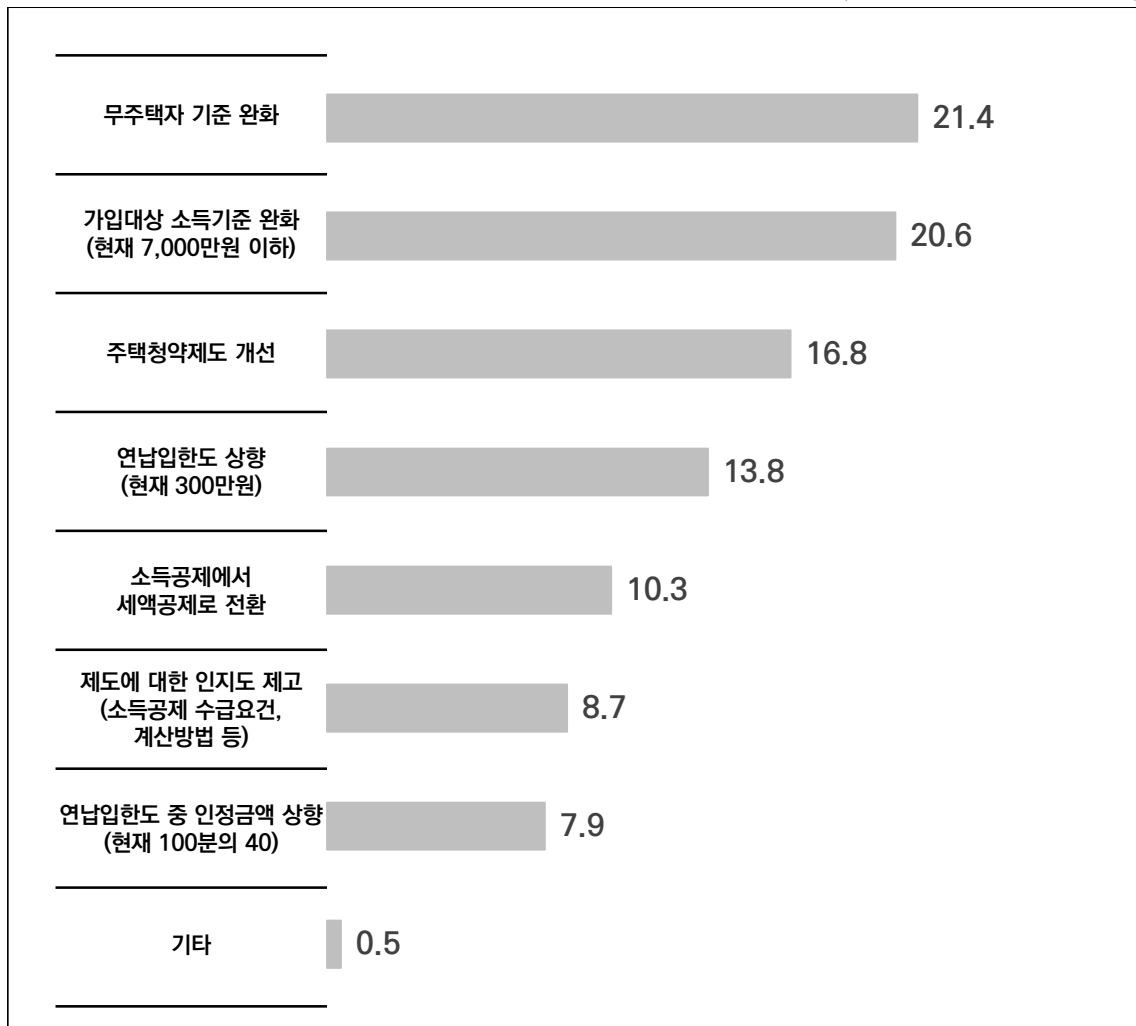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2)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21.4%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남성’ 21.5%, ‘여성’ 21.2%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20세~29세’ 16.0%, ‘30세~39세’ 26.1%, ‘40세~49세’ 19.8%, ‘50세~59세’ 23.6%, ‘60세 이상’ 5.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수도권’ 21.5%, ‘비수도권’ 21.3%로 나타남

〈그림 III-1-43〉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44〉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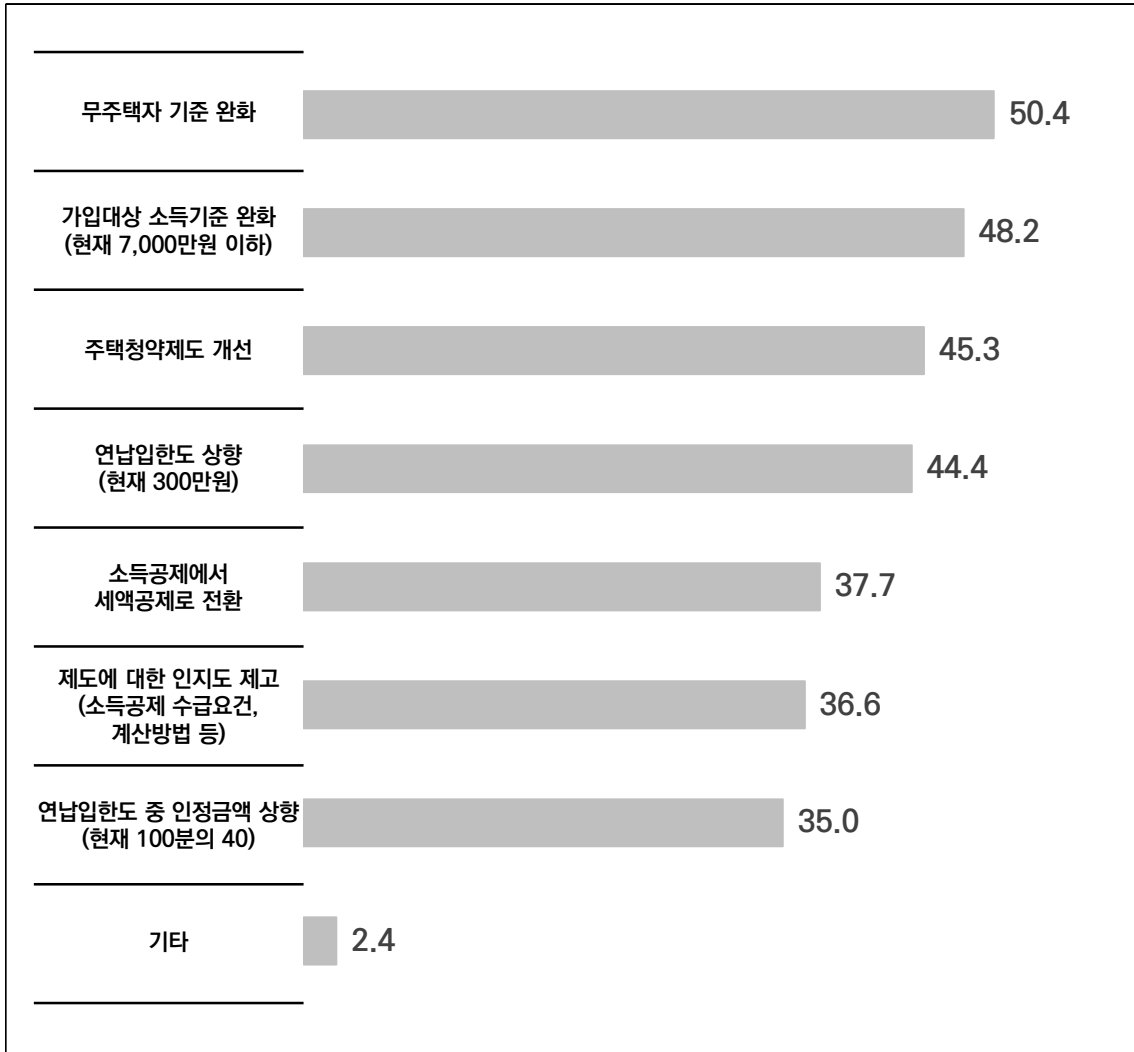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21.4	20.6	16.8	13.8	10.3	8.7	7.9	0.5	
성별	남성	(223)	21.5	21.1	16.1	12.6	13.0	7.2	7.6	0.9
	여성	(146)	21.2	19.9	17.8	15.8	6.2	11.0	8.2	0.0
연령	20세~29세	(50)	16.0	22.0	20.0	12.0	14.0	10.0	6.0	0.0
	30세~39세	(138)	26.1	16.7	18.1	11.6	10.1	8.7	7.2	1.4
	40세~49세	(106)	19.8	26.4	15.1	14.2	8.5	10.4	5.7	0.0
	50세~59세	(55)	23.6	20.0	14.5	18.2	9.1	3.6	10.9	0.0
	60세 이상	(20)	5.0	15.0	15.0	20.0	15.0	10.0	20.0	0.0
수도권	수도권	(261)	21.5	19.5	16.9	11.9	10.3	10.0	9.2	0.8
	비수도권	(108)	21.3	23.1	16.7	18.5	10.2	5.6	4.6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22.2	25.0	19.4	16.7	0.0	2.8	13.9	0.0
	2~3년제 대학	(38)	18.4	26.3	18.4	23.7	0.0	10.5	2.6	0.0
	4년제 대학	(260)	21.5	19.2	16.2	13.1	13.5	8.8	6.9	0.8
	대학원 석사 이상	(35)	22.9	20.0	17.1	5.7	8.6	11.4	14.3	0.0
혼인상태	미혼	(197)	17.8	18.8	20.3	11.7	13.2	10.2	7.1	1.0
	기혼	(157)	25.5	23.6	14.0	15.3	7.6	6.4	7.6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5)	26.7	13.3	0.0	26.7	0.0	13.3	20.0	0.0
가구원수	1명	(169)	18.3	18.9	20.1	11.8	11.8	9.5	8.3	1.2
	2명	(70)	18.6	20.0	14.3	17.1	12.9	7.1	10.0	0.0
	3명	(59)	18.6	25.4	18.6	11.9	6.8	11.9	6.8	0.0
	4명 이상	(71)	33.8	21.1	9.9	16.9	7.0	5.6	5.6	0.0
자녀수	0명	(242)	19.0	19.4	18.2	12.0	13.2	9.9	7.4	0.8
	1명	(46)	21.7	26.1	17.4	13.0	2.2	4.3	15.2	0.0
	2명 이상	(81)	28.4	21.0	12.3	19.8	6.2	7.4	4.9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12.5	25.0	0.0	25.0	6.3	12.5	18.8	0.0
	200~300만원 미만	(103)	18.4	24.3	23.3	12.6	7.8	5.8	7.8	0.0
	300~400만원 미만	(135)	18.5	17.8	16.3	13.3	12.6	11.1	8.9	1.5
	400~500만원 미만	(73)	27.4	20.5	17.8	9.6	8.2	9.6	6.8	0.0
	500만원 이상	(42)	31.0	19.0	7.1	21.4	14.3	4.8	2.4	0.0

- ① 가입대상 소득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 완화
 - ② 무주택자 기준 완화
 - ③ 주택청약제도 개선
 - ④ 연납입한도(현재 300만원) 상향
 - 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⑥ 연납입한도 중 인정금액(현재 100분의 40) 상향
 - ⑦ 제도에 대한 인지도(소득공제 수급요건, 계산방법 등) 제고
 - ⑧ 기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린다, 실수요자 위주의 개편, 집값을 잡아야함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그림 III-1-44〉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base 전체, n=369, 단위: %)



〈표 III-1-45〉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base 전체, n=36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369)	50.4	48.2	45.3	44.4	37.7	36.6	35.0	2.4
성별	남성	(223)	47.5	51.1	47.1	43.0	36.8	35.4	36.8	2.2
	여성	(146)	54.8	43.8	42.5	46.6	39.0	38.4	32.2	2.7
연령	20세~29세	(50)	62.0	42.0	44.0	40.0	40.0	36.0	34.0	2.0
	30세~39세	(138)	50.0	47.8	44.9	47.1	37.7	37.0	30.4	5.1
	40세~49세	(106)	47.2	50.0	50.9	40.6	38.7	34.0	38.7	0.0
	50세~59세	(55)	49.1	54.5	34.5	50.9	36.4	38.2	36.4	0.0
	60세 이상	(20)	45.0	40.0	50.0	40.0	30.0	45.0	45.0	5.0
수도권	수도권	(261)	54.0	46.4	42.9	44.4	39.5	36.0	34.1	2.7
	비수도권	(108)	41.7	52.8	50.9	44.4	33.3	38.0	37.0	1.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6)	55.6	25.0	50.0	47.2	47.2	38.9	36.1	0.0
	2~3년제 대학	(38)	52.6	42.1	50.0	34.2	47.4	39.5	31.6	2.6
	4년제 대학	(260)	48.5	52.7	44.6	43.1	35.8	36.9	36.2	2.3
	대학원 석사 이상	(35)	57.1	45.7	40.0	62.9	31.4	28.6	28.6	5.7
혼인상태	미혼	(197)	55.8	47.7	44.2	41.1	41.1	34.5	32.0	3.6
	기혼	(157)	45.2	51.0	47.1	48.4	31.8	36.9	38.2	1.3
	별거·사별·이혼·기타	(15)	33.3	26.7	40.0	46.7	53.3	60.0	40.0	0.0
가구원수	1명	(169)	53.8	46.2	46.7	40.8	41.4	34.3	32.5	4.1
	2명	(70)	55.7	55.7	42.9	48.6	25.7	35.7	35.7	0.0
	3명	(59)	49.2	42.4	44.1	40.7	52.5	32.2	39.0	0.0
	4명 이상	(71)	38.0	50.7	45.1	52.1	28.2	46.5	36.6	2.8
자녀수	0명	(242)	54.5	50.4	43.8	43.4	38.4	33.9	32.6	2.9
	1명	(46)	43.5	37.0	50.0	43.5	41.3	37.0	47.8	0.0
	2명 이상	(81)	42.0	48.1	46.9	48.1	33.3	44.4	34.6	2.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37.5	31.3	68.8	43.8	31.3	43.8	43.8	0.0
	200~300만원 미만	(103)	59.2	45.6	47.6	38.8	41.7	30.1	34.0	2.9
	300~400만원 미만	(135)	48.1	54.1	40.0	43.0	37.0	34.8	39.3	3.7
	400~500만원 미만	(73)	45.2	46.6	52.1	41.1	38.4	43.8	32.9	0.0
	500만원 이상	(42)	50.0	45.2	35.7	69.0	31.0	42.9	23.8	2.4

- ① 주택청약제도 개선
 - ②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③ 무주택자 기준 완화
 - ④ 가입대상 소득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 완화
 - ⑤ 연납입한도(현재 300만원) 상향
 - ⑥ 연납입한도 중 인정금액(현재 100분의 40) 상향
 - ⑦ 제도에 대한 인지도(소득공제 수급요건, 계산방법 등) 제고
 - ⑧ 기타: 공급 물량 자체를 늘린다, 실수요자 위주의 개편, 집값을 잡아야함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비수급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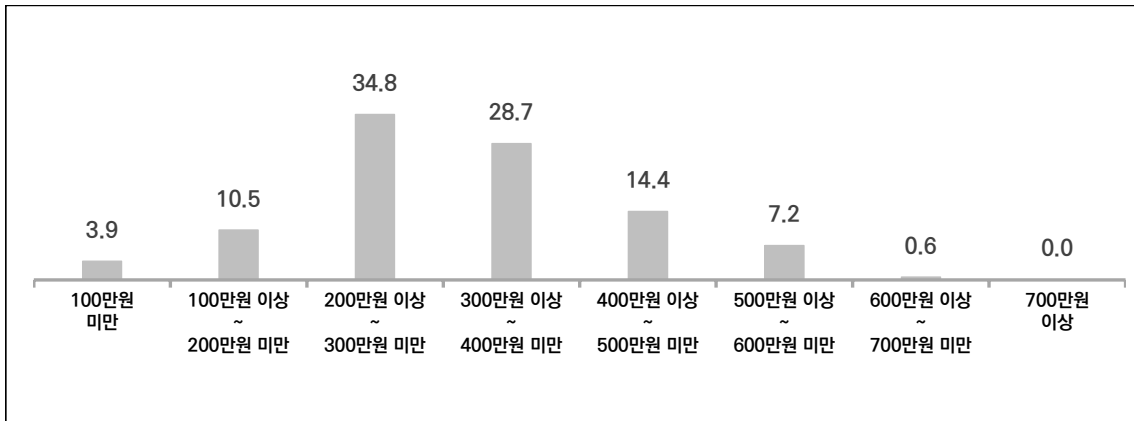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34.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8.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4.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4.7%), ‘여성’(35.1%) 각각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6.1%), ‘비수도권’(32.3%) 각각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2-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3.9	10.5	34.8	28.7	14.4	7.2	0.6	0.0
성별	남성	(124)	4.0	7.3	34.7	28.2	17.7	7.3	0.8	0.0
	여성	(57)	3.5	17.5	35.1	29.8	7.0	7.0	0.0	0.0
연령	20세~29세	(13)	15.4	7.7	38.5	15.4	15.4	7.7	0.0	0.0
	30세~39세	(51)	0.0	7.8	41.2	37.3	5.9	7.8	0.0	0.0
	40세~49세	(63)	3.2	7.9	33.3	28.6	17.5	7.9	1.6	0.0
	50세~59세	(39)	5.1	17.9	33.3	20.5	17.9	5.1	0.0	0.0
	60세 이상	(15)	6.7	13.3	20.0	33.3	20.0	6.7	0.0	0.0
수도권	수도권	(119)	0.8	9.2	36.1	30.3	15.1	7.6	0.8	0.0
	비수도권	(62)	9.7	12.9	32.3	25.8	12.9	6.5	0.0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3.8	15.4	34.6	23.1	19.2	3.8	0.0	0.0
	2~3년제 대학	(28)	3.6	7.1	46.4	25.0	10.7	7.1	0.0	0.0
	4년제 대학	(115)	3.5	11.3	31.3	31.3	14.8	7.8	0.0	0.0
	대학원 석사 이상	(12)	8.3	0.0	41.7	25.0	8.3	8.3	8.3	0.0
혼인상태	미혼	(101)	5.0	10.9	45.5	27.7	5.9	5.0	0.0	0.0
	기혼	(63)	0.0	6.3	20.6	33.3	27.0	11.1	1.6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7)	11.8	23.5	23.5	17.6	17.6	5.9	0.0	0.0
가구원수	1명	(91)	7.7	14.3	39.6	24.2	7.7	6.6	0.0	0.0
	2명	(31)	0.0	12.9	41.9	32.3	9.7	3.2	0.0	0.0
	3명	(33)	0.0	6.1	33.3	36.4	12.1	12.1	0.0	0.0
	4명 이상	(26)	0.0	0.0	11.5	30.8	46.2	7.7	3.8	0.0
자녀수	0명	(116)	5.2	12.1	42.2	29.3	6.0	5.2	0.0	0.0
	1명	(37)	0.0	13.5	24.3	32.4	16.2	13.5	0.0	0.0
	2명 이상	(28)	3.6	0.0	17.9	21.4	46.4	7.1	3.6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26.9	73.1	0.0	0.0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63)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400만원 미만	(52)	0.0	0.0	0.0	100.0	0.0	0.0	0.0	0.0
	400~500만원 미만	(26)	0.0	0.0	0.0	0.0	100.0	0.0	0.0	0.0
	500만원 이상	(14)	0.0	0.0	0.0	0.0	0.0	92.9	7.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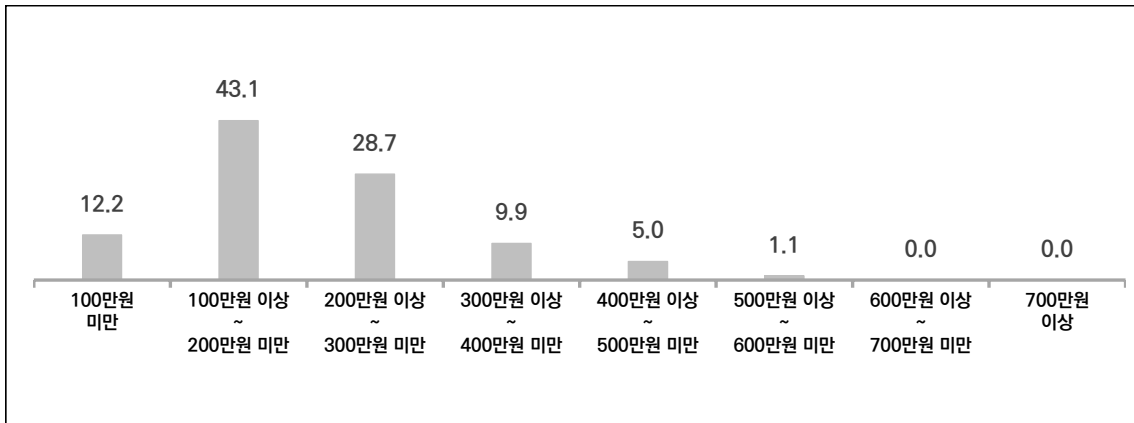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월평균 개인 지출액

- 월평균 개인 지출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43.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8.7%), ‘100만원 미만’(12.2%)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9.5%), ‘여성’(50.9%)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을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7.1%), ‘비수도권’(35.5%)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2-2〉 월평균 개인 지출액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2〉 월평균 개인 지출액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정책대상자+수급자)		(181)	12.2	43.1	28.7	9.9	5.0	1.1	0.0	0.0
성별	남성	(124)	10.5	39.5	33.1	9.7	5.6	1.6	0.0	0.0
	여성	(57)	15.8	50.9	19.3	10.5	3.5	0.0	0.0	0.0
연령	20세~29세	(13)	7.7	61.5	30.8	0.0	0.0	0.0	0.0	0.0
	30세~39세	(51)	13.7	49.0	25.5	5.9	3.9	2.0	0.0	0.0
	40세~49세	(63)	11.1	44.4	25.4	11.1	7.9	0.0	0.0	0.0
	50세~59세	(39)	12.8	33.3	33.3	12.8	5.1	2.6	0.0	0.0
	60세 이상	(15)	13.3	26.7	40.0	20.0	0.0	0.0	0.0	0.0
수도권	수도권	(119)	8.4	47.1	27.7	9.2	6.7	0.8	0.0	0.0
	비수도권	(62)	19.4	35.5	30.6	11.3	1.6	1.6	0.0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3.8	42.3	38.5	7.7	3.8	3.8	0.0	0.0
	2~3년제 대학	(28)	14.3	53.6	25.0	0.0	7.1	0.0	0.0	0.0
	4년제 대학	(115)	14.8	40.9	24.3	13.9	5.2	0.9	0.0	0.0
	대학원 석사 이상	(12)	0.0	41.7	58.3	0.0	0.0	0.0	0.0	0.0
혼인상태	미혼	(101)	15.8	59.4	18.8	4.0	2.0	0.0	0.0	0.0
	기혼	(63)	3.2	22.2	39.7	20.6	11.1	3.2	0.0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7)	23.5	23.5	47.1	5.9	0.0	0.0	0.0	0.0
가구원수	1명	(91)	20.9	52.7	22.0	3.3	1.1	0.0	0.0	0.0
	2명	(31)	3.2	41.9	41.9	9.7	0.0	3.2	0.0	0.0
	3명	(33)	3.0	45.5	27.3	12.1	9.1	3.0	0.0	0.0
	4명 이상	(26)	3.8	7.7	38.5	30.8	19.2	0.0	0.0	0.0
자녀수	0명	(116)	15.5	55.2	21.6	5.2	1.7	0.9	0.0	0.0
	1명	(37)	5.4	32.4	43.2	8.1	8.1	2.7	0.0	0.0
	2명 이상	(28)	7.1	7.1	39.3	32.1	14.3	0.0	0.0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8.5	61.5	0.0	0.0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63)	14.3	61.9	22.2	0.0	1.6	0.0	0.0	0.0
	300~400만원 미만	(52)	3.8	36.5	42.3	13.5	1.9	1.9	0.0	0.0
	400~500만원 미만	(26)	3.8	7.7	38.5	30.8	19.2	0.0	0.0	0.0
	500만원 이상	(14)	0.0	14.3	42.9	21.4	14.3	7.1	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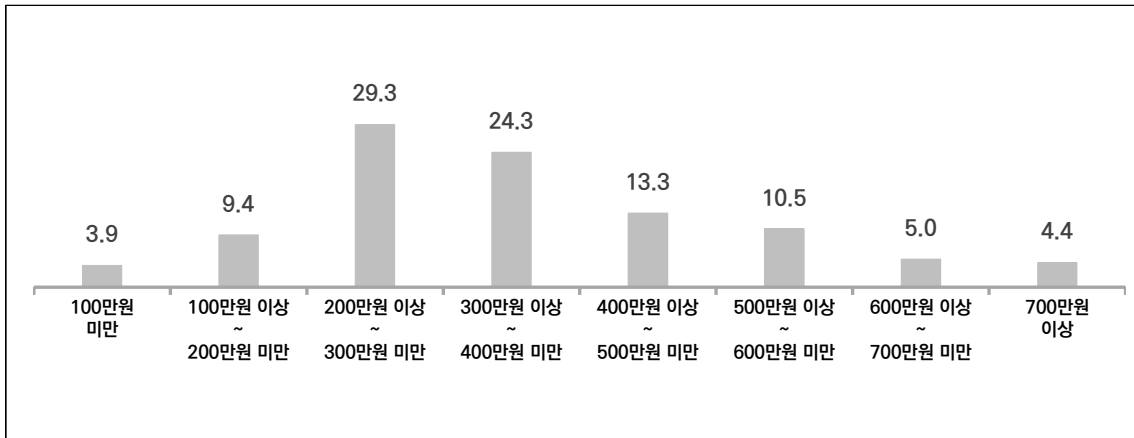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에 대해 알아본 결과,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이 29.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4.3%),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3.3%)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2.3%)에서, ‘여성’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9.8%)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38.5%), ‘40세~49세’(30.2%), ‘50세~59세’(25.6%)는 각각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에서, ‘30세~39세’(35.3%), ‘60세 이상’(26.7%)은 각각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1.9%), ‘비수도권’(24.2%) 각각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2-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3〉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3.9	9.4	29.3	24.3	13.3	10.5	5.0	4.4
성별	남성	(124)	4.0	6.5	32.3	21.8	16.1	11.3	3.2	4.8
	여성	(57)	3.5	15.8	22.8	29.8	7.0	8.8	8.8	3.5
연령	20세~29세	(13)	15.4	7.7	38.5	7.7	23.1	7.7	0.0	0.0
	30세~39세	(51)	0.0	7.8	31.4	35.3	5.9	11.8	2.0	5.9
	40세~49세	(63)	3.2	4.8	30.2	22.2	19.0	9.5	4.8	6.3
	50세~59세	(39)	5.1	17.9	25.6	17.9	15.4	10.3	7.7	0.0
	60세 이상	(15)	6.7	13.3	20.0	26.7	0.0	13.3	13.3	6.7
수도권	수도권	(119)	0.8	7.6	31.9	26.1	12.6	12.6	3.4	5.0
	비수도권	(62)	9.7	12.9	24.2	21.0	14.5	6.5	8.1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3.8	11.5	30.8	19.2	19.2	7.7	7.7	0.0
	2~3년제 대학	(28)	3.6	7.1	42.9	17.9	17.9	7.1	0.0	3.6
	4년제 대학	(115)	3.5	10.4	25.2	27.8	11.3	10.4	5.2	6.1
	대학원 석사 이상	(12)	8.3	0.0	33.3	16.7	8.3	25.0	8.3	0.0
혼인상태	미혼	(101)	5.0	10.9	40.6	25.7	6.9	7.9	1.0	2.0
	기혼	(63)	0.0	3.2	12.7	25.4	22.2	15.9	11.1	9.5
	별거·사별·이혼·기타	(17)	11.8	23.5	23.5	11.8	17.6	5.9	5.9	0.0
가구원수	1명	(91)	7.7	14.3	39.6	24.2	7.7	6.6	0.0	0.0
	2명	(31)	0.0	12.9	29.0	29.0	12.9	6.5	6.5	3.2
	3명	(33)	0.0	0.0	18.2	21.2	18.2	18.2	15.2	9.1
	4명 이상	(26)	0.0	0.0	7.7	23.1	26.9	19.2	7.7	15.4
자녀수	0명	(116)	5.2	12.1	37.1	26.7	6.9	7.8	1.7	2.6
	1명	(37)	0.0	8.1	16.2	18.9	27.0	13.5	8.1	8.1
	2명 이상	(28)	3.6	0.0	14.3	21.4	21.4	17.9	14.3	7.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26.9	65.4	3.8	3.8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63)	0.0	0.0	82.5	3.2	4.8	4.8	3.2	1.6
	300~400만원 미만	(52)	0.0	0.0	0.0	78.8	11.5	0.0	3.8	5.8
	400~500만원 미만	(26)	0.0	0.0	0.0	0.0	57.7	23.1	7.7	11.5
	500만원 이상	(14)	0.0	0.0	0.0	0.0	0.0	71.4	21.4	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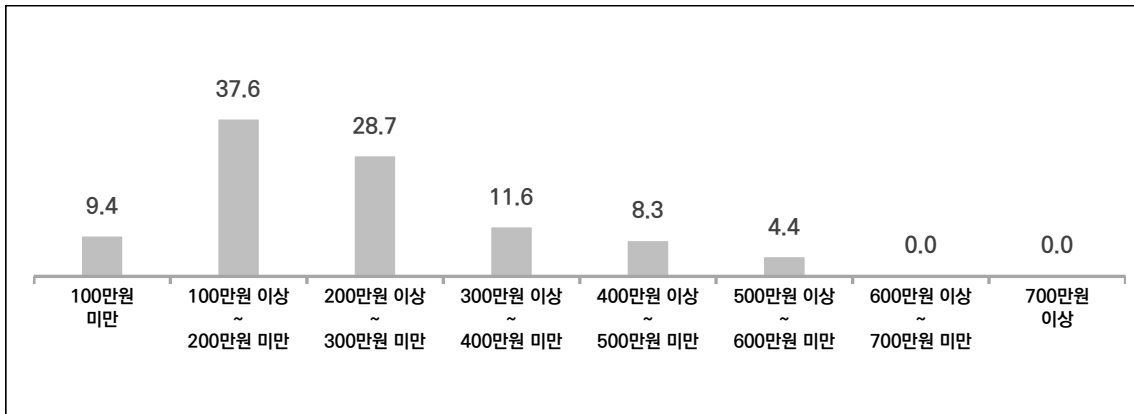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월평균 가구 지출액

- 월평균 가구 지출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37.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8.7%),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1.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33.1%), ‘여성’은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50.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1.2%), ‘비수도권’(30.6%)에서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2-4〉 월평균 가구 지출액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 월평균 가구 지출액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9.4	37.6	28.7	11.6	8.3	4.4	0.0	0.0
성별	남성	(124)	9.7	31.5	33.1	11.3	8.9	5.6	0.0	0.0
	여성	(57)	8.8	50.9	19.3	12.3	7.0	1.8	0.0	0.0
연령	20세~29세	(13)	7.7	46.2	46.2	0.0	0.0	0.0	0.0	0.0
	30세~39세	(51)	5.9	47.1	31.4	7.8	5.9	2.0	0.0	0.0
	40세~49세	(63)	9.5	36.5	25.4	14.3	7.9	6.3	0.0	0.0
	50세~59세	(39)	12.8	28.2	28.2	12.8	12.8	5.1	0.0	0.0
	60세 이상	(15)	13.3	26.7	20.0	20.0	13.3	6.7	0.0	0.0
수도권	수도권	(119)	5.9	41.2	31.9	8.4	7.6	5.0	0.0	0.0
	비수도권	(62)	16.1	30.6	22.6	17.7	9.7	3.2	0.0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3.8	23.1	46.2	11.5	7.7	7.7	0.0	0.0
	2~3년제 대학	(28)	7.1	57.1	28.6	0.0	7.1	0.0	0.0	0.0
	4년제 대학	(115)	12.2	35.7	24.3	13.9	9.6	4.3	0.0	0.0
	대학원 석사 이상	(12)	0.0	41.7	33.3	16.7	0.0	8.3	0.0	0.0
혼인상태	미혼	(101)	12.9	57.4	22.8	5.0	2.0	0.0	0.0	0.0
	기혼	(63)	0.0	9.5	38.1	22.2	19.0	11.1	0.0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7)	23.5	23.5	29.4	11.8	5.9	5.9	0.0	0.0
가구원수	1명	(91)	18.7	51.6	23.1	4.4	2.2	0.0	0.0	0.0
	2명	(31)	0.0	38.7	38.7	12.9	3.2	6.5	0.0	0.0
	3명	(33)	0.0	21.2	36.4	18.2	12.1	12.1	0.0	0.0
	4명 이상	(26)	0.0	7.7	26.9	26.9	30.8	7.7	0.0	0.0
자녀수	0명	(116)	12.1	53.4	25.0	6.0	2.6	0.9	0.0	0.0
	1명	(37)	2.7	13.5	40.5	21.6	13.5	8.1	0.0	0.0
	2명 이상	(28)	7.1	3.6	28.6	21.4	25.0	14.3	0.0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4.6	61.5	3.8	0.0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63)	11.1	52.4	25.4	7.9	3.2	0.0	0.0	0.0
	300~400만원 미만	(52)	0.0	30.8	46.2	17.3	1.9	3.8	0.0	0.0
	400~500만원 미만	(26)	3.8	7.7	19.2	11.5	38.5	19.2	0.0	0.0
	500만원 이상	(14)	0.0	7.1	42.9	28.6	14.3	7.1	0.0	0.0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자산 및 부채

(1) 자산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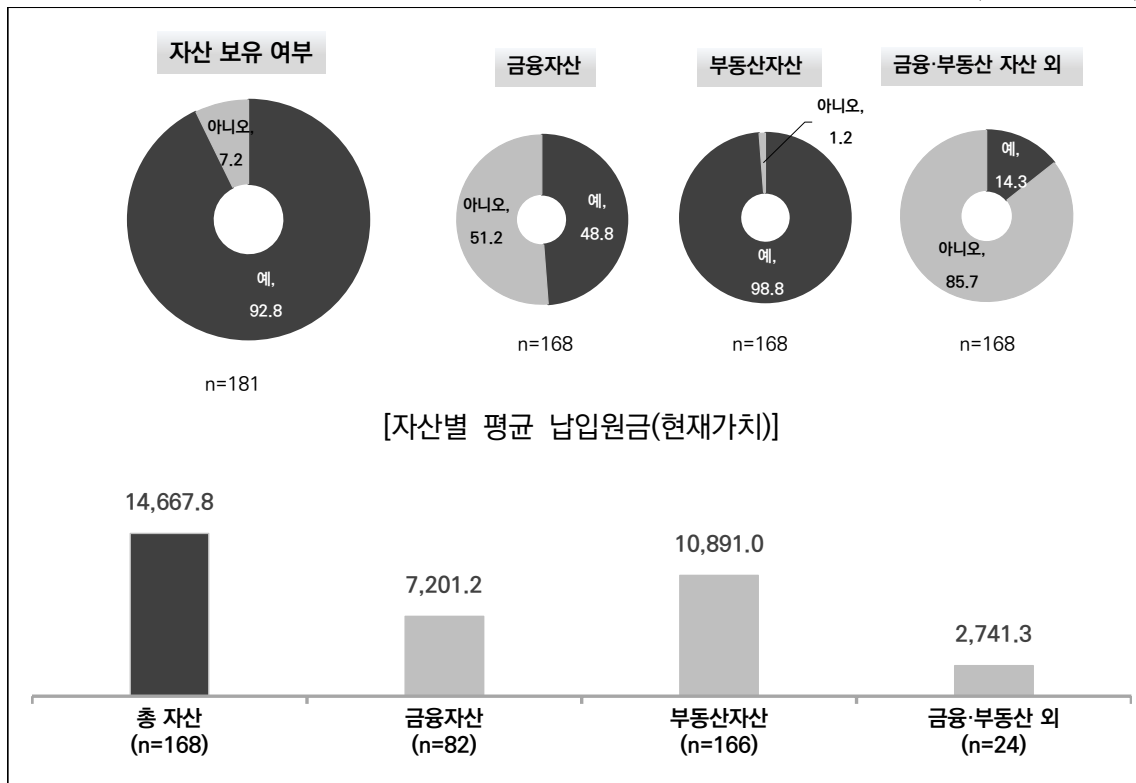
- 자산 보유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92.8%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자산 유형으로는 부동산자산(98.8%)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자산(48.8%), 금융·부동산 외 자산(14.3%) 순으로 나타남

(2)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

-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총 자산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은 14,667.8만원으로 나타남
 -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자산(10,891.0만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자산(7,201.2만원), 금융·부동산 외 자산(2,741.3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2-5〉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단위: %, 만원)



〈표 Ⅲ-2-5〉 자산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산		사례수*	금융		부동산		금융·부동산 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92.8	7.2	(168)	48.8	51.2	98.8	1.2	14.3	85.7	
성별	남성	(124)	91.1	8.9	(113)	50.4	49.6	98.2	1.8	15.0	85.0
	여성	(57)	96.5	3.5	(55)	45.5	54.5	100.0	0.0	12.7	87.3
연령	20세~29세	(13)	100.0	0.0	(13)	30.8	69.2	100.0	0.0	15.4	84.6
	30세~39세	(51)	92.2	7.8	(47)	55.3	44.7	100.0	0.0	14.9	85.1
	40세~49세	(63)	93.7	6.3	(59)	50.8	49.2	98.3	1.7	13.6	86.4
	50세~59세	(39)	89.7	10.3	(35)	40.0	60.0	97.1	2.9	11.4	88.6
	60세 이상	(15)	93.3	6.7	(14)	57.1	42.9	100.0	0.0	21.4	78.6
수도권	수도권	(119)	96.6	3.4	(115)	52.2	47.8	98.3	1.7	10.4	89.6
	비수도권	(62)	85.5	14.5	(53)	41.5	58.5	100.0	0.0	22.6	77.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88.5	11.5	(23)	43.5	56.5	100.0	0.0	17.4	82.6
	2~3년제 대학	(28)	85.7	14.3	(24)	50.0	50.0	95.8	4.2	8.3	91.7
	4년제 대학	(115)	96.5	3.5	(111)	50.5	49.5	100.0	0.0	15.3	84.7
	대학원 석사 이상	(12)	83.3	16.7	(10)	40.0	60.0	90.0	10.0	10.0	90.0
혼인상태	미혼	(101)	93.1	6.9	(94)	48.9	51.1	98.9	1.1	13.8	86.2
	기혼	(63)	93.7	6.3	(59)	50.8	49.2	98.3	1.7	16.9	83.1
	별거·사별·이혼·기타	(17)	88.2	11.8	(15)	40.0	60.0	100.0	0.0	6.7	93.3
가구원수	1명	(91)	92.3	7.7	(84)	47.6	52.4	98.8	1.2	16.7	83.3
	2명	(31)	96.8	3.2	(30)	53.3	46.7	100.0	0.0	13.3	86.7
	3명	(33)	93.9	6.1	(31)	51.6	48.4	96.8	3.2	9.7	90.3
	4명 이상	(26)	88.5	11.5	(23)	43.5	56.5	100.0	0.0	13.0	87.0
자녀수	0명	(116)	92.2	7.8	(107)	49.5	50.5	99.1	0.9	15.0	85.0
	1명	(37)	94.6	5.4	(35)	51.4	48.6	97.1	2.9	11.4	88.6
	2명 이상	(28)	92.9	7.1	(26)	42.3	57.7	100.0	0.0	15.4	84.6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88.5	11.5	(23)	39.1	60.9	100.0	0.0	17.4	82.6
	200~300만원 미만	(63)	87.3	12.7	(55)	43.6	56.4	96.4	3.6	9.1	90.9
	300~400만원 미만	(52)	98.1	1.9	(51)	47.1	52.9	100.0	0.0	9.8	90.2
	400~500만원 미만	(26)	96.2	3.8	(25)	64.0	36.0	100.0	0.0	24.0	76.0
	500만원 이상	(14)	100.0	0.0	(14)	64.3	35.7	100.0	0.0	28.6	71.4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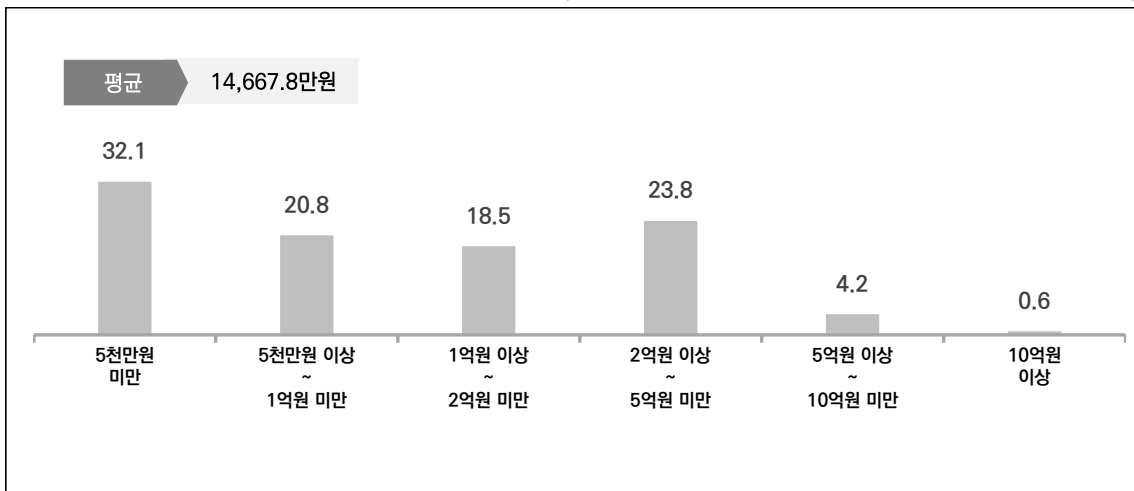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자산별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5천만원 미만’이 32.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억원 이상~5억원 미만’(23.8%),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0.8%) 순으로 나타남.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의 평균은 14,667.8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천만원 미만’(35.4%)에서, ‘여성’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29.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4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5천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0.4%), ‘비수도권’(35.8%) 각각 ‘5천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2-6〉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68, 단위: %)



〈표 III-2-6〉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68,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68)	32.1	20.8	18.5	23.8	4.2	0.6	14,667.8
성별	남성	(113)	35.4	20.4	16.8	21.2	5.3	0.9	14,740.1
	여성	(55)	25.5	21.8	21.8	29.1	1.8	0.0	14,519.3
연령	20세~29세	(13)	61.5	23.1	0.0	15.4	0.0	0.0	6,676.9
	30세~39세	(47)	31.9	19.1	23.4	17.0	8.5	0.0	14,611.9
	40세~49세	(59)	23.7	22.0	15.3	33.9	3.4	1.7	17,578.8
	50세~59세	(35)	31.4	22.9	25.7	20.0	0.0	0.0	12,162.3
	60세 이상	(14)	42.9	14.3	14.3	21.4	7.1	0.0	16,271.4
수도권	수도권	(115)	30.4	20.9	16.5	26.1	5.2	0.9	15,947.7
	비수도권	(53)	35.8	20.8	22.6	18.9	1.9	0.0	11,890.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	26.1	30.4	17.4	26.1	0.0	0.0	13,282.6
	2~3년제 대학	(24)	33.3	20.8	16.7	25.0	4.2	0.0	14,733.3
	4년제 대학	(111)	31.5	18.0	20.7	24.3	5.4	0.0	14,721.5
	대학원 석사 이상	(10)	50.0	30.0	0.0	10.0	0.0	10.0	17,100.0
혼인상태	미혼	(94)	38.3	19.1	19.1	19.1	4.3	0.0	12,155.3
	기혼	(59)	16.9	25.4	18.6	32.2	5.1	1.7	19,763.4
	별거·사별·이혼·기타	(15)	53.3	13.3	13.3	20.0	0.0	0.0	10,370.0
가구원수	1명	(84)	45.2	16.7	16.7	17.9	3.6	0.0	11,344.6
	2명	(30)	23.3	33.3	20.0	23.3	0.0	0.0	12,382.0
	3명	(31)	19.4	22.6	16.1	35.5	6.5	0.0	19,341.3
	4명 이상	(23)	13.0	17.4	26.1	30.4	8.7	4.3	23,487.0
자녀수	0명	(107)	36.4	19.6	19.6	20.6	3.7	0.0	12,481.9
	1명	(35)	28.6	22.9	14.3	28.6	5.7	0.0	17,183.7
	2명 이상	(26)	19.2	23.1	19.2	30.8	3.8	3.8	20,276.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3)	56.5	21.7	8.7	8.7	4.3	0.0	9,554.3
	200~300만원 미만	(55)	45.5	16.4	20.0	18.2	0.0	0.0	9,403.6
	300~400만원 미만	(51)	21.6	23.5	21.6	25.5	7.8	0.0	16,154.1
	400~500만원 미만	(25)	16.0	16.0	20.0	40.0	4.0	4.0	22,900.0
	500만원 이상	(14)	7.1	35.7	14.3	35.7	7.1	0.0	23,63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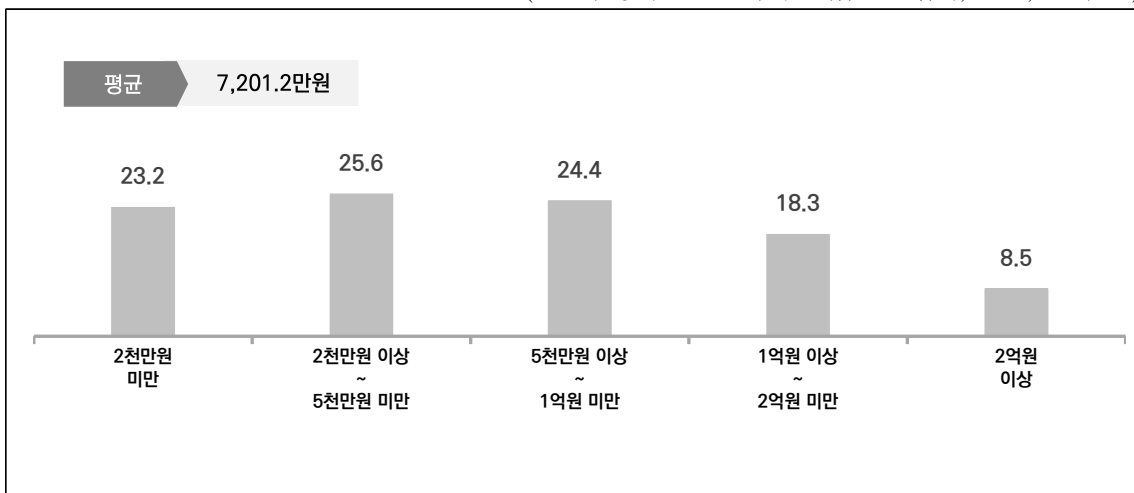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25.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4.4%), ‘2천만원 미만’(23.2%) 순으로 나타남.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의 평균은 7,201.2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8.1%), ‘여성’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32.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6.7%), ‘비수도권’은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각각 22.7%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2-7〉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82, 단위: %)



〈표 III-2-7〉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82,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82)	23.2	25.6	24.4	18.3	8.5	7,201.2
성별	남성	(57)	22.8	28.1	21.1	21.1	7.0	7,000.0
	여성	(25)	24.0	20.0	32.0	12.0	12.0	7,660.0
연령	20세~29세	(4)	25.0	0.0	25.0	50.0	0.0	9,000.0
	30세~39세	(26)	34.6	23.1	19.2	19.2	3.8	5,903.8
	40세~49세	(30)	20.0	23.3	30.0	10.0	16.7	7,946.7
	50세~59세	(14)	14.3	50.0	14.3	21.4	0.0	4,721.4
	60세 이상	(8)	12.5	12.5	37.5	25.0	12.5	12,062.5
수도권	수도권	(60)	23.3	26.7	25.0	18.3	6.7	6,528.3
	비수도권	(22)	22.7	22.7	22.7	18.2	13.6	9,036.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0)	10.0	30.0	30.0	30.0	0.0	6,900.0
	2~3년제 대학	(12)	33.3	25.0	16.7	25.0	0.0	6,041.7
	4년제 대학	(56)	25.0	23.2	23.2	16.1	12.5	7,741.1
	대학원 석사 이상	(4)	0.0	50.0	50.0	0.0	0.0	3,875.0
혼인상태	미혼	(46)	26.1	21.7	23.9	19.6	8.7	7,347.8
	기혼	(30)	16.7	33.3	23.3	16.7	10.0	7,300.0
	별거·사별·이혼·기타	(6)	33.3	16.7	33.3	16.7	0.0	5,583.3
가구원수	1명	(40)	25.0	20.0	25.0	20.0	10.0	7,690.0
	2명	(16)	31.3	31.3	18.8	18.8	0.0	4,781.3
	3명	(16)	18.8	25.0	37.5	6.3	12.5	7,462.5
	4명 이상	(10)	10.0	40.0	10.0	30.0	10.0	8,700.0
자녀수	0명	(53)	24.5	24.5	22.6	20.8	7.5	7,264.2
	1명	(18)	27.8	22.2	38.9	0.0	11.1	5,861.1
	2명 이상	(11)	9.1	36.4	9.1	36.4	9.1	9,090.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9)	33.3	44.4	11.1	0.0	11.1	7,444.4
	200~300만원 미만	(24)	29.2	33.3	29.2	8.3	0.0	4,254.2
	300~400만원 미만	(24)	20.8	8.3	29.2	25.0	16.7	9,970.8
	400~500만원 미만	(16)	12.5	31.3	12.5	37.5	6.3	7,687.5
	500만원 이상	(9)	22.2	22.2	33.3	11.1	11.1	6,5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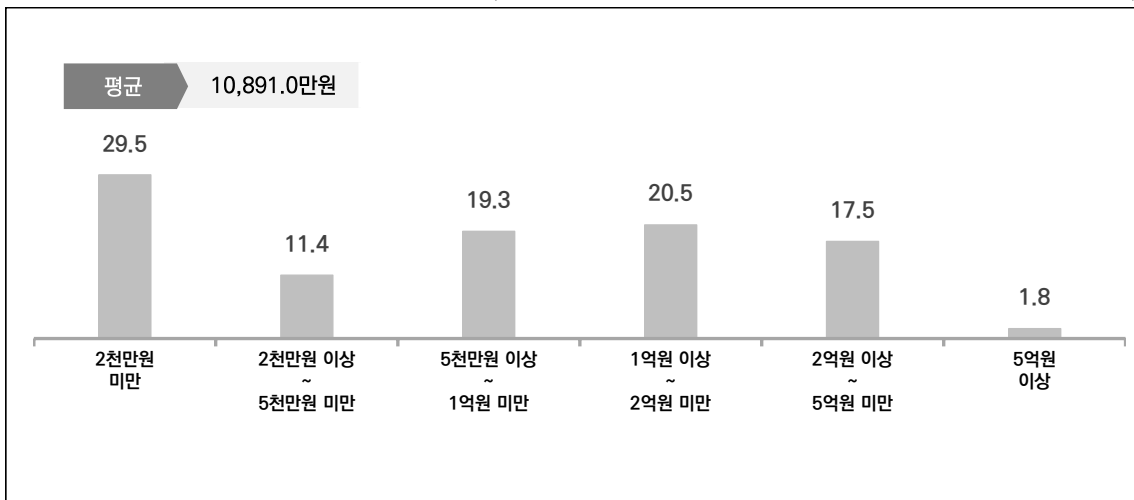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천만원 미만’이 29.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0.5%),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19.3%) 순으로 나타남.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의 평균은 10,891.0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천만원 미만’(53.8%)에서, ‘여성’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23.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4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2천만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26.5%), ‘비수도권’(35.8%) 각각 ‘2천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2-8〉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66, 단위: %)



〈표 III-2-8〉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66,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66)	29.5	11.4	19.3	20.5	17.5	1.8	10,891.0
성별	남성	(111)	33.3	10.8	18.9	19.8	14.4	2.7	10,909.0
	여성	(55)	21.8	12.7	20.0	21.8	23.6	0.0	10,854.5
연령	20세~29세	(13)	53.8	23.1	15.4	7.7	0.0	0.0	3,369.2
	30세~39세	(47)	25.5	17.0	17.0	19.1	19.1	2.1	10,759.6
	40세~49세	(58)	25.9	6.9	17.2	27.6	19.0	3.4	13,518.1
	50세~59세	(34)	32.4	5.9	23.5	20.6	17.6	0.0	10,354.4
	60세 이상	(14)	28.6	14.3	28.6	7.1	21.4	0.0	8,735.7
수도권	수도권	(113)	26.5	11.5	19.5	20.4	19.5	2.7	12,353.5
	비수도권	(53)	35.8	11.3	18.9	20.8	13.2	0.0	7,772.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	30.4	4.3	34.8	4.3	26.1	0.0	10,100.0
	2~3년제 대학	(23)	34.8	8.7	13.0	21.7	21.7	0.0	12,165.2
	4년제 대학	(111)	26.1	14.4	17.1	25.2	15.3	1.8	10,313.5
	대학원 석사 이상	(9)	55.6	0.0	22.2	0.0	11.1	11.1	16,777.8
혼인상태	미혼	(93)	36.6	11.8	19.4	17.2	15.1	0.0	8,196.8
	기혼	(58)	12.1	12.1	22.4	27.6	20.7	5.2	16,000.9
	별거·사별·이혼·기타	(15)	53.3	6.7	6.7	13.3	20.0	0.0	7,836.7
가구원수	1명	(83)	42.2	13.3	16.9	14.5	13.3	0.0	7,211.4
	2명	(30)	23.3	13.3	30.0	16.7	16.7	0.0	9,436.7
	3명	(30)	16.7	6.7	16.7	33.3	20.0	6.7	15,928.3
	4명 이상	(23)	8.7	8.7	17.4	30.4	30.4	4.3	19,495.7
자녀수	0명	(106)	34.0	13.2	19.8	17.0	16.0	0.0	8,503.8
	1명	(34)	26.5	8.8	14.7	26.5	17.6	5.9	14,385.3
	2명 이상	(26)	15.4	7.7	23.1	26.9	23.1	3.8	16,053.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3)	52.2	4.3	21.7	13.0	8.7	0.0	6,506.5
	200~300만원 미만	(53)	39.6	13.2	13.2	20.8	13.2	0.0	7,667.9
	300~400만원 미만	(51)	19.6	9.8	27.5	23.5	17.6	2.0	11,302.0
	400~500만원 미만	(25)	12.0	16.0	12.0	28.0	28.0	4.0	16,540.0
	500만원 이상	(14)	21.4	14.3	21.4	7.1	28.6	7.1	18,71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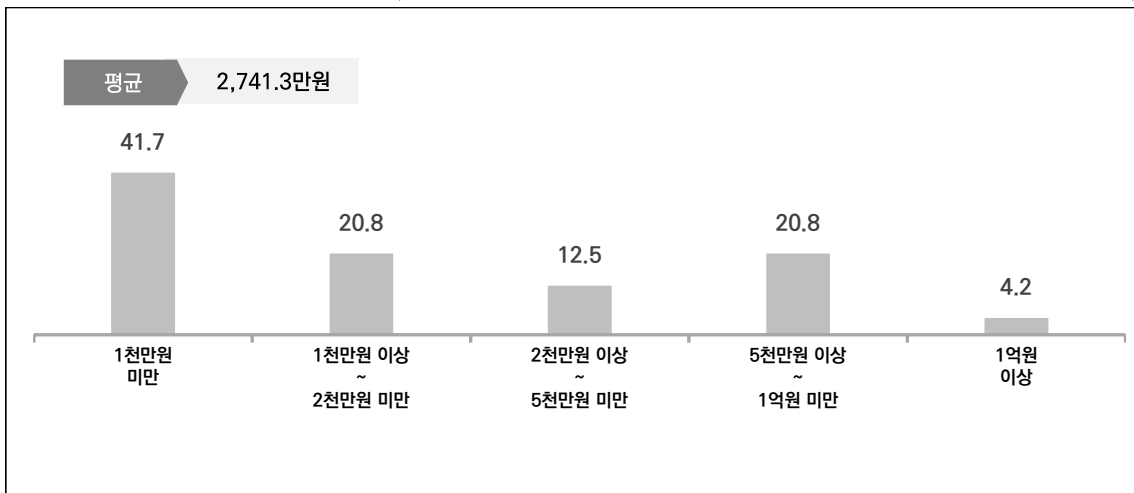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천만원 미만’이 41.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각각 20.8%) 순으로 나타남. 금융·부동산 외 자산의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은 2,741.3만원임

〈그림 III-2-9〉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부동산 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24, 단위: %)



〈표 III-2-9〉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부동산 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24,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24)	41.7	20.8	12.5	20.8	4.2	2,741.3
성별	남성	(17)	41.2	11.8	17.6	23.5	5.9	3,278.2
	여성	(7)	42.9	42.9	0.0	14.3	0.0	1,437.1
연령	20세~29세	(2)	0.0	50.0	0.0	50.0	0.0	3,500.0
	30세~39세	(7)	57.1	14.3	0.0	14.3	14.3	3,937.1
	40세~49세	(8)	62.5	0.0	12.5	25.0	0.0	1,837.5
	50세~59세	(4)	25.0	50.0	0.0	25.0	0.0	1,882.5
	60세 이상	(3)	0.0	33.3	66.7	0.0	0.0	3,000.0
수도권	수도권	(12)	41.7	8.3	16.7	25.0	8.3	3,860.8
	비수도권	(12)	41.7	33.3	8.3	16.7	0.0	1,621.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	50.0	25.0	25.0	0.0	0.0	1,050.0
	2~3년제 대학	(2)	50.0	50.0	0.0	0.0	0.0	650.0
	4년제 대학	(17)	41.2	17.6	5.9	29.4	5.9	3,281.8
	대학원 석사 이상	(1)	0.0	0.0	100.0	0.0	0.0	4,500.0
혼인상태	미혼	(13)	46.2	23.1	0.0	23.1	7.7	3,253.8
	기혼	(10)	40.0	20.0	20.0	20.0	0.0	1,899.0
	별거·사별·이혼·기타	(1)	0.0	0.0	100.0	0.0	0.0	4,500.0
가구원수	1명	(14)	42.9	21.4	7.1	21.4	7.1	3,342.9
	2명	(4)	25.0	25.0	0.0	50.0	0.0	2,965.0
	3명	(3)	66.7	0.0	33.3	0.0	0.0	776.7
	4명 이상	(3)	33.3	33.3	33.3	0.0	0.0	1,600.0
자녀수	0명	(16)	43.8	25.0	0.0	25.0	6.3	3,072.5
	1명	(4)	50.0	0.0	50.0	0.0	0.0	1,707.5
	2명 이상	(4)	25.0	25.0	25.0	25.0	0.0	2,45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4)	50.0	50.0	0.0	0.0	0.0	775.0
	200~300만원 미만	(5)	40.0	20.0	20.0	20.0	0.0	1,740.0
	300~400만원 미만	(5)	60.0	20.0	0.0	20.0	0.0	1,632.0
	400~500만원 미만	(6)	16.7	16.7	16.7	33.3	16.7	6,000.0
	500만원 이상	(4)	50.0	0.0	25.0	25.0	0.0	2,457.5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부채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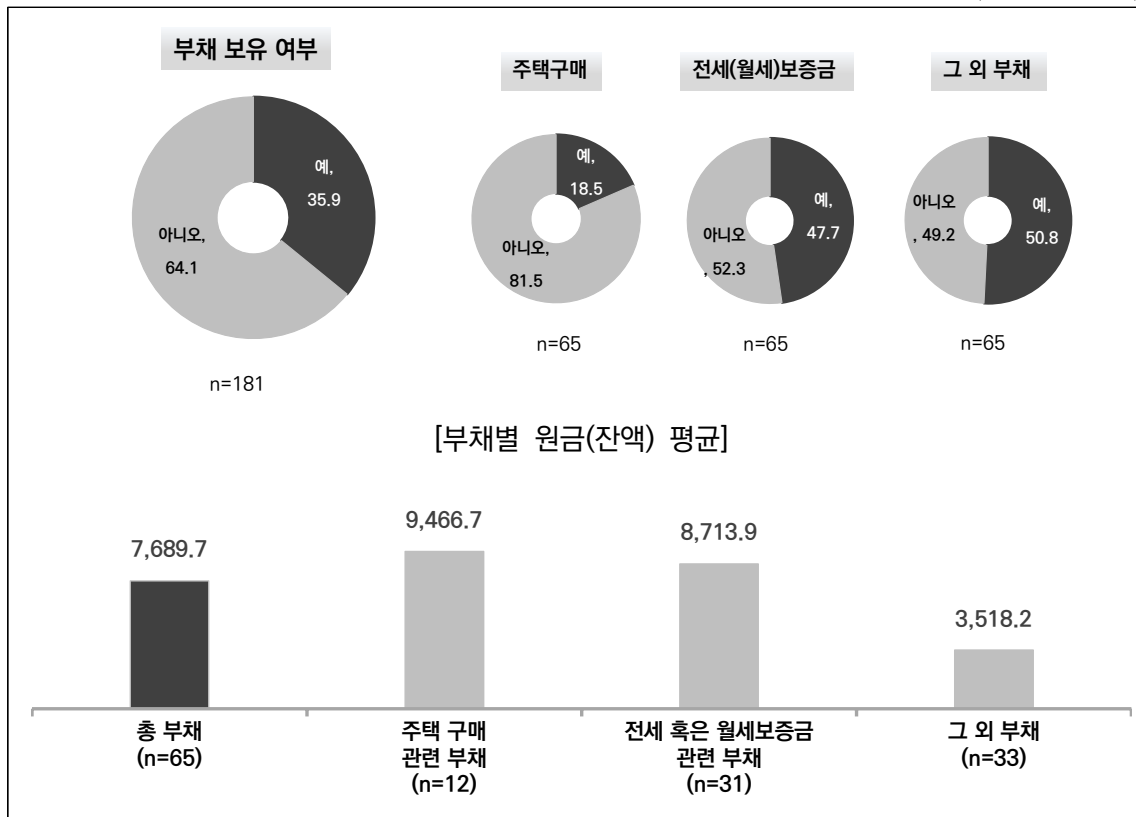
- 부채 보유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64.1%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부채 유형으로는 ‘그 외 부채’(50.8%)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전세(월세)보증금’(47.7%), ‘주택구매’(18.5%) 순으로 나타남

(8)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

-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총 부채 평균 원금(잔액)은 7,689.7만원으로 나타남
 - 부채 유형별로는 ‘주택구매’(9,466.7만원)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전세(월세)보증금’(8,713.9만원), ‘그 외 부채’(3,518.2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2-10〉 부채 보유 여부 및 현황

(단위: %, 만원)



〈표 III-2-10〉 부채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부채		사례수*	주택구매		전세(월세)보증금		그 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35.9	64.1	(65)	18.5	81.5	47.7	52.3	50.8	49.2	
성별	남성	(124)	37.1	62.9	(46)	19.6	80.4	41.3	58.7	60.9	39.1
	여성	(57)	33.3	66.7	(19)	15.8	84.2	63.2	36.8	26.3	73.7
연령	20세~29세	(13)	30.8	69.2	(4)	0.0	100.0	75.0	25.0	25.0	75.0
	30세~39세	(51)	41.2	58.8	(21)	19.0	81.0	57.1	42.9	38.1	61.9
	40세~49세	(63)	38.1	61.9	(24)	29.2	70.8	37.5	62.5	58.3	41.7
	50세~59세	(39)	35.9	64.1	(14)	7.1	92.9	50.0	50.0	57.1	42.9
	60세 이상	(15)	13.3	86.7	(2)	0.0	100.0	0.0	100.0	100.0	0.0
수도권	수도권	(119)	37.0	63.0	(44)	18.2	81.8	45.5	54.5	52.3	47.7
	비수도권	(62)	33.9	66.1	(21)	19.0	81.0	52.4	47.6	47.6	52.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50.0	50.0	(13)	30.8	69.2	23.1	76.9	46.2	53.8
	2~3년제 대학	(28)	32.1	67.9	(9)	0.0	100.0	77.8	22.2	55.6	44.4
	4년제 대학	(115)	30.4	69.6	(35)	22.9	77.1	54.3	45.7	45.7	54.3
	대학원 석사 이상	(12)	66.7	33.3	(8)	0.0	100.0	25.0	75.0	75.0	25.0
혼인상태	미혼	(101)	31.7	68.3	(32)	21.9	78.1	37.5	62.5	43.8	56.3
	기혼	(63)	39.7	60.3	(25)	20.0	80.0	52.0	48.0	56.0	44.0
	별거·사별·이혼·기타	(17)	47.1	52.9	(8)	0.0	100.0	75.0	25.0	62.5	37.5
가구원수	1명	(91)	33.0	67.0	(30)	20.0	80.0	43.3	56.7	46.7	53.3
	2명	(31)	38.7	61.3	(12)	16.7	83.3	66.7	33.3	33.3	66.7
	3명	(33)	45.5	54.5	(15)	20.0	80.0	46.7	53.3	53.3	46.7
	4명 이상	(26)	30.8	69.2	(8)	12.5	87.5	37.5	62.5	87.5	12.5
자녀수	0명	(116)	32.8	67.2	(38)	23.7	76.3	42.1	57.9	42.1	57.9
	1명	(37)	45.9	54.1	(17)	11.8	88.2	58.8	41.2	52.9	47.1
	2명 이상	(28)	35.7	64.3	(10)	10.0	90.0	50.0	50.0	80.0	2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0.8	69.2	(8)	25.0	75.0	37.5	62.5	50.0	50.0
	200~300만원 미만	(63)	38.1	61.9	(24)	20.8	79.2	37.5	62.5	50.0	50.0
	300~400만원 미만	(52)	32.7	67.3	(17)	11.8	88.2	52.9	47.1	52.9	47.1
	400~500만원 미만	(26)	38.5	61.5	(10)	10.0	90.0	60.0	40.0	50.0	50.0
	500만원 이상	(14)	42.9	57.1	(6)	33.3	66.7	66.7	33.3	50.0	50.0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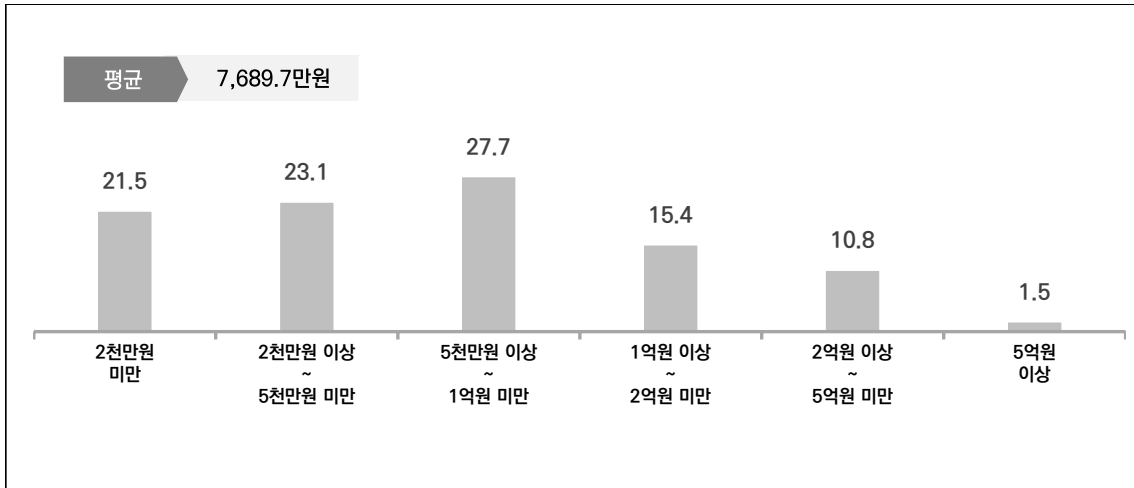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총 부채 원금(잔액)

- 총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7.7%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는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3.1%), ‘2천만원 미만’(21.5%) 순으로 나타남. 총 부채 원금(잔액)의 평균은 7,689.7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천만원 미만’(26.1%)에서, ‘여성’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47.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천만원 미만’(22.7%)에서 ‘비수도권’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42.9%)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2-11〉 총 부채 원금(잔액)

(base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65, 단위: %)



〈표 III-2-11〉 총 부채 원금(잔액)

(base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65,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65)	21.5	23.1	27.7	15.4	10.8	1.5	7,689.7
성별	남성	(46)	26.1	21.7	19.6	19.6	10.9	2.2	7,944.1
	여성	(19)	10.5	26.3	47.4	5.3	10.5	0.0	7,073.7
연령	20세~29세	(4)	25.0	0.0	50.0	25.0	0.0	0.0	6,050.0
	30세~39세	(21)	19.0	23.8	23.8	14.3	14.3	4.8	9,585.7
	40세~49세	(24)	25.0	16.7	29.2	20.8	8.3	0.0	6,916.7
	50세~59세	(14)	21.4	28.6	28.6	7.1	14.3	0.0	7,416.4
	60세 이상	(2)	0.0	100.0	0.0	0.0	0.0	0.0	2,250.0
수도권	수도권	(44)	22.7	20.5	20.5	20.5	13.6	2.3	8,564.3
	비수도권	(21)	19.0	28.6	42.9	4.8	4.8	0.0	5,857.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	38.5	7.7	38.5	7.7	7.7	0.0	5,884.6
	2~3년제 대학	(9)	22.2	22.2	0.0	44.4	11.1	0.0	8,055.6
	4년제 대학	(35)	14.3	22.9	37.1	11.4	11.4	2.9	8,786.6
	대학원 석사 이상	(8)	25.0	50.0	0.0	12.5	12.5	0.0	5,412.5
혼인상태	미혼	(32)	28.1	12.5	28.1	18.8	12.5	0.0	7,428.1
	기혼	(25)	16.0	28.0	24.0	16.0	12.0	4.0	9,012.0
	별거·사별·이혼·기타	(8)	12.5	50.0	37.5	0.0	0.0	0.0	4,603.8
가구원수	1명	(30)	26.7	16.7	30.0	16.7	10.0	0.0	7,051.0
	2명	(12)	16.7	16.7	41.7	16.7	8.3	0.0	7,166.7
	3명	(15)	20.0	33.3	13.3	20.0	6.7	6.7	9,186.7
	4명 이상	(8)	12.5	37.5	25.0	0.0	25.0	0.0	8,062.5
자녀수	0명	(38)	23.7	13.2	31.6	21.1	10.5	0.0	7,447.4
	1명	(17)	23.5	41.2	11.8	11.8	5.9	5.9	8,135.3
	2명 이상	(10)	10.0	30.0	40.0	0.0	20.0	0.0	7,853.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8)	12.5	12.5	62.5	12.5	0.0	0.0	6,812.5
	200~300만원 미만	(24)	20.8	33.3	29.2	4.2	12.5	0.0	6,092.9
	300~400만원 미만	(17)	41.2	11.8	17.6	23.5	5.9	0.0	5,505.9
	400~500만원 미만	(10)	10.0	30.0	10.0	30.0	20.0	0.0	9,550.0
	500만원 이상	(6)	0.0	16.7	33.3	16.7	16.7	16.7	18,3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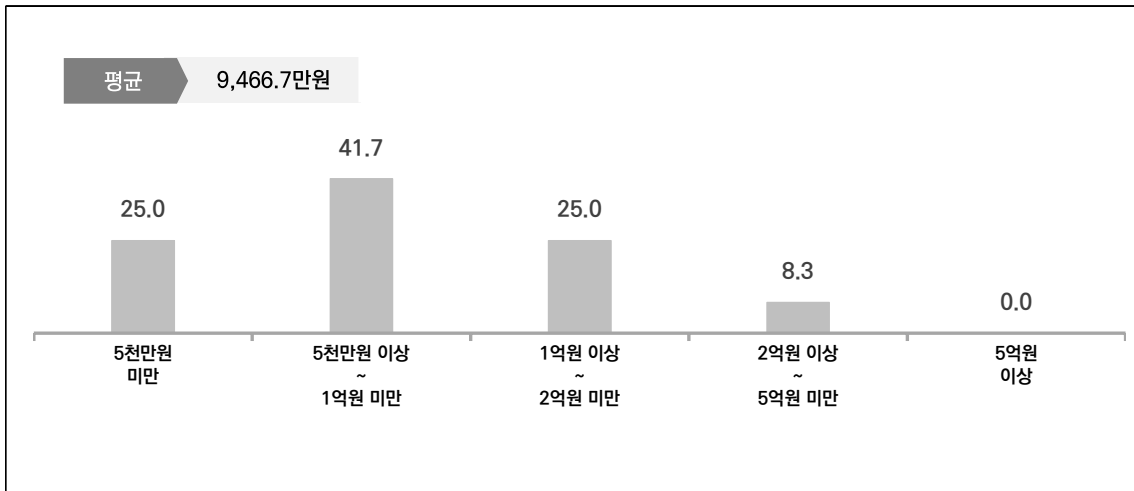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0)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41.7%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천만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각각 25.0%) 순으로 나타남.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의 평균은 9,466.7만원임

〈그림 III-2-12〉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주택구매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2, 단위: %)



〈표 III-2-12〉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주택구매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2,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2)	25.0	41.7	25.0	8.3	0.0	9,466.7
성별	남성	(9)	22.2	33.3	33.3	11.1	0.0	10,888.9
	여성	(3)	33.3	66.7	0.0	0.0	0.0	5,200.0
연령	20세~29세	(0)	-	-	-	-	-	-
	30세~39세	(4)	25.0	50.0	0.0	25.0	0.0	13,650.0
	40세~49세	(7)	28.6	28.6	42.9	0.0	0.0	7,142.9
	50세~59세	(1)	0.0	100.0	0.0	0.0	0.0	9,000.0
	60세 이상	(0)	-	-	-	-	-	-
수도권	수도권	(8)	25.0	25.0	37.5	12.5	0.0	11,250.0
	비수도권	(4)	25.0	75.0	0.0	0.0	0.0	5,90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	25.0	50.0	25.0	0.0	0.0	7,750.0
	2~3년제 대학	(0)	-	-	-	-	-	-
	4년제 대학	(8)	25.0	37.5	25.0	12.5	0.0	10,325.0
	대학원 석사 이상	(0)	-	-	-	-	-	-
혼인상태	미혼	(7)	28.6	28.6	42.9	0.0	0.0	7,371.4
	기혼	(5)	20.0	60.0	0.0	20.0	0.0	12,400.0
	별거·사별·이혼·기타	(0)	-	-	-	-	-	-
가구원수	1명	(6)	33.3	33.3	33.3	0.0	0.0	6,933.3
	2명	(2)	0.0	100.0	0.0	0.0	0.0	7,500.0
	3명	(3)	0.0	33.3	33.3	33.3	0.0	18,333.3
	4명 이상	(1)	100.0	0.0	0.0	0.0	0.0	2,000.0
자녀수	0명	(9)	22.2	44.4	33.3	0.0	0.0	7,400.0
	1명	(2)	0.0	50.0	0.0	50.0	0.0	22,500.0
	2명 이상	(1)	100.0	0.0	0.0	0.0	0.0	2,00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	0.0	100.0	0.0	0.0	0.0	7,500.0
	200~300만원 미만	(5)	40.0	40.0	20.0	0.0	0.0	5,320.0
	300~400만원 미만	(2)	0.0	50.0	50.0	0.0	0.0	8,000.0
	400~500만원 미만	(1)	0.0	0.0	100.0	0.0	0.0	15,000.0
	500만원 이상	(2)	50.0	0.0	0.0	50.0	0.0	20,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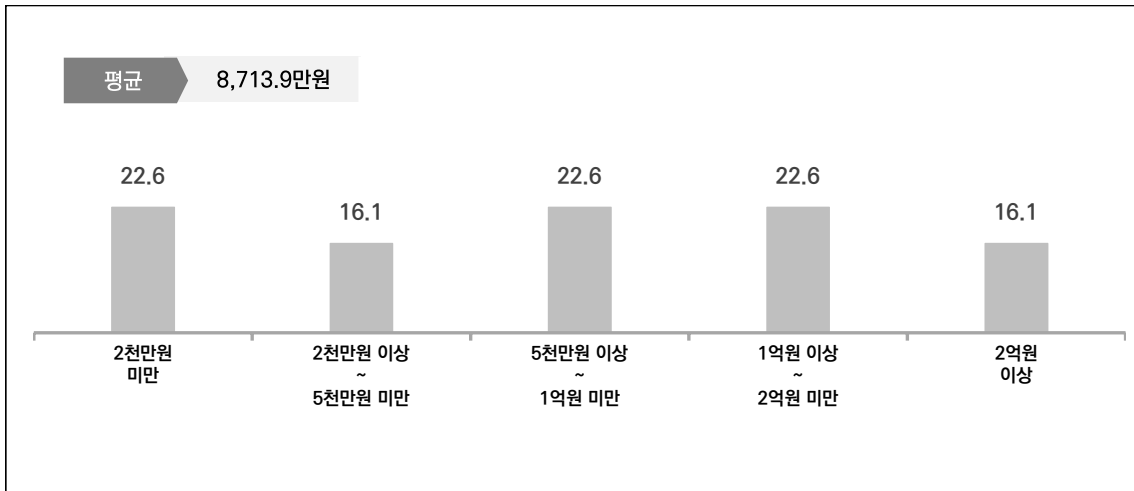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1)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각각 22.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2억원 이상’(각각 16.1%) 순으로 나타남.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의 평균은 8,713.9만원임

〈그림 III-2-13〉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1, 단위: %)



〈표 III-2-13〉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1,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31)	22.6	16.1	22.6	22.6	16.1	8,713.9
성별	남성	(19)	31.6	10.5	10.5	31.6	15.8	8,648.9
	여성	(12)	8.3	25.0	41.7	8.3	16.7	8,816.7
연령	20세~29세	(3)	0.0	0.0	66.7	33.3	0.0	8,000.0
	30세~39세	(12)	16.7	16.7	8.3	33.3	25.0	10,591.7
	40세~49세	(9)	22.2	22.2	22.2	22.2	11.1	8,022.2
	50세~59세	(7)	42.9	14.3	28.6	0.0	14.3	6,690.0
	60세 이상	(0)	-	-	-	-	-	-
수도권	수도권	(20)	20.0	10.0	20.0	30.0	20.0	10,001.5
	비수도권	(11)	27.3	27.3	27.3	9.1	9.1	6,372.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0.0	33.3	33.3	0.0	33.3	10,266.7
	2~3년제 대학	(7)	14.3	14.3	14.3	42.9	14.3	9,314.3
	4년제 대학	(19)	26.3	15.8	26.3	21.1	10.5	8,085.8
	대학원 석사 이상	(2)	50.0	0.0	0.0	0.0	50.0	10,250.0
혼인상태	미혼	(12)	16.7	8.3	33.3	16.7	25.0	10,400.0
	기혼	(13)	15.4	23.1	7.7	38.5	15.4	9,615.4
	별거·사별·이혼·기타	(6)	50.0	16.7	33.3	0.0	0.0	3,388.3
가구원수	1명	(13)	30.8	7.7	30.8	15.4	15.4	8,010.0
	2명	(8)	12.5	25.0	25.0	25.0	12.5	8,000.0
	3명	(7)	28.6	14.3	14.3	28.6	14.3	9,285.7
	4명 이상	(3)	0.0	33.3	0.0	33.3	33.3	12,333.3
자녀수	0명	(16)	18.8	12.5	25.0	25.0	18.8	9,256.3
	1명	(10)	30.0	20.0	20.0	20.0	10.0	7,700.0
	2명 이상	(5)	20.0	20.0	20.0	20.0	20.0	9,006.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3)	33.3	0.0	66.7	0.0	0.0	5,766.7
	200~300만원 미만	(9)	22.2	33.3	22.2	0.0	22.2	7,536.7
	300~400만원 미만	(9)	44.4	0.0	11.1	44.4	0.0	6,500.0
	400~500만원 미만	(6)	0.0	33.3	0.0	33.3	33.3	11,666.7
	500만원 이상	(4)	0.0	0.0	50.0	25.0	25.0	14,12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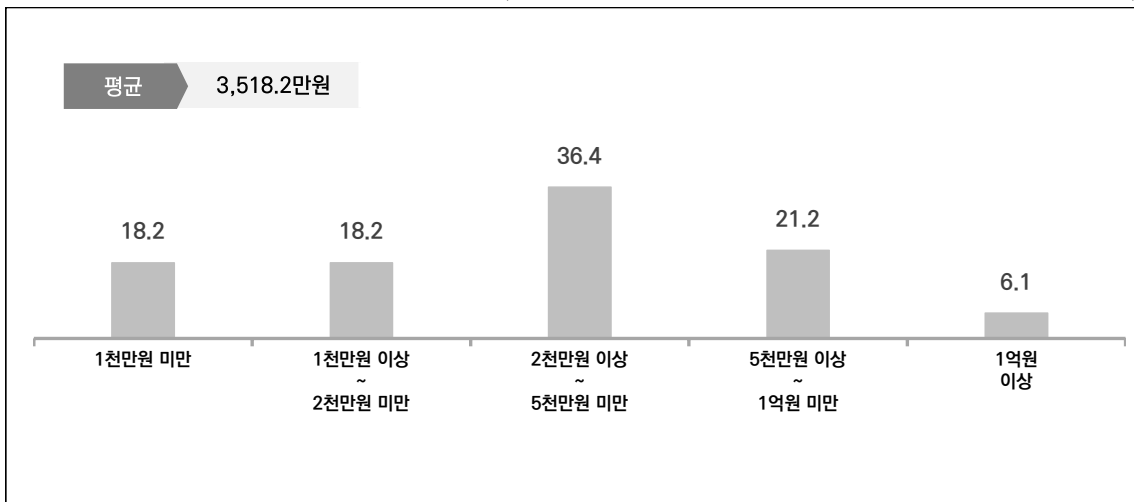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2) 그 외 부채 원금(잔액)

□ 그 외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36.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1.2%),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각각 18.2%) 순으로 나타남. 그 외 부채의 평균 원금(잔액)은 3,518.2만원임

〈그림 III-2-14〉 그 외 부채 원금(잔액)

(base 그 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3, 단위: %)



〈표 III-2-14〉 그 외 부채 원금(잔액)

(base 그 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3,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33)	18.2	18.2	36.4	21.2	6.1	3,518.2
성별	남성	(28)	21.4	17.9	32.1	21.4	7.1	3,682.1
	여성	(5)	0.0	20.0	60.0	20.0	0.0	2,600.0
연령	20세~29세	(1)	100.0	0.0	0.0	0.0	0.0	200.0
	30세~39세	(8)	25.0	12.5	50.0	12.5	0.0	2,450.0
	40세~49세	(14)	7.1	35.7	21.4	35.7	0.0	3,128.6
	50세~59세	(8)	25.0	0.0	37.5	12.5	25.0	6,000.0
	60세 이상	(2)	0.0	0.0	100.0	0.0	0.0	2,250.0
수도권	수도권	(23)	17.4	17.4	34.8	21.7	8.7	3,773.9
	비수도권	(10)	20.0	20.0	40.0	20.0	0.0	2,93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	50.0	16.7	0.0	33.3	0.0	2,450.0
	2~3년제 대학	(5)	20.0	40.0	40.0	0.0	0.0	1,460.0
	4년제 대학	(16)	6.3	18.8	37.5	31.3	6.3	4,456.3
	대학원 석사 이상	(6)	16.7	0.0	66.7	0.0	16.7	3,800.0
혼인상태	미혼	(14)	21.4	28.6	14.3	21.4	14.3	4,378.6
	기혼	(14)	21.4	7.1	50.0	21.4	0.0	2,735.7
	별거·사별·이혼·기타	(5)	0.0	20.0	60.0	20.0	0.0	3,300.0
가구원수	1명	(14)	21.4	21.4	21.4	21.4	14.3	4,700.0
	2명	(4)	0.0	50.0	50.0	0.0	0.0	1,750.0
	3명	(8)	25.0	0.0	62.5	12.5	0.0	2,225.0
	4명 이상	(7)	14.3	14.3	28.6	42.9	0.0	3,642.9
자녀수	0명	(16)	18.8	25.0	25.0	18.8	12.5	4,268.8
	1명	(9)	22.2	11.1	66.7	0.0	0.0	1,811.1
	2명 이상	(8)	12.5	12.5	25.0	50.0	0.0	3,937.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4)	25.0	0.0	25.0	25.0	25.0	5,550.0
	200~300만원 미만	(12)	8.3	16.7	50.0	16.7	8.3	4,316.7
	300~400만원 미만	(9)	33.3	22.2	22.2	22.2	0.0	2,122.2
	400~500만원 미만	(5)	20.0	40.0	20.0	20.0	0.0	2,100.0
	500만원 이상	(3)	0.0	0.0	66.7	33.3	0.0	4,166.7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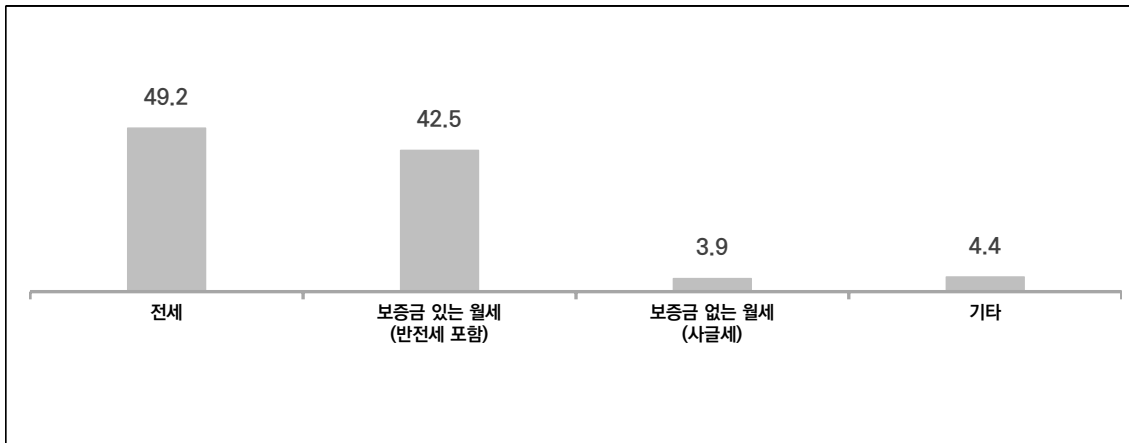
3) 주거

(1) 주택 입주 형태

- 주택 입주 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전세’가 49.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는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42.5%), ‘기타’(4.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전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여성’(57.9%)이 ‘남성’(45.2%) 보다 전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전세’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40세~49세’(55.6%)의 전세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전세’ 비율이 가장 높았 으며, ‘수도권’(52.1%)이 ‘비수도권’(43.5%) 보다 전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15〉 주택 입주 형태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15〉 주택 입주 형태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기타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49.2	42.5	3.9	4.4
성별	남성	(124)	45.2	44.4	4.0	6.5
	여성	(57)	57.9	38.6	3.5	0.0
연령	20세~29세	(13)	23.1	76.9	0.0	0.0
	30세~39세	(51)	47.1	45.1	3.9	3.9
	40세~49세	(63)	55.6	36.5	3.2	4.8
	50세~59세	(39)	48.7	38.5	5.1	7.7
	60세 이상	(15)	53.3	40.0	6.7	0.0
수도권	수도권	(119)	52.1	42.9	1.7	3.4
	비수도권	(62)	43.5	41.9	8.1	6.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46.2	42.3	3.8	7.7
	2~3년제 대학	(28)	50.0	32.1	10.7	7.1
	4년제 대학	(115)	52.2	44.3	1.7	1.7
	대학원 석사 이상	(12)	25.0	50.0	8.3	16.7
혼인상태	미혼	(101)	45.5	46.5	3.0	5.0
	기혼	(63)	60.3	31.7	3.2	4.8
	별거·사별·이혼·기타	(17)	29.4	58.8	11.8	0.0
가구원수	1명	(91)	40.7	50.5	5.5	3.3
	2명	(31)	51.6	45.2	3.2	0.0
	3명	(33)	60.6	30.3	3.0	6.1
	4명 이상	(26)	61.5	26.9	0.0	11.5
자녀수	0명	(116)	45.7	45.7	4.3	4.3
	1명	(37)	54.1	37.8	5.4	2.7
	2명 이상	(28)	57.1	35.7	0.0	7.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26.9	61.5	11.5	0.0
	200~300만원 미만	(63)	41.3	42.9	4.8	11.1
	300~400만원 미만	(52)	59.6	38.5	0.0	1.9
	400~500만원 미만	(26)	61.5	34.6	3.8	0.0
	500만원 이상	(14)	64.3	35.7	0.0	0.0

기타: 가족 소유 주택 무상 거주, 사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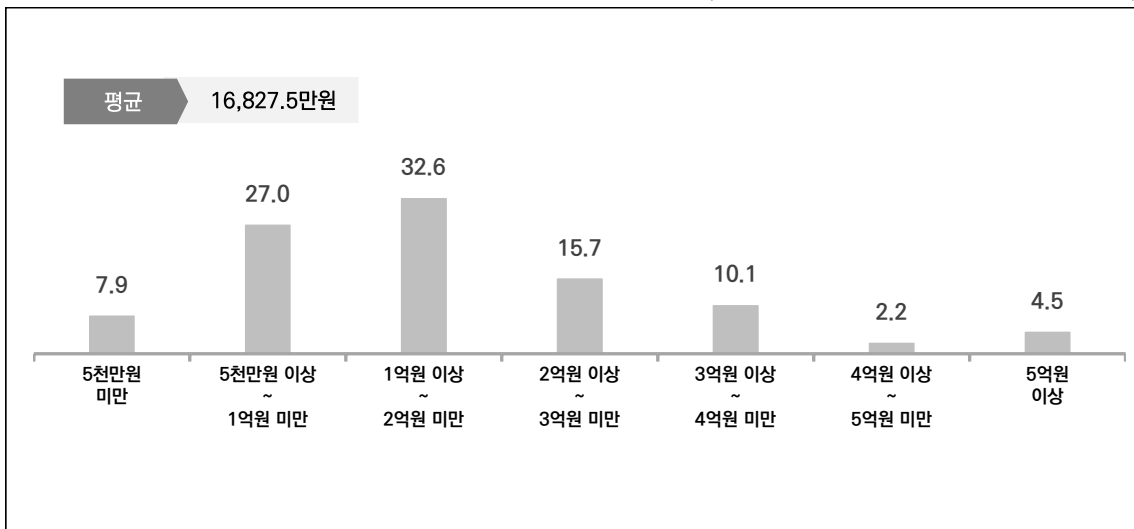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32.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7.0%), ‘2억원 이상~3억원 미만’(15.7%) 순으로 나타남. 주택의 평균 임차료(전세보증금)는 16,827.5만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3.9%), ‘여성’(30.3%) 각각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32.3%)에서, ‘비수도권’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각각 33.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2-16〉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base 전세 거주 응답자, n=89, 단위: %)



〈표 III-2-16〉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base 전세 거주 응답자, n=89,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89)	7.9	27.0	32.6	15.7	10.1	2.2	4.5	16,827.5
성별	남성	(56)	3.6	30.4	33.9	14.3	7.1	3.6	7.1	18,061.6
	여성	(33)	15.2	21.2	30.3	18.2	15.2	0.0	0.0	14,733.3
연령	20세~29세	(3)	33.3	33.3	0.0	33.3	0.0	0.0	0.0	12,000.0
	30세~39세	(24)	8.3	16.7	37.5	20.8	16.7	0.0	0.0	15,670.8
	40세~49세	(35)	5.7	25.7	37.1	14.3	8.6	2.9	5.7	18,275.7
	50세~59세	(19)	0.0	31.6	36.8	5.3	10.5	5.3	10.5	19,310.5
	60세 이상	(8)	25.0	50.0	0.0	25.0	0.0	0.0	0.0	9,875.0
수도권	수도권	(62)	6.5	24.2	32.3	17.7	11.3	3.2	4.8	18,316.9
	비수도권	(27)	11.1	33.3	33.3	11.1	7.4	0.0	3.7	13,407.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	8.3	50.0	16.7	16.7	0.0	0.0	8.3	13,541.7
	2~3년제 대학	(14)	7.1	21.4	28.6	7.1	21.4	14.3	0.0	20,350.0
	4년제 대학	(60)	8.3	23.3	38.3	16.7	10.0	0.0	3.3	15,337.5
	대학원 석사 이상	(3)	0.0	33.3	0.0	33.3	0.0	0.0	33.3	43,333.3
혼인상태	미혼	(46)	8.7	30.4	34.8	17.4	8.7	0.0	0.0	13,547.8
	기혼	(38)	7.9	23.7	28.9	10.5	13.2	5.3	10.5	20,932.9
	별거·사별·이혼·기타	(5)	0.0	20.0	40.0	40.0	0.0	0.0	0.0	15,800.0
가구원수	1명	(37)	10.8	32.4	29.7	21.6	5.4	0.0	0.0	12,924.3
	2명	(16)	0.0	43.8	18.8	18.8	12.5	0.0	6.3	16,181.3
	3명	(20)	10.0	10.0	50.0	10.0	5.0	5.0	10.0	19,007.5
	4명 이상	(16)	6.3	18.8	31.3	6.3	25.0	6.3	6.3	23,775.0
자녀수	0명	(53)	7.5	30.2	30.2	20.8	9.4	0.0	1.9	14,700.0
	1명	(20)	10.0	15.0	40.0	10.0	10.0	5.0	10.0	19,507.5
	2명 이상	(16)	6.3	31.3	31.3	6.3	12.5	6.3	6.3	20,525.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7)	0.0	28.6	42.9	14.3	0.0	0.0	14.3	18,714.3
	200~300만원 미만	(26)	7.7	26.9	46.2	7.7	11.5	0.0	0.0	13,000.0
	300~400만원 미만	(31)	3.2	35.5	32.3	16.1	9.7	0.0	3.2	14,983.9
	400~500만원 미만	(16)	12.5	12.5	25.0	25.0	12.5	6.3	6.3	22,906.3
	500만원 이상	(9)	22.2	22.2	0.0	22.2	11.1	11.1	11.1	21,9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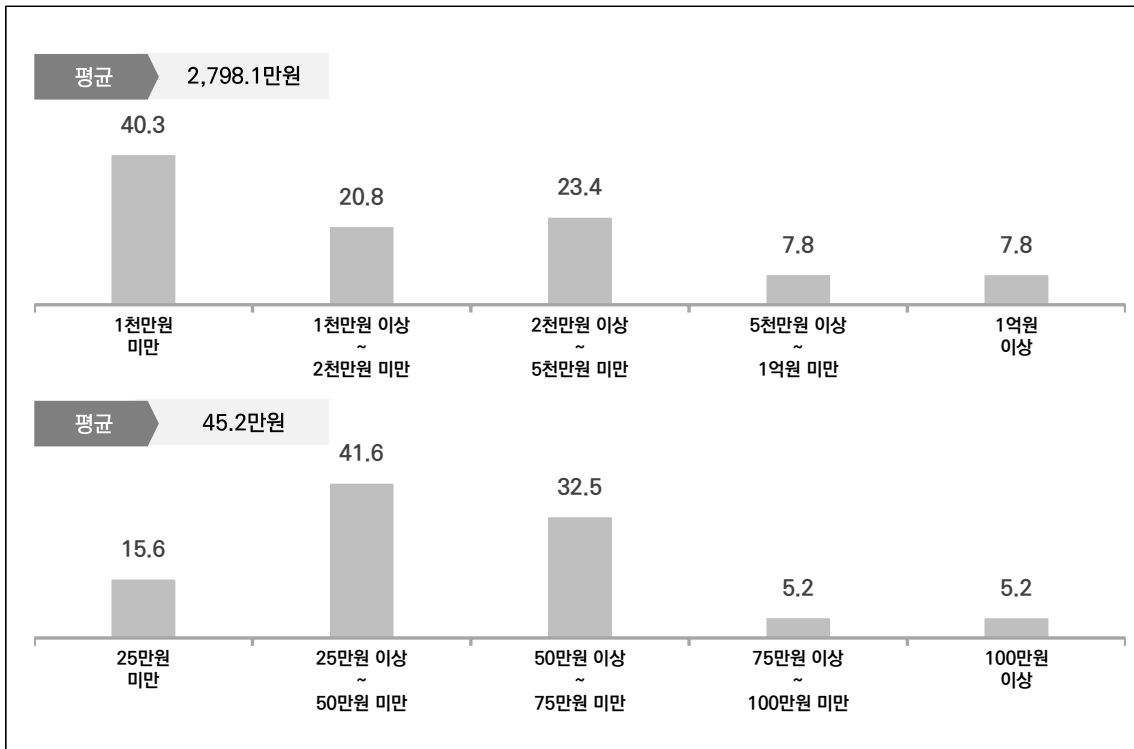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

-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증금은 ‘1천만원 미만’이 40.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는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이 41.6%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증금 있는 월세의 평균 보증금은 2,798.1만원이고, 평균 월세는 45.2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III-2-17〉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base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n=77, 단위: %)



〈표 III-2-17〉 주택 임차료(보증금)

(base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n=77,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77)	40.3	20.8	23.4	7.8	7.8	2,798.1
성별	남성	(55)	47.3	18.2	21.8	5.5	7.3	2,424.5
	여성	(22)	22.7	27.3	27.3	13.6	9.1	3,731.8
연령	20세~29세	(10)	50.0	10.0	30.0	10.0	0.0	1,870.0
	30세~39세	(23)	34.8	17.4	30.4	8.7	8.7	4,026.1
	40세~49세	(23)	30.4	26.1	17.4	8.7	17.4	3,495.7
	50세~59세	(15)	60.0	13.3	20.0	6.7	0.0	1,076.7
	60세 이상	(6)	33.3	50.0	16.7	0.0	0.0	1,266.7
수도권	수도권	(51)	27.5	25.5	25.5	11.8	9.8	3,631.4
	비수도권	(26)	65.4	11.5	19.2	0.0	3.8	1,163.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	45.5	27.3	0.0	18.2	9.1	4,009.1
	2~3년제 대학	(9)	66.7	22.2	11.1	0.0	0.0	866.7
	4년제 대학	(51)	31.4	19.6	33.3	5.9	9.8	2,991.2
	대학원 석사 이상	(6)	66.7	16.7	0.0	16.7	0.0	1,833.3
혼인상태	미혼	(47)	46.8	21.3	21.3	6.4	4.3	2,151.1
	기혼	(20)	15.0	15.0	35.0	15.0	20.0	5,225.0
	별거·사별·이혼·기타	(10)	60.0	30.0	10.0	0.0	0.0	985.0
가구원수	1명	(46)	56.5	15.2	21.7	4.3	2.2	1,464.1
	2명	(14)	14.3	35.7	28.6	14.3	7.1	3,935.7
	3명	(10)	30.0	20.0	20.0	20.0	10.0	3,600.0
	4명 이상	(7)	0.0	28.6	28.6	0.0	42.9	8,142.9
자녀수	0명	(53)	45.3	18.9	24.5	7.5	3.8	2,173.6
	1명	(14)	35.7	21.4	21.4	14.3	7.1	2,925.0
	2명 이상	(10)	20.0	30.0	20.0	0.0	30.0	5,93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50.0	25.0	6.3	18.8	0.0	1,790.6
	200~300만원 미만	(27)	51.9	22.2	22.2	0.0	3.7	1,903.7
	300~400만원 미만	(20)	35.0	15.0	30.0	10.0	10.0	3,990.0
	400~500만원 미만	(9)	11.1	22.2	44.4	0.0	22.2	3,811.1
	500만원 이상	(5)	20.0	20.0	20.0	20.0	20.0	4,260.0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표 III-2-18〉 주택 임차료(월세)

(base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n=77,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77)	15.6	41.6	32.5	5.2	5.2	45.2
성별	남성	(55)	14.5	47.3	23.6	7.3	7.3	46.3
	여성	(22)	18.2	27.3	54.5	0.0	0.0	42.5
연령	20세~29세	(10)	10.0	40.0	50.0	0.0	0.0	45.6
	30세~39세	(23)	21.7	30.4	43.5	4.3	0.0	42.5
	40세~49세	(23)	8.7	52.2	13.0	8.7	17.4	53.5
	50세~59세	(15)	20.0	40.0	40.0	0.0	0.0	37.7
	60세 이상	(6)	16.7	50.0	16.7	16.7	0.0	41.7
수도권	수도권	(51)	11.8	35.3	41.2	5.9	5.9	48.9
	비수도권	(26)	23.1	53.8	15.4	3.8	3.8	37.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	36.4	63.6	0.0	0.0	0.0	31.9
	2~3년제 대학	(9)	0.0	66.7	22.2	0.0	11.1	43.7
	4년제 대학	(51)	15.7	35.3	37.3	5.9	5.9	46.8
	대학원 석사 이상	(6)	0.0	16.7	66.7	16.7	0.0	57.7
혼인상태	미혼	(47)	10.6	46.8	40.4	2.1	0.0	42.4
	기혼	(20)	25.0	20.0	30.0	10.0	15.0	54.1
	별거·사별·이혼·기타	(10)	20.0	60.0	0.0	10.0	10.0	40.7
가구원수	1명	(46)	10.9	56.5	28.3	4.3	0.0	40.0
	2명	(14)	21.4	14.3	57.1	0.0	7.1	49.4
	3명	(10)	30.0	30.0	20.0	10.0	10.0	48.9
	4명 이상	(7)	14.3	14.3	28.6	14.3	28.6	65.7
자녀수	0명	(53)	13.2	43.4	41.5	1.9	0.0	42.0
	1명	(14)	21.4	42.9	7.1	14.3	14.3	51.2
	2명 이상	(10)	20.0	30.0	20.0	10.0	20.0	53.4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25.0	50.0	25.0	0.0	0.0	35.2
	200~300만원 미만	(27)	7.4	44.4	44.4	0.0	3.7	47.0
	300~400만원 미만	(20)	20.0	40.0	35.0	5.0	0.0	39.7
	400~500만원 미만	(9)	11.1	33.3	22.2	11.1	22.2	58.4
	500만원 이상	(5)	20.0	20.0	0.0	40.0	20.0	6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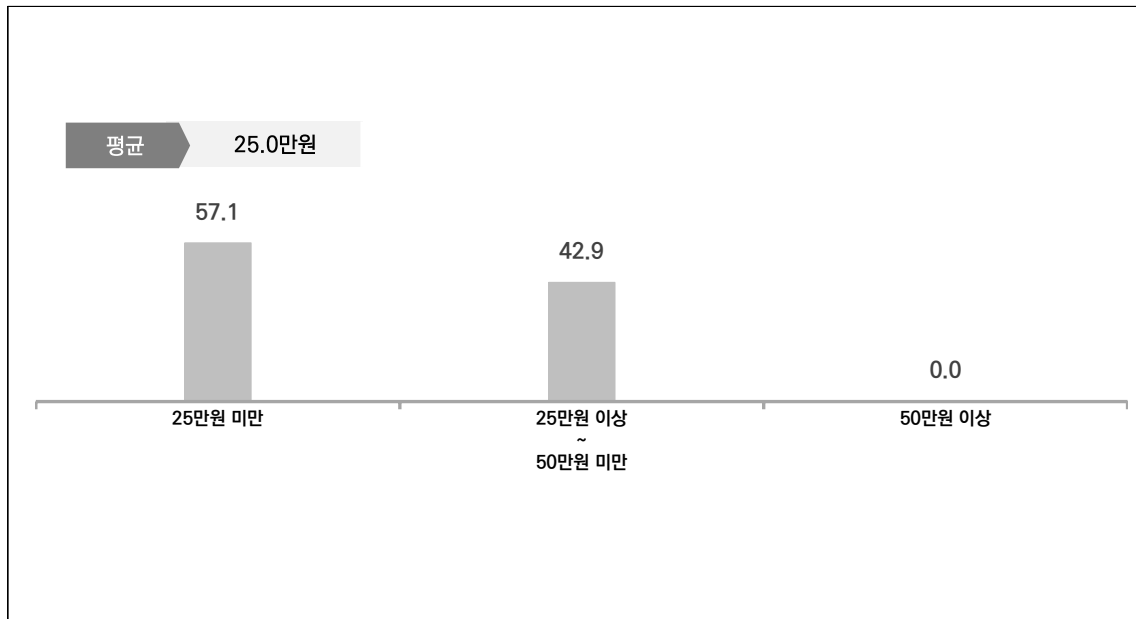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에 대해 물어본 결과, ‘25만원 미만’이 57.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42.9%)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2-18〉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base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응답자, n=7, 단위: %)



〈표 III-2-19〉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base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응답자, n=7,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7)	57.1	42.9	0.0	25.0
성별	남성	(5)	40.0	60.0	0.0	29.0
	여성	(2)	100.0	0.0	0.0	15.0
연령	20세~29세	(0)	-	-	-	-
	30세~39세	(2)	100.0	0.0	0.0	15.0
	40세~49세	(2)	50.0	50.0	0.0	32.5
	50세~59세	(2)	50.0	50.0	0.0	22.5
	60세 이상	(1)	0.0	100.0	0.0	35.0
수도권	수도권	(2)	0.0	100.0	0.0	40.0
	비수도권	(5)	80.0	20.0	0.0	19.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100.0	0.0	0.0	10.0
	2~3년제 대학	(3)	33.3	66.7	0.0	33.3
	4년제 대학	(2)	100.0	0.0	0.0	15.0
	대학원 석사 이상	(1)	0.0	100.0	0.0	35.0
혼인상태	미혼	(3)	66.7	33.3	0.0	25.0
	기혼	(2)	50.0	50.0	0.0	27.5
	별거·사별·이혼·기타	(2)	50.0	50.0	0.0	22.5
가구원수	1명	(5)	60.0	40.0	0.0	24.0
	2명	(1)	100.0	0.0	0.0	20.0
	3명	(1)	0.0	100.0	0.0	35.0
	4명 이상	(0)	-	-	-	-
자녀수	0명	(5)	60.0	40.0	0.0	26.0
	1명	(2)	50.0	50.0	0.0	22.5
	2명 이상	(0)	-	-	-	-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3)	66.7	33.3	0.0	21.7
	200~300만원 미만	(3)	33.3	66.7	0.0	33.3
	300~400만원 미만	(0)	-	-	-	-
	400~500만원 미만	(1)	100.0	0.0	0.0	10.0
	500만원 이상	(0)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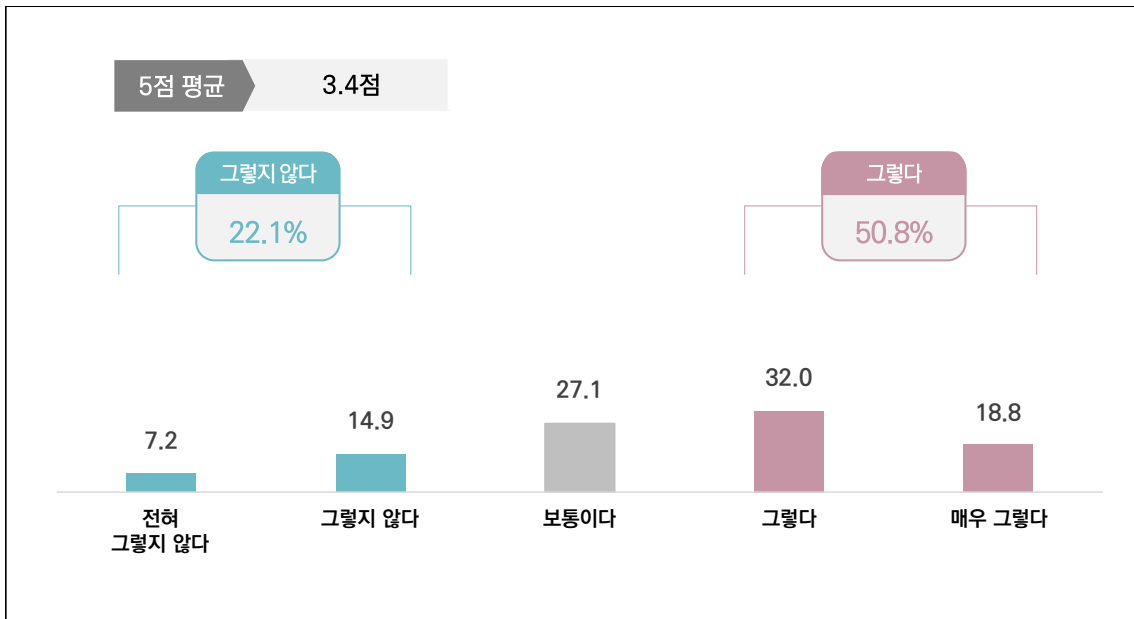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자가 소유 필요 여부

-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50.8%로 ‘그렇지 않다’(22.1%)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49.2%, ‘여성’ 54.4%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61.5%, ‘30세~39세’ 62.7%, ‘40세~49세’ 49.2%, ‘50세~59세’ 35.9%, ‘60세 이상’ 46.7%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52.9%, ‘비수도권’ 46.8%로 나타남

〈그림 III-2-19〉 자가 소유 필요 여부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20〉 자가 소유 필요 여부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7.2	14.9	27.1	32.0	18.8	22.1	50.8	3.4	
성별	남성	(124)	7.3	16.1	27.4	29.0	20.2	23.4	49.2	3.4
	여성	(57)	7.0	12.3	26.3	38.6	15.8	19.3	54.4	3.4
연령	20세~29세	(13)	7.7	7.7	23.1	38.5	23.1	15.4	61.5	3.6
	30세~39세	(51)	3.9	7.8	25.5	37.3	25.5	11.8	62.7	3.7
	40세~49세	(63)	4.8	14.3	31.7	30.2	19.0	19.0	49.2	3.4
	50세~59세	(39)	17.9	20.5	25.6	23.1	12.8	38.5	35.9	2.9
	60세 이상	(15)	0.0	33.3	20.0	40.0	6.7	33.3	46.7	3.2
수도권	수도권	(119)	7.6	12.6	26.9	31.1	21.8	20.2	52.9	3.5
	비수도권	(62)	6.5	19.4	27.4	33.9	12.9	25.8	46.8	3.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3.8	11.5	26.9	30.8	26.9	15.4	57.7	3.7
	2~3년제 대학	(28)	7.1	3.6	21.4	39.3	28.6	10.7	67.9	3.8
	4년제 대학	(115)	7.0	17.4	30.4	31.3	13.9	24.3	45.2	3.3
	대학원 석사 이상	(12)	16.7	25.0	8.3	25.0	25.0	41.7	50.0	3.2
혼인상태	미혼	(101)	7.9	11.9	30.7	30.7	18.8	19.8	49.5	3.4
	기혼	(63)	4.8	15.9	25.4	34.9	19.0	20.6	54.0	3.5
	별거·사별·이혼·기타	(17)	11.8	29.4	11.8	29.4	17.6	41.2	47.1	3.1
가구원수	1명	(91)	11.0	15.4	28.6	30.8	14.3	26.4	45.1	3.2
	2명	(31)	0.0	16.1	25.8	35.5	22.6	16.1	58.1	3.6
	3명	(33)	3.0	6.1	30.3	33.3	27.3	9.1	60.6	3.8
	4명 이상	(26)	7.7	23.1	19.2	30.8	19.2	30.8	50.0	3.3
자녀수	0명	(116)	7.8	11.2	30.2	32.8	18.1	19.0	50.9	3.4
	1명	(37)	5.4	16.2	24.3	27.0	27.0	21.6	54.1	3.5
	2명 이상	(28)	7.1	28.6	17.9	35.7	10.7	35.7	46.4	3.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11.5	23.1	30.8	26.9	7.7	34.6	34.6	3.0
	200~300만원 미만	(63)	6.3	7.9	31.7	28.6	25.4	14.3	54.0	3.6
	300~400만원 미만	(52)	7.7	13.5	28.8	34.6	15.4	21.2	50.0	3.4
	400~500만원 미만	(26)	3.8	26.9	19.2	34.6	15.4	30.8	50.0	3.3
	500만원 이상	(14)	7.1	14.3	7.1	42.9	28.6	21.4	71.4	3.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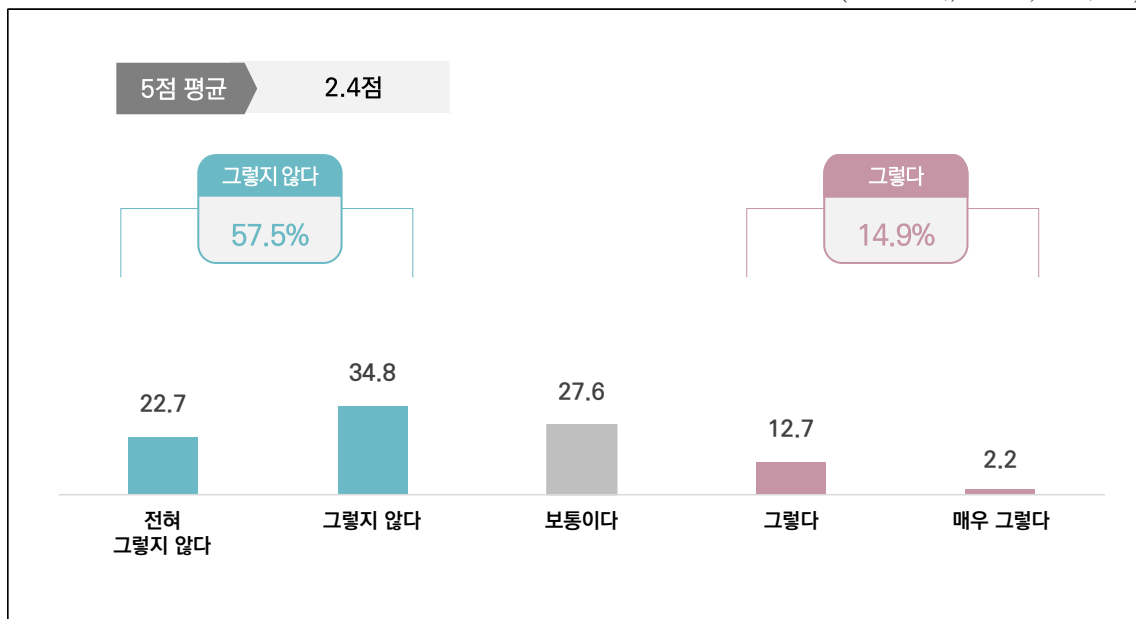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 ‘집값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57.5%로 ‘그렇다’(14.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4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가 56.5%, ‘여성’ 59.6%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지 않다’가 38.5%, ‘30세~39세’ 52.9%, ‘40세~49세’ 58.7%, ‘50세~59세’ 64.1%, ‘60세 이상’ 66.7%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가 57.1%, ‘비수도권’ 58.1%로 나타남

〈그림 III-2-20〉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21〉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22.7	34.8	27.6	12.7	2.2	57.5	14.9	2.4
성별	남성	(124)	21.8	34.7	28.2	12.9	2.4	56.5	15.3	2.4
	여성	(57)	24.6	35.1	26.3	12.3	1.8	59.6	14.0	2.3
연령	20세~29세	(13)	7.7	30.8	23.1	38.5	0.0	38.5	38.5	2.9
	30세~39세	(51)	27.5	25.5	33.3	11.8	2.0	52.9	13.7	2.4
	40세~49세	(63)	15.9	42.9	28.6	7.9	4.8	58.7	12.7	2.4
	50세~59세	(39)	28.2	35.9	20.5	15.4	0.0	64.1	15.4	2.2
	60세 이상	(15)	33.3	33.3	26.7	6.7	0.0	66.7	6.7	2.1
수도권	수도권	(119)	23.5	33.6	25.2	14.3	3.4	57.1	17.6	2.4
	비수도권	(62)	21.0	37.1	32.3	9.7	0.0	58.1	9.7	2.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30.8	42.3	15.4	7.7	3.8	73.1	11.5	2.1
	2~3년제 대학	(28)	32.1	25.0	25.0	17.9	0.0	57.1	17.9	2.3
	4년제 대학	(115)	17.4	34.8	33.0	12.2	2.6	52.2	14.8	2.5
	대학원 석사 이상	(12)	33.3	41.7	8.3	16.7	0.0	75.0	16.7	2.1
혼인상태	미혼	(101)	21.8	37.6	24.8	14.9	1.0	59.4	15.8	2.4
	기혼	(63)	19.0	28.6	36.5	11.1	4.8	47.6	15.9	2.5
	별거·사별·이혼·기타	(17)	41.2	41.2	11.8	5.9	0.0	82.4	5.9	1.8
가구원수	1명	(91)	22.0	40.7	23.1	14.3	0.0	62.6	14.3	2.3
	2명	(31)	41.9	25.8	29.0	3.2	0.0	67.7	3.2	1.9
	3명	(33)	15.2	39.4	24.2	15.2	6.1	54.5	21.2	2.6
	4명 이상	(26)	11.5	19.2	46.2	15.4	7.7	30.8	23.1	2.9
자녀수	0명	(116)	21.6	37.1	25.9	14.7	0.9	58.6	15.5	2.4
	1명	(37)	27.0	29.7	29.7	8.1	5.4	56.8	13.5	2.4
	2명 이상	(28)	21.4	32.1	32.1	10.7	3.6	53.6	14.3	2.4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4.6	38.5	15.4	11.5	0.0	73.1	11.5	2.0
	200~300만원 미만	(63)	27.0	28.6	22.2	19.0	3.2	55.6	22.2	2.4
	300~400만원 미만	(52)	15.4	46.2	32.7	5.8	0.0	61.5	5.8	2.3
	400~500만원 미만	(26)	15.4	26.9	46.2	11.5	0.0	42.3	11.5	2.5
	500만원 이상	(14)	21.4	28.6	21.4	14.3	14.3	50.0	28.6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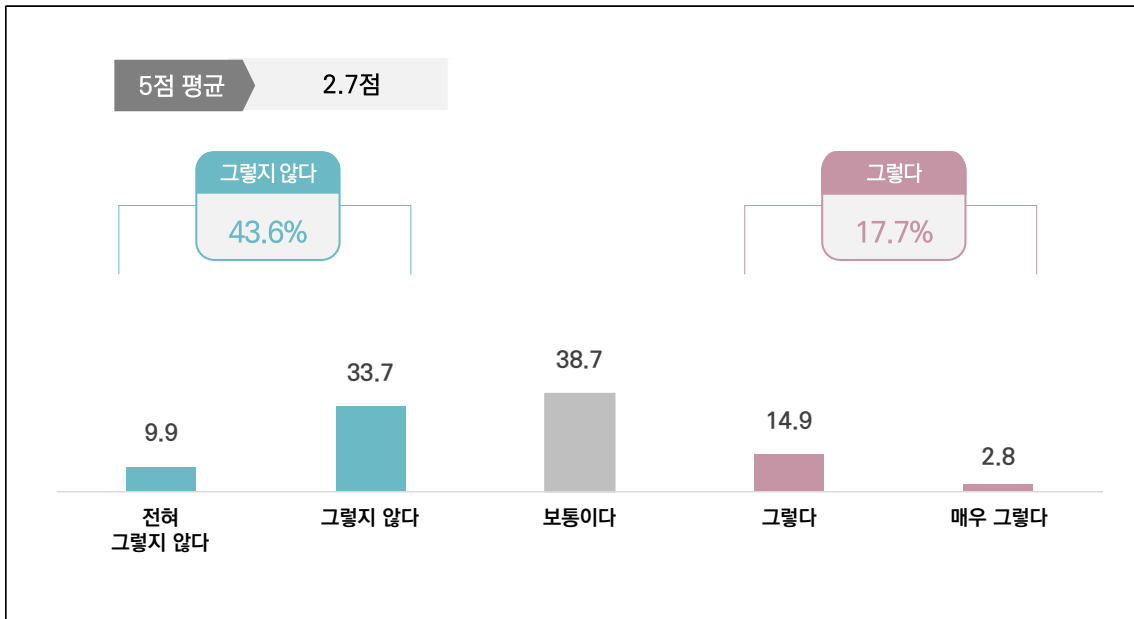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43.6%로 ‘그렇다’(17.7%) 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7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가 40.3%, ‘여성’ 50.9%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지 않다’가 30.8%, ‘30세~39세’ 45.1%, ‘40세~49세’ 47.6%, ‘50세~59세’ 41.0%, ‘60세 이상’ 4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가 40.3%, ‘비수도권’ 50.0%로 나타남

〈그림 III-2-21〉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22〉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9.9	33.7	38.7	14.9	2.8	43.6	17.7	2.7	
성별	남성	(124)	8.1	32.3	44.4	12.1	3.2	40.3	15.3	2.7
	여성	(57)	14.0	36.8	26.3	21.1	1.8	50.9	22.8	2.6
연령	20세~29세	(13)	7.7	23.1	38.5	30.8	0.0	30.8	30.8	2.9
	30세~39세	(51)	11.8	33.3	35.3	17.6	2.0	45.1	19.6	2.6
	40세~49세	(63)	11.1	36.5	39.7	9.5	3.2	47.6	12.7	2.6
	50세~59세	(39)	7.7	33.3	43.6	12.8	2.6	41.0	15.4	2.7
	60세 이상	(15)	6.7	33.3	33.3	20.0	6.7	40.0	26.7	2.9
수도권	수도권	(119)	10.1	30.3	41.2	15.1	3.4	40.3	18.5	2.7
	비수도권	(62)	9.7	40.3	33.9	14.5	1.6	50.0	16.1	2.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19.2	34.6	26.9	15.4	3.8	53.8	19.2	2.5
	2~3년제 대학	(28)	10.7	35.7	46.4	7.1	0.0	46.4	7.1	2.5
	4년제 대학	(115)	6.1	33.0	40.9	16.5	3.5	39.1	20.0	2.8
	대학원 석사 이상	(12)	25.0	33.3	25.0	16.7	0.0	58.3	16.7	2.3
혼인상태	미혼	(101)	6.9	37.6	37.6	15.8	2.0	44.6	17.8	2.7
	기혼	(63)	12.7	25.4	42.9	14.3	4.8	38.1	19.0	2.7
	별거·사별·이혼·기타	(17)	17.6	41.2	29.4	11.8	0.0	58.8	11.8	2.4
가구원수	1명	(91)	8.8	42.9	34.1	12.1	2.2	51.6	14.3	2.6
	2명	(31)	9.7	25.8	45.2	19.4	0.0	35.5	19.4	2.7
	3명	(33)	15.2	24.2	42.4	15.2	3.0	39.4	18.2	2.7
	4명 이상	(26)	7.7	23.1	42.3	19.2	7.7	30.8	26.9	3.0
자녀수	0명	(116)	7.8	35.3	39.7	15.5	1.7	43.1	17.2	2.7
	1명	(37)	16.2	29.7	37.8	13.5	2.7	45.9	16.2	2.6
	2명 이상	(28)	10.7	32.1	35.7	14.3	7.1	42.9	21.4	2.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15.4	42.3	34.6	7.7	0.0	57.7	7.7	2.3
	200~300만원 미만	(63)	6.3	28.6	42.9	19.0	3.2	34.9	22.2	2.8
	300~400만원 미만	(52)	7.7	38.5	40.4	11.5	1.9	46.2	13.5	2.6
	400~500만원 미만	(26)	3.8	34.6	34.6	19.2	7.7	38.5	26.9	2.9
	500만원 이상	(14)	35.7	21.4	28.6	14.3	0.0	57.1	14.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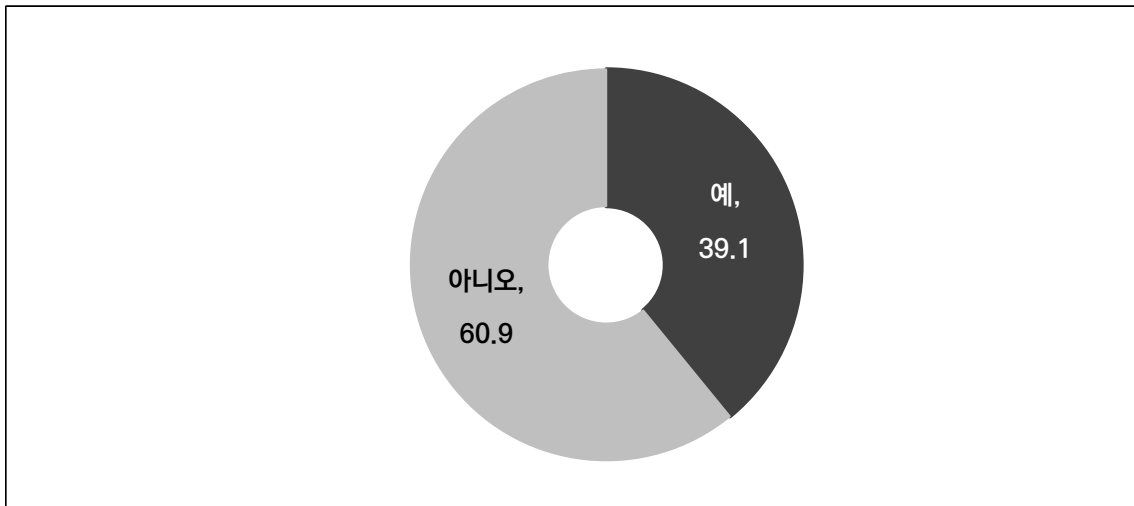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9.1%가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1.0%)의 자산 보유율이 ‘여성’(35.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39세’(50.0%)의 자산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2.9%)의 자산 보유율이 ‘비수도권’(31.0%)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22〉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92, 단위: %)



〈표 III-2-23〉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92,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	아니오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92)	39.1	60.9
성별	남성	(61)	41.0	59.0
	여성	(31)	35.5	64.5
연령	20세~29세	(8)	37.5	62.5
	30세~39세	(32)	50.0	50.0
	40세~49세	(31)	35.5	64.5
	50세~59세	(14)	21.4	78.6
	60세 이상	(7)	42.9	57.1
수도권	수도권	(63)	42.9	57.1
	비수도권	(29)	31.0	69.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5)	13.3	86.7
	2~3년제 대학	(19)	31.6	68.4
	4년제 대학	(52)	50.0	50.0
	대학원 석사 이상	(6)	33.3	66.7
혼인상태	미혼	(50)	42.0	58.0
	기혼	(34)	41.2	58.8
	별거·사별·이혼·기타	(8)	12.5	87.5
가구원수	1명	(41)	36.6	63.4
	2명	(18)	27.8	72.2
	3명	(20)	40.0	60.0
	4명 이상	(13)	61.5	38.5
자녀수	0명	(59)	42.4	57.6
	1명	(20)	20.0	80.0
	2명 이상	(13)	53.8	46.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9)	22.2	77.8
	200~300만원 미만	(34)	38.2	61.8
	300~400만원 미만	(26)	23.1	76.9
	400~500만원 미만	(13)	61.5	38.5
	500만원 이상	(10)	7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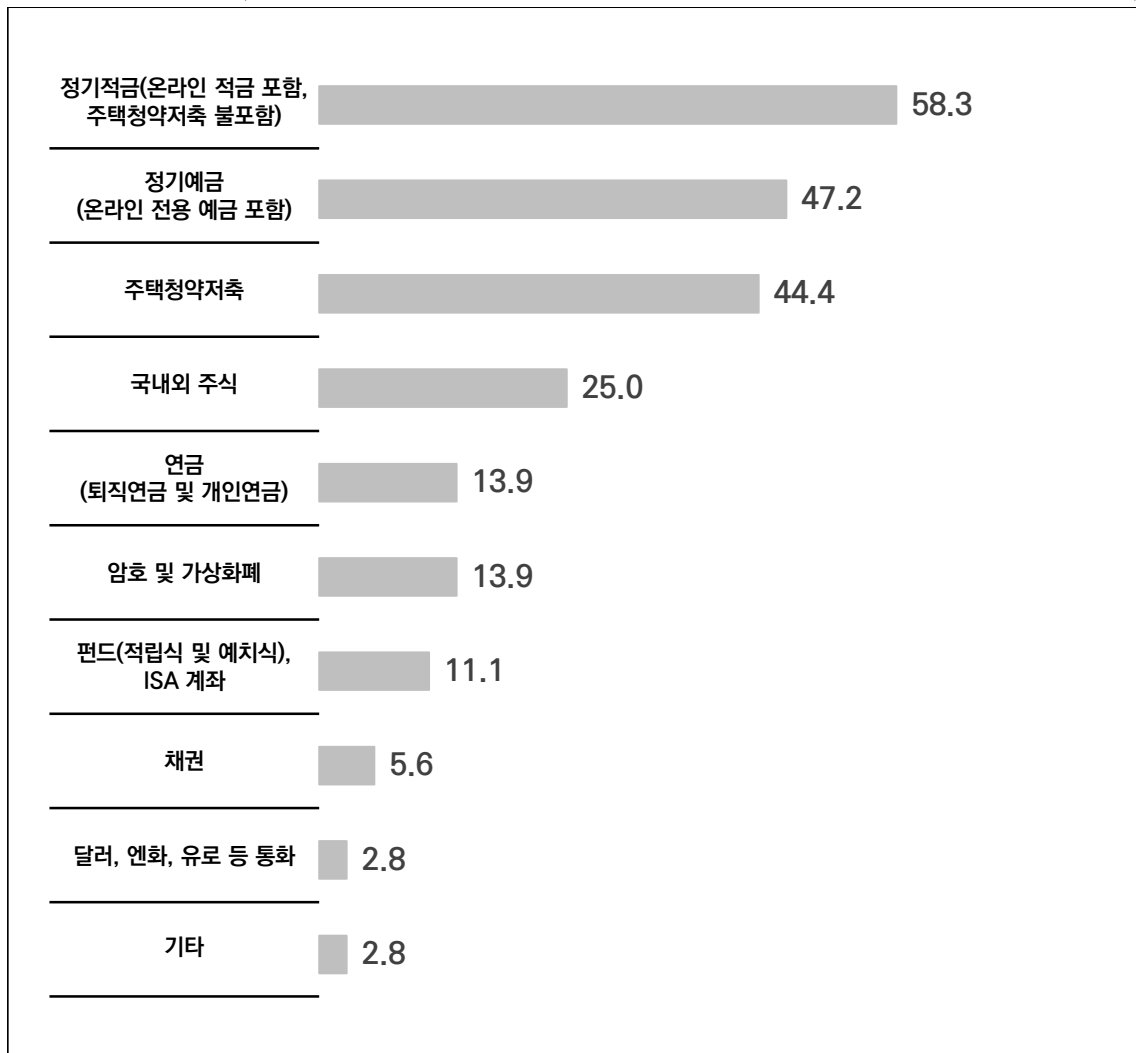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정기적금(온라인 적금 포함, 주택청약저축 불포함)’이 58.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정기적금’이 ‘남성’ 56.0%, ‘여성’ 63.6%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정기적금’이 ‘20세~29세’ 33.3%, ‘30세~39세’ 62.5%, ‘40세~49세’ 72.7%, ‘50세~59세’ 33.3%, ‘60세 이상’ 33.3%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정기적금’이 ‘수도권’ 59.3%, ‘비수도권’ 55.6%로 나타남

〈그림 III-2-23〉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선택)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36, 단위: %)



〈표 III-2-24〉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선택)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36,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36)	58.3	47.2	44.4	25.0	13.9	13.9	11.1	5.6	2.8	2.8
성별	남성	(25)	56.0	36.0	44.0	24.0	12.0	16.0	12.0	0.0	4.0	4.0
	여성	(11)	63.6	72.7	45.5	27.3	18.2	9.1	9.1	18.2	0.0	0.0
연령	20세~29세	(3)	33.3	66.7	0.0	100.0	33.3	33.3	0.0	0.0	0.0	33.3
	30세~39세	(16)	62.5	31.3	50.0	25.0	0.0	18.8	12.5	12.5	6.3	0.0
	40세~49세	(11)	72.7	72.7	36.4	18.2	9.1	0.0	9.1	0.0	0.0	0.0
	50세~59세	(3)	33.3	0.0	33.3	0.0	33.3	33.3	33.3	0.0	0.0	0.0
	60세 이상	(3)	33.3	66.7	100.0	0.0	66.7	0.0	0.0	0.0	0.0	0.0
수도권	수도권	(27)	59.3	48.1	44.4	29.6	14.8	11.1	11.1	3.7	3.7	3.7
	비수도권	(9)	55.6	44.4	44.4	11.1	11.1	22.2	11.1	11.1	0.0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100.0	50.0	50.0	0.0	0.0	0.0	0.0	0.0	0.0	0.0
	2~3년제 대학	(6)	50.0	33.3	33.3	33.3	16.7	0.0	33.3	16.7	16.7	0.0
	4년제 대학	(26)	53.8	53.8	46.2	23.1	15.4	19.2	7.7	0.0	0.0	3.8
	대학원 석사 이상	(2)	100.0	0.0	50.0	50.0	0.0	0.0	0.0	50.0	0.0	0.0
혼인상태	미혼	(21)	52.4	52.4	47.6	28.6	9.5	23.8	4.8	9.5	0.0	4.8
	기혼	(14)	64.3	35.7	35.7	21.4	21.4	0.0	21.4	0.0	7.1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	100.0	100.0	100.0	0.0	0.0	0.0	0.0	0.0	0.0	0.0
가구원수	1명	(15)	40.0	46.7	46.7	26.7	13.3	33.3	0.0	6.7	0.0	6.7
	2명	(5)	60.0	80.0	0.0	20.0	0.0	0.0	20.0	0.0	0.0	0.0
	3명	(8)	87.5	37.5	62.5	25.0	0.0	0.0	12.5	12.5	12.5	0.0
	4명 이상	(8)	62.5	37.5	50.0	25.0	37.5	0.0	25.0	0.0	0.0	0.0
자녀수	0명	(25)	56.0	56.0	40.0	28.0	8.0	20.0	8.0	8.0	0.0	4.0
	1명	(4)	75.0	0.0	50.0	25.0	0.0	0.0	25.0	0.0	25.0	0.0
	2명 이상	(7)	57.1	42.9	57.1	14.3	42.9	0.0	14.3	0.0	0.0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	50.0	100.0	50.0	0.0	50.0	0.0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13)	69.2	46.2	46.2	30.8	0.0	15.4	7.7	7.7	0.0	7.7
	300~400만원 미만	(6)	83.3	33.3	33.3	50.0	0.0	16.7	16.7	0.0	16.7	0.0
	400~500만원 미만	(8)	37.5	50.0	62.5	12.5	50.0	25.0	12.5	0.0	0.0	0.0
	500만원 이상	(7)	42.9	42.9	28.6	14.3	0.0	0.0	14.3	14.3	0.0	0.0

① 정기적금(온라인 전용 적금 포함, 주택청약저축 불포함)

② 정기예금(온라인 전용 예금 포함)

③ 주택청약저축

④ 국내외 주식

⑤ 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⑥ 암호 및 가상화폐

⑦ 펀드(적립식 및 예치식), ISA 계좌

⑧ 채권

⑨ 달러, 엔화, 유로 등 통화

⑩ 기타: 금, CMA, 사업소득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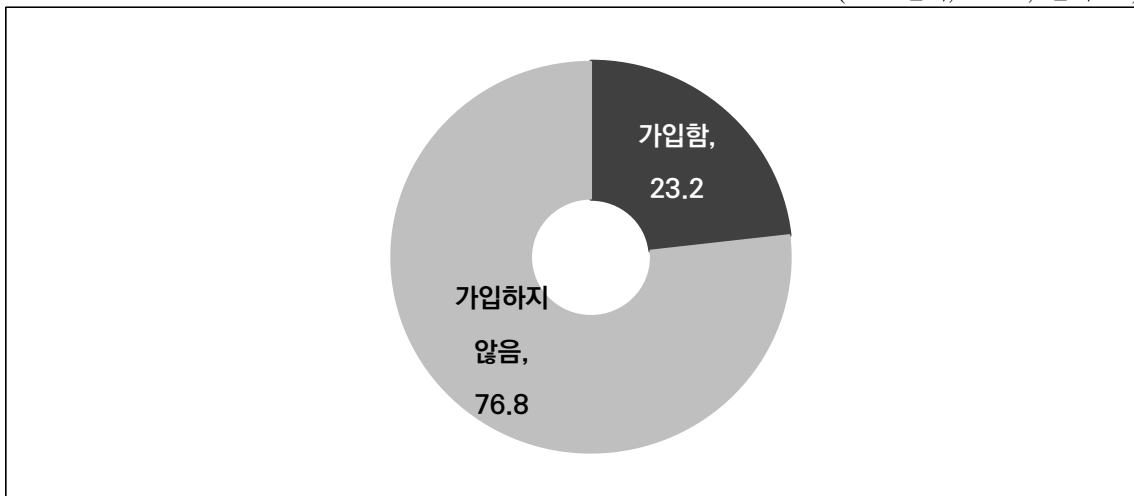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23.2%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5.1%)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률이 ‘남성’(17.7%)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46.2%)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27.7%)의 가입률이 ‘비수도권’(14.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2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2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23.2	76.8
성별	남성	(124)	17.7	82.3
	여성	(57)	35.1	64.9
연령	20세~29세	(13)	46.2	53.8
	30세~39세	(51)	33.3	66.7
	40세~49세	(63)	20.6	79.4
	50세~59세	(39)	12.8	87.2
	60세 이상	(15)	6.7	93.3
수도권	수도권	(119)	27.7	72.3
	비수도권	(62)	14.5	85.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11.5	88.5
	2~3년제 대학	(28)	25.0	75.0
	4년제 대학	(115)	26.1	73.9
	대학원 석사 이상	(12)	16.7	83.3
혼인상태	미혼	(101)	25.7	74.3
	기혼	(63)	22.2	77.8
	별거·사별·이혼·기타	(17)	11.8	88.2
가구원수	1명	(91)	22.0	78.0
	2명	(31)	25.8	74.2
	3명	(33)	21.2	78.8
	4명 이상	(26)	26.9	73.1
자녀수	0명	(116)	25.0	75.0
	1명	(37)	16.2	83.8
	2명 이상	(28)	25.0	75.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8.5	61.5
	200~300만원 미만	(63)	20.6	79.4
	300~400만원 미만	(52)	21.2	78.8
	400~500만원 미만	(26)	19.2	80.8
	500만원 이상	(14)	21.4	78.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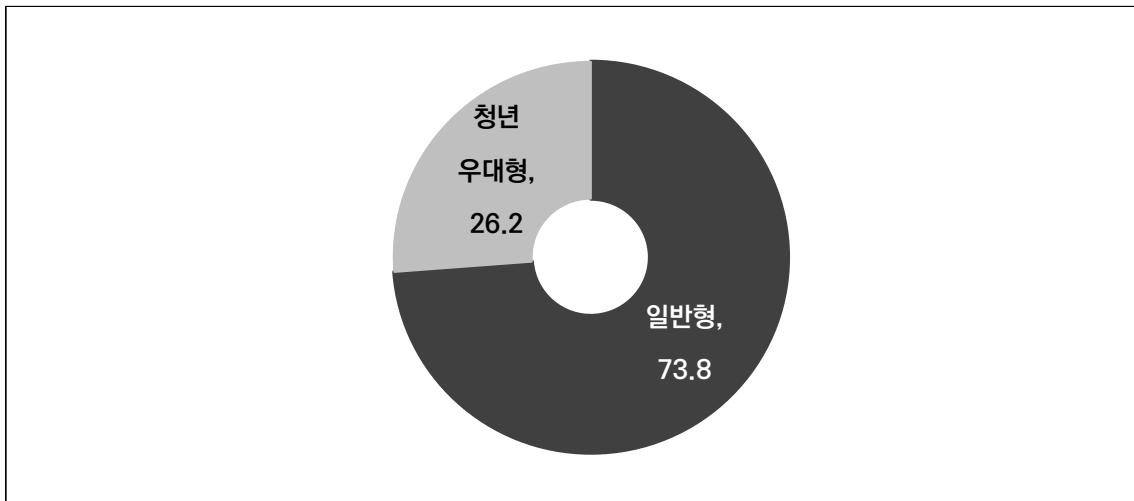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입자 중 73.8%가 ‘일반형’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25〉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



〈표 III-2-2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일반형 (주택청약저축)	청년우대형 (청년우대형/청년주택드림청약)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42)	73.8	26.2
성별	남성	(22)	72.7	27.3
	여성	(20)	75.0	25.0
연령	20세~29세	(6)	33.3	66.7
	30세~39세	(17)	58.8	41.2
	40세~49세	(13)	100.0	0.0
	50세~59세	(5)	100.0	0.0
	60세 이상	(1)	100.0	0.0
수도권	수도권	(33)	66.7	33.3
	비수도권	(9)	100.0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100.0	0.0
	2~3년제 대학	(7)	71.4	28.6
	4년제 대학	(30)	73.3	26.7
	대학원 석사 이상	(2)	50.0	50.0
혼인상태	미혼	(26)	61.5	38.5
	기혼	(14)	92.9	7.1
	별거·사별·이혼·기타	(2)	100.0	0.0
가구원수	1명	(20)	65.0	35.0
	2명	(8)	100.0	0.0
	3명	(7)	85.7	14.3
	4명 이상	(7)	57.1	42.9
자녀수	0명	(29)	65.5	34.5
	1명	(6)	100.0	0.0
	2명 이상	(7)	85.7	14.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90.0	10.0
	200~300만원 미만	(13)	69.2	30.8
	300~400만원 미만	(11)	63.6	36.4
	400~500만원 미만	(5)	80.0	20.0
	500만원 이상	(3)	66.7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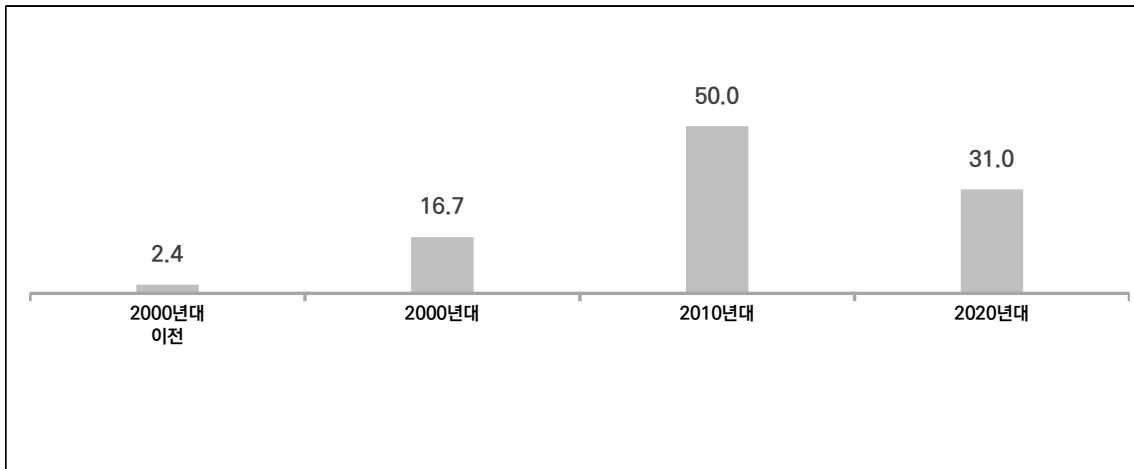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2010년대’가 5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20년대’(31.0%), ‘2000년대’(16.7%), ‘2000년대 이전’(2.4%) 순으로 나타남

〈그림 III-2-26〉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



〈표 III-2-2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42)	2.4	16.7	50.0	31.0
성별	남성	(22)	0.0	18.2	50.0	31.8
	여성	(20)	5.0	15.0	50.0	30.0
연령	20세~29세	(6)	0.0	0.0	50.0	50.0
	30세~39세	(17)	5.9	11.8	52.9	29.4
	40세~49세	(13)	0.0	38.5	46.2	15.4
	50세~59세	(5)	0.0	0.0	40.0	60.0
	60세 이상	(1)	0.0	0.0	100.0	0.0
수도권	수도권	(33)	3.0	18.2	51.5	27.3
	비수도권	(9)	0.0	11.1	44.4	44.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33.3	0.0	0.0	66.7
	2~3년제 대학	(7)	0.0	0.0	85.7	14.3
	4년제 대학	(30)	0.0	23.3	46.7	30.0
	대학원 석사 이상	(2)	0.0	0.0	50.0	50.0
혼인상태	미혼	(26)	3.8	11.5	42.3	42.3
	기혼	(14)	0.0	28.6	71.4	0.0
	별거·사별·이혼·기타	(2)	0.0	0.0	0.0	100.0
가구원수	1명	(20)	5.0	15.0	40.0	40.0
	2명	(8)	0.0	0.0	75.0	25.0
	3명	(7)	0.0	28.6	57.1	14.3
	4명 이상	(7)	0.0	28.6	42.9	28.6
자녀수	0명	(29)	3.4	10.3	44.8	41.4
	1명	(6)	0.0	33.3	66.7	0.0
	2명 이상	(7)	0.0	28.6	57.1	14.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10.0	10.0	50.0	30.0
	200~300만원 미만	(13)	0.0	7.7	38.5	53.8
	300~400만원 미만	(11)	0.0	9.1	72.7	18.2
	400~500만원 미만	(5)	0.0	40.0	60.0	0.0
	500만원 이상	(3)	0.0	66.7	0.0	3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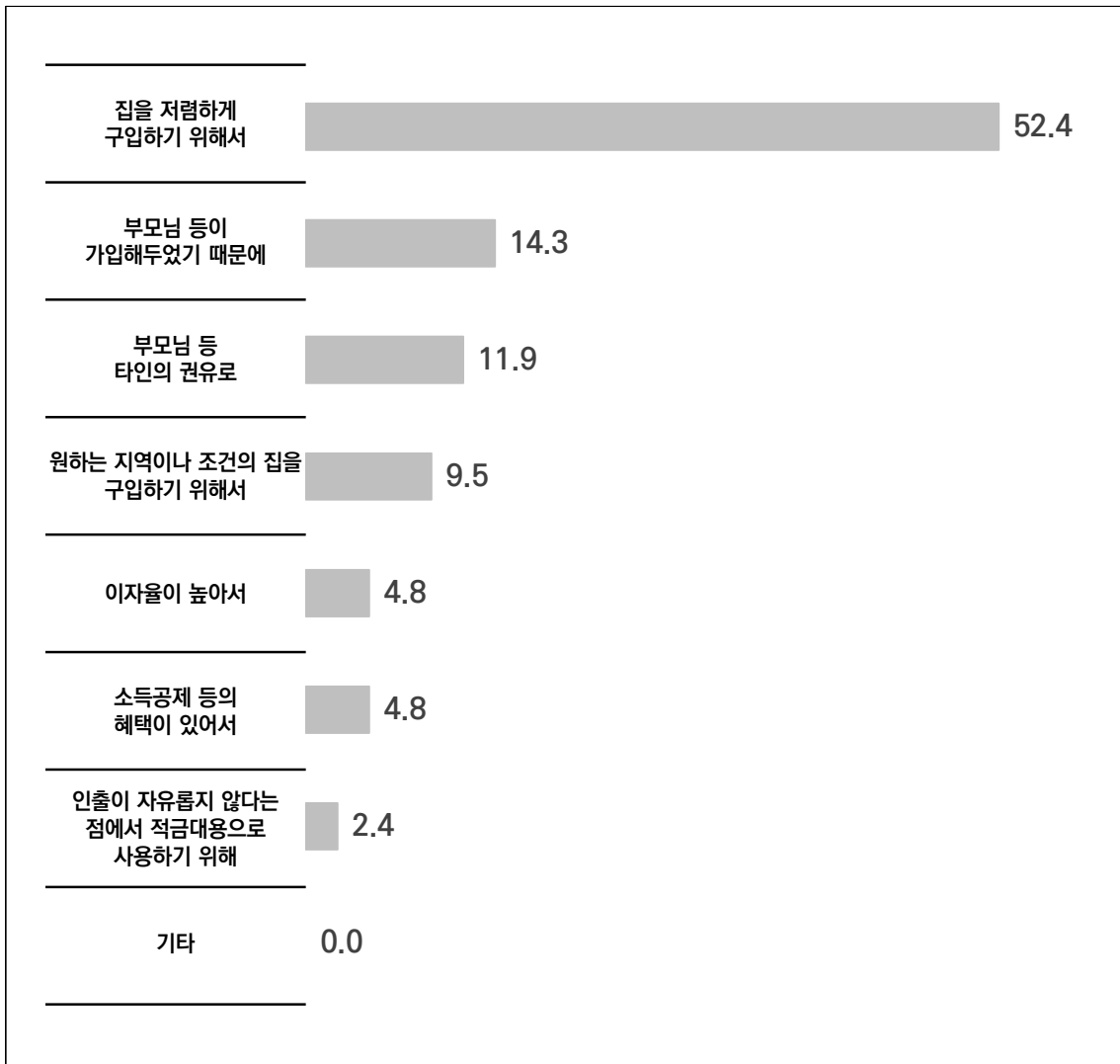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가 52.4%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II -2-27〉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



〈표 III -2-28〉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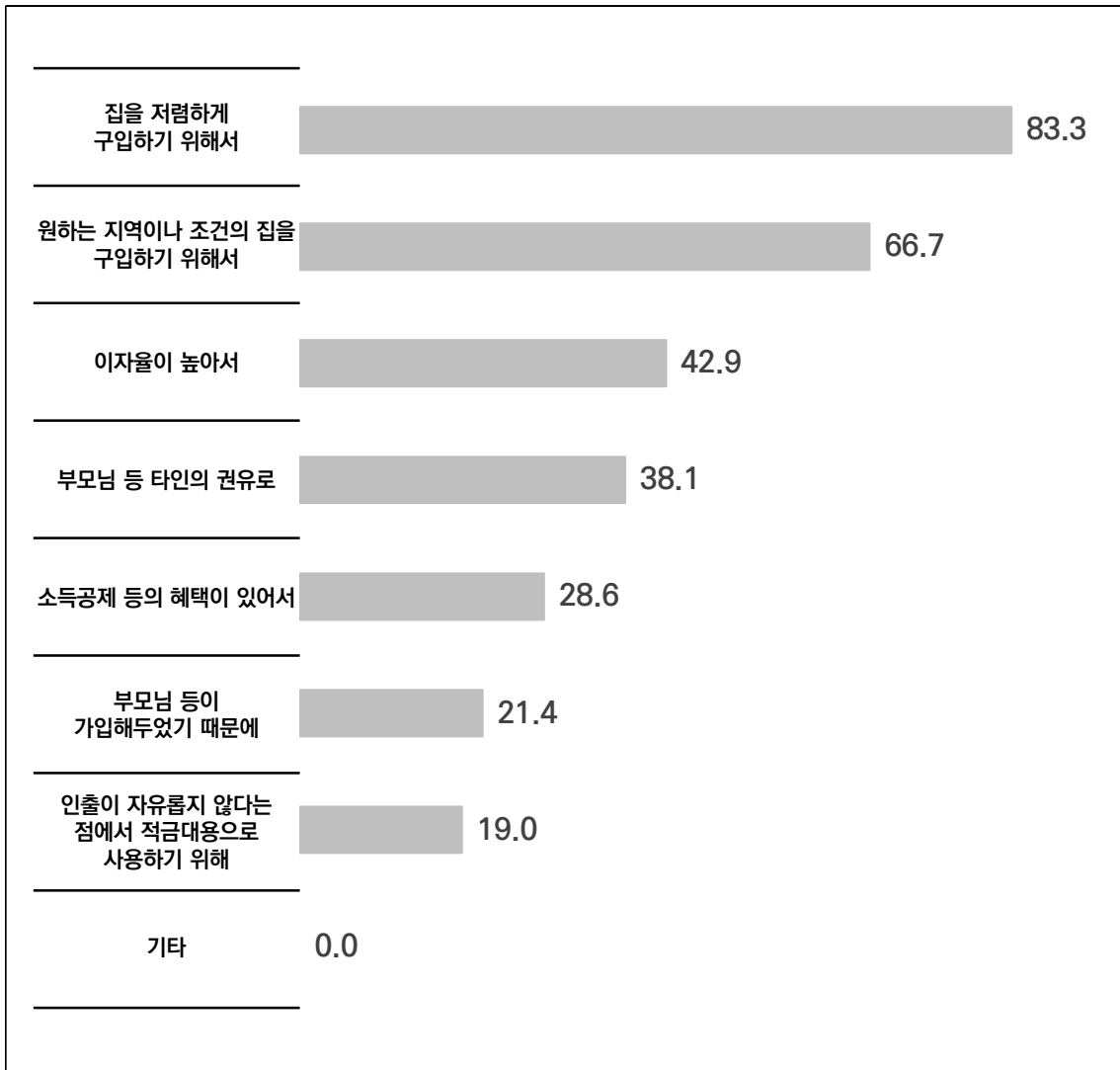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42)	52.4	14.3	11.9	9.5	4.8	4.8	2.4	0.0
성별	남성	(22)	59.1	18.2	9.1	9.1	4.5	0.0	0.0	0.0
	여성	(20)	45.0	10.0	15.0	10.0	5.0	10.0	5.0	0.0
연령	20세~29세	(6)	50.0	0.0	16.7	16.7	16.7	0.0	0.0	0.0
	30세~39세	(17)	47.1	29.4	11.8	5.9	0.0	5.9	0.0	0.0
	40세~49세	(13)	53.8	7.7	15.4	0.0	7.7	7.7	7.7	0.0
	50세~59세	(5)	60.0	0.0	0.0	40.0	0.0	0.0	0.0	0.0
	60세 이상	(1)	100.0	0.0	0.0	0.0	0.0	0.0	0.0	0.0
수도권	수도권	(33)	54.5	18.2	12.1	6.1	3.0	6.1	0.0	0.0
	비수도권	(9)	44.4	0.0	11.1	22.2	11.1	0.0	11.1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33.3	33.3	0.0	0.0	0.0	0.0	33.3	0.0
	2~3년제 대학	(7)	71.4	14.3	0.0	14.3	0.0	0.0	0.0	0.0
	4년제 대학	(30)	53.3	13.3	13.3	10.0	6.7	3.3	0.0	0.0
	대학원 석사 이상	(2)	0.0	0.0	50.0	0.0	0.0	50.0	0.0	0.0
혼인상태	미혼	(26)	46.2	19.2	7.7	11.5	7.7	7.7	0.0	0.0
	기혼	(14)	64.3	7.1	21.4	7.1	0.0	0.0	0.0	0.0
	별거·사별·이혼·기타	(2)	50.0	0.0	0.0	0.0	0.0	0.0	50.0	0.0
가구원수	1명	(20)	45.0	15.0	10.0	10.0	10.0	5.0	5.0	0.0
	2명	(8)	62.5	12.5	12.5	12.5	0.0	0.0	0.0	0.0
	3명	(7)	42.9	14.3	14.3	14.3	0.0	14.3	0.0	0.0
	4명 이상	(7)	71.4	14.3	14.3	0.0	0.0	0.0	0.0	0.0
자녀수	0명	(29)	48.3	17.2	10.3	10.3	6.9	6.9	0.0	0.0
	1명	(6)	50.0	16.7	16.7	16.7	0.0	0.0	0.0	0.0
	2명 이상	(7)	71.4	0.0	14.3	0.0	0.0	0.0	14.3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60.0	10.0	10.0	10.0	1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13)	30.8	15.4	15.4	15.4	7.7	7.7	7.7	0.0
	300~400만원 미만	(11)	63.6	18.2	9.1	0.0	0.0	9.1	0.0	0.0
	400~500만원 미만	(5)	80.0	0.0	20.0	0.0	0.0	0.0	0.0	0.0
	500만원 이상	(3)	33.3	33.3	0.0	33.3	0.0	0.0	0.0	0.0

- ①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 ② 부모님 등이 가입해두었기 때문에
 - ③ 부모님 등 타인의 권유로
 - ④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 ⑤ 이자율이 높아서
 - ⑥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서
 - ⑦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적금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⑧ 기타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그림 III-2-28〉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



〈표 III-2-29〉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42)	83.3	66.7	42.9	38.1	28.6	21.4	19.0	0.0
성별	남성	(22)	86.4	72.7	40.9	31.8	27.3	22.7	18.2	0.0
	여성	(20)	80.0	60.0	45.0	45.0	30.0	20.0	20.0	0.0
연령	20세~29세	(6)	50.0	83.3	66.7	33.3	50.0	16.7	0.0	0.0
	30세~39세	(17)	88.2	47.1	35.3	35.3	29.4	23.5	41.2	0.0
	40세~49세	(13)	84.6	69.2	53.8	46.2	23.1	15.4	7.7	0.0
	50세~59세	(5)	100.0	100.0	20.0	20.0	20.0	40.0	0.0	0.0
	60세 이상	(1)	100.0	100.0	0.0	100.0	0.0	0.0	0.0	0.0
수도권	수도권	(33)	81.8	63.6	45.5	36.4	30.3	18.2	24.2	0.0
	비수도권	(9)	88.9	77.8	33.3	44.4	22.2	33.3	0.0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100.0	0.0	33.3	33.3	0.0	66.7	66.7	0.0
	2~3년제 대학	(7)	85.7	57.1	71.4	28.6	42.9	0.0	14.3	0.0
	4년제 대학	(30)	80.0	73.3	36.7	40.0	30.0	23.3	16.7	0.0
	대학원 석사 이상	(2)	100.0	100.0	50.0	50.0	0.0	0.0	0.0	0.0
혼인상태	미혼	(26)	73.1	65.4	42.3	38.5	30.8	26.9	23.1	0.0
	기혼	(14)	100.0	71.4	42.9	42.9	28.6	0.0	14.3	0.0
	별거·사별·이혼·기타	(2)	100.0	50.0	50.0	0.0	0.0	100.0	0.0	0.0
가구원수	1명	(20)	70.0	65.0	50.0	40.0	35.0	25.0	15.0	0.0
	2명	(8)	100.0	62.5	12.5	50.0	12.5	25.0	37.5	0.0
	3명	(7)	100.0	71.4	71.4	14.3	14.3	14.3	14.3	0.0
	4명 이상	(7)	85.7	71.4	28.6	42.9	42.9	14.3	14.3	0.0
자녀수	0명	(29)	75.9	65.5	37.9	37.9	31.0	27.6	24.1	0.0
	1명	(6)	100.0	66.7	66.7	33.3	16.7	0.0	16.7	0.0
	2명 이상	(7)	100.0	71.4	42.9	42.9	28.6	14.3	0.0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80.0	80.0	20.0	50.0	40.0	20.0	10.0	0.0
	200~300만원 미만	(13)	84.6	53.8	46.2	38.5	15.4	38.5	23.1	0.0
	300~400만원 미만	(11)	81.8	54.5	54.5	18.2	45.5	18.2	27.3	0.0
	400~500만원 미만	(5)	100.0	80.0	40.0	60.0	20.0	0.0	0.0	0.0
	500만원 이상	(3)	66.7	100.0	66.7	33.3	0.0	0.0	33.3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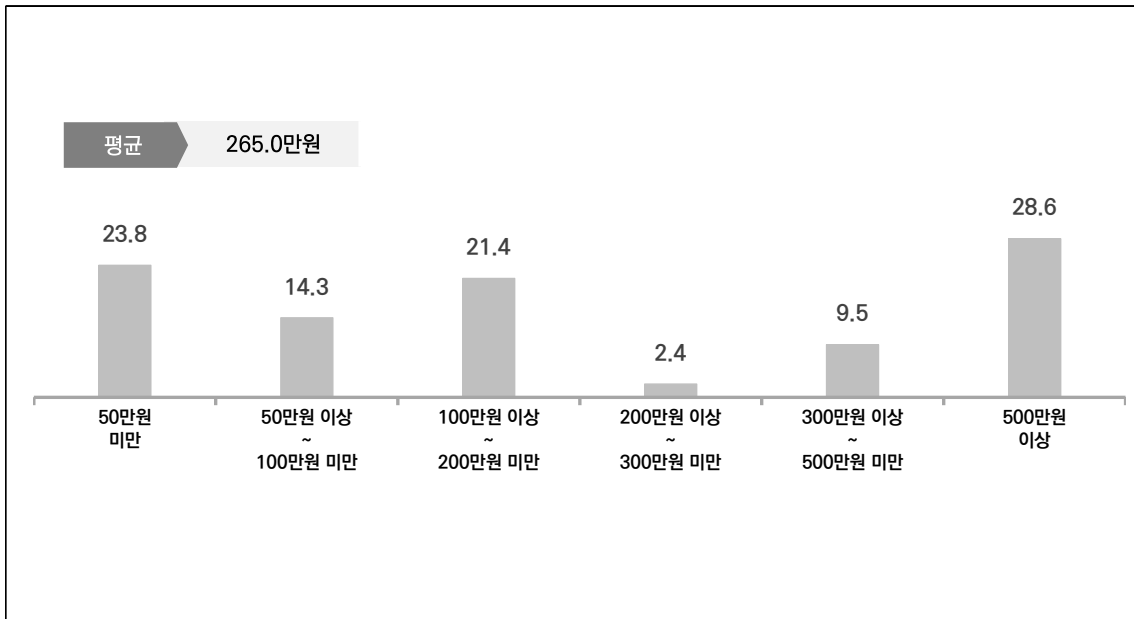
- ①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 ②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 ③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서
 - ④ 부모님 등 타인의 권유로
 - ⑤ 이자율이 높아서
 - ⑥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적금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⑦ 부모님 등이 가입해두었기 때문에
 - ⑧ 기타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500만원 이상’이 28.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0만원 미만’(23.8%),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21.4%) 순으로 나타남.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의 평균은 265.0만원임

〈그림 III-2-29〉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



〈표 III-2-30〉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42)	23.8	14.3	21.4	2.4	9.5	28.6	265.0
성별	남성	(22)	13.6	18.2	22.7	0.0	9.1	36.4	325.7
	여성	(20)	35.0	10.0	20.0	5.0	10.0	20.0	198.2
연령	20세~29세	(6)	33.3	0.0	0.0	0.0	50.0	16.7	257.3
	30세~39세	(17)	29.4	11.8	23.5	0.0	5.9	29.4	303.8
	40세~49세	(13)	15.4	7.7	38.5	0.0	0.0	38.5	267.4
	50세~59세	(5)	20.0	60.0	0.0	0.0	0.0	20.0	138.8
	60세 이상	(1)	0.0	0.0	0.0	100.0	0.0	0.0	250.0
수도권	수도권	(33)	21.2	12.1	21.2	0.0	12.1	33.3	302.3
	비수도권	(9)	33.3	22.2	22.2	11.1	0.0	11.1	128.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66.7	0.0	0.0	0.0	0.0	33.3	218.7
	2~3년제 대학	(7)	14.3	28.6	42.9	0.0	14.3	0.0	123.7
	4년제 대학	(30)	23.3	13.3	16.7	3.3	6.7	36.7	306.9
	대학원 석사 이상	(2)	0.0	0.0	50.0	0.0	50.0	0.0	200.0
혼인상태	미혼	(26)	19.2	11.5	19.2	3.8	15.4	30.8	310.9
	기혼	(14)	21.4	21.4	28.6	0.0	0.0	28.6	214.4
	별거·사별·이혼·기타	(2)	100.0	0.0	0.0	0.0	0.0	0.0	22.0
가구원수	1명	(20)	30.0	5.0	20.0	5.0	15.0	25.0	263.7
	2명	(8)	25.0	50.0	12.5	0.0	0.0	12.5	125.5
	3명	(7)	14.3	14.3	28.6	0.0	14.3	28.6	243.7
	4명 이상	(7)	14.3	0.0	28.6	0.0	0.0	57.1	449.3
자녀수	0명	(29)	24.1	10.3	20.7	3.4	13.8	27.6	284.8
	1명	(6)	16.7	33.3	33.3	0.0	0.0	16.7	161.0
	2명 이상	(7)	28.6	14.3	14.3	0.0	0.0	42.9	272.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40.0	20.0	20.0	10.0	0.0	10.0	119.4
	200~300만원 미만	(13)	15.4	30.8	0.0	0.0	30.8	23.1	245.7
	300~400만원 미만	(11)	27.3	0.0	45.5	0.0	0.0	27.3	268.3
	400~500만원 미만	(5)	0.0	0.0	20.0	0.0	0.0	80.0	600.0
	500만원 이상	(3)	33.3	0.0	33.3	0.0	0.0	33.3	26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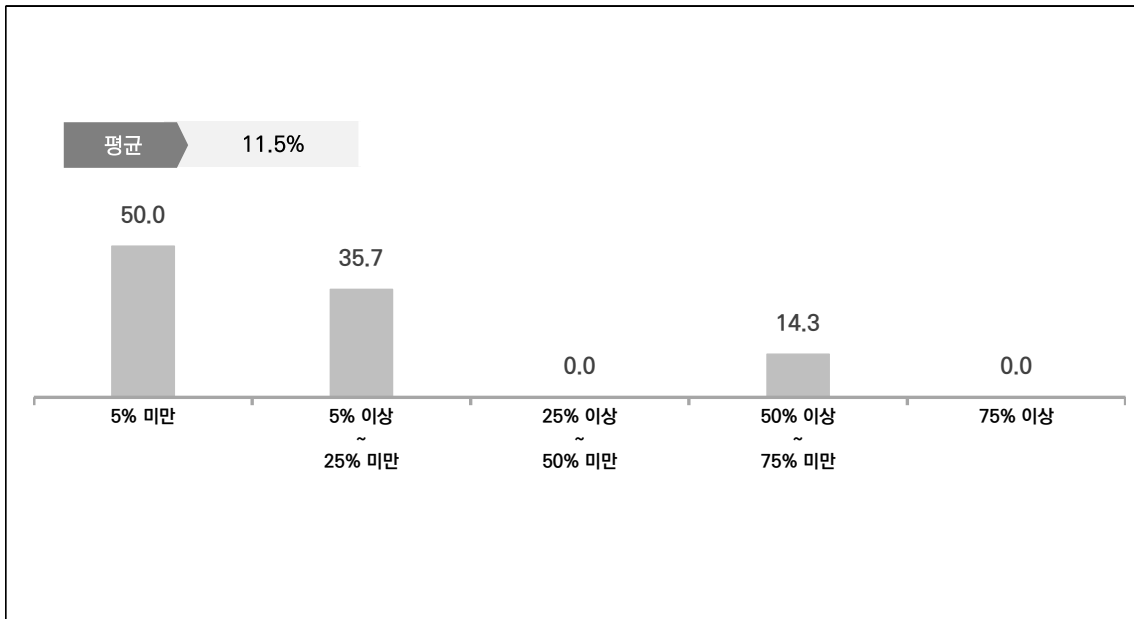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에 대해 물어본 결과, ‘5% 미만’이 5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 이상~25% 미만’(35.7%), ‘50% 이상~75% 미만’(14.3%) 순으로 나타남.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의 평균은 11.5%임

〈그림 Ⅲ-2-30〉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



〈표 III-2-31〉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5% 미만	5% 이상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42)	50.0	35.7	0.0	14.3	0.0	11.5
성별	남성	(22)	36.4	40.9	0.0	22.7	0.0	15.8
	여성	(20)	65.0	30.0	0.0	5.0	0.0	6.7
연령	20세~29세	(6)	50.0	50.0	0.0	0.0	0.0	5.0
	30세~39세	(17)	70.6	17.6	0.0	11.8	0.0	8.4
	40세~49세	(13)	30.8	46.2	0.0	23.1	0.0	18.3
	50세~59세	(5)	40.0	60.0	0.0	0.0	0.0	4.0
	60세 이상	(1)	0.0	0.0	0.0	100.0	0.0	50.0
수도권	수도권	(33)	54.5	36.4	0.0	9.1	0.0	8.7
	비수도권	(9)	33.3	33.3	0.0	33.3	0.0	21.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100.0	0.0	0.0	0.0	0.0	1.0
	2~3년제 대학	(7)	57.1	14.3	0.0	28.6	0.0	17.0
	4년제 대학	(30)	40.0	46.7	0.0	13.3	0.0	11.8
	대학원 석사 이상	(2)	100.0	0.0	0.0	0.0	0.0	3.0
혼인상태	미혼	(26)	50.0	42.3	0.0	7.7	0.0	8.6
	기혼	(14)	42.9	28.6	0.0	28.6	0.0	18.4
	별거·사별·이혼·기타	(2)	100.0	0.0	0.0	0.0	0.0	0.0
가구원수	1명	(20)	55.0	40.0	0.0	5.0	0.0	6.8
	2명	(8)	62.5	37.5	0.0	0.0	0.0	4.5
	3명	(7)	28.6	28.6	0.0	42.9	0.0	24.7
	4명 이상	(7)	42.9	28.6	0.0	28.6	0.0	19.4
자녀수	0명	(29)	55.2	37.9	0.0	6.9	0.0	7.8
	1명	(6)	33.3	16.7	0.0	50.0	0.0	27.7
	2명 이상	(7)	42.9	42.9	0.0	14.3	0.0	12.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60.0	30.0	0.0	10.0	0.0	7.1
	200~300만원 미만	(13)	38.5	53.8	0.0	7.7	0.0	9.6
	300~400만원 미만	(11)	54.5	27.3	0.0	18.2	0.0	13.6
	400~500만원 미만	(5)	40.0	40.0	0.0	20.0	0.0	16.8
	500만원 이상	(3)	66.7	0.0	0.0	33.3	0.0	1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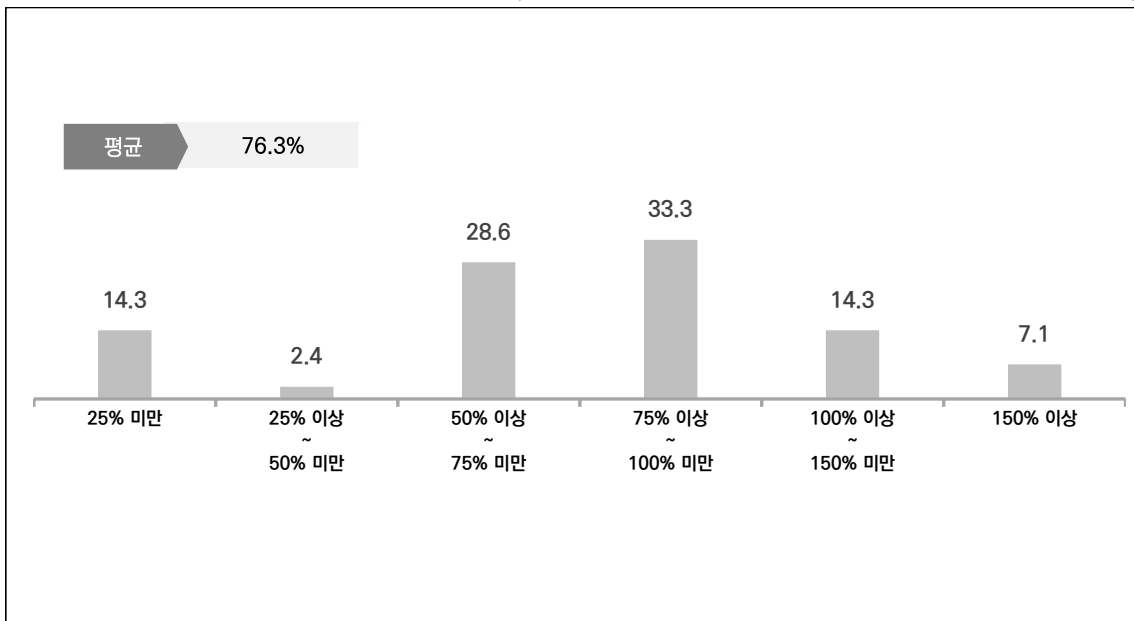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에 대해 물어본 결과, ‘75% 이상~100% 미만’이 33.3%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50% 이상~75% 미만’(28.6%), ‘25% 미만’, ‘100% 이상~150% 미만’(각각 14.3%) 순으로 나타남.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의 평균은 76.3%임

〈그림 III-2-31〉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



〈표 III-2-32〉 청약 지원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42)	14.3	2.4	28.6	33.3	14.3	7.1	76.3
성별	남성	(22)	18.2	4.5	36.4	27.3	13.6	0.0	62.8
	여성	(20)	10.0	0.0	20.0	40.0	15.0	15.0	91.3
연령	20세~29세	(6)	16.7	0.0	33.3	16.7	33.3	0.0	70.0
	30세~39세	(17)	23.5	0.0	17.6	41.2	11.8	5.9	72.1
	40세~49세	(13)	7.7	7.7	38.5	23.1	7.7	15.4	80.8
	50세~59세	(5)	0.0	0.0	40.0	40.0	20.0	0.0	84.0
	60세 이상	(1)	0.0	0.0	0.0	100.0	0.0	0.0	90.0
수도권	수도권	(33)	15.2	0.0	27.3	33.3	18.2	6.1	75.6
	비수도권	(9)	11.1	11.1	33.3	33.3	0.0	11.1	78.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33.3	0.0	0.0	33.3	33.3	0.0	60.0
	2~3년제 대학	(7)	14.3	14.3	28.6	28.6	14.3	0.0	64.3
	4년제 대학	(30)	13.3	0.0	33.3	30.0	13.3	10.0	80.2
	대학원 석사 이상	(2)	0.0	0.0	0.0	100.0	0.0	0.0	85.0
혼인상태	미혼	(26)	7.7	0.0	23.1	38.5	19.2	11.5	88.8
	기혼	(14)	21.4	7.1	35.7	28.6	7.1	0.0	59.0
	별거·사별·이혼·기타	(2)	50.0	0.0	50.0	0.0	0.0	0.0	35.0
가구원수	1명	(20)	10.0	0.0	20.0	35.0	20.0	15.0	90.5
	2명	(8)	25.0	0.0	12.5	37.5	25.0	0.0	70.6
	3명	(7)	14.3	14.3	42.9	28.6	0.0	0.0	57.1
	4명 이상	(7)	14.3	0.0	57.1	28.6	0.0	0.0	61.6
자녀수	0명	(29)	10.3	0.0	24.1	37.9	17.2	10.3	85.7
	1명	(6)	16.7	16.7	50.0	16.7	0.0	0.0	53.3
	2명 이상	(7)	28.6	0.0	28.6	28.6	14.3	0.0	57.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0.0	0.0	30.0	60.0	0.0	10.0	93.0
	200~300만원 미만	(13)	30.8	0.0	15.4	23.1	23.1	7.7	70.8
	300~400만원 미만	(11)	18.2	9.1	36.4	18.2	9.1	9.1	66.9
	400~500만원 미만	(5)	0.0	0.0	40.0	60.0	0.0	0.0	74.0
	500만원 이상	(3)	0.0	0.0	33.3	0.0	66.7	0.0	8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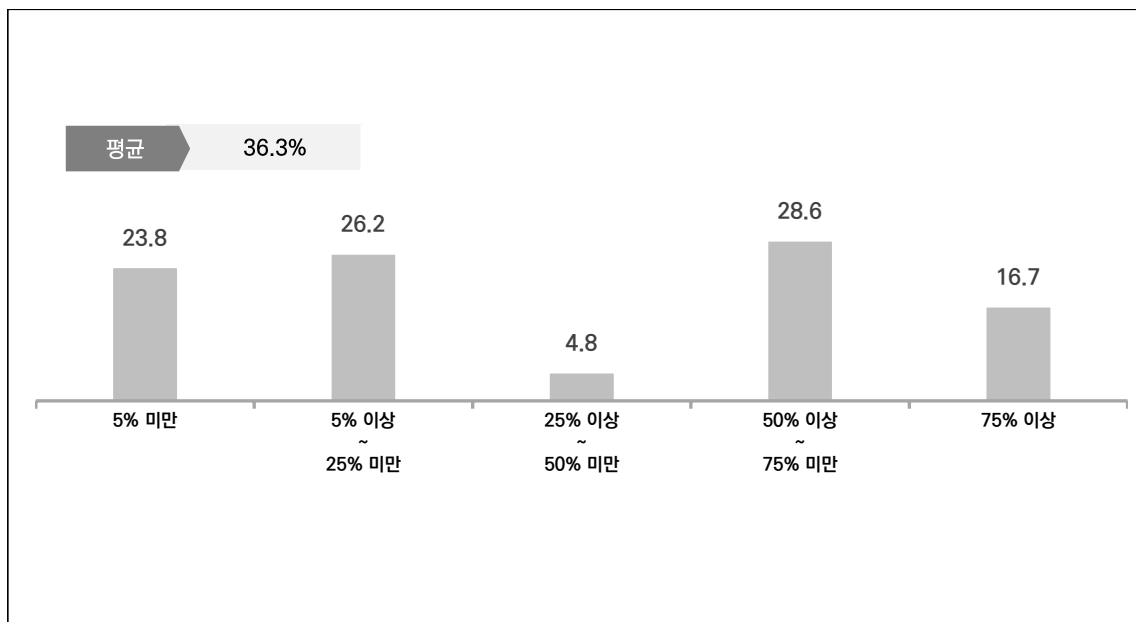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8)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50% 이상~75% 미만’이 28.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 이상~25% 미만’(26.2%), ‘5% 미만’(23.8%) 순으로 나타남.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의 평균은 36.3%임

〈그림 III-2-32〉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



〈표 III-2-33〉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42,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5% 미만	5% 이상~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42)	23.8	26.2	4.8	28.6	16.7	36.3
성별	남성	(22)	18.2	22.7	9.1	36.4	13.6	38.7
	여성	(20)	30.0	30.0	0.0	20.0	20.0	33.6
연령	20세~29세	(6)	16.7	16.7	33.3	0.0	33.3	41.8
	30세~39세	(17)	35.3	17.6	0.0	23.5	23.5	39.2
	40세~49세	(13)	15.4	46.2	0.0	30.8	7.7	29.7
	50세~59세	(5)	20.0	20.0	0.0	60.0	0.0	32.0
	60세 이상	(1)	0.0	0.0	0.0	100.0	0.0	60.0
수도권	수도권	(33)	24.2	30.3	6.1	18.2	21.2	35.5
	비수도권	(9)	22.2	11.1	0.0	66.7	0.0	38.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	66.7	0.0	0.0	33.3	0.0	23.3
	2~3년제 대학	(7)	14.3	14.3	0.0	42.9	28.6	48.6
	4년제 대학	(30)	23.3	26.7	6.7	26.7	16.7	36.3
	대학원 석사 이상	(2)	0.0	100.0	0.0	0.0	0.0	12.5
혼인상태	미혼	(26)	30.8	23.1	7.7	26.9	11.5	31.0
	기혼	(14)	7.1	35.7	0.0	28.6	28.6	47.6
	별거·사별·이혼·기타	(2)	50.0	0.0	0.0	50.0	0.0	25.0
가구원수	1명	(20)	30.0	25.0	10.0	20.0	15.0	30.1
	2명	(8)	12.5	25.0	0.0	37.5	25.0	48.8
	3명	(7)	14.3	14.3	0.0	42.9	28.6	54.7
	4명 이상	(7)	28.6	42.9	0.0	28.6	0.0	21.1
자녀수	0명	(29)	27.6	24.1	6.9	27.6	13.8	33.0
	1명	(6)	0.0	0.0	0.0	50.0	50.0	76.7
	2명 이상	(7)	28.6	57.1	0.0	14.3	0.0	15.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30.0	20.0	0.0	40.0	10.0	32.1
	200~300만원 미만	(13)	15.4	30.8	7.7	30.8	15.4	39.5
	300~400만원 미만	(11)	36.4	18.2	9.1	27.3	9.1	26.7
	400~500만원 미만	(5)	0.0	60.0	0.0	20.0	20.0	39.0
	500만원 이상	(3)	33.3	0.0	0.0	0.0	66.7	6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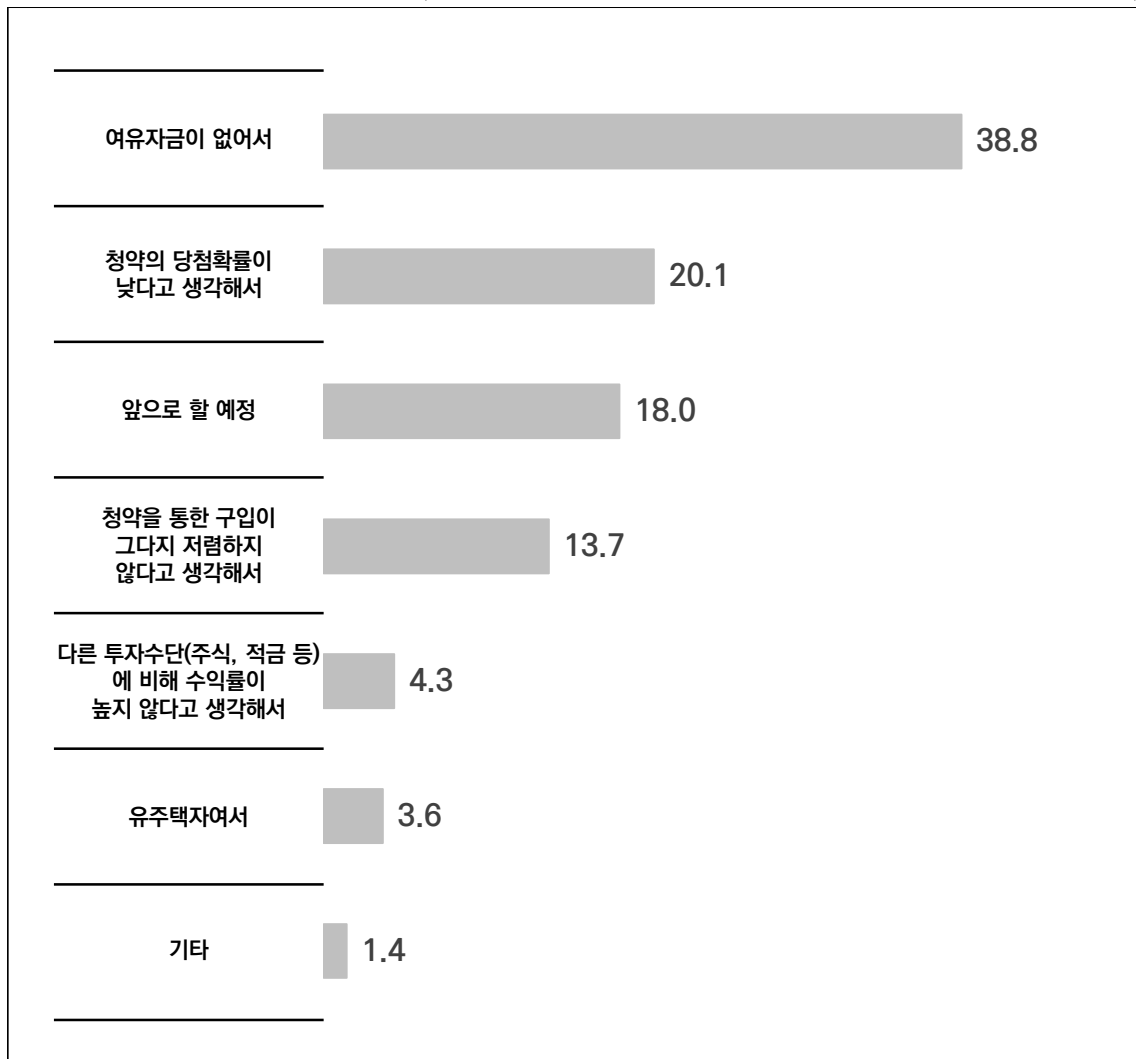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유자금이 없어서’가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없어서’가 ‘남성’ 45.1%, ‘여성’ 21.6%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없어서’가 ‘20세~29세’ 28.6%, ‘30세~39세’ 44.1%, ‘40세~49세’ 34.0%, ‘50세~59세’ 38.2%, ‘60세 이상’ 5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여유자금이 없어서’가 ‘수도권’ 36.0%, ‘비수도권’ 43.4%로 나타남

〈그림 III-2-3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n=139, 단위: %)



〈표 III-2-3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n=13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39)	38.8	20.1	18.0	13.7	4.3	3.6	1.4
성별	남성	(102)	45.1	18.6	14.7	13.7	2.9	3.9	1.0
	여성	(37)	21.6	24.3	27.0	13.5	8.1	2.7	2.7
연령	20세~29세	(7)	28.6	14.3	42.9	14.3	0.0	0.0	0.0
	30세~39세	(34)	44.1	14.7	17.6	8.8	5.9	5.9	2.9
	40세~49세	(50)	34.0	28.0	18.0	16.0	2.0	2.0	0.0
	50세~59세	(34)	38.2	17.6	11.8	17.6	8.8	5.9	0.0
	60세 이상	(14)	50.0	14.3	21.4	7.1	0.0	0.0	7.1
수도권	수도권	(86)	36.0	18.6	16.3	17.4	5.8	4.7	1.2
	비수도권	(53)	43.4	22.6	20.8	7.5	1.9	1.9	1.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3)	43.5	17.4	21.7	8.7	0.0	8.7	0.0
	2~3년제 대학	(21)	57.1	14.3	0.0	19.0	4.8	4.8	0.0
	4년제 대학	(85)	34.1	22.4	23.5	11.8	5.9	1.2	1.2
	대학원 석사 이상	(10)	30.0	20.0	0.0	30.0	0.0	10.0	10.0
혼인상태	미혼	(75)	36.0	20.0	18.7	12.0	5.3	6.7	1.3
	기혼	(49)	38.8	20.4	18.4	18.4	4.1	0.0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5)	53.3	20.0	13.3	6.7	0.0	0.0	6.7
가구원수	1명	(71)	38.0	18.3	15.5	12.7	5.6	7.0	2.8
	2명	(23)	52.2	13.0	13.0	17.4	4.3	0.0	0.0
	3명	(26)	38.5	23.1	26.9	11.5	0.0	0.0	0.0
	4명 이상	(19)	26.3	31.6	21.1	15.8	5.3	0.0	0.0
자녀수	0명	(87)	37.9	18.4	18.4	13.8	4.6	5.7	1.1
	1명	(31)	48.4	16.1	19.4	12.9	0.0	0.0	3.2
	2명 이상	(21)	28.6	33.3	14.3	14.3	9.5	0.0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6)	62.5	18.8	12.5	6.3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50)	40.0	12.0	24.0	18.0	2.0	4.0	0.0
	300~400만원 미만	(41)	39.0	17.1	14.6	14.6	7.3	4.9	2.4
	400~500만원 미만	(21)	28.6	38.1	14.3	4.8	9.5	4.8	0.0
	500만원 이상	(11)	18.2	36.4	18.2	18.2	0.0	0.0	9.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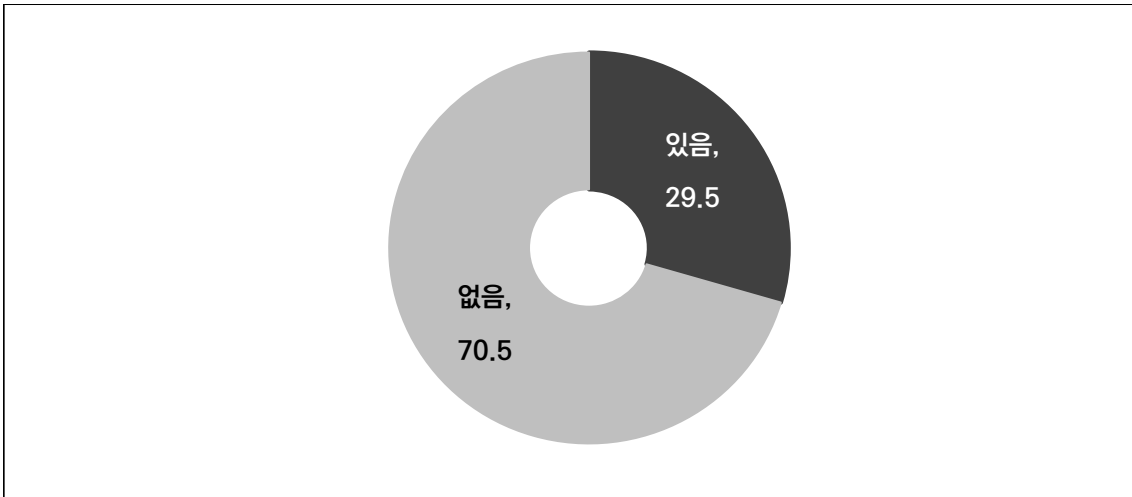
- ① 여유자금이 없어서
 - ② 청약의 당첨확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 ③ 앞으로 할 예정
 - ④ 청약을 통한 구입이 그다지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⑤ 다른 투자수단(주식, 적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⑥ 유주택자여서
 - ⑦ 기타: 주택 구입 의향이 없음, 알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29.5%가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9.1%)과 ‘여성’(30.8%)의 가입 의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49세’(36.6%)의 가입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3.8%)이 ‘비수도권’(22.0%) 보다 가입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34〉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base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 아니거나 유주택자가 아닌 미가입자, n=112, 단위: %)



〈표 III-2-35〉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base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 아니거나 유주택자가 아닌 미가입자, n=112, 단위: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12)	29.5	70.5
성별	남성	(86)	29.1	70.9
	여성	(26)	30.8	69.2
연령	20세~29세	(4)	25.0	75.0
	30세~39세	(27)	33.3	66.7
	40세~49세	(41)	36.6	63.4
	50세~59세	(30)	23.3	76.7
	60세 이상	(10)	10.0	90.0
수도권	수도권	(71)	33.8	66.2
	비수도권	(41)	22.0	78.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8)	22.2	77.8
	2~3년제 대학	(21)	33.3	66.7
	4년제 대학	(64)	32.8	67.2
	대학원 석사 이상	(9)	11.1	88.9
혼인상태	미혼	(60)	25.0	75.0
	기혼	(40)	35.0	65.0
	별거·사별·이혼·기타	(12)	33.3	66.7
가구원수	1명	(58)	24.1	75.9
	2명	(20)	35.0	65.0
	3명	(19)	31.6	68.4
	4명 이상	(15)	40.0	60.0
자녀수	0명	(70)	28.6	71.4
	1명	(24)	29.2	70.8
	2명 이상	(18)	33.3	66.7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4)	7.1	92.9
	200~300만원 미만	(38)	34.2	65.8
	300~400만원 미만	(34)	26.5	73.5
	400~500만원 미만	(18)	38.9	61.1
	500만원 이상	(8)	37.5	6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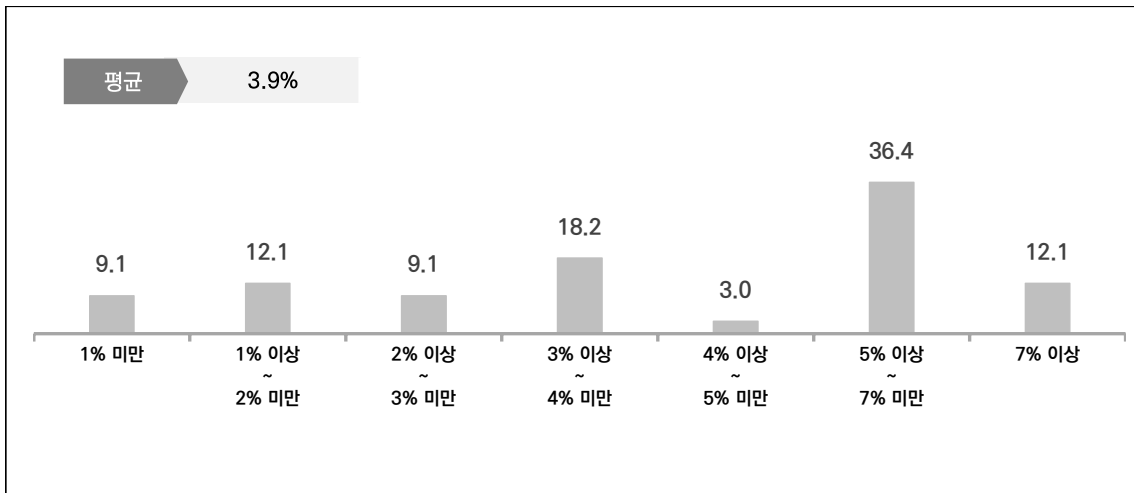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1)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에 대해 물어본 결과, ‘5% 이상~7% 미만’이 36.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3% 이상~4% 미만’(18.2%), ‘1% 이상~2% 미만’, ‘7% 이상’(각각 12.1%) 순으로 나타남. 현재 이자율 대비 원하는 인상률의 평균은 3.9%임

〈그림 Ⅲ-2-35〉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 n=33, 단위: %)



〈표 III-2-36〉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 n=33,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33)	9.1	12.1	9.1	18.2	3.0	36.4	12.1	3.9
성별	남성	(25)	12.0	8.0	12.0	16.0	4.0	36.0	12.0	4.0
	여성	(8)	0.0	25.0	0.0	25.0	0.0	37.5	12.5	3.8
연령	20세~29세	(1)	0.0	100.0	0.0	0.0	0.0	0.0	0.0	1.0
	30세~39세	(9)	0.0	22.2	11.1	22.2	0.0	33.3	11.1	3.6
	40세~49세	(15)	13.3	6.7	6.7	20.0	6.7	33.3	13.3	4.2
	50세~59세	(7)	14.3	0.0	14.3	14.3	0.0	42.9	14.3	4.1
	60세 이상	(1)	0.0	0.0	0.0	0.0	0.0	100.0	0.0	5.0
수도권	수도권	(24)	12.5	12.5	12.5	16.7	4.2	33.3	8.3	3.5
	비수도권	(9)	0.0	11.1	0.0	22.2	0.0	44.4	22.2	5.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	25.0	0.0	0.0	25.0	0.0	50.0	0.0	3.4
	2~3년제 대학	(7)	0.0	14.3	0.0	0.0	0.0	57.1	28.6	5.6
	4년제 대학	(21)	9.5	14.3	14.3	23.8	4.8	23.8	9.5	3.4
	대학원 석사 이상	(1)	0.0	0.0	0.0	0.0	0.0	100.0	0.0	5.0
혼인상태	미혼	(15)	13.3	26.7	0.0	20.0	6.7	26.7	6.7	3.3
	기혼	(14)	7.1	0.0	21.4	21.4	0.0	35.7	14.3	4.1
	별거·사별·이혼·기타	(4)	0.0	0.0	0.0	0.0	0.0	75.0	25.0	5.8
가구원수	1명	(14)	14.3	21.4	0.0	21.4	7.1	21.4	14.3	3.6
	2명	(7)	0.0	14.3	14.3	0.0	0.0	57.1	14.3	4.3
	3명	(6)	0.0	0.0	16.7	16.7	0.0	50.0	16.7	5.0
	4명 이상	(6)	16.7	0.0	16.7	33.3	0.0	33.3	0.0	3.1
자녀수	0명	(20)	10.0	20.0	5.0	15.0	5.0	30.0	15.0	3.8
	1명	(7)	0.0	0.0	14.3	14.3	0.0	57.1	14.3	5.0
	2명 이상	(6)	16.7	0.0	16.7	33.3	0.0	33.3	0.0	3.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	0.0	0.0	0.0	0.0	0.0	0.0	100.0	8.0
	200~300만원 미만	(13)	7.7	23.1	0.0	7.7	0.0	53.8	7.7	4.1
	300~400만원 미만	(9)	0.0	0.0	11.1	22.2	11.1	33.3	22.2	4.9
	400~500만원 미만	(7)	28.6	14.3	14.3	28.6	0.0	14.3	0.0	2.2
	500만원 이상	(3)	0.0	0.0	33.3	33.3	0.0	33.3	0.0	3.3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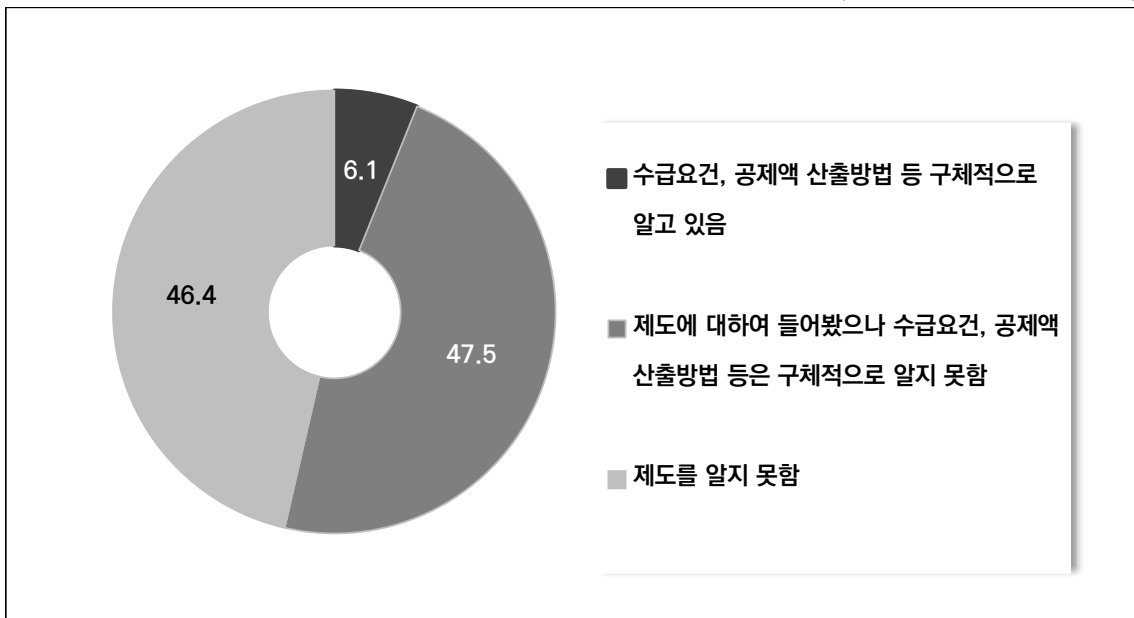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제도에 대하여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47.5%)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제도를 알지 못함’(46.4%),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6.1%)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6.0%)과 ‘여성’(47.4%) 모두 소득공제제도를 알고 있지 못하는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39세’(56.9%)가 가장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7.1%)이 ‘비수도권’(45.2%) 보다 소득공제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II-2-3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3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제도에 대해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제도를 알지 못함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6.1	47.5	46.4
성별	남성	(124)	8.1	46.0	46.0
	여성	(57)	1.8	50.9	47.4
연령	20세~29세	(13)	7.7	38.5	53.8
	30세~39세	(51)	5.9	37.3	56.9
	40세~49세	(63)	6.3	52.4	41.3
	50세~59세	(39)	5.1	53.8	41.0
	60세 이상	(15)	6.7	53.3	40.0
수도권	수도권	(119)	5.9	47.1	47.1
	비수도권	(62)	6.5	48.4	45.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11.5	38.5	50.0
	2~3년제 대학	(28)	3.6	32.1	64.3
	4년제 대학	(115)	4.3	53.0	42.6
	대학원 석사 이상	(12)	16.7	50.0	33.3
혼인상태	미혼	(101)	4.0	44.6	51.5
	기혼	(63)	11.1	49.2	39.7
	별거·사별·이혼·기타	(17)	0.0	58.8	41.2
가구원수	1명	(91)	4.4	42.9	52.7
	2명	(31)	9.7	45.2	45.2
	3명	(33)	3.0	63.6	33.3
	4명 이상	(26)	11.5	46.2	42.3
자녀수	0명	(116)	6.0	42.2	51.7
	1명	(37)	2.7	62.2	35.1
	2명 이상	(28)	10.7	50.0	39.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8	38.5	57.7
	200~300만원 미만	(63)	1.6	47.6	50.8
	300~400만원 미만	(52)	11.5	44.2	44.2
	400~500만원 미만	(26)	7.7	50.0	42.3
	500만원 이상	(14)	7.1	71.4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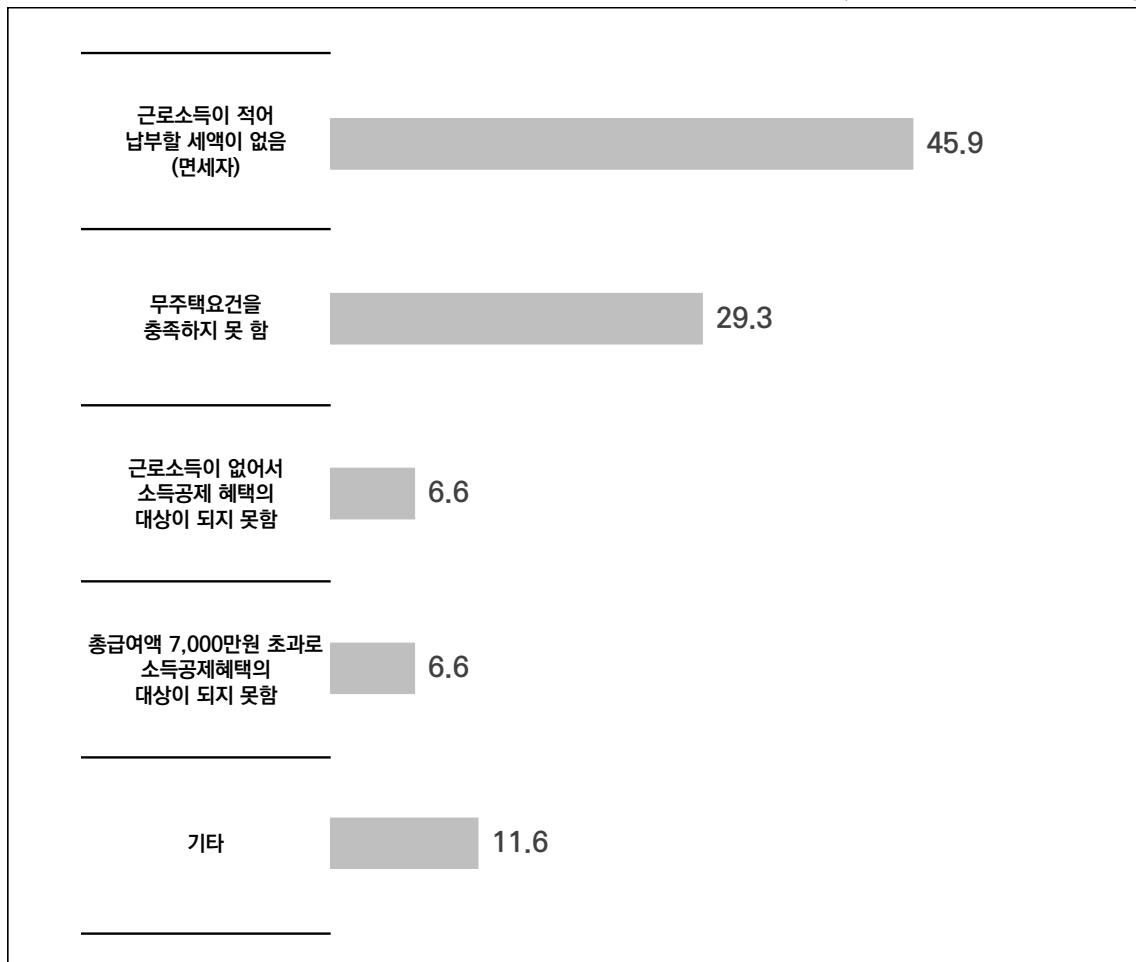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근로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면세자)’이 45.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면세자)’이 ‘남성’ 43.5%, ‘여성’ 50.9%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면세자)’이 ‘20세~29세’ 53.8%, ‘30세~39세’ 43.1%, ‘40세~49세’ 41.3%, ‘50세~59세’ 46.2%, ‘60세 이상’ 66.7%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근로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면세자)’이 ‘수도권’ 44.5%, ‘비수도권’ 48.4%로 나타남

〈그림 III-2-37〉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38〉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45.9	29.3	6.6	6.6	11.6
성별	남성	(124)	43.5	29.8	7.3	6.5	12.9
	여성	(57)	50.9	28.1	5.3	7.0	8.8
연령	20세~29세	(13)	53.8	23.1	0.0	0.0	23.1
	30세~39세	(51)	43.1	25.5	5.9	9.8	15.7
	40세~49세	(63)	41.3	39.7	3.2	6.3	9.5
	50세~59세	(39)	46.2	20.5	15.4	7.7	10.3
	60세 이상	(15)	66.7	26.7	6.7	0.0	0.0
수도권	수도권	(119)	44.5	31.1	5.9	5.9	12.6
	비수도권	(62)	48.4	25.8	8.1	8.1	9.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23.1	46.2	11.5	11.5	7.7
	2~3년제 대학	(28)	35.7	28.6	7.1	0.0	28.6
	4년제 대학	(115)	53.0	26.1	5.2	7.0	8.7
	대학원 석사 이상	(12)	50.0	25.0	8.3	8.3	8.3
혼인상태	미혼	(101)	44.6	33.7	3.0	4.0	14.9
	기혼	(63)	44.4	23.8	11.1	11.1	9.5
	별거·사별·이혼·기타	(17)	58.8	23.5	11.8	5.9	0.0
가구원수	1명	(91)	45.1	29.7	5.5	5.5	14.3
	2명	(31)	51.6	29.0	6.5	3.2	9.7
	3명	(33)	39.4	27.3	9.1	15.2	9.1
	4명 이상	(26)	50.0	30.8	7.7	3.8	7.7
자녀수	0명	(116)	46.6	31.9	3.4	4.3	13.8
	1명	(37)	40.5	21.6	10.8	16.2	10.8
	2명 이상	(28)	50.0	28.6	14.3	3.6	3.6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73.1	3.8	11.5	0.0	11.5
	200~300만원 미만	(63)	46.0	30.2	6.3	6.3	11.1
	300~400만원 미만	(52)	34.6	40.4	5.8	5.8	13.5
	400~500만원 미만	(26)	50.0	26.9	7.7	11.5	3.8
	500만원 이상	(14)	28.6	35.7	0.0	14.3	2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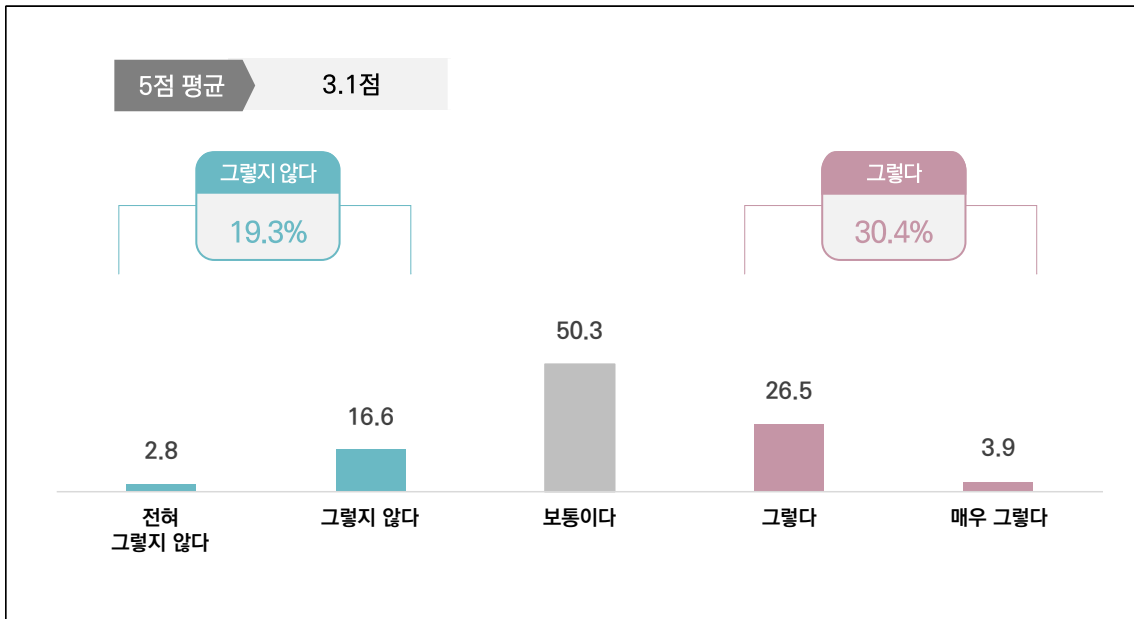
- ① 근로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면세자)
 - ②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③ 근로소득이 없어서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함
 - ④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로 소득공제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함
 - ⑤ 기타: 제도를 알지 못해서, 주택청약이 없음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30.4%로 ‘그렇지 않다’(19.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31.5%, ‘여성’ 28.1%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53.8%, ‘30세~39세’ 23.5%, ‘40세~49세’ 20.6%, ‘50세~59세’ 33.3%, ‘60세 이상’ 66.7%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30.3%, ‘비수도권’ 30.6%로 나타남

〈그림 III-2-38〉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3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2.8	16.6	50.3	26.5	3.9	19.3	30.4	3.1
성별	남성	(124)	0.8	19.4	48.4	25.8	5.6	20.2	31.5	3.2
	여성	(57)	7.0	10.5	54.4	28.1	0.0	17.5	28.1	3.0
연령	20세~29세	(13)	7.7	15.4	23.1	46.2	7.7	23.1	53.8	3.3
	30세~39세	(51)	3.9	19.6	52.9	19.6	3.9	23.5	23.5	3.0
	40세~49세	(63)	3.2	19.0	57.1	20.6	0.0	22.2	20.6	3.0
	50세~59세	(39)	0.0	12.8	53.8	25.6	7.7	12.8	33.3	3.3
	60세 이상	(15)	0.0	6.7	26.7	60.0	6.7	6.7	66.7	3.7
수도권	수도권	(119)	2.5	21.8	45.4	26.1	4.2	24.4	30.3	3.1
	비수도권	(62)	3.2	6.5	59.7	27.4	3.2	9.7	30.6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7.7	11.5	57.7	15.4	7.7	19.2	23.1	3.0
	2~3년제 대학	(28)	0.0	25.0	46.4	28.6	0.0	25.0	28.6	3.0
	4년제 대학	(115)	1.7	15.7	50.4	27.8	4.3	17.4	32.2	3.2
	대학원 석사 이상	(12)	8.3	16.7	41.7	33.3	0.0	25.0	33.3	3.0
혼인상태	미혼	(101)	4.0	16.8	52.5	23.8	3.0	20.8	26.7	3.0
	기혼	(63)	0.0	20.6	49.2	25.4	4.8	20.6	30.2	3.1
	별거·사별·이혼·기타	(17)	5.9	0.0	41.2	47.1	5.9	5.9	52.9	3.5
가구원수	1명	(91)	4.4	16.5	48.4	26.4	4.4	20.9	30.8	3.1
	2명	(31)	3.2	19.4	51.6	22.6	3.2	22.6	25.8	3.0
	3명	(33)	0.0	21.2	48.5	27.3	3.0	21.2	30.3	3.1
	4명 이상	(26)	0.0	7.7	57.7	30.8	3.8	7.7	34.6	3.3
자녀수	0명	(116)	3.4	16.4	53.4	24.1	2.6	19.8	26.7	3.1
	1명	(37)	0.0	21.6	40.5	32.4	5.4	21.6	37.8	3.2
	2명 이상	(28)	3.6	10.7	50.0	28.6	7.1	14.3	35.7	3.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7.7	11.5	53.8	26.9	0.0	19.2	26.9	3.0
	200~300만원 미만	(63)	1.6	17.5	49.2	27.0	4.8	19.0	31.7	3.2
	300~400만원 미만	(52)	3.8	17.3	55.8	23.1	0.0	21.2	23.1	3.0
	400~500만원 미만	(26)	0.0	19.2	53.8	15.4	11.5	19.2	26.9	3.2
	500만원 이상	(14)	0.0	14.3	21.4	57.1	7.1	14.3	64.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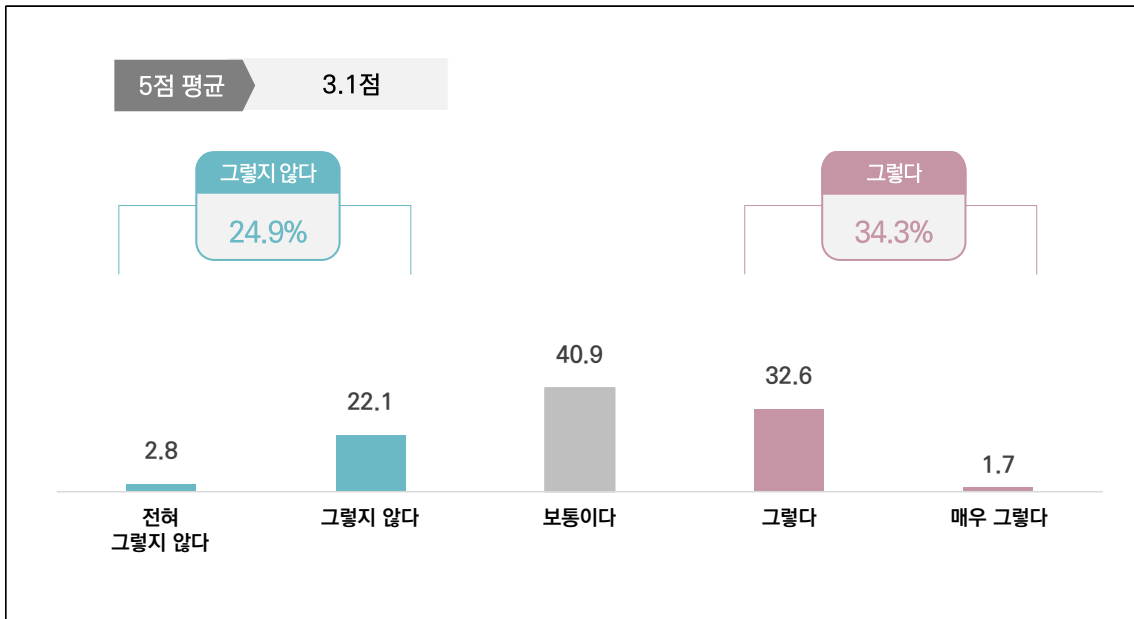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34.3%로 ‘그렇지 않다’(24.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38.7%, ‘여성’ 24.6%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23.1%, ‘30세~39세’ 33.3%, ‘40세~49세’ 33.3%, ‘50세~59세’ 38.5%, ‘60세 이상’ 4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32.8%, ‘비수도권’ 37.1%로 나타남

〈그림 III-2-39〉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0〉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2.8	22.1	40.9	32.6	1.7	24.9	34.3	3.1
성별	남성	(124)	1.6	22.6	37.1	37.1	1.6	24.2	38.7	3.1
	여성	(57)	5.3	21.1	49.1	22.8	1.8	26.3	24.6	2.9
연령	20세~29세	(13)	7.7	7.7	61.5	23.1	0.0	15.4	23.1	3.0
	30세~39세	(51)	3.9	19.6	43.1	33.3	0.0	23.5	33.3	3.1
	40세~49세	(63)	3.2	25.4	38.1	33.3	0.0	28.6	33.3	3.0
	50세~59세	(39)	0.0	30.8	30.8	33.3	5.1	30.8	38.5	3.1
	60세 이상	(15)	0.0	6.7	53.3	33.3	6.7	6.7	40.0	3.4
수도권	수도권	(119)	2.5	22.7	42.0	31.1	1.7	25.2	32.8	3.1
	비수도권	(62)	3.2	21.0	38.7	35.5	1.6	24.2	37.1	3.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7.7	30.8	26.9	30.8	3.8	38.5	34.6	2.9
	2~3년제 대학	(28)	3.6	28.6	32.1	32.1	3.6	32.1	35.7	3.0
	4년제 대학	(115)	1.7	17.4	47.8	32.2	0.9	19.1	33.0	3.1
	대학원 석사 이상	(12)	0.0	33.3	25.0	41.7	0.0	33.3	41.7	3.1
혼인상태	미혼	(101)	3.0	22.8	45.5	26.7	2.0	25.7	28.7	3.0
	기혼	(63)	1.6	25.4	33.3	39.7	0.0	27.0	39.7	3.1
	별거·사별·이혼·기타	(17)	5.9	5.9	41.2	41.2	5.9	11.8	47.1	3.4
가구원수	1명	(91)	3.3	20.9	44.0	29.7	2.2	24.2	31.9	3.1
	2명	(31)	3.2	22.6	58.1	16.1	0.0	25.8	16.1	2.9
	3명	(33)	3.0	24.2	21.2	48.5	3.0	27.3	51.5	3.2
	4명 이상	(26)	0.0	23.1	34.6	42.3	0.0	23.1	42.3	3.2
자녀수	0명	(116)	2.6	21.6	47.4	26.7	1.7	24.1	28.4	3.0
	1명	(37)	2.7	27.0	24.3	45.9	0.0	29.7	45.9	3.1
	2명 이상	(28)	3.6	17.9	35.7	39.3	3.6	21.4	42.9	3.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7.7	15.4	42.3	34.6	0.0	23.1	34.6	3.0
	200~300만원 미만	(63)	3.2	23.8	39.7	30.2	3.2	27.0	33.3	3.1
	300~400만원 미만	(52)	0.0	23.1	44.2	32.7	0.0	23.1	32.7	3.1
	400~500만원 미만	(26)	0.0	26.9	38.5	30.8	3.8	26.9	34.6	3.1
	500만원 이상	(14)	7.1	14.3	35.7	42.9	0.0	21.4	42.9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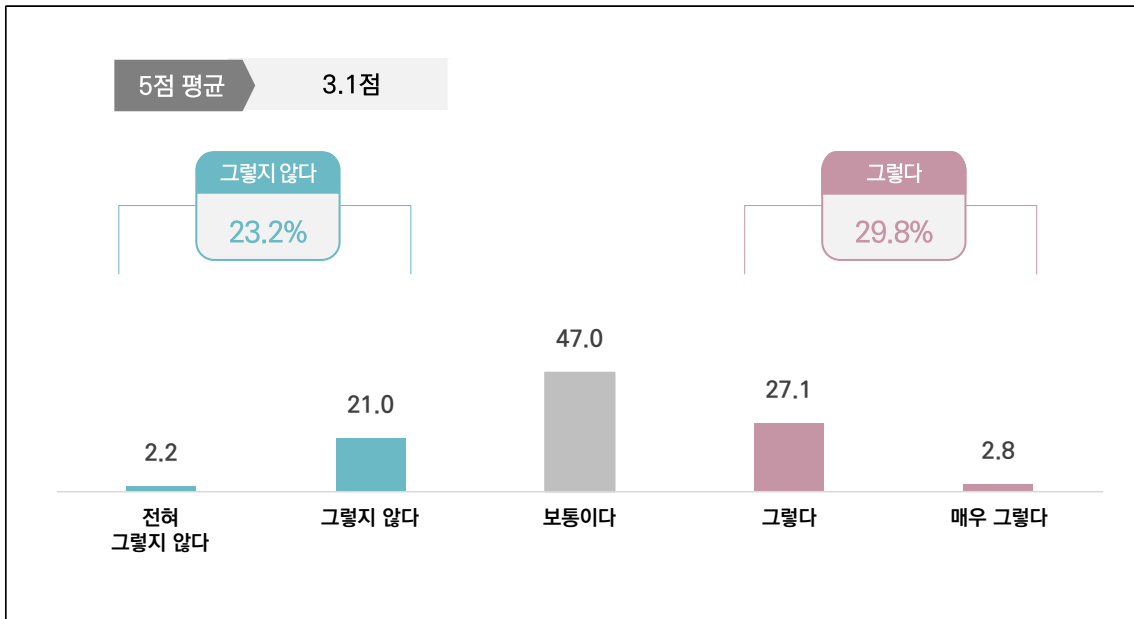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29.8%로 ‘그렇지 않다’(23.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31.5%, ‘여성’ 26.3%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46.2%, ‘30세~39세’ 27.5%, ‘40세~49세’ 27.0%, ‘50세~59세’ 30.8%, ‘60세 이상’ 33.3%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27.7%, ‘비수도권’ 33.9%로 나타남

〈그림 III-2-40〉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2.2	21.0	47.0	27.1	2.8	23.2	29.8	3.1
성별	남성	(124)	0.8	21.8	46.0	28.2	3.2	22.6	31.5	3.1
	여성	(57)	5.3	19.3	49.1	24.6	1.8	24.6	26.3	3.0
연령	20세~29세	(13)	0.0	15.4	38.5	38.5	7.7	15.4	46.2	3.4
	30세~39세	(51)	3.9	21.6	47.1	25.5	2.0	25.5	27.5	3.0
	40세~49세	(63)	3.2	22.2	47.6	25.4	1.6	25.4	27.0	3.0
	50세~59세	(39)	0.0	23.1	46.2	28.2	2.6	23.1	30.8	3.1
	60세 이상	(15)	0.0	13.3	53.3	26.7	6.7	13.3	33.3	3.3
수도권	수도권	(119)	2.5	23.5	46.2	25.2	2.5	26.1	27.7	3.0
	비수도권	(62)	1.6	16.1	48.4	30.6	3.2	17.7	33.9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7.7	11.5	50.0	30.8	0.0	19.2	30.8	3.0
	2~3년제 대학	(28)	3.6	17.9	53.6	21.4	3.6	21.4	25.0	3.0
	4년제 대학	(115)	0.0	22.6	46.1	27.8	3.5	22.6	31.3	3.1
	대학원 석사 이상	(12)	8.3	33.3	33.3	25.0	0.0	41.7	25.0	2.8
혼인상태	미혼	(101)	2.0	19.8	49.5	26.7	2.0	21.8	28.7	3.1
	기혼	(63)	1.6	25.4	41.3	27.0	4.8	27.0	31.7	3.1
	별거·사별·이혼·기타	(17)	5.9	11.8	52.9	29.4	0.0	17.6	29.4	3.1
가구원수	1명	(91)	2.2	16.5	53.8	26.4	1.1	18.7	27.5	3.1
	2명	(31)	3.2	35.5	35.5	19.4	6.5	38.7	25.8	2.9
	3명	(33)	3.0	21.2	45.5	30.3	0.0	24.2	30.3	3.0
	4명 이상	(26)	0.0	19.2	38.5	34.6	7.7	19.2	42.3	3.3
자녀수	0명	(116)	1.7	19.0	49.1	26.7	3.4	20.7	30.2	3.1
	1명	(37)	2.7	24.3	51.4	21.6	0.0	27.0	21.6	2.9
	2명 이상	(28)	3.6	25.0	32.1	35.7	3.6	28.6	39.3	3.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8	19.2	46.2	30.8	0.0	23.1	30.8	3.0
	200~300만원 미만	(63)	1.6	20.6	44.4	30.2	3.2	22.2	33.3	3.1
	300~400만원 미만	(52)	1.9	26.9	44.2	25.0	1.9	28.8	26.9	3.0
	400~500만원 미만	(26)	0.0	15.4	61.5	19.2	3.8	15.4	23.1	3.1
	500만원 이상	(14)	7.1	14.3	42.9	28.6	7.1	21.4	35.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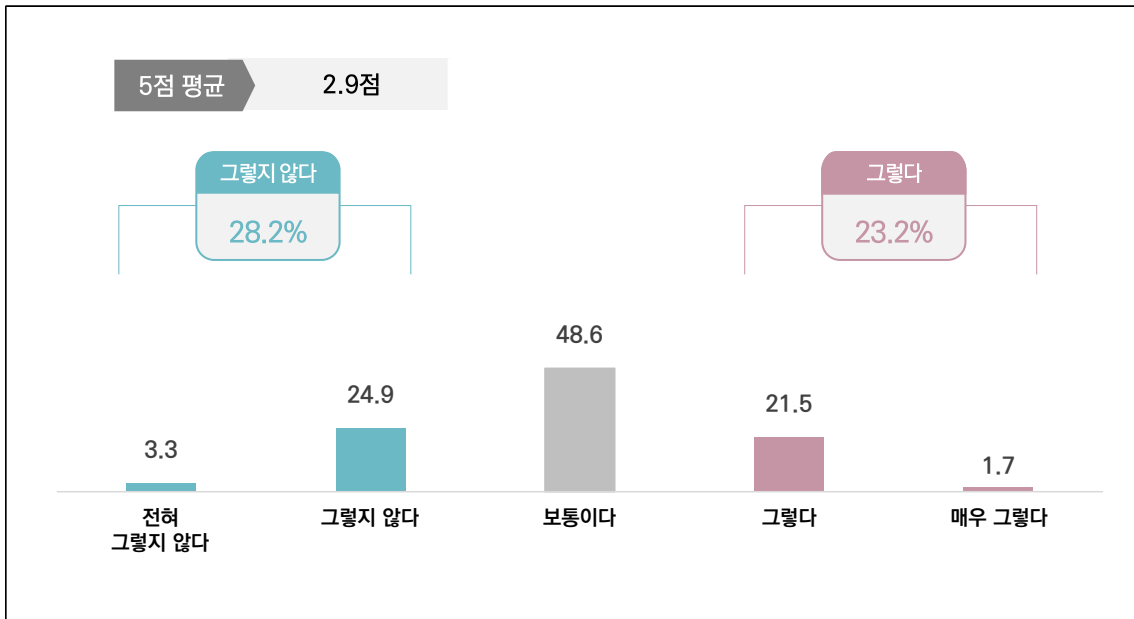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28.2%로 ‘그렇다’(23.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9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가 24.2%, ‘여성’ 36.8%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지 않다’가 15.4%, ‘30세~39세’ 31.4%, ‘40세~49세’ 27.0%, ‘50세~59세’ 33.3%, ‘60세 이상’ 2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가 30.3%, ‘비수도권’ 24.2%로 나타남

〈그림 III-2-4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3.3	24.9	48.6	21.5	1.7	28.2	23.2	2.9
성별	남성	(124)	2.4	21.8	50.8	22.6	2.4	24.2	25.0	3.0
	여성	(57)	5.3	31.6	43.9	19.3	0.0	36.8	19.3	2.8
연령	20세~29세	(13)	0.0	15.4	30.8	46.2	7.7	15.4	53.8	3.5
	30세~39세	(51)	3.9	27.5	49.0	19.6	0.0	31.4	19.6	2.8
	40세~49세	(63)	3.2	23.8	52.4	19.0	1.6	27.0	20.6	2.9
	50세~59세	(39)	5.1	28.2	38.5	28.2	0.0	33.3	28.2	2.9
	60세 이상	(15)	0.0	20.0	73.3	0.0	6.7	20.0	6.7	2.9
수도권	수도권	(119)	4.2	26.1	51.3	16.0	2.5	30.3	18.5	2.9
	비수도권	(62)	1.6	22.6	43.5	32.3	0.0	24.2	32.3	3.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7.7	19.2	46.2	23.1	3.8	26.9	26.9	3.0
	2~3년제 대학	(28)	3.6	42.9	32.1	21.4	0.0	46.4	21.4	2.7
	4년제 대학	(115)	1.7	21.7	51.3	23.5	1.7	23.5	25.2	3.0
	대학원 석사 이상	(12)	8.3	25.0	66.7	0.0	0.0	33.3	0.0	2.6
혼인상태	미혼	(101)	2.0	28.7	45.5	21.8	2.0	30.7	23.8	2.9
	기혼	(63)	4.8	22.2	50.8	20.6	1.6	27.0	22.2	2.9
	별거·사별·이혼·기타	(17)	5.9	11.8	58.8	23.5	0.0	17.6	23.5	3.0
가구원수	1명	(91)	3.3	22.0	45.1	27.5	2.2	25.3	29.7	3.0
	2명	(31)	3.2	41.9	45.2	9.7	0.0	45.2	9.7	2.6
	3명	(33)	6.1	21.2	57.6	15.2	0.0	27.3	15.2	2.8
	4명 이상	(26)	0.0	19.2	53.8	23.1	3.8	19.2	26.9	3.1
자녀수	0명	(116)	1.7	29.3	44.8	22.4	1.7	31.0	24.1	2.9
	1명	(37)	5.4	27.0	45.9	21.6	0.0	32.4	21.6	2.8
	2명 이상	(28)	7.1	3.6	67.9	17.9	3.6	10.7	21.4	3.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7.7	19.2	42.3	30.8	0.0	26.9	30.8	3.0
	200~300만원 미만	(63)	4.8	27.0	41.3	25.4	1.6	31.7	27.0	2.9
	300~400만원 미만	(52)	0.0	26.9	57.7	13.5	1.9	26.9	15.4	2.9
	400~500만원 미만	(26)	0.0	19.2	65.4	11.5	3.8	19.2	15.4	3.0
	500만원 이상	(14)	7.1	28.6	28.6	35.7	0.0	35.7	35.7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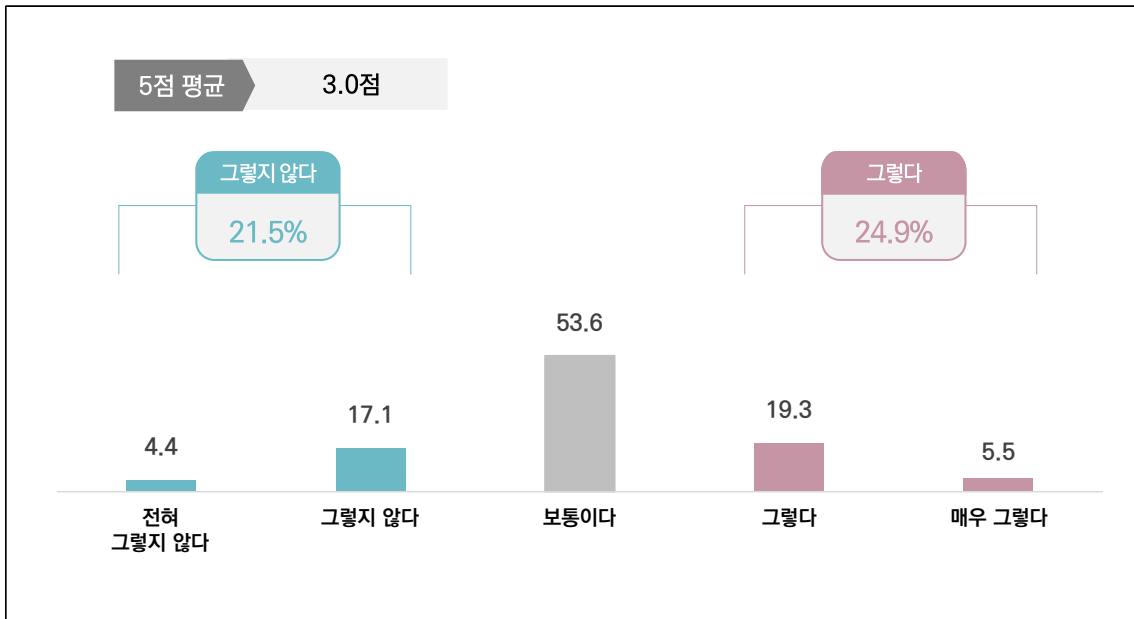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24.9%로 ‘그렇지 않다’(21.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26.6%, ‘여성’ 21.1%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53.8%, ‘30세~39세’ 27.5%, ‘40세~49세’ 14.3%, ‘50세~59세’ 25.6%, ‘60세 이상’ 33.3%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26.1%, ‘비수도권’ 22.6%로 나타남

〈그림 III-2-4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4.4	17.1	53.6	19.3	5.5	21.5	24.9	3.0
성별	남성	(124)	4.8	16.1	52.4	20.2	6.5	21.0	26.6	3.1
	여성	(57)	3.5	19.3	56.1	17.5	3.5	22.8	21.1	3.0
연령	20세~29세	(13)	0.0	7.7	38.5	38.5	15.4	7.7	53.8	3.6
	30세~39세	(51)	3.9	21.6	47.1	21.6	5.9	25.5	27.5	3.0
	40세~49세	(63)	7.9	14.3	63.5	11.1	3.2	22.2	14.3	2.9
	50세~59세	(39)	2.6	20.5	51.3	17.9	7.7	23.1	25.6	3.1
	60세 이상	(15)	0.0	13.3	53.3	33.3	0.0	13.3	33.3	3.2
수도권	수도권	(119)	6.7	16.0	51.3	18.5	7.6	22.7	26.1	3.0
	비수도권	(62)	0.0	19.4	58.1	21.0	1.6	19.4	22.6	3.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7.7	23.1	57.7	11.5	0.0	30.8	11.5	2.7
	2~3년제 대학	(28)	7.1	28.6	42.9	17.9	3.6	35.7	21.4	2.8
	4년제 대학	(115)	3.5	12.2	55.7	20.9	7.8	15.7	28.7	3.2
	대학원 석사 이상	(12)	0.0	25.0	50.0	25.0	0.0	25.0	25.0	3.0
혼인상태	미혼	(101)	5.0	16.8	57.4	13.9	6.9	21.8	20.8	3.0
	기혼	(63)	4.8	17.5	52.4	20.6	4.8	22.2	25.4	3.0
	별거·사별·이혼·기타	(17)	0.0	17.6	35.3	47.1	0.0	17.6	47.1	3.3
가구원수	1명	(91)	4.4	15.4	57.1	16.5	6.6	19.8	23.1	3.1
	2명	(31)	6.5	29.0	41.9	22.6	0.0	35.5	22.6	2.8
	3명	(33)	6.1	15.2	54.5	15.2	9.1	21.2	24.2	3.1
	4명 이상	(26)	0.0	11.5	53.8	30.8	3.8	11.5	34.6	3.3
자녀수	0명	(116)	4.3	18.1	55.2	16.4	6.0	22.4	22.4	3.0
	1명	(37)	5.4	18.9	56.8	10.8	8.1	24.3	18.9	3.0
	2명 이상	(28)	3.6	10.7	42.9	42.9	0.0	14.3	42.9	3.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8	19.2	65.4	11.5	0.0	23.1	11.5	2.8
	200~300만원 미만	(63)	3.2	17.5	55.6	15.9	7.9	20.6	23.8	3.1
	300~400만원 미만	(52)	3.8	15.4	53.8	21.2	5.8	19.2	26.9	3.1
	400~500만원 미만	(26)	7.7	19.2	42.3	26.9	3.8	26.9	30.8	3.0
	500만원 이상	(14)	7.1	14.3	42.9	28.6	7.1	21.4	35.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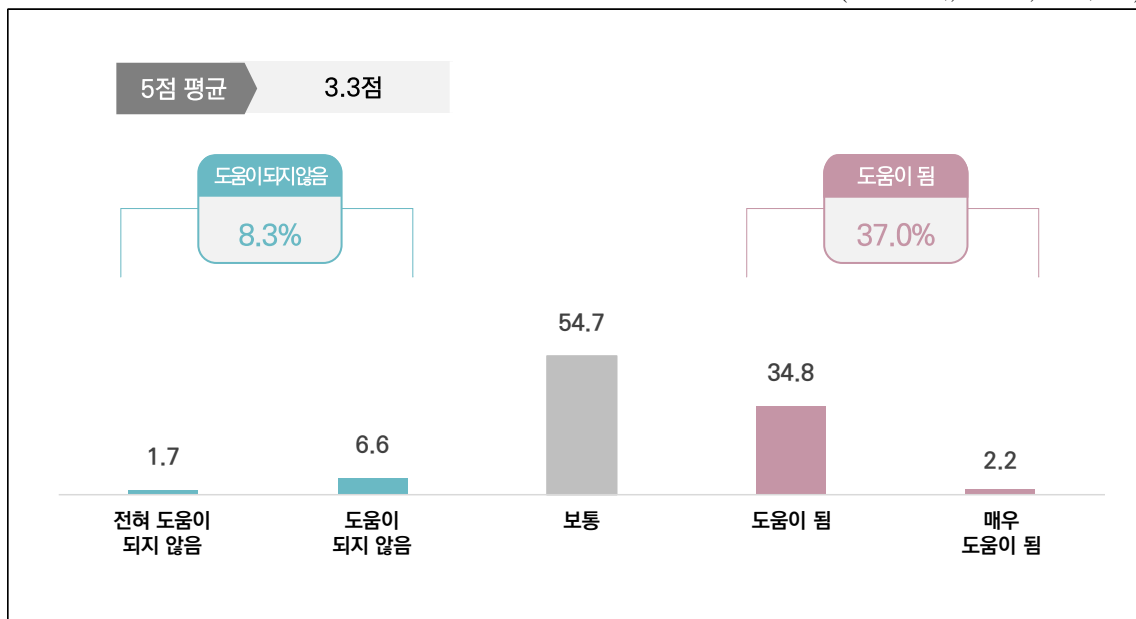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8)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됨’(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37.0%로 ‘도움이 되지 않음’(8.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이 됨’이 38.7%, ‘여성’ 33.3%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도움이 됨’이 53.8%, ‘30세~39세’ 35.3%, ‘40세~49세’ 28.6%, ‘50세~59세’ 41.0%, ‘60세 이상’ 53.3%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도움이 됨’이 36.1%, ‘비수도권’ 38.7%로 나타남

〈그림 III-2-43〉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4〉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1.7	6.6	54.7	34.8	2.2	8.3	37.0	3.3
성별	남성	(124)	1.6	7.3	52.4	35.5	3.2	8.9	38.7	3.3
	여성	(57)	1.8	5.3	59.6	33.3	0.0	7.0	33.3	3.2
연령	20세~29세	(13)	7.7	0.0	38.5	53.8	0.0	7.7	53.8	3.4
	30세~39세	(51)	2.0	7.8	54.9	33.3	2.0	9.8	35.3	3.3
	40세~49세	(63)	0.0	7.9	63.5	28.6	0.0	7.9	28.6	3.2
	50세~59세	(39)	2.6	7.7	48.7	33.3	7.7	10.3	41.0	3.4
	60세 이상	(15)	0.0	0.0	46.7	53.3	0.0	0.0	53.3	3.5
수도권	수도권	(119)	0.8	8.4	54.6	34.5	1.7	9.2	36.1	3.3
	비수도권	(62)	3.2	3.2	54.8	35.5	3.2	6.5	38.7	3.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3.8	7.7	57.7	30.8	0.0	11.5	30.8	3.2
	2~3년제 대학	(28)	0.0	7.1	57.1	35.7	0.0	7.1	35.7	3.3
	4년제 대학	(115)	0.9	5.2	54.8	35.7	3.5	6.1	39.1	3.4
	대학원 석사 이상	(12)	8.3	16.7	41.7	33.3	0.0	25.0	33.3	3.0
혼인상태	미혼	(101)	2.0	8.9	54.5	30.7	4.0	10.9	34.7	3.3
	기혼	(63)	0.0	4.8	55.6	39.7	0.0	4.8	39.7	3.3
	별거·사별·이혼·기타	(17)	5.9	0.0	52.9	41.2	0.0	5.9	41.2	3.3
가구원수	1명	(91)	3.3	6.6	56.0	29.7	4.4	9.9	34.1	3.3
	2명	(31)	0.0	16.1	45.2	38.7	0.0	16.1	38.7	3.2
	3명	(33)	0.0	3.0	54.5	42.4	0.0	3.0	42.4	3.4
	4명 이상	(26)	0.0	0.0	61.5	38.5	0.0	0.0	38.5	3.4
자녀수	0명	(116)	1.7	9.5	52.6	32.8	3.4	11.2	36.2	3.3
	1명	(37)	2.7	2.7	56.8	37.8	0.0	5.4	37.8	3.3
	2명 이상	(28)	0.0	0.0	60.7	39.3	0.0	0.0	39.3	3.4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8	7.7	61.5	26.9	0.0	11.5	26.9	3.1
	200~300만원 미만	(63)	1.6	7.9	54.0	30.2	6.3	9.5	36.5	3.3
	300~400만원 미만	(52)	0.0	5.8	50.0	44.2	0.0	5.8	44.2	3.4
	400~500만원 미만	(26)	3.8	3.8	61.5	30.8	0.0	7.7	30.8	3.2
	500만원 이상	(14)	0.0	7.1	50.0	42.9	0.0	7.1	42.9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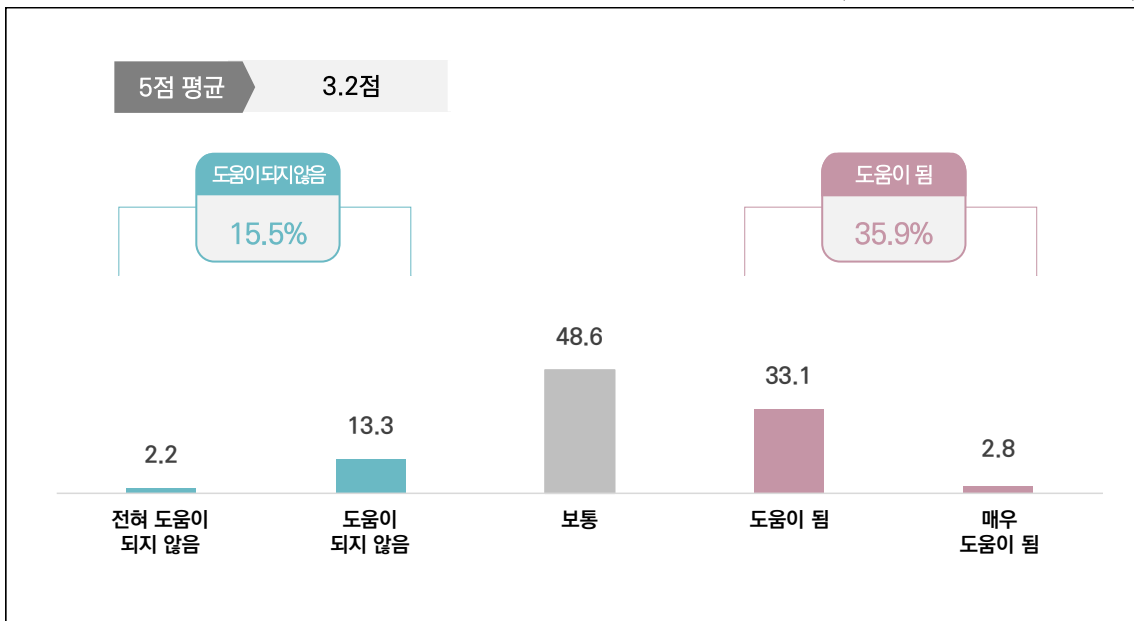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 ‘연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른 제도 활용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됨’(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35.9%로 ‘도움이 되지 않음’(15.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이 됨’이 37.9%, ‘여성’ 31.6%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도움이 됨’이 46.2%, ‘30세~39세’ 35.3%, ‘40세~49세’ 28.6%, ‘50세~59세’ 38.5%, ‘60세 이상’ 53.3%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도움이 됨’이 35.3%, ‘비수도권’ 37.1%로 나타남

〈그림 III-2-44〉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5〉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2.2	13.3	48.6	33.1	2.8	15.5	35.9	3.2
성별	남성	(124)	2.4	13.7	46.0	35.5	2.4	16.1	37.9	3.2
	여성	(57)	1.8	12.3	54.4	28.1	3.5	14.0	31.6	3.2
연령	20세~29세	(13)	7.7	7.7	38.5	46.2	0.0	15.4	46.2	3.2
	30세~39세	(51)	0.0	13.7	51.0	33.3	2.0	13.7	35.3	3.2
	40세~49세	(63)	1.6	15.9	54.0	27.0	1.6	17.5	28.6	3.1
	50세~59세	(39)	5.1	10.3	46.2	30.8	7.7	15.4	38.5	3.3
	60세 이상	(15)	0.0	13.3	33.3	53.3	0.0	13.3	53.3	3.4
수도권	수도권	(119)	0.8	15.1	48.7	32.8	2.5	16.0	35.3	3.2
	비수도권	(62)	4.8	9.7	48.4	33.9	3.2	14.5	37.1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3.8	7.7	69.2	19.2	0.0	11.5	19.2	3.0
	2~3년제 대학	(28)	3.6	17.9	35.7	42.9	0.0	21.4	42.9	3.2
	4년제 대학	(115)	1.7	13.0	45.2	35.7	4.3	14.8	40.0	3.3
	대학원 석사 이상	(12)	0.0	16.7	66.7	16.7	0.0	16.7	16.7	3.0
혼인상태	미혼	(101)	1.0	13.9	49.5	32.7	3.0	14.9	35.6	3.2
	기혼	(63)	3.2	14.3	44.4	34.9	3.2	17.5	38.1	3.2
	별거·사별·이혼·기타	(17)	5.9	5.9	58.8	29.4	0.0	11.8	29.4	3.1
가구원수	1명	(91)	2.2	9.9	51.6	34.1	2.2	12.1	36.3	3.2
	2명	(31)	3.2	19.4	48.4	25.8	3.2	22.6	29.0	3.1
	3명	(33)	3.0	15.2	42.4	36.4	3.0	18.2	39.4	3.2
	4명 이상	(26)	0.0	15.4	46.2	34.6	3.8	15.4	38.5	3.3
자녀수	0명	(116)	1.7	14.7	47.4	32.8	3.4	16.4	36.2	3.2
	1명	(37)	5.4	13.5	43.2	35.1	2.7	18.9	37.8	3.2
	2명 이상	(28)	0.0	7.1	60.7	32.1	0.0	7.1	32.1	3.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8	15.4	46.2	34.6	0.0	19.2	34.6	3.1
	200~300만원 미만	(63)	1.6	9.5	49.2	33.3	6.3	11.1	39.7	3.3
	300~400만원 미만	(52)	0.0	19.2	50.0	30.8	0.0	19.2	30.8	3.1
	400~500만원 미만	(26)	3.8	7.7	46.2	42.3	0.0	11.5	42.3	3.3
	500만원 이상	(14)	7.1	14.3	50.0	21.4	7.1	21.4	28.6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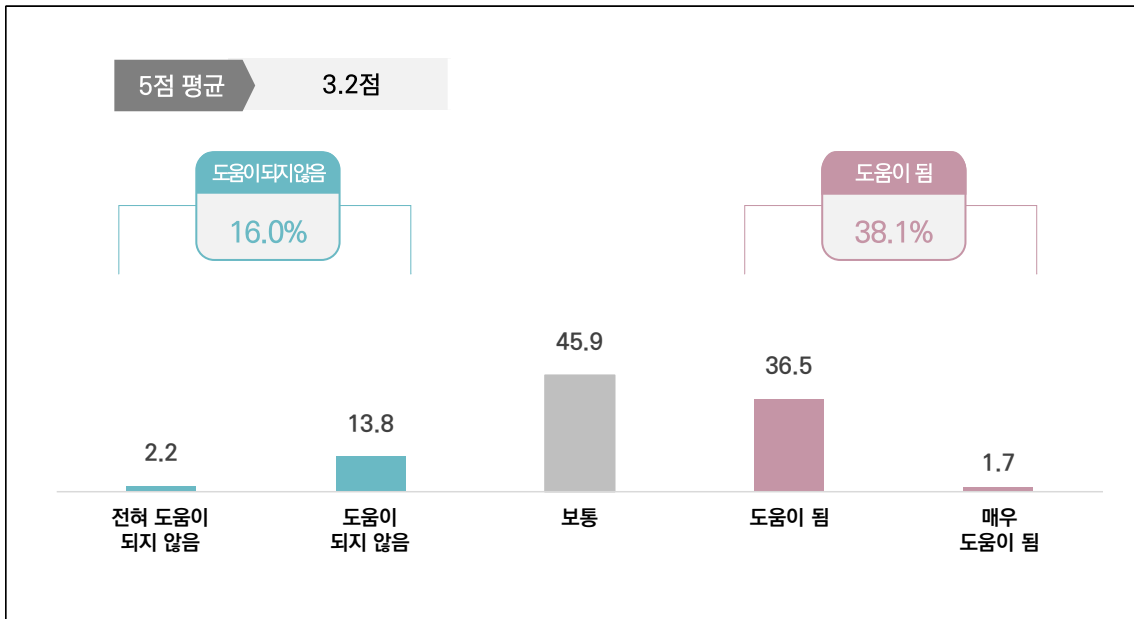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0)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됨’ (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38.1%로 ‘도움이 되지 않음’(16.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이 됨’이 40.3%, ‘여성’ 33.3%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도움이 됨’이 69.2%, ‘30세~39세’ 43.1%, ‘40세~49세’ 27.0%, ‘50세~59세’ 30.8%, ‘60세 이상’ 6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도움이 됨’이 36.1%, ‘비수도권’ 41.9%로 나타남

〈그림 III-2-45〉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6〉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2.2	13.8	45.9	36.5	1.7	16.0	38.1	3.2
성별	남성	(124)	1.6	12.9	45.2	37.9	2.4	14.5	40.3	3.3
	여성	(57)	3.5	15.8	47.4	33.3	0.0	19.3	33.3	3.1
연령	20세~29세	(13)	7.7	0.0	23.1	61.5	7.7	7.7	69.2	3.6
	30세~39세	(51)	0.0	13.7	43.1	41.2	2.0	13.7	43.1	3.3
	40세~49세	(63)	3.2	14.3	55.6	27.0	0.0	17.5	27.0	3.1
	50세~59세	(39)	2.6	20.5	46.2	28.2	2.6	23.1	30.8	3.1
	60세 이상	(15)	0.0	6.7	33.3	60.0	0.0	6.7	60.0	3.5
수도권	수도권	(119)	0.8	16.8	46.2	33.6	2.5	17.6	36.1	3.2
	비수도권	(62)	4.8	8.1	45.2	41.9	0.0	12.9	41.9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3.8	11.5	46.2	34.6	3.8	15.4	38.5	3.2
	2~3년제 대학	(28)	3.6	14.3	39.3	42.9	0.0	17.9	42.9	3.2
	4년제 대학	(115)	1.7	13.9	47.8	34.8	1.7	15.7	36.5	3.2
	대학원 석사 이상	(12)	0.0	16.7	41.7	41.7	0.0	16.7	41.7	3.3
혼인상태	미혼	(101)	1.0	14.9	46.5	34.7	3.0	15.8	37.6	3.2
	기혼	(63)	3.2	11.1	44.4	41.3	0.0	14.3	41.3	3.2
	별거·사별·이혼·기타	(17)	5.9	17.6	47.1	29.4	0.0	23.5	29.4	3.0
가구원수	1명	(91)	2.2	11.0	50.5	34.1	2.2	13.2	36.3	3.2
	2명	(31)	3.2	25.8	22.6	48.4	0.0	29.0	48.4	3.2
	3명	(33)	3.0	21.2	39.4	33.3	3.0	24.2	36.4	3.1
	4명 이상	(26)	0.0	0.0	65.4	34.6	0.0	0.0	34.6	3.3
자녀수	0명	(116)	1.7	13.8	44.8	37.1	2.6	15.5	39.7	3.3
	1명	(37)	5.4	18.9	40.5	35.1	0.0	24.3	35.1	3.1
	2명 이상	(28)	0.0	7.1	57.1	35.7	0.0	7.1	35.7	3.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7.7	19.2	42.3	30.8	0.0	26.9	30.8	3.0
	200~300만원 미만	(63)	1.6	12.7	46.0	34.9	4.8	14.3	39.7	3.3
	300~400만원 미만	(52)	0.0	13.5	46.2	40.4	0.0	13.5	40.4	3.3
	400~500만원 미만	(26)	3.8	7.7	50.0	38.5	0.0	11.5	38.5	3.2
	500만원 이상	(14)	0.0	21.4	42.9	35.7	0.0	21.4	35.7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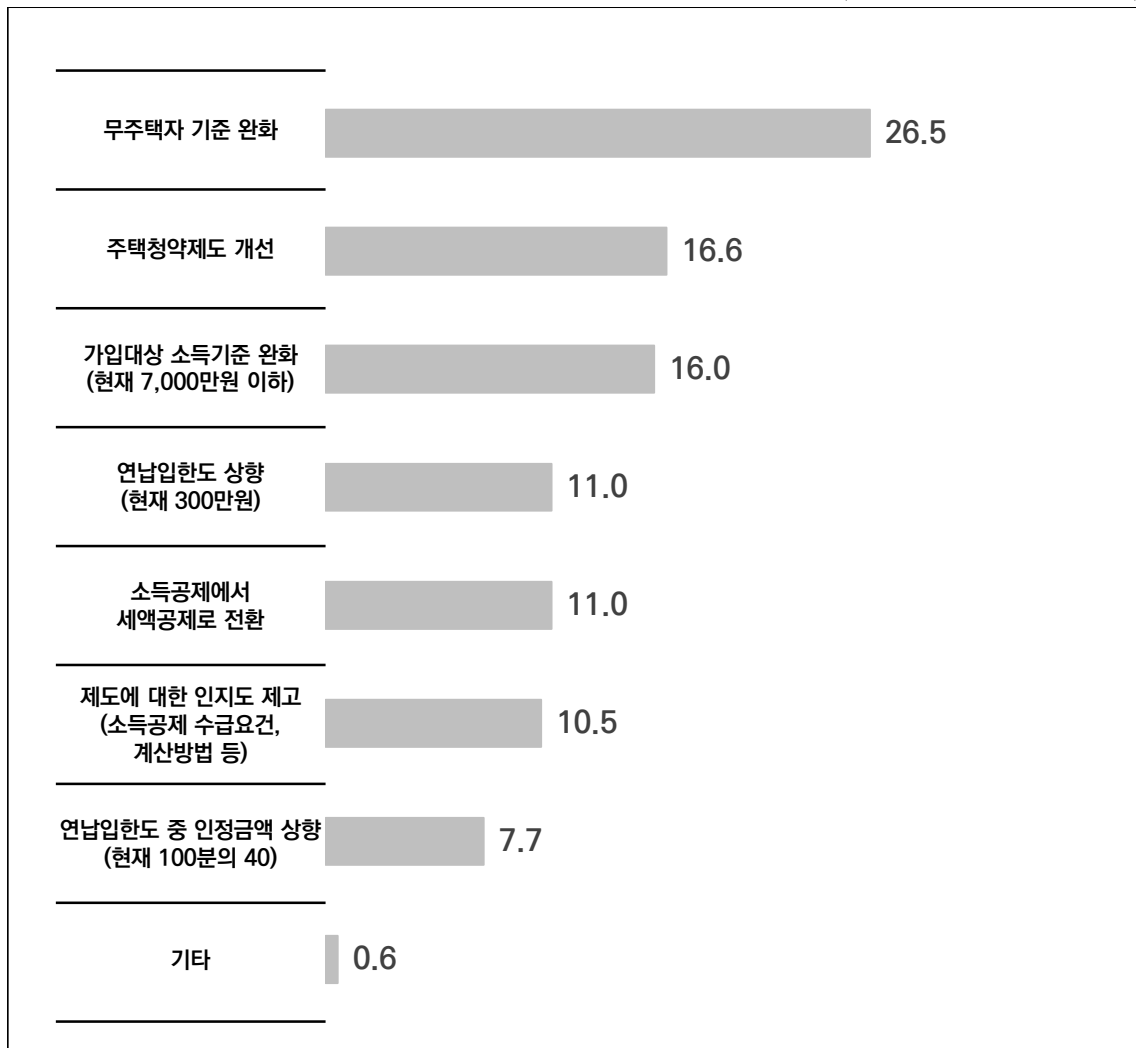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1)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26.5%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남성’ 25.0%, ‘여성’ 29.8%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20세~29세’ 15.4%, ‘30세~39세’ 15.7%, ‘40세~49세’ 31.7%, ‘50세~59세’ 23.1%, ‘60세 이상’ 60.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수도권’ 25.2%, ‘비수도권’ 29.0%로 나타남

〈그림 III-2-46〉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7〉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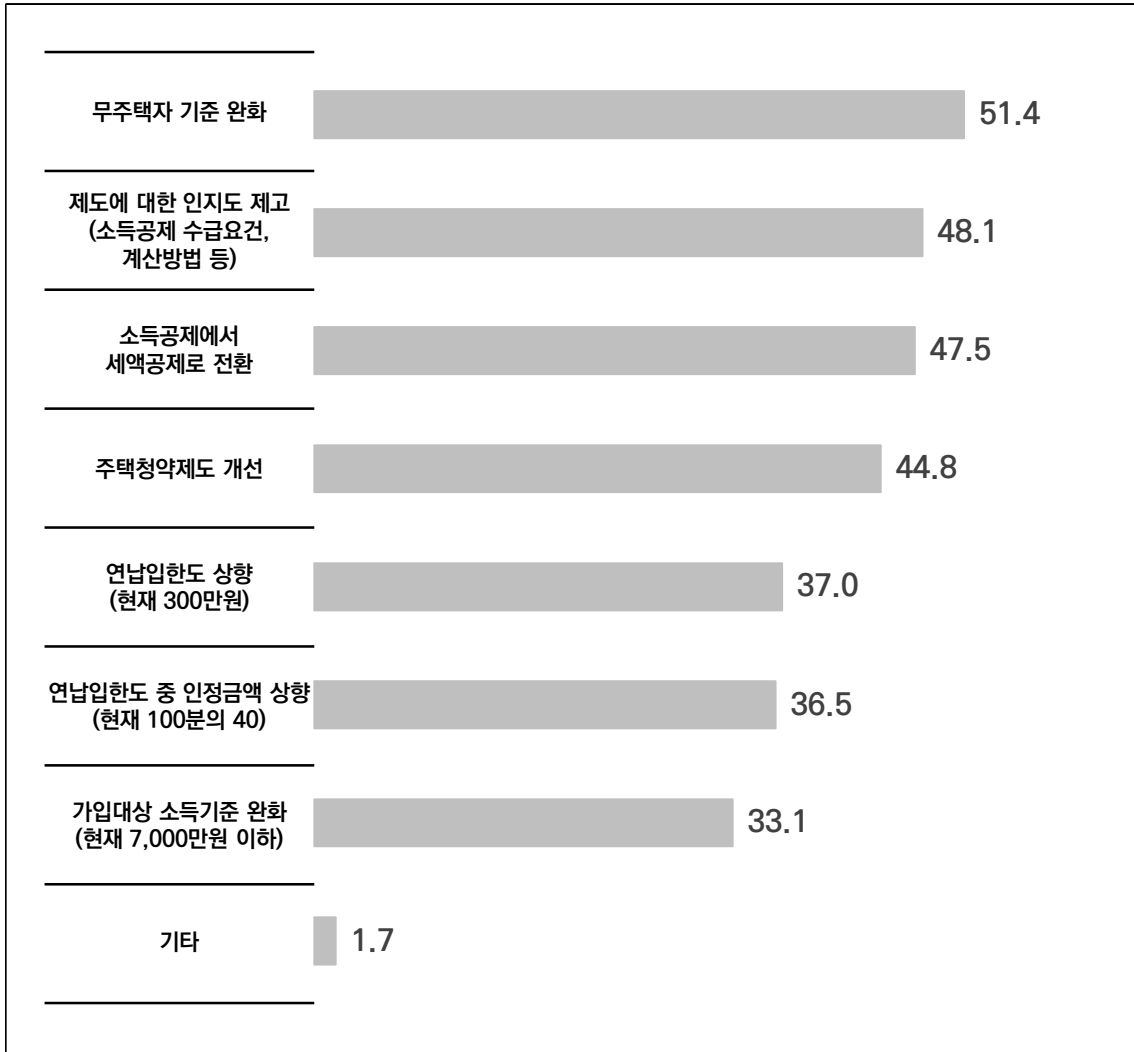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26.5	16.6	16.0	11.0	11.0	10.5	7.7	0.6
성별	남성	(124)	25.0	16.1	16.1	10.5	11.3	10.5	9.7	0.8
	여성	(57)	29.8	17.5	15.8	12.3	10.5	10.5	3.5	0.0
연령	20세~29세	(13)	15.4	15.4	23.1	7.7	23.1	7.7	7.7	0.0
	30세~39세	(51)	15.7	21.6	19.6	19.6	9.8	3.9	9.8	0.0
	40세~49세	(63)	31.7	15.9	14.3	7.9	11.1	12.7	6.3	0.0
	50세~59세	(39)	23.1	17.9	15.4	10.3	7.7	15.4	7.7	2.6
	60세 이상	(15)	60.0	0.0	6.7	0.0	13.3	13.3	6.7	0.0
수도권	수도권	(119)	25.2	16.0	15.1	12.6	11.8	9.2	9.2	0.8
	비수도권	(62)	29.0	17.7	17.7	8.1	9.7	12.9	4.8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19.2	23.1	30.8	7.7	3.8	11.5	3.8	0.0
	2~3년제 대학	(28)	28.6	21.4	17.9	14.3	3.6	0.0	10.7	3.6
	4년제 대학	(115)	27.8	13.9	13.9	12.2	13.9	10.4	7.8	0.0
	대학원 석사 이상	(12)	25.0	16.7	0.0	0.0	16.7	33.3	8.3	0.0
혼인상태	미혼	(101)	21.8	20.8	13.9	13.9	7.9	11.9	8.9	1.0
	기혼	(63)	28.6	12.7	19.0	9.5	17.5	7.9	4.8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7)	47.1	5.9	17.6	0.0	5.9	11.8	11.8	0.0
가구원수	1명	(91)	23.1	17.6	14.3	15.4	8.8	11.0	8.8	1.1
	2명	(31)	25.8	12.9	25.8	6.5	9.7	12.9	6.5	0.0
	3명	(33)	27.3	15.2	12.1	6.1	15.2	15.2	9.1	0.0
	4명 이상	(26)	38.5	19.2	15.4	7.7	15.4	0.0	3.8	0.0
자녀수	0명	(116)	22.4	19.0	18.1	12.1	8.6	10.3	8.6	0.9
	1명	(37)	27.0	10.8	10.8	5.4	16.2	18.9	10.8	0.0
	2명 이상	(28)	42.9	14.3	14.3	14.3	14.3	0.0	0.0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30.8	19.2	11.5	3.8	7.7	19.2	7.7	0.0
	200~300만원 미만	(63)	22.2	17.5	17.5	11.1	9.5	12.7	7.9	1.6
	300~400만원 미만	(52)	30.8	13.5	15.4	9.6	9.6	9.6	11.5	0.0
	400~500만원 미만	(26)	19.2	15.4	23.1	15.4	19.2	3.8	3.8	0.0
	500만원 이상	(14)	35.7	21.4	7.1	21.4	14.3	0.0	0.0	0.0
수급여부	수급	(9)	33.3	0.0	22.2	0.0	11.1	22.2	11.1	0.0
	비수급	(172)	26.2	17.4	15.7	11.6	11.0	9.9	7.6	0.6

- ① 무주택자 기준 완화
 - ② 주택청약제도 개선
 - ③ 가입대상 소득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 완화
 - ④ 연납입한도(현재 300만원) 상향
 - 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⑥ 제도에 대한 인지도(소득공제 수급요건, 계산방법 등) 제고
 - ⑦ 연납입한도 중 인정금액(현재 100분의 40) 상향
 - ⑧ 기타: 소득기준을 더 낮춰야함, 서울 경기권 부동산가격 원상복귀, 중도에 저축액 다방면 실질 활용 방안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그림 III-2-47〉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base 전체, n=181, 단위: %)



〈표 III-2-48〉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base 전체, n=18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정책대상자+비수급자)		(181)	51.4	48.1	47.5	44.8	37.0	36.5	33.1	1.7
성별	남성	(124)	51.6	46.8	46.8	45.2	34.7	40.3	32.3	2.4
	여성	(57)	50.9	50.9	49.1	43.9	42.1	28.1	35.1	0.0
연령	20세~29세	(13)	38.5	30.8	53.8	46.2	30.8	61.5	38.5	0.0
	30세~39세	(51)	41.2	45.1	52.9	39.2	51.0	41.2	29.4	0.0
	40세~49세	(63)	52.4	46.0	49.2	42.9	36.5	34.9	38.1	0.0
	50세~59세	(39)	59.0	53.8	43.6	59.0	25.6	25.6	28.2	5.1
	60세 이상	(15)	73.3	66.7	26.7	33.3	26.7	33.3	33.3	6.7
수도권	수도권	(119)	51.3	45.4	47.9	43.7	37.8	36.1	35.3	2.5
	비수도권	(62)	51.6	53.2	46.8	46.8	35.5	37.1	29.0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6)	46.2	53.8	46.2	50.0	34.6	26.9	38.5	3.8
	2~3년제 대학	(28)	50.0	42.9	53.6	64.3	21.4	39.3	25.0	3.6
	4년제 대학	(115)	52.2	47.8	47.0	39.1	42.6	38.3	32.2	0.9
	대학원 석사 이상	(12)	58.3	50.0	41.7	41.7	25.0	33.3	50.0	0.0
혼인상태	미혼	(101)	44.6	46.5	47.5	48.5	40.6	37.6	33.7	1.0
	기혼	(63)	55.6	44.4	54.0	39.7	38.1	34.9	30.2	3.2
	별거·사별·이혼·기타	(17)	76.5	70.6	23.5	41.2	11.8	35.3	41.2	0.0
가구원수	1명	(91)	47.3	51.6	44.0	45.1	38.5	37.4	35.2	1.1
	2명	(31)	45.2	48.4	64.5	51.6	29.0	29.0	29.0	3.2
	3명	(33)	60.6	51.5	51.5	42.4	33.3	33.3	24.2	3.0
	4명 이상	(26)	61.5	30.8	34.6	38.5	46.2	46.2	42.3	0.0
자녀수	0명	(116)	45.7	45.7	48.3	48.3	37.9	37.9	35.3	0.9
	1명	(37)	54.1	64.9	54.1	40.5	29.7	29.7	21.6	5.4
	2명 이상	(28)	71.4	35.7	35.7	35.7	42.9	39.3	39.3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6)	61.5	73.1	46.2	42.3	19.2	38.5	19.2	0.0
	200~300만원 미만	(63)	42.9	47.6	54.0	46.0	39.7	28.6	39.7	1.6
	300~400만원 미만	(52)	55.8	44.2	42.3	48.1	30.8	44.2	32.7	1.9
	400~500만원 미만	(26)	53.8	26.9	46.2	42.3	57.7	38.5	34.6	0.0
	500만원 이상	(14)	50.0	57.1	42.9	35.7	42.9	35.7	28.6	7.1
수급여부	수급	(9)	55.6	77.8	22.2	55.6	0.0	55.6	33.3	0.0
	비수급	(172)	51.2	46.5	48.8	44.2	39.0	35.5	33.1	1.7

① 무주택자 기준 완화

② 제도에 대한 인지도(소득공제 수급요건, 계산방법 등) 제고

③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④ 주택청약제도 개선

⑤ 연납입한도(현재 300만원) 상향

⑥ 연납입한도 중 인정금액(현재 100분의 40) 상향

⑦ 가입대상 소득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 완화

⑧ 기타: 소득기준을 더 낮춰야함, 서울 경기권 부동산가격 원상복귀, 중도에 저축액 다방면 실질 활용 방안 등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IV. 정책비대상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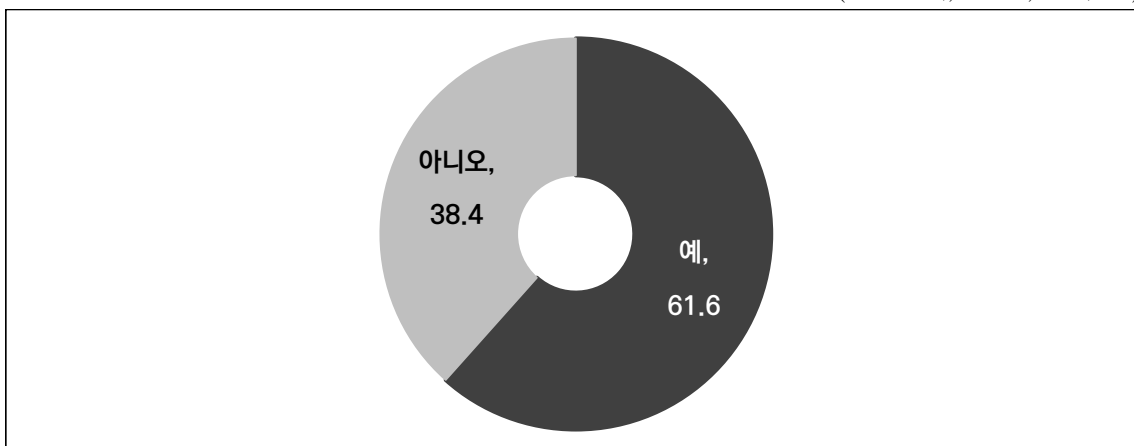
1. 응답자 특성

1) 2024년 기준 세대주 여부

- 2024년 기준 세대주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 중 61.6%가 ‘세대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81.3%)의 세대주 비율이 ‘여성’(35.3%)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77.8%)에서 세대주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비수도권’(64.7%)의 세대주 비율이 ‘수도권’(59.8%)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 2024년 기준 세대주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1〉 2024년 기준 세대주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예(세대주)	아니오(세대원)
전 체		(550)	61.6	38.4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61.9	38.1
	가입	(319)	61.4	38.6
성별	남성	(315)	81.3	18.7
	여성	(235)	35.3	64.7
연령	20세~29세	(37)	45.9	54.1
	30세~39세	(106)	48.1	51.9
	40세~49세	(158)	61.4	38.6
	50세~59세	(141)	63.8	36.2
	60세 이상	(108)	77.8	22.2
수도권	수도권	(346)	59.8	40.2
	비수도권	(204)	64.7	35.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57.1	42.9
	2~3년제 대학	(62)	40.3	59.7
	4년제 대학	(359)	62.4	37.6
	대학원 석사 이상	(66)	81.8	18.2
혼인상태	미혼	(173)	48.6	51.4
	기혼	(356)	66.3	33.7
	별거·사별·이혼·기타	(21)	90.5	9.5
가구원수	1명	(71)	84.5	15.5
	2명	(114)	60.5	39.5
	3명	(189)	59.3	40.7
	4명 이상	(176)	55.7	44.3
자녀수	0명	(215)	50.7	49.3
	1명	(137)	72.3	27.7
	2명 이상	(198)	66.2	33.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33.1	66.9
	200~300만원 미만	(90)	36.7	63.3
	300~400만원 미만	(96)	65.6	34.4
	400~500만원 미만	(85)	75.3	24.7
	500만원 이상	(158)	88.0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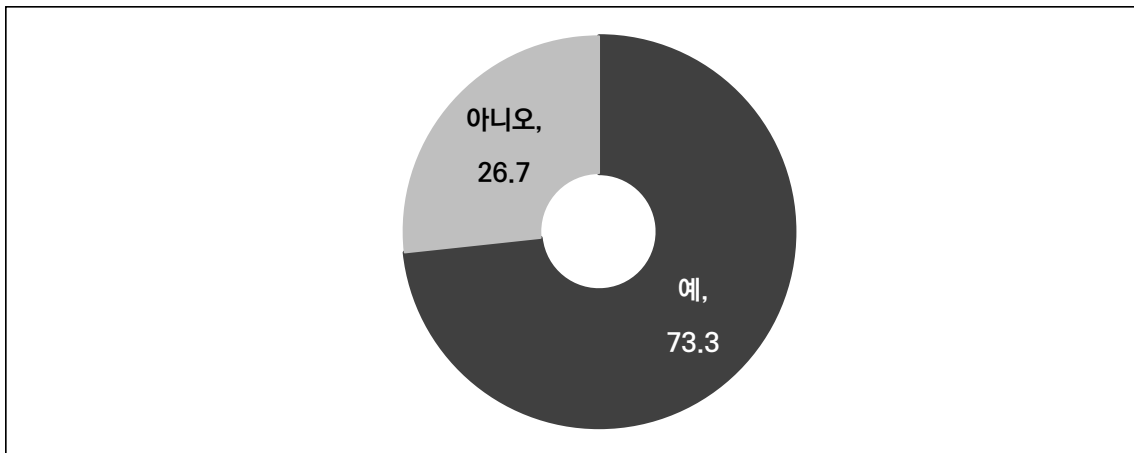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2024년 기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 소유 유무

- 2024년 기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 소유 유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 중 73.3%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7.5%)이 ‘여성’(67.7%)에 비해 주택 소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60세 이상’(90.7%)에서 주택 소유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비수도권’(81.9%)이 ‘수도권’(68.2%)에 비해 주택 소유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 2024년 기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 소유 유무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2〉 2024년 기준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 소유 유무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예(유주택자)	아니오(무주택자)
전체	(550)	73.3	26.7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75.3	24.7
가입	(319)	71.8	28.2
성별			
남성	(315)	77.5	22.5
여성	(235)	67.7	32.3
연령			
20세~29세	(37)	43.2	56.8
30세~39세	(106)	56.6	43.4
40세~49세	(158)	74.7	25.3
50세~59세	(141)	78.7	21.3
60세 이상	(108)	90.7	9.3
수도권			
수도권	(346)	68.2	31.8
비수도권	(204)	81.9	18.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63.5	36.5
2~3년제 대학	(62)	54.8	45.2
4년제 대학	(359)	75.8	24.2
대학원 석사 이상	(66)	86.4	13.6
혼인상태			
미혼	(173)	50.3	49.7
기혼	(356)	84.0	16.0
별거·사별·이혼·기타	(21)	81.0	19.0
가구원수			
1명	(71)	56.3	43.7
2명	(114)	78.1	21.9
3명	(189)	78.3	21.7
4명 이상	(176)	71.6	28.4
자녀수			
0명	(215)	53.5	46.5
1명	(137)	87.6	12.4
2명 이상	(198)	84.8	15.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52.9	47.1
200~300만원 미만	(90)	58.9	41.1
300~400만원 미만	(96)	80.2	19.8
400~500만원 미만	(85)	83.5	16.5
500만원 이상	(158)	87.3	1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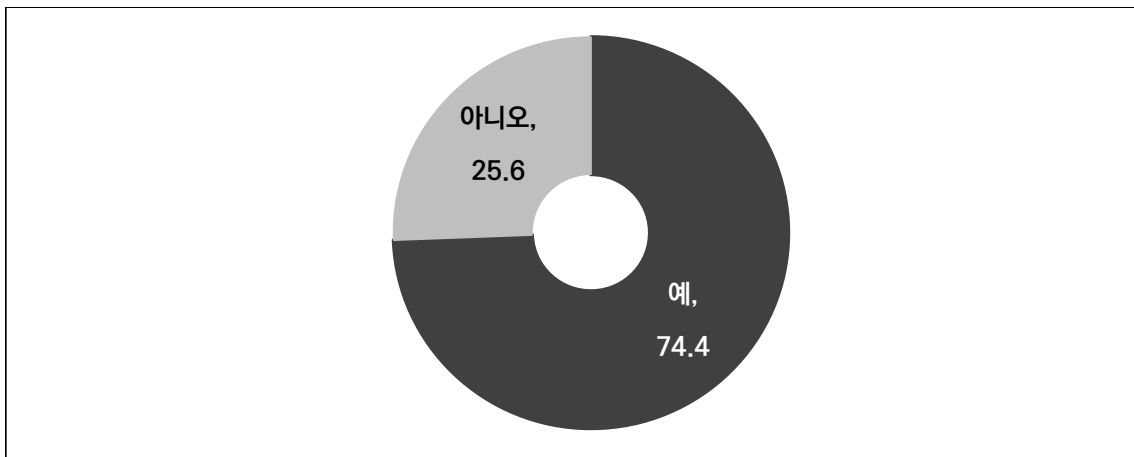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2024년 근로소득 유무

- 2024년 근로소득 유무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 중 74.4%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79.7%)이 ‘여성’(67.2%) 보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49세’(85.4%)에서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75.1%)이 ‘비수도권’(73.0%) 보다 근로소득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더 높게 나타남

〈그림 IV-3〉 2024년 근로소득 유무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3〉 2024년 근로소득 유무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있음	없음(또는 일용 근로자)
전체	(550)	74.4	25.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68.8	31.2
가입	(319)	78.4	21.6
성별			
남성	(315)	79.7	20.3
여성	(235)	67.2	32.8
연령			
20세~29세	(37)	62.2	37.8
30세~39세	(106)	78.3	21.7
40세~49세	(158)	85.4	14.6
50세~59세	(141)	75.2	24.8
60세 이상	(108)	57.4	42.6
수도권			
수도권	(346)	75.1	24.9
비수도권	(204)	73.0	27.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50.8	49.2
2~3년제 대학	(62)	69.4	30.6
4년제 대학	(359)	77.2	22.8
대학원 석사 이상	(66)	86.4	13.6
혼인상태			
미혼	(173)	65.3	34.7
기혼	(356)	78.9	21.1
별거·사별·이혼·기타	(21)	71.4	28.6
가구원수			
1명	(71)	57.7	42.3
2명	(114)	71.9	28.1
3명	(189)	81.5	18.5
4명 이상	(176)	75.0	25.0
자녀수			
0명	(215)	67.0	33.0
1명	(137)	86.1	13.9
2명 이상	(198)	74.2	25.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20.7	79.3
200~300만원 미만	(90)	78.9	21.1
300~400만원 미만	(96)	88.5	11.5
400~500만원 미만	(85)	92.9	7.1
500만원 이상	(158)	94.3	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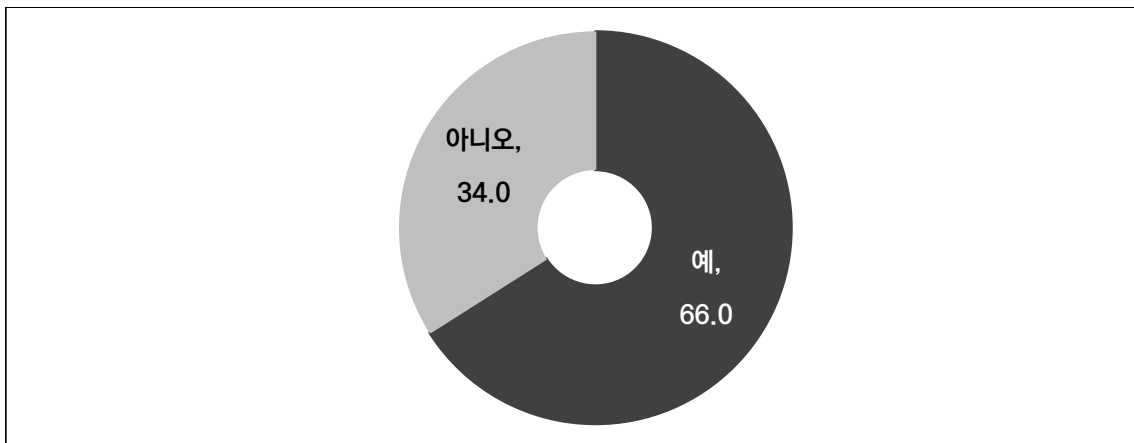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2024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여부

- 2024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여부에 대해 알아본 결과, 응답자 중 66.0%가 근로소득이 7,000만원 이하인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75.3%)이 ‘남성’(60.2%)에 비해 7,000만원 이하 소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39세’(78.3%)에서 7,000만원 이하 소득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비수도권’(71.1%)이 ‘수도권’(63.1%)에 비해 7,000만원 이하 소득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 2024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여부

(base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 n=409, 단위: %)



〈표 IV-4〉 2024년 근로소득 7,000만원 이하 여부

(base 근로소득이 있는 응답자, n=409,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예(7천만원 이하)	아니오(7천만원 초과)
전 체	(409)	66.0	34.0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159)	63.5	36.5
가입	(250)	67.6	32.4
성별			
남성	(251)	60.2	39.8
여성	(158)	75.3	24.7
연령			
20세~29세	(23)	69.6	30.4
30세~39세	(83)	78.3	21.7
40세~49세	(135)	60.0	40.0
50세~59세	(106)	58.5	41.5
60세 이상	(62)	74.2	25.8
수도권			
수도권	(260)	63.1	36.9
비수도권	(149)	71.1	28.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2)	65.6	34.4
2~3년제 대학	(43)	79.1	20.9
4년제 대학	(277)	69.0	31.0
대학원 석사 이상	(57)	42.1	57.9
혼인상태			
미혼	(113)	80.5	19.5
기혼	(281)	59.8	40.2
별거·사별·이혼·기타	(15)	73.3	26.7
가구원수			
1명	(41)	80.5	19.5
2명	(82)	79.3	20.7
3명	(154)	60.4	39.6
4명 이상	(132)	59.8	40.2
자녀수			
0명	(144)	77.8	22.2
1명	(118)	58.5	41.5
2명 이상	(147)	60.5	39.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5)	100.0	0.0
200~300만원 미만	(71)	100.0	0.0
300~400만원 미만	(85)	100.0	0.0
400~500만원 미만	(79)	60.8	39.2
500만원 이상	(149)	27.5	72.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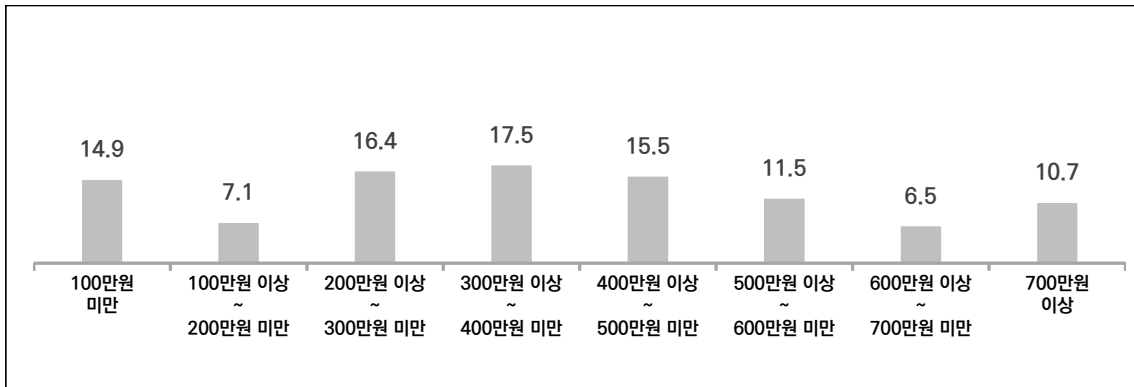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은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에 대해 알아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17.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6.4%),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5.5%)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8.1%)에서, ‘여성’은 ‘100만원 미만’(23.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100만원 미만’(29.7%)에서, ‘30세~39세’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9.8%)에서, ‘40세~49세’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0.9%)에서, ‘50세~59세’는 ‘100만원 미만’(17.7%)에서, ‘60세 이상’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0.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16.2%)에서, ‘비수도권’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1.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550)	14.9	7.1	16.4	17.5	15.5	11.5	6.5	10.7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20.3	6.9	15.6	14.3	14.7	10.4	7.4	10.4
	가입	(319)	11.0	7.2	16.9	19.7	16.0	12.2	6.0	11.0
성별	남성	(315)	8.6	6.0	12.7	18.1	16.8	14.6	8.9	14.3
	여성	(235)	23.4	8.5	21.3	16.6	13.6	7.2	3.4	6.0
연령	20세~29세	(37)	29.7	13.5	21.6	13.5	16.2	2.7	2.7	0.0
	30세~39세	(106)	16.0	4.7	18.9	19.8	18.9	12.3	5.7	3.8
	40세~49세	(158)	9.5	5.1	15.2	20.9	15.8	13.9	6.3	13.3
	50세~59세	(141)	17.7	5.0	17.0	10.6	14.9	9.9	7.8	17.0
	60세 이상	(108)	13.0	13.0	13.0	20.4	12.0	12.0	7.4	9.3
수도권	수도권	(346)	13.9	7.5	16.2	15.3	15.9	10.7	7.8	12.7
	비수도권	(204)	16.7	6.4	16.7	21.1	14.7	12.7	4.4	7.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33.3	15.9	9.5	19.0	7.9	4.8	4.8	4.8
	2~3년제 대학	(62)	22.6	4.8	24.2	17.7	12.9	11.3	4.8	1.6
	4년제 대학	(359)	12.0	7.0	16.4	18.1	17.3	13.1	6.1	10.0
	대학원 석사 이상	(66)	6.1	1.5	15.2	12.1	15.2	9.1	12.1	28.8
혼인상태	미혼	(173)	26.6	10.4	19.1	20.2	13.9	5.2	1.2	3.5
	기혼	(356)	9.6	5.3	15.2	15.7	16.3	14.9	9.3	13.8
	별거·사별·이혼·기타	(21)	9.5	9.5	14.3	23.8	14.3	4.8	4.8	19.0
가구원수	1명	(71)	25.4	12.7	14.1	23.9	11.3	5.6	1.4	5.6
	2명	(114)	14.9	8.8	20.2	21.9	10.5	9.6	7.9	6.1
	3명	(189)	11.6	6.3	15.3	15.3	18.0	11.1	5.8	16.4
	4명 이상	(176)	14.2	4.5	15.9	14.2	17.6	15.3	8.5	9.7
자녀수	0명	(215)	24.7	8.8	19.5	19.1	12.6	6.0	3.3	6.0
	1명	(137)	5.8	6.6	13.1	16.8	19.7	13.1	6.6	18.2
	2명 이상	(198)	10.6	5.6	15.2	16.2	15.7	16.2	10.1	10.6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67.8	32.2	0.0	0.0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90)	0.0	0.0	100.0	0.0	0.0	0.0	0.0	0.0
	300~400만원 미만	(96)	0.0	0.0	0.0	100.0	0.0	0.0	0.0	0.0
	400~500만원 미만	(85)	0.0	0.0	0.0	0.0	100.0	0.0	0.0	0.0
	500만원 이상	(158)	0.0	0.0	0.0	0.0	0.0	39.9	22.8	3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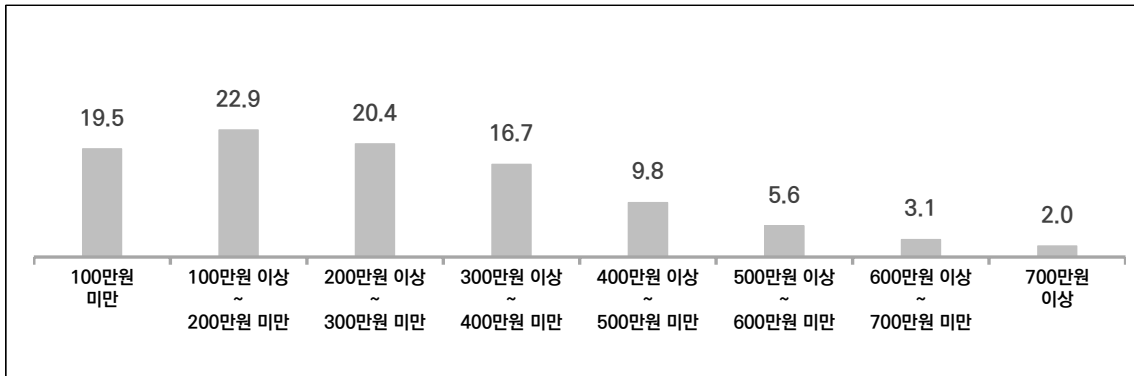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월평균 개인 지출액

- 월평균 개인 지출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이 22.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4%), ‘100만원 미만’(19.5%)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19.4%), ‘여성’(27.7%)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100만원 미만’(40.5%)에서, ‘30세~39세’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33.0%)에서, ‘40세~49세’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각각 20.3%)에서, ‘50세~59세’는 ‘100만원 미만’(19.9%)에서, ‘60세 이상’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5.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22.3%), ‘비수도권’(24.0%) 각각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6〉 월평균 개인 지출액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6〉 월평균 개인 지출액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550)	19.5	22.9	20.4	16.7	9.8	5.6	3.1	2.0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22.1	18.6	19.5	17.7	12.1	4.8	3.0	2.2
	가입	(319)	17.6	26.0	21.0	16.0	8.2	6.3	3.1	1.9
성별	남성	(315)	15.9	19.4	18.1	18.7	14.6	7.9	3.2	2.2
	여성	(235)	24.3	27.7	23.4	14.0	3.4	2.6	3.0	1.7
연령	20세~29세	(37)	40.5	29.7	13.5	8.1	0.0	5.4	2.7	0.0
	30세~39세	(106)	22.6	33.0	20.8	15.1	2.8	1.9	2.8	0.9
	40세~49세	(158)	13.3	20.3	20.3	20.3	12.7	5.7	4.4	3.2
	50세~59세	(141)	19.9	18.4	18.4	13.5	14.2	10.6	3.5	1.4
	60세 이상	(108)	17.6	20.4	25.0	20.4	10.2	2.8	0.9	2.8
수도권	수도권	(346)	18.8	22.3	20.2	16.8	9.2	6.6	3.5	2.6
	비수도권	(204)	20.6	24.0	20.6	16.7	10.8	3.9	2.5	1.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39.7	27.0	12.7	14.3	3.2	0.0	1.6	1.6
	2~3년제 대학	(62)	22.6	21.0	17.7	21.0	6.5	4.8	6.5	0.0
	4년제 대학	(359)	18.1	24.8	20.3	15.0	11.4	5.0	2.8	2.5
	대학원 석사 이상	(66)	4.5	10.6	30.3	24.2	10.6	15.2	3.0	1.5
혼인상태	미혼	(173)	37.0	32.9	17.9	6.9	2.3	1.7	1.2	0.0
	기혼	(356)	11.2	17.7	21.6	20.8	14.0	7.9	3.9	2.8
	별거·사별·이혼·기타	(21)	14.3	28.6	19.0	28.6	0.0	0.0	4.8	4.8
가구원수	1명	(71)	32.4	36.6	18.3	7.0	1.4	1.4	2.8	0.0
	2명	(114)	21.9	22.8	25.4	19.3	4.4	2.6	2.6	0.9
	3명	(189)	15.9	22.8	19.0	19.0	11.6	6.3	3.7	1.6
	4명 이상	(176)	16.5	17.6	19.3	16.5	14.8	8.5	2.8	4.0
자녀수	0명	(215)	33.0	31.2	18.6	9.3	3.7	2.3	1.9	0.0
	1명	(137)	12.4	18.2	18.2	21.2	14.6	6.6	5.8	2.9
	2명 이상	(198)	9.6	17.2	23.7	21.7	13.1	8.6	2.5	3.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68.6	19.0	7.4	5.0	0.0	0.0	0.0	0.0
	200~300만원 미만	(90)	13.3	51.1	24.4	8.9	1.1	1.1	0.0	0.0
	300~400만원 미만	(96)	3.1	40.6	36.5	19.8	0.0	0.0	0.0	0.0
	400~500만원 미만	(85)	3.5	15.3	32.9	27.1	11.8	8.2	1.2	0.0
	500만원 이상	(158)	3.8	3.2	11.4	22.8	27.2	14.6	10.1	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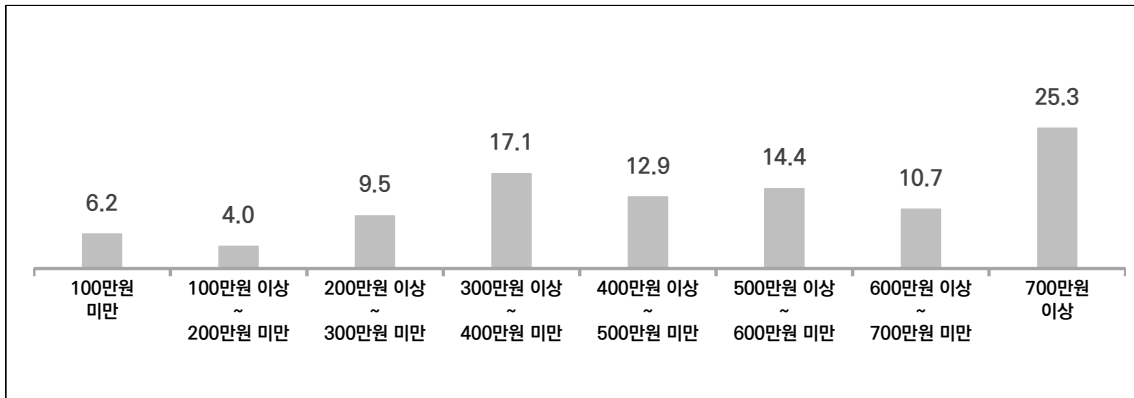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에 대해 알아본 결과, ‘700만원 이상’이 25.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7.1%), ‘500만원 이상~600만원 미만’(14.4%)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6.3%), ‘여성’(23.8%) 각각 ‘7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7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700만원 이상’(28.3%)에서, ‘비수도권’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1.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7〉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7〉 월평균 세전 가구소득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200만원 미만	200만원~300만원 미만	300만원~400만원 미만	400만원~500만원 미만	500만원~600만원 미만	600만원~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550)	6.2	4.0	9.5	17.1	12.9	14.4	10.7	25.3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9.5	4.3	13.0	15.6	11.7	13.0	9.1	23.8
	가입	(319)	3.8	3.8	6.9	18.2	13.8	15.4	11.9	26.3
성별	남성	(315)	5.7	4.1	8.6	14.6	14.6	14.9	11.1	26.3
	여성	(235)	6.8	3.8	10.6	20.4	10.6	13.6	10.2	23.8
연령	20세~29세	(37)	13.5	8.1	10.8	16.2	16.2	16.2	8.1	10.8
	30세~39세	(106)	5.7	2.8	9.4	20.8	12.3	16.0	10.4	22.6
	40세~49세	(158)	4.4	1.3	7.6	17.7	11.4	16.5	14.6	26.6
	50세~59세	(141)	6.4	3.5	12.1	13.5	15.6	10.6	9.2	29.1
	60세 이상	(108)	6.5	8.3	8.3	17.6	11.1	13.9	8.3	25.9
수도권	수도권	(346)	4.9	4.6	9.5	14.5	13.3	14.7	10.1	28.3
	비수도권	(204)	8.3	2.9	9.3	21.6	12.3	13.7	11.8	20.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17.5	12.7	14.3	23.8	11.1	7.9	4.8	7.9
	2~3년제 대학	(62)	12.9	1.6	21.0	19.4	14.5	14.5	4.8	11.3
	4년제 대학	(359)	3.9	3.3	6.7	16.4	12.5	15.9	13.4	27.9
	대학원 석사 이상	(66)	1.5	1.5	9.1	12.1	15.2	12.1	7.6	40.9
혼인상태	미혼	(173)	14.5	6.9	15.0	22.5	13.3	9.2	5.2	13.3
	기혼	(356)	2.0	2.2	6.5	14.0	13.2	17.4	13.8	30.9
	별거·사별·이혼·기타	(21)	9.5	9.5	14.3	23.8	4.8	4.8	4.8	28.6
가구원수	1명	(71)	25.4	12.7	14.1	23.9	11.3	5.6	1.4	5.6
	2명	(114)	5.3	4.4	11.4	26.3	9.6	15.8	9.6	17.5
	3명	(189)	3.2	2.1	7.9	13.8	14.8	11.6	11.6	34.9
	4명 이상	(176)	2.3	2.3	8.0	11.9	13.6	19.9	14.2	27.8
자녀수	0명	(215)	13.0	5.6	12.6	20.9	12.1	10.7	7.0	18.1
	1명	(137)	2.2	2.2	8.0	14.6	13.9	11.7	13.9	33.6
	2명 이상	(198)	1.5	3.5	7.1	14.6	13.1	20.2	12.6	27.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28.1	18.2	11.6	21.5	5.8	5.0	2.5	7.4
	200~300만원 미만	(90)	0.0	0.0	42.2	10.0	6.7	17.8	10.0	13.3
	300~400만원 미만	(96)	0.0	0.0	0.0	61.5	9.4	7.3	9.4	12.5
	400~500만원 미만	(85)	0.0	0.0	0.0	0.0	57.6	12.9	10.6	18.8
	500만원 이상	(158)	0.0	0.0	0.0	0.0	0.0	24.7	18.4	57.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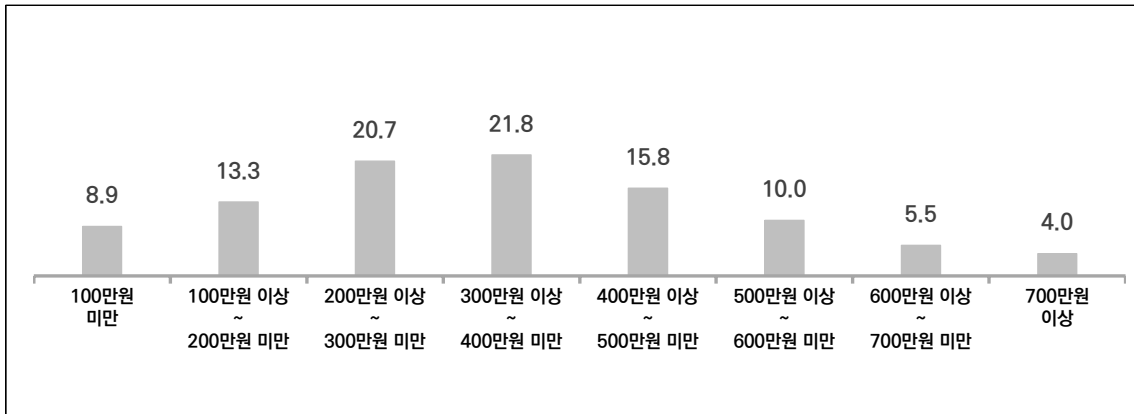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8) 월평균 가구 지출액

- 월평균 가구 지출액에 대해 알아본 결과,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이 21.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0.7%), ‘4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15.8%)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1.9%)에서, ‘여성’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각각 27.0%)에서, ‘30세~39세’는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각각 22.6%)에서, ‘40세~49세’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4.7%)에서, ‘50세~59세’는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19.1%)에서, ‘60세 이상’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3.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300만원 이상~400만원 미만’(23.1%)에서, ‘비수도권’은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22.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8〉 월평균 가구 지출액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8〉 월평균 가구 지출액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00만원 미만	100만원 ~200만원 미만	200만원 ~300만원 미만	300만원 ~400만원 미만	400만원 ~500만원 미만	500만원 ~600만원 미만	600만원 ~700만원 미만	700만원 이상
전 체		(550)	8.9	13.3	20.7	21.8	15.8	10.0	5.5	4.0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11.7	12.6	20.8	19.0	16.9	10.4	4.8	3.9
	가입	(319)	6.9	13.8	20.7	23.8	15.0	9.7	6.0	4.1
성별	남성	(315)	9.8	11.7	19.0	21.9	16.2	11.1	5.4	4.8
	여성	(235)	7.7	15.3	23.0	21.7	15.3	8.5	5.5	3.0
연령	20세~29세	(37)	13.5	21.6	27.0	27.0	0.0	5.4	2.7	2.7
	30세~39세	(106)	7.5	22.6	22.6	19.8	13.2	6.6	5.7	1.9
	40세~49세	(158)	7.6	7.6	19.6	24.7	19.0	9.5	7.0	5.1
	50세~59세	(141)	10.6	10.6	17.0	19.1	17.7	16.3	4.3	4.3
	60세 이상	(108)	8.3	13.0	23.1	21.3	16.7	7.4	5.6	4.6
수도권	수도권	(346)	8.1	12.4	19.7	23.1	14.7	11.3	5.5	5.2
	비수도권	(204)	10.3	14.7	22.5	19.6	17.6	7.8	5.4	2.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28.6	20.6	17.5	17.5	12.7	0.0	1.6	1.6
	2~3년제 대학	(62)	11.3	21.0	19.4	21.0	9.7	6.5	9.7	1.6
	4년제 대학	(359)	6.1	12.3	21.4	21.2	19.2	10.0	5.0	4.7
	대학원 석사 이상	(66)	3.0	4.5	21.2	30.3	6.1	22.7	7.6	4.5
혼인상태	미혼	(173)	20.2	24.3	23.7	19.1	7.5	2.3	2.3	0.6
	기혼	(356)	3.1	7.6	19.1	23.0	20.5	14.0	7.0	5.6
	별거·사별·이혼·기타	(21)	14.3	19.0	23.8	23.8	4.8	4.8	4.8	4.8
가구원수	1명	(71)	32.4	29.6	19.7	12.7	1.4	1.4	2.8	0.0
	2명	(114)	11.4	11.4	31.6	24.6	8.8	7.0	1.8	3.5
	3명	(189)	4.2	11.1	19.6	23.3	18.0	12.2	7.9	3.7
	4명 이상	(176)	2.8	10.2	15.3	22.2	23.9	13.1	6.3	6.3
자녀수	0명	(215)	19.1	20.9	23.3	19.5	8.8	4.2	2.8	1.4
	1명	(137)	2.9	10.2	19.0	23.4	16.1	13.1	8.8	6.6
	2명 이상	(198)	2.0	7.1	19.2	23.2	23.2	14.1	6.1	5.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32.2	23.1	18.2	14.9	8.3	2.5	0.8	0.0
	200~300만원 미만	(90)	4.4	21.1	28.9	24.4	11.1	3.3	5.6	1.1
	300~400만원 미만	(96)	1.0	16.7	44.8	21.9	9.4	3.1	2.1	1.0
	400~500만원 미만	(85)	0.0	9.4	14.1	36.5	24.7	12.9	2.4	0.0
	500만원 이상	(158)	3.2	1.3	7.0	17.7	23.4	22.2	12.7	12.7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자산 및 부채

1) 자산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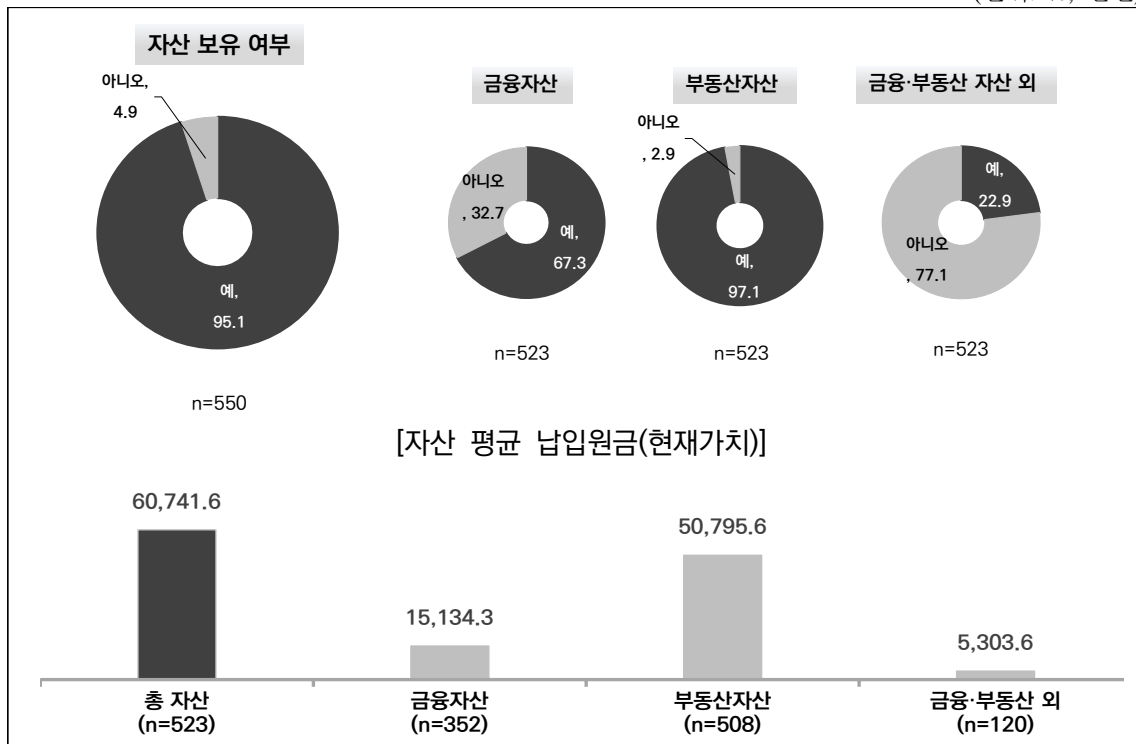
- 자산 보유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96.1%가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자산 유형으로는 부동산자산(97.1%)이 가장 많았고, 이어서 금융자산(67.3%), 금융·부동산 외 자산(22.9%) 순으로 나타남

2)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

- 자산별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총 자산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은 60,741.6만원으로 나타남
 - 자산 유형별로는 부동산자산(50,795.6만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자산(15,134.3만원), 금융·부동산 외 자산(5,303.6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9〉 자산 보유 여부 및 현황

(단위: %, 만원)



〈표 IV-9〉 자산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산		사례수*	금융		부동산		금융·부동산 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550)	95.1	4.9	(523)	67.3	32.7	97.1	2.9	22.9	77.1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92.6	7.4	(214)	56.1	43.9	98.1	1.9	16.8	83.2
	가입	(319)	96.9	3.1	(309)	75.1	24.9	96.4	3.6	27.2	72.8
성별	남성	(315)	95.9	4.1	(302)	67.9	32.1	98.0	2.0	25.2	74.8
	여성	(235)	94.0	6.0	(221)	66.5	33.5	95.9	4.1	19.9	80.1
연령	20세~29세	(37)	81.1	18.9	(30)	80.0	20.0	86.7	13.3	23.3	76.7
	30세~39세	(106)	89.6	10.4	(95)	72.6	27.4	94.7	5.3	26.3	73.7
	40세~49세	(158)	95.6	4.4	(151)	61.6	38.4	98.7	1.3	21.9	78.1
	50세~59세	(141)	98.6	1.4	(139)	64.7	35.3	97.1	2.9	21.6	78.4
	60세 이상	(108)	100.0	0.0	(108)	70.4	29.6	100.0	0.0	23.1	76.9
수도권	수도권	(346)	95.1	4.9	(329)	68.4	31.6	97.0	3.0	24.3	75.7
	비수도권	(204)	95.1	4.9	(194)	65.5	34.5	97.4	2.6	20.6	79.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93.7	6.3	(59)	50.8	49.2	98.3	1.7	10.2	89.8
	2~3년제 대학	(62)	82.3	17.7	(51)	39.2	60.8	98.0	2.0	17.6	82.4
	4년제 대학	(359)	97.2	2.8	(349)	71.9	28.1	96.3	3.7	25.2	74.8
	대학원 석사 이상	(66)	97.0	3.0	(64)	79.7	20.3	100.0	0.0	26.6	73.4
혼인상태	미혼	(173)	86.1	13.9	(149)	67.8	32.2	92.6	7.4	16.1	83.9
	기혼	(356)	99.4	0.6	(354)	66.7	33.3	99.2	0.8	26.3	73.7
	별거·사별·이혼·기타	(21)	95.2	4.8	(20)	75.0	25.0	95.0	5.0	15.0	85.0
가구원수	1명	(71)	95.8	4.2	(68)	73.5	26.5	94.1	5.9	17.6	82.4
	2명	(114)	99.1	0.9	(113)	61.9	38.1	97.3	2.7	16.8	83.2
	3명	(189)	94.2	5.8	(178)	68.5	31.5	97.8	2.2	28.1	71.9
	4명 이상	(176)	93.2	6.8	(164)	67.1	32.9	97.6	2.4	23.8	76.2
자녀수	0명	(215)	88.4	11.6	(190)	68.9	31.1	93.2	6.8	17.9	82.1
	1명	(137)	99.3	0.7	(136)	63.2	36.8	99.3	0.7	30.1	69.9
	2명 이상	(198)	99.5	0.5	(197)	68.5	31.5	99.5	0.5	22.8	77.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87.6	12.4	(106)	60.4	39.6	90.6	9.4	10.4	89.6
	200~300만원 미만	(90)	92.2	7.8	(83)	68.7	31.3	100.0	0.0	21.7	78.3
	300~400만원 미만	(96)	96.9	3.1	(93)	63.4	36.6	98.9	1.1	16.1	83.9
	400~500만원 미만	(85)	97.6	2.4	(83)	63.9	36.1	98.8	1.2	27.7	72.3
	500만원 이상	(158)	100.0	0.0	(158)	75.3	24.7	98.1	1.9	33.5	66.5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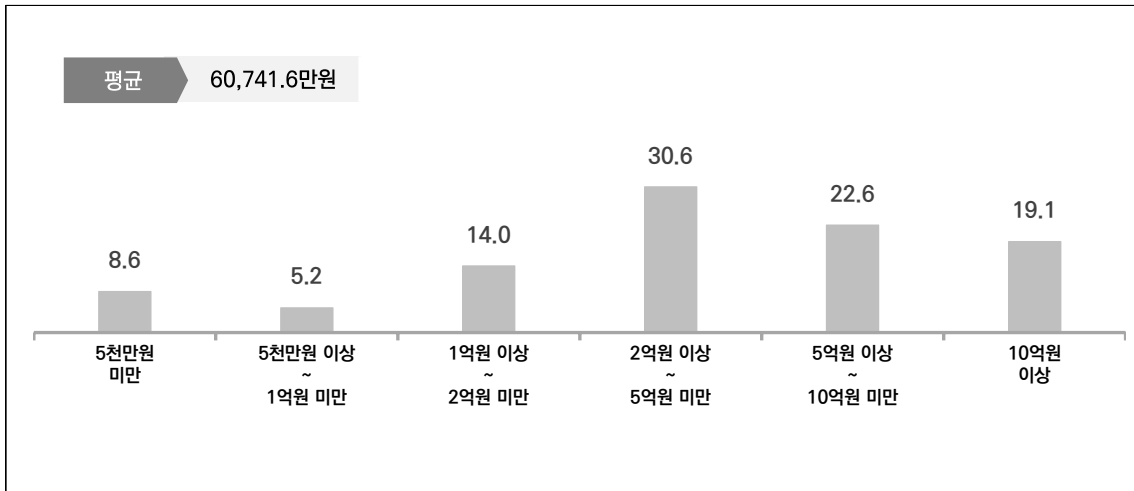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30.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22.6%), ‘10억원 이상’(19.1%) 순으로 나타남.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의 평균은 60,741.6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9.1%), ‘여성’(32.6%) 각각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5천만원 미만’ 비율이 높고, 연령이 높을수록 ‘2억원 이상’ 비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10억원 이상’(26.7%)에서, ‘비수도권’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38.7%)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10〉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523, 단위: %)



〈표 IV-10〉 총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523,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평균
전 체	(523)	8.6	5.2	14.0	30.6	22.6	19.1	60,741.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14)	10.3	6.5	14.0	28.0	21.0	20.1	59,836.8
가입	(309)	7.4	4.2	13.9	32.4	23.6	18.4	61,368.3
성별								
남성	(302)	7.6	5.0	13.2	29.1	25.5	19.5	63,920.4
여성	(221)	10.0	5.4	14.9	32.6	18.6	18.6	56,397.8
연령								
20세~29세	(30)	30.0	3.3	23.3	30.0	13.3	0.0	21,181.0
30세~39세	(95)	13.7	8.4	14.7	33.7	16.8	12.6	45,827.9
40세~49세	(151)	7.3	4.0	17.2	34.4	20.5	16.6	55,003.0
50세~59세	(139)	5.8	7.2	9.4	29.5	24.5	23.7	70,856.7
60세 이상	(108)	3.7	1.9	12.0	24.1	30.6	27.8	79,854.4
수도권								
수도권	(329)	8.8	3.6	12.5	25.8	22.5	26.7	73,323.8
비수도권	(194)	8.2	7.7	16.5	38.7	22.7	6.2	39,403.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9)	18.6	6.8	16.9	33.9	20.3	3.4	33,090.8
2~3년제 대학	(51)	19.6	9.8	17.6	33.3	11.8	7.8	33,036.9
4년제 대학	(349)	6.6	4.6	14.6	31.8	22.3	20.1	61,565.6
대학원 석사 이상	(64)	1.6	3.1	4.7	18.8	34.4	37.5	103,816.1
혼인상태								
미혼	(149)	20.1	6.0	23.5	28.9	14.1	7.4	33,785.1
기혼	(354)	4.0	4.5	9.9	31.1	26.6	24.0	72,211.6
별거·사별·이혼·기타	(20)	5.0	10.0	15.0	35.0	15.0	20.0	58,550.0
가구원수								
1명	(68)	26.5	4.4	25.0	25.0	10.3	8.8	32,976.5
2명	(113)	7.1	7.1	15.0	33.6	24.8	12.4	53,252.0
3명	(178)	5.1	3.9	10.7	27.5	26.4	26.4	74,030.4
4명 이상	(164)	6.1	5.5	12.2	34.1	22.0	20.1	62,991.4
자녀수								
0명	(190)	17.9	5.3	22.1	31.1	14.7	8.9	38,067.8
1명	(136)	2.9	4.4	9.6	28.7	30.1	24.3	73,272.3
2명 이상	(197)	3.6	5.6	9.1	31.5	24.9	25.4	73,959.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6)	25.5	9.4	15.1	26.4	13.2	10.4	39,560.4
200~300만원 미만	(83)	7.2	3.6	18.1	42.2	18.1	10.8	45,711.0
300~400만원 미만	(93)	7.5	5.4	21.5	34.4	22.6	8.6	41,222.0
400~500만원 미만	(83)	2.4	6.0	13.3	36.1	26.5	15.7	61,926.7
500만원 이상	(158)	1.9	2.5	7.0	22.2	29.1	37.3	93,71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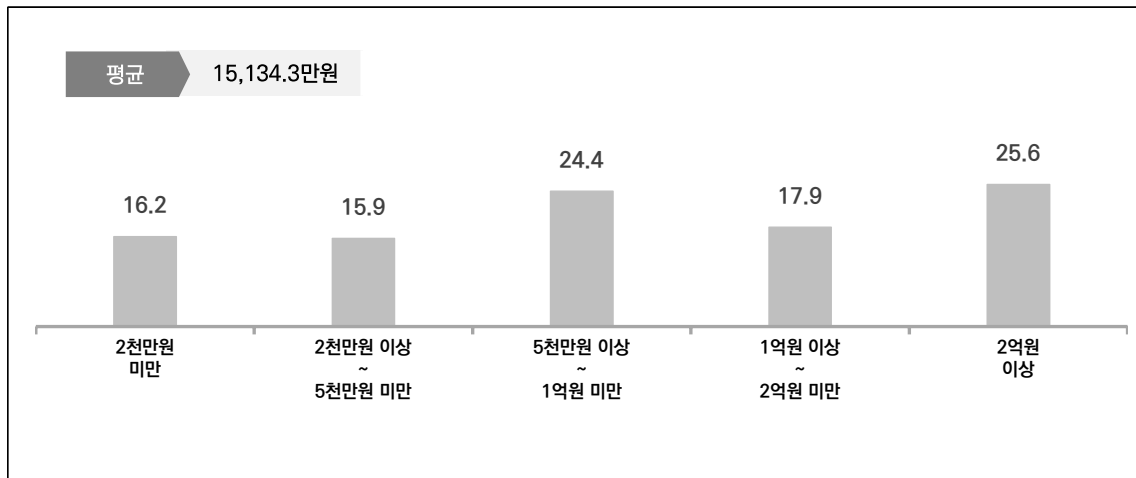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억원 이상’이 25.6%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4.4%), ‘1억원 이상~2억원 미만’(17.9%) 순으로 나타남.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의 평균은 15,134.3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억원 이상’(28.8%)에서, ‘여성’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5.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27.1%), ‘비수도권’(22.8%) 각각 ‘2억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11〉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52, 단위: %)



〈표 IV-11〉 금융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352,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 체	(352)	16.2	15.9	24.4	17.9	25.6	15,134.3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120)	15.8	16.7	20.0	16.7	30.8	18,713.7
	가입	(232)	16.4	15.5	26.7	18.5	22.8	13,282.9
성별	남성	(205)	13.7	14.6	23.9	19.0	28.8	15,979.9
	여성	(147)	19.7	17.7	25.2	16.3	21.1	13,955.1
연령	20세~29세	(24)	33.3	20.8	37.5	8.3	0.0	3,788.8
	30세~39세	(69)	21.7	10.1	33.3	17.4	17.4	11,343.0
	40세~49세	(93)	16.1	20.4	20.4	23.7	19.4	14,395.9
	50세~59세	(90)	12.2	13.3	18.9	18.9	36.7	20,018.2
	60세 이상	(76)	10.5	17.1	23.7	13.2	35.5	17,279.2
수도권	수도권	(225)	13.8	15.6	26.7	16.9	27.1	16,571.8
	비수도권	(127)	20.5	16.5	20.5	19.7	22.8	12,587.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23.3	13.3	40.0	13.3	10.0	8,143.8
	2~3년제 대학	(20)	15.0	10.0	55.0	15.0	5.0	6,115.0
	4년제 대학	(251)	17.1	17.5	20.3	19.5	25.5	15,338.6
	대학원 석사 이상	(51)	7.8	11.8	23.5	13.7	43.1	21,778.0
혼인상태	미혼	(101)	21.8	18.8	31.7	16.8	10.9	9,948.2
	기혼	(236)	14.0	14.4	20.3	19.1	32.2	17,735.2
	별거·사별·이혼·기타	(15)	13.3	20.0	40.0	6.7	20.0	9,133.3
가구원수	1명	(50)	24.0	18.0	38.0	16.0	4.0	7,394.0
	2명	(70)	17.1	14.3	37.1	12.9	18.6	11,001.0
	3명	(122)	11.5	12.3	17.2	19.7	39.3	21,380.2
	4명 이상	(110)	17.3	20.0	18.2	20.0	24.5	14,355.6
자녀수	0명	(131)	22.9	16.8	32.8	14.5	13.0	10,411.9
	1명	(86)	9.3	11.6	20.9	19.8	38.4	18,896.5
	2명 이상	(135)	14.1	17.8	18.5	20.0	29.6	17,320.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64)	40.6	17.2	20.3	12.5	9.4	6,683.0
	200~300만원 미만	(57)	12.3	31.6	28.1	17.5	10.5	7,886.1
	300~400만원 미만	(59)	11.9	20.3	37.3	16.9	13.6	8,622.9
	400~500만원 미만	(53)	11.3	5.7	28.3	22.6	32.1	19,367.9
	500만원 이상	(119)	9.2	10.1	16.8	19.3	44.5	24,49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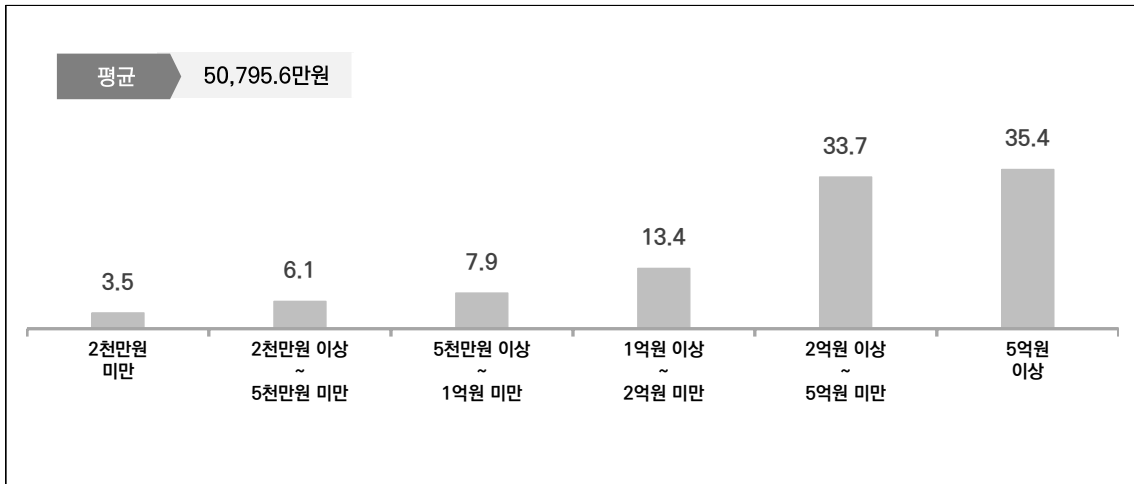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5억원 이상’이 35.4%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2억원 이상~5억원 미만’(33.7%), ‘1억원 이상~2억원 미만’(13.4%) 순으로 나타남.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의 평균은 50,795.6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억원 이상’(36.8%)에서 가장 높았으며, ‘여성’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34.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억원 이상’(44.5%)에서, ‘비수도권’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42.3%)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2〉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508, 단위: %)



〈표 IV-12〉 부동산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부동산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508,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508)	3.5	6.1	7.9	13.4	33.7	35.4	50,795.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10)	3.8	5.7	9.0	13.3	33.8	34.3	49,153.6
	가입	(298)	3.4	6.4	7.0	13.4	33.6	36.2	51,952.8
성별	남성	(296)	3.0	5.7	7.8	13.2	33.4	36.8	52,632.5
	여성	(212)	4.2	6.6	8.0	13.7	34.0	33.5	48,230.9
연령	20세~29세	(26)	11.5	11.5	11.5	19.2	30.8	15.4	20,376.9
	30세~39세	(90)	6.7	10.0	10.0	16.7	31.1	25.6	38,464.7
	40세~49세	(149)	2.0	6.7	8.1	14.1	40.9	28.2	45,682.9
	50세~59세	(135)	1.5	4.4	10.4	9.6	32.6	41.5	58,014.8
	60세 이상	(108)	3.7	2.8	1.9	13.0	27.8	50.9	66,424.1
수도권	수도권	(319)	3.1	7.2	6.0	10.7	28.5	44.5	62,753.6
	비수도권	(189)	4.2	4.2	11.1	18.0	42.3	20.1	30,612.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8)	12.1	6.9	8.6	19.0	36.2	17.2	28,860.3
	2~3년제 대학	(50)	12.0	14.0	8.0	16.0	30.0	20.0	30,850.4
	4년제 대학	(336)	1.5	5.4	8.3	14.3	34.8	35.7	51,079.6
	대학원 석사 이상	(64)	0.0	3.1	4.7	1.6	28.1	62.5	84,765.6
혼인상태	미혼	(138)	9.4	9.4	15.2	22.5	24.6	18.8	28,698.7
	기혼	(351)	1.1	4.8	5.1	9.7	37.0	42.2	59,309.8
	별거·사별·이혼·기타	(19)	5.3	5.3	5.3	15.8	36.8	31.6	54,000.0
가구원수	1명	(64)	14.1	12.5	17.2	23.4	15.6	17.2	28,717.2
	2명	(110)	2.7	3.6	7.3	18.2	38.2	30.0	46,634.5
	3명	(174)	1.7	5.2	5.7	10.3	31.6	45.4	59,368.7
	4명 이상	(160)	1.9	6.3	6.9	9.4	40.0	35.6	53,164.5
자녀수	0명	(177)	7.3	9.6	13.0	20.9	29.4	19.8	32,634.0
	1명	(135)	1.5	4.4	4.4	9.6	34.1	45.9	59,807.0
	2명 이상	(196)	1.5	4.1	5.6	9.2	37.2	42.3	60,989.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96)	12.5	9.4	13.5	15.6	24.0	25.0	39,067.7
	200~300만원 미만	(83)	1.2	10.8	7.2	15.7	39.8	25.3	39,604.8
	300~400만원 미만	(92)	3.3	3.3	12.0	22.8	32.6	26.1	35,458.7
	400~500만원 미만	(82)	2.4	3.7	4.9	13.4	45.1	30.5	48,950.9
	500만원 이상	(155)	0.0	4.5	3.9	5.2	31.0	55.5	74,13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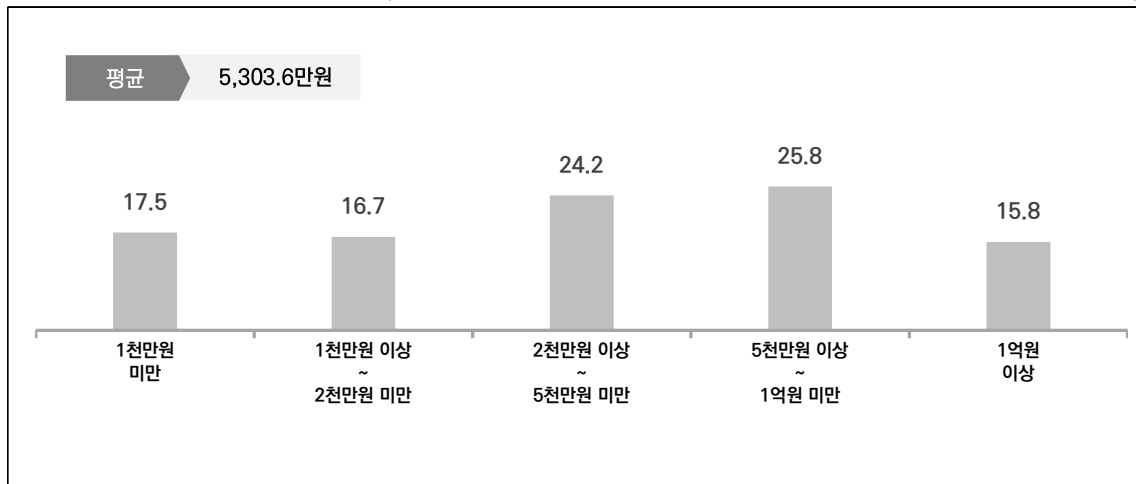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에 대해 물어본 결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25.8%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4.2%), ‘1천만원 미만’(17.5%) 순으로 나타남. 금융·부동산 외 자산의 평균 납입원금(현재가치)은 5,303.6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6.3%)에서, ‘여성’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7.3%)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높을수록 더 많은 금융·부동산 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7.5%)에서, ‘비수도권’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5.0%)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3〉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부동산 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20, 단위: %)



〈표 IV-13〉 금융·부동산 외 자산 납입원금(현재가치)

(base 금융·부동산 외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20,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120)	17.5	16.7	24.2	25.8	15.8	5,303.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36)	13.9	16.7	22.2	25.0	22.2	6,588.6
	가입	(84)	19.0	16.7	25.0	26.2	13.1	4,752.9
성별	남성	(76)	14.5	15.8	26.3	25.0	18.4	5,906.3
	여성	(44)	22.7	18.2	20.5	27.3	11.4	4,262.5
연령	20세~29세	(7)	28.6	14.3	42.9	14.3	0.0	2,100.0
	30세~39세	(25)	12.0	8.0	40.0	28.0	12.0	4,366.4
	40세~49세	(33)	21.2	30.3	6.1	27.3	15.2	4,844.8
	50세~59세	(30)	20.0	13.3	26.7	16.7	23.3	7,181.3
	60세 이상	(25)	12.0	12.0	24.0	36.0	16.0	5,490.0
수도권	수도권	(80)	18.8	17.5	23.8	27.5	12.5	4,706.0
	비수도권	(40)	15.0	15.0	25.0	22.5	22.5	6,498.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	16.7	33.3	16.7	0.0	33.3	5,690.0
	2~3년제 대학	(9)	22.2	33.3	22.2	22.2	0.0	2,228.9
	4년제 대학	(88)	18.2	13.6	22.7	29.5	15.9	5,382.7
	대학원 석사 이상	(17)	11.8	17.6	35.3	17.6	17.6	6,385.3
혼인상태	미혼	(24)	29.2	16.7	20.8	29.2	4.2	2,866.3
	기혼	(93)	15.1	16.1	24.7	24.7	19.4	6,017.6
	별거·사별·이혼·기타	(3)	0.0	33.3	33.3	33.3	0.0	2,666.7
가구원수	1명	(12)	16.7	25.0	16.7	41.7	0.0	2,900.0
	2명	(19)	21.1	26.3	26.3	10.5	15.8	6,190.0
	3명	(50)	20.0	12.0	26.0	30.0	12.0	4,777.4
	4명 이상	(39)	12.8	15.4	23.1	23.1	25.6	6,285.9
자녀수	0명	(34)	26.5	17.6	26.5	26.5	2.9	2,726.5
	1명	(41)	19.5	12.2	19.5	29.3	19.5	6,487.3
	2명 이상	(45)	8.9	20.0	26.7	22.2	22.2	6,172.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1)	63.6	9.1	18.2	9.1	0.0	1,380.9
	200~300만원 미만	(18)	11.1	38.9	22.2	22.2	5.6	3,183.3
	300~400만원 미만	(15)	20.0	20.0	33.3	13.3	13.3	4,180.0
	400~500만원 미만	(23)	17.4	13.0	17.4	39.1	13.0	4,323.9
	500만원 이상	(53)	9.4	11.3	26.4	28.3	24.5	7,580.9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부채 보유 여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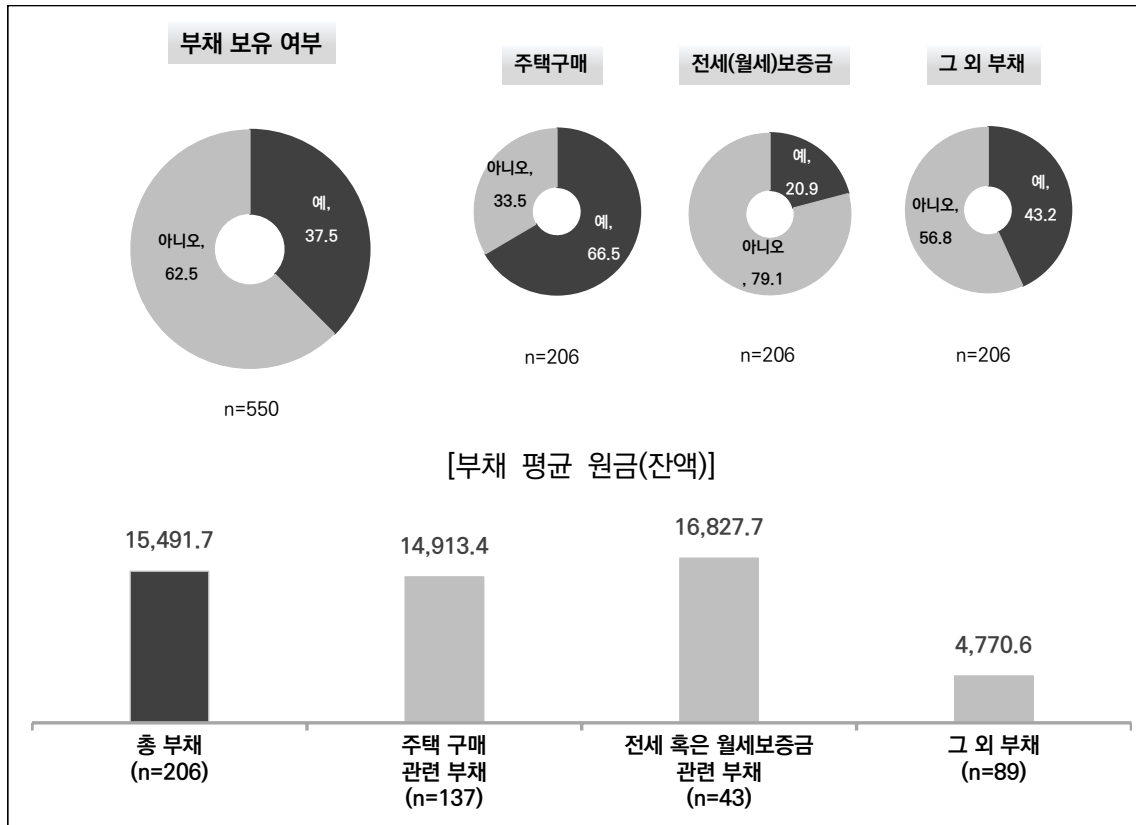
- 부채 보유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37.5%가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유 부채 유형으로는 ‘주택구매’(66.5%)가 가장 많았고, 이어서 ‘그 외 부채’(43.2%), ‘전세(월세)보증금’(20.9%) 순으로 나타남

8)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

- 부채별 원금(잔액) 평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총 부채 평균 원금(잔액)은 15,491.7만원으로 나타남
 - 부채 유형별로는 ‘전세(월세)보증금’(16,827.7만원)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주택구매’(14,913.4만원), ‘그 외 부채’(4,770.6만원) 순으로 나타남

〈그림 IV-14〉 부채 보유 여부 및 현황

(단위: %, 만원)



〈표 IV-14〉 부채 보유 여부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부채		사례수*	주택구매		전세(월세)보증금		그 외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전 체	(550)	37.5	62.5	(206)	66.5	33.5	20.9	79.1	43.2	56.8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29.9	70.1	(69)	63.8	36.2	14.5	85.5	43.5	56.5
	가입	(319)	42.9	57.1	(137)	67.9	32.1	24.1	75.9	43.1	56.9
성별	남성	(315)	40.6	59.4	(128)	68.0	32.0	20.3	79.7	49.2	50.8
	여성	(235)	33.2	66.8	(78)	64.1	35.9	21.8	78.2	33.3	66.7
연령	20세~29세	(37)	24.3	75.7	(9)	66.7	33.3	11.1	88.9	44.4	55.6
	30세~39세	(106)	38.7	61.3	(41)	65.9	34.1	24.4	75.6	39.0	61.0
	40세~49세	(158)	44.3	55.7	(70)	72.9	27.1	17.1	82.9	34.3	65.7
	50세~59세	(141)	34.8	65.2	(49)	61.2	38.8	16.3	83.7	51.0	49.0
	60세 이상	(108)	34.3	65.7	(37)	62.2	37.8	32.4	67.6	54.1	45.9
수도권	수도권	(346)	37.3	62.7	(129)	65.9	34.1	22.5	77.5	42.6	57.4
	비수도권	(204)	37.7	62.3	(77)	67.5	32.5	18.2	81.8	44.2	55.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30.2	69.8	(19)	63.2	36.8	26.3	73.7	57.9	42.1
	2~3년제 대학	(62)	37.1	62.9	(23)	56.5	43.5	13.0	87.0	56.5	43.5
	4년제 대학	(359)	39.0	61.0	(140)	67.9	32.1	20.0	80.0	42.1	57.9
	대학원 석사 이상	(66)	36.4	63.6	(24)	70.8	29.2	29.2	70.8	25.0	75.0
혼인상태	미혼	(173)	27.2	72.8	(47)	44.7	55.3	23.4	76.6	55.3	44.7
	기혼	(356)	42.7	57.3	(152)	73.0	27.0	21.1	78.9	40.1	59.9
	별거·사별·이혼·기타	(21)	33.3	66.7	(7)	71.4	28.6	0.0	100.0	28.6	71.4
가구원수	1명	(71)	39.4	60.6	(28)	42.9	57.1	28.6	71.4	50.0	50.0
	2명	(114)	36.0	64.0	(41)	75.6	24.4	17.1	82.9	31.7	68.3
	3명	(189)	39.2	60.8	(74)	66.2	33.8	20.3	79.7	32.4	67.6
	4명 이상	(176)	35.8	64.2	(63)	71.4	28.6	20.6	79.4	60.3	39.7
자녀수	0명	(215)	28.8	71.2	(62)	53.2	46.8	24.2	75.8	46.8	53.2
	1명	(137)	43.8	56.2	(60)	73.3	26.7	16.7	83.3	26.7	73.3
	2명 이상	(198)	42.4	57.6	(84)	71.4	28.6	21.4	78.6	52.4	47.6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23.1	76.9	(28)	42.9	57.1	28.6	71.4	42.9	57.1
	200~300만원 미만	(90)	35.6	64.4	(32)	53.1	46.9	12.5	87.5	46.9	53.1
	300~400만원 미만	(96)	38.5	61.5	(37)	75.7	24.3	18.9	81.1	48.6	51.4
	400~500만원 미만	(85)	47.1	52.9	(40)	72.5	27.5	15.0	85.0	47.5	52.5
	500만원 이상	(158)	43.7	56.3	(69)	73.9	26.1	26.1	73.9	36.2	63.8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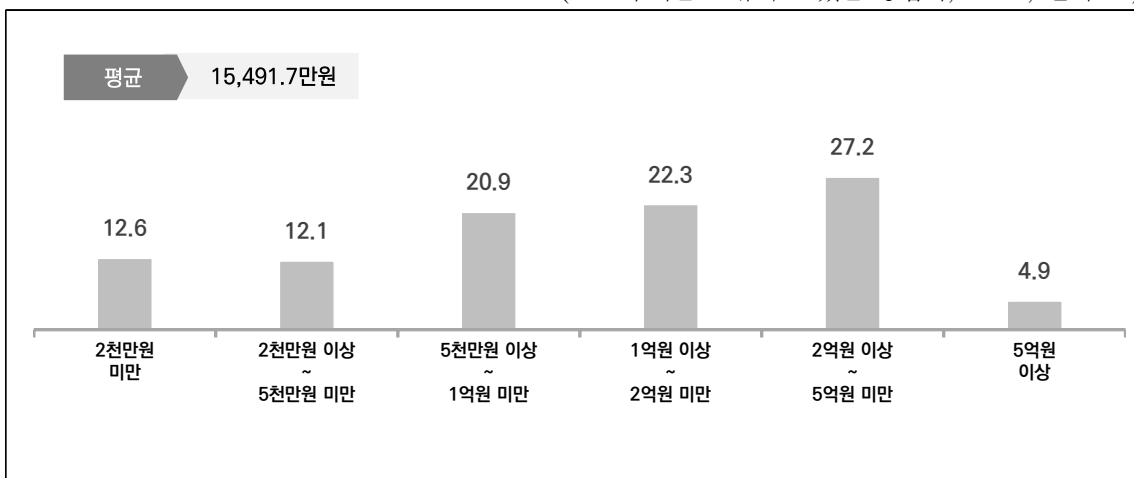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총 부채 원금(잔액)

- 총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27.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2.3%),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0.9%) 순으로 나타남. 총 부채 원금(잔액)의 평균은 15,491.7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각각 25.8%)에서, ‘여성’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29.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연령이 낮을수록 총 부채 원금(잔액)이 낮게 나타났으며, 연령이 높을수록 총 부채 원금(잔액)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31.0%)에서, ‘비수도권’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9.9%)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5〉 총 부채 원금(잔액)

(base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206, 단위: %)



〈표 IV-15〉 총 부채 원금(잔액)

(base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206,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206)	12.6	12.1	20.9	22.3	27.2	4.9	15,491.7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69)	13.0	13.0	23.2	26.1	20.3	4.3	14,180.6
	가입	(137)	12.4	11.7	19.7	20.4	30.7	5.1	16,152.1
성별	남성	(128)	11.7	9.4	25.8	21.1	25.8	6.3	16,330.0
	여성	(78)	14.1	16.7	12.8	24.4	29.5	2.6	14,116.2
연령	20세~29세	(9)	55.6	11.1	0.0	0.0	33.3	0.0	9,894.4
	30세~39세	(41)	14.6	12.2	24.4	14.6	31.7	2.4	14,387.3
	40세~49세	(70)	8.6	8.6	21.4	28.6	30.0	2.9	15,798.1
	50세~59세	(49)	10.2	14.3	24.5	24.5	24.5	2.0	12,918.4
	60세 이상	(37)	10.8	16.2	16.2	21.6	18.9	16.2	20,905.4
수도권	수도권	(129)	14.7	11.6	17.1	17.8	31.0	7.8	17,947.9
	비수도권	(77)	9.1	13.0	27.3	29.9	20.8	0.0	11,376.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9)	15.8	21.1	15.8	21.1	21.1	5.3	12,190.5
	2~3년제 대학	(23)	26.1	17.4	21.7	8.7	26.1	0.0	10,866.1
	4년제 대학	(140)	12.1	9.3	22.9	24.3	27.1	4.3	15,036.9
	대학원 석사 이상	(24)	0.0	16.7	12.5	25.0	33.3	12.5	25,191.7
혼인상태	미혼	(47)	23.4	21.3	10.6	19.1	23.4	2.1	11,236.8
	기혼	(152)	9.9	9.9	23.0	22.4	28.9	5.9	16,920.9
	별거·사별·이혼·기타	(7)	0.0	0.0	42.9	42.9	14.3	0.0	13,028.6
가구원수	1명	(28)	21.4	14.3	21.4	25.0	17.9	0.0	10,243.6
	2명	(41)	9.8	17.1	17.1	22.0	31.7	2.4	14,975.9
	3명	(74)	12.2	14.9	23.0	21.6	24.3	4.1	12,788.2
	4명 이상	(63)	11.1	4.8	20.6	22.2	31.7	9.5	21,335.6
자녀수	0명	(62)	19.4	16.1	16.1	17.7	29.0	1.6	12,378.7
	1명	(60)	8.3	10.0	28.3	28.3	25.0	0.0	11,599.7
	2명 이상	(84)	10.7	10.7	19.0	21.4	27.4	10.7	20,569.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8)	25.0	17.9	14.3	14.3	17.9	10.7	15,292.9
	200~300만원 미만	(32)	18.8	21.9	21.9	18.8	18.8	0.0	9,287.5
	300~400만원 미만	(37)	5.4	18.9	32.4	16.2	21.6	5.4	15,375.7
	400~500만원 미만	(40)	20.0	7.5	12.5	30.0	25.0	5.0	14,175.5
	500만원 이상	(69)	4.3	4.3	21.7	26.1	39.1	4.3	19,27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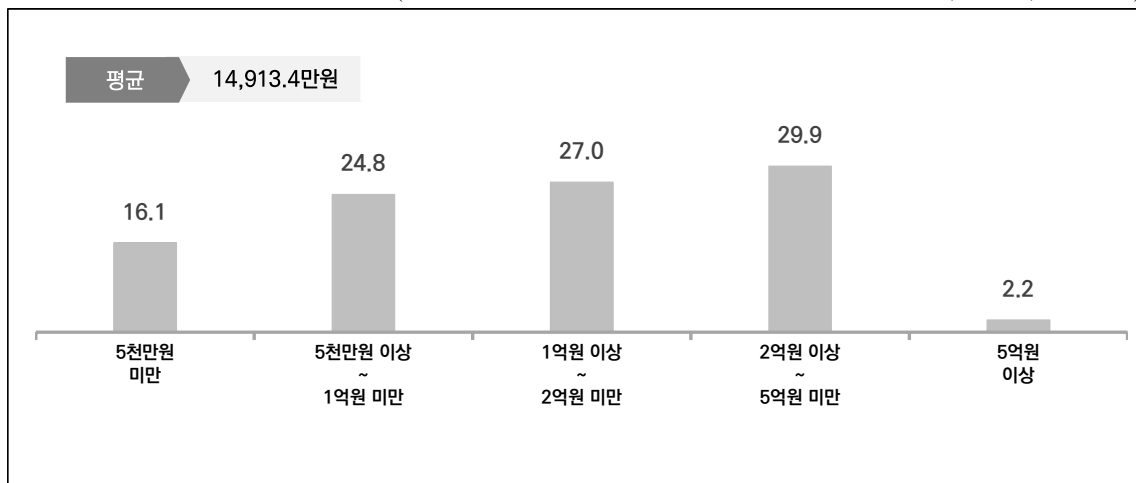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0)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29.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27.0%),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24.8%) 순으로 나타남.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의 평균은 14,913.4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31.0%)에서, ‘여성’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각각 34.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5천만원 미만’(50.0%)에서, ‘30세~39세’는 ‘2억원 이상~5억원 미만’(40.7%)에서, ‘40세~49세’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각각 29.4%)에서, ‘50세~59세’, ‘60세 이상’은 ‘1억원 이상~2억원 미만’(각각 36.7%, 30.4%)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36.5%)에서, ‘비수도권’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36.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16〉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주택구매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37, 단위: %)



〈표 IV-16〉 주택구매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주택구매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137,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137)	16.1	24.8	27.0	29.9	2.2	14,913.4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44)	18.2	22.7	29.5	29.5	0.0	13,714.3
	가입	(93)	15.1	25.8	25.8	30.1	3.2	15,480.6
성별	남성	(87)	14.9	31.0	23.0	27.6	3.4	14,878.5
	여성	(50)	18.0	14.0	34.0	34.0	0.0	14,974.0
연령	20세~29세	(6)	50.0	16.7	0.0	33.3	0.0	8,766.7
	30세~39세	(27)	18.5	25.9	14.8	40.7	0.0	15,324.1
	40세~49세	(51)	9.8	27.5	29.4	29.4	3.9	16,708.8
	50세~59세	(30)	13.3	26.7	36.7	23.3	0.0	12,816.7
	60세 이상	(23)	21.7	17.4	30.4	26.1	4.3	14,788.3
수도권	수도권	(85)	18.8	17.6	23.5	36.5	3.5	16,989.4
	비수도권	(52)	11.5	36.5	32.7	19.2	0.0	11,519.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2)	25.0	25.0	25.0	25.0	0.0	10,583.3
	2~3년제 대학	(13)	23.1	30.8	23.1	23.1	0.0	12,463.8
	4년제 대학	(95)	15.8	26.3	28.4	28.4	1.1	13,811.6
	대학원 석사 이상	(17)	5.9	11.8	23.5	47.1	11.8	26,000.0
혼인상태	미혼	(21)	14.3	14.3	33.3	33.3	4.8	16,492.9
	기혼	(111)	17.1	27.0	24.3	29.7	1.8	14,608.8
	별거·사별·이혼·기타	(5)	0.0	20.0	60.0	20.0	0.0	15,040.0
가구원수	1명	(12)	8.3	16.7	50.0	25.0	0.0	13,904.2
	2명	(31)	19.4	25.8	25.8	29.0	0.0	12,798.4
	3명	(49)	16.3	28.6	28.6	24.5	2.0	12,132.7
	4명 이상	(45)	15.6	22.2	20.0	37.8	4.4	19,667.3
자녀수	0명	(33)	15.2	21.2	27.3	33.3	3.0	14,854.5
	1명	(44)	11.4	29.5	36.4	22.7	0.0	11,938.6
	2명 이상	(60)	20.0	23.3	20.0	33.3	3.3	17,127.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	25.0	8.3	41.7	25.0	0.0	12,158.3
	200~300만원 미만	(17)	17.6	17.6	35.3	29.4	0.0	13,000.0
	300~400만원 미만	(28)	14.3	39.3	21.4	21.4	3.6	13,253.6
	400~500만원 미만	(29)	20.7	20.7	34.5	24.1	0.0	12,749.3
	500만원 이상	(51)	11.8	25.5	19.6	39.2	3.9	18,34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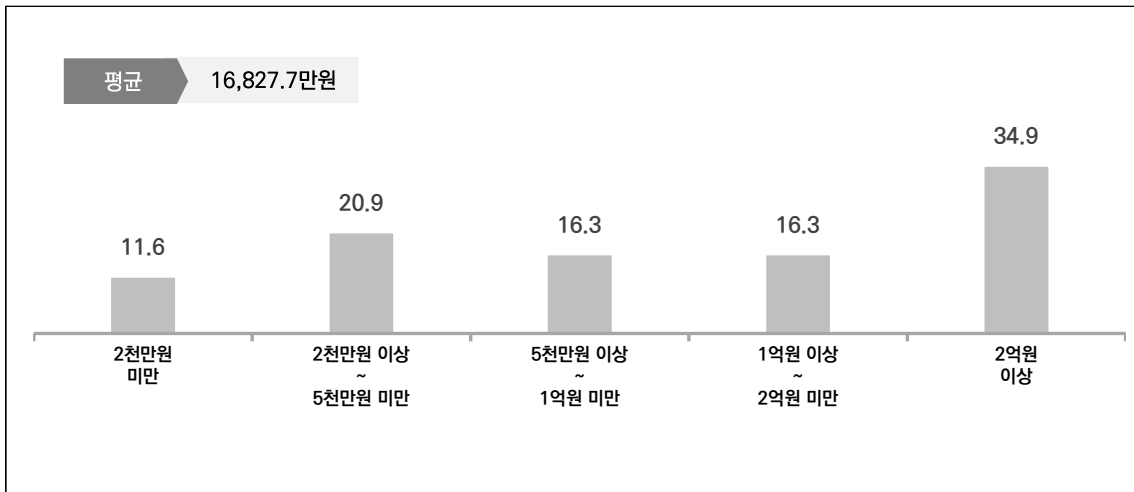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1)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억원 이상’이 34.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0.9%),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각각 16.3%) 순으로 나타남.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의 평균은 16,827.7만원임.

〈그림 IV-17〉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43, 단위: %)



〈표 IV-17〉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 원금(잔액)

(base 전세 혹은 월세보증금 관련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43, 단위: 명, %, 만원)

구분	사례수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1억원 이상~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평균	
전체	(43)	11.6	20.9	16.3	16.3	34.9	16,827.7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10)	10.0	20.0	10.0	30.0	30.0	18,334.0
	가입	(33)	12.1	21.2	18.2	12.1	36.4	16,371.2
성별	남성	(26)	11.5	23.1	11.5	19.2	34.6	17,617.3
	여성	(17)	11.8	17.6	23.5	11.8	35.3	15,620.0
연령	20세~29세	(1)	0.0	0.0	0.0	0.0	100.0	30,000.0
	30세~39세	(10)	10.0	30.0	30.0	10.0	20.0	12,141.0
	40세~49세	(12)	16.7	8.3	16.7	33.3	25.0	11,791.7
	50세~59세	(8)	12.5	25.0	12.5	12.5	37.5	15,625.0
	60세 이상	(12)	8.3	25.0	8.3	8.3	50.0	25,473.3
수도권	수도권	(29)	13.8	13.8	17.2	17.2	37.9	20,203.1
	비수도권	(14)	7.1	35.7	14.3	14.3	28.6	9,835.7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5)	0.0	20.0	60.0	0.0	20.0	14,000.0
	2~3년제 대학	(3)	0.0	33.3	0.0	33.3	33.3	14,666.7
	4년제 대학	(28)	14.3	17.9	14.3	14.3	39.3	17,456.8
	대학원 석사 이상	(7)	14.3	28.6	0.0	28.6	28.6	17,257.1
혼인상태	미혼	(11)	18.2	27.3	18.2	18.2	18.2	9,355.5
	기혼	(32)	9.4	18.8	15.6	15.6	40.6	19,396.3
	별거·사별·이혼·기타	(0)	-	-	-	-	-	-
가구원수	1명	(8)	25.0	25.0	25.0	12.5	12.5	8,343.8
	2명	(7)	0.0	42.9	0.0	14.3	42.9	24,522.9
	3명	(15)	13.3	6.7	6.7	33.3	40.0	17,925.3
	4명 이상	(13)	7.7	23.1	30.8	0.0	38.5	16,638.5
자녀수	0명	(15)	13.3	26.7	13.3	20.0	26.7	11,894.0
	1명	(10)	20.0	10.0	10.0	30.0	30.0	11,288.0
	2명 이상	(18)	5.6	22.2	22.2	5.6	44.4	24,016.7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8)	12.5	12.5	12.5	0.0	62.5	31,270.0
	200~300만원 미만	(4)	0.0	50.0	50.0	0.0	0.0	5,112.5
	300~400만원 미만	(7)	14.3	28.6	14.3	0.0	42.9	17,971.4
	400~500만원 미만	(6)	16.7	33.3	0.0	0.0	50.0	13,700.0
	500만원 이상	(18)	11.1	11.1	16.7	38.9	22.2	13,6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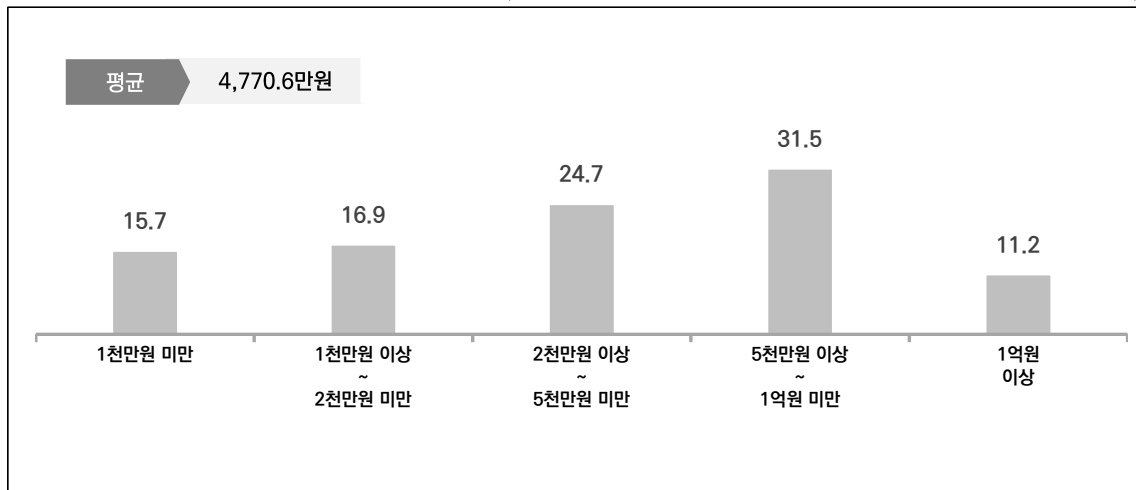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2) 그 외 부채 원금(잔액)

- 그 외 부채 원금(잔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이 31.5%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24.7%), ‘1천만원 이상~2천만원 미만’(16.9%) 순으로 나타남. 그 외 부채의 평균 원금(잔액)은 4,770.6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34.9%)에서, ‘여성’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34.6%)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29.1%), ‘비수도권’(35.3%) 각각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18〉 그 외 부채 원금(잔액)

(base 그 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89, 단위: %)



〈표 IV-18〉 그 외 부채 원금(잔액)

(base 그 외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응답자, n=89,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89)	15.7	16.9	24.7	31.5	11.2	4,770.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30)	13.3	10.0	33.3	30.0	13.3	6,389.7
	가입	(59)	16.9	20.3	20.3	32.2	10.2	3,947.3
성별	남성	(63)	14.3	17.5	20.6	34.9	12.7	5,361.3
	여성	(26)	19.2	15.4	34.6	23.1	7.7	3,339.2
연령	20세~29세	(4)	50.0	25.0	25.0	0.0	0.0	1,612.5
	30세~39세	(16)	18.8	25.0	25.0	25.0	6.3	3,420.0
	40세~49세	(24)	16.7	8.3	29.2	29.2	16.7	4,675.8
	50세~59세	(25)	12.0	20.0	12.0	44.0	12.0	4,940.0
	60세 이상	(20)	10.0	15.0	35.0	30.0	10.0	6,384.5
수도권	수도권	(55)	14.5	21.8	20.0	29.1	14.5	5,187.1
	비수도권	(34)	17.6	8.8	32.4	35.3	5.9	4,096.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1)	27.3	9.1	27.3	27.3	9.1	3,147.3
	2~3년제 대학	(13)	15.4	15.4	30.8	38.5	0.0	3,376.2
	4년제 대학	(59)	15.3	18.6	22.0	32.2	11.9	5,157.1
	대학원 석사 이상	(6)	0.0	16.7	33.3	16.7	33.3	6,966.7
혼인상태	미혼	(26)	11.5	34.6	38.5	7.7	7.7	3,033.5
	기혼	(61)	18.0	9.8	19.7	39.3	13.1	5,405.1
	별거·사별·이혼·기타	(2)	0.0	0.0	0.0	100.0	0.0	8,000.0
가구원수	1명	(14)	14.3	35.7	14.3	28.6	7.1	3,801.4
	2명	(13)	7.7	15.4	53.8	23.1	0.0	3,507.7
	3명	(24)	16.7	16.7	37.5	25.0	4.2	3,456.3
	4명 이상	(38)	18.4	10.5	10.5	39.5	21.1	6,389.7
자녀수	0명	(29)	10.3	31.0	34.5	17.2	6.9	3,409.3
	1명	(16)	18.8	12.5	31.3	37.5	0.0	3,612.5
	2명 이상	(44)	18.2	9.1	15.9	38.6	18.2	6,088.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	8.3	33.3	41.7	16.7	0.0	2,678.3
	200~300만원 미만	(15)	20.0	20.0	26.7	33.3	0.0	3,716.7
	300~400만원 미만	(18)	22.2	11.1	38.9	16.7	11.1	4,000.0
	400~500만원 미만	(19)	26.3	15.8	15.8	26.3	15.8	6,057.4
	500만원 이상	(25)	4.0	12.0	12.0	52.0	20.0	5,984.0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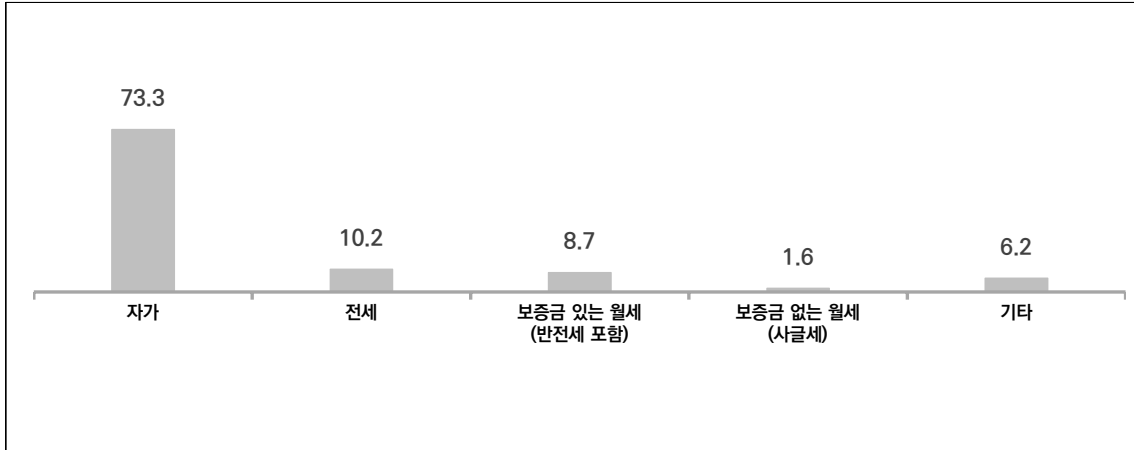
3. 주거

1) 주택 입주 형태

- 주택 입주 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자가’가 73.3%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는 ‘전세’(10.2%),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8.7%)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남성’(77.5%)이 ‘여성’(67.7%)보다 자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60세 이상’(90.7%)의 자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과 ‘비수도권’ 모두 ‘자가’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비수도권’(81.9%)이 ‘수도권’(68.2%)보다 자가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19〉 주택 입주 형태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19〉 주택 입주 형태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자가	전세	보증금 있는 월세 (반전세 포함)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기타
전 체		(550)	73.3	10.2	8.7	1.6	6.2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75.3	6.5	9.1	2.2	6.9
	가입	(319)	71.8	12.9	8.5	1.3	5.6
성별	남성	(315)	77.5	9.2	7.3	1.9	4.1
	여성	(235)	67.7	11.5	10.6	1.3	8.9
연령	20세~29세	(37)	43.2	10.8	16.2	8.1	21.6
	30세~39세	(106)	56.6	16.0	11.3	2.8	13.2
	40세~49세	(158)	74.7	12.0	7.6	1.9	3.8
	50세~59세	(141)	78.7	9.2	7.8	0.0	4.3
	60세 이상	(108)	90.7	2.8	6.5	0.0	0.0
수도권	수도권	(346)	68.2	12.4	11.3	2.0	6.1
	비수도권	(204)	81.9	6.4	4.4	1.0	6.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63.5	14.3	14.3	1.6	6.3
	2~3년제 대학	(62)	54.8	8.1	16.1	3.2	17.7
	4년제 대학	(359)	75.8	10.3	7.5	1.4	5.0
	대학원 석사 이상	(66)	86.4	7.6	3.0	1.5	1.5
혼인상태	미혼	(173)	50.3	13.3	15.6	4.0	16.8
	기혼	(356)	84.0	9.3	5.3	0.3	1.1
	별거·사별·이혼·기타	(21)	81.0	0.0	9.5	4.8	4.8
가구원수	1명	(71)	56.3	7.0	26.8	5.6	4.2
	2명	(114)	78.1	10.5	7.9	0.9	2.6
	3명	(189)	78.3	9.5	3.7	1.1	7.4
	4명 이상	(176)	71.6	11.9	7.4	1.1	8.0
자녀수	0명	(215)	53.5	14.0	14.4	3.7	14.4
	1명	(137)	87.6	8.0	2.9	0.7	0.7
	2명 이상	(198)	84.8	7.6	6.6	0.0	1.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52.9	9.9	16.5	5.0	15.7
	200~300만원 미만	(90)	58.9	20.0	12.2	0.0	8.9
	300~400만원 미만	(96)	80.2	11.5	4.2	0.0	4.2
	400~500만원 미만	(85)	83.5	4.7	8.2	2.4	1.2
	500만원 이상	(158)	87.3	7.0	3.8	0.6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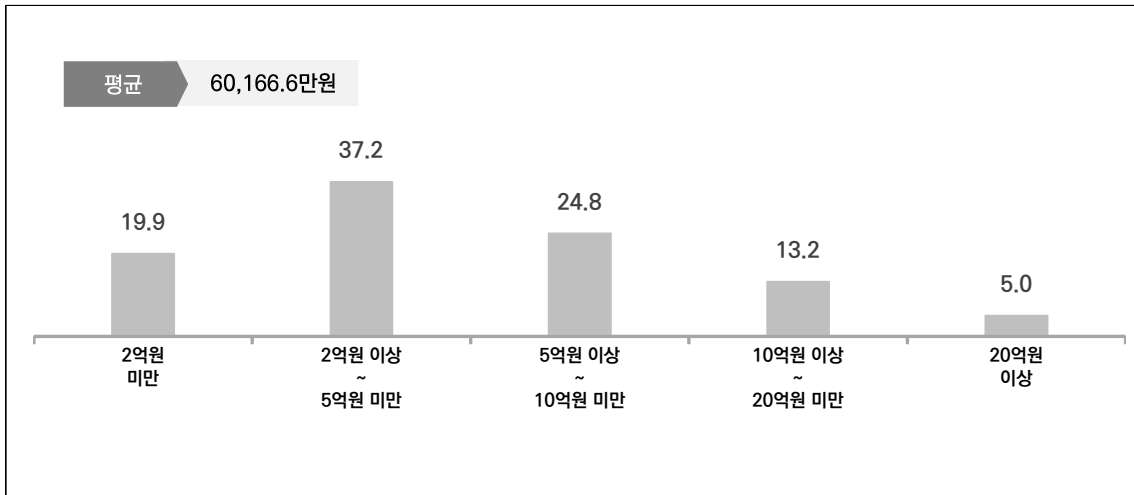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주택 가격(시세)

- 주택 가격(시세)에 대해 물어본 결과,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37.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24.8%), ‘2억원 미만’(19.9%) 순으로 나타남. 주택의 평균 가격(시세)는 60,166.6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7.3%), ‘여성’(37.1%)은 각각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 ‘5억원 이상~10억원 미만’(각각 29.2%)에서, ‘비수도권’은 ‘2억원 이상~5억원 미만’(48.5%)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20〉 주택 가격(시세)

(base 자가 거주 응답자, n=403, 단위: %)



〈표 IV-20〉 주택 가격(시세)

(base 자가 거주 응답자, n=403,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20억원 미만	평균	
전 체	(403)	19.9	37.2	24.8	13.2	5.0	60,166.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174)	21.3	39.1	23.0	12.6	4.0	55,406.6
	가입	(229)	18.8	35.8	26.2	13.5	5.7	63,783.4
성별	남성	(244)	20.1	37.3	26.2	11.5	4.9	59,479.5
	여성	(159)	19.5	37.1	22.6	15.7	5.0	61,221.1
연령	20세~29세	(16)	37.5	43.8	18.8	0.0	0.0	27,437.5
	30세~39세	(60)	18.3	41.7	25.0	10.0	5.0	54,425.0
	40세~49세	(118)	21.2	42.4	18.6	15.3	2.5	55,509.7
	50세~59세	(111)	19.8	32.4	30.6	10.8	6.3	63,018.0
	60세 이상	(98)	16.3	32.7	26.5	17.3	7.1	71,403.1
수도권	수도권	(236)	11.4	29.2	29.2	22.0	8.1	81,031.4
	비수도권	(167)	31.7	48.5	18.6	0.6	0.6	30,681.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40)	32.5	45.0	17.5	2.5	2.5	35,975.0
	2~3년제 대학	(34)	23.5	44.1	23.5	5.9	2.9	44,850.0
	4년제 대학	(272)	19.1	38.2	24.3	14.0	4.4	59,980.7
	대학원 석사 이상	(57)	12.3	22.8	33.3	21.1	10.5	87,166.7
혼인상태	미혼	(87)	36.8	33.3	21.8	5.7	2.3	43,086.2
	기혼	(299)	15.1	38.1	26.1	15.1	5.7	65,004.5
	별거·사별·이혼·기타	(17)	17.6	41.2	17.6	17.6	5.9	62,488.2
가구원수	1명	(40)	47.5	27.5	12.5	7.5	5.0	41,832.5
	2명	(89)	22.5	41.6	23.6	7.9	4.5	53,356.2
	3명	(148)	14.2	31.8	32.4	15.5	6.1	69,710.5
	4명 이상	(126)	15.9	43.7	20.6	15.9	4.0	59,587.3
자녀수	0명	(115)	32.2	37.4	20.9	6.1	3.5	46,021.7
	1명	(120)	15.0	31.7	35.0	13.3	5.0	63,924.6
	2명 이상	(168)	14.9	41.1	20.2	17.9	6.0	67,164.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64)	29.7	34.4	18.8	10.9	6.3	57,164.1
	200~300만원 미만	(53)	18.9	50.9	17.0	9.4	3.8	51,403.8
	300~400만원 미만	(77)	29.9	40.3	24.7	3.9	1.3	39,876.6
	400~500만원 미만	(71)	21.1	42.3	25.4	11.3	0.0	48,531.7
	500만원 이상	(138)	9.4	29.0	30.4	21.7	9.4	82,23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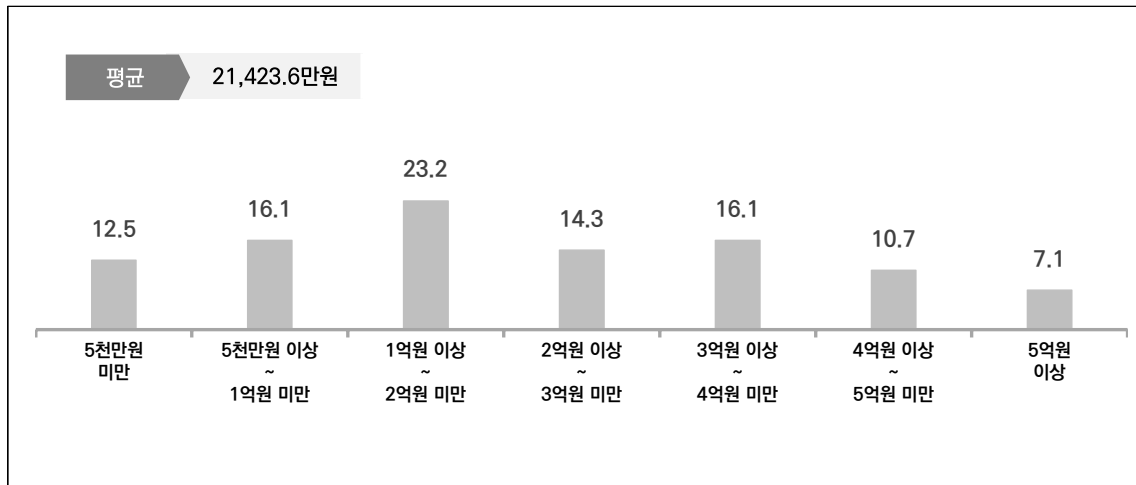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에 대해 물어본 결과,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이 23.2%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천만원 이상~1억원 미만’, ‘3억원 이상~4억원 미만’ (각각 16.1%) 순으로 나타남. 주택의 평균 임차료(전세보증금)는 21,423.6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IV-21〉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base 전세 거주 응답자, n=56, 단위: %)



〈표 IV-21〉 주택 임차료(전세보증금)

(base 전세 거주 응답자, n=56,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	2억원 이상 ~3억원 미만	3억원 이상 ~4억원 미만	4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평균	
전 체	(56)	12.5	16.1	23.2	14.3	16.1	10.7	7.1	21,423.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15)	13.3	33.3	33.3	0.0	6.7	6.7	6.7	15,306.7
	가입	(41)	12.2	9.8	19.5	19.5	19.5	12.2	7.3	23,661.5
성별	남성	(29)	13.8	17.2	27.6	13.8	6.9	6.9	13.8	21,407.6
	여성	(27)	11.1	14.8	18.5	14.8	25.9	14.8	0.0	21,440.7
연령	20세~29세	(4)	0.0	25.0	0.0	0.0	50.0	0.0	25.0	33,000.0
	30세~39세	(17)	29.4	11.8	23.5	17.6	5.9	11.8	0.0	14,795.3
	40세~49세	(19)	10.5	10.5	26.3	15.8	10.5	21.1	5.3	22,800.0
	50세~59세	(13)	0.0	30.8	30.8	15.4	15.4	0.0	7.7	19,730.8
	60세 이상	(3)	0.0	0.0	0.0	0.0	66.7	0.0	33.3	42,166.7
수도권	수도권	(43)	11.6	11.6	23.3	14.0	20.9	14.0	4.7	22,860.5
	비수도권	(13)	15.4	30.8	23.1	15.4	0.0	0.0	15.4	16,670.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	22.2	22.2	33.3	11.1	0.0	0.0	11.1	14,911.1
	2~3년제 대학	(5)	40.0	20.0	20.0	20.0	0.0	0.0	0.0	8,804.0
	4년제 대학	(37)	8.1	16.2	24.3	13.5	21.6	16.2	0.0	21,283.8
	대학원 석사 이상	(5)	0.0	0.0	0.0	20.0	20.0	0.0	60.0	46,800.0
혼인상태	미혼	(23)	17.4	21.7	39.1	4.3	8.7	4.3	4.3	15,348.7
	기혼	(33)	9.1	12.1	12.1	21.2	21.2	15.2	9.1	25,657.6
	별거·사별·이혼·기타	(0)	-	-	-	-	-	-	-	-
가구원수	1명	(5)	20.0	0.0	80.0	0.0	0.0	0.0	0.0	12,400.0
	2명	(12)	8.3	8.3	33.3	33.3	8.3	8.3	0.0	19,358.3
	3명	(18)	5.6	27.8	11.1	22.2	16.7	16.7	0.0	20,794.4
	4명 이상	(21)	19.0	14.3	14.3	0.0	23.8	9.5	19.0	25,291.4
자녀수	0명	(30)	16.7	20.0	30.0	13.3	10.0	6.7	3.3	16,727.3
	1명	(11)	0.0	9.1	18.2	27.3	27.3	18.2	0.0	25,818.2
	2명 이상	(15)	13.3	13.3	13.3	6.7	20.0	13.3	20.0	27,593.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	25.0	33.3	25.0	8.3	8.3	0.0	0.0	9,933.3
	200~300만원 미만	(18)	5.6	11.1	22.2	16.7	22.2	16.7	5.6	25,361.1
	300~400만원 미만	(11)	18.2	18.2	27.3	9.1	18.2	9.1	0.0	17,436.4
	400~500만원 미만	(4)	25.0	25.0	0.0	0.0	0.0	50.0	0.0	25,555.0
	500만원 이상	(11)	0.0	0.0	27.3	27.3	18.2	0.0	27.3	3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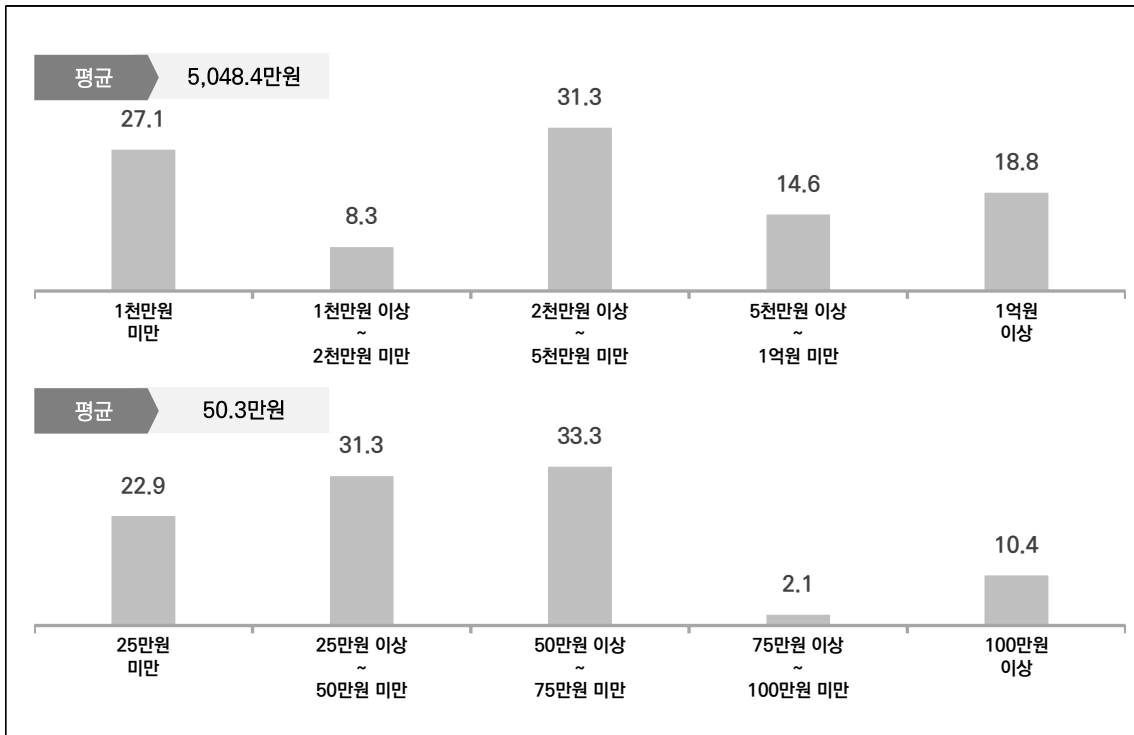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

-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에 대해 물어본 결과, 보증금은 ‘2천만원 이상~5천만원 미만’이 31.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월세는 ‘50만원 이상~75만원 미만’이 33.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보증금 있는 월세의 평균 보증금은 5,048.4만원이고, 평균 월세는 50.3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IV-22〉 주택 임차료(보증금 있는 월세)

(base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n=48, 단위: %)



〈표 IV-22〉 주택 임차료(보증금)

(base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n=48,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1천만원 미만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미만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평균	
전 체	(48)	27.1	8.3	31.3	14.6	18.8	5,048.4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1)	19.0	14.3	42.9	14.3	9.5	3,176.2
	가입	(27)	33.3	3.7	22.2	14.8	25.9	6,504.6
성별	남성	(23)	30.4	13.0	30.4	8.7	17.4	4,613.0
	여성	(25)	24.0	4.0	32.0	20.0	20.0	5,449.0
연령	20세~29세	(6)	33.3	16.7	33.3	16.7	0.0	2,466.7
	30세~39세	(12)	33.3	8.3	8.3	33.3	16.7	5,385.4
	40세~49세	(12)	16.7	0.0	41.7	0.0	41.7	8,500.0
	50세~59세	(11)	9.1	18.2	45.5	18.2	9.1	3,554.5
	60세 이상	(7)	57.1	0.0	28.6	0.0	14.3	3,114.3
수도권	수도권	(39)	20.5	7.7	30.8	17.9	23.1	5,941.7
	비수도권	(9)	55.6	11.1	33.3	0.0	0.0	1,177.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	33.3	11.1	33.3	11.1	11.1	3,111.1
	2~3년제 대학	(10)	30.0	30.0	30.0	0.0	10.0	2,210.0
	4년제 대학	(27)	25.9	0.0	33.3	18.5	22.2	5,823.1
	대학원 석사 이상	(2)	0.0	0.0	0.0	50.0	50.0	17,500.0
혼인상태	미혼	(27)	37.0	11.1	18.5	22.2	11.1	3,908.3
	기혼	(19)	10.5	5.3	47.4	5.3	31.6	7,005.3
	별거·사별·이혼·기타	(2)	50.0	0.0	50.0	0.0	0.0	1,850.0
가구원수	1명	(19)	47.4	10.5	15.8	21.1	5.3	3,443.4
	2명	(9)	22.2	11.1	33.3	11.1	22.2	4,366.7
	3명	(7)	14.3	14.3	42.9	14.3	14.3	4,142.9
	4명 이상	(13)	7.7	0.0	46.2	7.7	38.5	8,353.8
자녀수	0명	(31)	32.3	9.7	25.8	19.4	12.9	4,113.7
	1명	(4)	25.0	0.0	75.0	0.0	0.0	2,625.0
	2명 이상	(13)	15.4	7.7	30.8	7.7	38.5	8,023.1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0)	45.0	10.0	30.0	15.0	0.0	2,280.0
	200~300만원 미만	(11)	0.0	9.1	45.5	18.2	27.3	6,345.5
	300~400만원 미만	(4)	75.0	0.0	0.0	25.0	0.0	1,600.0
	400~500만원 미만	(7)	14.3	0.0	0.0	14.3	71.4	11,942.9
	500만원 이상	(6)	0.0	16.7	66.7	0.0	16.7	6,154.2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표 IV-23〉 주택 임차료(월세)

(base 보증금 있는 월세 거주 응답자, n=48,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75만원 미만	75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48)	22.9	31.3	33.3	2.1	10.4	50.3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1)	19.0	28.6	38.1	0.0	14.3	58.4
	가입	(27)	25.9	33.3	29.6	3.7	7.4	44.0
성별	남성	(23)	26.1	26.1	39.1	0.0	8.7	50.5
	여성	(25)	20.0	36.0	28.0	4.0	12.0	50.1
연령	20세~29세	(6)	16.7	33.3	50.0	0.0	0.0	42.7
	30세~39세	(12)	25.0	25.0	50.0	0.0	0.0	40.4
	40세~49세	(12)	16.7	16.7	50.0	8.3	8.3	55.0
	50세~59세	(11)	18.2	45.5	9.1	0.0	27.3	62.4
	60세 이상	(7)	42.9	42.9	0.0	0.0	14.3	46.9
수도권	수도권	(39)	17.9	30.8	38.5	0.0	12.8	54.1
	비수도권	(9)	44.4	33.3	11.1	11.1	0.0	33.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9)	33.3	22.2	11.1	0.0	33.3	69.0
	2~3년제 대학	(10)	20.0	40.0	40.0	0.0	0.0	37.4
	4년제 대학	(27)	22.2	33.3	33.3	3.7	7.4	48.3
	대학원 석사 이상	(2)	0.0	0.0	100.0	0.0	0.0	58.0
혼인상태	미혼	(27)	22.2	40.7	37.0	0.0	0.0	37.3
	기혼	(19)	15.8	21.1	31.6	5.3	26.3	72.4
	별거·사별·이혼·기타	(2)	100.0	0.0	0.0	0.0	0.0	16.5
가구원수	1명	(19)	31.6	36.8	31.6	0.0	0.0	35.1
	2명	(9)	33.3	22.2	44.4	0.0	0.0	40.0
	3명	(7)	0.0	57.1	28.6	0.0	14.3	58.6
	4명 이상	(13)	15.4	15.4	30.8	7.7	30.8	75.2
자녀수	0명	(31)	25.8	35.5	38.7	0.0	0.0	37.7
	1명	(4)	0.0	25.0	50.0	0.0	25.0	80.0
	2명 이상	(13)	23.1	23.1	15.4	7.7	30.8	71.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0)	30.0	35.0	35.0	0.0	0.0	36.6
	200~300만원 미만	(11)	27.3	18.2	27.3	9.1	18.2	53.2
	300~400만원 미만	(4)	0.0	75.0	0.0	0.0	25.0	46.8
	400~500만원 미만	(7)	14.3	14.3	57.1	0.0	14.3	72.9
	500만원 이상	(6)	16.7	33.3	33.3	0.0	16.7	6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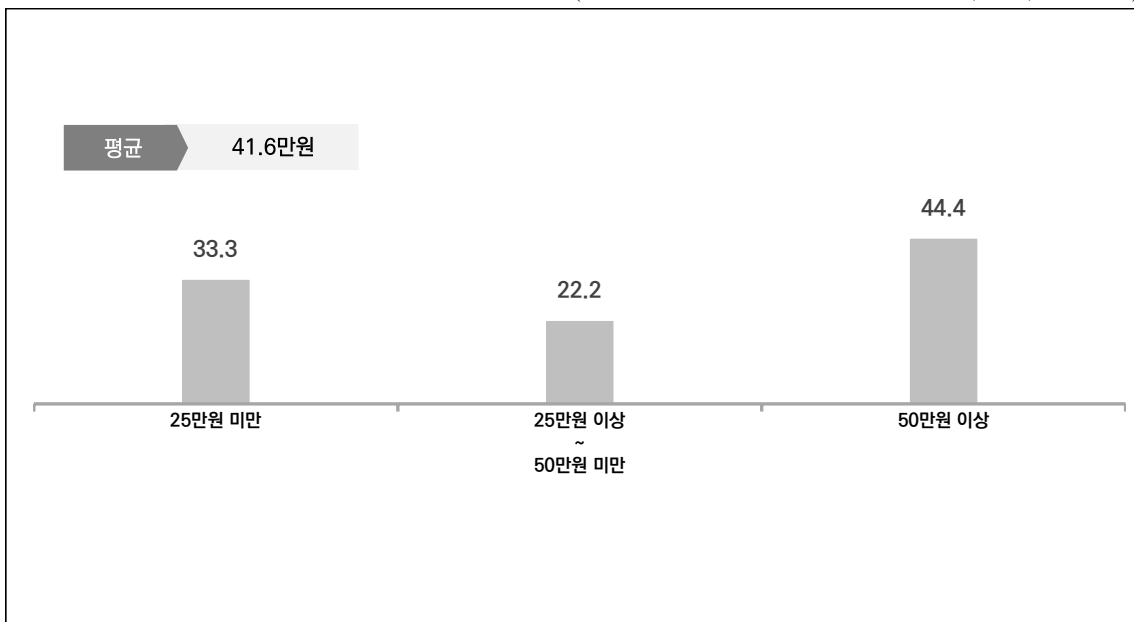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에 대해 물어본 결과, ‘50만원 이상’이 44.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5만원 미만’(33.3%), ‘25만원 이상~50만원 미만’(22.2%) 순으로 나타남. 보증금 없는 월세의 평균은 41.6만원으로 나타남

〈그림 IV-23〉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base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응답자, n=9, 단위: %)



〈표 IV-24〉 주택 임차료(보증금 없는 월세)

(base 보증금 없는 월세 거주 응답자, n=9,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 례 수	25만원 미만	25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9)	33.3	22.2	44.4	41.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5)	60.0	0.0	40.0	39.2
	가입	(4)	0.0	50.0	50.0	44.5
성 별	남성	(6)	33.3	16.7	50.0	37.5
	여성	(3)	33.3	33.3	33.3	49.7
연 령	20세~29세	(3)	0.0	33.3	66.7	46.0
	30세~39세	(3)	33.3	33.3	33.3	30.3
	40세~49세	(3)	66.7	0.0	33.3	48.3
	50세~59세	(0)	-	-	-	-
	60세 이상	(0)	-	-	-	-
수 도 권	수도권	(7)	28.6	28.6	42.9	35.7
	비수도권	(2)	50.0	0.0	50.0	62.0
최 종 학 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	0.0	0.0	100.0	50.0
	2~3년제 대학	(2)	0.0	0.0	100.0	75.0
	4년제 대학	(5)	40.0	40.0	20.0	30.0
	대학원 석사 이상	(1)	100.0	0.0	0.0	24.0
혼 인 상 태	미혼	(7)	42.9	14.3	42.9	35.6
	기혼	(1)	0.0	0.0	100.0	100.0
	별거·사별·이혼·기타	(1)	0.0	100.0	0.0	25.0
가 구 원 수	1명	(4)	50.0	25.0	25.0	31.3
	2명	(1)	0.0	100.0	0.0	25.0
	3명	(2)	50.0	0.0	50.0	62.0
	4명 이상	(2)	0.0	0.0	100.0	50.0
자 녀 수	0명	(8)	37.5	25.0	37.5	34.3
	1명	(1)	0.0	0.0	100.0	100.0
	2명 이상	(0)	-	-	-	-
월 평균 세 전 개 인 소 득	200만원 미만	(6)	50.0	16.7	33.3	39.0
	200~300만원 미만	(0)	-	-	-	-
	300~400만원 미만	(0)	-	-	-	-
	400~500만원 미만	(2)	0.0	50.0	50.0	37.5
	500만원 이상	(1)	0.0	0.0	100.0	6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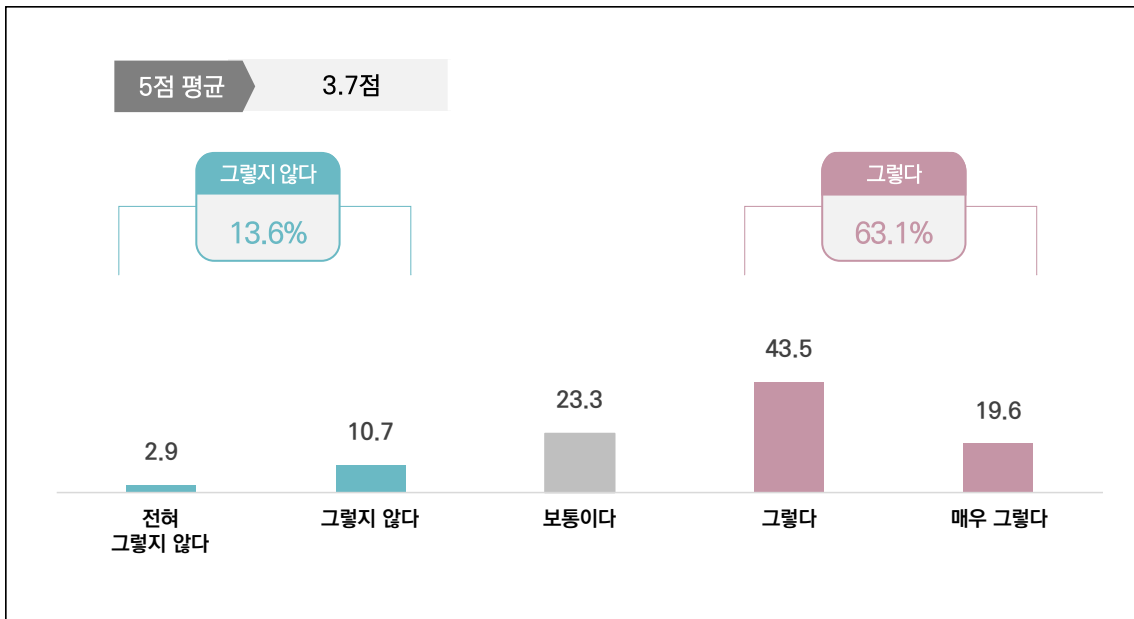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자가 소유 필요 여부

-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63.1%로 ‘그렇지 않다’(13.6%)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7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64.1%, ‘여성’ 61.7%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59.5%, ‘30세~39세’ 66.0%, ‘40세~49세’ 62.7%, ‘50세~59세’ 63.1%, ‘60세 이상’ 62.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65.3%, ‘비수도권’ 59.3%로 나타남

〈그림 IV-24〉 자가 소유 필요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25〉 자가 소유 필요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550)	2.9	10.7	23.3	43.5	19.6	13.6	63.1	3.7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5.2	11.3	29.4	41.1	13.0	16.5	54.1	3.5
	가입	(319)	1.3	10.3	18.8	45.1	24.5	11.6	69.6	3.8
성별	남성	(315)	2.9	8.9	24.1	44.4	19.7	11.7	64.1	3.7
	여성	(235)	3.0	13.2	22.1	42.1	19.6	16.2	61.7	3.6
연령	20세~29세	(37)	0.0	8.1	32.4	40.5	18.9	8.1	59.5	3.7
	30세~39세	(106)	4.7	8.5	20.8	42.5	23.6	13.2	66.0	3.7
	40세~49세	(158)	1.9	12.7	22.8	41.8	20.9	14.6	62.7	3.7
	50세~59세	(141)	2.8	9.2	24.8	46.8	16.3	12.1	63.1	3.6
	60세 이상	(108)	3.7	13.0	21.3	43.5	18.5	16.7	62.0	3.6
수도권	수도권	(346)	2.0	10.1	22.5	42.8	22.5	12.1	65.3	3.7
	비수도권	(204)	4.4	11.8	24.5	44.6	14.7	16.2	59.3	3.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3.2	12.7	23.8	44.4	15.9	15.9	60.3	3.6
	2~3년제 대학	(62)	4.8	8.1	29.0	38.7	19.4	12.9	58.1	3.6
	4년제 대학	(359)	2.5	10.6	23.1	44.6	19.2	13.1	63.8	3.7
	대학원 석사 이상	(66)	3.0	12.1	18.2	40.9	25.8	15.2	66.7	3.7
혼인상태	미혼	(173)	3.5	14.5	28.3	39.9	13.9	17.9	53.8	3.5
	기혼	(356)	2.5	7.6	21.9	45.8	22.2	10.1	68.0	3.8
	별거·사별·이혼·기타	(21)	4.8	33.3	4.8	33.3	23.8	38.1	57.1	3.4
가구원수	1명	(71)	2.8	19.7	22.5	38.0	16.9	22.5	54.9	3.5
	2명	(114)	5.3	14.9	17.5	42.1	20.2	20.2	62.3	3.6
	3명	(189)	2.1	8.5	22.8	49.7	16.9	10.6	66.7	3.7
	4명 이상	(176)	2.3	6.8	27.8	39.8	23.3	9.1	63.1	3.8
자녀수	0명	(215)	3.7	14.4	26.0	39.5	16.3	18.1	55.8	3.5
	1명	(137)	2.9	8.0	18.2	53.3	17.5	10.9	70.8	3.7
	2명 이상	(198)	2.0	8.6	23.7	40.9	24.7	10.6	65.7	3.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4.1	14.9	28.9	38.8	13.2	19.0	52.1	3.4
	200~300만원 미만	(90)	2.2	15.6	23.3	44.4	14.4	17.8	58.9	3.5
	300~400만원 미만	(96)	2.1	9.4	30.2	38.5	19.8	11.5	58.3	3.6
	400~500만원 미만	(85)	3.5	9.4	17.6	48.2	21.2	12.9	69.4	3.7
	500만원 이상	(158)	2.5	6.3	17.7	46.8	26.6	8.9	73.4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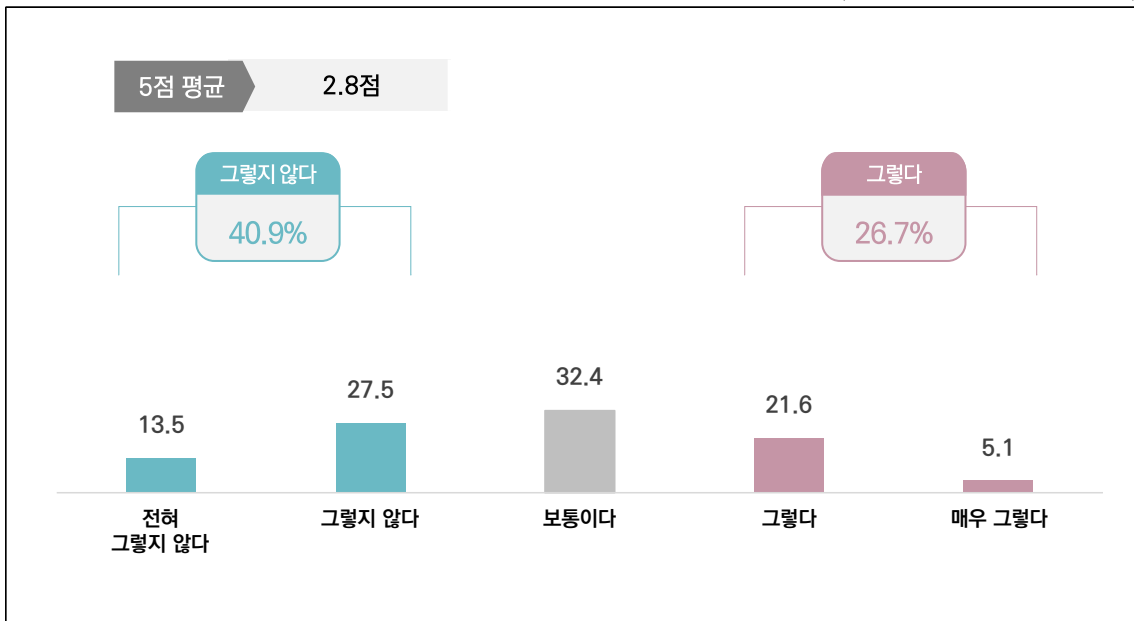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 ‘집값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40.9%로 ‘그렇다’(26.7%)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가 41.3%, ‘여성’ 40.4%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지 않다’가 29.7%, ‘30세~39세’ 49.1%, ‘40세~49세’ 32.3%, ‘50세~59세’ 44.7%, ‘60세 이상’ 44.4%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가 43.4%, ‘비수도권’ 36.8%로 나타남

〈그림 IV-25〉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26〉 집값수준·소득수준 고려 시 원하는 주택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550)	13.5	27.5	32.4	21.6	5.1	40.9	26.7	2.8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13.0	27.7	30.7	25.1	3.5	40.7	28.6	2.8
	가입	(319)	13.8	27.3	33.5	19.1	6.3	41.1	25.4	2.8
성별	남성	(315)	14.9	26.3	32.7	22.2	3.8	41.3	26.0	2.7
	여성	(235)	11.5	28.9	31.9	20.9	6.8	40.4	27.7	2.8
연령	20세~29세	(37)	13.5	16.2	40.5	24.3	5.4	29.7	29.7	2.9
	30세~39세	(106)	21.7	27.4	27.4	17.9	5.7	49.1	23.6	2.6
	40세~49세	(158)	12.0	20.3	40.5	20.3	7.0	32.3	27.2	2.9
	50세~59세	(141)	11.3	33.3	31.9	20.6	2.8	44.7	23.4	2.7
	60세 이상	(108)	10.2	34.3	23.1	27.8	4.6	44.4	32.4	2.8
수도권	수도권	(346)	15.9	27.5	30.9	19.7	6.1	43.4	25.7	2.7
	비수도권	(204)	9.3	27.5	34.8	25.0	3.4	36.8	28.4	2.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11.1	30.2	28.6	28.6	1.6	41.3	30.2	2.8
	2~3년제 대학	(62)	14.5	29.0	21.0	27.4	8.1	43.5	35.5	2.9
	4년제 대학	(359)	14.2	27.3	34.3	19.5	4.7	41.5	24.2	2.7
	대학원 석사 이상	(66)	10.6	24.2	36.4	21.2	7.6	34.8	28.8	2.9
혼인상태	미혼	(173)	22.5	31.8	31.2	13.3	1.2	54.3	14.5	2.4
	기혼	(356)	9.0	25.0	33.1	25.6	7.3	34.0	32.9	3.0
	별거·사별·이혼·기타	(21)	14.3	33.3	28.6	23.8	0.0	47.6	23.8	2.6
가구원수	1명	(71)	26.8	25.4	29.6	18.3	0.0	52.1	18.3	2.4
	2명	(114)	7.0	36.8	32.5	21.9	1.8	43.9	23.7	2.7
	3명	(189)	11.6	24.9	34.9	21.7	6.9	36.5	28.6	2.9
	4명 이상	(176)	14.2	25.0	30.7	22.7	7.4	39.2	30.1	2.8
자녀수	0명	(215)	19.5	30.2	32.1	16.3	1.9	49.8	18.1	2.5
	1명	(137)	8.8	21.2	36.5	26.3	7.3	29.9	33.6	3.0
	2명 이상	(198)	10.1	28.8	29.8	24.2	7.1	38.9	31.3	2.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23.1	28.1	33.1	14.0	1.7	51.2	15.7	2.4
	200~300만원 미만	(90)	15.6	34.4	35.6	11.1	3.3	50.0	14.4	2.5
	300~400만원 미만	(96)	8.3	36.5	34.4	16.7	4.2	44.8	20.8	2.7
	400~500만원 미만	(85)	9.4	27.1	28.2	29.4	5.9	36.5	35.3	3.0
	500만원 이상	(158)	10.1	17.7	31.0	32.3	8.9	27.8	41.1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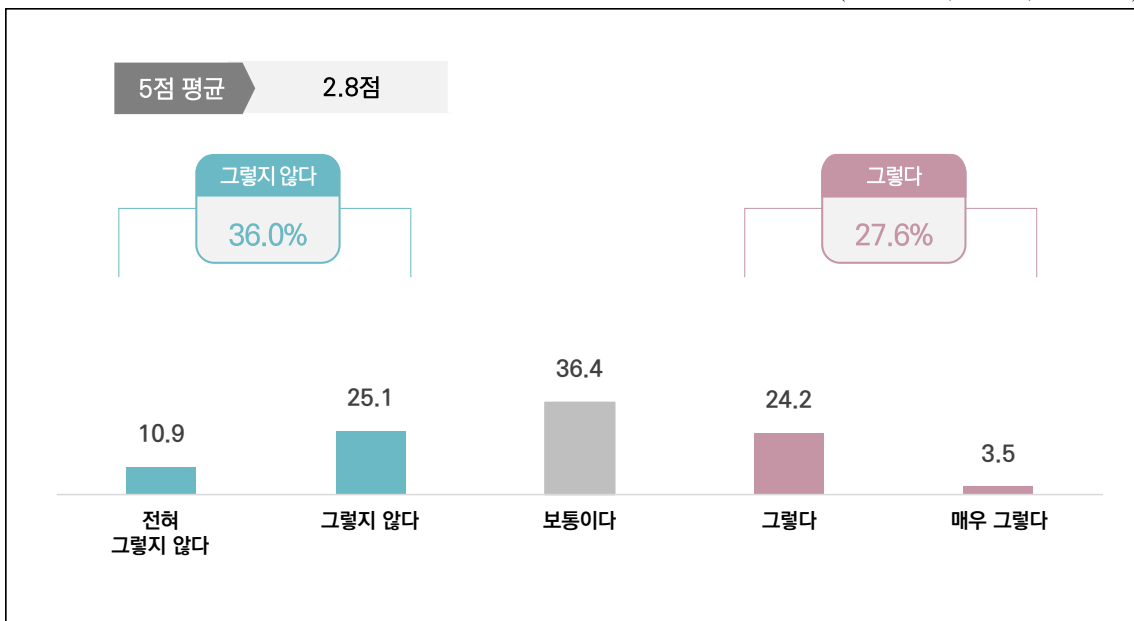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8)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이 가능한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36.0%로 ‘그렇다’(27.6%) 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2.8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가 38.1%, ‘여성’ 33.2%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지 않다’가 24.3%, ‘30세~39세’ 35.8%, ‘40세~49세’ 31.6%, ‘50세~59세’ 41.8%, ‘60세 이상’ 38.9%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가 37.6%, ‘비수도권’ 33.3%로 나타남

〈그림 IV-26〉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27〉 정부정책 등 도움으로 원하는 집 마련 가능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550)	10.9	25.1	36.4	24.2	3.5	36.0	27.6	2.8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9.5	25.5	41.6	21.2	2.2	35.1	23.4	2.8
	가입	(319)	11.9	24.8	32.6	26.3	4.4	36.7	30.7	2.9
성별	남성	(315)	11.7	26.3	36.5	22.2	3.2	38.1	25.4	2.8
	여성	(235)	9.8	23.4	36.2	26.8	3.8	33.2	30.6	2.9
연령	20세~29세	(37)	10.8	13.5	37.8	37.8	0.0	24.3	37.8	3.0
	30세~39세	(106)	14.2	21.7	33.0	27.4	3.8	35.8	31.1	2.8
	40세~49세	(158)	10.1	21.5	36.7	27.2	4.4	31.6	31.6	2.9
	50세~59세	(141)	12.1	29.8	37.6	16.3	4.3	41.8	20.6	2.7
	60세 이상	(108)	7.4	31.5	37.0	22.2	1.9	38.9	24.1	2.8
수도권	수도권	(346)	11.6	26.0	34.4	24.3	3.8	37.6	28.0	2.8
	비수도권	(204)	9.8	23.5	39.7	24.0	2.9	33.3	27.0	2.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11.1	27.0	30.2	28.6	3.2	38.1	31.7	2.9
	2~3년제 대학	(62)	9.7	24.2	35.5	27.4	3.2	33.9	30.6	2.9
	4년제 대학	(359)	10.3	26.2	36.2	24.0	3.3	36.5	27.3	2.8
	대학원 석사 이상	(66)	15.2	18.2	43.9	18.2	4.5	33.3	22.7	2.8
혼인상태	미혼	(173)	13.9	25.4	38.2	20.2	2.3	39.3	22.5	2.7
	기혼	(356)	9.6	25.0	34.8	26.7	3.9	34.6	30.6	2.9
	별거·사별·이혼·기타	(21)	9.5	23.8	47.6	14.3	4.8	33.3	19.0	2.8
가구원수	1명	(71)	18.3	23.9	28.2	25.4	4.2	42.3	29.6	2.7
	2명	(114)	8.8	28.1	40.4	19.3	3.5	36.8	22.8	2.8
	3명	(189)	9.5	24.9	39.2	23.3	3.2	34.4	26.5	2.9
	4명 이상	(176)	10.8	23.9	34.1	27.8	3.4	34.7	31.3	2.9
자녀수	0명	(215)	12.6	25.6	37.2	20.9	3.7	38.1	24.7	2.8
	1명	(137)	9.5	24.1	39.4	23.4	3.6	33.6	27.0	2.9
	2명 이상	(198)	10.1	25.3	33.3	28.3	3.0	35.4	31.3	2.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13.2	26.4	37.2	20.7	2.5	39.7	23.1	2.7
	200~300만원 미만	(90)	14.4	21.1	40.0	23.3	1.1	35.6	24.4	2.8
	300~400만원 미만	(96)	6.3	33.3	37.5	19.8	3.1	39.6	22.9	2.8
	400~500만원 미만	(85)	10.6	20.0	31.8	31.8	5.9	30.6	37.6	3.0
	500만원 이상	(158)	10.1	24.1	35.4	25.9	4.4	34.2	30.4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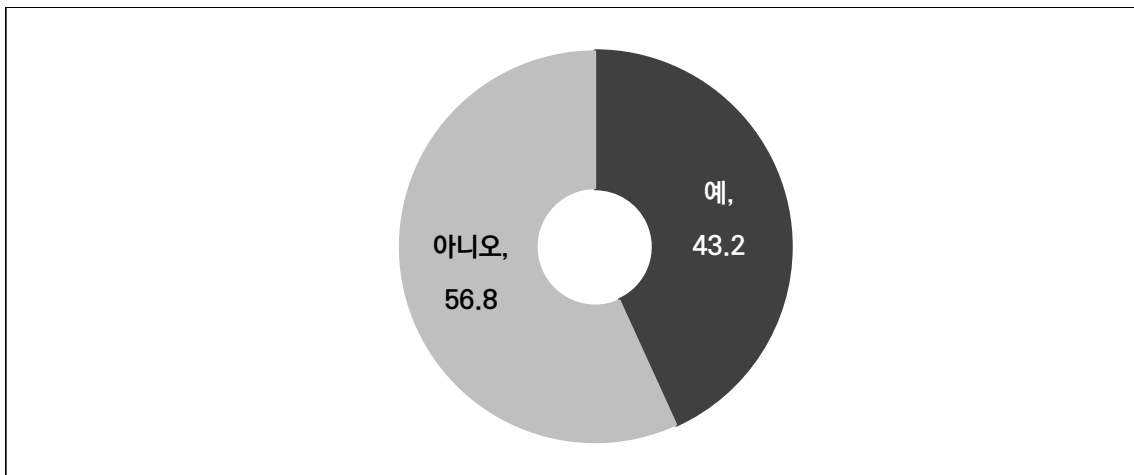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43.2%가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6.0%)의 자산 보유율이 ‘여성’(39.3%)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39세’(54.3%)의 자산 보유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6.5%)의 자산 보유율이 ‘비수도권’(37.2%)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7〉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347, 단위: %)



〈표 IV-2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여부

(base 자가는 꼭 소유해야 한다는 응답자, n=347, 단위: 명, %)

구 분	사 례 수	예	아 니 오
전 체	(347)	43.2	56.8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125)	21.6	78.4
가입	(222)	55.4	44.6
성 별			
남성	(202)	46.0	54.0
여성	(145)	39.3	60.7
연 령			
20세~29세	(22)	50.0	50.0
30세~39세	(70)	54.3	45.7
40세~49세	(99)	48.5	51.5
50세~59세	(89)	39.3	60.7
60세 이상	(67)	26.9	73.1
수도권			
수도권	(226)	46.5	53.5
비수도권	(121)	37.2	62.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8)	34.2	65.8
2~3년제 대학	(36)	36.1	63.9
4년제 대학	(229)	45.0	55.0
대학원 석사 이상	(44)	47.7	52.3
혼인상태			
미혼	(93)	45.2	54.8
기혼	(242)	43.0	57.0
별거·사별·이혼·기타	(12)	33.3	66.7
가구원수			
1명	(39)	53.8	46.2
2명	(71)	33.8	66.2
3명	(126)	45.2	54.8
4명 이상	(111)	43.2	56.8
자녀수			
0명	(120)	45.0	55.0
1명	(97)	44.3	55.7
2명 이상	(130)	40.8	59.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63)	31.7	68.3
200~300만원 미만	(53)	43.4	56.6
300~400만원 미만	(56)	35.7	64.3
400~500만원 미만	(59)	59.3	40.7
500만원 이상	(116)	44.8	5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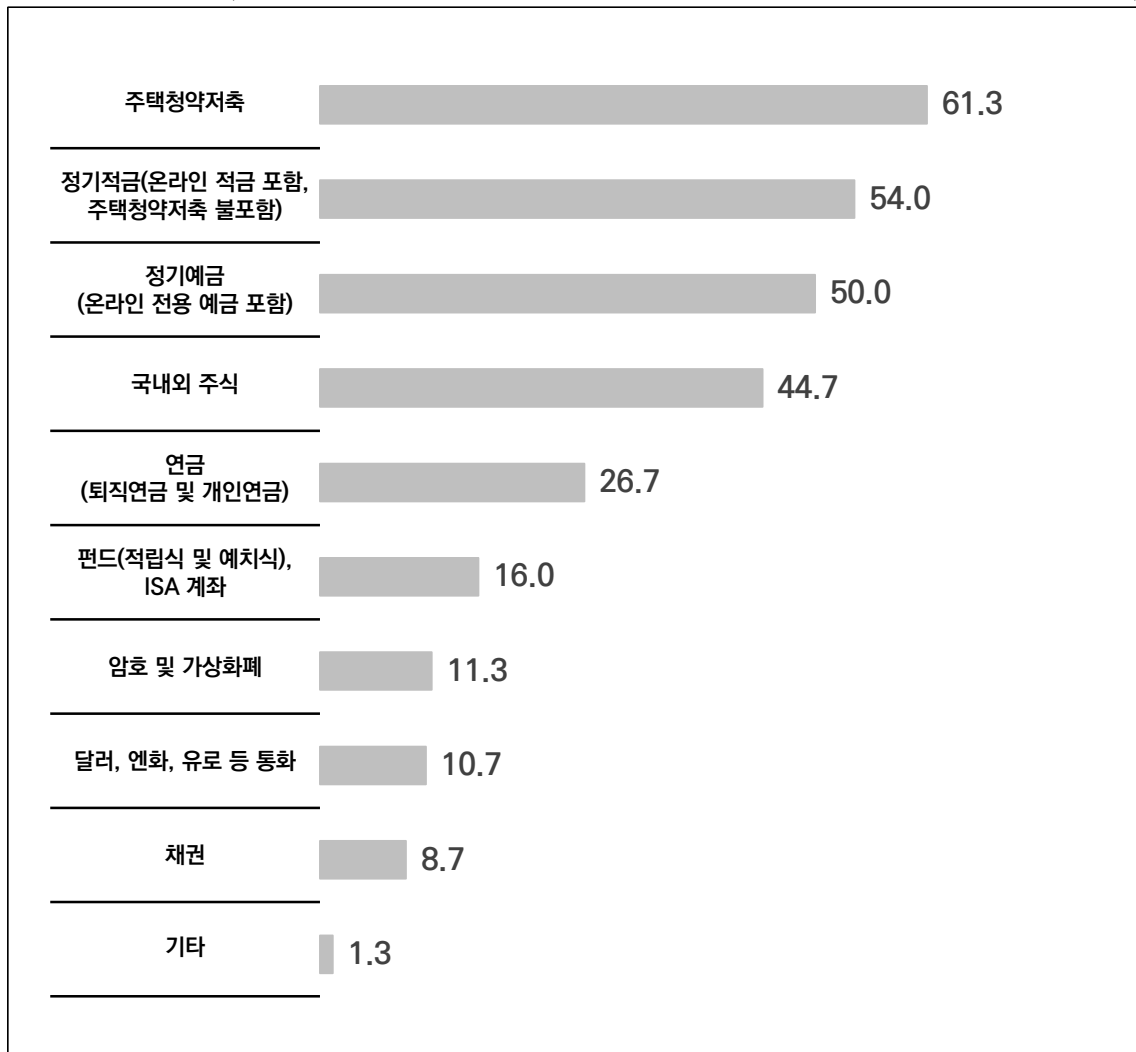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0)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

-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에 대해 물어본 결과, ‘주택청약저축’이 61.3%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주택청약저축’이 ‘남성’ 61.3%, ‘여성’ 61.4%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주택청약저축’이 ‘20세~29세’ 63.6%, ‘30세~39세’ 73.7%, ‘40세~49세’ 60.4%, ‘50세~59세’ 51.4%, ‘60세 이상’ 55.6%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주택청약저축’이 ‘수도권’ 61.9%, ‘비수도권’ 60.0%로 나타남

〈그림 IV-28〉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150, 단위: %)



〈표 IV-29〉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 종류(중복응답)

(base 부동산 소유를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는 응답자, n=1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전 체		(150)	61.3	54.0	50.0	44.7	26.7	16.0	11.3	10.7	8.7	1.3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7)	7.4	51.9	55.6	37.0	29.6	11.1	14.8	3.7	0.0	3.7
	가입	(123)	73.2	54.5	48.8	46.3	26.0	17.1	10.6	12.2	10.6	0.8
성별	남성	(93)	61.3	48.4	46.2	48.4	30.1	12.9	9.7	12.9	8.6	2.2
	여성	(57)	61.4	63.2	56.1	38.6	21.1	21.1	14.0	7.0	8.8	0.0
연령	20세~29세	(11)	63.6	72.7	63.6	45.5	18.2	18.2	18.2	9.1	9.1	0.0
	30세~39세	(38)	73.7	65.8	50.0	52.6	26.3	13.2	13.2	18.4	10.5	0.0
	40세~49세	(48)	60.4	45.8	47.9	54.2	22.9	12.5	12.5	14.6	12.5	0.0
	50세~59세	(35)	51.4	54.3	54.3	28.6	22.9	17.1	5.7	2.9	5.7	2.9
	60세 이상	(18)	55.6	38.9	38.9	33.3	50.0	27.8	11.1	0.0	0.0	5.6
수도권	수도권	(105)	61.9	56.2	49.5	44.8	27.6	18.1	8.6	11.4	9.5	1.0
	비수도권	(45)	60.0	48.9	51.1	44.4	24.4	11.1	17.8	8.9	6.7	2.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13)	46.2	46.2	53.8	30.8	23.1	7.7	7.7	7.7	7.7	0.0
	2~3년제 대학	(13)	53.8	61.5	30.8	38.5	23.1	0.0	0.0	7.7	7.7	0.0
	4년제 대학	(103)	62.1	58.3	53.4	46.6	31.1	19.4	13.6	11.7	8.7	1.0
	대학원 석사 이상	(21)	71.4	33.3	42.9	47.6	9.5	14.3	9.5	9.5	9.5	4.8
혼인상태	미혼	(42)	57.1	64.3	38.1	47.6	19.0	11.9	9.5	9.5	7.1	2.4
	기혼	(104)	62.5	50.0	53.8	44.2	30.8	17.3	12.5	11.5	9.6	1.0
	별거·사별·이혼·기타	(4)	75.0	50.0	75.0	25.0	0.0	25.0	0.0	0.0	0.0	0.0
가구원수	1명	(21)	52.4	76.2	42.9	47.6	23.8	9.5	4.8	9.5	4.8	4.8
	2명	(24)	75.0	54.2	58.3	37.5	20.8	20.8	8.3	12.5	8.3	0.0
	3명	(57)	56.1	43.9	45.6	38.6	28.1	12.3	12.3	3.5	10.5	1.8
	4명 이상	(48)	64.6	56.3	54.2	54.2	29.2	20.8	14.6	18.8	8.3	0.0
자녀수	0명	(54)	59.3	64.8	46.3	46.3	18.5	11.1	9.3	11.1	7.4	1.9
	1명	(43)	60.5	41.9	55.8	30.2	27.9	14.0	14.0	2.3	11.6	2.3
	2명 이상	(53)	64.2	52.8	49.1	54.7	34.0	22.6	11.3	17.0	7.5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20)	85.0	45.0	55.0	20.0	10.0	15.0	5.0	5.0	5.0	0.0
	200~300만원 미만	(23)	43.5	56.5	47.8	43.5	21.7	4.3	8.7	0.0	4.3	4.3
	300~400만원 미만	(20)	45.0	50.0	50.0	40.0	25.0	20.0	10.0	0.0	0.0	0.0
	400~500만원 미만	(35)	62.9	65.7	54.3	48.6	34.3	20.0	11.4	14.3	8.6	2.9
	500만원 이상	(52)	65.4	50.0	46.2	53.8	30.8	17.3	15.4	19.2	15.4	0.0

- ① 주택청약저축
 - ② 정기적금(온라인 전용 적금 포함, 주택청약저축 불포함)
 - ③ 정기예금(온라인 전용 예금 포함)
 - ④ 국내외 주식
 - ⑤ 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 ⑥ 펀드(적립식 및 예치식), ISA 계좌
 - ⑦ 암호 및 가상화폐
 - ⑧ 달러, 엔화, 유로 등 통화
 - ⑨ 채권
 - ⑩ 기타: 금, CMA, 사업소득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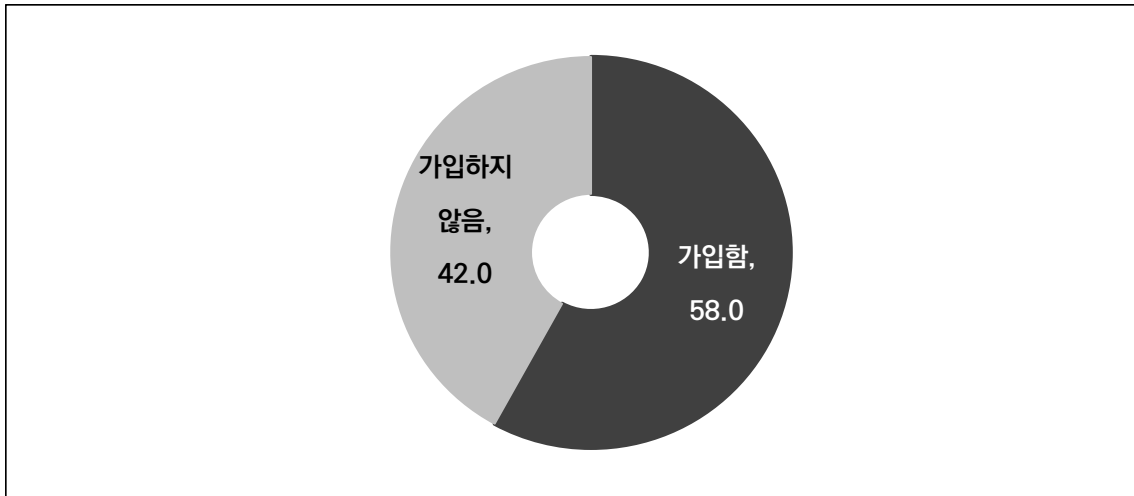
4.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58.0%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60.9%)의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률이 ‘남성’(55.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39세’(71.7%)의 가입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62.4%)의 가입률이 ‘비수도권’(50.5%)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29〉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30〉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가입함	가입하지 않음
전 체		(550)	58.0	42.0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0.0	100.0
	가입	(319)	100.0	0.0
성별	남성	(315)	55.9	44.1
	여성	(235)	60.9	39.1
연령	20세~29세	(37)	56.8	43.2
	30세~39세	(106)	71.7	28.3
	40세~49세	(158)	67.1	32.9
	50세~59세	(141)	45.4	54.6
	60세 이상	(108)	48.1	51.9
수도권	수도권	(346)	62.4	37.6
	비수도권	(204)	50.5	49.5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47.6	52.4
	2~3년제 대학	(62)	46.8	53.2
	4년제 대학	(359)	60.7	39.3
	대학원 석사 이상	(66)	63.6	36.4
혼인상태	미혼	(173)	57.8	42.2
	기혼	(356)	58.7	41.3
	별거·사별·이혼·기타	(21)	47.6	52.4
가구원수	1명	(71)	56.3	43.7
	2명	(114)	49.1	50.9
	3명	(189)	62.4	37.6
	4명 이상	(176)	59.7	40.3
자녀수	0명	(215)	57.7	42.3
	1명	(137)	58.4	41.6
	2명 이상	(198)	58.1	41.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47.9	52.1
	200~300만원 미만	(90)	60.0	40.0
	300~400만원 미만	(96)	65.6	34.4
	400~500만원 미만	(85)	60.0	40.0
	500만원 이상	(158)	58.9	4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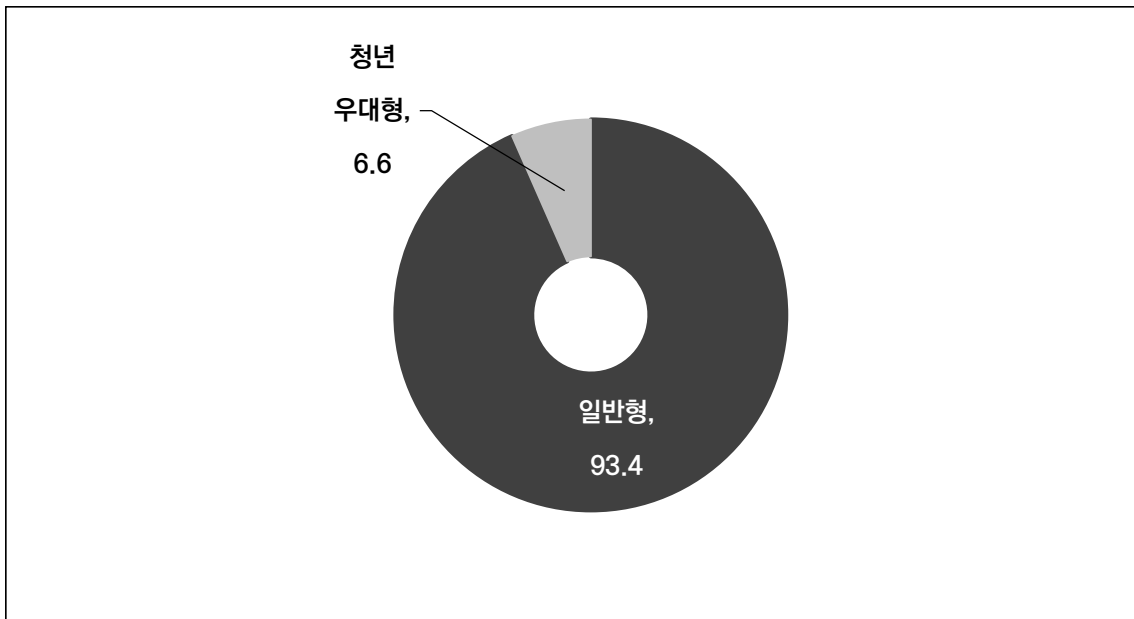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에 대해 물어본 결과, 가입자 중 93.4%가 ‘일반형’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95.5%)의 일반형 가입률이 ‘여성’(90.9%)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40세~49세’, ‘50세~59세’, ‘60세 이상’은 응답자 전원이 ‘일반형’으로 가입한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비수도권’(96.1%)의 일반형 가입률이 ‘수도권’(92.1%) 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0〉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



〈표 IV-3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형태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일반형 (주택청약저축)	청년우대형 (청년우대형/청년주택드림청약)
전 체		(319)	93.4	6.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0)	-	-
	가입	(319)	93.4	6.6
성별	남성	(176)	95.5	4.5
	여성	(143)	90.9	9.1
연령	20세~29세	(21)	47.6	52.4
	30세~39세	(76)	86.8	13.2
	40세~49세	(106)	100.0	0.0
	50세~59세	(64)	100.0	0.0
	60세 이상	(52)	100.0	0.0
수도권	수도권	(216)	92.1	7.9
	비수도권	(103)	96.1	3.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100.0	0.0
	2~3년제 대학	(29)	96.6	3.4
	4년제 대학	(218)	90.8	9.2
	대학원 석사 이상	(42)	100.0	0.0
혼인상태	미혼	(100)	83.0	17.0
	기혼	(209)	98.6	1.4
	별거·사별·이혼·기타	(10)	90.0	10.0
가구원수	1명	(40)	82.5	17.5
	2명	(56)	94.6	5.4
	3명	(118)	96.6	3.4
	4명 이상	(105)	93.3	6.7
자녀수	0명	(124)	84.7	15.3
	1명	(80)	98.8	1.3
	2명 이상	(115)	99.1	0.9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58)	93.1	6.9
	200~300만원 미만	(54)	88.9	11.1
	300~400만원 미만	(63)	90.5	9.5
	400~500만원 미만	(51)	90.2	9.8
	500만원 이상	(93)	100.0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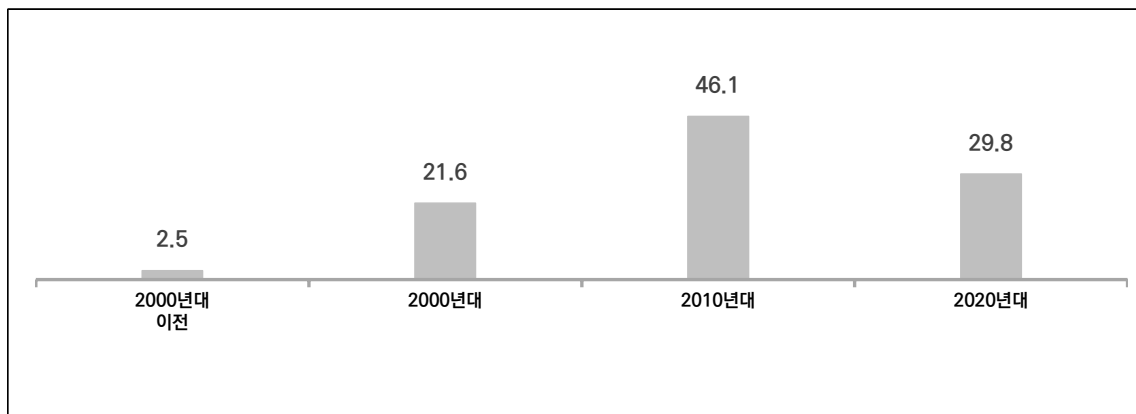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2010년대’가 46.1%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2020년대’(29.8%), ‘2000년대’(21.6%), ‘2000년대 이전’(2.5%)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4.3%)과 ‘여성’(48.3%) 모두 ‘2010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2010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5.4%)과 ‘비수도권’(47.6%) 모두 ‘2010년대’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1〉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



〈표 IV-3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연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2000년대 이전	2000년대	2010년대	2020년대	
전 체	(319)	2.5	21.6	46.1	29.8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0)	-	-	-	
	가입	(319)	2.5	21.6	46.1	29.8
성별	남성	(176)	3.4	23.3	44.3	29.0
	여성	(143)	1.4	19.6	48.3	30.8
연령	20세~29세	(21)	0.0	0.0	38.1	61.9
	30세~39세	(76)	0.0	15.8	53.9	30.3
	40세~49세	(106)	0.9	20.8	48.1	30.2
	50세~59세	(64)	4.7	29.7	39.1	26.6
	60세 이상	(52)	7.7	30.8	42.3	19.2
수도권	수도권	(216)	2.8	23.1	45.4	28.7
	비수도권	(103)	1.9	18.4	47.6	32.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0.0	23.3	36.7	40.0
	2~3년제 대학	(29)	3.4	24.1	41.4	31.0
	4년제 대학	(218)	2.8	18.3	50.0	28.9
	대학원 석사 이상	(42)	2.4	35.7	35.7	26.2
혼인상태	미혼	(100)	1.0	14.0	50.0	35.0
	기혼	(209)	3.3	25.8	43.5	27.3
	별거·사별·이혼·기타	(10)	0.0	10.0	60.0	30.0
가구원수	1명	(40)	0.0	7.5	55.0	37.5
	2명	(56)	3.6	25.0	46.4	25.0
	3명	(118)	5.1	28.0	44.1	22.9
	4명 이상	(105)	0.0	18.1	44.8	37.1
자녀수	0명	(124)	1.6	16.9	48.4	33.1
	1명	(80)	6.3	26.3	45.0	22.5
	2명 이상	(115)	0.9	23.5	44.3	31.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58)	3.4	13.8	58.6	24.1
	200~300만원 미만	(54)	1.9	24.1	48.1	25.9
	300~400만원 미만	(63)	3.2	20.6	39.7	36.5
	400~500만원 미만	(51)	2.0	11.8	47.1	39.2
	500만원 이상	(93)	2.2	31.2	40.9	2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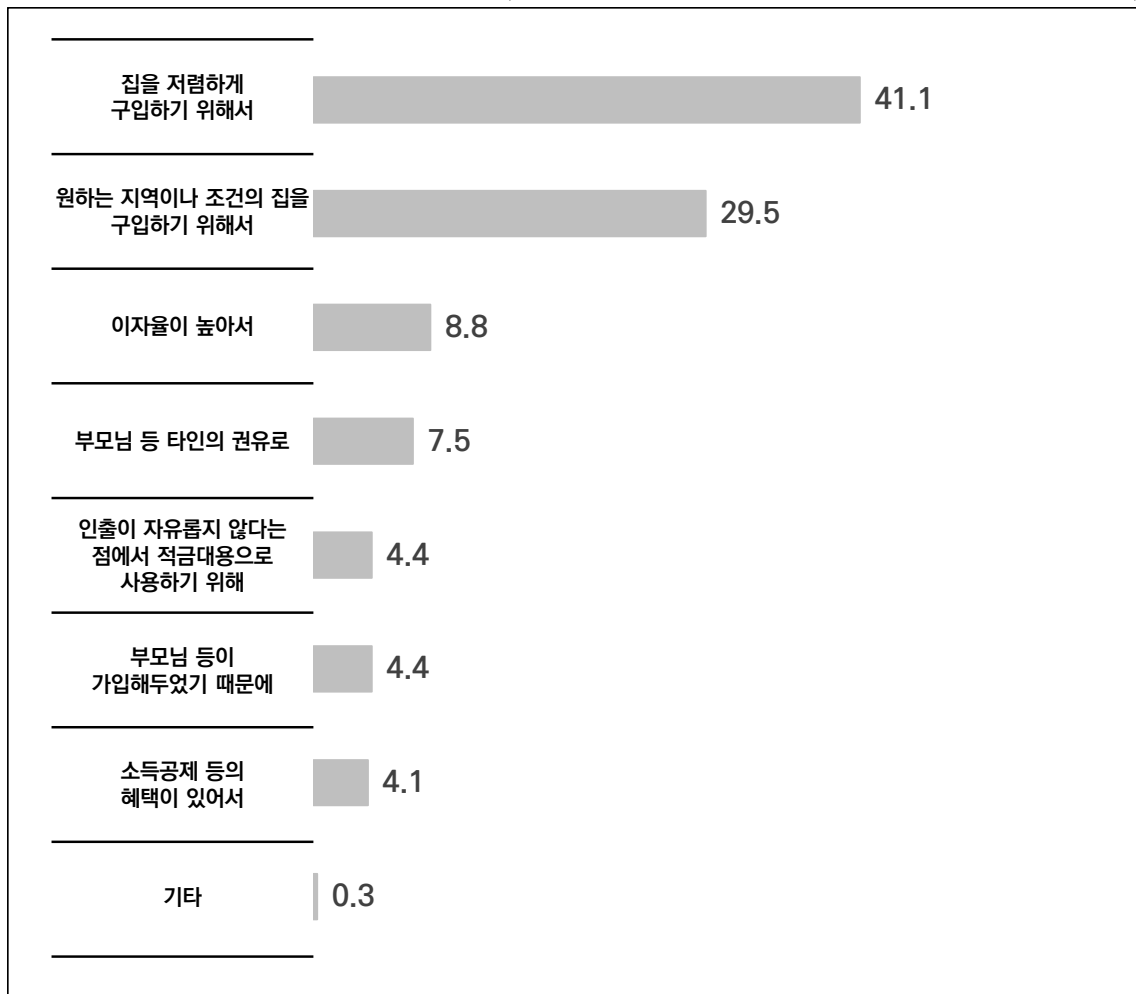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가 41.1%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가 ‘남성’ 40.3%, ‘여성’ 42.0%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가 ‘20세~29세’ 33.3%, ‘30세~39세’ 43.4%, ‘40세~49세’ 45.3%, ‘50세~59세’ 39.1%, ‘60세 이상’ 34.6%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가 ‘수도권’ 42.1%, ‘비수도권’ 38.8%로 나타남

〈그림 IV-32〉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



〈표 IV-3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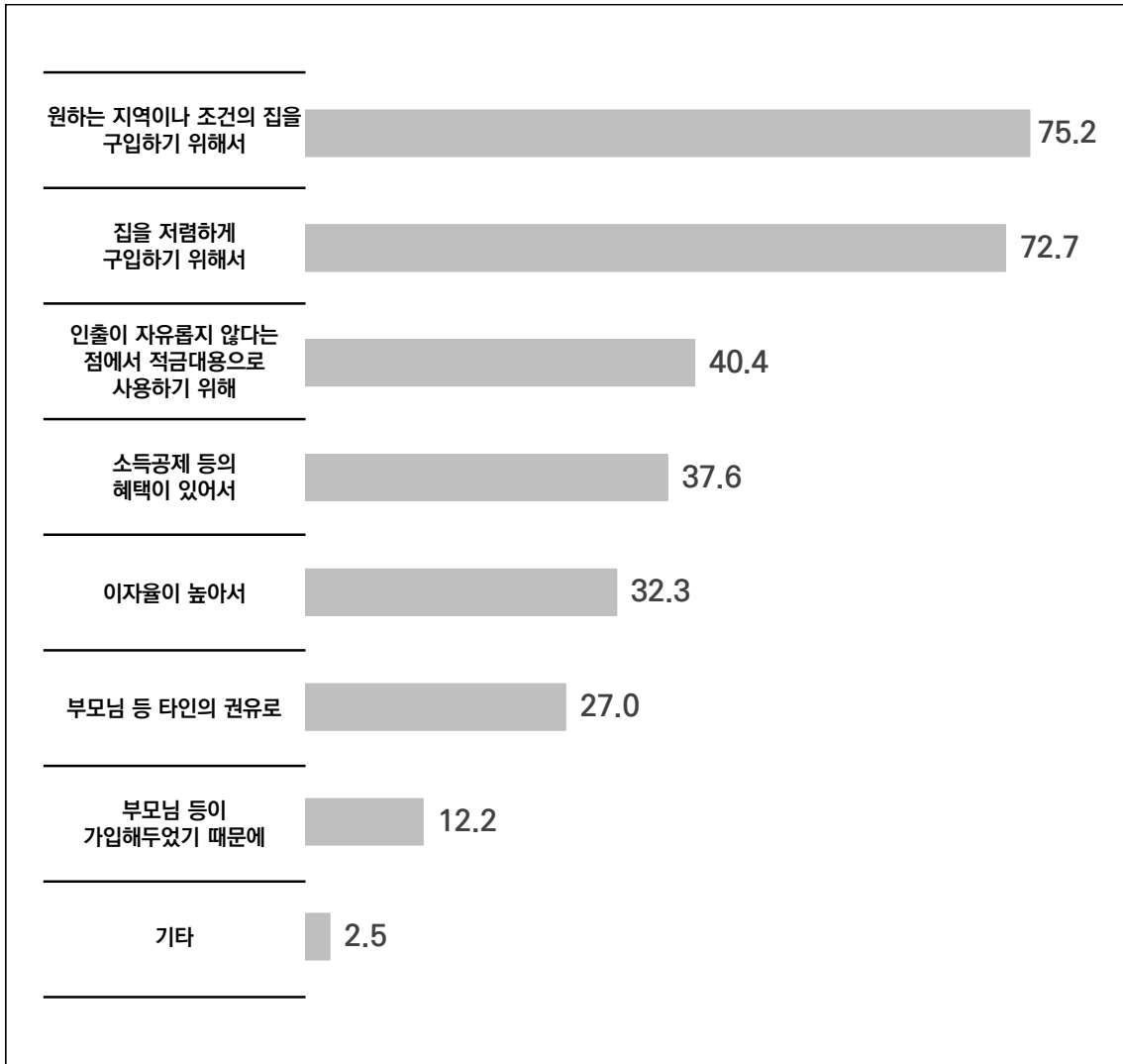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319)	41.1	29.5	8.8	7.5	4.4	4.4	4.1	0.3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0)	-	-	-	-	-	0.0	-
	가입	(319)	41.1	29.5	8.8	7.5	4.4	4.4	4.1
성별	남성	(176)	40.3	30.1	8.5	5.1	4.5	5.7	5.1
	여성	(143)	42.0	28.7	9.1	10.5	4.2	2.8	2.8
연령	20세~29세	(21)	33.3	28.6	14.3	9.5	4.8	9.5	0.0
	30세~39세	(76)	43.4	23.7	7.9	6.6	1.3	13.2	3.9
	40세~49세	(106)	45.3	24.5	10.4	8.5	4.7	0.9	5.7
	50세~59세	(64)	39.1	31.3	6.3	9.4	6.3	1.6	4.7
	60세 이상	(52)	34.6	46.2	7.7	3.8	5.8	0.0	1.9
수도권	수도권	(216)	42.1	31.5	6.9	7.4	3.2	4.6	4.2
	비수도권	(103)	38.8	25.2	12.6	7.8	6.8	3.9	3.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53.3	20.0	16.7	6.7	0.0	3.3	0.0
	2~3년제 대학	(29)	48.3	17.2	6.9	10.3	6.9	6.9	0.0
	4년제 대학	(218)	37.2	30.7	8.7	8.3	4.1	5.0	6.0
	대학원 석사 이상	(42)	47.6	38.1	4.8	2.4	7.1	0.0	0.0
혼인상태	미혼	(100)	44.0	20.0	10.0	10.0	2.0	11.0	3.0
	기혼	(209)	39.7	32.5	8.6	6.7	5.7	1.4	4.8
	별거·사별·이혼·기타	(10)	40.0	60.0	0.0	0.0	0.0	0.0	0.0
가구원수	1명	(40)	52.5	17.5	7.5	5.0	2.5	12.5	2.5
	2명	(56)	33.9	37.5	10.7	7.1	1.8	5.4	3.6
	3명	(118)	39.0	28.8	11.0	11.0	3.4	4.2	2.5
	4명 이상	(105)	42.9	30.5	5.7	4.8	7.6	1.0	6.7
자녀수	0명	(124)	41.1	23.4	9.7	11.3	1.6	9.7	3.2
	1명	(80)	41.3	31.3	11.3	5.0	5.0	2.5	3.8
	2명 이상	(115)	40.9	34.8	6.1	5.2	7.0	0.0	5.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58)	44.8	27.6	5.2	12.1	3.4	6.9	0.0
	200~300만원 미만	(54)	38.9	25.9	9.3	11.1	1.9	9.3	3.7
	300~400만원 미만	(63)	41.3	22.2	19.0	4.8	6.3	1.6	4.8
	400~500만원 미만	(51)	37.3	33.3	7.8	3.9	2.0	3.9	9.8
	500만원 이상	(93)	41.9	35.5	4.3	6.5	6.5	2.2	3.2

- ①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 ②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 ③ 이자율이 높아서
 - ④ 부모님 등 타인의 권유로
 - ⑤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적금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⑥ 부모님 등이 가입해두었기 때문에
 - ⑦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서
 - ⑧ 기타: 은행권유, 임대주택입주, 담보대출조건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그림 IV-33〉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



〈표 IV-34〉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이유(1+2+3순위)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체	(319)	75.2	72.7	40.4	37.6	32.3	27.0	12	2.5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0)	-	-	-	-	-	-	-	
	가입	(319)	75.2	72.7	40.4	37.6	32.3	27.0	12	2.5
성별	남성	(176)	75.6	69.3	36.9	44.3	33.5	23.9	13	3.4
	여성	(143)	74.8	76.9	44.8	29.4	30.8	30.8	11	1.4
연령	20세~29세	(21)	90.5	76.2	23.8	19.0	28.6	28.6	33	0.0
	30세~39세	(76)	71.1	75.0	42.1	34.2	27.6	28.9	21	0.0
	40세~49세	(106)	70.8	75.5	40.6	42.5	36.8	23.6	8	1.9
	50세~59세	(64)	76.6	64.1	40.6	34.4	39.1	32.8	9	3.1
	60세 이상	(52)	82.7	73.1	44.2	44.2	23.1	23.1	2	7.7
수도권	수도권	(216)	74.5	75.0	39.4	40.3	27.8	28.7	12	2.3
	비수도권	(103)	76.7	68.0	42.7	32.0	41.7	23.3	13	2.9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76.7	80.0	43.3	33.3	40.0	23.3	3	0.0
	2~3년제 대학	(29)	58.6	79.3	51.7	37.9	20.7	34.5	14	3.4
	4년제 대학	(218)	76.1	70.6	39.0	37.6	35.3	25.7	14	1.8
	대학원 석사 이상	(42)	81.0	73.8	38.1	40.5	19.0	31.0	10	7.1
혼인상태	미혼	(100)	76.0	78.0	34.0	29.0	26.0	34.0	22	1.0
	기혼	(209)	75.1	70.3	41.6	40.7	36.8	23.9	8	3.3
	별거·사별·이혼·기타	(10)	70.0	70.0	80.0	60.0	0.0	20.0	0	0.0
가구원수	1명	(40)	80.0	80.0	40.0	27.5	22.5	27.5	20	2.5
	2명	(56)	73.2	76.8	44.6	44.6	28.6	19.6	9	3.6
	3명	(118)	72.9	70.3	36.4	35.6	32.2	35.6	15	1.7
	4명 이상	(105)	77.1	70.5	42.9	40.0	38.1	21.0	8	2.9
자녀수	0명	(124)	75.8	76.6	35.5	33.1	27.4	31.5	19	0.8
	1명	(80)	71.3	65.0	42.5	43.8	33.8	30.0	11	2.5
	2명 이상	(115)	77.4	73.9	44.3	38.3	36.5	20.0	5	4.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58)	84.5	81.0	39.7	17.2	22.4	36.2	14	5.2
	200~300만원 미만	(54)	74.1	85.2	25.9	35.2	35.2	29.6	15	0.0
	300~400만원 미만	(63)	71.4	69.8	46.0	39.7	38.1	27.0	8	0.0
	400~500만원 미만	(51)	78.4	66.7	33.3	51.0	27.5	23.5	14	5.9
	500만원 이상	(93)	71.0	65.6	49.5	43.0	35.5	21.5	12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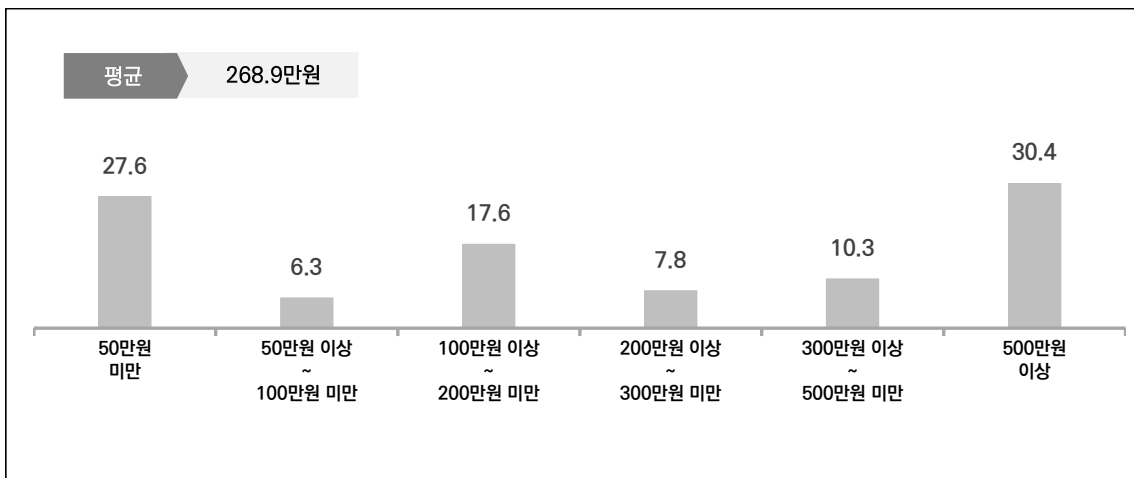
- ①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 ②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 ③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적금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④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서
- ⑤ 이자율이 높아서
- ⑥ 부모님 등 타인의 권유로
- ⑦ 부모님 등이 가입해두었기 때문에
- ⑧ 기타: 은행권유, 임대주택입주, 담보대출조건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에 대해 물어본 결과, ‘500만원 이상’이 30.4%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0만원 미만’(27.6%),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17.6%) 순으로 나타남.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의 평균은 268.9만원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1.3%), ‘여성’(29.4%)에서 각각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33.3%), ‘50세~59세’(31.3%)는 각각 ‘50만원 미만’에서, ‘30세~39세’(27.6%), ‘40세~49세’(32.1%), ‘60세 이상’(44.2%)은 각각 ‘500만원 이상’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1.0%), ‘비수도권’(29.1%)에서 각각 ‘500만원 이상’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34〉 2024년 주택청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



〈표 IV-35〉 2024년 주택총약종합저축 총 납입액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명, %, 만원)

구 분	사례수	50만원 미만	50만원 이상~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평균	
전 체	(319)	27.6	6.3	17.6	7.8	10.3	30.4	268.9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0)	-	-	-	-	-	-	
	가입	(319)	27.6	6.3	17.6	7.8	10.3	30.4	268.9
성별	남성	(176)	28.4	8.5	16.5	7.4	8.0	31.3	264.2
	여성	(143)	26.6	3.5	18.9	8.4	13.3	29.4	274.7
연령	20세~29세	(21)	33.3	14.3	23.8	0.0	19.0	9.5	160.3
	30세~39세	(76)	23.7	5.3	23.7	11.8	7.9	27.6	284.8
	40세~49세	(106)	23.6	7.5	17.0	9.4	10.4	32.1	273.7
	50세~59세	(64)	31.3	6.3	17.2	6.3	12.5	26.6	243.6
	60세 이상	(52)	34.6	1.9	7.7	3.8	7.7	44.2	310.9
수도권	수도권	(216)	27.8	5.6	20.8	5.1	9.7	31.0	271.3
	비수도권	(103)	27.2	7.8	10.7	13.6	11.7	29.1	263.8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36.7	3.3	13.3	6.7	3.3	36.7	271.4
	2~3년제 대학	(29)	41.4	3.4	13.8	10.3	6.9	24.1	213.4
	4년제 대학	(218)	22.9	5.5	18.8	8.7	13.8	30.3	285.9
	대학원 석사 이상	(42)	35.7	14.3	16.7	2.4	0.0	31.0	217.1
혼인상태	미혼	(100)	32.0	3.0	24.0	9.0	14.0	18.0	234.7
	기혼	(209)	25.4	7.7	14.4	7.7	9.1	35.9	285.2
	별거·사별·이혼·기타	(10)	30.0	10.0	20.0	0.0	0.0	40.0	269.2
가구원수	1명	(40)	32.5	2.5	20.0	7.5	20.0	17.5	249.5
	2명	(56)	23.2	8.9	16.1	5.4	10.7	35.7	303.5
	3명	(118)	29.7	3.4	20.3	8.5	7.6	30.5	257.7
	4명 이상	(105)	25.7	9.5	14.3	8.6	9.5	32.4	270.4
자녀수	0명	(124)	28.2	5.6	21.8	9.7	13.7	21.0	248.2
	1명	(80)	28.8	6.3	16.3	5.0	7.5	36.3	278.6
	2명 이상	(115)	26.1	7.0	13.9	7.8	8.7	36.5	284.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58)	39.7	5.2	10.3	5.2	13.8	25.9	237.2
	200~300만원 미만	(54)	27.8	5.6	14.8	9.3	16.7	25.9	280.0
	300~400만원 미만	(63)	28.6	7.9	22.2	7.9	6.3	27.0	242.7
	400~500만원 미만	(51)	29.4	3.9	23.5	9.8	9.8	23.5	242.8
	500만원 이상	(93)	18.3	7.5	17.2	7.5	7.5	41.9	31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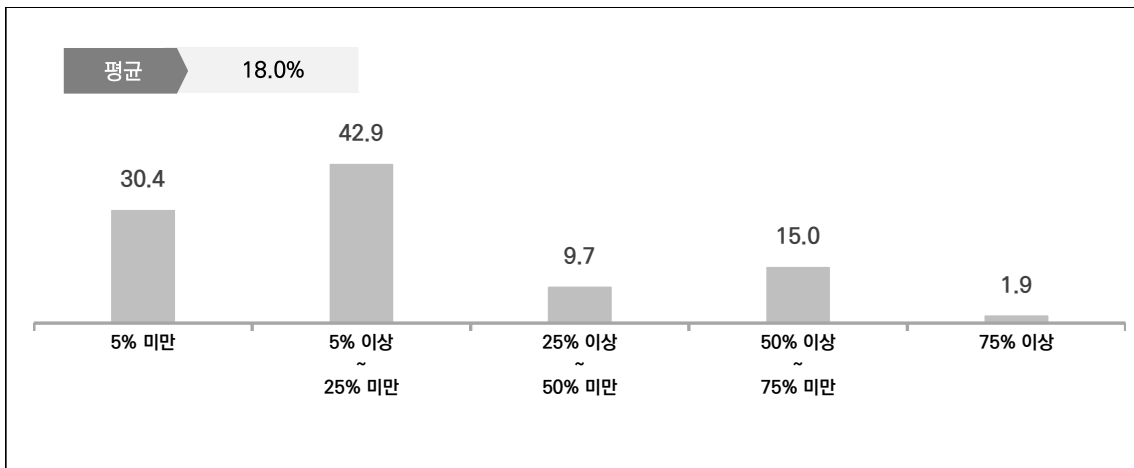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에 대해 물어본 결과, ‘5% 이상~25% 미만’이 42.9%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 미만’(30.4%), ‘50% 이상~75% 미만’(15.0%) 순으로 나타남.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의 평균은 18.0%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37.5%), ‘여성’(49.7%)에서 각각 ‘5% 이상~25%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모든 연령에서 ‘5% 이상~25%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43.5%), ‘비수도권’(41.7%)에서 각각 ‘5% 이상~25%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35〉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



〈표 IV-36〉 청약 지원 시 당첨 확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5% 미만	5% 이상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평균	
전 체	(319)	30.4	42.9	9.7	15.0	1.9	18.0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0)	-	-	-	-	-	
	가입	(319)	30.4	42.9	9.7	15.0	1.9	18.0
성별	남성	(176)	34.1	37.5	9.1	16.5	2.8	18.9
	여성	(143)	25.9	49.7	10.5	13.3	0.7	16.8
연령	20세~29세	(21)	33.3	38.1	9.5	14.3	4.8	18.2
	30세~39세	(76)	36.8	38.2	9.2	13.2	2.6	16.8
	40세~49세	(106)	24.5	44.3	12.3	17.9	0.9	20.4
	50세~59세	(64)	29.7	51.6	4.7	10.9	3.1	15.7
	60세 이상	(52)	32.7	38.5	11.5	17.3	0.0	17.4
수도권	수도권	(216)	34.3	43.5	8.3	12.0	1.9	15.9
	비수도권	(103)	22.3	41.7	12.6	21.4	1.9	22.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13.3	60.0	6.7	16.7	3.3	20.7
	2~3년제 대학	(29)	27.6	51.7	10.3	10.3	0.0	15.8
	4년제 대학	(218)	30.7	40.8	11.0	15.1	2.3	18.4
	대학원 석사 이상	(42)	42.9	35.7	4.8	16.7	0.0	15.2
혼인상태	미혼	(100)	39.0	35.0	9.0	14.0	3.0	16.8
	기혼	(209)	25.8	46.4	10.5	16.3	1.0	18.7
	별거·사별·이혼·기타	(10)	40.0	50.0	0.0	0.0	10.0	15.1
가구원수	1명	(40)	32.5	42.5	5.0	12.5	7.5	18.7
	2명	(56)	37.5	41.1	10.7	8.9	1.8	14.3
	3명	(118)	29.7	41.5	11.9	16.1	0.8	18.5
	4명 이상	(105)	26.7	45.7	8.6	18.1	1.0	19.1
자녀수	0명	(124)	37.1	38.7	8.9	12.1	3.2	16.2
	1명	(80)	23.8	47.5	12.5	15.0	1.3	19.5
	2명 이상	(115)	27.8	44.3	8.7	18.3	0.9	18.8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58)	36.2	37.9	6.9	17.2	1.7	17.2
	200~300만원 미만	(54)	33.3	35.2	14.8	14.8	1.9	18.4
	300~400만원 미만	(63)	30.2	50.8	7.9	9.5	1.6	15.0
	400~500만원 미만	(51)	21.6	35.3	13.7	23.5	5.9	27.1
	500만원 이상	(93)	30.1	49.5	7.5	12.9	0.0	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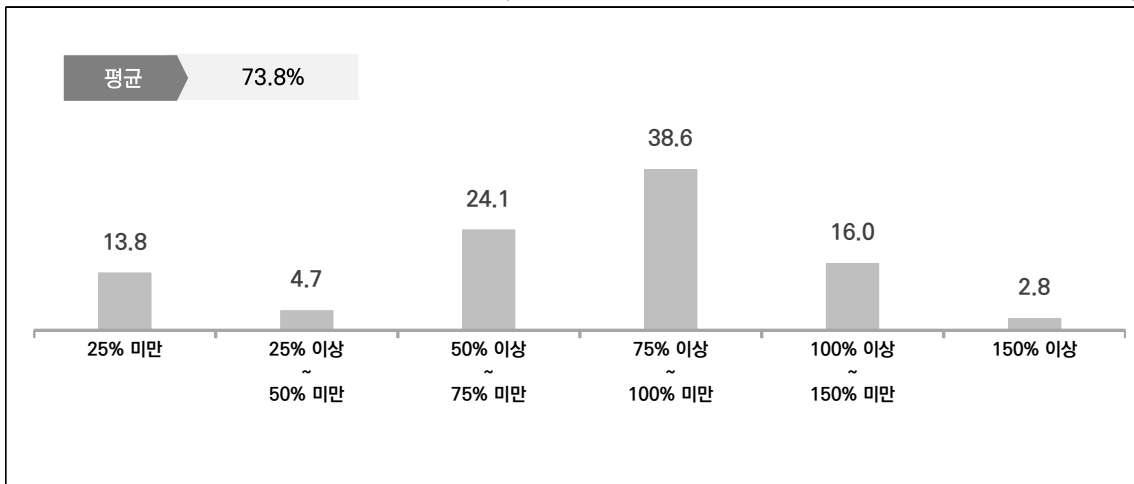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에 대해 물어본 결과, ‘75% 이상~100% 미만’이 38.6%로 가장 높고, 그다음으로는 ‘50% 이상~75% 미만’(24.1%), ‘100% 이상~150% 미만’(16.0%) 순으로 나타남.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의 평균은 73.8%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42.0%), ‘여성’(34.3%) 각각 ‘75% 이상~100%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39세’를 제외한 모든 연령에서 ‘75% 이상~100%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9.4%), ‘비수도권’(36.9%) 각각 ‘75% 이상~100%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36〉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



〈표 IV-37〉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예상 주택가격(적정시세와 비교)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100% 미만	100% 이상 ~150% 미만	150% 이상	평균	
전 체	(319)	13.8	4.7	24.1	38.6	16.0	2.8	73.8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0)	-	-	-	-	-	-	
	가입	(319)	13.8	4.7	24.1	38.6	16.0	2.8	73.8
성별	남성	(176)	11.9	4.0	23.3	42.0	15.9	2.8	74.6
	여성	(143)	16.1	5.6	25.2	34.3	16.1	2.8	72.8
연령	20세~29세	(21)	14.3	4.8	28.6	42.9	4.8	4.8	81.9
	30세~39세	(76)	15.8	5.3	34.2	28.9	13.2	2.6	67.6
	40세~49세	(106)	17.9	4.7	27.4	35.8	13.2	0.9	65.7
	50세~59세	(64)	12.5	3.1	14.1	39.1	26.6	4.7	86.0
	60세 이상	(52)	3.8	5.8	13.5	55.8	17.3	3.8	81.2
수도권	수도권	(216)	13.9	4.2	25.0	39.4	14.8	2.8	72.2
	비수도권	(103)	13.6	5.8	22.3	36.9	18.4	2.9	77.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10.0	6.7	23.3	33.3	20.0	6.7	87.3
	2~3년제 대학	(29)	20.7	13.8	27.6	17.2	17.2	3.4	64.1
	4년제 대학	(218)	15.1	3.7	23.9	40.8	14.7	1.8	71.6
	대학원 석사 이상	(42)	4.8	2.4	23.8	45.2	19.0	4.8	82.3
혼인상태	미혼	(100)	15.0	3.0	29.0	31.0	17.0	5.0	79.5
	기혼	(209)	12.9	4.3	22.5	42.1	16.3	1.9	72.1
	별거·사별·이혼·기타	(10)	20.0	30.0	10.0	40.0	0.0	0.0	52.0
가구원수	1명	(40)	15.0	5.0	27.5	25.0	15.0	12.5	97.7
	2명	(56)	8.9	5.4	25.0	46.4	12.5	1.8	73.0
	3명	(118)	9.3	3.4	22.9	47.5	16.1	0.8	74.5
	4명 이상	(105)	21.0	5.7	23.8	29.5	18.1	1.9	64.4
자녀수	0명	(124)	12.9	2.4	29.8	35.5	15.3	4.0	78.9
	1명	(80)	10.0	6.3	23.8	47.5	11.3	1.3	71.9
	2명 이상	(115)	17.4	6.1	18.3	35.7	20.0	2.6	69.7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58)	10.3	3.4	24.1	36.2	17.2	8.6	89.9
	200~300만원 미만	(54)	11.1	3.7	25.9	38.9	18.5	1.9	72.6
	300~400만원 미만	(63)	15.9	6.3	19.0	41.3	14.3	3.2	72.5
	400~500만원 미만	(51)	13.7	11.8	25.5	35.3	13.7	0.0	65.0
	500만원 이상	(93)	16.1	1.1	25.8	39.8	16.1	1.1	7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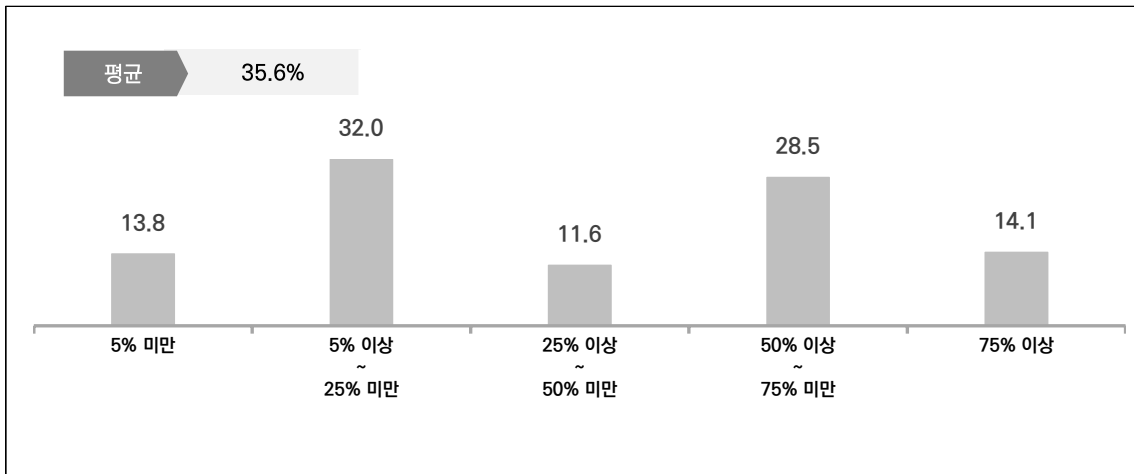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8)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에 대해 물어본 결과, ‘5% 이상~25% 미만’이 32.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50% 이상~75% 미만’(28.5%), ‘75% 이상’(14.1%) 순으로 나타남.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의 평균은 35.6%임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0% 이상~75% 미만’(30.1%), ‘여성’은 ‘5% 이상~25% 미만’(37.1%)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33.3%), ‘60세 이상’(28.8%)은 각각 ‘50% 이상~75% 미만’에서, ‘30세~39세’(31.6%), ‘40세~49세’(36.8%), ‘50세~59세’(37.5%)는 각각 ‘5% 이상~25% 미만’이 가장 높게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31.0%), ‘비수도권’(34.0%)은 각각 ‘5% 이상~25% 미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남

〈그림 IV-37〉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



〈표 IV-38〉 미래 청약 혜택을 한 번이라도 받을 가능성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응답자, n=319,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5% 미만	5% 이상~ 25% 미만	25% 이상~ 50% 미만	50% 이상~ 75% 미만	75% 이상	평균	
전 체	(319)	13.8	32.0	11.6	28.5	14.1	35.6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0)	-	-	-	-	-	
	가입	(319)	13.8	32.0	11.6	28.5	14.1	35.6
성별	남성	(176)	13.6	27.8	13.1	30.1	15.3	37.5
	여성	(143)	14.0	37.1	9.8	26.6	12.6	33.3
연령	20세~29세	(21)	14.3	14.3	14.3	33.3	23.8	46.1
	30세~39세	(76)	13.2	31.6	11.8	26.3	17.1	37.4
	40세~49세	(106)	13.2	36.8	7.5	25.5	17.0	35.8
	50세~59세	(64)	6.3	37.5	10.9	34.4	10.9	35.7
	60세 이상	(52)	25.0	23.1	19.2	28.8	3.8	28.3
수도권	수도권	(216)	13.4	31.0	11.1	29.6	14.8	36.6
	비수도권	(103)	14.6	34.0	12.6	26.2	12.6	33.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0)	23.3	33.3	6.7	30.0	6.7	26.8
	2~3년제 대학	(29)	13.8	27.6	17.2	20.7	20.7	37.0
	4년제 대학	(218)	12.8	32.1	10.6	29.4	15.1	36.9
	대학원 석사 이상	(42)	11.9	33.3	16.7	28.6	9.5	34.1
혼인상태	미혼	(100)	15.0	29.0	11.0	26.0	19.0	37.9
	기혼	(209)	13.4	32.1	12.0	30.1	12.4	35.2
	별거·사별·이혼·기타	(10)	10.0	60.0	10.0	20.0	0.0	22.1
가구원수	1명	(40)	15.0	30.0	10.0	27.5	17.5	36.9
	2명	(56)	23.2	32.1	16.1	23.2	5.4	26.6
	3명	(118)	12.7	32.2	11.0	31.4	12.7	35.5
	4명 이상	(105)	9.5	32.4	10.5	28.6	19.0	40.1
자녀수	0명	(124)	14.5	28.2	12.1	28.2	16.9	37.6
	1명	(80)	11.3	37.5	12.5	28.8	10.0	32.7
	2명 이상	(115)	14.8	32.2	10.4	28.7	13.9	35.6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58)	17.2	31.0	8.6	25.9	17.2	34.9
	200~300만원 미만	(54)	16.7	31.5	5.6	31.5	14.8	35.6
	300~400만원 미만	(63)	15.9	42.9	14.3	17.5	9.5	28.4
	400~500만원 미만	(51)	9.8	21.6	13.7	37.3	17.6	43.9
	500만원 이상	(93)	10.8	31.2	14.0	31.2	12.9	3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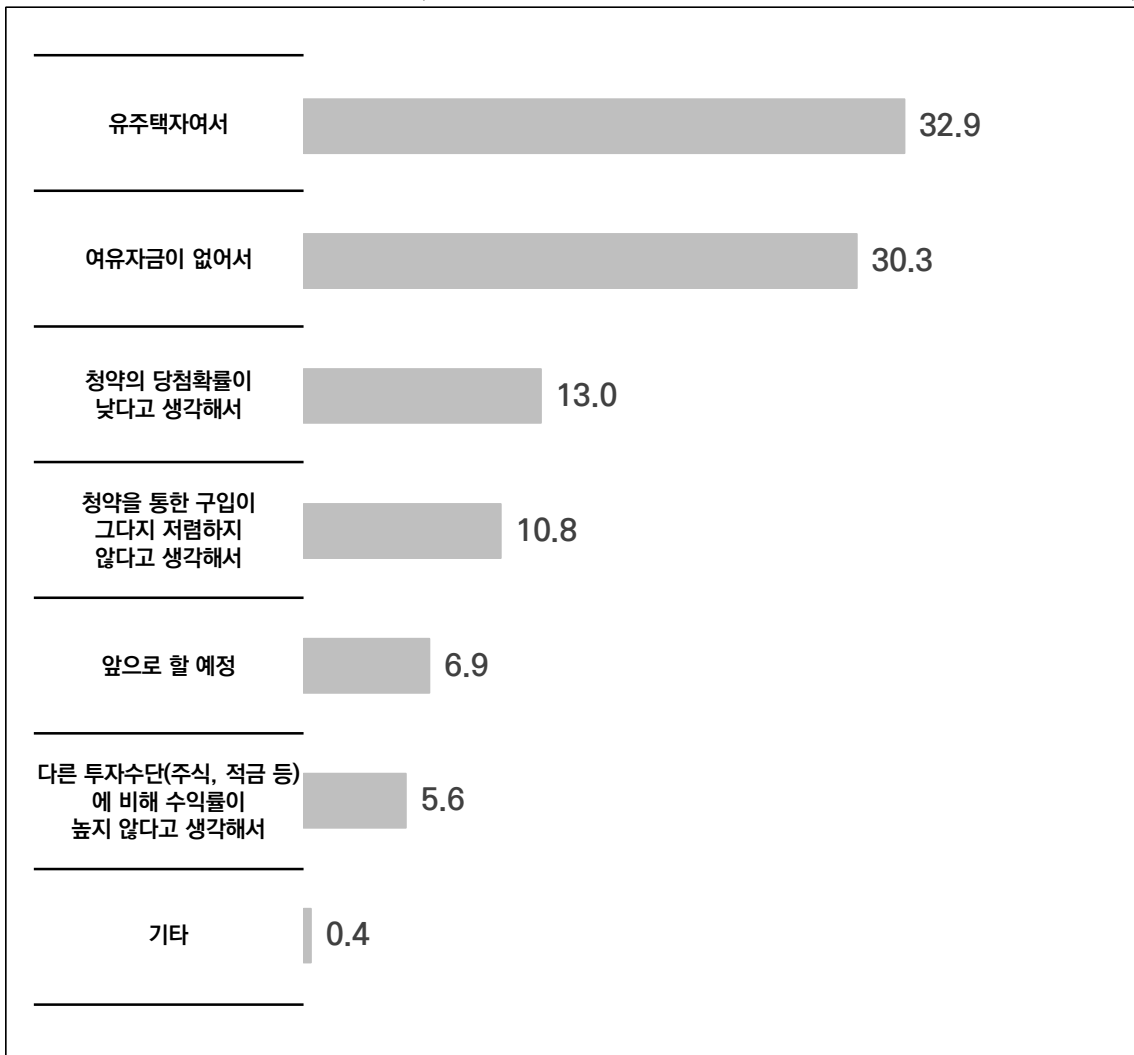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유주택자여서’가 32.9%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유주택자여서’가 ‘남성’ 39.6%, ‘여성’ 22.8%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유주택자여서’가 ‘20세~29세’ 12.5%, ‘30세~39세’ 20.0%, ‘40세~49세’ 32.7%, ‘50세~59세’ 32.5%, ‘60세 이상’ 46.4%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유주택자여서’가 ‘수도권’ 30.0%, ‘비수도권’ 36.6%로 나타남

〈그림 IV-3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해지한) 이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n=231, 단위: %)



〈표 IV-3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지 않은 응답자, n=231,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전 체		(231)	32.9	30.3	13.0	10.8	6.9	5.6	0.4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32.9	30.3	13.0	10.8	6.9	5.6	0.0
	가입	(0)	-	-	-	-	-	-	-
성별	남성	(139)	39.6	27.3	10.1	11.5	3.6	7.2	1.0
	여성	(92)	22.8	34.8	17.4	9.8	12.0	3.3	0.0
연령	20세~29세	(16)	12.5	31.3	12.5	12.5	12.5	18.8	0.0
	30세~39세	(30)	20.0	40.0	13.3	10.0	13.3	3.3	0.0
	40세~49세	(52)	32.7	32.7	13.5	9.6	5.8	3.8	2.0
	50세~59세	(77)	32.5	33.8	14.3	10.4	3.9	5.2	0.0
	60세 이상	(56)	46.4	17.9	10.7	12.5	7.1	5.4	0.0
수도권	수도권	(130)	30.0	33.1	13.1	10.8	8.5	3.8	1.0
	비수도권	(101)	36.6	26.7	12.9	10.9	5.0	7.9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33)	30.3	51.5	3.0	6.1	3.0	3.0	3.0
	2~3년제 대학	(33)	18.2	51.5	9.1	9.1	9.1	3.0	0.0
	4년제 대학	(141)	32.6	22.0	16.3	12.8	8.5	7.8	0.0
	대학원 석사 이상	(24)	58.3	20.8	12.5	8.3	0.0	0.0	0.0
혼인상태	미혼	(73)	16.4	49.3	11.0	8.2	5.5	8.2	1.0
	기혼	(147)	40.8	20.4	13.6	12.9	7.5	4.8	0.0
	별거·사별·이혼·기타	(11)	36.4	36.4	18.2	0.0	9.1	0.0	0.0
가구원수	1명	(31)	22.6	45.2	12.9	9.7	3.2	6.5	0.0
	2명	(58)	29.3	31.0	15.5	10.3	6.9	6.9	0.0
	3명	(71)	33.8	23.9	18.3	11.3	8.5	2.8	1.0
	4명 이상	(71)	39.4	29.6	5.6	11.3	7.0	7.0	0.0
자녀수	0명	(91)	18.7	47.3	12.1	8.8	5.5	6.6	1.0
	1명	(57)	40.4	17.5	21.1	8.8	7.0	5.3	0.0
	2명 이상	(83)	43.4	20.5	8.4	14.5	8.4	4.8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63)	19.0	58.7	9.5	7.9	3.2	0.0	2.0
	200~300만원 미만	(36)	16.7	25.0	22.2	13.9	16.7	5.6	0.0
	300~400만원 미만	(33)	21.2	39.4	6.1	12.1	9.1	12.1	0.0
	400~500만원 미만	(34)	47.1	2.9	23.5	5.9	8.8	11.8	0.0
	500만원 이상	(65)	53.8	15.4	9.2	13.8	3.1	4.6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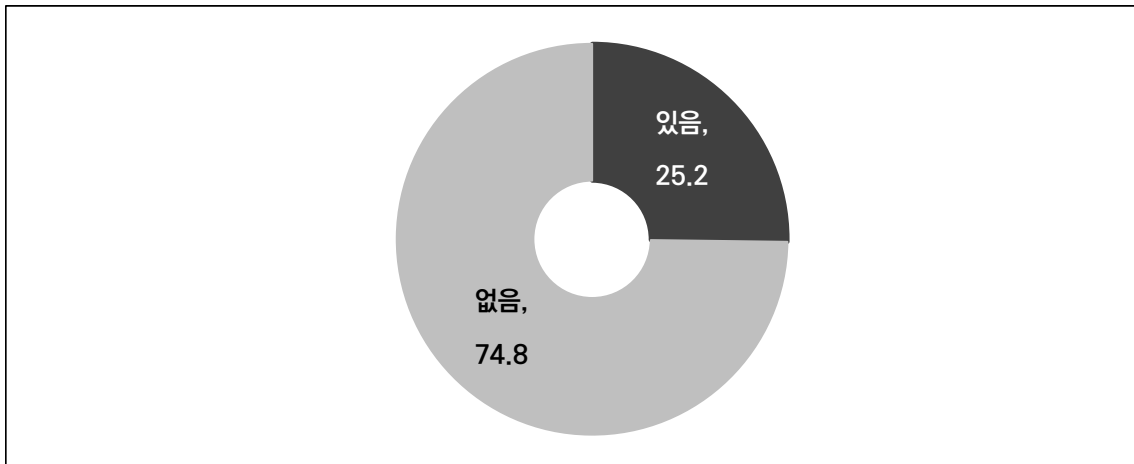
- ① 유주택자여서
 - ② 여유자금이 없어서
 - ③ 청약의 당첨확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 ④ 청약을 통한 구입이 그다지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⑤ 앞으로 할 예정
 - ⑥ 다른 투자수단(주식, 적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⑦ 기타: 알지 못하고 나이가 많아서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0)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응답자 중 25.2%가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이 있다고 응답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25.3%)과 ‘여성’(25.0%)의 가입 의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50세~59세’(30.6%)의 가입 의향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25.0%)과 ‘비수도권’(25.4%)의 가입 의향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39〉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base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 아니거나 유주택자가 아닌 미가입자, n=139, 단위: %)



〈표 IV-40〉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

(base 앞으로 가입할 예정이 아니거나 유주택자가 아닌 미가입자, n=139, 단위: %)

구 분		사례수	있음	없음
전 체		(139)	25.2	74.8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139)	25.2	74.8
	가입	(0)	-	-
성별	남성	(79)	25.3	74.7
	여성	(60)	25.0	75.0
연령	20세~29세	(12)	16.7	83.3
	30세~39세	(20)	30.0	70.0
	40세~49세	(32)	21.9	78.1
	50세~59세	(49)	30.6	69.4
	60세 이상	(26)	19.2	80.8
수도권	수도권	(80)	25.0	75.0
	비수도권	(59)	25.4	74.6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2)	9.1	90.9
	2~3년제 대학	(24)	33.3	66.7
	4년제 대학	(83)	25.3	74.7
	대학원 석사 이상	(10)	40.0	60.0
혼인상태	미혼	(57)	22.8	77.2
	기혼	(76)	27.6	72.4
	별거·사별·이혼·기타	(6)	16.7	83.3
가구원수	1명	(23)	21.7	78.3
	2명	(37)	24.3	75.7
	3명	(41)	24.4	75.6
	4명 이상	(38)	28.9	71.1
자녀수	0명	(69)	23.2	76.8
	1명	(30)	23.3	76.7
	2명 이상	(40)	30.0	7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49)	20.4	79.6
	200~300만원 미만	(24)	29.2	70.8
	300~400만원 미만	(23)	13.0	87.0
	400~500만원 미만	(15)	33.3	66.7
	500만원 이상	(28)	35.7	64.3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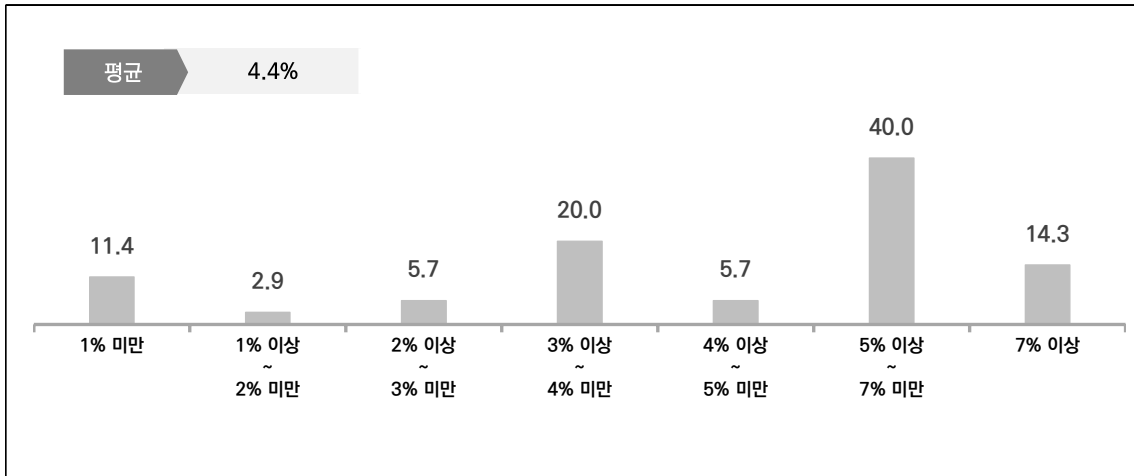
11)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에 대해 물어본 결과, ‘5% 이상~7% 미만’이 40.0%로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는 ‘3% 이상~4% 미만’(20.0%), ‘7% 이상’(14.3%) 순으로 나타남.

현재 이자율 대비 원하는 인상률의 평균은 4.4%임

〈그림 IV-40〉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 n=35, 단위: %)



〈표 IV-41〉 현재 이자율 대비 인상 비율

(base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율 인상 시 가입 의향이 있는 응답자, n=35,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1% 미만	1% 이상 ~2% 미만	2% 이상 ~3% 미만	3% 이상 ~4% 미만	4% 이상 ~5% 미만	5% 이상 ~7% 미만	7% 이상	평균	
전 체	(35)	11.4	2.9	5.7	20.0	5.7	40.0	14.3	4.4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35)	11.4	2.9	5.7	20.0	5.7	40.0	14.3	4.4
	가입	(0)	-	-	-	-	-	-	-	-
성별	남성	(20)	15.0	0.0	5.0	10.0	5.0	50.0	15.0	4.5
	여성	(15)	6.7	6.7	6.7	33.3	6.7	26.7	13.3	4.3
연령	20세~29세	(2)	0.0	0.0	0.0	50.0	0.0	50.0	0.0	4.0
	30세~39세	(6)	16.7	0.0	16.7	33.3	0.0	33.3	0.0	3.1
	40세~49세	(7)	0.0	14.3	0.0	14.3	14.3	28.6	28.6	5.4
	50세~59세	(15)	20.0	0.0	6.7	13.3	6.7	40.0	13.3	4.2
	60세 이상	(5)	0.0	0.0	0.0	20.0	0.0	60.0	20.0	5.6
수도권	수도권	(20)	10.0	0.0	5.0	20.0	5.0	45.0	15.0	4.7
	비수도권	(15)	13.3	6.7	6.7	20.0	6.7	33.3	13.3	4.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2)	0.0	0.0	0.0	0.0	0.0	100.0	0.0	5.5
	2~3년제 대학	(8)	25.0	0.0	12.5	25.0	12.5	25.0	0.0	2.9
	4년제 대학	(21)	4.8	4.8	4.8	23.8	0.0	47.6	14.3	4.6
	대학원 석사 이상	(4)	25.0	0.0	0.0	0.0	25.0	0.0	50.0	6.1
혼인상태	미혼	(13)	7.7	0.0	7.7	30.8	7.7	30.8	15.4	4.3
	기혼	(21)	14.3	4.8	4.8	14.3	4.8	42.9	14.3	4.5
	별거·사별·이혼·기타	(1)	0.0	0.0	0.0	0.0	0.0	100.0	0.0	5.0
가구원수	1명	(5)	0.0	0.0	0.0	20.0	0.0	80.0	0.0	4.6
	2명	(9)	11.1	11.1	0.0	22.2	11.1	22.2	22.2	4.7
	3명	(10)	30.0	0.0	10.0	20.0	0.0	20.0	20.0	3.8
	4명 이상	(11)	0.0	0.0	9.1	18.2	9.1	54.5	9.1	4.7
자녀수	0명	(16)	6.3	6.3	6.3	25.0	6.3	37.5	12.5	4.2
	1명	(7)	42.9	0.0	0.0	0.0	0.0	28.6	28.6	4.6
	2명 이상	(12)	0.0	0.0	8.3	25.0	8.3	50.0	8.3	4.7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0)	10.0	0.0	0.0	30.0	0.0	50.0	10.0	4.6
	200~300만원 미만	(7)	14.3	14.3	0.0	14.3	14.3	42.9	0.0	3.4
	300~400만원 미만	(3)	0.0	0.0	0.0	66.7	0.0	33.3	0.0	3.7
	400~500만원 미만	(5)	0.0	0.0	0.0	0.0	20.0	40.0	40.0	6.2
	500만원 이상	(10)	20.0	0.0	20.0	10.0	0.0	30.0	20.0	4.3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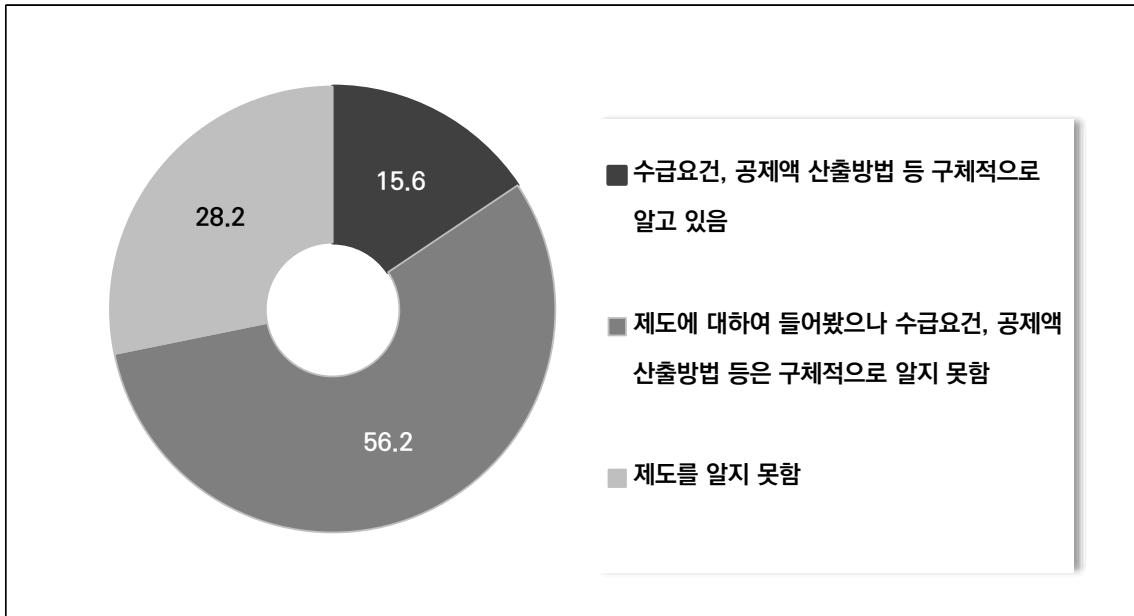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에 대해 물어본 결과, ‘제도에 대하여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56.2%)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으로 ‘제도를 알지 못함’(28.2%),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15.6%) 순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여성’(34.0%)이 ‘남성’(23.8%) 보다 소득공제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45.9%)가 가장 소득공제제도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비수도권’(30.4%)이 ‘수도권’(26.9%) 보다 소득공제제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그림 IV-4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4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제도에 대해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제도를 알지 못함
전체	(550)	15.6	56.2	28.2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11.7	51.9	36.4
가입	(319)	18.5	59.2	22.3
성별				
남성	(315)	16.5	59.7	23.8
여성	(235)	14.5	51.5	34.0
연령				
20세~29세	(37)	13.5	40.5	45.9
30세~39세	(106)	24.5	55.7	19.8
40세~49세	(158)	19.0	50.0	31.0
50세~59세	(141)	9.2	62.4	28.4
60세 이상	(108)	11.1	63.0	25.9
수도권				
수도권	(346)	15.9	57.2	26.9
비수도권	(204)	15.2	54.4	30.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12.7	41.3	46.0
2~3년제 대학	(62)	11.3	56.5	32.3
4년제 대학	(359)	15.9	58.2	25.9
대학원 석사 이상	(66)	21.2	59.1	19.7
혼인상태				
미혼	(173)	12.7	52.0	35.3
기혼	(356)	17.4	57.3	25.3
별거·사별·이혼·기타	(21)	9.5	71.4	19.0
가구원수				
1명	(71)	14.1	50.7	35.2
2명	(114)	13.2	57.0	29.8
3명	(189)	15.9	61.9	22.2
4명 이상	(176)	17.6	51.7	30.7
자녀수				
0명	(215)	14.0	52.1	34.0
1명	(137)	18.2	58.4	23.4
2명 이상	(198)	15.7	59.1	25.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9.1	41.3	49.6
200~300만원 미만	(90)	14.4	62.2	23.3
300~400만원 미만	(96)	14.6	62.5	22.9
400~500만원 미만	(85)	18.8	61.2	20.0
500만원 이상	(158)	20.3	57.6	2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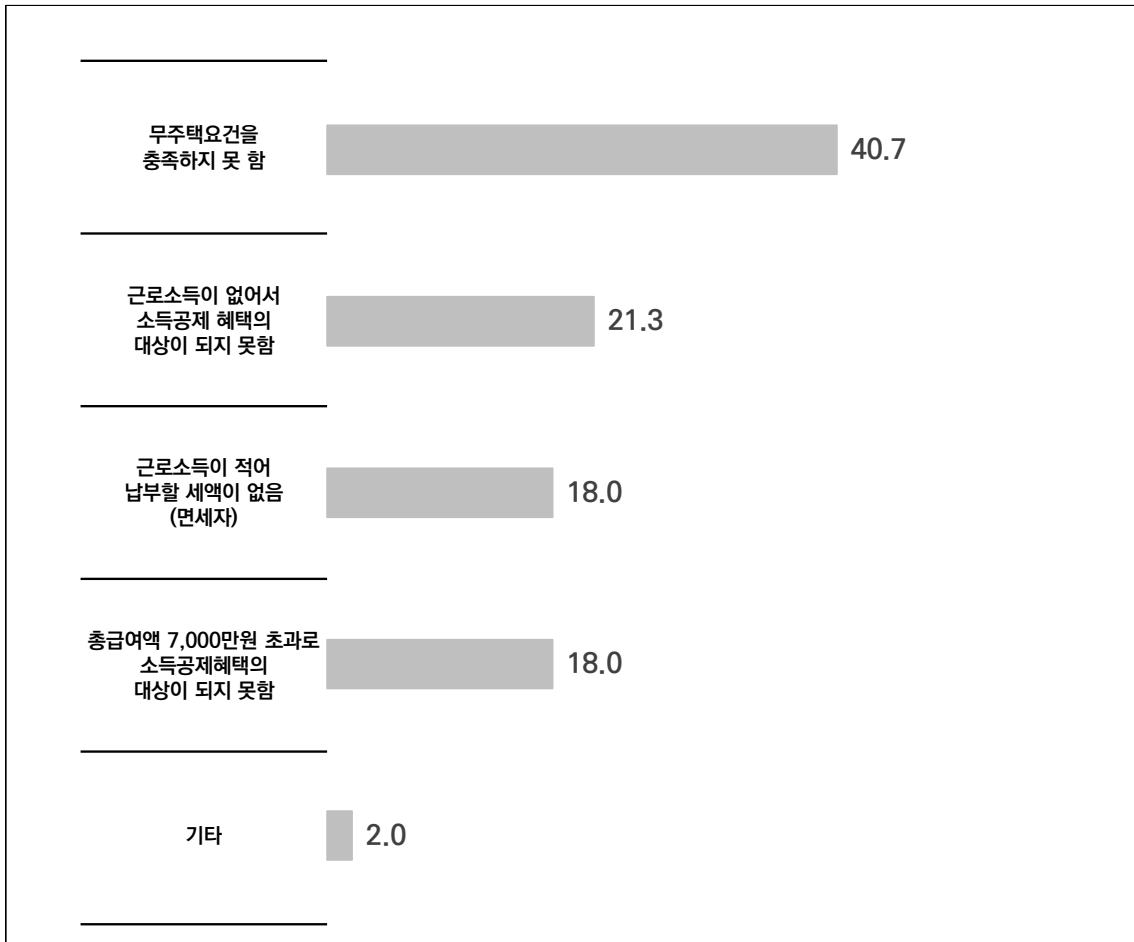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2) 소득공제혜택 받지 못한 이유

- 소득공제혜택 받지 못한 이유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이 40.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이 ‘남성’ 43.5%, ‘여성’ 37.0%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이 ‘20세~29세’ 18.9%, ‘30세~39세’ 39.6%, ‘40세~49세’ 40.5%, ‘50세~59세’ 42.6%, ‘60세 이상’ 47.2%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 함’이 ‘수도권’ 41.0%, ‘비수도권’ 40.2%로 나타남

〈그림 IV-42〉 소득공제혜택 받지 못한 이유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4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 경험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분	사례수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근로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면세자)	근로소득이 없어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함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로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함	기타
전체	(550)	40.7	21.3	18.0	18.0	2.0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42.9	24.2	13.4	16.9	2.6
가입	(319)	39.2	19.1	21.3	18.8	1.6
성별						
남성	(315)	43.5	18.1	17.8	19.4	1.3
여성	(235)	37.0	25.5	18.3	16.2	3.0
연령						
20세~29세	(37)	18.9	37.8	18.9	18.9	5.4
30세~39세	(106)	39.6	26.4	14.2	17.9	1.9
40세~49세	(158)	40.5	13.3	22.2	22.2	1.9
50세~59세	(141)	42.6	22.7	16.3	16.3	2.1
60세 이상	(108)	47.2	20.4	17.6	13.9	0.9
수도권						
수도권	(346)	41.0	23.1	18.8	15.9	1.2
비수도권	(204)	40.2	18.1	16.7	21.6	3.4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23.8	34.9	25.4	12.7	3.2
2~3년제 대학	(62)	37.1	30.6	19.4	11.3	1.6
4년제 대학	(359)	43.2	18.4	17.5	18.7	2.2
대학원 석사 이상	(66)	47.0	15.2	12.1	25.8	0.0
혼인상태						
미혼	(173)	35.3	30.1	20.2	12.1	2.3
기혼	(356)	44.7	16.9	16.6	20.5	1.4
별거·사별·이혼·기타	(21)	19.0	23.8	23.8	23.8	9.5
가구원수						
1명	(71)	29.6	32.4	21.1	14.1	2.8
2명	(114)	44.7	22.8	14.0	14.9	3.5
3명	(189)	45.5	13.8	18.5	21.7	0.5
4명 이상	(176)	37.5	23.9	18.8	17.6	2.3
자녀수						
0명	(215)	35.8	27.4	19.1	14.4	3.3
1명	(137)	46.7	12.4	17.5	21.9	1.5
2명 이상	(198)	41.9	20.7	17.2	19.2	1.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19.8	52.9	18.2	6.6	2.5
200~300만원 미만	(90)	42.2	18.9	30.0	5.6	3.3
300~400만원 미만	(96)	56.3	8.3	21.9	12.5	1.0
400~500만원 미만	(85)	48.2	15.3	12.9	20.0	3.5
500만원 이상	(158)	42.4	9.5	11.4	36.1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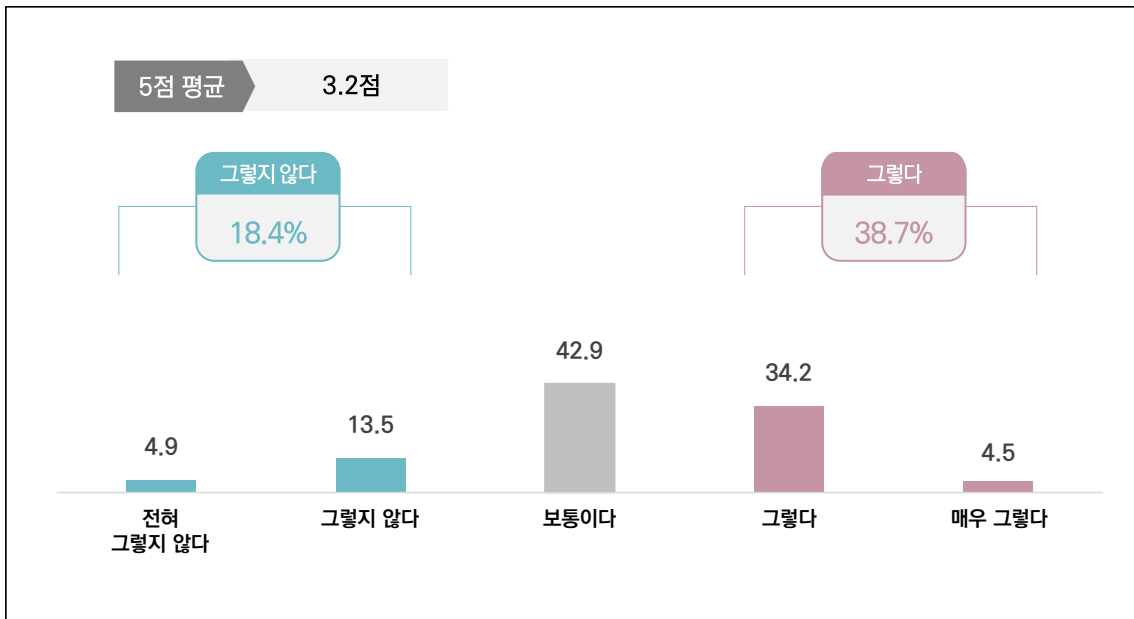
기타: 이런 제도가 있는지 몰랐어서, 예전 주택 소유, 세대주가 아님, 납입한 주택청약이 없음 등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38.7%로 ‘그렇지 않다’(18.4%)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41.3%, ‘여성’ 35.3%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35.1%, ‘30세~39세’ 32.1%, ‘40세~49세’ 36.1%, ‘50세~59세’ 44.7%, ‘60세 이상’ 42.6%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40.2%, ‘비수도권’ 36.3%로 나타남

〈그림 IV-43〉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4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550)	4.9	13.5	42.9	34.2	4.5	18.4	38.7	3.2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3.5	14.7	44.2	35.1	2.6	18.2	37.7	3.2
	가입	(319)	6.0	12.5	42.0	33.5	6.0	18.5	39.5	3.2
성별	남성	(315)	5.4	10.8	42.5	35.9	5.4	16.2	41.3	3.3
	여성	(235)	4.3	17.0	43.4	31.9	3.4	21.3	35.3	3.1
연령	20세~29세	(37)	5.4	21.6	37.8	35.1	0.0	27.0	35.1	3.0
	30세~39세	(106)	10.4	14.2	43.4	26.4	5.7	24.5	32.1	3.0
	40세~49세	(158)	5.1	15.8	43.0	31.0	5.1	20.9	36.1	3.2
	50세~59세	(141)	1.4	9.9	44.0	42.6	2.1	11.3	44.7	3.3
	60세 이상	(108)	3.7	11.1	42.6	35.2	7.4	14.8	42.6	3.3
수도권	수도권	(346)	4.3	15.6	39.9	35.0	5.2	19.9	40.2	3.2
	비수도권	(204)	5.9	9.8	48.0	32.8	3.4	15.7	36.3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6.3	12.7	47.6	30.2	3.2	19.0	33.3	3.1
	2~3년제 대학	(62)	1.6	14.5	54.8	25.8	3.2	16.1	29.0	3.1
	4년제 대학	(359)	4.5	14.2	40.1	36.2	5.0	18.7	41.2	3.2
	대학원 석사 이상	(66)	9.1	9.1	42.4	34.8	4.5	18.2	39.4	3.2
혼인상태	미혼	(173)	5.8	16.8	45.7	28.3	3.5	22.5	31.8	3.1
	기혼	(356)	4.8	11.5	41.9	36.8	5.1	16.3	41.9	3.3
	별거·사별·이혼·기타	(21)	0.0	19.0	38.1	38.1	4.8	19.0	42.9	3.3
가구원수	1명	(71)	5.6	16.9	42.3	31.0	4.2	22.5	35.2	3.1
	2명	(114)	3.5	14.9	45.6	32.5	3.5	18.4	36.0	3.2
	3명	(189)	5.8	14.3	41.8	34.9	3.2	20.1	38.1	3.2
	4명 이상	(176)	4.5	10.2	42.6	35.8	6.8	14.8	42.6	3.3
자녀수	0명	(215)	6.0	16.3	44.2	30.2	3.3	22.3	33.5	3.1
	1명	(137)	5.8	14.6	40.1	37.2	2.2	20.4	39.4	3.2
	2명 이상	(198)	3.0	9.6	43.4	36.4	7.6	12.6	43.9	3.4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4.1	14.9	50.4	28.9	1.7	19.0	30.6	3.1
	200~300만원 미만	(90)	4.4	12.2	45.6	32.2	5.6	16.7	37.8	3.2
	300~400만원 미만	(96)	5.2	15.6	46.9	28.1	4.2	20.8	32.3	3.1
	400~500만원 미만	(85)	7.1	11.8	38.8	36.5	5.9	18.8	42.4	3.2
	500만원 이상	(158)	4.4	12.7	35.4	41.8	5.7	17.1	47.5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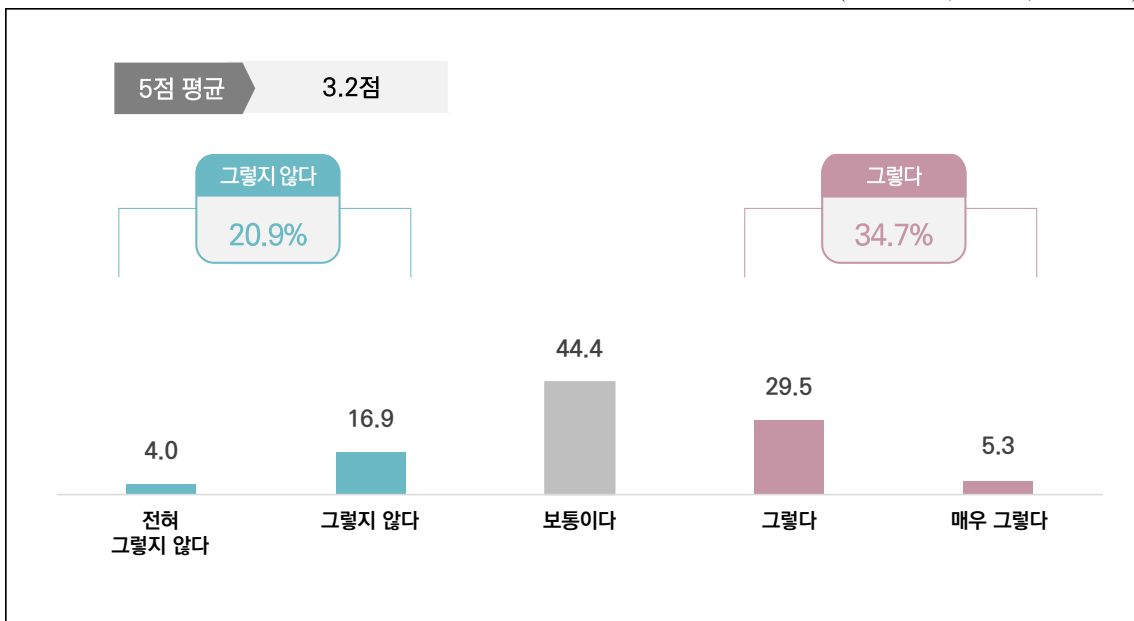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34.7%로 ‘그렇지 않다’(20.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34.0%, ‘여성’ 35.7%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37.8%, ‘30세~39세’ 31.1%, ‘40세~49세’ 33.5%, ‘50세~59세’ 36.2%, ‘60세 이상’ 37.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33.8%, ‘비수도권’ 36.3%로 나타남

〈그림 IV-44〉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45〉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550)	4.0	16.9	44.4	29.5	5.3	20.9	34.7	3.2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5.2	18.6	43.3	28.6	4.3	23.8	32.9	3.1
	가입	(319)	3.1	15.7	45.1	30.1	6.0	18.8	36.1	3.2
성별	남성	(315)	4.4	16.8	44.8	30.5	3.5	21.3	34.0	3.1
	여성	(235)	3.4	17.0	43.8	28.1	7.7	20.4	35.7	3.2
연령	20세~29세	(37)	10.8	13.5	37.8	32.4	5.4	24.3	37.8	3.1
	30세~39세	(106)	5.7	19.8	43.4	23.6	7.5	25.5	31.1	3.1
	40세~49세	(158)	3.2	20.9	42.4	28.5	5.1	24.1	33.5	3.1
	50세~59세	(141)	2.1	13.5	48.2	29.8	6.4	15.6	36.2	3.2
	60세 이상	(108)	3.7	13.9	45.4	35.2	1.9	17.6	37.0	3.2
수도권	수도권	(346)	4.3	17.9	43.9	27.5	6.4	22.3	33.8	3.1
	비수도권	(204)	3.4	15.2	45.1	32.8	3.4	18.6	36.3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4.8	14.3	57.1	19.0	4.8	19.0	23.8	3.0
	2~3년제 대학	(62)	1.6	22.6	40.3	30.6	4.8	24.2	35.5	3.1
	4년제 대학	(359)	4.2	16.7	40.9	32.6	5.6	20.9	38.2	3.2
	대학원 석사 이상	(66)	4.5	15.2	54.5	21.2	4.5	19.7	25.8	3.1
혼인상태	미혼	(173)	3.5	19.7	46.8	26.6	3.5	23.1	30.1	3.1
	기혼	(356)	4.5	14.9	42.4	31.7	6.5	19.4	38.2	3.2
	별거·사별·이혼·기타	(21)	0.0	28.6	57.1	14.3	0.0	28.6	14.3	2.9
가구원수	1명	(71)	4.2	14.1	40.8	35.2	5.6	18.3	40.8	3.2
	2명	(114)	3.5	20.2	50.0	25.4	0.9	23.7	26.3	3.0
	3명	(189)	4.2	18.0	43.4	28.6	5.8	22.2	34.4	3.1
	4명 이상	(176)	4.0	14.8	43.2	30.7	7.4	18.8	38.1	3.2
자녀수	0명	(215)	4.2	20.5	44.2	27.9	3.3	24.7	31.2	3.1
	1명	(137)	5.1	18.2	46.0	24.8	5.8	23.4	30.7	3.1
	2명 이상	(198)	3.0	12.1	43.4	34.3	7.1	15.2	41.4	3.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5.0	18.2	50.4	22.3	4.1	23.1	26.4	3.0
	200~300만원 미만	(90)	3.3	20.0	37.8	32.2	6.7	23.3	38.9	3.2
	300~400만원 미만	(96)	3.1	13.5	53.1	28.1	2.1	16.7	30.2	3.1
	400~500만원 미만	(85)	4.7	21.2	40.0	25.9	8.2	25.9	34.1	3.1
	500만원 이상	(158)	3.8	13.9	40.5	36.1	5.7	17.7	41.8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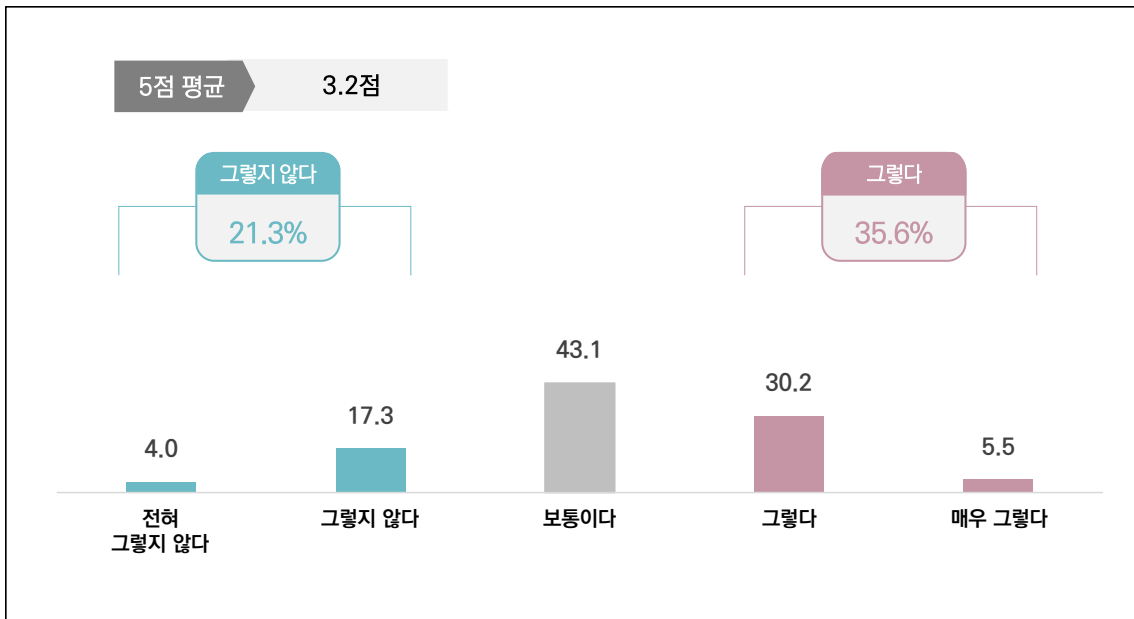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35.6%로 ‘그렇지 않다’(21.3%)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34.6%, ‘여성’ 37.0%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40.5%, ‘30세~39세’ 38.7%, ‘40세~49세’ 30.4%, ‘50세~59세’ 36.2%, ‘60세 이상’ 38.0%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37.9%, ‘비수도권’ 31.9%로 나타남

〈그림 IV-4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4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마련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 체		(550)	4.0	17.3	43.1	30.2	5.5	21.3	35.6	3.2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3.9	16.0	48.9	28.1	3.0	19.9	31.2	3.1
	가입	(319)	4.1	18.2	38.9	31.7	7.2	22.3	38.9	3.2
성별	남성	(315)	4.4	15.2	45.7	30.5	4.1	19.7	34.6	3.1
	여성	(235)	3.4	20.0	39.6	29.8	7.2	23.4	37.0	3.2
연령	20세~29세	(37)	5.4	18.9	35.1	40.5	0.0	24.3	40.5	3.1
	30세~39세	(106)	7.5	18.9	34.9	27.4	11.3	26.4	38.7	3.2
	40세~49세	(158)	3.8	20.3	45.6	25.9	4.4	24.1	30.4	3.1
	50세~59세	(141)	1.4	16.3	46.1	31.2	5.0	17.7	36.2	3.2
	60세 이상	(108)	3.7	12.0	46.3	34.3	3.7	15.7	38.0	3.2
수도권	수도권	(346)	3.2	17.6	41.3	30.6	7.2	20.8	37.9	3.2
	비수도권	(204)	5.4	16.7	46.1	29.4	2.5	22.1	31.9	3.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4.8	15.9	38.1	38.1	3.2	20.6	41.3	3.2
	2~3년제 대학	(62)	4.8	17.7	48.4	17.7	11.3	22.6	29.0	3.1
	4년제 대학	(359)	3.3	17.5	43.5	30.6	5.0	20.9	35.7	3.2
	대학원 석사 이상	(66)	6.1	16.7	40.9	31.8	4.5	22.7	36.4	3.1
혼인상태	미혼	(173)	4.6	21.4	43.4	27.2	3.5	26.0	30.6	3.0
	기혼	(356)	3.9	15.2	42.4	31.7	6.7	19.1	38.5	3.2
	별거·사별·이혼·기타	(21)	0.0	19.0	52.4	28.6	0.0	19.0	28.6	3.1
가구원수	1명	(71)	4.2	19.7	43.7	26.8	5.6	23.9	32.4	3.1
	2명	(114)	5.3	14.0	49.1	29.8	1.8	19.3	31.6	3.1
	3명	(189)	3.2	21.2	37.6	32.3	5.8	24.3	38.1	3.2
	4명 이상	(176)	4.0	14.2	44.9	29.5	7.4	18.2	36.9	3.2
자녀수	0명	(215)	5.1	19.5	44.2	27.9	3.3	24.7	31.2	3.0
	1명	(137)	2.9	15.3	41.6	34.3	5.8	18.2	40.1	3.2
	2명 이상	(198)	3.5	16.2	42.9	29.8	7.6	19.7	37.4	3.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5.8	15.7	47.1	28.1	3.3	21.5	31.4	3.1
	200~300만원 미만	(90)	2.2	17.8	48.9	27.8	3.3	20.0	31.1	3.1
	300~400만원 미만	(96)	5.2	17.7	52.1	20.8	4.2	22.9	25.0	3.0
	400~500만원 미만	(85)	1.2	16.5	38.8	32.9	10.6	17.6	43.5	3.4
	500만원 이상	(158)	4.4	18.4	33.5	37.3	6.3	22.8	43.7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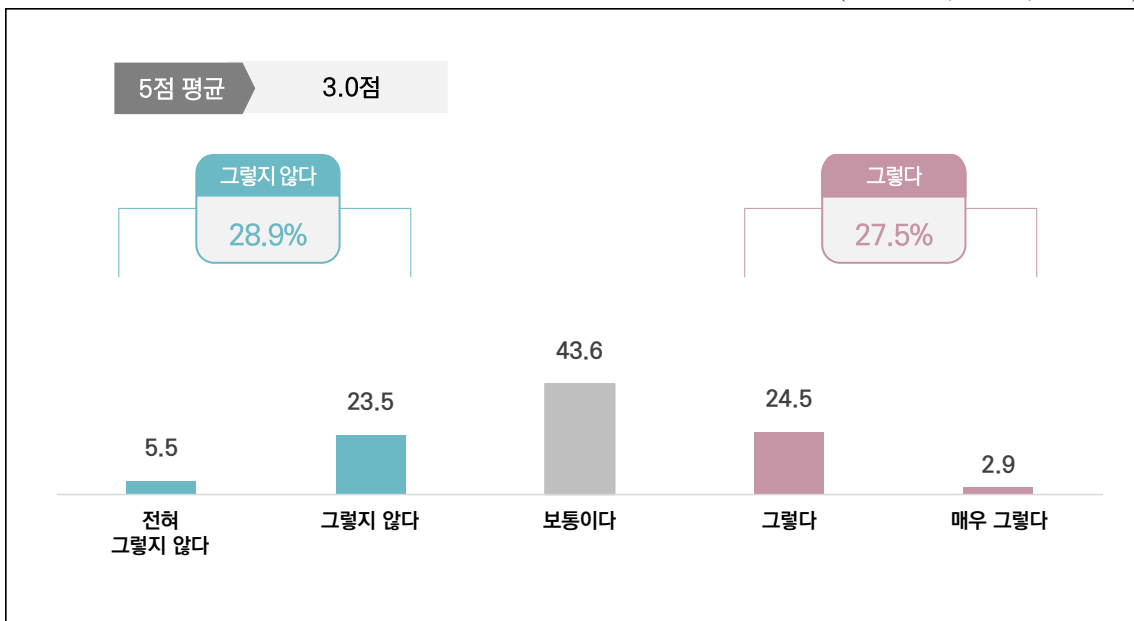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지 않다’(전혀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가 28.9%로 ‘그렇다’(27.5%)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0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지 않다’가 28.9%, ‘여성’ 28.9%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지 않다’가 27.0%, ‘30세~39세’ 34.9%, ‘40세~49세’ 29.1%, ‘50세~59세’ 27.0%, ‘60세 이상’ 25.9%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지 않다’가 29.5%, ‘비수도권’ 27.9%로 나타남

〈그림 IV-46〉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4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550)	5.5	23.5	43.6	24.5	2.9	28.9	27.5	3.0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3.5	24.2	45.5	23.8	3.0	27.7	26.8	3.0
	가입	(319)	6.9	22.9	42.3	25.1	2.8	29.8	27.9	2.9
성별	남성	(315)	5.7	23.2	44.8	23.5	2.9	28.9	26.3	2.9
	여성	(235)	5.1	23.8	42.1	26.0	3.0	28.9	28.9	3.0
연령	20세~29세	(37)	10.8	16.2	40.5	27.0	5.4	27.0	32.4	3.0
	30세~39세	(106)	12.3	22.6	33.0	26.4	5.7	34.9	32.1	2.9
	40세~49세	(158)	4.4	24.7	46.2	23.4	1.3	29.1	24.7	2.9
	50세~59세	(141)	2.1	24.8	49.6	21.3	2.1	27.0	23.4	3.0
	60세 이상	(108)	2.8	23.1	43.5	27.8	2.8	25.9	30.6	3.0
수도권	수도권	(346)	5.2	24.3	43.1	24.0	3.5	29.5	27.5	3.0
	비수도권	(204)	5.9	22.1	44.6	25.5	2.0	27.9	27.5	3.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4.8	15.9	52.4	22.2	4.8	20.6	27.0	3.1
	2~3년제 대학	(62)	3.2	29.0	45.2	21.0	1.6	32.3	22.6	2.9
	4년제 대학	(359)	6.1	21.7	42.6	26.5	3.1	27.9	29.5	3.0
	대학원 석사 이상	(66)	4.5	34.8	39.4	19.7	1.5	39.4	21.2	2.8
혼인상태	미혼	(173)	8.7	24.3	40.5	23.1	3.5	32.9	26.6	2.9
	기혼	(356)	3.9	22.8	45.2	25.3	2.8	26.7	28.1	3.0
	별거·사별·이혼·기타	(21)	4.8	28.6	42.9	23.8	0.0	33.3	23.8	2.9
가구원수	1명	(71)	9.9	18.3	40.8	22.5	8.5	28.2	31.0	3.0
	2명	(114)	3.5	22.8	50.0	21.9	1.8	26.3	23.7	3.0
	3명	(189)	5.3	27.5	39.2	25.9	2.1	32.8	28.0	2.9
	4명 이상	(176)	5.1	21.6	45.5	25.6	2.3	26.7	27.8	3.0
자녀수	0명	(215)	8.8	24.7	40.9	22.3	3.3	33.5	25.6	2.9
	1명	(137)	4.4	21.2	46.0	24.8	3.6	25.5	28.5	3.0
	2명 이상	(198)	2.5	23.7	44.9	26.8	2.0	26.3	28.8	3.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8.3	24.8	43.8	20.7	2.5	33.1	23.1	2.8
	200~300만원 미만	(90)	3.3	26.7	40.0	25.6	4.4	30.0	30.0	3.0
	300~400만원 미만	(96)	6.3	20.8	45.8	25.0	2.1	27.1	27.1	3.0
	400~500만원 미만	(85)	3.5	25.9	38.8	29.4	2.4	29.4	31.8	3.0
	500만원 이상	(158)	5.1	20.9	46.8	24.1	3.2	25.9	27.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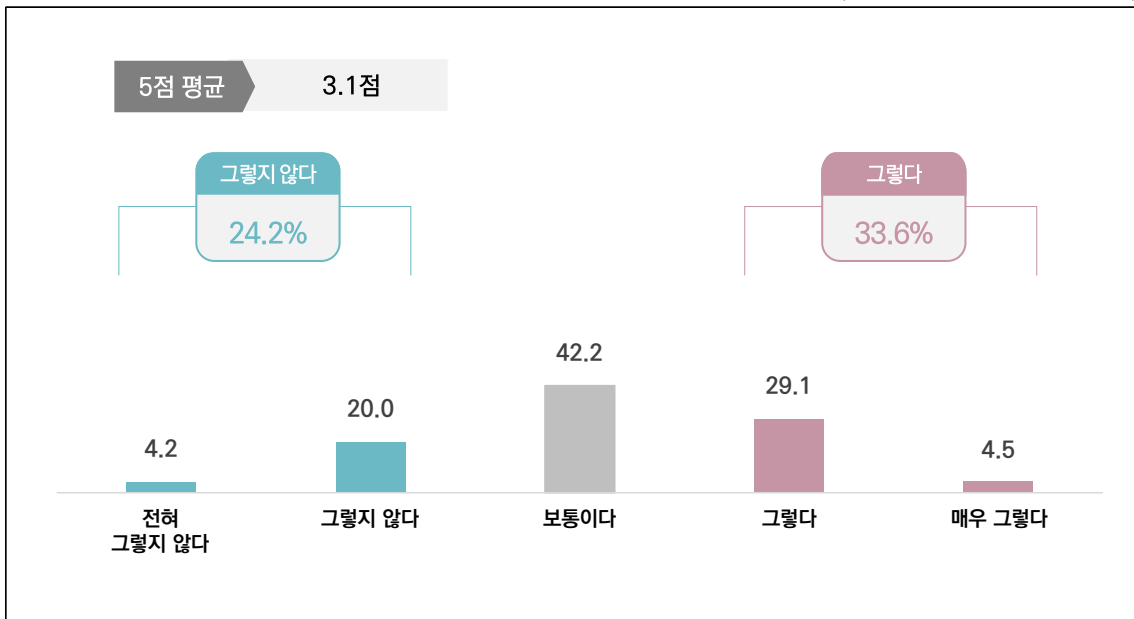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그렇다’(그렇다+매우 그렇다)가 33.6%로 ‘그렇지 않다’(24.2%)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1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그렇다’가 33.0%, ‘여성’ 34.5%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그렇다’가 40.5%, ‘30세~39세’ 33.0%, ‘40세~49세’ 34.2%, ‘50세~59세’ 33.3%, ‘60세 이상’ 31.5%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그렇다’가 34.4%, ‘비수도권’ 32.4%로 나타남

〈그림 IV-47〉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48〉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의 저축률 향상 기여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분	사례수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 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그렇다	5점 평균	
전체	(550)	4.2	20.0	42.2	29.1	4.5	24.2	33.6	3.1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3.5	22.9	45.9	25.1	2.6	26.4	27.7	3.0
	가입	(319)	4.7	17.9	39.5	32.0	6.0	22.6	37.9	3.2
성별	남성	(315)	4.8	16.8	45.4	29.5	3.5	21.6	33.0	3.1
	여성	(235)	3.4	24.3	37.9	28.5	6.0	27.7	34.5	3.1
연령	20세~29세	(37)	8.1	21.6	29.7	37.8	2.7	29.7	40.5	3.1
	30세~39세	(106)	8.5	17.0	41.5	27.4	5.7	25.5	33.0	3.0
	40세~49세	(158)	3.2	19.0	43.7	28.5	5.7	22.2	34.2	3.1
	50세~59세	(141)	0.7	23.4	42.6	29.1	4.3	24.1	33.3	3.1
	60세 이상	(108)	4.6	19.4	44.4	28.7	2.8	24.1	31.5	3.1
수도권	수도권	(346)	4.0	20.8	40.8	29.8	4.6	24.9	34.4	3.1
	비수도권	(204)	4.4	18.6	44.6	27.9	4.4	23.0	32.4	3.1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4.8	19.0	46.0	25.4	4.8	23.8	30.2	3.1
	2~3년제 대학	(62)	3.2	25.8	40.3	27.4	3.2	29.0	30.6	3.0
	4년제 대학	(359)	3.9	18.9	41.5	30.9	4.7	22.8	35.7	3.1
	대학원 석사 이상	(66)	6.1	21.2	43.9	24.2	4.5	27.3	28.8	3.0
혼인상태	미혼	(173)	5.8	23.1	39.3	27.2	4.6	28.9	31.8	3.0
	기혼	(356)	3.4	18.5	42.4	30.9	4.8	21.9	35.7	3.2
	별거·사별·이혼·기타	(21)	4.8	19.0	61.9	14.3	0.0	23.8	14.3	2.9
가구원수	1명	(71)	5.6	19.7	33.8	31.0	9.9	25.4	40.8	3.2
	2명	(114)	3.5	21.1	48.2	27.2	0.0	24.6	27.2	3.0
	3명	(189)	5.3	23.8	36.5	28.0	6.3	29.1	34.4	3.1
	4명 이상	(176)	2.8	15.3	47.7	30.7	3.4	18.2	34.1	3.2
자녀수	0명	(215)	6.5	22.3	40.0	27.4	3.7	28.8	31.2	3.0
	1명	(137)	3.6	23.4	37.2	29.2	6.6	27.0	35.8	3.1
	2명 이상	(198)	2.0	15.2	48.0	30.8	4.0	17.2	34.8	3.2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4.1	25.6	47.1	19.0	4.1	29.8	23.1	2.9
	200~300만원 미만	(90)	2.2	25.6	33.3	32.2	6.7	27.8	38.9	3.2
	300~400만원 미만	(96)	4.2	16.7	45.8	31.3	2.1	20.8	33.3	3.1
	400~500만원 미만	(85)	4.7	21.2	30.6	35.3	8.2	25.9	43.5	3.2
	500만원 이상	(158)	5.1	13.9	47.5	30.4	3.2	19.0	33.5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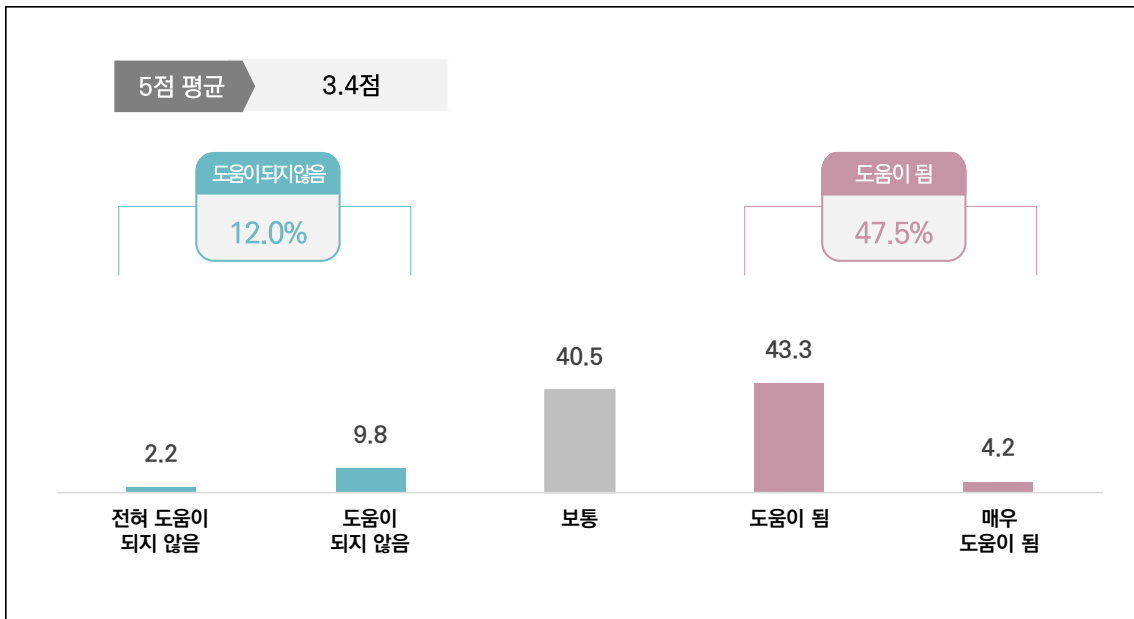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8)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됨’(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47.5%로 ‘도움이 되지 않음’(12.0%)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4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이 됨’이 48.6%, ‘여성’ 46.0%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도움이 됨’이 37.8%, ‘30세~39세’ 38.7%, ‘40세~49세’ 46.2%, ‘50세~59세’ 53.9%, ‘60세 이상’ 52.8%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도움이 됨’이 49.1%, ‘비수도권’ 44.6%로 나타남

〈그림 IV-48〉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49〉 배우자 납입금 소득공제 허용에 따른 주택마련 도움 여부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 체		(550)	2.2	9.8	40.5	43.3	4.2	12.0	47.5	3.4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3.0	8.2	44.6	40.3	3.9	11.3	44.2	3.3
	가입	(319)	1.6	11.0	37.6	45.5	4.4	12.5	49.8	3.4
성별	남성	(315)	2.5	8.3	40.6	44.8	3.8	10.8	48.6	3.4
	여성	(235)	1.7	11.9	40.4	41.3	4.7	13.6	46.0	3.4
연령	20세~29세	(37)	0.0	21.6	40.5	29.7	8.1	21.6	37.8	3.2
	30세~39세	(106)	4.7	13.2	43.4	34.0	4.7	17.9	38.7	3.2
	40세~49세	(158)	1.9	8.9	43.0	44.3	1.9	10.8	46.2	3.4
	50세~59세	(141)	0.7	8.5	36.9	48.9	5.0	9.2	53.9	3.5
	60세 이상	(108)	2.8	5.6	38.9	48.1	4.6	8.3	52.8	3.5
수도권	수도권	(346)	2.3	9.5	39.0	43.6	5.5	11.8	49.1	3.4
	비수도권	(204)	2.0	10.3	43.1	42.6	2.0	12.3	44.6	3.3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1.6	6.3	52.4	36.5	3.2	7.9	39.7	3.3
	2~3년제 대학	(62)	4.8	8.1	43.5	40.3	3.2	12.9	43.5	3.3
	4년제 대학	(359)	1.4	11.7	37.6	44.6	4.7	13.1	49.3	3.4
	대학원 석사 이상	(66)	4.5	4.5	42.4	45.5	3.0	9.1	48.5	3.4
혼인상태	미혼	(173)	1.7	15.0	47.4	32.4	3.5	16.8	35.8	3.2
	기혼	(356)	2.5	7.9	36.0	48.9	4.8	10.4	53.7	3.5
	별거·사별·이혼·기타	(21)	0.0	0.0	61.9	38.1	0.0	0.0	38.1	3.4
가구원수	1명	(71)	1.4	9.9	40.8	42.3	5.6	11.3	47.9	3.4
	2명	(114)	1.8	7.9	51.8	37.7	0.9	9.6	38.6	3.3
	3명	(189)	3.2	12.7	33.9	46.0	4.2	15.9	50.3	3.4
	4명 이상	(176)	1.7	8.0	40.3	44.3	5.7	9.7	50.0	3.4
자녀수	0명	(215)	2.3	14.4	46.5	33.5	3.3	16.7	36.7	3.2
	1명	(137)	2.2	8.0	32.8	51.8	5.1	10.2	56.9	3.5
	2명 이상	(198)	2.0	6.1	39.4	48.0	4.5	8.1	52.5	3.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2.5	11.6	49.6	33.1	3.3	14.0	36.4	3.2
	200~300만원 미만	(90)	0.0	11.1	35.6	46.7	6.7	11.1	53.3	3.5
	300~400만원 미만	(96)	1.0	9.4	45.8	40.6	3.1	10.4	43.8	3.4
	400~500만원 미만	(85)	2.4	10.6	42.4	38.8	5.9	12.9	44.7	3.4
	500만원 이상	(158)	3.8	7.6	32.3	53.2	3.2	11.4	56.3	3.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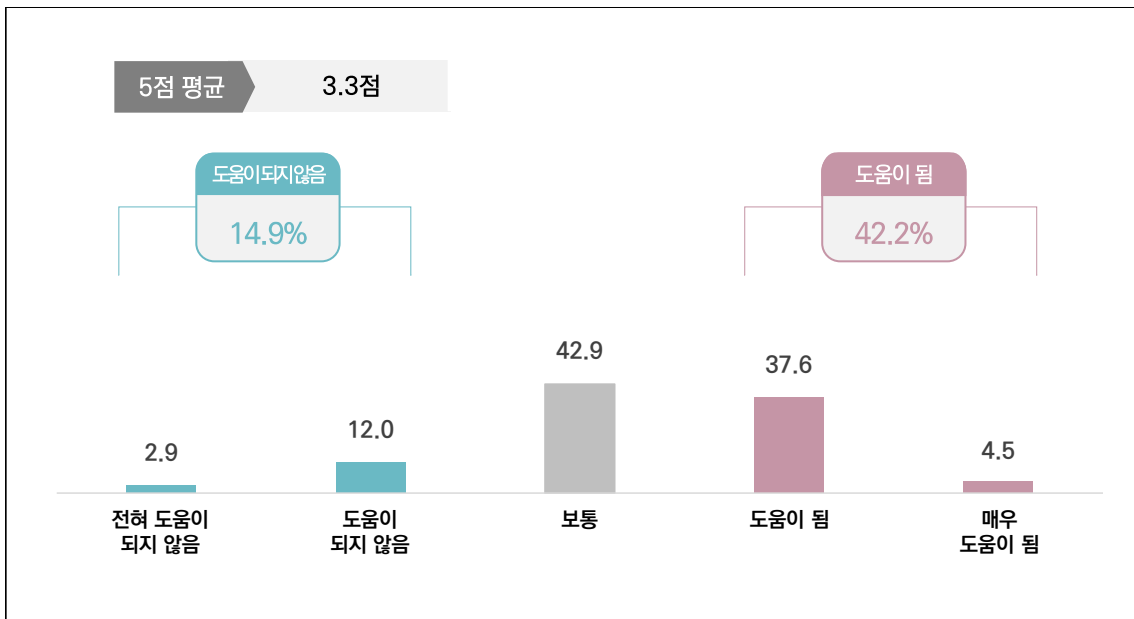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9)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 ‘연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개정됨에 따른 제도 활용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됨’(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42.2%로 ‘도움이 되지 않음’(14.9%)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3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이 됨’이 44.4%, ‘여성’ 39.1%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도움이 됨’이 37.8%, ‘30세~39세’ 36.8%, ‘40세~49세’ 39.9%, ‘50세~59세’ 46.1%, ‘60세 이상’ 47.2%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도움이 됨’이 45.7%, ‘비수도권’ 36.3%로 나타남

〈그림 IV-49〉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50〉 연 납입한도 상향 개정의 제도 활용 도움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 체	(550)	2.9	12.0	42.9	37.6	4.5	14.9	42.2	3.3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3.5	12.1	48.9	32.0	3.5	15.6	35.5	3.2
	가입	(319)	2.5	11.9	38.6	41.7	5.3	14.4	47.0	3.4
성별	남성	(315)	3.5	9.2	42.9	40.3	4.1	12.7	44.4	3.3
	여성	(235)	2.1	15.7	43.0	34.0	5.1	17.9	39.1	3.2
연령	20세~29세	(37)	5.4	16.2	40.5	35.1	2.7	21.6	37.8	3.1
	30세~39세	(106)	6.6	19.8	36.8	31.1	5.7	26.4	36.8	3.1
	40세~49세	(158)	1.9	12.0	46.2	34.8	5.1	13.9	39.9	3.3
	50세~59세	(141)	0.7	9.2	44.0	41.1	5.0	9.9	46.1	3.4
	60세 이상	(108)	2.8	6.5	43.5	44.4	2.8	9.3	47.2	3.4
수도권	수도권	(346)	2.9	11.3	40.2	39.9	5.8	14.2	45.7	3.3
	비수도권	(204)	2.9	13.2	47.5	33.8	2.5	16.2	36.3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1.6	6.3	55.6	30.2	6.3	7.9	36.5	3.3
	2~3년제 대학	(62)	6.5	11.3	40.3	37.1	4.8	17.7	41.9	3.2
	4년제 대학	(359)	2.2	14.5	40.7	39.0	3.6	16.7	42.6	3.3
	대학원 석사 이상	(66)	4.5	4.5	45.5	37.9	7.6	9.1	45.5	3.4
혼인상태	미혼	(173)	4.0	16.2	43.9	31.8	4.0	20.2	35.8	3.2
	기혼	(356)	2.5	10.4	40.7	41.3	5.1	12.9	46.3	3.4
	별거·사별·이혼·기타	(21)	0.0	4.8	71.4	23.8	0.0	4.8	23.8	3.2
가구원수	1명	(71)	4.2	12.7	36.6	39.4	7.0	16.9	46.5	3.3
	2명	(114)	1.8	8.8	56.1	33.3	0.0	10.5	33.3	3.2
	3명	(189)	4.2	12.7	36.5	41.8	4.8	16.9	46.6	3.3
	4명 이상	(176)	1.7	13.1	43.8	35.2	6.3	14.8	41.5	3.3
자녀수	0명	(215)	4.2	16.3	44.7	31.6	3.3	20.5	34.9	3.1
	1명	(137)	2.9	8.0	45.3	40.1	3.6	10.9	43.8	3.3
	2명 이상	(198)	1.5	10.1	39.4	42.4	6.6	11.6	49.0	3.4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2.5	14.0	51.2	30.6	1.7	16.5	32.2	3.1
	200~300만원 미만	(90)	2.2	12.2	42.2	35.6	7.8	14.4	43.3	3.3
	300~400만원 미만	(96)	3.1	11.5	43.8	38.5	3.1	14.6	41.7	3.3
	400~500만원 미만	(85)	2.4	11.8	41.2	38.8	5.9	14.1	44.7	3.3
	500만원 이상	(158)	3.8	10.8	37.3	43.0	5.1	14.6	48.1	3.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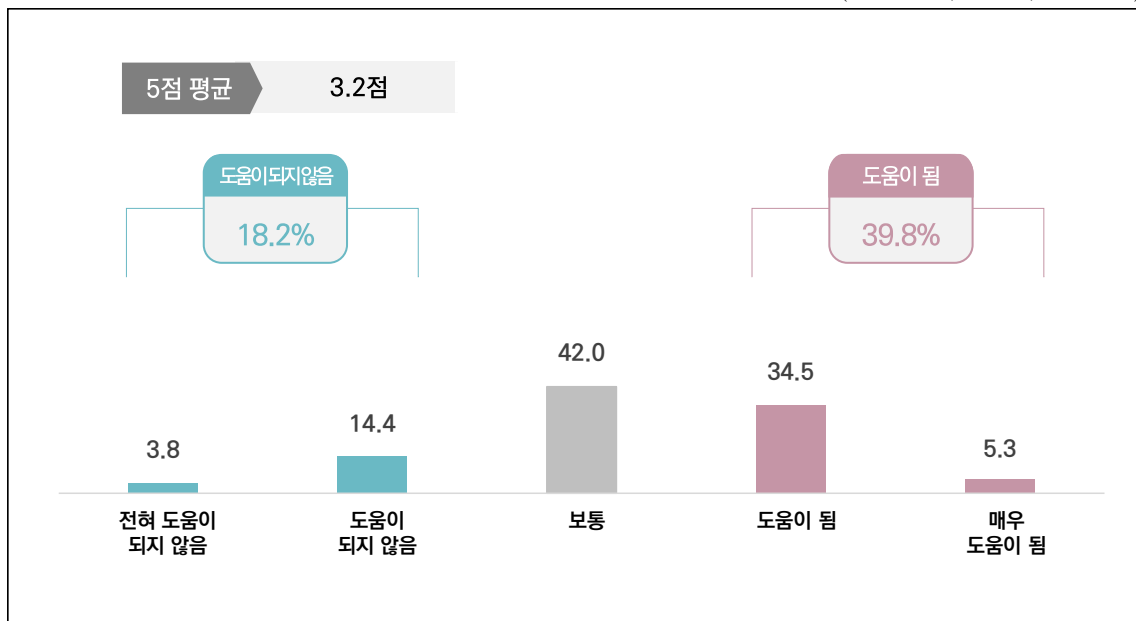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0)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도움이 됨’ (도움이 됨+매우 도움이 됨)이 39.8%로 ‘도움이 되지 않음’(18.2%) 보다 높게 나타났다으며, 평균 점수는 5점 만점에 3.2점으로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도움이 됨’이 42.5%, ‘여성’ 36.2%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20세~29세’는 ‘도움이 됨’이 29.7%, ‘30세~39세’ 39.6%, ‘40세~49세’ 34.8%, ‘50세~59세’ 43.3%, ‘60세 이상’ 46.3%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수도권’은 ‘도움이 됨’이 40.5%, ‘비수도권’ 38.7%로 나타남

〈그림 IV-50〉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51〉 소득요건 적용에 따른 형평성 제고 도움 정도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점)

구 분		사례수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되지 않음	보통	도움이 됨	매우 도움이 됨	도움이 되지 않음	도움이 됨	5점 평균
전 체		(550)	3.8	14.4	42.0	34.5	5.3	18.2	39.8	3.2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3.5	13.4	48.5	31.2	3.5	16.9	34.6	3.2
	가입	(319)	4.1	15.0	37.3	37.0	6.6	19.1	43.6	3.3
성별	남성	(315)	4.4	11.7	41.3	36.8	5.7	16.2	42.5	3.3
	여성	(235)	3.0	17.9	43.0	31.5	4.7	20.9	36.2	3.2
연령	20세~29세	(37)	5.4	10.8	54.1	21.6	8.1	16.2	29.7	3.2
	30세~39세	(106)	9.4	19.8	31.1	28.3	11.3	29.2	39.6	3.1
	40세~49세	(158)	3.2	13.9	48.1	30.4	4.4	17.1	34.8	3.2
	50세~59세	(141)	0.0	16.3	40.4	39.7	3.5	16.3	43.3	3.3
	60세 이상	(108)	3.7	8.3	41.7	44.4	1.9	12.0	46.3	3.3
수도권	수도권	(346)	3.8	14.2	41.6	33.5	6.9	17.9	40.5	3.3
	비수도권	(204)	3.9	14.7	42.6	36.3	2.5	18.6	38.7	3.2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3.2	11.1	49.2	33.3	3.2	14.3	36.5	3.2
	2~3년제 대학	(62)	6.5	11.3	46.8	29.0	6.5	17.7	35.5	3.2
	4년제 대학	(359)	2.8	16.4	40.1	35.1	5.6	19.2	40.7	3.2
	대학원 석사 이상	(66)	7.6	9.1	40.9	37.9	4.5	16.7	42.4	3.2
혼인상태	미혼	(173)	3.5	17.3	46.8	26.6	5.8	20.8	32.4	3.1
	기혼	(356)	4.2	13.2	39.6	37.6	5.3	17.4	43.0	3.3
	별거·사별·이혼·기타	(21)	0.0	9.5	42.9	47.6	0.0	9.5	47.6	3.4
가구원수	1명	(71)	4.2	15.5	43.7	29.6	7.0	19.7	36.6	3.2
	2명	(114)	2.6	7.9	47.4	41.2	0.9	10.5	42.1	3.3
	3명	(189)	5.3	17.5	38.6	32.3	6.3	22.8	38.6	3.2
	4명 이상	(176)	2.8	14.8	41.5	34.7	6.3	17.6	40.9	3.3
자녀수	0명	(215)	3.7	17.7	45.1	28.4	5.1	21.4	33.5	3.1
	1명	(137)	5.1	13.1	41.6	35.0	5.1	18.2	40.1	3.2
	2명 이상	(198)	3.0	11.6	38.9	40.9	5.6	14.6	46.5	3.3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4.1	15.7	47.9	28.9	3.3	19.8	32.2	3.1
	200~300만원 미만	(90)	4.4	12.2	47.8	32.2	3.3	16.7	35.6	3.2
	300~400만원 미만	(96)	1.0	9.4	44.8	38.5	6.3	10.4	44.8	3.4
	400~500만원 미만	(85)	4.7	11.8	37.6	38.8	7.1	16.5	45.9	3.3
	500만원 이상	(158)	4.4	19.0	34.8	35.4	6.3	23.4	41.8	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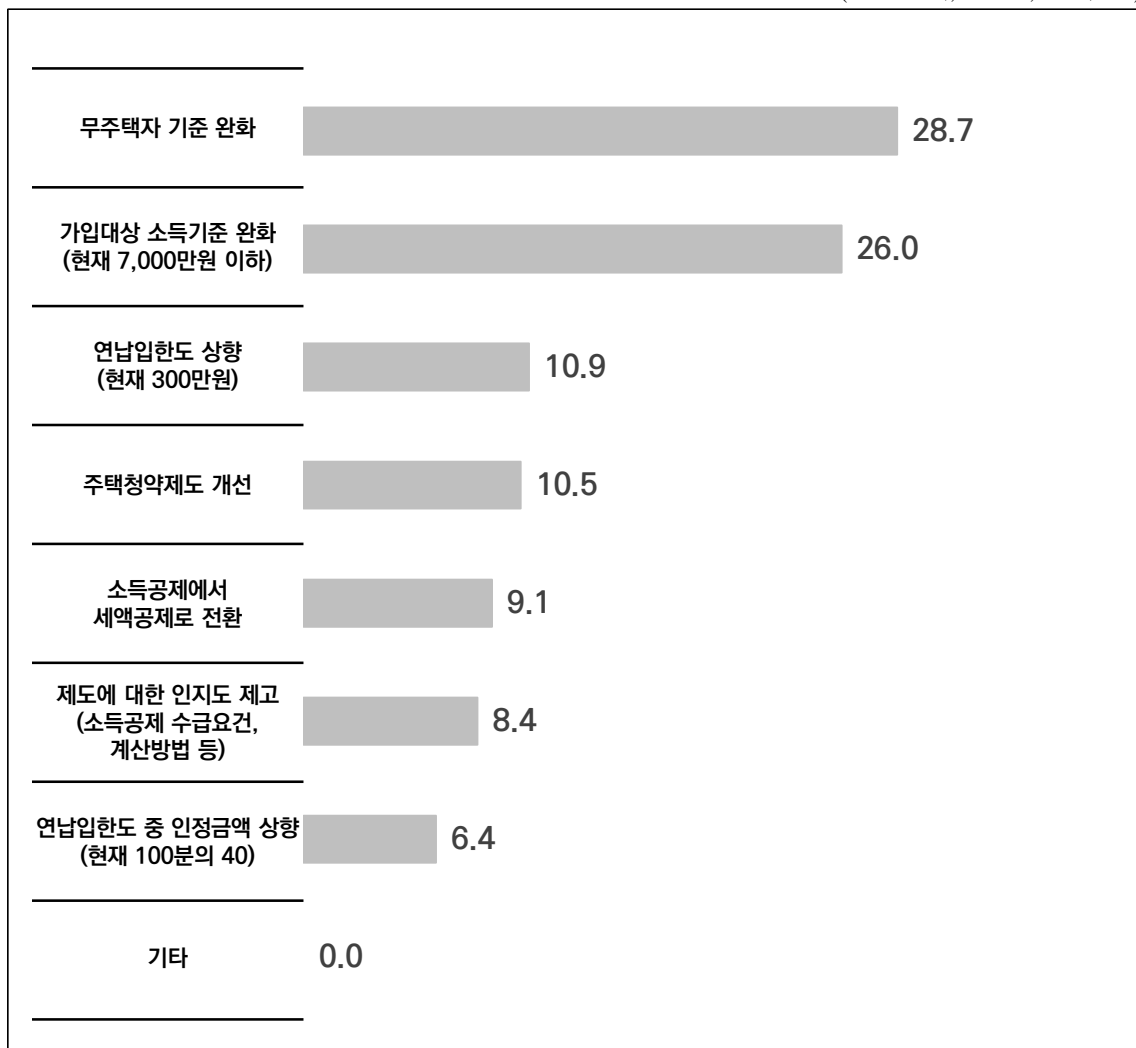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11)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에 대해 물어본 결과,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28.7%로 가장 높게 나타남
 - 성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남성’ 29.8%, ‘여성’ 27.2%로 나타남
 - 연령별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20세~29세’ 35.1%, ‘30세~39세’ 33.0%, ‘40세~49세’ 25.9%, ‘50세~59세’ 25.5%, ‘60세 이상’ 30.6%로 나타남
 - 수도권 여부로 살펴보면 ‘무주택자 기준 완화’가 ‘수도권’ 29.2%, ‘비수도권’ 27.9%로 나타남

〈그림 IV-51〉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52〉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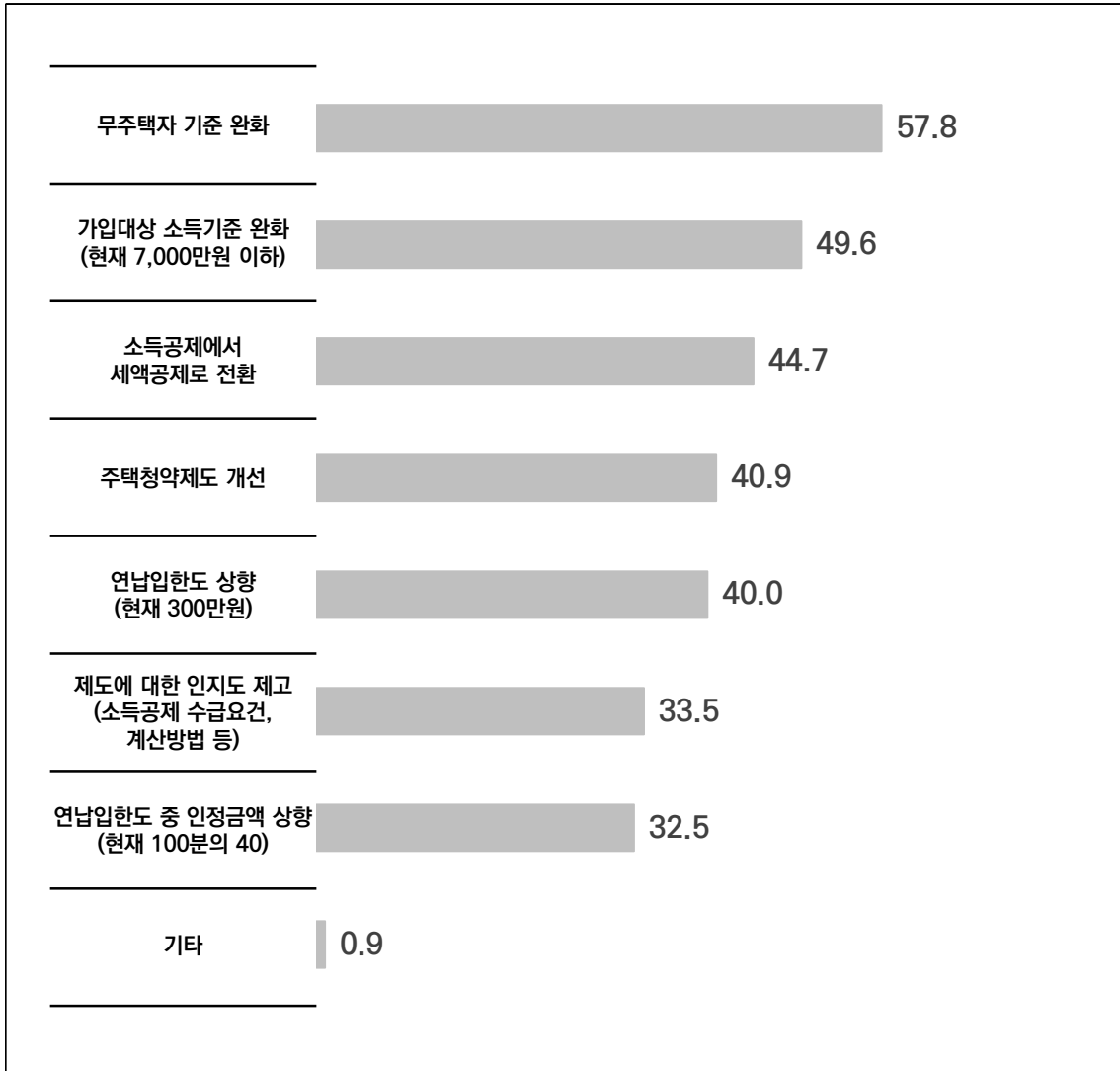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550)	28.7	26.0	10.9	10.5	9.1	8.4	6.4	0.0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29.4	22.5	13.4	10.4	7.8	9.5	6.9	0.0
	가입	(319)	28.2	28.5	9.1	10.7	10.0	7.5	6.0	0.0
성별	남성	(315)	29.8	24.1	10.2	11.4	10.2	8.3	6.0	0.0
	여성	(235)	27.2	28.5	11.9	9.4	7.7	8.5	6.8	0.0
연령	20세~29세	(37)	35.1	24.3	5.4	16.2	5.4	5.4	8.1	0.0
	30세~39세	(106)	33.0	17.9	10.4	14.2	9.4	7.5	7.5	0.0
	40세~49세	(158)	25.9	29.7	13.3	4.4	9.5	10.8	6.3	0.0
	50세~59세	(141)	25.5	31.2	10.6	10.6	9.9	7.8	4.3	0.0
	60세 이상	(108)	30.6	22.2	10.2	13.9	8.3	7.4	7.4	0.0
수도권	수도권	(346)	29.2	26.9	9.2	10.7	8.7	9.2	6.1	0.0
	비수도권	(204)	27.9	24.5	13.7	10.3	9.8	6.9	6.9	0.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22.2	27.0	12.7	11.1	7.9	9.5	9.5	0.0
	2~3년제 대학	(62)	38.7	16.1	12.9	6.5	9.7	9.7	6.5	0.0
	4년제 대학	(359)	28.4	26.2	10.6	11.1	8.4	8.4	7.0	0.0
	대학원 석사 이상	(66)	27.3	33.3	9.1	10.6	13.6	6.1	0.0	0.0
혼인상태	미혼	(173)	28.9	22.5	6.9	16.2	9.8	8.7	6.9	0.0
	기혼	(356)	28.9	27.5	12.6	7.3	8.7	8.4	6.5	0.0
	별거·사별·이혼·기타	(21)	23.8	28.6	14.3	19.0	9.5	4.8	0.0	0.0
가구원수	1명	(71)	23.9	31.0	9.9	16.9	4.2	7.0	7.0	0.0
	2명	(114)	28.9	16.7	12.3	11.4	14.0	10.5	6.1	0.0
	3명	(189)	29.1	26.5	14.8	9.5	6.9	7.4	5.8	0.0
	4명 이상	(176)	30.1	29.5	6.3	8.5	10.2	8.5	6.8	0.0
자녀수	0명	(215)	28.4	22.8	8.4	15.3	10.2	9.3	5.6	0.0
	1명	(137)	29.9	28.5	18.2	3.6	5.8	8.0	5.8	0.0
	2명 이상	(198)	28.3	27.8	8.6	10.1	10.1	7.6	7.6	0.0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21.5	24.8	8.3	19.0	8.3	11.6	6.6	0.0
	200~300만원 미만	(90)	40.0	20.0	14.4	6.7	5.6	7.8	5.6	0.0
	300~400만원 미만	(96)	33.3	19.8	10.4	11.5	10.4	5.2	9.4	0.0
	400~500만원 미만	(85)	34.1	18.8	12.9	7.1	8.2	10.6	8.2	0.0
	500만원 이상	(158)	22.2	38.0	10.1	7.6	11.4	7.0	3.8	0.0
수급여부	수급	(10)	50.0	10.0	10.0	20.0	0.0	10.0	0.0	0.0
	비수급	(540)	28.3	26.3	10.9	10.4	9.3	8.3	6.5	0.0

- ① 무주택자 기준 완화
 - ② 가입대상 소득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 완화
 - ③ 연납입한도(현재 300만원) 상향
 - ④ 주택청약제도 개선
 - 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⑥ 제도에 대한 인지도(소득공제 수급요건, 계산방법 등) 제고
 - ⑦ 연납입한도 중 인정금액(현재 100분의 40) 상향
 - ⑧ 기타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그림 IV-52〉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base 전체, n=550, 단위: %)



〈표 IV-53〉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1+2+3순위)

(base 전체, n=550, 단위: 명, %)

구 분		사례수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전 체		(550)	57.8	49.6	44.7	40.9	40.0	33.5	32.5	0.9
청약통장 가입여부	미가입	(231)	58.4	44.6	46.8	40.3	40.7	34.2	33.8	1.3
	가입	(319)	57.4	53.3	43.3	41.4	39.5	32.9	31.7	0.6
성별	남성	(315)	56.8	50.2	44.1	39.4	40.3	33.7	34.0	1.6
	여성	(235)	59.1	48.9	45.5	43.0	39.6	33.2	30.6	0.0
연령	20세~29세	(37)	59.5	51.4	27.0	67.6	37.8	24.3	32.4	0.0
	30세~39세	(106)	58.5	43.4	41.5	46.2	34.9	39.6	33.0	2.8
	40세~49세	(158)	58.2	50.0	44.9	36.7	45.6	35.4	28.5	0.6
	50세~59세	(141)	53.9	53.2	47.5	36.2	44.7	30.5	33.3	0.7
	60세 이상	(108)	61.1	50.0	50.0	38.9	31.5	31.5	37.0	0.0
수도권	수도권	(346)	56.9	48.8	45.4	44.2	36.1	35.5	32.1	0.9
	비수도권	(204)	59.3	51.0	43.6	35.3	46.6	29.9	33.3	1.0
최종학력	고등학교 졸업 이하	(63)	54.0	41.3	46.0	31.7	44.4	41.3	39.7	1.6
	2~3년제 대학	(62)	66.1	38.7	46.8	46.8	35.5	38.7	25.8	1.6
	4년제 대학	(359)	58.2	51.3	42.3	40.9	39.8	33.7	33.1	0.6
	대학원 석사 이상	(66)	51.5	59.1	54.5	43.9	40.9	19.7	28.8	1.5
혼인상태	미혼	(173)	55.5	43.9	42.2	52.6	35.8	36.4	31.8	1.7
	기혼	(356)	58.7	52.5	46.1	35.4	41.9	32.0	32.9	0.6
	별거·사별·이혼·기타	(21)	61.9	47.6	42.9	38.1	42.9	33.3	33.3	0.0
가구원수	1명	(71)	46.5	50.7	43.7	52.1	39.4	33.8	31.0	2.8
	2명	(114)	58.8	38.6	45.6	47.4	33.3	44.7	30.7	0.9
	3명	(189)	57.7	49.7	44.4	38.6	43.9	31.7	33.3	0.5
	4명 이상	(176)	61.9	56.3	44.9	34.7	40.3	27.8	33.5	0.6
자녀수	0명	(215)	55.3	44.7	40.0	52.1	35.8	39.1	31.2	1.9
	1명	(137)	57.7	52.6	45.3	27.7	50.4	30.7	35.8	0.0
	2명 이상	(198)	60.6	53.0	49.5	37.9	37.4	29.3	31.8	0.5
월평균 세전 개인소득	200만원 미만	(121)	49.6	45.5	43.0	47.9	37.2	41.3	33.9	1.7
	200~300만원 미만	(90)	68.9	47.8	44.4	43.3	41.1	30.0	24.4	0.0
	300~400만원 미만	(96)	61.5	41.7	51.0	40.6	33.3	36.5	35.4	0.0
	400~500만원 미만	(85)	63.5	45.9	42.4	35.3	47.1	31.8	32.9	1.2
	500만원 이상	(158)	52.5	60.8	43.7	37.3	41.8	28.5	34.2	1.3
수급여부	수급	(10)	60.0	10.0	70.0	50.0	30.0	40.0	40.0	0.0
	비수급	(540)	57.8	50.4	44.3	40.7	40.2	33.3	32.4	0.9

- ① 무주택자 기준 완화
- ② 가입대상 소득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 완화
- ③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④ 주택청약제도 개선
- ⑤ 연납입한도(현재 300만원) 상향
- ⑥ 제도에 대한 인지도(소득공제 수급요건, 계산방법 등) 제고
- ⑦ 연납입한도 중 인정금액(현재 100분의 40) 상향
- ⑧ 기타: 소득기준을 더 낮춰야함, 제도폐지 등
- ※ 사례수가 적을 경우, 해석의 유의가 필요함

〈 부 록 〉 설문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관련 의견조사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조사는 정부의 조세·재정정책을 연구하는 국책 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설문조사입니다.

이번 조사는 귀하의 의견을 수집하여 정부의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②)수립에 참고하기 위해 진행됩니다. 많이 바쁘시겠지만 조사의 중요성을 이해해주시고,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개인정보에 관한 보안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58조 1항 및 통계법 제5조, 설문지 응답 내용에 관한 보안은 통계법 제33조에 의해 철저히 보장되고 있으며, 통계작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오니 편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 3.

〈연구기관〉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사수행기관〉

(주)리서치앤리서치

A. 응답자 특성

A1. 다음 중 귀하에게 해당되는 사항에 응답해 주십시오.

항목	응답	
	①	②
1-1. 세대주 여부 (2024년 12월 31일 기준)	① 네(세대주)	② 아니오(세대원)
1-2. 본인 또는 세대 명의의 주택소유여부 (2024년 1년간 기준)	① 네(유주택자)	② 아니오(무주택자)
1-3. 근로소득 여부	① 있음	② 없음(또는 일용근로자)
1-4. (3. ① 응답자만) 총급여액 (2024년 기준; 비과세 소득 제외)	① 7천만원 초과	② 7천만원 이하

A2. 지난해 본인의 세전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 소득 포함) 및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항목	응답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300만 원 미만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500만 원 미만	⑥ 500만원 ~600만 원 미만	⑦ 600만원 ~700만 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1. 세전 개인소득 (월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지출액 (월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A3. 지난해 가구(본인 및 가구원 전체 합산)의 세전 월평균 소득(근로소득, 사업소득, 자본소득, 공적이전소득, 사적이전소득, 기타소득 포함) 및 월평균 지출액은 얼마입니까?

항목	응답							
	① 100만원 미만	② 100만원 ~ 200만원 미만	③ 200만원 ~300만 원 미만	④ 300만원 ~ 400만원 미만	⑤ 400만원 ~500만 원 미만	⑥ 500만원 ~600만 원 미만	⑦ 600만원 ~700만 원 미만	⑧ 700만원 이상
1. 세전 가구소득 (월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2. 가구 지출액 (월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B. 자산 및 부채

B1. 다음은 자산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의 다음 자산 보유여부와 납입원금(또는 현재가치)를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산 유형	B1-1. 보유 여부		B1-2. 납입원금 또는 현재 가치(누적기준)
	아니오	예	
1. 총자산	①	②	총 _____만원
1.1. 금융자산 - 정기 예·적금(온라인 예·적금* 포함), 주택청약저축, 국내·외 주식, 채권, 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펀드(적립식 및 예치식), ISA 계좌, 달러·엔화·유로 등 통화, 암호 및 가상화폐 등	①	②	_____만원
1.2. 부동산자산 - 소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 기타 소유한 건물·토지·임야 등의 가격, 전월세보증금(임대보증금), 기타 부동산 관련 자산(권리금, 가계물건 등)	①	②	_____만원
1.3. 금융·부동산 외 자산	①	②	_____만원
* 인터넷 뱅킹(시중 은행 포함) 또는 온라인 활동을 전용으로 운용중인 예·적금(예: 우리e-알찬정기예금, 하나의 정기예금, 카카오 36주 적금, 국민은행 특★한 적금 등)			

B2. 다음은 부채에 관한 질문입니다. 귀하가 보유하고 있는 부채를 선택하고 금액(잔액)을 적어주십시오.

부채 유형	B2-1. 보유 여부		B1-2. 부채 원금 또는 잔액
	아니오	예	
1. 총 부채	①	②	총 _____만원
1. 주택구매 관련 부채 (주택담보대출 등)	①	②	_____만원
1. 전세 혹은 월세 보증금(임차보증금)	①	②	_____만원
1. 그 외 부채(학자금 등)	①	②	_____만원

C. 주거

C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입주 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자가 (☞ C1-1로)
- ② 전세 (☞ C1-2로)
- ③ 보증금 있는 월세(반전세 포함) (☞ C1-3로)
- ④ 보증금 없는 월세(사글세) (☞ C1-4로)
- ⑤ 기타() (☞ C1-5로)

C1-1.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시세)은 얼마입니까? ()만원

(※ 주택 시세는 네이버 부동산 (<https://land.naver.com/>)에서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C1-2.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전세보증금)? ()만원

C1-3.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보증금: ()만원 / 월세: 월 ()만원

C1-4.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월세)? 월 ()만원

※ 임차료를 지출하지 않는 경우, '0'을 기입해주시시오.

C1-5. 현재 살고 있는 주택의 임차료는 얼마입니까? 월 ()만원

C2. 다음 문장에 대해 귀하가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응답				
	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그렇지 않다	③ 보통 이다	④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C2-1. '내 명의의 집(자가 소유)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2-2. '집값수준과 소득수준을 고려할 때 내가 원하는 집을 마련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2-3. 정부정책 등의 도움으로 원하는 집을 마련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C2-1 = ④, ⑤ 응답자만)

C2-1-1. 향후 부동산을 소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이 있으신가요?

- ①예 (☞ C1-1-2로) ②아니오

C2-1-2. 향후 부동산을 구입을 목적으로 축적하고 있는 자산의 종류는 무엇입니까(중복선택가능)?

- ① 정기적금(온라인 전용 적금* 포함, 주택청약저축 불포함)
- ② 정기예금(온라인 전용 예금* 포함)
- ③ 주택청약저축
- ④ 국내외 주식
- ⑤ 채권
- ⑥ 연금(퇴직연금 및 개인연금)
- ⑦ 펀드(적립식 및 예치식), ISA 계좌
- ⑧ 달러, 엔화, 유로 등 통화
- ⑨ 암호 및 가상화폐
- ⑩ 기타()

* 인터넷 뱅킹(시중 은행 포함) 또는 온라인 활동을 전용으로 운용중인 예·적금(예: 우리e-알찬정기예금, 하나의 정기예금, 카카오 36주 적금, 국민은행 특★한 적금 등)

D. 주택청약종합저축 인지 및 활용

주택청약종합저축이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85㎡이하의 민영주택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을 하나로 묶은 상품을 의미합니다. 본 설문과 관련된 조세특례제한법 제87조에 의해 연말정산 시 과세연도 납부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하위상품으로 만19~29세 이하 청년을 대상으로 우대이율(최대 1.7%p) 또는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제공하는 상품으로 청년우대형종합저축(*)과 청년주택드림청약저축(**)이 있으며, 소득공제 혜택 또한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www.molit.go.kr/USR/BORD0201/m_67/DTL.jsp?mode=view&idx=236243)

**<https://www.molit.go.kr/2024dreamaccount/main.jsp>)

D1. 귀하는 현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상태입니까?

- ① 가입하지 않음(또는 해지함) (☞ D2로)
- ② 가입함 (☞ D1-1로)

D1-1. 귀하의 주택청약저축 현재 가입형태는 무엇입니까?

- ① 청년우대형 (청년우대형 / 청년주택드림청약)
- ② 일반형 (주택청약저축)

D1-2. 귀하의 주택청약저축 가입연도는 언제입니까? ()년

D1-3.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집을 저렴하게 구입하기 위해서
- ② 원하는 지역이나 조건의 집을 구입하기 위해서
- ③ 이자율이 높아서
- ④ 인출이 자유롭지 않다는 점에서 적금대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 ⑤ 소득공제 등의 혜택이 있어서
- ⑥ 부모님 등이 가입해주었기 때문에
- ⑦ 부모님 등 타인의 권유로
- ⑧ 기타()

D1-4. 작년(2024년)에 납입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총 납입액은 얼마입니까?

총 ()만원

D1-5. 만약 다음 달에 원하는 청약매물이 나와서 지원한다고 가정한다면, 그 청약에 당첨될 확률(%)은 어느 정도라고 예상하십니까?

()%

D1-6. 청약 당첨 시 지불하게 될 주택가격이 그 주택의 적정시세에 비해 어느 정도일 것이라고 예상하십니까? (100%=적정시세로 구매를 의미) ()%

D1-7. 미래에 청약의 혜택을 한 번이라도 사용하게 될 가능성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

D2. 주택청약저축에 가입하지 않은(또는 해지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앞으로 할 예정 (☞ E1로)
- ② 유주택자여서 (☞ E1로)
- ③ 여유자금이 없어서
- ④ 청약을 통한 구입이 저렴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⑤ 청약의 당첨확률이 낮다고 생각해서
- ⑥ 다른 투자수단(주식, 적금 등)에 비해 수익률이 높지 않다고 생각해서
- ⑦ 기타 ()

D3. 주택청약저축의 이자율이 현재보다 얼마(x%p)만큼 인상되면 가입할 의향이 생기시겠습니까?

(인상 후 이자율은 (현재 이자율+x)%이며, 이자율 인상과 무관하게 가입의향이 없다면 ① 로 응답해 주십시오)

- ① 이자율 인상과 무관하게 가입 의향 없음
- ② 현재 이자율보다 (%) 인상되면 가입의향 있음

E.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인지 및 활용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제87조의 제2항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중산층 또는 서민층의 주택 마련을 지원하고 그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일정부분(100분의 40)을 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수혜 대상 및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혜 대상 및 요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해당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며 해당 과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주의 배우자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무주택확인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수혜 내용) 2025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세기간에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납입한 금액(납입한도 연 300만원)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예) 근로소득금액이 1,200만원(한계세율 6%)인 A씨가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하여 연간 총 200만원을 납입한 경우 80만원(=200만원×0.4)을 해당 과세기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결과적으로 산출세액은 적용세율인 6%를 곱하여 계산되는 4만8천원(=80만원×6%)만큼 줄어듭니다.

E1.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에 대하여 알고 있습니까?

- ①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 구체적으로 알고 있음
- ② 제도에 대하여 들어봤으나 수급요건, 공제액 산출방법 등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함
- ③ 제도를 알지 못함

E2.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제도 혜택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 ① 있음 (☞ E2-1로)
- ② 없음 (☞ E3으로)

E2-1.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월 납입액은 얼마입니까? ()만원

E2-2. 만약 소득공제를 받지 못 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 ① 있음
- ② 없음

E3.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① 근로소득이 없어서 소득공제 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함
- ② 근로소득이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음(면세자)
- ③ 총급여액 7,000만원 초과로 소득공제혜택의 대상이 되지 못함
- ④ 무주택요건을 충족하지 못함
- ⑤ 기타()

E4. 다음 문장에 대해 동의하시는 정도를 선택하여 주십시오.

항목	응답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② 도움이 되지 않음	③ 보통	④ 도움이 됨	⑤ 매우 도움이 됨
1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주택마련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2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저축률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3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마련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주택을 제외한 자산형성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5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는 저축률 향상에 얼마나 기여하는 것 같습니까?	①	②	③	④	⑤

E5. 2025년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의 세대주뿐 아니라 세대주의 배우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하였습니다. 해당 제도 개편이 혼인가구의 주택마련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② 도움이 되지 않음
- ③ 보통
- ④ 도움이 됨
- ⑤ 매우 도움이 됨

E6. 2023년부터 연 납입한도가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최대 공제금액이 96만원에서 120만원으로 상향). 해당 개정이 제도사용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② 도움이 되지 않음
- ③ 보통
- ④ 도움이 됨
- ⑤ 매우 도움이 됨

E7. 2015년부터 수혜요건 중 소득요건(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이 적용되었습니다. 해당 개정이 형 평성 제고에 얼마나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음
- ② 도움이 되지 않음
- ③ 보통
- ④ 도움이 됨
- ⑤ 매우 도움이 됨

E8. 다음 중 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제도개선 방안 중 효과적인 것은 무엇이 있을 것 같습니까?

1순위		2순위		3순위	
-----	--	-----	--	-----	--

- ① 가입대상 소득기준(현재 7,000만원 이하) 완화
- ② 무주택자 기준 완화
- ③ 연납입한도(현재 300만원) 상향
- ④ 연납입한도 중 인정금액(현재 100분의 40) 상향
- ⑤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로 전환*
- ⑥ 제도에 대한 인지도(소득공제 수급요건, 계산방법 등) 제고
- ⑦ 주택청약제도 개선
- ⑧ 기타()

* 소득공제: 과세대상이 되는 대상소득을 줄여주는 것으로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을 줄여주는 방식
(예시: 근로소득공제, 인적공제, 기타소득공제 등)
* 세액공제: 과세표준에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된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결정세액을 낮추는 방식
(예시: 자녀세액공제, 월세세액공제 등)

DQ. 응답자 특성

DQ1. 귀하의 최종학력은 무엇입니까? (중간에 학교를 그만 둔 경우는 '졸업'이 아닌 것으로 간주)

구분	중학교 졸업 이하	고등학교 졸업	2~3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4년제 대학 재학 및 졸업	대학원 석사 재학 이상
본인	①	②	③	④	⑤

〈최종학력〉

- 중간에 학교를 그만둔 경우는 졸업이 아님
- 대학을 두 개 이상 졸업한 경우는 고학력을 기준으로 응답
- 의대, 치대 6년제도 4년제 대학 졸업으로 응답

DQ2.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입니까?

- ① 예(☞ DQ2-1로) ② 아니오(☞ DQ3으로)

DQ2-1. 귀하께서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로부터 받고 있는 급여의 유형을 모두 골라주십시오.

급여 유형		1. 생계급여	2. 의료급여	3. 주거급여	4. 교육급여	5. 자활급여
수급 여부	예	①	①	①	①	①
	아니오	②	②	②	②	②

DQ3.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남성 ② 여성

DQ4.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만 세)

DQ5. 현재 거주하시는 지역은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도시 ② 도·농 ③ 농(어·산)촌

DQ6. 현재 거주하시는 지자체는 어디에 해당하십니까?

- ① 서울특별시 ② 부산광역시 ③ 대구광역시 ④ 인천광역시
 ⑤ 광주광역시 ⑥ 대전광역시 ⑦ 울산광역시 ⑧ 세종특별자치시
 ⑨ 경기도 ⑩ 강원도 ⑪ 충청북도 ⑫ 충청남도
 ⑬ 전라북도 ⑭ 전라남도 ⑮ 경상북도 ⑯ 경상남도
 ⑰ 제주특별자치도

DQ7. 귀하는 가구주(한 가구를 대표하는 사람)와 어떠한 관계 이십니까?

- ① 가구주 본인 ② 가구주의 배우자 ③ 가구주의 자녀
- ④ 가구주의 형제/자매 ⑤ 가구주의 부모 ⑥ 가구주의 조부모
- ⑦ 기타()

DQ8. 현재 혼인상태는 어떠합니까?

- ① 미혼 ② 기혼(사실혼 포함) ③ 별거
- ④ 사별 ⑤ 이혼 ⑥ 동거 ⑦ 기타()

DQ9. 가족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현재 함께 살고 있는 가족을 중심으로 응답해 주십시오. 부부는 사실혼을 포함합니다.)

- ① 1인 가구 ② 부부 2인 ③ 부부 2인과 자녀
- ④ 모자(어머니와 자녀) 혹은 부자(아버지와 자녀) ⑤ 조부모와 부모, 자녀로 구성된 3세대 가족
- ⑥ 그 외(기타 혈연 또는 비혈연 관계 동거)

DQ10. 총 가구원 수는 몇 명입니까? (본인 포함하여 작성: 1인 가구의 경우 총 1명) 총 명

DQ11. 총 자녀 수는 몇 명입니까? 총 명

2025 조세특례 심층평가(9)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및
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기획재정부

세종특별자치시 도음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TEL:044-215-2114(代), www.moef.go.kr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044-414-2114(代), www.kipf.re.kr